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7-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23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3)

2012. 9.

- 목 차 -

1. 숙종실록 <2> 기사자료집 : 숙종 25년 1월 ~ 숙종 43년 12월 1

1. 숙종실록 <2> 기사자료집

숙종실록 <2> 기사자료집: 숙종 25년 1월 ~ 숙종 43년 12월

출처	내용	원문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1월 1일 (신미) 3번째기사</p>	<p>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아! 국운의 불행이 어찌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4년 동안의 큰 흉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나머지 또 전에 없던 모진 여역(癘疫)에 걸렸는데, 봄부터 겨울까지 갈수록 더욱 치열해져 마치 물이 젖어들 듯 불이 타오르듯 하였다. 처음에는 서쪽 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팔로(八路)에 두루 퍼져 마을에는 완전한 가호(家戶)가 없는가 하면, 백에 하나도 치유된 사람이 없다. 그리하여 벌려 세운 병막(病幕)이 서로 잇따랐고, 신음 소리가 그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더욱 혹독한 경우에는 온 집안이 함께 몰살하는 참담한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망령들의 울음 소리가 처연하니, 병화(兵禍)의 급박함을 어찌 이에 비유할 것인가? 아! 해마다 잇단 흉황(凶荒)의 재해가 혹독하였는데, 토착민(土着民)이 거의 다 죽기로는 지난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었으니, 그에 대한 놀라움은 굶주리고 불에 타는 정도가 아니었다. 아! 백성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라가 앞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는가? 이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침식(寢食)도 편치 못하다. 삼가 정성을 들여 기양(祈禳)함에 있어 극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신명(神明)이 돌보지 않아서 그 보응이 더욱 까마득하기만 하다. 그 원</p>	<p>○上下備忘記曰: 嗚呼! 邦運之不幸, 胡至於此哉? 四年大殺, 萬死一生之餘喘, 又罹無前之虐癘, 自春徂冬, 愈往愈熾, 如水之漬, 若火之烈。始自西陲, 遍及八路, 里無完戶, 百無一瘳。列幕相望, 歌吟相聞, 而毒之尤者, 至有闔家俱沒之慘。積尸成堆, 鬼哭啾啾, 兵燹之禍, 曷足諭急? 嗚呼! 比歲災荒, 非不酷矣, 而土着之殆盡, 未有甚於去年, 其爲驚心, 又不啻飢火矣。嗚呼! 民靡孑遺, 國將焉依? 用是憂遑, 食息不寧。虔誠祈禳, 靡不用極, 而神不我顧, 冥應愈邈。究厥所以, 罪實在予, 赤子何辜? 嗚呼! 鸞輅迎春, 和氣藹然, 草木昆蟲, 咸囿雨露, 而奈之何飢</p>

	<p>인을 궁구(窮究)하여 보면 죄가 진실로 나에게 있으니, 적자(赤子)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아! 난로(鸞輅)9775) 가 봄을 맞아 화기가 애연하여 초목과 곤충들이 모두 우로(雨露)의 은택을 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근과 여역의 재해가 번갈아 찾아들여 우리 동토(東土)의 억만 창생들을 위망(危亡)의 지경에 밀어넣는단 말인가? 그런데도 구제할 수가 없으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의 마음이 이러하니, 안으로 경조(京兆)9776) 와 밖으로 도신(道臣)들도 어찌 나의 소의 한식(宵衣旰食)9777) 하는 근심을 몸받아 구제할 방안을 극진히 마련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있겠는가? 모조록 이런 내용으로 특별히 칙유(勅諭)하여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 때에 약을 지급하여 구료(救療)하고, 시체는 거두어 매장함으로써 널려 있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는 등등의 일을 한만(閑漫)히 보지 말고 착실히 거행하게 하라. 그리고 여역이 좀 침식(寢息)되기를 기다려 특별히 진휼(軫恤)하는 혜택을 베풀도록 하라. 또한 근시(近侍)를 중외(中外)에 나누어 보내어 여단(厲壇)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고, 측은하게 여기는 뜻을 보임으로써 조금이나마 원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도록 하라.”</p> <p>하였다. 뒤에 또 이를 거행하지 않으면 허문(虛文)으로 돌아가게 되니, 반드시 속히 강정(講定)하라는 뜻을 경연(經筵)에서 하교(下教)하였다.</p>	<p>饑札瘥，迭爲災害，使我環東土億萬蒼生，獨陷於危亡而莫之救？爲民父母，當作何懷？念之至此，不覺拭淚。予心若茲，內而京兆，外而按道之臣，詎不思所以體宵旰之憂，盡拯濟之方乎？須以此意，另加勅諭，其於給藥救療，毋或死亡，收屍埋瘞，毋或暴露等事，勿視閑漫，着實舉行，而稍待疫癘之寢息，特施軫恤之惠澤。亦宜分遣近侍於中外，設壇賜祭，以示憫惻，少慰煩冤。</p> <p>後又以若不舉行，反歸虛文，必爲斯速講定之意，下教于筵中。</p>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1월 7일 (정축) 1번째기사</p>	<p>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근래 감골을 반사할 적에 유생들의 앞을 다투어 탈취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일보다 더 극심하여 다투어 탈취하는 즈음에 거조가 해괴하였다고 한다. 명색이 선비로서 임금의 하사품이 중한 줄을 모르니, 더욱 한심한 일이다. 신칙(申飭)함이 옳다.”</p>	<p>○丁丑/召對玉堂官。上曰：“近來賜柑時，儒生輩爭先掠取，以致紛亂，今番尤有甚於前日，爭取之際，舉措駭異云。以士子爲名，不知君賜之爲重，尤涉無據。申飭可也。”承旨姜銑請添入隨其現發，繩以重律之意，上可</p>

	<p>하였다. 승지(承旨) 강선(姜銑)이 드러나는 대로 중률(重律)로 다스리겠다는 뜻을 첨입(添入)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뒤에 임금이 또 알성시(謁聖試)9781)·춘당 대시(春塘臺試)9782) 때에 정해진 시각이 지난 뒤에도 거자(擧子)들이 어지러이 시권(試券)을 던진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라 하여 신칙하도록 명하였다.</p>	<p>之。後，上又以謁聖、春塘臺，時刻過限之後，擧子輩投卷紛拏，極爲可駭，竝命申飭。</p>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3월 4일 (계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다시 숙명 공주의 집에 친림하여 포면(布綿)과 미두(米豆)를 후하게 내리고 인하여 율시(律詩) 한 수를 내리기를,</p> <p>“비 온 뒤에 봄바람 부니, 취화가 공주집을 향하였네.</p> <p>오래 된 병 깨끗이 나아서 다시 좋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높은 누각에는 경연(瓊筵)을 베풀고 이름난 동산엔 경물이 아름다와 아! 이토록 화락한 곳에 누가 팔음(八音)9808) 을 연주할거나.”</p>	<p>○癸酉/上復親臨淑明公主家，厚賚布綿、米豆，仍賜詩一律曰：</p> <p>雨後春風轉，翠華向主家。沈痾欣去體，重見好開懷。高閣瓊筵設，名園景物佳。可憐和樂地，誰奏八音諧？</p> <p>是日主家盛治具餽，隨駕卿宰及從臣，至日暮還宮。人主之行幸私第，更月而再，非禮也，過恩也。然前席承宣，惟恐奉承不暇，外廷大臣以下，終未有一言諫止者，吁可惜哉！</p>

	<p>하였다. 이 날 공주의 집에서 제구와 음식을 성대하게 장만하였는데, 수가(隨駕)한 경재(卿宰)와 종신(從臣)들의 날이 저물어서야 환궁하였다. 임금의 사제(私第)에 거둔 것이 한 달이 안되어 두 번이나 있었으니, 예(禮)에 어긋나고 지나친 은전(恩典)이나, 앞에 있는 승지(承旨)들은 오직 받들어 봉행하기에 겨를이 없을까 두려워하였고, 외정(外廷)의 대신 이하는 끝내 한 마디도 간하여 중지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아! 애석하다.</p>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3월 12 일(신사) 1번째기사</p>	<p>부교리(副校理) 조대수(趙大壽)가 상소를 올려, 장정을 뽑고 직곡을 받아들이는 일을 아울러 우선 정지함으로써 조종에서 진휼(軫恤)하고 있다는 뜻을 보이도록 청하였다. 또 농절(農節)이고 여역(癘疫)이 있다는 것으로 정시(庭試)를 물려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합쳐 증광시(增廣試)를 거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p>	<p>○辛巳/副校理趙大壽上疏，請簽丁捧糴，並姑停止，以示朝家軫恤之意。又以農節及癘疫，請退庭試，徐待秋屆，合行增廣，上不許。</p>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4월 3일 (임인) 1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의 급무는 권농(勸農)보다 더한 것이 없다. 봄철을 당할 적마다 신칙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기근(飢饉)과 여역(癘疫)으로 사망(死亡)하는 사람이 잇달았으므로 가까스로 살아 남은 잔약한 백성들이 농지(農地)에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의 절목(節目)에 다시 첨삭(添削)을 가하여 제도(諸道)에 신칙함이 옳다.” 하였다. 지경연(知經筵)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고(故) 참판(參判) 이단석(李端錫)은 청백(清白)하기로 이름났는데, 죽고 나서는 송곳 하나 세울 땅도 없어서 그의 아내가 언서(諺書)로 단자(單子)를 올려 급박함을 구제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를 빌었으니, 그 정상이 가련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청백하였다는 것을 더욱 증험할 수가 있으니,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금년을 기한으로 매달 쌀 1곡(斛)씩을 지급하게 하는</p>	<p>○壬寅/御晝講。上曰：“爲國急務，莫過於勸農。每當春節，非不申飭，而飢饉、癘疫，死亡相繼，孑遺殘氓，有難用力於畎畝。曾前節目，更加添刪，申飭諸道可也。”知經筵李濡言：“故參判李端錫，以清白見稱，死無立錫之地，其妻至以諺書呈單，乞得救急之資。其情可感，而其清白尤可驗。令賑廳，限今年月給米一斛，恐合勵廉之典。”上可之。</p>

	<p>것이 청렴을 권장하는 법전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p>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6월 6일 (계묘) 4번째기사</p>	<p>사록(司錄) 이상성(李相成)이 전지(傳旨)에 응하여 상소를 올려,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기욕(嗜欲)을 절제하고 언로(言路)를 넓힐 것을 청하여 말하기를,</p> <p>“궁금(宮禁)에 사치가 풍습을 이루어, 복어(服御) 등의 물품이 날로 더욱 화려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지(麟趾)9878)가 인후(仁厚)하지 못하고 종사(螽斯)9879)가 번창하지 못하니, 후궁(後宮)을 더 두는 일은 실로 저사(儲嗣)를 넓히려는 성의(盛意)에서 나왔으나, 단지 여색(女色)은 마음을 고혹시키는 물건이요, 덕을 해치는 도구이므로, 한미한 백성과 일개 선비도 오히려 장섭(將攝)하는 방도에 대해 삼가는데, 하물며 만백성이 추대하는 천금 같은 옥체(玉體)로서 자애(自愛)하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殿下)께서는 영예(英銳)가 너무 지나쳐 희로(喜怒)가 어긋나기도 하므로 근년 이래 늘 지나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좌우의 신료(臣僚)들이 황공하고 두려워하여 한 마디도 깨우치려는 말이 없이 각기 삼함(三緘)9880)의 경계만을 고수하고 있으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꼭진하게 교유(教諭)하시어 스스로 저상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p>	<p>○司錄李相成應旨陳疏，請崇儉約、節嗜欲、恢言路，有曰：</p> <p>宮禁之間，怙侈成風，服御之物，華靡日滋。麟趾不振，螽斯未佚，增置後宮之舉，實出廣儲嗣之盛意，而第女色，迷心之物也，戕德之具也。雖寒民、匹士，尚謹將攝之方，況以千金之重，萬民之戴，不思所以自愛之道乎？殿下英銳太過，喜怒或差，比年以來，過舉常多。左右臣僚，惶恐怵惕，曾無一言之悟，各有三緘之戒，可不懼哉？必諄諄教諭，毋令自沮焉。</p> <p>上嘉納之。</p>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10월 29일(계사) 1번째기사</p>	<p>송상기(宋相琦)를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허지(許墀)를 승지(承旨)로, 유명홍(俞命弘)을 장령(掌令)으로, 조대수(趙大壽)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p>	<p>○癸巳/以宋相琦爲忠淸道觀察使，許墀爲承旨，俞命弘爲掌令，趙大壽爲修撰。</p>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p>	<p>○藥房入診。上曰：“予自在春宮，已有火證，其後連遭罔極之痛，且早當萬</p>

<p>(康熙) 38년) 10월 4일(무진) 2번째기사</p>	<p>“내가 춘궁(春宮)에 있을 적부터 이미 화증(火症)이 있었는데, 그뒤 잇달아 한없는 슬픔을 당하였고, 또 일찍 만기(萬機)를 주관하게 되어 많은 흥년을 만나 노심초사(勞心焦思)했기 때문에 수염이 다 하얗게 세었다. 거기다가 성미가 느긋하지 못하여 사무(事務)가 앞에 당하면 버려두지를 못하니라. 식사(食事)에 때를 어겨 너무 지나치게 노쇠(勞瘁)9951) 해졌다. 근래에는 현기증이 발작하면 수레나 배 위에 있는 것 같다가 한참을 있어야 안정이 된다. 이러하니 정신과 근력이 얼마나 남아 있겠는가? 신료(臣僚)들 가운데 오랫동안 극무(劇務)를 관장하던 사람은 정력이 쉽게 무너졌는데, 호판(戶判) 민진장(閔鎭長)이 병판(兵判)으로 있을 적에 안색(顔色)이 바뀐 것을 본 적이 있었으니, 이 또한 노고에 몸을 상한 소치인 것이다. 내가 무오년9952) 이전에는 섭양(攝養)을 삼갔다고 할 수 없지만, 무오년 정월(正月)에 중병(重病)을 앓은 이후 그대로 혼자 거처하면서 14개월 동안 공부(工夫)를 쌓았었다. 그런데 이 심화증(心火症)은 30년 동안이나 쌓여온 병근(病根)이어서 실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다.”</p> <p>하니, 제조(提調) 신완(申琬) 등이 기거(起居)을 삼가고 정신(精神)을 수양하라는 내용으로 진달하고 물러갔다.</p>	<p>機，多值荐飢，焦慮熏心，鬚髯盡白。性又不緩，事務當前，不能置之。飢飽失時，勞瘁太過。近來眩暈發作，如在舟車上，移時乃定。如是而精神筋力，餘存幾何？臣僚中久掌劇務者，精力易敗。曾見戶判閔鎭長爲兵判時，顔色換脫，此亦勞傷所致。予於戊午以前，雖不可謂愼攝，而戊午正月重病以後，仍爲獨處，十四月積成工夫，最是心火，爲三十年病根，實有難言之憂矣。”提調申琬等，以節愼起居頤養精神之意，陳達而退。</p>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11월 13일(정미) 3번째기사</p>	<p>지평(持平) 권업(權聃)이 상소하여 협읍(峽邑)의 세포(稅布)를 백성들의 소원대로 전미(錢米)로 대봉(代捧)케 할 것과 차읍(次邑)의 전세(田稅)를 양감(量減)하여 줄 것과 이전(移轉)한 곡식을 받아서 본도(本道)에 유치시켜 둘 것 등 3건(件)의 일을 진달하고, 인하여 근일 과장(科場)의 일에 대해 논하기를,</p> <p>“간신(諫臣)이 당초 논계(論啓)할 적에는 의심할 만한 형적(形迹)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다가, 등대(登對)하기에 이르러서는 이에 편자(編字)가 서로 틀리다는 말을 했습니다. 간신이 몸소 감시(監試)하라는 명을 받았으면 시장(試場)</p>	<p>○持平權聃上疏，陳峽邑稅布，從民願錢米代捧、量減次邑田稅、移轉穀捧留本道三件事，仍論近日科場事曰：“諫臣當初論啓，謂未見可疑之跡，及至登對，乃有編字相左之說。諫臣身既受命監試，則場中凡百，無不檢飭，何不於拆榜之際，發覺而究覈耶？臣竊爲諫臣惜之也。況其初啓中所臚列者，</p>

	<p>안의 모든 것을 일체 검칙(檢飭)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탁방(拆榜)할 적에 발각하여 구핵(究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신은 삼가 간신(諫臣)을 위하여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초계(初啓)에서 열거한 것이 한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방외(方外)에서 차술(借述)한 것 같은 일은 이것이 어떠한 죄악인데 발론되자마다 곧 산삭(刪削)하여 모두 빙거할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친히 하문(下問)하셨을 때에도 거론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과연 숨기지 않는다는 도리에 합치되는 것이겠습니까? 박필위(朴弼渭)이 이름에 이르러서는 또한 전석(前席)에서 발론되었는데, 이를 반신반의(半信半疑)하여 마침내 핵실하여 처치하라는 명이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의심스런 단서가 있다면 곧 바로 아울러 조사하기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닐 것 같으면 더욱 암매(暗昧)한 데로 돌려 국인(國人)의 의혹을 야기시키는 것은 마땅치가 못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묘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복계(覆啓)하기를,</p> <p>“위의 3건(件)에 관한 일은 아울러 시행하지 마소서. 박필위의 일은 간신(諫臣)도 전해 들은 것이라고 하여 물을 만한 것이 없을 듯하니 덮어두소서.”</p> <p>하였다.</p>	<p>非止一二。如自外借述之事，是何等罪惡，而才發旋刪，俱無所據？親問之下，亦不舉論，是果合於無隱之道乎？至於朴弼渭之名，亦發於前席，而置之疑信之間，終無覈處之命。若有疑端，直請竝查之不暇，如其不然，尤不宜歸諸暗昧之科，惹國人之疑惑也。”上下廟堂議。覆啓，上三件事，並不施。朴弼渭事，又以諫臣亦稱傳聞，似無可問而置之。</p>
<p>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11월 22일(병진) 1번째기사</p>	<p>헌부(憲府)에서 계청(啓請)하기를,</p> <p>“각 군문(軍門)에 신칙하여 군졸들에 면신례(免新禮)9973) 라고 일컬으면서 신군졸(新軍卒)을 학대하여 주식(酒食)을 요구하고 전포(錢布)를 받아내는 폐단을 금단(禁斷)시키소서.”</p>	<p>○丙辰/憲府啓請：“申飭各軍門，禁斷軍卒輩稱以免新，侵虐新軍，討酒食捧錢布之弊。”上從之。</p>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11월 23 일(정사) 1번째기사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갑신년(9974)의 일은 차마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 황조(皇朝)의 여인(女人)들이 고향을 떠나 이방(異邦)에 몸을 기탁한 사람이 한두 명뿐만이 아니었는데, 이미 모두 고인(故人)이 되었고 최회저(崔回姐) 1인만이 남아 있다. 그는 여러 조정을 시위(侍衛)하면서 나이 80에 가까왔으니 마땅히 별도로 진념(軫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상궁(尙宮)의 교지(敎旨)를 내리게 하고, 또한 지부(地部)로 하여금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넉넉히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丁巳/上下敎曰: “甲申之事, 尙忍言哉? 其時皇朝女人之仳離, 托身殊方者, 不啻一二人, 而皆已身故, 只有崔回姐一人, 而侍衛累朝, 年迫八十, 宜有別樣軫念之道。 其令吏曹, 特賜尙宮敎旨, 亦令地部, 優給衣資、食物。”
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12월 10 일(갑술) 1번째기사	임금이 승지(承旨)를 보내어 낙선군(樂善君) 숙연(瀟延)의 시연(諡宴)에 선운(宣醞)하였다	○甲戌/上遣承旨, 宣醞于樂善君瀟延諡宴。
숙종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12월 12 일(병자) 1번째기사	감귤(柑橘)을 반사(頒賜)하고 반궁(泮宮)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였다. 거수(居首)인 이택(李澤)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	○丙子/頒柑, 試士于泮宮。 賜居首李澤及第。
숙보 33권, 25년 (1699 기묘 / 청 강희 (康熙) 38년) 2월 1일 (신축) 1번째기사	임금이 춘궁(春宮)의 두진(痘疹)이 나왔다는 것으로 진하(陳賀)할 적에 해조(該曹)에서 진달한 의주(儀注)에 음악의 연주 여부에 대해 계품(啓稟)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엄교(嚴敎)를 내려 해조를 준절히 나무라고 인하여 다시 마련(磨鍊)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辛丑/上以春宮痘候平復陳賀時, 該曹所進儀注中動樂與否, 不爲啓稟之故, 下嚴敎切責該曹, 仍命改磨鍊以啓。
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3월 3일 (병신) 1번째기사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유생(儒生)에게 급제(及第)를 주는 길이 너무 넓으니, 다시 변통하여 요행을 바라는 일을 막아야겠다. 오늘부터 제도를 정하여 황감제(黃柑製) 이외에는	○丙申/上下敎曰: “儒生賜第, 其道太廣, 宜加變通, 以杜僥倖。 從今日定制, 黃柑外勿許賜第, 庭試、謁聖, 取三人, 而或因慶別設庭試, 則臨時稟

	<p>급제를 주지 말 것이며, 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는 세 사람만을 뽑되, 더러 경사로 인하여 정시를 별도로 설행하면 임시에 품지(稟旨)하여 구별하는 의미를 두도록 하라.”</p> <p>하였다.</p>	<p>旨，俾存區別之意。”</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6월 5일 (병인) 2번째기사</p>	<p>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보다 먼저 지평 김상직(金相稷)이 소를 올려 《여지승람(輿地勝覽)》 간행 사업을 우선 중지하고 풍년이 들 때까지 기다리자고 청한 것을 임금이 비변사에 내려보내 품처(稟處)하라고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영의정 서문중(徐文重)이 말하기를,</p> <p>“기왕 시작한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필묵(筆墨)과 종이를 호조(戶曹)에서 적당히 주어서 각기 집에서 수정(修正)하도록 하고 원역(員役)도 마땅히 줄여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어 판돈녕(判敦寧)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p> <p>“공사를 마친 뒤에는 양남(兩南)10142) 지방에 나누어 보내어서 출간을 하도록 하여 호조의 경비를 번거롭힘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공사를 마친 뒤에 다시 아뢰라고 명하였다. 호조 판서 김구(金構)가 말하기를,</p> <p>“상납하는 세미(稅米)에 물을 타는 것을 주창한 자는 으레 효시(梟示)의 율을 쓰게 되어 있으나, 어떤 이는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일죄(一罪)10143) 로 논단(論斷)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다고 합니다. 석수(石數)를 헤아려 정하는 조처</p>	<p>○引見大臣、備局諸臣。先是，持平金相稷疏請，姑停《輿地勝覽》刊行之役，以待年豐，上下備局稟處。於是，領議政徐文重以爲：“旣始之役，不可中止。筆墨、紙地，自地部量給，各令在家修正，員役亦宜減除。”上可之。判敦寧崔錫鼎繼言：“工畢之後，分送兩南刊出，無煩地部經費爲宜。”上命畢役後更稟。戶曹判書金構言：“上納稅米和水者，首倡例施梟示之律，而或言勿論多少，論斷一罪，亦涉太重。似宜有量定石數之舉。”諸臣皆言：“當初立法，只爲情狀之絕痛，不可以斛數多少，有所低昂。”上命臨時更稟。江華留守閔鎮厚，請本府所納蛇油丸，與他島輪回相替，上命內局稟處。後覆啓，分定于水原、喬桐。承旨李彥紀言：“慶州、機張等地人蔘，例稱上品，已罷之全貢，雖難盡復，若干御藥所用，使之依前採納，大同米別</p>

	<p>가 있어야 될 듯합니다.”</p> <p>하고, 다른 여러 신하들도 모두 말하기를,</p> <p>“당초 법령을 제정할 적에 정상(情狀)이 너무 심한 것만 생각했으니, 석수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형벌을 낮추고 올릴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임시하여 다시 아뢰라고 명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민진후(閔鎭厚)가 본 고을에서 바치는 사유환(蛇油丸)을 다른 섬과 서로 돌아가며 바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내국(內局)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는데, 뒤에 복계(覆啓)하여 수원(水原)과 교동(喬桐)에 나누어 배정하였다. 승지 이언기(李彦紀)가 말하기를,</p> <p>“경주(慶州)·기장(機張) 등지의 인삼(人蔘)은 으레 상품(上品)으로 일컬어졌는데, 이미 폐지된 것을 다시 전공(全貢)을 다 복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약(御藥)에 쓸 약간의 수량은 이전대로 캐어 올리도록 하고, 대동미(大同米)에서 별도로 감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보다 먼저 과옥(科獄)의 죄인을 간신(諫臣)의 진달(陳達)로 인하여 날마다 형벌을 가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언기가 이에 ‘역옥(逆獄)의 죄인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형벌을 가하는 것은 상법(常法)에 위배됩니다.’고 아뢰고, 대신도 그 말을 옳게 여기니, 임금이 하루씩 걸러서 엄중한 형벌을 가하라고 명하였다. 김진귀(金鎭龜)가 판윤(判尹)으로 있을 적에 여염집이 도로를 침범한 곳을 조사하여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조사하여 보니 자못 5백 호에 가까웠다. 이에 판윤(判尹) 오도일(吳道一)이 말하기</p>	<p>爲減除爲宜。”上可之。先是，科獄罪人，因諫臣陳達，有逐日加刑之命，彦紀乃言除非逆獄罪人，逐日加刑，有乖常法，大臣亦是其言，上命間日嚴刑。金鎭龜爲判尹時，有閭家犯路處查治之命矣，及查，殆近五百戶。於是，判尹吳道一言：“一一毀撤，似有騷擾之患。尤甚處，宜先撤毀。”文重言宜以川渠爲限，上可之。道一又陳京山松蟲熾發，宜發坊民大捕，上亦可之。</p>
--	--	--

	<p>를,</p> <p>“일일이 훼손하면 소요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심한 곳만 우선 훼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서문중(徐文重)은 도랑으로 한계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니, 임금도 옳게 여겼다. 오도일이 또 서울 산의 송충(松蟲)이 매우 성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서울에 거주하는 백성을 일으켜 대대적으로 잡자고 진달하고, 임금도 옳게 여겼다.</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8월 5일 (을축)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판돈녕(判敦寧)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p> <p>“왕세자(王世子)께서 연이어 상약(嘗藥)10171) 하고 있는 중이므로 비록 서연(書筵)을 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주 소대(召對)를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빈객(賓客)은 대개 직무가 많아서 서책(書冊)에만 마음을 쓸 수가 없으니,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청컨대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진강(進講)케 하고 사부(師傅)와 빈객(賓客)은 간간이 입시(入侍)하게 하소서.”</p> <p>하였다. 호조 참판 이인엽(李寅燁)이 서북(西北) 지방의 군향(軍餉)은 따로 바쳐서 저장해 둔 것을 3년에 한 번씩 개색(改色)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호조 판서 김구(金構)가 아뢰기를,</p> <p>“금년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을해년(10172) 이후 여러 가지로 재감(裁減)했던 것을 복구케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乙丑/引見大臣、備局諸臣。 判敦寧崔錫鼎言：“王世子連在嘗藥中，雖不得開筵，宜頻賜召對，而賓客率多職務，不能專意書冊，依舊例請令上下番進講，師傅賓客，間間入侍。” 戶曹參判李寅燁請西北軍餉，別捧留儲，三年一改色，上竝可之。 戶曹判書金構言今年年事稍稔，乙亥後各樣裁減，皆宜復舊，大臣皆然之，上命御供則別單書入，以俟裁處，餘皆復舊。 寅燁及校理任守幹俱言：“今歲雖似稍稔，國儲皆已蕩盡，不可以復舊而遽自足也。尤宜着念節用。” 上嘉納之。 構又曰：“量田既命待秋舉行，而新除慶尙監司俞集一，素講方田之法，宜用此法施行。” 錫鼎言：“嶺東、關西兩道田政，</p>

	<p>하고, 대신들도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임금(御供)에 대해서는 따로 단자(單子)로 써서 들여 재결하여 처분하는 것을 기다리고, 나머지는 모두 복구하라고 명하였다. 이인엽 및 교리(校理) 임수간(任守幹)이 함께 아뢰기를,</p> <p>“금년의 농사가 비록 조금 풍년이 든 듯하지만 나라의 저축이 모두 이미 탕진되었으니, 복구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자족(自足)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절용(節用)에 마음을 두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김구가 또 아뢰기를,</p> <p>“양전(量田)10173) 을 이미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서 거행토록 명하셨는데, 새로 경상 감사에 제수된 유집일(兪集一)이 평소에 방전(方田)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이 법을 써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자,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p> <p>“영동(嶺東)과 관서(關西) 양도(兩道)의 전정(田政)이 더욱 매우 소활(疎濶)하니, 또한 일체로 다시 양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였다.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은 대부분 재황(災荒)이 든 끝에 갑자기 함께 거행할 수 없음을 말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양전을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은 크게 개탄스러운 일이다. 만약 해가 풍년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할 만한 때가 없을 것이다. 여러 도(道)에서 함께 양전하</p>	<p>尤甚踈闊，亦宜一體改量。”入侍諸臣多言災荒之餘，不可卒然竝舉，上曰：“量田之至今遷就，殊可慨然。若待年豐，無時可爲。諸道雖難並量，先試嶺南可也。”執義李敏英論：“李玄錫，纔以按獄不公，至被臺劾，而遽擬獄官之望。請推吏曹堂、郎。”不允。初，判義禁閔鎮周，以科獄罪人金麟至、李長輝，俱有應避之嫌，上疏乞免，上不許。至是左議政李世白言鎮周可遞狀，錫鼎謂：“一品崇班，纔除卽遞，似未安。宜觀其辭免而處之。”上是之，及再疏，始許遞。</p>
--	---	--

	<p>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먼저 영남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 옳겠다.”</p> <p>하였다. 집의(執義) 이민영(李敏英)이 이현석(李玄錫)을 논핵(論劾)하기를,</p> <p>“얼마전에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일이 공평치 못하다는 일 때문에 대간(臺諫)에게 탄핵을 당하기에 이르렀는데도, 갑자기 옥관(獄官)의 망(望)에 추천되었습니다. 청컨대 이조의 당상관과 낭관을 추고하게 하소서.”</p> <p>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판의금(判義禁) 민진주(閔鎭周)가 과옥(科獄)10174 죄인(罪人) 김인지(金麟至)·이장휘(李長輝) 때문에 응당 피해야 할 혐의(嫌疑)가 있어서 상소하여 면직(免職)되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아뢰기를,</p> <p>“민진주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 옳겠습니다.”</p> <p>하고, 최석정은 아뢰기를,</p> <p>“1품의 승반(崇班)이니, 제수하자 마자 즉시 바꾸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그가 사면(辭免)하는 것을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고, 재차 소를 올림에 이르러 비로소 갈기를 허가하였다.</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p>	<p>임금이 현릉(顯陵)에 거동하여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건원릉(健元陵)·목릉(穆陵)·휘릉(徽陵)·숭릉(崇陵)을 두루 배례(拜禮)한 뒤, 날이 저물어서 환궁(還</p>	<p>○戊辰/上詣顯陵，行酌獻禮，歷拜健元陵、穆陵、徽陵、崇陵，抵暮還宮。</p>

<p>(康熙) 39년) 8월 8일 (무진) 1번째기사</p>	<p>宮)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주정소(晝停所)10175) 에 이르러 교자(轎子)에서 내려 말을 타고 몇 리를 갔으나 말이 놀라 뒤돌아왔다. 승정원에서 해당되는 내승(內乘)10176) 을 주문하기를 청하니, 길들인 것이 오래 되지 않았던 것이 내승의 죄가 아니라고 하여 마침내 따르지 아니하였다.</p>	<p>初上詣晝停所，舍轎乘馬，行至數里，馬驚回旋。政院請推當該內乘，上以調習不久，非內乘之罪，遂不從。</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8월 27 일(정해) 3번째기사</p>	<p>금년의 새 적곡(糴穀)을 옛 적곡에 준(準)하여 바치고 올해(10209) ·병자년(10210) ·정축년(10211) 3년에 대해서는 포함(逋欠)의 다소(多少)와 이전(移轉)의 유무(有無)에 따라서 혹은 절반(折半)으로 혹은 3분의 1을 수봉(收捧)토록 하되, 강도(江都)와 남한산성(南漢山城)에는 당년조(當年條) 밖에 1년조를 더 바치게 하라고 명령하니, 비국(備局)에서 품정(稟定)한 바에 따른 것이다.</p>	<p>○命今年新糴，準捧舊糴，就乙、丙、丁三年，從逋欠多少、移轉有無，或折半或三之一收捧，江都、南漢當年條外，加捧一年條。因備局所稟定也。</p> <p>【태백산사고본】</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10월 1 일(경신) 2번째기사</p>	<p>유학(幼學) 이명신(李命臣) 등이 대사성(大司成) 윤덕준(尹德駿)의 상소에 감골을 움켜쥐고 빼앗은 일을 논핵(論劾)한 것으로 인하여 와서 소를 올리기를,</p> <p>“내린 감골은 군주(君主)의 물건이요, 움켜쥐고 빼앗은 것은 패역한 행동이니, 방자스럽게 패역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군주의 물건을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량(刑郎)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가뉴(枷杻)이 뜰 가운데로 들어 간다는 것은 무슨 거조(舉措)입니까? 성묘(聖廟)가 있는 곳이 얼마나 존엄합니까? 시서(詩書)와 조두(俎豆)로 서로 주선하고 옥백(玉帛)과 종고(鍾鼓)로 종사(從事)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향양(桁楊)10244) 이 교문(橋門)에 닥쳐들고 유설(繯綑)10245) 이 반수(泮水)10246) 에 뒤섞여 관목(關木)의 도구를 잡자기 명륜당(明倫堂)의 뜰로 들어가게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조(聖朝)에서 사문(斯文)에 뜻을 기울이고 선성(先聖)을 높인 것이 이 지경에 이르러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으니, 유식(有識)한 독론(篤論)10247) 으로 마땅히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덕준은 지난해 시관을 맡았을 때 거자(舉子)에게서 모욕을 당하였고, 근일의 반제(泮製)10248) 에서는 유생(儒生)들에게 모욕을 받았으니, 대개 쌓인 원한과 깊은</p>	<p>○幼學李命臣等，因大司成尹德駿疏論攫柑事，相率陳疏曰：</p> <p>賜柑，君物也，攫拏，悖行也。肆爲悖行，以慢君物，固有罪矣，而刑郎之待於門外，枷杻之入於庭中，此何舉措？聖廟所在，何等尊嚴？詩書、俎豆，相與周旋，玉帛、鍾鼓，以之從事，而今乃桁楊偪於橋門，繯綑混於泮水，至令關木之具，便入明倫之庭，聖朝所以加意斯文，致隆先聖者，至此而不覺墜地，有識篤論，當復謂何？德駿於頃年掌試，被辱於舉子，近日泮製，受侮於儒生，蓋有積怨深怒，則其所爲言者，安知非有由而然耶？前後侮辱考官與師席者，固可痛惡，因此懷憾，舉一</p>

	<p>노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 바는 연유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후로 고관(考官)과 사석(師席)을 모욕한 것은 진실로 매우 미워할 만합니다마는, 이로 인하여 원한을 품고서 일세(一世)의 많은 선비들에게 방자스럽게 함부로 짓밟음을 더하여 욕(辱)이 성묘(聖廟)에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여러 유생들이 일찍이 고비(阜比)10249) 의 앞에서 바라던 바였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가뉴(枷杻)이란 말은 너무 과중(過重)한 것이다. 만일 청문(聽聞)을 놀라게 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可)하지마는, 욕이 성묘에 미친다는 것은 결단코 그것이 부당(不當)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p> <p>하였다.</p>	<p>世之多士，而恣加賤踏，以至於辱及聖廟者，此豈諸生所嘗望於阜比之前哉？</p> <p>上答曰：“枷杻之說，殊涉過重。若曰有駭聽聞則可也，而若曰辱及聖廟，則決知其不當也。”</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10월 6 일(을축) 3번째기사</p>	<p>밤에 임금이 갑자기 격체(膈滯)의 증세가 있어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고 침(針)과 뜸·탕제(湯劑)를 아울러 올렸더니, 며칠 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p>	<p>○夜上猝患膈滯之證，藥房入診，竝進針灸湯劑，過數日復常。</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10월 10 일(기사) 1번째기사</p>	<p>내전(內殿)에서 수라(水刺)를 점점 줄여서 신기(神氣)가 날로 쇠약해지니, 임금이 의관(醫官) 김유현(金有鉉)과 최성임(崔聖任) 등에게 입진(入診)할 것을 명하여 대보(大補)의 약을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다.</p>	<p>○己巳/內殿水刺漸減，神氣日就漸爾，上命醫官金有鉉、崔聖任等入診，議進大補之劑。</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p>	<p>호조 참판 이인엽(李寅燁)이 상소하기를,</p>	<p>○丙申/戶曹參判李寅燁上疏言：</p>

<p>(康熙) 39년) 11월 8일(병신) 1번째기사</p>	<p>“기근과 역질[饑疫]로 한꺼번에 죽은 자와 여러 물고(物故)한 무리들이 먹은 적곡(糶穀)과 거두지 못한 신포(身布)를 모두 탕감(蕩減)하는 가운데에 놓되, 다만 어린아이로 홀로 남아 있는 무리들을 지난해 봄에 함께 죽은 자와 아울러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여러 도(道)에서 책을 만들어 모두 올려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도 탕감의 영(令)은 다만 함께 죽은 무리에게만 미치게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미치지 않았으니, 마땅히 한결같이 널리 탕감하는 은전을 베풀어서 반드시 사자(四者)10295)에게 먼저 베푸는 덕의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년10296) 이후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신포(身布)를 비록 다 탕감할 것을 허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시기를 한정하여 영원히 감해 주고 금년조(今年條) 외에 1년치를 더 바치도록 하는 영도 또한 도로 중지시켜서 조금 농사가 여러 번 풍년이 되기를 기다려 점차 수봉(收捧)하게 한다면, 실로 위의 것을 덜어서 아래 것을 도우는 뜻에 합당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소사(疏辭)가 정말로 나의 뜻에 맞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p> <p>하였다.</p>	<p>饑疫合歿及諸般物故之類，所食糶穀、未收身布，俱入蕩減之中，而第其幼稚獨存之類，前春竝令與合歿而查報，諸道成冊，俱已上來，而蕩減之令，只及於合歿，不及於幼稚。宜一施曠蕩之典，以示必先四者之德意也。乙亥後未收身布，雖不可盡許蕩減，若能限年永減，至於今年條外一年加捧之令，亦爲還寢，稍待年事屢登，漸次收捧，實合於損上益下之義。</p> <p>答曰：“疏辭正合子意。今廟堂稟處。”</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11월 16일(갑진) 3번째기사</p>	<p>병조 판서 김구(金構)가 차자(筭子)를 올리기를,</p> <p>“봄과 가을의 도시(都試)10297)는 사체(事體)로 보아 지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겨울철이 이미 깊고 천기(天氣)가 한창 추우니, 우선 가까이 있었던 예(例)를 따라 녹(祿)으로써 시사(試射)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 근래에 시절이 좋지 않고 재물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금군(禁軍)에게 시사(試射)</p>	<p>○兵曹判書金構上筭言：</p> <p>春秋都試，事體至重，而見今冬令已深，天氣正寒，似宜姑從近例，以祿試射舉行焉。近緣時屈財匱，禁軍賞試射之不行，已有年所。自今復行，一</p>

에서 상을 주지 못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행하되 한결같이 구제(舊制)와 같이 하면 거의 군정(軍情)이 기뻐하고 기예(技藝)도 익숙해질 것입니다. 또 신이 듣건대, 무신(武臣)의 당상관(堂上官)을 시사(試射)하는 규정은 15시(矢)를 채우면 모두 녹(祿)을 주는 것을 허락하고, 이를 넘어 20시나 30시를 맞힌다 하더라도 녹을 주는 데는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례를 조금 변경시키되, 그 등차(等差)를 구별하여 15시를 맞힌 사람에게는 전례를 따라 녹을 주고 20시 이상인 사람에게는 차차 우수한 대로 따라서 녹을 준다면, 실로 권과(勸課)와 연시(鍊試)의 방도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또 이인엽(李寅燁)이 상소에서 논한 바 어린 아이로 홀로 남은 자가 먹은 적곡(糴穀)과 해당되는 해에 거두지 못한 신포(身布)는 마땅히 탕감(蕩減)을 허가해야 한다는 한 가지 일은 신도 또한 일찍이 참여하여 들었고 전석(前席)에 등대(登對)하는 날을 기다리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이인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비상(非常)한 재앙을 만나면 마땅히 비상한 거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으니, 또 어찌 묘당(廟堂)의 회계(回啓)를 기다리겠습니까? 마땅히 특지(特旨)로 바로 시행하여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시는 지극한 뜻을 통쾌하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이 특별한 교지에서 나온다면 보고 듣는 자를 감동시켜 인심을 열복(悅服)하게 할 것이니, 예를 따라 복주(覆奏)하게 하는 것과는 진실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도시는 형세로 보아 거행하기가 어렵겠고, 다른 나머지 일은 모두 그대로 시행케 하라.”

如舊制，則庶幾軍情悅而技藝熟矣。且臣聞武臣堂上試射之規，滿十五矢，則皆許付祿，過此以往，雖二十、三十矢，更無加損於付祿云。臣意稍變前例，別其等差，其得中十五矢者，依前付祿，其二十矢以上者，次次從優付祿，則實合於勸課、鍊試之道焉。且李寅燁疏中所論幼稚獨存所食糴穀與各年未收身布，宜許蕩減一款，臣亦嘗與聞，而欲待前席登對之日，今寅燁先發之矣。既曰遇非常之災，宜有非常之舉，則又何待於廟堂之回啓乎？宜以特旨，直爲施行，快示遇災而懼，憂悶元元之至意。事出特教，則感動觀聽，悅服人心者，與循例覆奏，固不侔矣。

上答曰：“都試勢難舉行，而他餘事，竝依施焉。”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11월 22 일(경술) 3번째기사</p>	<p>하였다.</p> <p>내전(內殿)이 무릎의 통증이 매우 심하여 수라(水刺)도 들기를 싫어하더니, 저녁이 된 뒤로 원기(元氣)가 더욱 쇠잔하였다. 약방(藥房)에서 계품(啓稟)하여 의약청(議藥廳)을 설치하기를 청하니, 임금(君)이 그대로 따랐다. 이내 하교(下敕)하기를,</p> <p>“모두 입직(入直)한 자가 며칠이 되었고, 지금 의약청(議藥廳)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도 도제조(都提調)가 끝까지 들어오지 아니하니, 이것이 무슨 분의(分義)이며 이것이 무슨 사체(事體)인가? 일찍이 듣지 못한 바이니, 지금이 한심하다.”</p> <p>하였다. 조금 뒤에 특명(特命)으로 체차(遞差)하게 하고, 즉시 대신할 사람을 내라고 하였다. 이때에 서문중(徐文重)이 의약청을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 궐문(闕門) 밖에 나아왔으나, 궐문이 이미 닫혔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드디어 이 뜻을 품달(稟達)하니, 이에 임금(君)이 즉시 비망기(備忘記)를 도로 거두어 들이고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명하였다.</p>	<p>○內殿膝部痛候苦劇，水刺厭進，夕後元氣益致漸爾。藥房啓稟，設議藥廳，上從之。仍敕曰：“竝直有日，今將設廳，而都提調終不入來，是何分義，是何事體耶？曾所未聞，極可寒心也。”已而，特命遞差，卽出其代。時，文重聞將設議藥廳，來詣闕外，闕門已閉矣。政院遂稟達此意，上卽還收備忘，命留門入來。</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12월 3 일(신유) 1번째기사</p>	<p>좌의정 이세백(李世白)과 우의정 신완(申琬)이 연명(聯名)하여 차자(筭子)를 올리기를,</p> <p>“지난번에 이인엽(李寅燁)이 상소하였을 적에 미처 복계(覆啓)하지 못하였는데, 김구(金構)가 잇따라 차자를 올려 특지(特旨)로 바로 시행(施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더욱 절실한 듯합니다. 성명(聖明)께서 이미 그대로 시행하라는 비답을 내리셨습니다마는, 아직 분명한 교지가 있지 않으니,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성의(聖意)에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신 등이 생각하기로는 적곡(糴穀)은 마땅히 각도(各道)에서 본사</p>	<p>○辛酉/左議政李世白、右議政申琬，聯名上筭曰：</p> <p>頃者李寅燁陳疏，未及覆啓，金構繼以陳筭，以爲宜以特旨，直爲施行，其言尤似切實。聖明既以依施爲批，而尙未有明旨。抑不敢知，聖意其有所思而然耶？臣等以爲糴穀，則當以各道之報本司成冊爲準，查究其所授糴穀之多</p>

(本司)에 보고한 성책(成冊)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여(授與)한 바 적곡의 다소(多少)를 조사하여 궁구할 것이요, 신포(身布)는 금년조(今年條) 외에 무인년 10300) 이상은 오래 된 것이거나 가까운 것을 논하지 말고 모두 탕감(蕩減)을 허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평안 도사(平安都事) 조복경(曹復卿)은 재상(災傷)을 사실과 어긋나게 파악했다는 이유로 강계 부사(江界府使) 이동암(李東菴)을 파출(罷黜)했는데, 변방 수령의 임무는 다른 수령(守令)과는 다르므로 감히 쉽사리 파출시킬 수는 없으니, 이것은 체례(體例)가 그런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조복경은 추고(推考)하고 이동암은 파출시키지 말고 임무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굉(李宏)이 세 번이나 소를 올렸는데도 허락하심을 아끼시니, 대개 성의(聖意)의 소재(所在)를 알겠습니까마는, 그 자신의 낭패스러움은 진실로 족히 말할 수도 없거니와, 직사(職事)를 오랫동안 폐하고 있으니, 어찌 염려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빨리 처분(處分)해야 하겠습니다. 의약청(議藥廳)을 이미 설치한 뒤에는 각 관사(官司)에서 으레 개좌(開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적(考績)10301) 은 중요한 일이라서 으레 하는 개좌와는 다르고, 또 일정한 기한이 있으니, 천연(遷延)할 수가 없습니다. 저으기 들으니, 정원일기(政院日記)에 기록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일찍이 무진년10302) 7월에 대신(大臣)이 청대(請對)하여 진달(陳達)했을 적에 ‘고(故) 상신(相臣) 최명길(崔鳴吉)이 예조 판서(禮曹判書)로써 내국(內局)의 제조(提調)를 겸하고 있었는데, 시약청(侍藥廳)에서 마침 포폄(褒貶)의 계품(啓稟)을 당하여 나와서 참여했고, 예조의 포폄에서는 또 시약청에 있는 이유로써 아직 개좌(開坐)를 못했지마는 전최(殿最)를 천연할 수가 없어서 개좌를 마감(磨勘)케 했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시약(侍藥)을 할 때의 전례(前例)가 또한 이와 같지만, 감히 외람되게 칭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전하께서 재량으로 처리하시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또 지의금(知義禁) 김진귀(金鎭龜)의 인혐(引嫌)은 본래 법 밖

少, 身布則今年條外, 自戊寅以上, 毋論久近, 竝許蕩減, 似爲合宜。 平安都事曹復卿, 以災傷差錯, 罷黜江界府使李東菴矣。 邊守爲任, 異他守令, 不敢容易罷黜, 自是體例然也。 臣等以爲曹復卿推考, 李東菴勿罷仍任, 恐似得宜。 忠淸監司李宏之三疏斬許, 蓋知聖意有在, 而其身狼狽, 固不足言, 職事曠廢, 豈非可慮乎? 恐宜速有處分也。 議藥廳既設之後, 各司例不得開坐。 考績重事, 異於例坐, 且有常限, 不容遷就。 竊聞《政院日記》所錄, 則曾於戊辰七月, 大臣請對陳達, 有曰: “故相臣崔鳴吉, 以禮曹兼內局提調, 方有侍藥廳, 適當褒貶啓稟出參。 今禮曹褒貶, 又以侍藥廳, 尚不開坐, 殿最不可遷就, 使之開坐磨勘” 云云。 以此觀之, 侍藥時前例亦如此, 而不敢猥請, 唯在裁處。 且知義禁金鎭龜之引嫌, 本是法外, 況今獄事已成, 異於初頭按覈, 不當以前已見遞, 每每控免。 宜有申命, 使卽行公。 至於知義禁嚴緝之所執以爲嫌者, 似與他人有異。 爲其時考官者, 不欲按治, 其勢固然。 同義禁金載顯, 自

이였으며, 더욱이 지금 옥사(獄事)가 이미 이루어져 초두(初頭)에 안핵(按覈)한 것과 다른 경우이겠습니까? 이전에 이미 체차된 일로써 번번이 면직(免職)하는 것은 부당하니, 마땅히 거듭 명하여 즉시 행공(行公)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의금(知義禁) 엄집(嚴緝)이 고집하는 바의 혐의(嫌疑)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는 다름이 있는 듯합니다. 그 당시 고관(考官)이 된 자로서 안치(按治)하려고 아니했던 것은 그 형세가 진실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동의금(同義禁) 김재현(金載顯)은 늙고 병든 사람이니, 이 두 신하는 아마도 변통(變通)할 길이 있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후로는 비록 한 가지 혐의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만 참여하지 말게 할 뿐이요, 다른 일은 예(例)대로 같이 거행하게 한다면, 자주 체직(遞職)되어 옥사(獄事)가 지체되는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 또 지난번에 금군(禁軍)의 시사(試射)로 취재(取才)하는 등의 일은 겨우 이틀 동안 시험하였는데, 갑자기 문안(問安)으로 인하여 이내 중지시키고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위를 당하여 허다한 무사(武士)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실로 불쌍히 여겨 생각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도 또한 문안드리는 여가에 명하여 시사(試射)를 마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답하기를,

“고직(考績)하는 일은 으레 개좌하는 것과는 다르니, 이미 행하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평이 세 번 상소하였으나 허락을 아낀 것은 진실로 뜻이 있었던 것이나, 아랫사람에게 친근하는 도리로써 끝내 강요하기 어렵다. 지금오(知金吾)의 두 신하에게는 마땅히 변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또한 진달한 바와 같으니, 아울러 우선 개차(改差)를 허락한다. 김진귀가 법 밖에 인협하여 한결같이 면직(免職)을 청하는 것도 또한 타당하지 못한 것

是老病之人，此兩臣恐宜有變通之道，而自今以後，雖有一事可嫌，使之勿參其事而已，他事俾舉行如例，則似無數遞滯獄之弊。且頃者禁軍試射取才等事，纔試二日，遽因問安，仍輟而未行。當此凍寒，許多武士，聚會待候，誠可矜念。亦命於問安之暇，使之畢試，似得宜也。

上答曰：“考績異於例坐，依已行之例，舉行宜矣。李宏之三疏斬許，意固有在，而體下之道，終難強迫。知金吾兩臣之宜有變通，亦如所陳，竝姑許改。金鎭龜之法外引嫌，一向控免，亦未妥當，推考，使之行公，而他餘事，竝依施焉。”仍下教于政院曰：“荐歲饑饉之餘，民生之困窮，已到十分地頭。爲民父母，每切如傷，而矧今上天示警，災異非常？此時懷保，政是王政之所當先，其可緩乎？其令廟堂，饑疫身死幼稚獨存者還上及諸般身役積年未收，特許蕩減，用示予遇災軫恤之意。”

	<p>이니, 추고(推考)하여 행공(行公)하게 하고, 다른 나머지 일은 모두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p> <p>하고, 이어 승정원에 하교하기를,</p> <p>“해를 거듭하여 기근(饑饉)이 든 나머지 민생(民生)의 곤궁이 이미 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매양 내 몸이 다친 듯한 마음이 간절한데, 하물며 이번에 하늘이 경계를 보이며 재이(災異)가 비상(非常)한 때 이랴? 이때에 백성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것은 왕자(王者)의 정치로서 꼭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이니, 늦출 수가 있겠느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굶주리고 병들어 자신은 죽고 어린아이만 홀로 살아 있는 자에게 몇년 동안 쌓여 거두지 못한 환자[還上] 및 제반 신역(身役)을 특별히 탕감하도록 허가하여, 나의 재앙을 만나 진휼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p> <p>하였다.</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12월 16 일(갑술) 2번째기사</p>	<p>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이때 이조 판서 이여(李畬)가 여러번 특별한 하교를 받고도 여전히 출사(出仕)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장차 감골을 나누어 주고 선비를 시험하려고 하다가 마침 이여가 홍문관 제학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제학으로 패초(牌招)하였다. 이여가 마침내 명을 받들었으나, 즉시 전직(銓職)을 사퇴하였다.</p>	<p>○召對玉堂官。 時， 吏曹判書李畬， 屢承特教， 尙未出仕。 上將頒柑試士， 以畬方帶弘文提學， 特命以提學牌招。 畬遂承命， 而旋辭銓職。</p>
<p>숙종 34권, 26년 (1700 경진 / 청 강희 (康熙) 39년) 12월 22 일(경진) 3번째기</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처음에 대소(臺疏)로 인하여 처음부터 종자를 심지 못한 곳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일전에 경연(經筵)에서 임금이 각도(各道)에서 올라오는 문서(文書)가 더디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여 미리 요량할 수가 없고, 문서도 또한 허실(虛實)을 서로 속이는 폐단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짐작해서 거행하게 하였다. 이에 우의정 신완(申琬)이 아뢰기를,</p>	<p>○引見大臣、備局諸臣。 初因臺疏， 有初不付種處， 查報之命矣。 日前筵中， 上以各道文書上來遲速， 未可預料， 文書亦不無虛實相蒙之弊， 令廟堂斟酌舉行。 於是， 右議政申琬言：“此不但虛實相蒙， 國家經費， 亦不可不</p>

	<p>“이는 다만 허실을 서로 속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비도 또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공세(貢稅)와 대동세(大同稅) 중에서 1역(役)을 헤아려서 감(減)하는 것이 마땅할까 합니다.”</p> <p>하고, 호조 판서 김진귀(金鎭龜)와 병조 판서 김구(金構)도 모두 아뢰기를,</p> <p>“마땅히 대동세를 감면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p> <p>“옳다.”</p> <p>하고, 이어 ‘양서(兩西)10306) 의 대동세가 없는 곳에는 민결(民結)로써 바치는 곡식으로 대동세의 예(例)에 의거하여 제감(除減)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신완이 또 아뢰기를,</p> <p>“도살(屠殺)을 범한 수령(守令)을 이제 막 영임(仍任)10307) 시킬 것을 청하였습니다만, 이 뒤로 이를 인용하여 예(例)로 삼는다면 법금(法禁)이 장차 헤이해질 것입니다. 청컨대 적곡(糴穀)을 바치지 못한 예에 의거하여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계문(啓聞)하게 하고 영문(營門)에서 장형(杖刑)을 집행하도록 하소서.”</p> <p>하자, 승지 유득일(兪得一)이 아뢰기를,</p>	<p>慮， 貢稅、大同中量減一役， 恐得宜。” 戶曹判書金鎭龜、兵曹判書金構皆言：“宜減大同。” 上可之。 仍命兩西無大同處， 以民結所捧之穀， 依大同例除減。 琬又曰：“犯屠守令， 纔請仍任， 而此後引以爲例， 法禁將弛。 請依糴穀未捧例， 使道臣啓聞， 決杖營門。” 承旨兪得一言：“守令遞易， 雖似有弊， 或有犯禁， 輒施決杖， 恐乖禮使之道。 近來士夫間， 廉隅壞損， 風俗淪薄， 亦未必不由於朝家導迪之失當也。” 構言：“罷職本法， 仍存勿改， 觀其事勢， 或難遞易， 則特施決杖， 似合參酌裁處之道。” 上是其言， 命依此定式。 琬又陳七件禁條外， 三司出禁及諸軍門聽軍兵所訴， 推捉凡民， 輕施棍杖之弊， 請嚴飭禁斷。 構又陳禁吏橫侵禁軍之弊， 請定式論罪， 上竝可之。 先是， 百官朔料， 因荐飢， 減米給大豆， 於是構以今歲稍稔， 請復舊， 各軍門、掖庭所屬各司員役等， 亦令一體復舊， 上可之。</p>
--	--	---

	<p>“수령이 갈리고 바뀌면 비록 폐해가 있는 듯하지만, 혹 금법(禁法)을 범하는 일이 있어 즉시 장형(杖刑)을 집행한다면, 예를 갖추어 부리는 도리에 어긋날 듯합니다. 근래에 사대부들 사이에 지켜야 할 절개가 깡그리 무너지고 풍속이 야박해지는 것도 또한 조가(朝家)에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기 때문이 아님이 없습니다.”</p> <p>하였다. 김구가 아뢰기를,</p> <p>“과직(罷職)이 본법(本法)이나, 그대로 두어서 개차(改差)하지 말고 그 사세(事勢)를 보아서 혹 체차하여 바꾸기가 어려우면, 특별히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것이 참작하고 재처(裁處)하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 말을 읊게 여기고 이에 의거하여 정식(定式)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신완이 또 7건의 금조(禁條) 이외에 삼사(三司)가 나가서 금하는 일과 여러 군문(軍門)에서 군병(軍兵)이 호소하는 바를 듣고서 일반 백성들을 추착(推捉)하여 곤장(棍杖)을 가볍게 시행하는 폐단을 진달하고, 엄하게 신칙하여 금단(禁斷)할 것을 청하였다. 김구가 또 의금부의 관리가 금군(禁軍)을 부당하게 침해(侵害)하는 폐단을 진달하고, 정식(定式)으로 논죄(論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옳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백관(百官)들의 삭료(朔料)10308) 를 오랫동안 계속된 기근 때문에 쌀을 감하고 대두(大豆)를 주었는데, 이에 김구가 금년에는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그전대로 회복하고 각 군문(軍門)과 액정(掖庭)에 소속된 무리와 각 관사(官司)의 원역(員役)10309) 등도 또한 한결같이 그전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읊게 여겼다.</p>	
<p>숙종 35권, 27년</p>	<p>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이 말</p>	<p>○癸卯/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p>

<p>(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1월 15 일(계묘) 1번째기사</p>	<p>하기를,</p> <p>“굶주림과 병으로 다 죽고 어린이만 남아 있는 자에게 조곡(糶穀)을 깨끗이 탕척해 주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호남(湖南)과 관서(關西)에서는 성책(成冊) 중에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니, 마땅히 다시 추가로 조사하게 하고 아울러 다른 도(道)에도 일제히 시행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p> <p>“새해의 처음에 언제나 권농(勸農)하라는 하교를 내렸지만 수령(守令)이 게을러 봉행하지 않고 있으니, 제도(諸道)에 신칙하여 그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조사하고, 과중하지 못한 것이 많은 읍에는 마땅히 더 경책(警責)하게 하소서.”</p> <p>하고,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琬)이 말하기를,</p> <p>“옛날 한(漢)나라선제(宣帝)는 공전(公田)을 빌려 주면서 씨앗과 식량을 주라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록 공전은 빌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종자(種子)나 농량(農糧)을 나누어 주어 시기가 되면 같고, 과중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판의금(判義禁) 김구(金構)가 말하기를,</p> <p>“병자년(10317)의 과옥(科獄)10318)을 지금 마땅히 품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성휘(李聖輝)는 이미 대과(大科)의 옥사를 범했으니 거론할 필요가 없고, 박필우(朴弼禹)·박돈의(朴敦義)는 증거가 매우 많고, 이창휘(李昌</p>	<p>政李世白曰：“飢疫沒死，幼稚獨存者，曾有糶穀蕩滌之命，而湖南、關西成冊中，初不竝錄云。宜更令追查，而他道亦當一體施行。”上許之。世白曰：“歲首每下勸農之教，而守令慢不奉行。申飭諸道，考其勤慢，其未付種最多邑，宜加警責。”右議政申琬曰：“昔漢宣帝有假公田給種食之詔。今雖不能假給公田，宜令分給種子、農糧，及時耕種。”上竝從之。判義禁金構曰：“丙子科獄，今當稟處，而其中李聖輝，既犯大科獄，不必舉論，朴弼禹、朴敦義，證據頗多，李昌輝·長輝、俞復基·宅基，證左之多端，雖不如三人，其無現著之跡則一也。當一體酌處乎？抑有差等乎？”上曰：“當區別乎？”世白曰：“一體處分，恐無不可。”上曰：“前日收議大臣，有以大科獄尚未決，先決小科獄爲未安，而事端不同，滯獄可慮。予意則先決，似無妨也。”世白曰：“原任大臣之言雖如此，按獄之法，先輕後重，未爲失體。”琬曰：“既無顯著之罪，亦無可覈之端，與其一向滯囚，無寧疏釋之爲愈。”知義禁金鎮龜曰：“此獄只出於</p>
--	--	---

	<p>輝)·이장휘(李長輝)·유복기(兪復基)·유택기(兪宅基)는 참고될 만한 증거의 단서가 많은 것이 세 사람만 못하지만, 그 현저한 자취가 없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이들을 일체 참작하여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등있게 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마땅히 구별해야 하겠는가?”</p> <p>하였다. 이세백이 말하기를,</p> <p>“일체 처분해도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전일에 대신에게 수의(收議)한즉, 대과 옥사를 아직 처결하지 못하고 먼저 소과(小科) 옥사를 처결하려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였는데, 단서가 같지 않고 체옥(滯獄)이 염려스러우니, 내 생각에는 소과 옥사를 먼저 처결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p> <p>하였다. 이세백이 말하기를,</p> <p>“원임 대신의 말이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옥사를 처리하는 방법상 가벼운 것을 먼저 하고 무거운 것을 뒤에 해도 체모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p>	<p>時俊之言，而時俊既已變辭，則更無可問之端。”上曰：“當初臺臣，以時俊之招論啓，而其言亦有所執，故果即允從，而年久之事，難於明覈，予已料之。獄情既有明白可據之端，則依法決折，有司存焉，何待稟處乎？既無指的可覈之事，則不可一向滯囚，李聖輝外小科諸囚，特爲分揀。”構曰：“李長輝謄紙一款，當更推，而既非無根之言，則雖不可目以飛書，至於漏泄獄情，自有其罪，而是非不一，論議多端，不可不更推。”校理宋徵殷曰：“此事大關後弊，不可不明覈處之。”上曰：“柳重茂之啓辭，亦以此張皇，而以予觀之，未知其爲飛書。一種論議以爲，以試官用情之說，欲緩舉子弄奸之獄，舉子既已弄奸，試官又復用情，則獄事自將漸大。其曰以試官用情，而欲緩舉子之罪者，予實未曉也。”鎮龜曰：“換封之罪，豈可以試官用情，而有所輕重乎？”上曰：“有司與臺閣自別。臺官則或屢次爭執，而有司則一陳意見之後，即當奉行，而李東郁、李震休陳疏承批，而終不奉行，殊極無覈。”徵殷曰：“罪囚於推案外，別爲文字，轉</p>
--	---	---

	<p>하니, 신완이 말하기를,</p> <p>“이미 현저한 죄도 없고 핵실할 단서도 없으니, 한결같이 오래도록 가두어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풀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p> <p>하였다. 지의금(知義禁)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p> <p>“이 옥사는 다만 민시준(閔時俊)의 말에서 나왔는데, 민시준이 이미 말을 고쳤으나, 다시 물을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당초에 대신(臺臣)이 민시준의 공초로서 논계(論啓)하였는데, 그 말에 또한 고집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곧 윤희하여 따랐으나, 해묵은 일이라 명확하게 핵실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내가 이미 헤아리고 있다. 옥정(獄情)에 이미 명백하게 증거할 단서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결단하는 것은 유사(有司)가 있는데, 어찌 품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기다리겠는가? 이미 지적(指的)하여 핵실할 만한 일이 없다면 한결같이 오래도록 옥에 가두어 둘 수 없으니, 이성휘(李聖輝) 외에 소과(小科)의 모든 죄수들은 특별히 석방(釋放)하라.”</p> <p>하였다. 김구(金構)가 말하기를,</p> <p>“이장휘(李長輝)의 등지(騰紙) 한 건(件)은 마땅히 다시 추고해야 하는데, 이미 무근(無根)한 말이 아니라면 비서(飛書)10319) 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옥사(獄事)의 사정을 누설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그 죄가 있으며, 시비</p>	<p>成獄事，豈非可駭，而實狀猶未覈出，決不可置之。” 構曰：“長輝則更推後，可以處分。” 上曰：“長輝既已自服，以此更推，未知其可。一體放送。” 琬曰：“所謂騰紙，雖不可目之以飛書，而漏洩獄情之罪，不可全釋。” 構又言：“終不可不罪。” 上始命參酌定罪。後諫院以諸囚不可輕放，啓請還收放釋之命，上不允。 構曰：“李磻既入於金戩私書，且以科場間用情，人言藉藉，決不當白脫。” 上曰：“曾聞磻手熟於科場用奸，且有他所坐，不可全釋。” 構曰：“大科獄之正犯，情狀已露，更無可論，其餘枝葉之被囚者，淹滯三年。其中辛亨馥、文次星，既已承款，李秀僑則順億既變前辭，更無憑問之端，何可一向滯囚乎？” 世白曰：“枝葉則隨其輕重，先爲處決似宜。” 上命後日登對時稟處。 上以鎭龜言，命端川採銀役軍，使隣邑輪定，而監官、匠徒等，令本官顧護。又以御營大將李基夏及金構言，命御營、禁衛營將官減半之額，自今年復舊。</p>
--	--	---

가 한결같지 않고 논의의 단서가 많으니, 다시 추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교리(校理) 송징은(宋徵殷)이 말하기를,

“이 일은 뒷날의 폐단에 크게 관계되니, 명확하게 핵실(覈實)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중무(柳重茂)의 계사(啓辭)가 또한 이렇게 상황하니,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비서(飛書)인지도 모르겠다. 일종의 논의는 시관(試官)이 용정(用情)했다는 말로 거자(擧子)10320)가 농간하는 옥사(獄事)를 늦추려 한다고 하는데, 거자가 이미 농간을 하고 시관이 또 다시 용정(用情)을 했다면 옥사(獄事)가 장차 점점 커질 것이다. 시관이 용정한 것으로 거자의 죄를 늦추려고 한다는 말은 나는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환봉(換封)한 죄가 어찌 시관이 용정했다고 해서 경하고 중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사(有司)와 대각(臺閣)은 서로 다르다. 대관은 혹 누차 다투어 고집하는 데에 반해 유사는 한 번 의견을 진달한 뒤에 곧 마땅히 봉행해야 하는데, 이등

옥(李東郁)·이진휴(李震休)는 상소하여 비답을 받았으나 끝내 받들어 행하지 않았으니, 매우 무엄하다.”

하였다. 송징은(宋徵殷)은 말하기를,

“죄수를 추안(推案) 외에 별도로 문자(文字)를 만들어 옥사(獄事)를 더욱 성립(成立)시켰으니, 어찌 해괴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의 상황을 핵실험 내지 않고서는 결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고, 김구(金構)는 말하기를,

“이장휘(李長輝)를 다시 추고한 뒤에 처분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장휘는 이미 자복(自服)했는데, 이것으로 다시 추고한다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일체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신완이 말하기를,

“이른바 등지(騰紙)라는 것을 비서(飛書)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옥사의 사정을 누설한 죄는 완전히 석방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김구(金構)가 또 말하기를,

“끝내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비로소 참작하여 죄를 정하라고 명하였다. 뒤에 간원(諫院)에서 모든 죄수는 가볍게 석방할 수 없다고 하여 석방하라는 명령을 도로 거둘 것을 계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 김구(金構)가 말하기를,

“이현(李璲)이 이미 김전(金戩)의 사서(私書)에 들어 있고, 또한 과장(科場) 사이에서 용정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니, 결코 무죄로써 밝혀진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들은즉, 이현은 과장(科場)에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수단이 익숙하고, 또 다른 일에 연좌된 바가 있으니, 완전히 석방할 수 없다.”

하였다. 김구가 말하기를,

“대과 옥사(大科獄事)의 정범(正犯)은 그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다시 의논할 것이 없고, 그 나머지 지엽(枝葉)10321) 으로 수감된 자는 3년을 지체하였는데, 그 가운데 신흥복(辛亨馥)·문차성(文次星)은 이미 자복(自服)했고, 이수준(李秀儁)은 정순억(鄭順億)이 이미 전에 말했던 것을 변경하여 다시 빙고(憑考)하여 물을 단서가 없는데, 어찌 한결같이 오랫동안 옥에 가두어 두겠습니까?”

하였고, 이세백이 말하기를,

	<p>“지엽에 있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먼저 처벌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후일 등대(登對)할 때 품의(稟議)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은 김진귀(金鎭龜)의 말에 의하여 단천(端川)에서 채은(採銀)하는 역군(役軍)은 인읍(隣邑)으로 하여금 윤정(輪定)할 것을 명하고, 감관(監官)과 장도(匠徒) 등은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돌보아 주게 하였다. 또 어영 대장(御營大將) 이기하(李基夏) 및 김구(金構)의 말에 의하여 어영(御營)과 금위영(禁衛營)에 장관(將官)의 반으로 감한 액수를 금년부터 복구(復舊)하라고 명하였다.</p>	
<p>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2월 5일 (계해) 2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모든 재상(宰相)을 인견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p> <p>“서북(西北)10328) 의 백성을 쇄환(刷還)10329) 하는 것은 해마다 응당 행하던 일이나 근년에 흉년과 기근(飢饉)으로 오랫동안 폐하였는데, 금년에는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각도(各道)의 조곡(糶穀)을 금년에는 정식(定式)에 의해서 나누어 줄 때에 절반을 창고에 남겨 놓는 뜻으로 신칙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모두 따랐다. 이세백이 말하기를,</p> <p>“부산 첨사(釜山僉使) 이시재(李時宰)가 역관(譯官)을 잡아들인 것은 가히 체면을 유지했다고 할 만합니다. 왜관(倭館)을 수리할 때에 훈도(訓導)나 별장(別將)들이 왜인(倭人)과 부동하여 여러 가지로 기만하였고, 또 구례(舊例)에</p>	<p>○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李世白曰：“西北民刷還， 年年應行之事， 而近以凶歉久廢， 今年稍稔， 似宜舉行。 各道糶穀， 今年則依定式， 分俵時， 以一半留庫之意， 申飭似好。” 上竝從之。 世白言：“釜山僉使李時宰之拿入譯官， 可謂得體。 倭館修理時， 訓、別輩符同倭人， 欺瞞多端， 且舊例， 僉使乘轎出入於倭館， 而亦爲防塞。 拿入致責， 事體當然， 似無可罪。 且倭館修理， 工役不多， 而任譯輩符同倭人， 初以八千兩折價， 中減爲五千兩， 後又以八千兩， 提起於營門， 到今定價， 僅爲一千六百餘兩， 其欺瞞</p>

첨사(僉使)가 교자(轎子)를 타고 왜관에 출입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가로막았으니, 잡아들여 책임을 물은 것은 사리(事理)에 당연한 것으로 죄줄 만한 것이 없을 듯합니다. 또한 왜관을 수리하는 데에 있어서 토목 공사도 많지 않은데, 임택(任澤)의 무리가 왜인과 부동하여 처음에는 8천 냥으로 값을 정했다가 중간에 감하여 5천 냥으로 했는데, 뒤에 또 8천 냥으로 영문(營門)에 제기(提起)하였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값을 정한 것이 겨우 1천 6백 냥이 되었으니, 그 기만하고 농락한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의 말이,

“역관배의 일이 매우 해통(駭痛)하다. 나의 뜻은 반드시 효시(梟示)하여 위엄을 보이고 싶다.”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구(金構)가,

“본도로 하여금 거두어 핵실하여 실정을 얻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

“을해년(10330)과 병자년(10331) 뒤에 대동전세(大同田稅)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대개 수령(守令)의 별이 3등을 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봉(收捧)하려 하지 않으니, 지금 이후로는 비록 1석이라도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해유(解由)10332)를 허락하지 마소서.”

幻弄，誠可惡矣。” 上曰：“譯輩事，甚爲駭痛。予意則必欲梟示示威。” 兵曹判書金構請令本道，囚覈得實，上從之。 吏曹參判李寅燁曰：“乙、丙之後，大同田稅，未收甚多。蓋守令之罰，止於越三等，故全不惕念收捧。今後雖一石未收，宜勿許解由。” 上從之。 寅燁曰：“江都軍餉，已踰十萬石，而南漢米穀，只是五千餘石，其餘皆雜穀。今年江都米之分糶畿邑者，及其收糶時，南漢近邑則輸納於南漢，似得宜。” 世白亦以爲言，上亦許之。 寅燁又言：“南漢地狹，募民過多，宜有定式，無過數三百戶。” 戶曹判書金鎮龜曰：“臣方兼帶守禦使，今將下去，當看審商量後，稟達變通。” 上曰：“三百戶太小，看審後酌定可也。” 寅燁曰：“龜城卽麗時朴犀戰勝處也。臣曾詳覽其地勢，正合築城。府使權詢，頗以幹能名，使之毋煩民力，因舊完築似好。上從之。 寅燁又言：“王世子內殿侍湯之時，未暇開筵，宜頻使召對。” 上可之。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

“강도(江都)의 군량이 이미 10만 석이 넘었고, 남한(南漢)에 미곡(米穀)은 다만 5천여 석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잡곡입니다. 금년에 강도의 쌀을 기읍(畿邑)에 나누어 주었다가 거두어 들일 때 남한(南漢)에서 가까운 읍이면 남한으로 수납(輸納)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이세백(李世白)도 그렇게 말하니, 임금이 또한 허락하였다. 이인엽이 또 말하기를,

“남한은 땅이 좁은데다 모집해 들인 백성이 지나치게 많으니, 마땅히 격식(格式)을 정하여 그 수가 3백 호(戶)를 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신이 수어사(守禦使)를 겸직하였으니, 지금 내려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상량해 본 뒤에 품달하여 변통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3백 호는 너무 적으니, 자세히 살핀 뒤에 짐작해서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이인엽이 말하기를,

	<p>“귀성(龜城)은 곧 고려(高麗) 때에 박서(朴犀)가 전승(戰勝)한 곳입니다. 신이 일찍이 그 지세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축성하는 데에 아주 적합합니다. 부사(府使) 권순(權詢)은 재간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자못 이름이 났으니, 그로 하여금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예전대로 완전하게 쌓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王)이 그대로 따랐다. 이인엽(李仁燾)이 또 말하기를,</p> <p>“왕세자가 내전(內殿)에서 시탕(侍湯)할 때에는 강연(講筵)을 열 여가가 없으니, 마땅히 자주 소대(召對)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王)이 옳다고 하였다.</p>	
<p>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3월 27일(갑인)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p> <p>“계성사(啓聖祠)의 제기(祭器)와 품식(品式)을 명(明)나라 때에 도서편(圖書編)을 가져다가 살펴본즉, 계성공(啓聖公)은 대성위(大聖位)와 한결같은데, 여기에 감(減)한 것은 우(牛)가 하나이며, 4성위(四聖位)의 기품(器品)은 대성위(大聖位)에 비교해 보면 우(牛) 하나와 변(邊) 둘을 감했으며, 계성공(啓聖公)의 배위는 또 사성(四聖)보다 강쇄(降殺)했기 때문에 감한 것은 양(羊) 하나와 보궈(籩簋) 각 하나이며, 변두(邊豆)가 각 네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대성위(大聖位)와 배위(配位)가 일체(一體)이니, 계성공(啓聖公)도 배위와 마땅히 일체일 듯한데, 기품(器品)에 있어서는 강쇄(降殺)의 절차가 없을 수 없습니다. 도서편(圖書編)에 실린 바는 계성공(啓聖公)의 위(位)에는 백(帛)하나, 양(羊)하나, 시(豕)하나, 작(爵)이 셋이고, 배위(配位)에는 각각 백(帛)하나, 작</p>	<p>○禮曹言：“啓聖祠祭器、品式，取考明朝圖書編，則啓聖公與大聖位一體，而所減者牛一，四聖位器品，比大聖位，減牛一邊二，而啓聖公配位，則又降殺於四聖，故所減者羊一，籩簋各一，邊豆各四也。我朝則大聖位與配位一體，啓聖公與配位，似當一體，而器品則不可無降殺之節。圖書編所載啓聖公位，則帛一、羊一、豕一、爵三，配位則各帛一、爵三、豬肉二矣。從啓聖公位器品，則所減者牛一，太無減殺之意，從配位器品，則與圖書編所</p>

	<p>(爵)이 셋이고, 저육(猪肉)이 들입니다. 계성공위(啓聖公位)의 기품(器品)을 따른다면 감(減)한 바가 우(牛) 하나이니, 강쇄(降殺)한 뜻이 전혀 없고, 배위(配位)의 기품(器品)을 따른다면 도서편(圖書編)에 실린바 십철(十哲)의 종향(從享)한 의식(儀式)과 서로 같은데 양(羊) 하나만이 없습니다. 양과 시(豕)는 계성공을 따라 같이 쓰고, 기품(器品)은 배위와 십철(十哲)의 종향(從享)한 의식에 따를 것이며, 향관(享官)은 도서편에 실려있는 것에 따라 국자감(國子監) 삼품관(三品官)으로 정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대신의 뜻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p>	<p>載十哲從享儀相同，而無一羊矣。羊、豕從啓聖公同用，而器品則從配位與十哲從享儀，而享官則從圖書編所載，以國子三品官定送似宜。大臣之意亦如此。”上從之。</p>
<p>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3월 29 일(병진) 1번째기사</p>	<p>처음에 동지사(冬至使)가 가는 길에 황당선(荒唐船)을 금단(禁斷)할 일로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니, 예부에서 회자(回咨)하기를,</p> <p>“이 뒤에 만일 어채(漁採)하거나 아울러 무역(貿易)하는 사람들이 조선국에 이르러 지방을 침요(侵擾)하는 경우가 있으면 선표(船票)와 사람의 숫자와 성명(姓名)·적관(籍貫)을 조사하되, 근각(根脚)10383)의 내용을 명세하게 써서 지방관(地方官)에게 이첩(移牒)하여 중중(從重)치죄(治罪)하고 아울러 각 해무(該撫)에게 행문(行文)하여 연해(沿海)의 지방 관원을 엄하게 단속하여 해상(海上)에서 무역(貿易)하고, 어채(漁採)하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 외국(外國)에 가서 금지하는 화물(貨物)을 판매하며 방자하게 침요(侵擾)하는 자는 엄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말하기를,</p> <p>“이미 각무(各撫)에 행문(行文)하여 금지를 엄하게 시행한다고 말했은즉, 마땅</p>	<p>○丙辰/初冬至使之行，以荒唐船禁斷事，移咨禮部，禮部回咨曰：</p> <p>嗣後如有漁採並貿易人等，至朝鮮國，侵擾地方者，查驗船票、人數、姓名、籍貫，開明根脚，轉行地方官，從重治罪，並行文各該撫，嚴飭沿海地方官員，以海上貿易漁採爲名，往外國販賣，違禁貨物，肆行侵擾者，嚴行禁止可也。</p> <p>備局言：“既曰行文各撫，嚴行禁止，則當觀前頭，可知其出來多少，而若或如前出來，則瞭望歐逐，嚴加申飭，其</p>

	<p>히 전두(前頭)를 보아 그 나오는 것이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니, 만일 전과 같이 나오면 높은 곳에서 살펴서 몰아 쫓아내도록 엄하게 신칙(申飭)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육지 가까이 배회하여 붙잡을 만한 것은 곧 구류하여 그 선표(船票)와 사람의 숫자·성명·적관(籍貫)을 조사해 선표가 없는 자는 자세히 추문(推問)하여 일일히 개록(開錄)하며 즉시 치계(馳啓)하여 처치할 방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사사로이 서로 접촉하여 화물(貨物)을 바꾸는 경우는 각별히 금단하여 마땅히 잠상(潛商)은 드러나는 대로 처벌한다는 율로 논한다는 것을 각도로 하여금 연변(沿邊)의 각읍에 거듭 알려 거행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p>	<p>中近陸遲回，可以執捉者，輒卽拘留，考驗其船票、人數、姓名、籍貫，無船票者，詳細推問，一一開錄，登時馳啓，以爲處置之地。我民之私自相款，交易物貨者，各別禁斷，當論以潛商現發之律，令各道申諭于沿邊各邑，使之舉行。”上可之。</p>
<p>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5월 12 일(무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사직단에서 재숙(齋宿)10401) 하고, 백관(百官)에게 경계할 점을 지시하기를, ‘술을 마시지 말고, 담배[烟茶]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는데, 서관(庶官) 두어 명이 이것을 위반한 자가 있어서 임금이 액정인(掖庭人)10402) 에게 명하여 살펴 보게 하고, 드디어 그 직위를 도태(淘汰)시켰다.</p>	<p>○戊戌/上齋宿社稷壇，下戒百官勿飲酒及烟茶，庶官數人有犯者，上命掖庭人視之，遂汰其職。</p>
<p>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5월 21 일(정미) 4번째기사</p>	<p>부교리 이만성(李晩成)과 부수찬이관명(李觀命)이 차자(箚子)를 올려서 입지(立志)와 강학(講學)과 납간(納諫)의 도(道)를 말하고, 다음으로 사치(奢侈)에서 오는 피해가 천재(天災)보다 심하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거기에 이르기를,</p> <p>“상방(尙房)10427) 의 물건들을 해마다 연시(燕市)10428) 에서 사들이니, 이미 선왕(先王)들이 멀리서 사온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뜻에 어긋납니다. 역관(譯官)이 사사로이 사온 비단을 함부로 후정(後庭)으로 들이니, 이는 옷자락을 땅에 끌리게 하지 않는 미덕[衣不曳地之美]에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궁금(宮禁)의 엄숙하지 못함 또한 한심한 일입니다. 여러 궁가(宮家)의 제택(第宅)이 호화스러움도 오늘날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시어(侍御)하는 내간(內間)의 궁녀(宮女)와 아직 강보(襁褓)에 싸인 왕자(王子)까지 각기 문호(門戶)</p>	<p>○副校理李晩成、副修撰李觀命上箚，言立志、講學、納諫之道，又言奢侈之害，甚於天災曰：</p> <p>尙方之具，歲貿燕市，既非先王不貴遠物之義，而象胥私販之錦，冒進後庭，此不但愧於衣不曳地之美，宮禁不嚴，亦可寒心。諸宮第宅之侈大，莫今日若也。侍御內間之嬪嬙，未離襁褓之王子，各立門戶，對峙街衢。諸臣多以爲言，而殿下不一開納，其有欠於從</p>

를 세워서 저자거리에 맞대고 우뚝 솟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신하들이 말을 하였지마는 전하께서는 한번도 흉금을 열어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종간(從諫)의 도에 부족함이 있고 성덕(聖德)에 누를 끼침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군포(軍布)의 폐단도 실로 고향(膏肓)10429)의 병이니, 묘당(廟堂)에 순문하시어 호포(戶布)와 균역(均役) 등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검토하여 좋은 점을 따라 변통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령(守令)을 가장 신중히 가려서 임명하되 간간히 수의(繡衣)10430)를 보내어 자세히 염문(廉問)하여 보고, 탐리(貪吏)로서 이러한 조사에서 빠진 자가 있으면 다시 안험(按驗)하도록 하며, 만일 그 조사가 부실(不實)하였을 때에는 안핵(按覈)한 관리를 기망(欺罔)한 죄로 다스리고 탐리(貪吏)에게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벌을 뒤따라 더하게 된다면, 조사한 관리는 징계되는 바가 있고 탐리는 두려워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충익(忠翊)·충장(忠壯) 제위(諸衛)는 지금 막 조사하였는데, 대개 진위(眞僞)를 종합하여 밝히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요즘 가뭄을 걱정하는 때를 당하여 우선 모든 것을 정지(停止)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산군(山郡)의 대동법(大同法)에 관한 전포(錢布)와 미곡(米穀)은 모두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르시고 잔폐한 백성의 입속에 남아 있는 것까지는 취하지 말게 하소서. 증미(拯米)10431) 한 가지 일만 하여도 연해 제읍(沿海諸邑)의 막대한 폐단이 되고 있으니, 만약 이것을 변혁하신다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장납(獎納)한다고 비답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궁가의 저택 문제는 일찍이 내 뜻을 하유(下諭)하였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겠다.”

諫之道，而貽累於聖德，豈淺渺也哉？軍布之弊，實爲膏肓之病。宜詢廟堂，就戶布、均役等說，參究紬繹，從長變通也。守令最宜慎簡，而間遣繡衣，詳加廉問，貪吏之因查得脫者，更使按驗，如其查不以實，則按覈之官，治之以欺罔，追加貪吏以當施之律，則查官有所懲，而貪吏有所畏矣。忠翊、忠壯諸衛，今方查覈，蓋出於綜核眞僞之意，而當此憫旱之日，姑宜一切停止。山郡大同錢布及米，宜一從民願，而毋取贏餘於殘氓口吻之中。拯米一事，爲沿海諸邑莫大之弊，苟能變革，則是大惠也。

批旨獎納。且曰：“第宅事，曾諭予意。其餘事，令廟堂確議。”

	하였다.	
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8월 14 일(기사) 7번째기사	예조에서 경신년(10476) 이후 국휼(國恤)의 예에 의하여 주다례(晝茶禮)10477) 를 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예조에서 경신년(10476) 이후 국휼(國恤)의 예에 의하여 주다례(晝茶禮)10477) 를 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8월 20 일(을해) 2번째기사	임금이 빈전(殯殿)의 조석전(朝夕奠)·상식(上食)·주다례(晝茶禮)의 기명(器皿) 숫자와 진향(進香)·제물(祭物)의 반(半)을 줄이라 명하였는데, 대개 대행 왕비(大行王妃)가 폐단을 걱정하여 유지(遺志)를 따른 것이다. 빈전 도감(殯殿都監)에서 계품(啓稟)하기를, “3년 안에 본전(本殿)·본릉(本陵)에서도 또한 그 기명(器皿)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上命減殯殿朝夕奠、上食、晝茶禮器數及進香、祭物之半。蓋用大行王妃恤弊之遺意也。殯殿都監啓稟：“三年內本殿本陵，亦宜減其器數。”從之。
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9월 26 일(경술) 2번째기사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서 궁녀(宮女) 축생(丑生) 등을 친히 국문(鞫問)하였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축생 등은 내전(內殿)을 질시하고 원망하여 원수처럼 여겼다. 남몰래 신당(神堂)을 설치하여 사람을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국모(國母)를 해치고 도모한 자취가 분명하게 드러나 숨기기 어렵다. 그러나 내전(內殿)에서 이를 물으면 혹은 인경 왕후(仁敬王后)를 위한다고 일컫기도 하고, 혹은 세자(世子)의 두창(痘瘡)을 위한다고 일컫기도 하면서 말을 꾸며 속였으니, 지극히 통절(痛切)한 일이다.” 하고, 임금이 곧바로 언문(諺文)으로 해석하여 물으니, 축생이 대답하기를, “매양 들으니, 혹은 세자를 위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인경 왕후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한다고 하였을 뿐이며, 다른 뜻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경	○上御仁政門，親鞫宮女丑生等。上敎曰：“丑生等嫉怨內殿，有同仇讎。潛設神堂，屏人祈禱，謀害國母之迹，昭著難掩，而自內問之，則或稱爲仁敬王后，或稱爲世子痘患，飾詐欺罔，極爲切痛。”上直以諺語，解釋問之，丑生對曰：“每聞或爲世子，或爲仁敬王后祈禱而已，不知有他意矣。庚午年出外，戊寅年自禧嬪房傳言曰：‘自內使之入來。’至今仍留。年老昏耗，朝夕喫飯而已。”上親問雪香，問目與丑生同，而又曰：“汝以本家婢子，與淑英爲心腹，內殿動止，無不密探。常常窺見於內殿寢室窗外，至於如廁之

오년10555) 에 궁 밖으로 나갔는데, 무인년10556) 에 희빈방(禧嬪房)으로부터 전언(傳言)하기를, ‘내전(內殿)에서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정신이 혼미하여 아침저녁으로 밥이나 축낼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친히 설향(雪香)을 심문하였는데, 문목(問目)은 축생과 같았다. 또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본가(本家)의 비자(婢子)로서 숙영(淑英)과 더불어 심복이 되어, 내전의 동정(動靜)을 남몰래 엿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언제나 항상 내전의 침전(寢殿) 창(窓) 밖에서 엿보았고, 심지어 칩간(廁間)에 갈 적에도 또한 반드시 엿보았다. 경춘전(景春殿)10557) 이 승하(昇遐)할 때 남쪽 창에 구멍을 뚫어 병의 증세를 몰래 엿보았다가 목숨이 떨어지자 기쁜 기색이 넘쳐 흘렀다. 구멍을 뚫은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고, 나도 또한 직접 본 바이다. 반함(飯含)10558) 할 때 내가 아주 가까운 곳에 나아갔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기뻐 날뛰는 모양이 너무나도 망측스러웠다.”

하고, 또 신당을 몰래 설치할 때 반드시 주장한 무녀(巫女)가 있을 터이니, 이름을 대고 고(告)하라는 뜻도 또한 문목에 더 넣으라고 명하였다. 설향이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고, 또 말하기를,

“세자께서 두창(痘瘡)을 앓으셨을 때 매양 신증(神甌)【떡으로 신(神)에게 기양(祈禳)하는 것이다.】을 설치하였는데, 갑자기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두고 때때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또 세자의 두창 뒤 안질(眼疾) 때문에 양쪽 가장자리에 흑상(黑床)을 설치하고 손을 모으고 기축(祈祝)하였는데, 병이

時, 亦必伺之。景春殿昇遐時, 穴南窓潛見以候, 氣絕, 喜氣洋洋。穴痕尙存, 予所親見。飯含時, 予御至近之地, 而往來雀躍, 極爲叵測矣。”又命神堂潛設時, 必有主張巫女, 指名告之之意, 亦爲添入問目。雪香對以無是事, 且曰: “世子痘患時, 每設神甌, 【以餅禳神。】猝難撤止, 時時爲之。

又以世子痘後眼患, 設黑床於兩邊, 攢手祈祝, 及少愈, 仍停之。巫女問于淑英, 可知之矣。”又命以問於丑生者, 問時英, 對以: “本以大殿宮人, 移屬於世子宮內, 神堂排設與否, 固所不知。巫女所設神堂, 蓋仁敬王后, 以痘患昇遐, 而世子順經痘患之故, 爲其陰鷲, 設此以禱也。床卓等物, 禧嬪侍女一烈主辦。淑英欲持世子宮所在黑錦以去, 俺怒曰: ‘何必爲此無益之事乎?’ 禧嬪聞之而言于俺曰: ‘巫女常稱世子有厄, 故有此祈禳矣。’俺初不往神堂, 禧嬪勸之, 故是後一往, 設酒果禮拜而歸矣。其後一烈見俺, 自言排設神堂之事, 而及巫女死, 移排於龍洞近處禧嬪本宮矣。”又命以問于雪香者, 問淑英: “婢子鐵生, 往來於巫

조금 낫자 곧 정지하였습니다. 무녀는 숙영(淑英)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축생에게 물었던 것을 가지고 시영(侍英)에게 물어보라고 명하니, 대답하기를,

“본래 대전(大殿)의 궁인(宮人)으로서 세자궁(世子宮)으로 이속(移屬)되었으므로, 신당의 배설(排設) 여부를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 무녀가 설치한 신당은, 대개 인경 왕후께서 두창으로 승하하셨는데 세자께서는 두창을 잘 넘겼기 때문에, 그 음즐(陰鷲)10559) 을 위하여 이것을 설치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상탁(床卓) 따위의 물건들은 희빈의 시녀 일렬(一烈)이 주로 마련하였습니다. 숙영이 세자궁이 있던 검은 비단을 가지고 가려고 하기에 제가 노하여 ‘어찌하여 반드시 이러한 무익(無益)한 일을 하는가?’라고 하였는데, 희빈이 이를 듣고 저에게 ‘무녀(巫女)가 항상 「세자(世子)께 액(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양(祈禳)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당에 가지 아니하였는데, 희빈이 권하였기 때문에 이 뒤에 한번 가서 주과(酒果)를 진설(陳設)하고 예배(禮拜)를 드린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 일렬이 저를 보고서 신당(神堂)을 배설(排設)하는 일을 스스로 말하였는데, 무녀가 죽자, 용동(龍洞) 근처 희빈의 본궁(本宮)으로 옮겨서 배설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임금이 설향에게 물었던 것을 숙영에게 물으라고 명하니,

“비자(婢子) 철생(鐵生)이 무녀의 집에 왕래하였는데, 무녀가 죽자 유무(游巫) 【무당(巫堂) 가운데 일정한 거처가 없는 자를 유무(游巫)라고 한다.】에게 물어 보고, 신당을 희빈의 본궁으로 옮겨 설치하였습니다. 유무의 이름은 철생

女家, 而巫女死, 問于游巫, 【巫無定居者曰游巫。】移置神堂于禧嬪本宮。游巫之名, 鐵生可知之。神堂蓋爲仁敬王后設, 而以錦段裹以紙面, 書以痘神之號, 插于壁。至於祈祝之辭, 不得與聞, 蓋世子順經痘疫, 禧嬪信巫言, 或設赤豆餅, 或設唐女衣, 躬禱之, 而不聞所禱之爲何事。穴窓窺伺等事, 本無是也。蓋自甲戌, 雪香往來于河梁橋【在都城中。】巫女家祈禱矣。”上教曰: “鐵生本以禧嬪房婢子, 當雪香、淑英往來巫家之時, 專管其出納與受之物, 其以此問之。”鐵生對以爲: “禧嬪房市上水賜, 【水賜者, 宮女所使投之稱。】凡神祀之物, 果傳送之, 而所謂巫女之名, 實所不知, 而稱以太子【俗稱紫姑之神爲太子。】房, 前年果死。是後所謂游巫, 自江上入處于太子房家, 今年二月, 自稱神降于身, 四月忽逃矣。”上曰: “神堂之設, 在於二月, 世子眼患, 已愈於昨年, 而反謂爲世子設。時英謂初不往神堂而最後出往。雪香謂巫女之名, 淑英知之, 淑英謂鐵生知之, 其曰前巫死後巫逃者, 益著其奸狀也。”判義禁李畬曰:

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당은 대개 인경 왕후를 위하여 설치하였는데, 금단(錦段)으로 종이의 표면을 싸고 두신(痘神)의 이름을 써서 벽(壁)에 끼워 두었습니다. 기축(祈祝)하는 글에 대해서는 참여하여 듣지를 못하였으나, 대개 세자께서 두창을 잘 넘겼으므로 희빈이 무녀의 말을 믿고, 혹은 붉은 콩떡을 진설(陳設)하기도 하고, 혹은 당여의(唐女衣)를 설치하기도 하여 몸소 기도하였으나, 그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일을 위한 것인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창(窓)에 구멍을 뚫고 엿본 따위의 일은 본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개 갑술년(10560) 부터는 설향이 하량교(河梁橋) 【도성(都城) 가운데 있다.】의 무녀 집에 왕래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하교(下教)하기를,

“철생(鐵生)은 본래 희빈방(禧嬪房)의 비자(婢子)로서 설향(雪香)·숙영(淑英) 등이 무녀(巫女)의 집에 왕래할 때 그 출납(出納)하거나 주고받는 물건들을 전적으로 관장(管掌)하였으니, 이것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철생이 대답하기를,

“희빈방의 시장 무수리[市上水賜] 【무수리[水賜]란 궁녀(宮女)가 사역(使役)하는 종을 말한다.】가 되어서 모든 신사(神祀)의 물건들을 과연 전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무녀의 이름은 실로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태자방(太子房)’ 【속칭 자고신(紫姑神)10561] 을 태자(太子)라고 한다.】이라고 일컫던 자는 지난해 과연 죽었습니다. 이 뒤에 이른바 ‘유무(游巫)’라고 하는 자가 한강(漢江) 근처에서 태자방의 집에 들어가 거처하였다가, 금년 2월에 스스로 자기 몸에 신(神)이 내렸다고 일컬었는데, 4월에 갑자기 달아났습

“巫女可問，而或言死或言逃，將問其子女、族屬耳。” 上命捕盜廳譏捕。上曰：“自內推問時，丑生則自諱，雪香、淑英，略以火唐女衣事發告矣。” 命刑訊雪香、淑英，俱不服。杖未準數，已之，蓋慮其徑斃也。正言黃一夏論曰：“日昨備忘中，有潛設神堂，一二婢僕祈禱綢繆之事。職在出納者，所直稟以出付王獄之意，而終無一言，請從重推考。” 允之。又論：“大凡治逆，設鞫本府者，固多有之。尹趾仁不過陳其所懷而已。何嘗歇視謀害國母之賊哉？請還收削黜之命。” 不從。承旨金鎮圭曰：“今番鞫獄，前古所無之變，而況與外間事有異，非外廷臣僚所可聞知，則親臨鞫問，舉指得宜，而尹趾仁乃請推問於本府，極爲非矣。臺臣之請還收，臣竊以爲不然也。” 上曰：“承旨言是也。此是千古所未有之變，而承旨只以本府推問爲請，歇後甚矣。予自遭此事以來，日夜耿耿，寢不能寐，以爲陰凶情節，必爲鉤得而後，至恨可雪，予心少安，而國可爲國。日昨備忘，日夜切齒之語，正說出予之心事也。今番國恤時，一

	<p>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신당의 설치가 2월에 있었고, 세자의 안질(眼疾)이 이미 작년보았다 나아졌는데, 도리어 ‘세자를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한다. 시영이 ‘처음에는 신당에 가지 아니하였으나, 최후에는 궁을 나가서 갔었다.’고 한다. 설향은 ‘무녀(巫女)의 이름을 숙영이 안다.’고 하고, 숙영은 ‘철생이 안다.’고 하는데, ‘전의 무녀는 죽었고, 뒤의 무녀는 도망하였다.’는 것은 더욱 그들의 간교한 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p> <p>하였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여(李畬)가 말하기를,</p> <p>“무녀를 물어볼 수 있으나, 혹은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도망하였다고 하기도 하니, 장차 그 자녀(子女)와 친족들을 심문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포도청(捕盜廳)에 명하여 은밀하게 체포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궐내(闕內)에서 추문(推問)할 때 축생은 스스로 은휘(隱諱)하였고, 설향·숙영은 당여의(唐女衣)를 불태운 사건을 대략 받고(發告)하였다.”</p> <p>하고, 설향·숙영을 형신(刑訊)하라고 명하였으나 모두 자복(自服)하지 아니하였다. 장(杖)을 수대로 때리지 아니하고 그만두게 하였으니, 대개 그들이 곧장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정언 황일하(黃一夏)가 논하기를,</p>	<p>邊神祀，一邊咀呪之說，藉藉於闕內，有同國言。內殿寢疾時，每言此病怪異，日漸焦枯。予嘗見其體膚消鑠，無一點肌肉，極爲慘怛。此天下萬古所無者也。彼女輩，反謂恐以爲咀呪者，誠自道也，實類於沈器遠在鞫廳時，他大臣謂大監出於逆招，則答曰吾豈爲逆賊乎之語矣。雖懸賞購之，必得其端緒，報內殿罔極之讎然後，可使宮禁清淨，而尹趾仁，徐宗憲等，必欲防塞，反以予爲激惱，極可異矣。史官以追悔等說，至比於己巳，寧有此理？張希載謀害之事，尙且齊聲爭執，況此無前之變故，其可掩置耶？凶逆之事，盡爲鈎得，則彼女輩敢以何辭爲欺諱之計乎？領議政崔錫鼎曰：“今日變故，孰不驚痛？以常道言之，當沐浴請討，而有顧藉之事，故不忍矣。”承旨、玉堂請對，還收備忘，將有詢問，當待此陳所懷耳。鎮圭稟以詢問之舉，上命待明日。</p>
--	--	--

“어제의 비망기에 ‘몰래 신당을 설치하고 한두 사람의 비복(婢僕)이 기도하고 미리 일을 빈틈없이 준비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관직이 출납(出納)에 있는 자들은 왕옥(王獄)에 붙이라는 뜻을 마땅히 계품(啓稟)해야 할 것인데 끝내 한마디 말이 없었으니, 청컨대,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允許)하였다. 또 논하기를,

“대개 역모(逆謀)를 다스릴 때 본부(本府)에 국청(鞫廳)을 설치한 경우가 진실로 많이 있었습니다. 윤지인(尹趾仁)은 그 품은 생각을 진달한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어찌 국모(國母)를 모해(謀害)한 적(賊)을 일찍이 대수롭지 않게 보았겠습니까? 청컨대, 삭탈(削奪)하여 내쫓으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승지 김진규(金鎭圭)가 말하기를,

“이번의 국옥(鞫獄)은 전에 없던 변고(變故)입니다. 더욱이 외간(外間)의 일과는 다른 점이 있어 외정(外廷)의 신료(臣僚)들이 들어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국문(鞫問)에 친림(親臨)하심은 그 거조(舉措)가 마땅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윤지인이 곧 본부(本府)에서 추문(推問)하자고 청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臺臣)들이 그 명을 도로 거두라고 청한 것을 신은 그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의 말이 옳다. 이것은 천고에 없던 변고이다. 그런데도 승지가 다만 본부에서 추문(推問)하자고 청하였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심하였다. 내가 이 일을 당한 이래로 밤낮으로 마음이 우울하여 자리에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음흉(陰凶)한 정상을 반드시 살살이 밝혀낸 뒤에라야 지극한 한(恨)이 풀려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며 나라도 나라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제 비망기에다 ‘밤낮으로 이를 갈았다.’고 한 말은 바로 나의 심사(心事)에서 나온 말이다. 금번 국휼(國恤) 때, 한편으로는 신당에다 빌고 한편으로는 저주(呪呪)하였다는 말이 궐내(闕內)에 자자(藉藉)하였으며, 온 나라의 말도 같았다. 그리고 내전(內殿)이 병으로 누워 있을 때 매양 말하기를, ‘이 병이 괴이(怪異)하였다.’ 하며 날로 몸이 점점 여위어졌는데, 내가 일찍이 그 몸이 사그라져 살이라곤 한 점도 없어 지극히 참담한 모습을 보았으니, 이것은 천하 만고에 없던 일이다. 저 여자들이 도리어 ‘아마도 저주(呪呪)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은 진실로 스스로 말한 것으로서, 실로 심기원(沈器遠)이 국청(鞫廳)에 있을 때 다른 대신(大臣)들이 ‘대감(大監)이 역적(逆賊)의 공초(供招)에 나왔다.’고 하자,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역적질하였다는 말이에요?’라고 한 말과 같다. 비록 현상금을 걸더라도 반드시 그 단서를 얻어 내전(內殿)의 망극(罔極)한 원수를 갚고 난 뒤에라야 궁금(宮禁)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윤지인(尹趾仁)·서종헌(徐宗憲) 등은 반드시 막고자 하여 도리어 내가 격분한 감정을 가졌다고 하였으니, 지극히 괴이한 일이다. 그리고 사관(史官)은 ‘뒤에 후회할 것이라’는 따위의 말로 이 일을 기사년(10562)의 일에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장희재(張希載)가 모해(謀害)한 일은 아직도 목소리를 같이하여 쟁집(爭執)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 일은 천고(前古)에 없던 변고이니, 덮어 둘 수 있겠는가? 흉악한 사건을 모조리 살살이 들추어낸다면, 저 여자들이 감히 무슨 말로 속이거나 피할 수 있는 계책을 쓸 수가 있겠는가?”

	<p>하였다.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p> <p>“금일의 변고에 대해 누군들 놀라고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상도(常道)로써 말한다면, 마땅히 목욕(沐浴)한 뒤 토죄(討罪)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p> <p>하고, 승지와 옥당에서 청대(請對)하여, 비망기를 도로 거두고 장차 신하들에게 순문(詢問)해서 이에 대한 품은 생각을 아뢰도록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김진규(金鎭圭)가 신하들에게 순문할 일을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명하여 다음날까지 기다리게 하였다.</p>	
<p>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11월 2 일(을유) 5번째기사</p>	<p>승지(承旨) 김진규(金鎭圭)가 상소(上疏)하여, 맨 먼저 몸을 바르게 하고 집안을 바르게 하는 방도(方道)를 말하고, 또 말하기를,</p> <p>“오늘의 급무(急務)는 오직 춘궁(春宮)10736) 을 보도(輔導)하는 데 있으니, 원컨대, 전하(殿下)께서는 항상 와서 곁에 시어(侍御)하게 하여, 그 곡읍(哭泣)의 절도(節度)를 억제하시고, 억지로라도 죽[飢粥]을 들게 하시며, 관비(寬譬)10737) 하고 위유(慰諭)하셔서 병이 날 근심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또 날마다 궁료(宮僚)를 접하도록 명하셔서, 밤낮을 가릴 것 없이 함께 옛사람의 거상(居喪)한 예절을 강론하게 하되, 애훼(哀毀)하여 멸성(滅性)10738) 해서 안된다는 훈계에 더욱 뜻을 두게 하여, 비애의 정을 억제하여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편안케 한다면, 반드시 환시(宦侍)들과 함께 있는 것보았다 나올 것입니다.”</p>	<p>○承旨金鎭圭上疏， 首言正身正家之道， 又曰：</p> <p>今日急務， 唯在於保護春宮。 願殿下常令來侍御側， 抑其哭泣之節， 強其飢粥之食， 寬譬慰諭， 俾不至於惟疾之憂， 且命日接宮僚， 無間晝夜， 與講古人居喪之禮， 而尤致意於毀不滅性之訓， 于以排遣悲哀， 鎮安身心， 則亦必有愈於宦寺之與處矣。</p> <p>又曰：</p>

하고, 또 말하기를,

“이제 전하께서 상(喪)을 당해 근심하고 계시는데 변고(變故)까지 겹쳤으니, 혈기(血氣)가 막히기 쉽고, 심지(心志)가 이로 인하여 번뇌(煩惱)하게 되는 것은 사리와 형세가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절선(節宣)하여 조화(調和)하는 방도는 오직 자주 신하들을 접대하시어 치도(治道)를 토론하는 데에 있는데도, 연식(筵席)을 정폐(停廢)한 지 이제 한달 남짓이나 되었으니, 군하(群下)가 민망하여 탄식하는 것이, 어찌 다만 적체된 기무(機務)만을 위해서이겠습니까? 또 근래에 건상(乾象)10739) 이 경계(警戒)의 뜻을 보이고, 성변(星變) 뇌이(雷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니, 수성(修省)하는 방도에 더욱 마땅히 분발(奮發)하고 진작(振作)시켜야 합니다. 비록 국옥(鞫獄)의 일이 바야흐로 벌어져서 날마다 인접(引接)할 겨를이 없으시겠지만, 또 어찌 가끔 옥사다스리는 일을 정지하고 입시하여 일을 아뢰게 할 때가 없겠습니까? 후사(喉司)의 신하와 경악(經幄)의 관원이 때때로 문서와 간책(簡冊)10740) 을 가지고 들어와서, 반복(反覆)하여 품단(稟斷)하고 조용히 강독(講讀)하는 일에, 또 무엇을 꺼리어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일전에 대관(臺官)이 임호(林濩)가 국상(國喪)에 달려오지 않은 것과 김치룡(金致龍)이 일을 피하여 시골로 내려간 것을 탄핵하여 파직하였습니다. 임호가 한강 밖에 이르렀을 때 대평(臺評)10741) 을 당한 상황을 사람들의 전하는 말이 많았고, 신도 그가 서울에서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대론(臺論)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어찌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김치룡이 체직(遞職)되어 시골로 내려간 일에 이르러서는

今殿下喪感之餘，重以變故，血氣之易致底壅，心志之因以煩惱，理勢之所必然，則其所以節宣調和之道，惟在於頻數接待，討論治理，而筵席之停廢，今至月餘，群下之所悶歎，豈特爲機務之淹滯而已哉？且比者乾象示警，星變雷異，繼出沓臻，其在修省之方，尤宜奮發而振作。雖以鞫事之方張，未遑日次之引接，而亦豈無可以間停治獄，入侍奏事之時乎？至於喉司之臣、經幄之官，時時持文書捧簡冊，反覆稟斷，從容講讀，亦何所妨而不爲耶？

又曰：

日昨臺官，以林濩之不奔國哀，金致龍之避事下鄉，劾罷之矣。濩之來到江外，乃遭臺評之狀，人多傳說，臣亦目見其自京而南還矣。臺論之遽發者，豈其未能審察而然歟？至於致龍遞職下鄉，朝士例爲之事，則何可以此，強歸於巧避之科也？然則以聖朝體下之道，恐不當仍施罪罰也。

答曰：“陳戒殊切，可不留意焉？林濩

	<p>조사(朝士)가 으레 하는 일인데, 어찌 이것을 억지로 교묘하게 피했다는 죄과(罪科)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조(聖朝)에서 아랫사람을 체념(體念)하는 도리로 보아 그대로 죄벌(罪罰)을 시행하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진계(陳戒)한 것이 매우 절실하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임호 등 두 사람의 일은 소사(疏辭) 또한 마땅하니, 특별히 서용(敍用)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等兩人事，疏辭亦宜，特令敍用。”</p>
<p>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12월 1일(계축) 1번째기사</p>	<p>혼전 도감 제조(魂殿都監提調) 김진귀(金鎭龜)가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김진귀가 아뢰기를,</p> <p>“예문(禮文)으로 본다면 초우제(初虞祭)부터 졸곡(卒哭)10957) 까지 왕세자(王世子)가 마땅히 모두 친행(親行)하여야 하는데, 다만 왕세자께서 바야흐로 유충(幼冲)한 나이에 있고, 또 추운 절기를 만나 여러 차례 행사하게 되면 아마도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보호하는 도리에 있어 미리 품정(稟定)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감히 이에 양달(仰達)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초우제(初虞祭)와 졸곡제(卒哭祭)는 세자(世子)가 친행(親行)하고, 재우(再虞)부터 칠우(七虞)까지는 간간히 형세를 보아가면서 친행하도록 하라.”</p>	<p>○朔癸丑/魂殿都監提調金鎭龜請對，上引見。鎭龜曰：“以禮文觀之，自初虞至卒哭，王世子皆當親行，而第王世子，方在冲年，又值寒節，累度將事，恐有傷損之慮，而其在保護之道，不可不預爲稟定，故敢此仰達。”上曰：“初虞及卒哭祭，世子親行，而自再虞至七虞，則間間觀勢而親行。”鎭龜曰：“王世子親行祭祀時，當有香祝祇迎之禮，而第傳香例在於祭祀前一日質明，則世子當早出齋室，祇迎香祝，仍留齋室，以行翌日之祭，禮則然矣，而目今日寒如此，王世子尚在冲年，兩日齋室，不無致傷之慮。初虞則日晷當</p>

	<p>하였다. 김진귀가 아뢰기를,</p> <p>“왕세자가 제사를 친행할 때에는 마땅히 향축(香祝)10958) 을 지영(祇迎)10959) 하는 예(禮)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다만 전향(傳香)10960) 은 으레 제사 전 1일 질명(質明)10961) 에 있으니, 세자가 마땅히 일찍이 재실(齋室)10962) 에 나와 향축을 지영하고, 그대로 재실에 머물렀다가 이튿날의 제사를 행하는 것이 예(禮)입니다. 그러나 지금 날씨가 이와 같이 차고 왕세자가 아직 유충한 나이에 있는데, 이를 동안을 재실에 있게 되면 치상(致傷)할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초우는 날이 늦어지더라도 예문(禮文)에 의하여 행해야 하나, 재우에서 졸곡까지는 변통(變通)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세자가 <제사> 전 1일 이른 아침에 미리 나가서 향축을 지영하는 것이 예(禮)이나, 지금 바야흐로 유충한 나이에 있으니, 일체 예문(禮文)에 의하여 행할 수 없을 것이니, 초우의 전향(傳香)할 때에는 예(禮)에 의하여 지영하고, 그 뒤에는 권정례(權停例)10963) 로 하라.”</p> <p>하였다. 김진귀가 아뢰기를,</p> <p>“이달 17일 영소전(永昭殿)10964) 을 <창경궁(昌慶宮) 문정전(文政殿)으로> 옮겨 봉안(奉安)할 때에는, 왕세자가 마땅히 궐문(闕門) 밖에서 지영하는 예(禮)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다만 지금은 평상시와 달라서 복색(服色)에 이미 의거할 만한 예(禮)가 없으며, 왕세자가 바야흐로 유충한 나이에 있는데다 또</p>	<p>晚, 可依禮文行之, 而自再虞至卒哭, 則似當有變通之道。” 上曰: “世子前一日早朝, 預爲出去, 祇迎香祝, 禮則然矣, 而卽今方在沖年, 不可一依禮文行之, 初虞傳香時則依禮祇迎, 其後則權停。” 鎮龜曰: “今月十七日, 永昭殿移奉時, 王世子當有闕門外祇迎之禮, 而第卽今異於常時服色, 既無可據之禮, 王世子方在沖年, 且值寒節, 祇迎之禮, 今姑權停何如?” 上曰: “卽今世子進見時服色, 則白笠、白直領矣。以此服色祇迎, 有所難便, 亦權停。” 鎮龜曰: “今月二十五日移御時, 王世子當陪往於魂殿之後乎? 或隨往於大駕之後乎?” 上曰: “常時移御時, 大駕後中宮殿, 其後世子宮、嬪宮矣。今亦一依此例, 動駕後魂殿次之, 魂殿後世子隨往可也。” 鎮龜曰: “魂殿離發時, 當有告由祭, 奉安後, 亦當有奉安祭, 而此兩祭, 與大祭有異。王世子雖不親行, 似不至欠缺於情禮矣。” 上曰: “所達誠然。世子勿親行。” 鎮龜曰: “前頭發軔時, 自啓殯至立主奠, 當依《五禮儀》, 命領議政爲獻官。故累度儀註, 亦已有依此書入者, 而國</p>
--	---	---

	<p>추운 계절을 만났으니, 지영의 예를 지금 우선 권정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지금 세자가 진현(進見)할 때의 복색은 백립(白笠)·백직령(白直領)인데, 이 복색으로 지영하는 것은 난편(難便)한 바가 있으니, 또한 권정례로 하라.”</p> <p>하였다. 김진귀가 아뢰기를,</p> <p>“이달 25일 이어(移御)할 때에 왕세자가 마땅히 혼전(魂殿) 뒤에 배종(陪從)해 가야 하겠습니까? 혹은 대가(大駕)의 뒤에 따라가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평상시의 이어(移御)할 때에는 대가(大駕) 뒤에 중궁전(中宮殿), 그 뒤에 세자궁(世子宮)·빈궁(嬪宮)이었다. 지금도 한결같이 이 예(例)에 의하여 동가(動駕)10965 한 뒤에 혼전을 다음으로 하고, 혼전 뒤에 세자가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가하였다.”</p> <p>하였다. 김진귀가 아뢰기를,</p> <p>“혼전이 이발(離發)10966 할 때에는 마땅히 고유제(告由祭)가 있어야 하고, 봉안한 뒤에도 마땅히 봉안제(奉安祭)가 있어야 하는데, 이 두 제사는 대제(大祭)와 더불어 다름이 있습니다. 왕세자가 비록 친행(親行)하지 않더라도 정</p>	<p>葬時三公皆有執事。領議政則不但爲獻官，下玄宮時奠哀冊贈玉帛，左議政率昇梓宮官，奉梓宮陞大輿，右議政拭梓宮，而卽今領議政未差，此後儀註，將何以爲之耶?” 上曰：“贈諡時，例以遣領議政爲辭，而卽今領議政未差，已令左議政代行。此後則領議政所當行之事，竝令左議政代行。” 鎮龜曰：“今春間，以南漢軍餉大米不足之故，江都移轉穀之在南漢近邑者，推移割給，使之輸納于南漢，則各邑以秋成後，趁卽捧納之意，報于備局及守禦廳，故不得不許。近來諸邑，全數不納，而至以事勢難便之意，枚報于備局及本廳，事甚未妥。如有終始不納者，依軍餉、還上居末之例，各別論罪事，令廟堂稟處何如?” 上曰：“依爲之。” 鎮龜曰：“山城米移轉之在於各邑者，姑令捧留本邑，使之待明春輸納于山城矣。近日諸邑，報于本廳，以爲：‘准數捧留，事勢甚難，請參酌收捧。’軍餉移轉，所關不輕，而守令之怠忽如是，脫有綏急，將何所持? 且各邑，多以未捧。爲已捧請於歲末，發遣從事官摘奸，其尤甚未捧之邑，各別論</p>
--	--	--

	<p>례(情禮)에 흠결(欠缺)이 되는 데 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주달한 바가 참으로 옳다. 세자가 친행하지 말게 하라.”</p> <p>하였다. 김진귀가 아뢰기를,</p> <p>“앞으로 발인(發靱)10967) 할 때에는 계빈(啓殯)10968) 에서 입주전(立主奠)10969) 까지 마땅히 《오례의(五禮儀)》에 의해 영의정(領議政)을 명하여 헌관(獻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의 의주(儀註) 또한 이미 이에 의하여 써 넣은 것이 있는데, 국장(國葬) 때에는 삼공(三公)10970) 이 모두 집사(執事)함이 있어, 영의정은 헌관(獻官)이 될 뿐 아니라, 현궁(玄宮)에 내릴 때에 애책(哀冊)을 전(奠)드리고 옥백(玉帛)을 증정하며, 좌의정(左議政)은 여재 궁관(昇梓宮官)10971) 을 거느리고 재궁(梓宮)을 받들어 대역(大輿)에 올리며, 우의정(右議政)은 재궁을 닦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영의정을 임명하지 않았으니, 이 뒤의 의주(儀註)는 장차 어찌 하여야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증시(贈諡)할 때에는 으레 영의정을 보내는 것으로 말을 하나, 지금 영의정은 아직 임명하지 않았고, 이미 좌의정으로 하여금 대행(代行)케 하였으니, 이 뒤로는 영의정이 맡아 행할 일을 모두 좌의정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라.”</p> <p>하였다. 김진귀가 아뢰기를,</p>	<p>罪。” 上曰：“依爲之。”</p>
--	--	----------------------

“올봄 사이에 남한(南漢)10972) 의 군향 대미(軍餉大米)10973) 가 부족한 까닭으로써 강도(江都)10974) 로 이전(移轉)할 곡식이 남한 근읍(南漢近邑)에 있는 것을 추이 획급(推移劃給)하여 남한에 수납(輸納)하도록 하면, 각 고을에서 가을 수확 뒤에 곧바로 봉납(捧納)케 한다는 뜻으로 비국(備局)과 수어청(守禦廳)에 보고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래에 여러 고을에서 전체의 수량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사세(事勢)가 난편(難便)한 뜻으로 날날이 비국과 본청(本廳)에 보고하기까지 하니,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만약 종시(終始) 납부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군향(軍餉)·환자[還上]의 거말(居末)10975) 인 예(例)에 의하여 각별히 논죄(論罪)할 것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김진귀가 아뢰기를,

“각 고을에 있는 이전(移轉)할 산성미(山城米)는 우선 본 고을에다 받아서 머물러 두게 하였다가, 명년 봄을 기다려 산성(山城)에 수납토록 하였습니다. 근일 여러 고을에서 본청(本廳)에 보고하기를, ‘수량에 준해서 받아 머물러 두는 것은 사세가 매우 어려우니, 청컨대, 참작하여 거두어 받도록 하라.’고 합니다. 군향(軍餉)의 이전(移轉)은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아니한데, 수령(守令)의 태만하고 소홀함이 이와 같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각 고을에서 많이들 납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미

	<p>납부한 것으로 하니, 청컨대, 세말(歲末)에 종사관(從事官)을 보내어 적간(摘奸)하여 납부하지 않은 것이 더욱 심한 고을은 각별히 논죄(論罪)토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p> <p>“그대로 하라.”</p> <p>하였다.</p>	
<p>숙종 35권, 27년 (1701 신사 / 청 강희 (康熙) 40년) 12월 20 일(임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이 말하기를,</p> <p>“전부터 산릉(山陵)을 완역(完役)한 뒤에는, 도내(道內)의 각 고을에는 그 응역(應役)10997) 의 다소(多少)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감역(減役)하였습니다. 금번 능역(陵役) 때에도 각 고을이 모두 이미 출역(出役)하였는데, 양주(楊州)·과주(坡州) 두 고을은 부근(附近)의 고을로서 그 출역이 다른 고을의 갑절이나 됩니다. 또 앞날의 능행(陵幸)과 칙행(勅行)10998) 때에도 스스로 백성을 부릴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경신년(10999) 의 예(例)에 의하여 각 고을은 올봄의 대동미(大同米)를 각각 2두(斗)씩 감하고, 양주와 과주는 특별히 3두를 감하며, 고양(高陽)은 지방관(地方官)이기 때문에 가을의 대동미(大同米)를 이미 완전히 감하였으니, 다시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분부(分付)하심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壬申/上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李世白曰：“自前山陵完役後，道內各邑，隨其應役多少，差等減役。今陵役時，各邑皆已出役，而楊、坡兩州，以附近，役倍他邑。且前頭陵幸、勅行，自不無役民之事，依庚申例，各邑今春大同，各減二斗，楊、坡則特減三斗，而高陽以地方官，秋大同，既已全減，更無可論。以此分付何如?” 上曰：“依例減給。” 世白曰：“咸鏡道開市時，差員例以守令差定，而近來間或以邊將代差矣。清差問安軍官，傳泄於彼人，監司俞得一，狀請梟示，而此與前日路程記出給者，情犯有異。以邊將差定，既是實狀，不過隨問隨答而已，何必至於大罪乎? 且不</p>

	<p>“전례대로 감하여 주라.”</p> <p>하였다. 이세백이 말하기를,</p> <p>“함경도(咸鏡道)에 개시(開市)할 때의 차원(差員)은 으레 수령(守令)으로 차정(差定)하였었는데, 근래에는 간혹 변장(邊將)으로 대신 차정하기도 하였습니 다. 청차(淸差)11000) 의 문안 군관(問安軍官)이 저쪽 사람에게 <이쪽 일 을> 전하여 누설한 탓으로, 감사(監司) 유득일(兪得一)이 장계(狀啓)로 효시 (梟示)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전일의 노정기(路程記)를 내준 자와는 정범(情 犯)이 다른 바가 있습니다. 변장으로써 차정한 것이 이미 실상(實狀)이며, 물 음에 따라 대답한 데 불과할 뿐인데, 어찌 반드시 대죄(大罪)에 이르겠습니까? 또 그 성명(姓名)도 묻지 않고 처단(處斷)할 때에 당하여 계문(啓聞)하겠 다고 한 것은 사체(事體)가 더욱 부당합니다.”</p> <p>하니,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琬)은 말하기를,</p> <p>“그 본정(本情)을 살핀다면, 변정(邊情)을 누설한 자와 비교하여 같이 취급할 수 없으니, 율(律)에 의함은 지나칠 듯합니다.”</p> <p>하고, 좌윤(左尹) 이인엽(李寅燁)은 말하기를,</p> <p>“무릇 변정(邊情)에 관계되는 것은 엄히 방금(防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 번에 이 군관(軍官)의 전한 바가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사로 이 서로 문답(問答)한 것은 일이 매우 부당합니다. 이제 만약 완전히 석방한 다면 변경(邊境)의 민정(民情)이 해이(解弛)해질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참</p>	<p>問其姓名，當於處斷時啓聞云者，事體 尤不當矣。” 右議政申琬曰：“原其本 情，則不可與漏洩邊情者，比而同之， 依律似過。” 左尹李寅燁曰：“凡係邊 情，不可不嚴防。今此軍官所傳，雖 非大段，私相問答，事甚不當。今若 全釋，則邊上民情，不無解弛之弊，參 酌論罪似可矣。” 上曰：“以此梟示， 實爲過重，令本道決棍。” 世白曰： “兪得一又以爲開市時， 淸人出來者， 比前有加，弊端不貲，請於前頭使行， 移咨禮部。曾在庚子年間，因我國移 咨，開市人馬，定數出來，遵行未久， 歲漸增加。今雖移咨，未必猝革其弊， 而隨卽咨請，以示防閑之意，則猶愈於 任其所爲，前頭使行時，第以此意，移 咨禮部何如?” 上曰：“前既定數，而漸 致增加，今雖咨請，未必有益，而試爲 移咨。” 禮曹判書金鎭龜曰：“臘月垂 盡，而日氣甚暖，合冰無期。在前過 臘三日後，卽行司寒祭，仍始冰役，而 卽今事勢如此，(莊)〔藏〕米遲速，姑 未可知。司寒祭先爲設行，而祭文中 以祈寒之意，別爲措辭何如?” 上曰： “依爲之。” 戶曹判書金昌集曰：“今秋</p>
--	---	--

	<p>작(參酌)하여 논죄(論罪)함이 가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로써 효시(梟示)함은 실로 과중(過重)한 것이 되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결곤(決棍)11001) 케 하라.”</p> <p>하였다. 이세백이 말하기를,</p> <p>“유득일(兪得一)도 또한 ‘개시(開市)할 때 나오는 청(淸)나라 사람이 전에 비하여 증가함이 있어서 폐단이 적지 않으니, 앞으로 사행(使行)편에 예부(禮部)에 이자(移咨)11002)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일찍이 경자년(11003) 사이에 우리 나라의 이자(移咨)로 인해 개시(開市) 때의 인마(人馬)의 수를 정하여 나왔으나, 준행(遵行)한 지 얼마 안되어 해마다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이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급작스럽게 그 폐단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때마다 자문으로 청하여 방지하는 뜻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들 하는 대로 말기는 것보았다는 나올 것이니, 앞으로 있을 사행(使行) 때 다만 이러한 뜻으로 예부에 이자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전에 이미 수효를 정하였는데도 점차 증가되었으니, 이제 비록 자문으로 청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익(有益)하진 않을 것이나, 시험삼아 이자(移咨)하라.”</p>	<p>年分事日磨鍊時，川反、浦落、覆沙，只許給災，於水田、旱田，則元不舉論，而頃見兩西都事覆審啓本，各樣田災，任意許給，故一併還實之意，既已覆啓，而都事似當有別樣論罪之舉矣。”世白曰：“事日外任意給災，歸冤於國，要譽於民，不可推考而止。”上曰：“兩道都事，竝先罷後推。”是後兩道道臣，竝狀請還給還實之災，廟堂覆啓依施。副校理權尙游曰：“李台佐疏語，雖或謬戾，此出於伸救他人，則與身犯有異，至於竄配，誠爲過重。”上曰：“李台佐之疏，徒知伸救，而全昧義理。當初臺諫，雖以削黜爲請，若不深懲，則義理必至於晦塞，故特爲遠竄。今則日月稍久，且異身犯，放送。”掌令鄭維漸申前啓，上曰：“勿煩。徐瑱事依啓。”</p>
--	--	---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설달[臘月]이 거의 다하였는데도, 날씨가 매우 더워서 얼음이 얼 기약이 없습니다. 전에 있어서는 납향(臘享)을 경과한 지 3일 후에 즉시 사한제(司寒祭)11004) 를 행하고 이어 빙역(氷役)11005) 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사세(事勢)가 이와 같아서 얼음을 언제 떠서 저장할지 그 지속(遲速)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사한제를 먼저 설행(設行)하여야 하는데, 제문(祭文) 속에 기한(祈寒)하는 뜻으로 특별히 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올가을 연분 사목(年分事目)을 마련할 때에 천반 포락(川反浦落)11006) 과 복사(覆沙)11007) 만을 급재(給災)11008) 토록 허락하고,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은 본디 거론하지 않았는데도, 전번에 양서(兩西)11009) 의 도사(都事)가 복심(覆審)한 계본(啓本)을 보건대, 각양(各樣)의 전재(田災)를 임의로 급재를 허락했기 때문에 모두 환실(還實)11010) 케 할 뜻으로 이미 복계(覆啓)하였습니다만, 도사(都事)도 마땅히 별도로 그 죄를 논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이세백이 말하기를,

“사목(事目)외에 임으로 급재(給災)한 것은 원망을 국가로 돌리면서 백성에게 찬사를 요구하는 것이니, 추고(推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도(道)의 도사는 모두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토록 하라.”

하였다. 이 뒤에 두 도의 도신(道臣)이 모두 환실(還實)케 한 급재(給災)를 도로 돌려 주기를 장계로 청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이를 복계(覆啓)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부교리(副校理)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이태좌(李兌佐)의 소(疏)의 말이 비록 그릇된 면도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을 신구(伸救)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신범(身犯)과는 다름이 있는데, 정배[竄配]까지 이르는 것은 진실로 과중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태좌의 소(疏)는 한갓 신구(伸救)하는 것만 알고 의리(義理)에 전혀 어두운 것이다. 당초에 대간(臺諫)이 비록 삭출(削黜)11011) 로써 청하였으나, 만약 깊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의리가 반드시 회색(晦塞)하는 데 이르기 때문에 특히 먼 곳에 정배하였다. 이제는 일월(日月)도 좀 오래 되었고 또 신범(身犯)과는 다르니,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장령(掌令) 정유점(鄭維漸)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p>“번거롭게 하지 말라. 서진(徐鎭)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p> <p>하였다.</p>	
<p>숙종 36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 (康熙) 41년) 1월 4일 (병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경릉(敬陵)11025) 에 가서 전알(展謁)하고, 세자는 백포(白袍)·소관(素冠)차림으로써 익릉(翼陵)11026) 을 전알하였다. 임금이 명릉(明陵)11027) 에 가서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는데, 세자 및 배종(陪從)하는 백관이 모두 최복(衰服) 차림으로 배제(陪祭)하였다. 임금이 능 위로 가서 오른쪽 빈 곳을 물으니,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달려 나아가 가리키며 대답하였다.</p> <p>이어서 말하기를,</p> <p>“양주(楊州)와 고양(高陽)은 능침(陵寢)이 가장 많은데, 고양은 양주에 비해서 쇠잔함과 번성함이 서로 아주 다릅니다. 고양에도 8릉(八陵)이 있어 양주의 10릉을 당할 만한데, 일찍이 양주에 거둥하셨을 때 본주(本州)의 전세(田稅)를 영원히 감하라고 특명(特命)하였기 때문에 고양의 백성들도 똑같이 전세를 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명하기를,</p> <p>“고양의 전세도 금년부터 영구히 감하여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p> <p>하고, 인하여 본도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분부하게 하니, 노소 남녀(老少男女)가 모두 고무(鼓舞)되었다.</p>	<p>○丙戌/上詣敬陵展謁。 世子以白袍、素冠，展謁于翼陵。 上詣明陵行奠酌禮，世子及陪從百官，皆以衰服陪祭。 上詣陵上，問虛右處，左議政李世白趨進指對。 仍言：“楊州、高陽，陵寢最多，而高陽之於楊州，殘盛相懸。 高陽八陵，足當楊州十陵，曾幸楊州時，本州田稅，特命永減，故高陽之民，亦望一體減稅矣。” 上命高陽田稅，亦自今年永減，以示軫恤之意，仍使本道道臣，分付于民人等，老少男女，舉皆鼓舞。</p>

<p>숙종 36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 (康熙) 41년) 1월 15 일(정유) 2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신완(申琬)이 아뢰기를, “근년에 사나운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환란이 팔로(八路)에 두루 미쳐 있는데, 기전(畿甸) 근처에 그런 환란이 더욱 심합니다. 청컨대, 삼군문(三軍門)11050) 의 포수(砲手)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더욱 심한 곳을 물어서 내려 보내라.” 하였다. 또 청하기를, “전(前) 참판(參判) 송창(宋昌)은 효종(孝宗) 때 한림(翰林)인데, 나이가 지금 70세이니, 가자(加資)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공조 참판 이인엽(李寅燁)이 아뢰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의 군량(軍糧)은 흉년을 겪으면서부터 〈백성이〉 죄다 흩어져 받아들이지 못하여, 지금 현재 대소미(大小米)11051) 가 겨우 5천여 석(石)이며, 피곡(皮穀)·잡곡(雜穀)도 겨우 수만여 석으로, 보장(保障)해야 할 중요한 땅의 군량이 모자라니, 참으로 매우 염려됩니다. 삼남(三南)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쌀이 그 지용(支用)을 계산하면 나머지가 2만 석이니 남한산성으로 갈라 보내야 하고, 강도(江都)11052) 의 군량도 전의 비축량에 비하면 또한 매우 감소되었으니, 남은 쌀 8천 석을 또한 마땅히 옮겨 보내야 하겠습니</p>	<p>○引見大臣、備局諸臣。右議政申琬，以近年惡虎嚙殺人命之患，遍於八路，而畿甸近處，此患尤甚。請發遣三軍門砲手，使之捕捉，上曰：“先問其尤甚處發送。”又請前參判宋昌加資，以孝廟朝翰林，而年今七十也。上許之。工曹參判李寅燁曰：“南漢軍餉，自經荐飢，散盡未捧，卽今見在大小米，僅五千餘石，皮、雜穀纔數萬餘石。保障重地，餉穀匱缺，誠甚可慮。三南收米，計其支用，所餘二萬石，劃送南漢，而江都軍餉，比前所儲，亦甚減少，餘米八千石，亦宜移送。”上可之。執義尹弘離、正言金相稷，申三大臣合啓，復以所懷，縷縷爭執，上曰：“當初大臣不能善處，而合啓措語，不無過重之處。顧瞻利害等說，乃是情外，故只以一時誤事，參酌罷職矣。希載、業同，俱是罔赦之賊，而緩獄容貸，竟致前冬罔極之變，臺啓誠得臺體。兩大臣之斷無他腸，予既知之，而一向相持，似爲未安，竝削黜。尹趾完則不過一時意見誤入之致，罷職似過矣。”相稷又陳本院前啓，上曰：“尹德駿疏中，以何必親鞫爲言，親鞫</p>
--	---	---

	<p>다.”</p> <p>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집의(執義) 윤홍리(尹弘離)·정언(正言) 김상직(金相稷)이 3대신에 대한 합계(合啓)를 거듭 밝히고, 다시 소회를 누누이 쟁집(爭執)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당초에 대신이 잘 처리하지 못했는데, 합계(合啓)의 조어(措語)가 과중(過重)한 곳이 없지 않다. ‘이해(利害)를 바랐다.’는 등의 말은 바로 정외(情外)이기 때문에 다만 한때의 일을 그르친 것으로 참작해서 파직(罷職)한 것이다. 장희재(張希載)와 업동(業同)은 다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적(賊)인데도 옥사(獄事)를 느슨하게 해 용서하여, 마침내는 지난 겨울에 망극한 변을 불러 일으켰으니, 대계(臺啓)가 참으로 대간(臺諫)의 체모를 얻었다. 양 대신(兩大臣)11053)이 결코 그 밖의 판마음이 없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나, 한결같이 서로 버티는 것은 미안(未安)할 듯하니, 아울러 삭출(削黜)하라. 윤지완(尹趾完)은 한때 의견을 잘못 들어서 그렇게 된 것에 불과하니, 파직하는 것은 지나친 듯하다.”</p> <p>하니, 김상직이 또 본원(本院)의 전계(前啓)를 전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윤덕준(尹德駿)의 상소 가운데, ‘하필이면 친국(親鞫)해야 하는가?’라고 말하였는데, 친국은 오늘 처음 연 일이 아니다. 또 지난 겨울 옥사(獄事)는 밖에서 상변(上變)한 것이 아니라 대내(大內)에서 나온 것이며, 역시 외신(外臣)에게서 부쳐온 문서도 없었으니, 어떻게 그 단서(端緒)를 찾아서 알았겠는가? 윤덕준이 이런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도 몸소 대신(臺臣)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하지 못할 말을 창도(唱道)하여 뒷날 사특한 논의의 발단(發端)을 삼</p>	<p>非今日創開之事。 宜前冬獄事， 旣非自外上變， 出自內間， 亦無文書付之外臣， 何以鉤得其端緒乎？ 德駿非不知此， 而身爲臺臣， 倡此無謂之說， 欲爲他日邪論之嚆矢。 此而置之， 後弊無窮， 尹德駿罷職。 柳沆事， 大意則好， 而原疏旣未登徹， 臺臣亦未親見， 到今拿致， 有關後弊。 今姑置之， 而兇逆之伏法未久， 迭相救解， 至謂之誣獄。 護逆， 亦一逆也。 今後如有繼起此論者， 當論以逆律， 定式分付。” 相稷又言：“柳沆疏語， 極其怪妄， 則喉司之臣， 所當措辭啓稟， 以俟處分， 而反諉之於寫疏之不精， 姓字之不書， 任自退却。 請當該承旨從重推考。” 上從之。</p>
--	---	--

	<p>으려고 하였다. 이를 그냥 두면 후일의 폐해가 그지없을 것이니, 윤덕준은 파직하라. 유항(柳沆)의 일은, 대의(大意)는 좋지만 원소(原疏)를 이미 올리지 않았고, 대신(臺臣)도 또한 친히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에 이르러 잡아 오면 뒷폐단에 관계됨이 있다. 지금은 우선 그냥 두겠으나, 흉역(兇逆)이 복주(伏誅)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번갈아 서로 구해(救解)하여 심지어 이를 무옥(誣獄)이라 한다. 역적을 두둔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역적이니, 이후부터는 만일 이런 의논을 계속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역률(逆律)로써 논죄할 것이니, 정식(定式)으로 분부하라.”</p> <p>하니, 김상직이 또 아뢰기를,</p> <p>“유항의 상소한 말이 아주 괴망(怪妄)하니, 후사(喉司)11054)의 신하가 마땅히 말을 만들어 계품하여 처분을 기다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소(疏)를 베낀 것이 정(精)하지 못하고 성자(姓字)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여 제멋대로 물리쳤습니다. 청컨대, 해당 승지(承旨)를 종종 추고(從重推考)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숙종 36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康熙) 41년) 5월 22일(계묘) 3번째기사</p>	<p>진휼청(賑恤廳)에서 도민(都民)11201) 들이 굶주리는 걱정을 먼치 못한 것으로써 아뢰기를,</p> <p>“본청(本廳)에 남아있는 대미(大米) 2천 석(石)과 청전미(淸田米) 4천 석을 값을 매겨 팔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윤허하였다.</p>	<p>○賑恤廳以都民不免飢困之患，啓請本廳遺在大米二千石、淸田米四千石，定價發賣，允之。</p>

<p>숙종 37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 (康熙) 41년) 윤6월 18일(무술) 1번째기사</p>	<p>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이만성(李晩成)이 아뢰기를,</p> <p>“내수사(內需司)는 창설된 지 이미 오래 되어 비록 갑자기 없앨 수는 없으나, 제왕(帝王)은 사사로움이 없는 법인데 어찌 사사로이 간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후로는 궐내(闕內)에 혹 소용되는 바가 있으면, 호조(戶曹)나 병조(兵曹)로 하여금 곧바로 진상(進上)하게 할 필요없이, 승정원(承政院)에 하교(下敎)하여 가져다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내수사(內需司)의 모든 물건을 호조(戶曹)나 병조(兵曹)로 하여금 진상하게 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前例)가 없었는가?”</p> <p>하니, 이만성이 아뢰기를,</p> <p>“전례가 있고 없고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릇 궐내의 소용에 관계되는 물건은 승정원에 분부하여 진상하게 하는 것이,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p> <p>하고, 검토관(檢討官) 이탄(李坦)이 이어서 아뢰가, 임금이 마음에 두겠다고 답하였다.</p>	<p>○戊戌/召對玉堂官。侍講官李晩成曰：“內需司創設已久，雖不可猝罷，而王者無私，何必私藏？此後自內或有所用，不必使戶、兵曹直爲進排，而下敎政院取用似好。”上曰：“內需凡物，使戶、兵曹進排，曾無前例耶？”晩成曰：“前例有無，不須論，凡係內用之物，分付政院，使之進排，豈非美事乎？”檢討官李坦繼陳之，上以留意答之。</p>
<p>숙종 37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 (康熙) 41년) 8월 4일</p>	<p>영의정(領議政) 서문중(徐文重)이 차자(筭子)을 올려 사직(辭職)하고, 겸하여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답하기를,</p>	<p>○領議政徐文重陳筭辭職，兼進別單，答曰：“別單條陳，未知其一可行，而當令廟堂議處。卿其安心勿辭，俟</p>

(계미) 2번째기사

“별단(別單)에서 조목별로 아뢴 바를 일일이 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경(卿)은 마음을 편안히 하여 사직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려서 일을 보도록 하라.”

하였다. 그 별단(別單)에 이르기를,

“화성(火星)의 변고로 근년의 일에 대해 말해 본다면, 갑자년(11376)에는 병란(兵亂)이 있었고, 경술년(11377)에는 기근(飢饉)이 들었으니, 상위(象緯) 11378)가 점괘(占卦)로 드러난 조짐은 병란이나 기근이 같은 종류입니다. 금년 농사의 일은 현재 결말(結末)이 나지 않았지만, 흉년이 들 것은 이미 판연(判然)하고, 절도(竊盜)가 일어나는 근심이 오히려 그치지 않고 있으니, 훗날 임격정(林巨正)·송유진(宋儒眞) 11379)의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을 또한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위한 대책으로는 군사를 격려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는데,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또한 군사를 격려하는 근본입니다. 지난번 성명(聖明)께서 특별히 양역(良役) 11380)을 변통하겠다는 교지(教旨)를 내리셨으니, 백 년이 된 고질적인 폐단이 갑자기 없어지고 바뀌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그 편중된 곳에 대해서는 조금 변통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훈련 도감(訓練都監)의 세 군문(軍門)의 임오년(11381) 이전에 사망하거나 도망하여 여러 가지 탈로 군역(軍役)을 대신 정한 등류는, 오래되거나 가깝거나를 묻지 말고 모두 본영(本營)의 나머지 호(戶)의 군향보(軍餉保) 11382)와 대년(待年) 11383) 등 잡색군(雜色軍) 11384)으로 제(除)해 내서 충당하여 정하도록 하고, 연수(年數)를 한정해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징병(徵兵)하여 정하지 말게 하여서, 백성의 어려움을 조금 늦추어 주도록 하소서. 또한 도감(都監) 11385)에서 식년(式年) 11386)에 뽑는 포수(砲手)는 모두 호보(戶保) 11387)가 8백 명으로, 3년

間視事。”其別單曰：

火星之變，試以近事言之，甲子爲兵，庚戌爲飢，象緯占應，兵飢同類。今年穡事，時未出場，而其爲凶荒，概已判斷。竊發之患，尙未寢息，則其不爲異日之巨正、儒眞輩，亦何可保也？爲今日計，無急於勵兵安民，而安民又是勵兵之本。日者聖明，特下良役變通之教，百年痼弊，猝難剗革，而宜就其偏重處，稍加更變。禁衛營、御營廳、訓練都監三軍門，壬午以上物故逃亡雜頭代定之類，勿問久近，皆以本營餘戶、軍餉保、待年等雜色，除出充定，限年勿令本官簽定，少紓民力。且都監式年砲手，俱戶保八百，每三年分定上送者，所以代定元戶有頃之額，而皆備軍餉，以爲軍門需用之地，或停或減，以觀前頭更議，亦或一道矣。凡良役騎·步兵、工曹匠人、鷹師之代，勿論軍門屯·牙兵、諸宮家募入，其中軍保子枝及內外良役之類，許令查出，隨闕移定後，牙兵、屯軍，則本官卽以公私賤充定，而各軍門、宮家，毋得擅自撓改，以廣良丁之路。諸道軍

마다 나누어 정해서 올려보내는 자는 원호(元戶)에 탈이 있는 인원을 대신하여 정하는 바인데, 모두 군향(軍餉)을 준비하여 군문(軍門)에서 쓰는 물품의 토대로 삼아 혹은 정지하고 혹은 감하니, 다가오게 될 앞날을 살펴보고 다시 의논하는 것도 또한 혹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무릇 양역(良役)의 기병(騎兵)·보병(步兵), 공조(工曹)의 장인(匠人)·응사(鷹師)11388) 의 대신은 군문(軍門)의 둔전병(屯田兵)11389) ·아병(牙兵)11390) 을 물론하고 여러 궁가(宮家)에서 모집해 들여, 그 가운데 군보(軍保)의 자손과 내외(內外) 양역(良役)의 등류를 조사해내도록 허가하여,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옮겨서 정한 후에, 아병(牙兵)과 둔군(屯軍)은 본관(本官)에서 공천(公賤)·사천(私賤)으로 충당하여 정하도록 하되, 각 군문과 궁가(宮家)에서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하여 양정(良丁)의 길을 넓히도록 하소서. 여러 도(道)의 군안(軍案) 가운데 조정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외방(外方)에서 임의로 설치하게 하였는데, 경상도(慶尙道) 병영(兵營)의 별무사(別武士)11391) , 강원도(江原道) 감영(監營)의 무학(武學)처럼 이러한 등류가 매우 많아서 그 폐해가 끝이 없습니다. 마땅히 경외(京外)로 하여금 군안(軍案)을 정돈하게 하여, 각기 1건(件)을 비국(備局)과 본병(本兵)11392) 에 보내는 것을 일정한 제도로 삼도록 하소서. 진전(陳田)을 절수(折受)하는 것은 처음 임진 왜란(壬辰倭亂) 이후에 나왔는데, 이제 1백 2년에 이르렀습니다. 땅은 한정이 있는데도 절수(折受)는 끝이 없으며, 지금 남은 바는 주인이 없는 땅이 없는데도, 더러 빈 땅이라고 일컫고는 사람들의 여러 세대 동안 전하는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나주(羅州)의 제언(堤堰)은 백성 2만 명을 역사(役使)하여 3년 동안 쌓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산(稷山)의 포구(浦口)는 밭을 10여 리나 팠는데 2년이 지나도 이룩되지 않아서, 가는 곳마다 소란스럽고 길거리에서 소문이 떠들썩합니다. 해평(海坪)의 어량(漁梁) 같은 것까지도 절수(折受)하지 않은 것이 없어, 지나가는 선박이나 다니는 배, 고기를 낚는 배나 그물질하는 선박에서 모두 세(稅)를 거둡니다.

案，不繫於朝家，則外方任意設置，如慶尙兵營之別武士、江原監營之武學，此類甚多，其弊無窮。宜令京外，整頓軍案，各送一件于備局、本兵，以爲一定之制焉。陳田折受，初出壬亂之後，而今至百有二年。地有盡而折受不已，今之所餘，無非有主之土，而或稱空閑，而奪人累世傳土。羅州之堰，役民二萬，三築不成，稷山之浦，掘田十餘里，二年未就，到處騷然，道路喧藉。至如海坪、漁梁，無不折受，過船、行舟、釣艇、網船，竝以收稅。試以一事言之，花開只是岳陽一小水，以產銀口角，亦被折受。雖御供進上，亦至給錢，而始得入網，郡邑直下價米於導掌，莫敢抗衡，他事可推而知也。明朝皇庄、麗末私田之弊，終至於亡國而後已。不幸今日，正類於此。今若諉以歷朝故事，因循苟度，則將無以解倒懸之急，回已背之民心。凡所謂漁場斜水，無名之稅、不正之斂，勿論諸衙門、宮家、監·兵營所屬，一切革罷，此實山林、川澤與民共之之政也。是後左議政李世白覆奏筵中曰：“茲事

시험삼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화개(花開)는 다만 악양(岳陽)의 일 개 작은 냇물로서 은구어(銀口魚)가 나는데, 또한 절수(折受)를 당했습니다. 비록 임금께 바치는 진상(進上)일지라도 돈을 주어야만 비로소 그물질을 할 수 있으며, 군읍(郡邑)에서 곧바로 도장(導掌)11393)에게 대가로 주는 미곡(米穀)을 주었는데도 감히 대항하여 버티지 못하였으니, 그 밖의 일은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명(明)나라 조정의 황제(皇帝)의 전장(田莊)과 고려(高麗) 말기의 사전(私田)의 폐해는 끝내 나라를 망치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이 바로 이와 같으니, 지금 만약 역대 조정의 고사(故事)로써 핑계하여 고식적으로 구차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장차 위급한 처치의 급박함을 풀고 이미 배반한 민심(民心)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무릇 이른바 두 고을의 경계에 걸쳐 있는 어장(漁場)에 대한 명목 없는 세(稅)와 올바르지 못한 징수(徵收)는 여러 아문(衙門)·궁가(宮家)·감영(監營)·병영(兵營)에 소속된 바를 논할 것 없이 일체 혁파(革罷)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실로 산림(山林)·천택(川澤)을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정치입니다.”

하였다. 이후에 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이 연중(筵中)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이 일은 관계된 바가 작지 않으므로 경솔히 의논하여 정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구관 당상(句管堂上)을 차출(差出)하여 적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강구(講究)해 지극히 타당한 데로 귀착되도록 한 연후에야 실효(實効)를 바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가하고 이유헌(李濡)·이인엽(李寅燁)·민진후(閔鎭厚)를 구관 당상(句管堂上)으로 삼았다.

所關非細，有不容率爾議定。差出句管堂上，與之熟講便否，務爲至當之歸然後，可責實效。”上許之，以李濡、李寅燁、閔鎭厚爲句管堂上。

<p>숙종 37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 (康熙) 41년) 8월 8일 (정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함경도(咸鏡道)의 물선(物膳)11416) 과 강원도(江原道)의 삭선(朔膳)11417) 은, 특별히 내년 가을까지 한정하여 반을 감해서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 록 하라.” 하였으니, 대개 농사가 풍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p>	<p>○丁亥/上下敎曰：“咸鏡道物膳及江原 道朔膳，特爲限明秋減半，以示軫恤之 意。”蓋以年事失稔故也。</p>
<p>숙종 37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 (康熙) 41년) 8월 29 일(무신) 4번째기사</p>	<p>장령(掌令) 이기홍(李箕洪)이 여덟 조목의 상소를 아뢰기를, “첫째, 을해년(11479)·병자년(11480)·정축년(11481) 에 유망(流亡)하여 끊어 진 호(戶)는, 먹은 조곡(糶穀)을 모두 탕감(蕩減)해 주어서, 이웃이나 친족(親 族)을 침해하여 징수하는 괴로움이 없게 하도록 하소서. 둘째, 대동 면포(大同綿布)11482) 와 각종 군포(軍布)를 일체 다섯 새[五升] 35척(尺)으로 기준을 삼아서, 오래도록 바뀌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셋째, 군정(軍丁)으로서 노약자(老弱者)·도망자·사망자의 신포(身布)는 특별히 감해서 바치게 하여, 조정에서 인애(仁愛)로써 구휼(救恤)하는 혜택을 베풀도 록 하소서. 넷째, 공천(公賤)·사천(私賤)으로서 양처(良妻)의 소생은 남녀(男女)를 물론하 고 일체 어머니의 신역(身役)에 따르도록 하여, 영구히 준행할 법(法)으로 삼도 록 하소서. 다섯째, 내년 봄의 진휼(賑恤)하는 정책에서는 설죽(設粥)11483) 을 할 필요 없이, 그 바칠 세(稅)를 감해 주고 그 신포(身布)를 덜어 주어 침해하는 바가 없도록 하여 그 거처를 안주(安住)하게 해 주소서.</p>	<p>○掌令李箕洪陳八條疏。 一曰， 乙、丙、丁流亡絕戶， 所食糶 穀， 盡爲蕩減， 俾無隣疾侵徵之患。 二曰， 大同綿布及各樣軍布， 一切以五 升三十五尺爲準， 使無久遠變改之弊。 三曰， 軍丁老弱、逃故身布， 特爲蠲 捧， 以施朝家仁恤之澤。 四曰， 公私 賤良妻所生， 勿論男女， 一從母役， 俾 爲永久遵行之法。 五曰， 明春賑政， 不必設粥， 減其納稅， 蠲其身布， 無所 侵擾， 俾安其所。 六曰， 外方所請， 無容滯留， 斯速應報。 七曰， 修治軍 兵， 以爲陰雨綢繆之備。 八曰， 亟罷 內需司， 以示王者無私之意。 末乃曰， 正心術立紀綱， 爲恤民之本。 上下其疏于廟堂。 廟堂覆奏連糶蕩減 事以爲：“輒近蕩減， 殆至百萬餘石， 而實惠未必盡究， 奸弊無所不有， 有難</p>

	<p>여섯째, 외방(外方)에서 청하느 바는 지체됨을 허용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도록 하소서.</p> <p>일곱째, 군사를 정비하여 유사시의 환난에 대비하도록 하소서.</p> <p>여덟째, 내수사(內需司)를 속히 혁파(革罷)하여, 제왕은 사용(私用)이 없다는 뜻을 보이도록 하소서.”</p> <p>하고, 끝에는 이르기를,</p> <p>“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강(紀綱)을 확립하여,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근본으로 삼도록 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그 상소를 묘당(廟堂)에 내리니, 묘당에서 검토하여 아뢰기를,</p> <p>“포곡(逋穀)·적곡(糴穀)을 탕감하는 일은, 근래에 탕감한 것이 거의 백만여 석(石)에 이르는데도, 실제 혜택은 반드시 다 미치지 못하므로 간소한 폐단이 있지 않을 수 없으니, 가볍게 의논하기는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요청은 해당 관청과 해조로 하여금 서로 헤아려서 아뢰어 시행하게 하소서.”</p> <p>하니, 윤허하였다.</p>	<p>輕議。 其餘請令該廳該曹， 商確稟行。” 允之。</p>
<p>숙종 37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p>	<p>영의정 서문중이 승지의 돈유로 인하여 차자를 올려 사직하면서, 심중에 생각했던 것을 덧붙여 아뢰기를,</p>	<p>○領議政徐文重， 因承旨敦諭， 陳筭辭職， 附陳所懷言：“大禮不遠， 賜賚之</p>

<p>(康熙) 41년) 9월 8일 (병진) 2번째기사</p>	<p>“대례(大禮)의 시일이 멀지 않았으니, 물품을 하사(下賜)함과 유사(有司)를 대접함이 비록 절제는 있으나, 마땅히 줄여서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궁중으로부터 아래로 복어(僕御)들까지 행차(行次)의 꾸밈과 주식(酒食)의 차림에 있어서, 만일 억제하지 않고서 혹은 너무 사치하게 되면 실로 흉년을 만나 아끼고 줄이는 과정에 미흡함이 있을 것이니, 삼가 원하건대, 특별히 살피시고 유념하시어 엄하게 단속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답하기를,</p> <p>“차자 끝에 진계(陳戒)한 것은 내가 마땅히 유의할 것이니, 경은 시사(時事)를 생각하여 빨리 사직한다는 서찰은 그만두라.”</p> <p>하였다.</p>	<p>恩、有司之供，雖有舊例，宜省不宜濫。至於內自宮禁，下至僕御輿服之飾、酒醪之具，若不裁抑，或至侈汰，則實有歉於飢年節省之工。伏願特垂省念，嚴加戒飭。” 答曰：“筭末陳戒，予當留意。卿其須念時事，亟斷巽牘。”</p>
<p>숙종 37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 (康熙) 41년) 9월 10 일(무오) 2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下教)하기를,</p> <p>“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같이 여기는 법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금년의 홍수의 재난(災難)은 옛날에 없던 것으로, 능곡(陵谷)이 뒤바뀌고 전주(田疇)가 쓴 듯하여, 추수(秋收)할 때가 되었으나 살아갈 길이 없으니, 내년 봄에 굶어 죽는 자가 많을 것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마치 고통이 내 몸에 있는 것 같다. 흉년에 진휼(賑恤)하는 계획은 방백(方伯)에 달려 있으니, 방백이 만약 내가 주야로 근심하는 것을 본받아 수령(守令)들을 신칙(申飭)하고 진정(賑政)에 힘써서 잘 무마하여 편안하게 하되, 진실로 백성을 편하게 하는 데 관계되는 일을 조목</p>	<p>○上下教曰：“國以民爲本，民以食爲天，而不幸今年水潦之災，振古所無，陵谷變易，田疇蕩然，秋成已屆，生意索然，明春填壑，不言可想。念及于此，若恫在躬。儉歲調賑之策，在於方伯，方伯若體宵旰之憂，申飭守令，孜孜賑政，撫摩安集，苟涉便民，劃卽條奏，則庶有着實之效。以此下諭于諸道監司，而至於畿甸根本之地，理宜優恤，前頭災實，分等啓聞之後，別爲</p>

	<p>(條目)을 마련하여 아뢰면, 거의 착실한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니, 이로써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하유(下諭)하도록 하라. 근본이 되는 기전(畿甸)의 땅에 이르러서는 도리상 우휼(優恤)해야 할 것이니, 앞으로 재실(災實)을 분등(分等)하여 계문(啓聞)한 후에 별도로 부역(賦役)을 감해 주어서, 내가 백성을 보기를 질병(疾病)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뜻을 보이라.”</p> <p>하였다.</p>	<p>蠲役，以示予如傷之意。”</p>
<p>숙종 37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 (康熙) 41년) 10월 20 일(정유)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우의정 신완(申琬)이 올해 경기(京畿) 지방의 흉년이 든 상황을 진달하고, 물가의 재해(災害)가 더욱 심한 곳은 전세(田稅)인 대동미(大同米)를 양감(量減)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의 말이,</p> <p>“내 뜻이 진실로 이와 같고 대신들의 말도 또한 그러하니, 봄 대동미 6두(斗)에서 4두를 감해 주라.”</p> <p>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p> <p>“전가 사변(全家徙邊)한 무리는 죄명(罪名)이 매우 무거워서, 비록 대사(大赦)가 있더라도 또한 거론(擧論)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사면(赦免)이 있는 뒤에 승지(承旨) 이세재(李世載)의 주달(奏達)로 인하여, 원호(元戶)가 물고(物故)한 경우 그 가족을 풀어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범죄(犯罪)한 본인으로 말하더라도, 그 죄가 본래 죽일 만한 형률(刑律)이 아니고, 더욱이 그 가족이 전부 사변(徙邊)당하여 원호가 물고한 뒤에도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게 되니, 법의(法意)로 헤아려 보더라도 혹 너무 무거운 듯합니다. 지금 흉년으로 반드시 굶주려서 구렁에 빠져 죽을 환난(患難)이 많을 것이니, 이번의 대사(大赦)</p>	<p>○丁酉/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申琬，陳今年畿甸失稔狀，請水邊被災尤甚處，量減其田稅大同，上曰予意固如此，大臣之言亦然，春大同六斗之內，減其四斗。” 刑曹判書閔鎭厚曰：“全家徙邊之類，罪名甚重，雖有大赦，亦不擧論，而頃年赦後，因承旨李世載所建，元戶物故者，其家屬，有放送之事。 雖以身犯者言之，其罪本非死律，況其家屬，渾被徙邊，元戶物故之後，猶未蒙還，揆以法意，似或太重。 目今凶歉，必多填壑之患，當此大赦，特命放釋，實合曠蕩之典。” 上曰：“元戶物故者，竝放送。” 琬曰：“近來虎患滋多，西郊至近之地，至有嚙殺人者。 請令三軍門砲手，因御供山猪獵行，兼捕惡虎。” 上曰：“申飭軍門，使之捕捉。”</p>

	<p>를 당하여 특별히 석방(釋放)을 명하시면, 진실로 특사(特赦)의 은전(恩典)에 합당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원호(元戶)가 물고한 경우 모두 놓아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 신완이 말하기를,</p> <p>“근래에 호환(虎患)이 점점 많아서 서쪽 교외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도 사람을 물어 죽인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청컨대, 삼군문(三軍門)의 포수(砲手)로 하여금 어공(御供)할 산돼지를 사냥 할 때 겸하여 사나운 호랑이를 잡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군문(軍門)을 신칙(申飭)하여 잡게 하라.”</p> <p>하였다.</p>	
<p>숙종 37권, 28년 (1702 임오 / 청 강희 (康熙) 41년) 12월 10 일(병술) 2번째기사</p>	<p>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p> <p>“금년의 농사가 흉년이 들어 경기(京畿)의 대동미(大同米)를 네 말[四斗] 감한 일이 특별한 분부에서 나왔는데, 유독 도민(都民)만이 평등한 은택을 입지 못했으니, 청컨대 도하(都下) 방민(坊民)의 장빙미(藏氷米)11539) 를 한결같이 작년의 예(例)에 따라, 호조(戶曹)·진청(賑廳)에서 분급(分給)하여 도민(都</p>	<p>○備邊司啓曰：“今年農事失稔，京畿大同四斗之減，出於特教，獨都民未蒙一視之澤，請都下坊民藏氷米，一依昨年例，自戶曹賑廳分給，以除都民一分之弊。”允之。</p>

	民)의 조그마한 폐(弊)라도 덜게 하소서.” 하니, 윤허(允許)하였다.	
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1월 12 일(무오) 2번째기사	충청 감사(忠淸監司) 김연(金演)이 사패(辭陞)하니, 임금(引見)하였다. 김연이 아뢰기를, “감사의 수하(手下)에 친병(親兵)이 없으면 위급할 때에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본도(本道)의 속오군(束伍軍)11566) 2만 2천여 명 가운데 공주(公州) 속오군 4천여 명을 감영(監營)에 이속(移屬)하고, 병사(兵使)는 4영(營)을 나누어 5영으로 만든다면, 또한 부족한 근심이 없을 듯합니다. 청컨대, 이에 의하여 변통하소서.” 하고, 또 양진(楊津)·공진(貢津)·안흥(安興) 세 창(倉)의 저장한 곡식을 얻어 재해를 더욱 심하게 입은 고을을 진구(賑救)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忠淸監司金演辭陞， 上引見。 演曰：“監司手下， 無親兵， 緩急無可恃。 本道束伍二萬二千餘名中， 以公州束伍四千餘名， 移屬監營， 兵使則以四營分作五營， 亦可無不足之患。 請依此變通。” 又請得楊津、貢津、安興三倉儲穀， 賑救尤甚被災邑， 上竝令廟堂稟處。
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2월 10 일(을유) 1번째기사	정언(正言) 조권(趙權)이 상소하기를, “우리 나라의 당화(黨禍)는 그 유래가 오래 되었는데, 한편 사람이 또 반쪽으로 나누어져서 그 동류가 아니면 백이(伯夷)·숙제(叔齊)를 가리켜 탐욕이 많다고 하며, 그때를 얻으면 아무리 못난 자라도 현달(顯達)하게 되어서, 위로는 경재(卿宰)로부터 아래로는 서관(庶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인 싸움에는 용감하고 공사(公事)에는 나약합니다. 조정을 여관같이 여기고 벼슬길을 하나의 전쟁관으로 만드니, 신은 누가 군자(君子)이고 누가 소인(小人)인지, 군자가 소인을 공격하는 것인지 소인이 군자를 공격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후의 국면(局面)이 여러 번 바뀌어서 국맥(國脈)이 더욱 손상되었는데, 갑(甲)이 나아가면 을(乙)이 물러가 그 넘어뜨리고 빼앗음을 마음대로 하	○乙西/正言趙權上疏曰： 我國黨禍， 其來已久， 一邊之人， 又分一半， 非其類則指夷、齊爲貪， 得其時則雖闢茸亦顯上， 自卿宰下至庶官， 率皆勇於私鬪， 懦於公事。 朝廷比如逆旅， 官路作一戰場， 臣未知何者爲君子， 何者爲小人。 君子攻小人歟？ 小人攻君子歟？ 前後局面累換， 國脈愈傷， 甲進乙退， 任其傾奪， 加膝墜淵， 好惡太偏。 殿下於正朝廷之道， 旣無

여, 사랑하면 진용하여 무릎을 포개듯이 하고 미워하면 물리쳐서 못에 떨어뜨리듯이 하여 좋아하고 미워함이 너무 치우칩니다. 전하께서 조정을 바로잡는 방법에 이미 성실한 공부가 없기 때문에, 전하의 진관(銓官)이 된 자도 받들어 행하는 정성이 없어서 주의(注擬)하는 데에 사사로운 뜻이 혹 많고, 뽑고 버리는 데에는 색목(色目)11595) 이 드러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실한 노력을 더욱 힘써서 치우침이 없이 극(極)11596) 을 세우시고, 인하여 전조(銓曹)의 관원을 꾸짖어 주의(注擬)를 받드시 공정하게 하시면, 시기하고 모함하는 화(禍)가 혹시 나라를 망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간(諫)하는 말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하는 말을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옥(科獄)의 죄인은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벼우며, 소(炤) 등의 연좌(緣坐)는 왕법(王法)이 지극히 중한데 해가 지나도록 서로 버티면서 아직 윤택해 따르지 아니하시니,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쓰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하는 말을 듣는 데에도 정성스럽지 못하십니다. 신이 들으니, ‘절제하여 쓰면 재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재물을 물쓰듯이 천하게 써서 궁가(宮家)에 주는 것이 절도가 없고 별군직(別軍職)의 상전(賞典)이 너무 지나쳐서, 납약(臘藥)11597) 을 더 조제하여 약값이 만냥(萬兩)에 가깝고, 진상하는 청죽(靑竹)은 민폐(民弊)가 적지 않으니, 삼가 원하건대 절용(節用)하는 방법에 뜻을 두소서. 기강(紀綱)은 사람의 원기(元氣)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근래에는 체통이 서지 아니하고 명령이 행해지지 아니하여, 조정 신하가 녹(祿)을 먹으면서 일에 태만하여 다만 자신이 편할 것만 생각하고, 수령(守令)은 스스로 좋아하고 싫어함을 골라서 임의로 나아가고 물리가며, 민속(民俗)은 사사로운 도살(屠殺)이 낭자하고 신사(神祀)에는 사람이 가득하여 떠들썩하며, 의복은 참람하고 사치하며 혼수(婚需)가 분수에 지나칩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고질의 폐단을 깊이 근심하시어 백성과 신하에게 칙려(勅勵)하여, 나라의 기강을

誠實之工，故爲殿下銓官者，亦無奉行之誠，注擬而私意或勝，取舍則色目乃顯。伏願益懋誠實之功，無偏建極，仍責銓曹之官，注擬必公，則傾軋之禍，或不至於亡國矣。臣聞聽諫非難，用諫爲難。科獄罪人，萬戮猶輕，炤等緣坐，王法至重，而經年相持，尙不允從，殿下非惟不誠於用諫，亦不誠於聽諫也。臣聞節以制度，不傷財不害民。竊觀殿下，用財如水，宮家賜與無節，別軍職賞典太濫，臘藥加劑，價至近萬，進上靑竹，民弊不貲。伏願加意於節用之道。紀綱，比人元氣，而近來體統不立，命令不行，朝臣食焉怠事，惟懷自便，守令自擇好惡，任意去就，民俗則私屠狼藉，神祀喧闐，衣服僭侈，婚需過濫。伏願深軫痼弊，勅勵民工，振王綱而申法令焉。惟治亂在庶官，而我國官人之道，門閥是先，形勢子弟，偶占科第，不問才否，汲汲登庸。向者一學士，不識《史略》文字，憲臣借述避嫌啓辭，至今傳笑。比年以來，躁競成風，以黨論爲進取之階，以賂遺爲善仕之餌，宜乎人才之難得，而官方之日壞也。承宣之

세우고 법령을 엄하게 하소서. 치란(治亂)은 서관(庶官)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길은 문벌(門閥)만을 먼저 보니, 형제있는 자제(子弟)는 우연히 과거(科擧)에 합격하면 재주가 있고 없음을 묻지 아니하고서 올려 쓰기에 급급합니다. 지난번 어떤 한 학사(學士)는 《사략(史略)》의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여 헌신(憲臣)이 차작(借作)해 주었는데, 피혐(避嫌)한 계사(啓辭)를 지금까지 전하며 웃음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남과 조급히 권세를 다투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당론(黨論)으로 진취(進取)하는 계단을 삼고 뇌물로 좋은 벼슬을 하는 미끼를 삼으니, 인재를 얻기가 어렵고 관기(官紀)가 날마다 허물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승선(承宣)11598)의 의망(擬望)에는 대부분 사람을 고르지 않아서, 우패(愚悖)하고 무식한 윤성교(尹誠教)와 허윤(許琬)도 참여하였고, 감사(監司)는 수령의 강령(綱領)인데 조태동(趙泰東)과 같이 비방(誹謗)이 있고 간국(幹局)이 없는 자도, 자금(資級)이 서로 맞아 형세를 중히 여김을 인하여 외람되게 큰 지방을 담당하였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수령을 골라서 임명하도록 신칙(申飭)하는 교지가 여러 번 내려졌는데, 장죄(贓罪)를 범하고도 요행히 형벌을 면한 자를 문득 조용(調用)하는 일이 있으며, 청렴 결백하면서도 다만 형세가 없으면 올려 발탁하는 은전을 입지 못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같은 당은 쓰고 같지 않으면 배척하는 폐단을 엄하게 없애며, 취하고 버리는 것을 공정하게 하며, 남과 조급히 권세를 다투는 것을 억제하고 실덕(實德)이 있는 사람을 힘써 뽑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뢰어 경계함이 자못 간절하니 어찌 체념(體念)하지 않겠는가? 다만, ‘군자(君子)가 소인(小人)을 공격하는지 소인이 군자를 공격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望，多不擇人，如尹誠教之愚悖無識，許琬之行己卑諂，亦得與焉；監司，守令之綱領，而如趙泰東有謗議，無幹局者，亦因資級之相當，形勢之顧藉，冒當雄藩，豈不寒心？守令擇差，屢降申飭之教，而贓汚而幸逭刑章者，旋有調用之舉，廉潔而苟無形勢，則未蒙陞擢之典。伏願申飭銓曹，痛祛同異，公於取舍，抑躁競而務取實德之人焉。

答曰：“陳戒殊切，可不體念？第抑未知君子攻小人，小人攻君子等語，其意所在，有未可知，而上自卿宰，悉歸之於勇於私鬪，有若不念國事者然，公平之論，果若是乎？至於侵斥嶺伯，尤其是意外，予實未曉也。”

	<p>는 등의 말은 그 뜻을 둔 바를 알지 못하겠으며, 위로 경재(卿宰)로부터 모두 개인 싸움에 용감하다는 것으로 돌려서 나라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였으니, 공평한 의논이 과연 이와 같은가? 영백(嶺伯)11599) 을 침범해 배척하는 데 이르러서는 더욱 뜻밖이어서 나는 실로 깨닫지 못하겠다.”</p> <p>하였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3월 5일 (경술)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을 인견하였다. 이보다 먼저 왜역(倭譯) 한천석(韓天錫) 등의 배가 침몰된 후 7일 만에 왜인(倭人)이 동래부(東萊府)에 보고하니, 부사(府使) 박태항(朴泰恒)이 그들이 늦게 보고한 것에 노여워하고, 또 시체(屍體)와 기물(器物)을 건져 낸 것이 없다고 하여 혹시 속임이 있는가 의심하여 왜관(倭館)을 지키는 왜인을 힐책(詰責)하기를 몹시 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중(館中)의 늪미(廩米)와 차왜(差倭)11625) 의 잔치와 대관왜(代官倭)11626) 의 개시(開市)를 철폐하여 그들을 곤궁하게 하였는데, 수십 일이 지나자 왜인이 비로소 사서(私書)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8명의 시체를 건져 내어 관곽(棺槨)과 염습(斂襲)을 갖추고, 따로 호시(護屍)하는 차왜(差倭)를 정하여 바야흐로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박태항은 그래도 믿지 않고서 독촉하여 기한을 정해 운반해 오게 하였는데, 여러 시친(屍親)11627) 이 왜인의 보고가 온 것을 듣자 관문(館門)에 뛰어 들어가서 8명의 왜인을 구타해 상해하였다. 박태항이 약간 꾸짖어 금하는 뜻을 보이고 장계(狀啓)로 조정에 상세히 아뢰었는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말하기를,</p> <p>“풍파로 배가 침몰되었으니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처지인데, 동래 부사가 의심한 것은 매우 너무 지나친 일이다. 또 저들이 이미 8명의 시체를 건져 왔으니 순풍(順風)을 타고 나올 것은 조만간의 일인데, 어찌 비선(飛船)으로</p>	<p>○庚戌/引見大臣、備局諸臣。 先是，倭譯韓天錫等，船敗後七日，倭人報于萊府，府使朴泰恒，怒其稽報，且以屍體、器物之無拯出者，疑或有詐，詰責館守倭甚急，撤館中廩米及差倭宴代、官倭開市以窘之，居數十日，倭始持私書來言：“拯得八屍，具棺槨、斂襲，別定護屍差倭，方乘船候風。”云。泰恒猶不之信，督令刻期運來，諸屍親聞倭報至，突入館門，打傷三倭。泰恒略示呵禁，以狀具聞于朝，至是，上謂筵臣曰：“風濤敗溺，非人力可容之地，萊府致疑，殊涉太過。且彼既拯得八屍，乘風出來，自是早晚事，何必以飛船，連續督迫乎？彼人亦將笑其顛倒矣。須速回諭，勿復苛責。”禮曹判書金鎮龜曰：“頃日對馬舊島主送別單，朝廷例有回賜，朴泰恒報于臣曹曰：‘彼送新銀，我國回賜，亦宜計劣以</p>

연달아 독촉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 사람들도 그 허둥거림을 비웃을 것이니, 모름지기 빨리 회유(回諭)하여 다시는 가혹하게 꾸짖지 말게 하라.”

하니, 예조 판서 김진귀(金鎭龜)가 아뢰기를,

“전일에 대마도(對馬島)의 구도주(舊島主)가 별단(別單)을 보냈으므로 조정에서 전례대로 회사(回賜)함이 있었는데, 박태항이 신의 예조(禮曹)에 보고하기를, ‘저들이 신은(新銀)을 보냈으니, 우리 나라의 회사(回賜)도 마땅히 나쁜 것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고 하기에, 신이 그 말에 의하여 수량을 감해 보내면서 시험 삼아 적당하게 헤아려서 내어주게 하고, 이내 비교해 다룰 필요는 없다는 뜻을 언급하였습니다. 박태항이 바로 준 뒤에 별폭(別幅)이 가자, 왜인이 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전에 비해 아주 적으냐?’고 하므로, 답하기를, ‘너희 도주(島主)가 보낸 것이 구은(舊銀)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왜인이 또 말하기를, ‘신은(新銀)을 통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회사(回賜)를 어찌 감할 수 있는가?’라고 하므로, 박태항이 곧 전에 간 별폭(別幅)을 고쳐서 주고도 조정에 품의(稟議)하지 아니하였으니, 처리하는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 국가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마땅히 견책(譴責)을 가해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신완(申琬)은 말하기를,

“예물을 주는 것은 일이 중대한 것인데, 마음대로 고쳐 주었으니 후일의 폐단에 관계되며, 또 왜관(倭館)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법이 지극히 엄한데, 시친(屍親)의 정리(情理)가 비록 애통하고 박절할지라도, 어찌 감히 마음대로 들어가서 먼 나라 사람을 구타해 상하게 하겠습니까? 변경 신하가 능

給.’ 臣依其言, 減送, 試令量宜出給, 仍及不必爭較之意。 泰恒徑給後去別幅, 倭怒曰: ‘何比前太少乎?’ 答云: ‘汝島主所送, 非舊銀, 故如此.’ 倭又曰: ‘新銀通行已久, 回賜安可減也?’ 泰恒即改給前去別幅, 而亦不稟議于朝, 處事顛錯, 大損國體。 宜加譴責。” 右議政申琬曰: “禮物贈遺, 事係重大, 任意改給, 有關後弊。 且倭館闖入之禁至嚴, 屍親情理雖痛迫, 何敢擅入, 打傷遠人乎? 爲邊臣者, 不能禁防, 狀本中只曰嚴責云者, 實甚踈緩。” 大司諫李健命曰: “我人闖入倭館, 而不之嚴徵, 則藉令彼人, 擅出作挈, 亦何以禁之?” 上曰: “不稟朝廷, 徑給禮物, 屍親闖入, 亦不禁戡, 朴泰恒拿問定罪。” 琬請還許供給及開市, 以示寬大之意, 從之。 刑曹判書閔鎭厚曰: “屍親闖入者, 宜令本道, 查出勘罪。” 許之。 泰恒, 竟坐奪告身。 鎭龜曰: “【鎭龜時兼判義禁】 李時夏屢受刑, 無他辭, 但曰: ‘訊杖戡與世基則可知。’ 以獄體言之, 此固然矣, 第我國待朝土有別。 金戩既登科從宦, 不宜容易加刑, 且本府刑杖至輕, 難以

	<p>히 금방(禁防)하지 못하고 장본(狀本)가운데 단지 이르기를, ‘엄하게 꾸짖었다.’고 한 것은 진실로 매우 허술하고 느슨합니다.”</p> <p>하고, 대사간(大司諫) 이견명(李健命)은 말하기를,</p> <p>“우리 나라 사람이 왜관(倭館)에 함부로 들어갔는데도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 하였으니, 가령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와서 난동을 일으키더라도 어떻게 금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조정에 품(稟)하지 않고서 예물을 바로 주었고, 시체의 친족이 왜관에 함부로 들어간 것 또한 금지시키지 못하였으니, 박태항을 나문(拿問)하여 징죄하라.”</p> <p>하였다. 신완이, 공급(供給)과 개시(開市)를 도로 허가하여 관대한 뜻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p> <p>“시친(屍親)으로 왜관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마땅히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해 내어 죄를 정하게 해야 합니다.”</p> <p>하니, 이를 허락하고, 박태항은 마침내 죄를 받아 고신(告身)을 빼앗겼다. 김진귀(金鎭龜) 【김진귀는 이 때 판의금(判義禁)을 겸하였다.】가 말하기를,</p> <p>“이시하(李時夏)는 여러 번 형(刑)을 받았으나 다른 변명의 말이 없고 다만</p>	<p>取服。 通語趙大壽之狀， 戩、時夏已自服， 則兩人之罪， 不以一試官兩試官而有輕重焉。 戩雖吐實， 道一已死， 無復施罪之地， 臣謂宜速收殺。 乞詢諸臣。” 琬曰：“此獄端緒難明， 奄閱累歲， 今無憑問之階。 酌處爲宜。” 兵曹判書李濡等， 咸以爲可， 獨副提學金鎭圭、掌令朴見善以爲不可。 鎭龜曰：“諸囚中沈益昌臨科， 見道一事， 與戩事自是別款， 李磻教順億勿引道一之說頗繁， 而但順億， 追後發告， 有難的信， 餘皆枝葉， 宜各以其罪罪之矣。” 上曰：“道一身死， 無路推覈， 詳考文案， 罪狀已著與未著者， 竝稟決。”</p>
--	--	--

말하기를, ‘김전(金戩)과 유세기(兪世基)를 신장(訊杖)하면 알 수 있다.’고 하니, 옥체(獄體)로써 말하면 이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조사(朝士)를 대우함이 특별함이 있는데, 김전(金戩)은 과거(科擧)에 올라 벼슬에 종사하니 쉽사리 형을 가할 수 없으며, 또 본부(本府)의 형장(刑杖)이 지극히 가벼워서 승복(承服)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조대수(趙大壽)에게 말을 통한 형상은 김전과 이시하가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두 사람의 죄는 한 시관(試官)이나 두 시관이냐로 경중(輕重)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김전은 비록 일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오도일(吳道一)이 이미 죽었으므로 다시 죄를 시행할 곳이 없으니, 신은 마땅히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컨대,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소서.”

하고, 신완은 말하기를,

“이 옥사(獄事)는 단서를 밝히기가 어렵고 문득 여러 해를 넘겨 지금 빙문(憑問)할 길이 없으니, 참작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이유(李濡) 등은 모두 옳다고 하였으나, 유독 부제학(副提學) 김진규(金鎭圭)와 장령(掌令) 박견선(朴見善)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김진규가 말하기를,

“여러 죄수 가운데 심익창(沈益昌)이 과거(科擧)에 임하여 오도일을 본 일은, 김전(金戩)의 일과는 절로 별개의 사항이 되고, 이현(李璲)이 정순억(鄭順億)에게 ‘오도일을 끌어대지 말도록 시켰다.’는 말은 자못 긴요한 것인데도, 다만 정순억이 추후(追後)에 발고(發告)하였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지엽(枝葉)이므로 마땅히 각각 그 죄로써 처벌해야 합니다.”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오도일이 죽어서 추핵(推覈)할 길이 없으니, 문안(文案)을 상고하여 죄상(罪狀)이 이미 드러난 것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아울러 품결(稟決)하라.”</p> <p>하였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3월 7일 (임자) 1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김진규(金鎭圭)가 강의(講義)하다가, ‘하오(夏五)’11631) 에 이르러 말하기를,</p> <p>“하오(夏五)란 성인(聖人)이 의심스럽다고 전하는 글입니다. 공자(孔子)는 성인(聖人)으로서 노서(魯書)를 정리하면서, 혹은 줄이고 혹은 보태었으니 어렵고 의심스러움이 없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한 글자도 감히 더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근엄(謹嚴)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윤희(尹鑄)가 《중용(中庸)》의 장주(章註)를 마음대로 고쳤는데, 그때 윤희가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둑질한 것을 사람들이 혹 믿었으나, 홀로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만이 크게 배척하여 끊게 되었습니다. 윤희가 원망을 품고서 송시열을 없는 사실을 꾸며서 모함하였는데, 죄악이 드러난 뒤에 이르러 처음에 의심하고 믿던 자가 바야흐로 송시열의 선견(先見)을 탄복하였습니다. 이는 사림(士林)이 일컫는 바인데, 마침 문의(文義)11632) 를 인하여 의심스러움을 빠뜨리지 않고서 억지로 해석하는 해(害)가 이와 같음을 감히 아뢰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는데, 이때 박세당(朴世堂)의 경서(經書)를 헐뜯은 학설이 사림(士林) 사이에 크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김진규의 말이 이와 같았다. 김진규가 또 아뢰기를,</p>	<p>○壬子/御晝講。參贊官金鎭圭講義至夏五曰：“夏五者聖人傳疑之辭也。孔子以聖人，筆削魯書，或損或益，似若無難，而可疑者，猶不敢增一字，其謹嚴之意，可見矣。尹鑄擅改《中庸》章註。其時鑄欺世盜名，人或信之，獨先正臣宋時烈，大加斥絕。鑄含怨構陷時烈，及罪惡彰著之後，始之疑信者，方服時烈先見。此乃士林所稱道者，適仍文義，敢陳不闕疑之害如此。”上然之。時，朴世堂毀經之說，大播士林間，故鎭圭之言如此。鎭圭又曰：“尊周攘夷，卽《春秋》大旨也。在昔孝廟留藩中，值清兵之犯遼東，下書於故參議張善沖有曰：‘此人入寇中朝。’伊時聖祖處何等地方，而乃如是直書？其書法之嚴正，與《綱目》大書魏入寇，同符。蓋聖祖之心，只</p>

“중국[周]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은 바로 《춘추(春秋)》의 큰 뜻입니다. 예전에 효종(孝宗)께서 심양(瀋陽)에 억류(抑留)되었을 때 청(淸)나라 군사가 요동(遼東)을 침범하는 것을 보자, 고(故) 참의(參議) 장선충(張善沖)에게 글을 내렸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중조(中祖)11633) 에 입구(入寇)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때 성조(聖祖)11634)께서 어떤 처지에 처하였는데 이와 같이 사실대로 기록했겠습니까? 그 글쓰는 법의 엄하고 바름이 《강목(綱目)》의 ‘위(魏)가 입구(入寇)하였다.’고 크게 쓴 것과 같습니다. 대개 성조(聖祖)의 마음은 다만, 군신의 대의(大義)는 천경지위(天經地緯)11635)가 되는 것만 알고, 이해 화복(利害禍福)은 헤아리지 않으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이 어찰(御札) 뒤에 발문(跋文)을 써서 찬양(贊揚)하였으니, 성상께서 만약 유찰(遺札)을 보시면 감동하여 흥기(興起)되는 보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집에 가서 가져오기를 명하였다. 장선충(張善沖)의 아들 장완(張完)이 올리니, 드디어 대궐 안에 머물러 두었다. 지사(知事) 김구(金構)가 면대하여 진휼(賑恤)하는 임무를 사양하기를,

“떠도는 거지를 본토로 보내는 일은 대계(臺啓)로 인해 중지되었으나, 또 품처(稟處)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대저 이 무리를 본토로 돌려 보내면 바야흐로 안정될 희망이 있고, 만약 서울 안에 머물러 두고 구제하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이 모여 들어서 주인과 나그네가 함께 곤궁할 것입니다. 죽(粥)을 마련하는 것은 비록 옛 규정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오염되기여기(癘氣)11636)가 성하고 만연되어 신해년(11637) 대역(大疫)과 같이 될 것이니, 경계할 만합니다. 지금 거지 가운데 부기(浮氣)가 있는 자는 몇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몸에는 완전한 옷이 있고 얼굴에는 굶주린 빛이 없으

知君臣大義之爲天經地緯，不計禍福利害故也。是以宋時烈題跋御札之後而贊揚之。聖上若觀覽遺札，則必有感發興起之效矣。”上命取諸其家。善沖子完呈進，遂留中。知事金構，面辭賑恤之任曰：“流丐領送事，因臺啓中輟，又有稟處，蓋此輩還歸本土，方有安集之望。若留賑京中，則遠近盆集，主客俱困。設粥雖有古規，群居薰染，癘氣熾蔓，如辛亥大疫可戒也。目今流丐中，有浮氣者數人，餘皆身有完衣，面無饑色，不必設粥。至於乾糧，尤有虛實相蒙之弊，臣未見其便也。商鞅三尺之木，民亦信從。朝家既令緣路續食，撫摩還集，而恐動之言，噂沓而起，至以沈船島中爲恐。今者驅迫之說，又出於諫臣，將益復騷繹矣。臣朦無知識，乞遞之外，更有何策？”上命勿過辭，商確更稟。其後構與李寅燁，俱入對，構又曰：“留賑之害，臣既備陳，終不若領送之爲便宜。從其自願，以觀去留，抄壯實及道里且近者，續食領歸，不願歸者，將分所設粥矣。”寅燁曰：“刷還之類，宜令該邑，給糧勸農，而第聞饑民所

니 죽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마른 양식에 이르러서는 더욱 허실(虛實)을 서로 속이는 폐단이 있으니, 신은 그것이 적당한 지 모르겠습니다. 상양(商鞅)이 석 자의 나무를 옮기라는 명을 백성들이 또한 믿고 따랐는데(11638), 조정에서 이미 가는 길에 먹는 것을 잇달아 주게 하고 무마하여 돌아가 살도록 하였는데도 공동(恐動)하는 말이 여러 입에서 일어나서, ‘섬 가운데서 배를 침몰시킨다.’는 것으로 공동 시키고, 이제는 쫓아낸다는 말이 또 간신(諛臣)에게서 나왔으니, 장차 더욱 소란할 것입니다. 신은 암매하고 지식이 없으니, 직책을 바꾸기를 청하는 외에 다시 무슨 계책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상량(商量)하여 다시 품(稟)하기를 명하였다. 뒤에 김구가 이인엽(李寅燁)과 함께 입대(入對)하였는데, 김구가 또 말하기를,

“머물러 두고 구제하는 해(害)를 신이 이미 상세히 진달하였는데, 끝내 영솔해 보내는 것보다 더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원에 따라 가고 머무는 것을 보아 그 가운데 건강한 자와 길의 거리가 또 가까운 자를 뽑아서 식량을 계속해 주어서 거느리고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장소를 나누어 죽을 마련하게 하소서.”

하고, 이인엽은 말하기를,

“쇄환하는 무리에게는 마땅히 그 고을로 하여금 식량을 주고 농사를 권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굶주린 백성이 호소하는 바를 듣건대, 부역(賦役)에 시달려서 흩어지고 떠나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돌아간 뒤에는 고을 관원이 또 침해하고 꾸짖을 것이라 하니, 이것이 돌아가기 어려운 단서가 됩니다. 만약 여

訴，則困於賦役，流離至此。還歸之後，縣官又將侵責，此爲難歸之端。若以勿侵諸役之意，嚴飭列邑，則願歸者必多矣。”上許之。於是，賑廳募饑民願歸者，使將校領送，出都門，各自逃散，還本土者，什無一二，百姓咸怨之。命給故參判李端錫妻月廩。端錫以清白稱，死後妻子窮餓，乙亥大饑，嘗行乞於市，上令賑廳，限設粥繼廩，至是，又依例周恤。又以故相臣洪命夏、李厚源、朴世采妻貧窶不自保，命題給食物。

	<p>러 가지 부역으로 침해하지 말라는 뜻을 여러 고을에 엄하게 신칙(申飭)하면,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에 진청(賑廳)에서 굶주린 백성 가운데 본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장교(將校)로 하여금 거느려 보내도록 하였는데, 도성문을 나가서는 각각 스스로 도망해 흩어져서 본토로 돌아간 자는 열 명에 한 두 명도 없었으니, 백성이 모두 원망하였다.</p> <p>고(故) 참판(參判) 이단석(李端錫)의 아내에게 월름(月廩)11639) 을 주라고 명하였다. 이단석은 청백으로 일컬어졌는데, 죽은 뒤에 처자(妻子)가 곤궁하여 굶주리다가 올해년 큰 흉년에는 시장에 다니면서 구걸하였으므로, 임금이 진휼청으로 하여금 죽을 마련하는 동안만 기한하여 월름을 계속하게 하였으며, 이때에 이르러 또 전례에 의하여 구호하게 하였다. 또 고(故) 상신(相臣) 홍명하(洪命夏)·이후원(李厚源)·박세채(朴世采)의 아내가 가난하여 스스로 보존하지 못하므로, 식물(食物)을 제급(題給)하도록 명하였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3월 10 일(을묘) 2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김구(金構)가 말하기를, “진휼 사목(賑恤事目)을 반포(頒布)할 때에, 각 고을로 하여금 죽을 마련하게 하고 혹은 마른 양식을 주게 하고, 또 면임(面任)을 엄하게 신칙하여 굶주림이 심해 장차 죽으려는 자를 살펴서, 먼저 쌀과 장(醬)으로 위급한 사람을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해서(海西) 백성이 많이 죽었다고 하니, 만약 마음을 다해 구호하였는데도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면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 다니며 구걸하다가 넘어져 죽는 대로 맡겨 두었을 뿐이니, 이는 조정에서 은덕을 베푸는 뜻이 아닙니다. 명령이 시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니, 마</p>	<p>○御晝講。知事金構曰：“賑恤事目頒布時，令各邑設粥，或給乾糧，且嚴飭面任，審察餓甚將死者，先以米、醬救急矣。今聞海西民多死。若盡心救活，而猶不免死，則無如之何，今乃任其行乞顛斃而已，則殊非朝家德意。命令之不行可知，宜令方伯，推治該邑吏。”上命更加申飭。</p>

	<p>땅히 방백(方伯)으로 하여금 그 고을의 아전을 추고(推考)해 다스려야 합니다.”</p> <p>하니, 임금(王)이 다시 더 신칙하라고 명하였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3월 15 일(경신)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구(金構)가 아뢰기를,</p> <p>“나라의 보장(保障)은 다만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이 있을 뿐인데, 전일에 성상의 하교에 또한 이르기를, ‘남한은 외롭게 떨어져 있고 강도는 조금 멀며, 또 해구(海寇)를 피하는 데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셨으나, 신의 염려하는 바는 다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양도(兩都)가 비록 믿을 만하더라도 군기(軍器)와 군량[糧餉]을 서울에 저장하였으니, 만일 피란하는 일이 있으면 다만 도적에게 이용되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만약 급한 때에 임하여 파천(播遷)할 계책을 하려고 한다면, 미곡은 날마다 먹는 식량이므로 비록 폐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기(兵器)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만들지 말게 하여 한갓 재력만 허비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득책(得策)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완풍 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가 남한산성을 쌓을 때에 조정의 의논이 갈래가 많았는데, 이서가 홀로 자신이 담당하여 마침내 그 역사(役事)를 완성하여 병자년(11646)·정축년(11647) 난리에 힘을 크게 얻었습니다. 또 들건대, 이서가 공조 판서(工曹判書)가 되어 대선(大船) 10여 척을 감독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의혹스레 여기므로 함릉 부원군(咸陵府院君) 이해(李漉)가 그 만든 까닭을 물으니, 이서가 말하기를, ‘만일 사변이 있어 장차 강도(江都)로 들어가게 되면, 건너갈 배를 만들어 기다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선배(先輩)가 나라를 위하는 깊은 생각이 대개 이와 같았습니다. 방금 국가가 안일에 빠져서 구차하게 무사한 것만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사변이 있으면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한 사람도 깊이 근심하고 먼 앞</p>	<p>○庚申/引見大臣、備局諸宰。 吏曹判書金構曰：“國之保障，只有江都、南漢，而前日聖教亦曰：‘南漢孤絕，江都稍遠，且不合於避海寇。’ 臣之所慮不特此也。 兩都雖曰可恃，軍器、糧餉，積峙京師，萬一有去邠之舉，適足爲藉寇之資。 臣謂若欲爲臨急播遷之計，則米穀是日用口食，雖不可廢，至於兵器，絕勿造成，毋徒費財力之爲得也。 昔完豐府院君李曙之築南漢也，廷議多岐，而曙獨以身擔當，卒完其役，丙、丁之亂，大得其力。 且聞曙判工曹，督造大船十餘隻，人皆疑惑。 咸陵府院君李漉，問其故，曙曰：‘脫有緩急，將入江都，欲造過涉船以待之。’ 先輩爲國深慮，類如此。 方今國家恬嬉，苟冀無事，猝有事變，無一可恃，而無一人深憂遠慮者，良可寒心。 臣嘗以北漢爲便，復往重視，則千枝萬葉，盤回稠疊，實有萬全不拔之</p>

일을 생각하는 이가 없으니 진실로 한심스럽습니다. 신이 일찍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이 편리하다고 여겨 다시 가서 거듭 살펴보니, 천지 만엽(千枝萬葉)이 둘러 쌓여서 진실로 아주 안전하고 함락되지 아니할 형세가 있었으며, 또 각 아지른 듯한 곳이 많아서 성을 쌓을 즈음에 공역(功役)이 크게 줄어들고, 위급할 때에 힘을 얻음이 이곳보다 더 낡은 곳이 없었으니, 큰 계획을 빨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도성(都城)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지만 군부(君父)를 받들고 외로운 성을 지키는 것은 진실로 위태로운 일이니, 먼저 북한산성을 쌓아서 도성과 안팎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대가(大駕)를 따르는 군병(軍兵)은 북한산성을 지키고, 도성 백성과 다른 군사는 도성을 지키면, 설령 도성이 함락된다 하더라도 즉시 급함에 임하여 물러가서 지킬수 있습니다.”

하니,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琬)은 말하기를,

“이 일을 발단(發端)한 자는 신(臣)인데 조정 의논이 서로 달라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저으기 개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승평(昇平)한 지 70년에 재이(災異)가 거듭 이르고, 세도(世道)가 더욱 떨어져서 어느 때에 어떤 화변(禍變)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 사전(事前)에 준비하는 계획을 어찌 늦출 수 있겠습니까? 전일에 소란[騷屑]이 있자, 도성 백성이 모두 북한산성을 빨리 쌓기를 원하여 재물을 내어 부역(赴役)하려고까지 하였으니, 모든 일이 진실로 나라에 이(利)로우면 백성이 비록 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인정(人情)을 크게 볼 수 있으니, 지리(地利)와 인화(人和)란 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홍년에 백성을 부역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민(飢民) 가운데 장정(壯丁)을 거두어 모아서 양식을 주어 부역하게 하면, 무슨 의심스러움이 있겠습니까?

勢。且其巉削處居多，營築之際，大省功役。緩急得力，無踰此地，不可不速定大計也。議者謂都城可守，而奉君父處孤城，實是危事。莫如先築北漢，與都城表裏相依。從駕軍兵守北城，都民及他兵守都城，藉令都城失守，亦足以臨急退守矣。”右議政申琬曰：“茲事發端者，臣也，朝議携貳，尙未決定，臣竊慨然。國家升平七十年，災異荐臻，世道益下，不知何時，有何禍變，綢繆之策，豈可緩也？向日有騷屑，都民咸願速築北城，至欲輸財赴役。凡事苟利於國，民雖不欲，亦可行之。況今人情大可見矣。地利、人和，此之謂也。或謂凶歲，不可役衆，而此亦不然。飢民中收募丁壯，給糧赴役，則民將樂赴，何疑之有？李基夏，頃以守都城爲請，臣亦非欲必棄都城也。北漢地勢高峻，壓臨都內，譬之人，則扼項撫背之勢也。若修築都城，以北漢爲子城，並力同守則固好。苟棄北漢，則都城雖固，決不可獨守，而人皆不知形便，但曰都城可守，良可笑也。凡作事之始，衆議盈庭，惟在上之人，量時度力，斷然行之

이기하(李基夏)가 전변에 도성을 지키기를 청하였는데, 신도 반드시 도성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산성은 지세가 높아서 도성 안을 눌러 내려다 보고 있으니, 사람에 비유하면 목을 조르고 등을 누르는 형세입니다. 만약 도성을 수축하여 북한산성을 자성(子城)으로 삼고 힘을 합하여 같이 지키다면 진실로 좋을 것이나, 북한산성을 버린다면 도성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결코 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형편을 알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도성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니, 진실로 웃을 만한 일입니다. 대저 일을 행할 시초에는 여러 의논이 뜰에 가득한 것인데, 오직 위에 있는 사람이 때를 헤아리고 힘을 헤아려서 단연코 시행할 뿐입니다.”

하였다. 김구(金構)는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쌀 1만 석·면포(綿布) 1천 동(同)과 역군(役軍) 1만여 명으로 두어 달 역사(役事)를 하면 완전히 쌓을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통영순검(統營巡檢)의 쌀과 베를 가져와 쓴다면, 재물이 없음을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혹시 파월(播越)11648) 하는 일이 있으면, 비록 쌀과 베가 산처럼 쌓였다 하더라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는 대사(臺榭)11649) 를 영작(營作)한 것에 비할 것이 아니고, 장차 종사(宗社)가 의탁할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재력(財力)을 아낄 것이 아닙니다. 요즈음 형혹성(熒惑星)이 남두성(南斗星)에 들어갔는데, 선조(宣祖) 경인년11650) 과 신묘년11651) 무렵에 이런 천변(天變)이 있자, 충신 조헌(趙憲)이 천문(天文)에 정통(精通)하여 남에게 보낸 글과 조정에 올린 상소에, ‘어찌 이런 천변이 있는데 병란(兵亂)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한 말이 있었는데, 얼마되지 아니하여 임진(壬辰)·계사(癸巳)의 병화(兵禍)가 있었습니다. 앞의 일이 이미 징험되었으니, 일찍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而已。” 構曰：“臣意米萬石、綿布千同、役軍萬餘，數月之役，足以完築。若取用統營巡檢米布，則不患無財。苟或有播越之舉，雖米布山積，將安用之？此非如臺榭營作者比，將欲爲宗社依歸之所，則財力非可惜也。近者熒惑入南斗。宣廟庚寅、辛卯間，有是變，忠臣趙憲，精通天文，抵人書及疏章，有安有有此變，而兵亂不作之語，未幾有龍蛇之禍。前事已驗，不可不早爲之計。” 承旨洪受疇曰：“概聞民情，皆以爲苟入此城，可以臨亂保妻子，莫不同辭願築。今若中寢，必大缺望。” 上顧琬曰：“卿所進冊子，予已詳覽。蓋嘗從容思之，兩都保障之不足恃者如彼。都城闊大，亦不可守。以形便言之，北城最勝矣。仁廟丙寅，始築南漢。丙子之亂，初欲入江都，而卒入南漢。其時若無南漢，未知國事稅駕於何地？言念及此，不覺心慄。今日陰雨之備，豈可少忽？” 琬曰：“聖教誠然。昔劉先主之奔江陵也，強寇在後，而百姓襁屬相隨，先主不忍棄去，一日行數十里。此所謂信義著於天下也。今都民所仰戴者，惟

하고, 승지(承旨) 홍수주(洪受疇)는 말하기를,

“대개 민정(民情)을 들어 보건대,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이 성(城)에 들어가기만 하면 난리에 이르러서 처자(妻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며, 모두 같은 말로 성을 쌓기를 원하는데, 이제 만약 중지하면 반드시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신완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경(卿)이 올린 책을 내가 이미 자세히 보았다. 대저 조용히 생각하건대, 양도(兩都)의 보장(保障)은 믿을 수 없음이 저와 같고, 도성(都城)은 넓고 커서 또한 지킬 수 없으니 형편으로 말하자면 북한산성이 가장 좋다. 인조(仁祖) 병인년(11652)에 비로소 남한산성을 쌓았는데, 병자년 난리에 처음에는 강도(江都)로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마침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니, 그때에 만약 남한산성이 없었다면 나라일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을지 알지 못하겠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마음이 떨림을 깨닫지 못하겠다. 오늘날 사변의 준비를 어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신완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옛날에 유선주(劉先主)11653)가 강릉(江陵)으로 달아날 적에 강한 도적이 뒤에서 추격하는데, 백성들이 어린애를 업고 서로 따르자 선주가 차마 버리고 가지 못하여 하루에 수십 리만 갔으니, 이는 이른바 신의(信義)가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도성 백성이 우러러

國家，而臨亂倉卒，棄之如遺，殊非王者與民共難之意，民豈有親上死長之心乎？苟能築斯城，鍊器械峙餼糧，君臣上下，一心堅守，宗社免播越之辱，都民無渙散之慮。一城內外，便是父子，兵以死戰之，卒守天險之地，豈非萬全之策也？”刑曹判書閔鎮厚曰：“嘗臣請守都城，聖上以闢大難守爲教。臣誠昧於兵事，而終未曉也。”上曰：“如以都城爲可守，則亦當加築，而功力與新築何異？”構曰：“都城多有窺山，城堞卑弱，地勢低平，雖加築，亦不可守。”鎮厚曰：“臣亦以爲都城宜加築。山城之無窺山者，絕少。雖有窺山，亦豈無捍禦之策乎？然，臣不敢復言都城事，而但於構言，有不可不相難者。若於築北城之後，拋棄都城，如清野之法，則容或可也，而姑以民兵守堞，臨急退守云者，是何言也？蒼黃移入之際，民將蹂躪盡死，北城士民之心，亦必驚擾，其安能守城乎？此事殆同兒戲，決知其不可。且前日聖教以嘖言爲憂。更宜深思善後之策，而始役未晚。”構曰：“老弱、糧餉，先爲移入，陪扈至尊，把守城堞，則士民勇

받드는 바는 오직 국가인데, 난리에 임하여 창졸간에 버리기를 잊은 것처럼 한다면, 왕자(王者)가 백성과 더불어 어려움을 함께 하는 뜻이 아니니, 백성이 어찌 윗사람을 친하고 장관(長官)을 위해 죽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약 성을 쌓아서 군기(軍器)를 단련하고 식량을 저장하여 군신(君臣) 상하가 한 마음으로 굳게 지키면, 종사(宗社)가 파월(播越)하는 욕됨이 없고 도성 백성이 흩어질 염려가 없으며, 온 성(城)의 안팎이 문득 부자(父子)와 같아서 병졸(兵卒)은 죽음으로써 싸워서, 마침내 천험(天險)의 요새지를 지키게 될 것이니, 어찌 만전의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형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도성을 지키기를 청하였는데, 성상께서 넓고 커서 지키기 어렵다는 것으로 하고하셨으니, 신은 진실로 병사(兵事)에 어두워서 끝내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도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또한 마땅히 더 쌓아야 할 것인데, 공력(功力)이 새로 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김구가 말하기를,

“도성은 넘보는 산[窺山]이 많이 있고, 성첩(城堞)이 낮고 약하며 지세가 낮고 평탄하므로, 비록 더 쌓는다 하더라도 역시 지킬 수 없습니다.”

氣百倍，不患不固，因以餘兵，竝守都城，設令都城失守，登高據險，如古史所云，則亦足自固，此與平地連營，大異，何至於蹂躪無遺乎？彼此兩城，互成唇齒，賊不敢侵軼。況車駕所駐，賊所專意，必不肯舍北漢而攻都城，雖奪都城，白岳、仁王之下，勢難久住，攻守之形相懸，賊勢亦已弊矣。” 鎭厚曰：“一都城猶以爲闊大，則築新城，而以餘力兼守云者，寧有是理？守城者，初雖恃爲金湯，而臨陣對敵，尙有怖怯之心。況先示以必不可守之形，而使之臨急移避，則軍心已洶淘矣，安能堅守乎？既失都城，則北城之人，望風奪氣，亦將立見其淪陷，此實事理之所必然，童孺之所易知。凡人作事，尙思萬全，況帝王乎；事之小者，亦且審慎，況兵事乎？勿復留意於行險陷危之事幸甚。” 琬曰：“北城壓臨都內，砲石可以相及。我據北山之勢，而俯制其死命，則彼不得仰攻，亦安能久住耶？臣愚謂先據北山，則雖洞開四門，敵不敢入矣。” 御營大將尹就商曰：“兩城形勢，與內外城有異。假令都城失守，豈有不保北漢之理耶？惟在守禦

	<p>하자, 민진후가 말하기를,</p> <p>“신도 도성(都城)을 더 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성(山城) 중에 넘보는 산이 없는 것은 아주 적으니, 비록 넘보는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방어할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은 감히 도성의 일은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김구의 말에는 서로 힐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북성을 쌓은 뒤에 도성을 포기하여 청야(淸野)의 법(11654) 과 같이 한다면 혹시 될 수가 있겠지만, ‘우선 민병(民兵)으로 성첩을 지키다가 급할 때에 다다라서 물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황급히 옮겨 들어갈 즈음에 백성이 장차 짓밟혀서 모두 죽을 것이며, 북성의 사민(士民)의 마음도 또한 반드시 놀라 소란할 것인데 어찌 능히 성을 지키겠습니까? 이 일은 거의 아이의 장난과 같으므로 결코 옳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일 성상의 하교에, ‘책언(嘖言)11655) 을 근심하셨으니, 다시 마땅히 선후책(善後策)을 깊이 생각하여 역사를 시작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p> <p>하였다. 김구가 말하기를,</p> <p>“노약자와 군량[糧餉]을 먼저 옮겨 들이고, 지존(至尊)11656) 을 모시어 성첩(城堞)을 파수하면, 사민(士民)의 용기나 백 배나 더할 것이니 견고하지 못함을 근심할 것이 없으며, 인하여 남은 군사로서 도성을 아울러 지키고, 설령 도성이 함락된다 하더라도 높은 데 올라가 험한 곳에 웅거하기를 고사(古史)에 이른 바와 같게 한다면, 또한 족히 스스로 튼튼할 것이며 평지에 진영(陣營)을 연한 것과는 아주 다를 것인데, 어찌하여 짓밟혀서 남는 백성이 없는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이쪽과 저쪽 두 성이 서로 순치(脣齒)11657) 의 형세</p>	<p>得人而已。” 構曰：“今災異如此，脫有兵禍，事無可爲。念及于此，百姓賑救，反是第二件事。築城之役，何可少緩？” 上曰：“北城形便，實爲萬全。此時雖不可始役，予志已定，先令諸軍門經理。” 琬起賀曰：“聖算堅定，誠宗社之幸也。” 上曰：“守令數遞，迎送有弊，郡邑蕩敗，實由於斯。臺啓出於風聞，雖不可盡信，上下相持，徒損事體，自不得不允從，而風傳之說，易歸差爽，所易長吏，又未必賢。此後臺閣，宜詳審於發論之初也。” 琬曰：“古有爽實引避之例，而今不可復見矣。向日崔鎮漢，有治聲而被劾去，臣請仍任。厥後，發論臺臣，猶終始自是，誠未知其可。” 受疇曰：“以近日臺啓言之，延安隱結、錢貨，殆近贓汚，而罪止罷職，雖有冤端，何由辨暴？若此之類，宜令拿覈，有罪無罪，自可見矣。” 大司諫李健命曰：“臺閣風聞，間或差爽，而若因此懲羹，而無彈劾之舉，則貪官汚吏，何所懲畏？殿下念及民弊，意甚盛也，而苟於臺啓，輒疑其不審，則恐有輕臺閣之失也。” 上曰：“臺論豈必盡是，亦豈盡</p>
--	---	--

를 이루면, 적(賊)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거가(車駕)가 머무는 곳에는 적(賊)이 그곳에만 마음을 써서 공격할 것이니, 반드시 북한산성을 놓아 두고 도성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며, 비록 도성을 탈취한다 하더라도 백악(白岳)과 인왕산(仁旺山) 밑은 형세가 오래 머물기는 어려우니, 공격과 수비의 형세가 서로 달라서 적의 형세 또한 꺾어질 것입니다.”

하자, 민진후가 말하기를,

“하나의 도성도 오히려 넓고 크다고 하면서, 새로이 성을 쌓아서 남은 힘으로 두 성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습니까? 성을 지키는 자가 처음에는 비록 금성 탕지(金城湯池)11658)로 믿을지라도, 진(陣)에 임하여 적과 대하면 오히려 두려움과 겁내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하물며 반드시 지키지 못할 형세를 먼저 보이고서 급함에 임하여 옮겨 피하게 하면 군사의 마음이 이미 훔훔(洶洶)할 것이니, 어찌 능히 굳게 지키겠습니까? 이미 도성을 잃으면 북한산성의 사람들이 형세를 바라보고서 기운이 빠져 또한 곧 함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사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므로, 어린아이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 데에도 오히려 아주 안전하기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제왕(帝王)이겠으며, 일이 작은 것도 살피고 삼가야 할 것인데 하물며 군비(軍備)의 일이겠습니까? 다시는 위험한 일을 행하는 데 유의하지 않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신완이 말하기를,

“북한산성은 도성 안을 둘러 내려다 보고 있어서 포(砲)와 돌이 서로 미칠 수 있으니, 우리가 북한산의 형세를 응거하여 굽어보면서 적의 사명(死命)을 제

非耶? 彈劾一發，必遞乃已，予之欲令詳審者，此也。”

압하면 적이 쳐다보고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능히 오래 머물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먼저 북한산에 웅거하면 비록 사대문(四大門)을
열어 놓을지라도 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윤취상(尹就商)은 말하기를,

“두 성의 형세가 내외성(內外城)과는 다름이 있으니, 가령 도성을 지키지 못
하더라도 어찌 북한산성을 보존하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오직 수어(守
禦)는 책임자를 얻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고, 김구는 말하기를,

“지금 재이(災異)가 이와 같은데, 만일 병화(兵禍)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도리어 둘째 일이니, 성
을 쌓는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북성의 형편은 진실로 아주 안전하므로 이때에 비록 역사(役事)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먼저 여러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경리
(經理)하도록 하라.”

하자, 신완이 일어나 하례하기를,

“성상의 계책을 이미 굳게 정하셨으니, 진실로 종사(宗社)의 다행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자주 갈려서 영접하고 전송하는 폐단이 있는데, 고을의 탕패(蕩敗)는 진실로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대계(臺啓)는 풍문(風聞)에서 나왔으니 비록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마는, 상하(上下)가 서로 버티면 한갓 사체(事體)만 손상시킬 뿐이어서 윤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뜯소문으로 전하는 말은 사실과 틀리기가 쉬우며, 바꾸는 장리(長吏)11659) 또한 반드시 어질지는 못할 것이다. 이 뒤로는 대각(臺閣)에서 마땅히 발론(發論)할 처음에 자세히 살필 것이다.”

하니, 신완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사실과 어긋남으로써 인피(引避)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일에 최진한(崔鎭漢)은 잘 다스린다는 명성(名聲)이 있었으나 탄핵을 받고 떠나가므로, 신이 영임(仍任)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 발론한 대신(臺臣)이 오히려 끝까지 스스로 옳다 하니, 진실로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홍수주(洪受疇)는 말하기를,

“요즘의 대계(臺啓)로써 말하면 연안(延安)의 은결(隱結)과 전화(錢貨)는 거의 장오(贓汚)에 가까운데도 죄가 과직에만 그쳤으니, 비록 억울한 단서가 있더라도 어떻게 변명해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마땅히 잡아다 사실을 조사하면 죄가 있고 없음은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p>하고, 대사간(大司諫) 이건명(李健命)은 말하기를,</p> <p>“대각(臺閣)의 풍문은 간혹 사실과 어긋남이 있지만, 만약 이로 인해 외척되어 탄핵하는 일이 없으면 탐관 오리(貪官汚吏)가 무엇을 징계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염려하심이 민폐(民弊)에 미치시니 뜻이 매우 거룩하십니다만, 만일 대계(臺啓)에 대해 문득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의심하시면 대각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이 있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대각의 논의가 어찌 반드시 모두 옳겠으며, 또한 어찌 모두 그르겠는가? 탄핵이 한 번 일어나면 반드시 벼슬이 갈리고야 말게 되니, 내가 자세히 살피도록 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p> <p>하였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3월 27 일(임신) 2번째기사</p>	<p>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p> <p>“국가가 불행하여 흉년이 거듭 들자 애처로운 우리 백성의 생활이 곤궁하여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이끌고서 멀리 서울에 온 자는, 비유하건대, 어린애가 부모에게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백성을 하나같이 사랑하는 어짐으로는 오직 마땅히 힘을 다해 구제해야 하며, 떠도는 거지가 많고 적음과 국력(國力)의 넉넉하고 모자람은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요즘 본고장으로 영솔해 보내자는 의논은 사람의 죽음을 차마 보지 못하는 정치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세로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p>	<p>○諫院啓曰：“國家不幸，飢饉荐仍，哀我民生，顛連無告。扶老携幼，遠來京師者，比如赤子之仰哺於父母，其在一視之仁，惟當竭力賑救。若其流丐之多少，國力之裕匱，不當暇論也。乃者領送本土之議，不但有乖於不忍人之政，揆以事勢，人皆知其必不可行，而賑廳抄出飢民百數十人，稱以願歸，分授將校，領送諸道，而纔出都門，或</p>

이 모두 반드시 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데도, 진청(賑廳)에서 굶주린 백성 백 수십 명을 뽑아 내어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일컬어서, 장교(將校)에게 나누어 주어 거느려 여러 도(道)에 보내게 하였는데, 겨우 도성 문을 나서자 혹은 병이 들어 가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길에서 많이 도망하기도 했으니, 처음에 과연 돌아가기를 원하였다면 어찌하여 도망해 흩어진 것이 이처럼 많겠습니까? 옛날에 부필(富弼)11667)은 한 주(州)의 판관(判官)이었을 뿐인데도, 경동(京東)·하북(河北)의 유민(流民)으로 청주(淸州)에 가서 얻어 먹는 자를 받아다가 구제하여 살린 것이 50여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조정은 8도의 백성에게 부모의 책임이 있는데도, 멀리 와서 먹여 살리기를 바라는 백성들을 능히 보호하지 못하면서, 강제로 이런 일을 하여 구박해 쫓는 듯이 하여 거듭 민심을 잃고 한갓 국가의 체면만 손상시켰습니다. 이 뒤로는 와서 모이는 유민을 진청(賑廳)으로 하여금, 다시 본토로 영솔해 보내지 말고 머물러 두어 구호하게 하소서. 경주 부윤(慶州府尹) 유이복(柳以復)은 본래 아첨하는 성품으로 채주와 슬기가 있다는 이름을 낚아 외람되게 큰 고을을 맡았는데, 갑자기 유명한 지방을 다스리게 되자 세상 여론이 놀라게 된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가 서쪽 고을에 있을 적에 백성을 잘 구제한다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 조정에 품(稟)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다른 나라의 곡물을 사들였으니, 나라의 법으로 논하면 마땅히 중한 죄에 처해야 할 것인데도,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뒤따라 위로해 추천하였으니, 공의(公議)가 지금까지 분개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양주(楊州)에 임명되었을 적에 목내선(睦來善)이 사는 한 면(面)을 목내선에게 갈라 주어서, 민호(民戶)에서 관(官)에 바치는 모든 물건을 바로 그 집에 수송하게 하여, 마치 채읍(采邑)11668)에서 공봉(供奉)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아! 목내선의 부도(不道)한 말은 국모(國母)를 크게 무함하였으니, 오늘날 신자(臣子)된 자로 마음을 썩이고 이를 갈지 않는 이가 없는데, 유이복은 자신이 명리(命吏)11669)가 되어 마음대로 민호(民戶)를

病不能行，或途多逃亡。初果願歸，則何至逃散之此多耶？昔富弼，特一判州耳，京東、河北流民之就食青州者，受而賑之，所活五十餘萬人。今朝家於八路民生，均有父母之責，而不能庇遠來仰哺之赤子，強爲此舉，有同驅逐，重失民情，徒損國體。此後來集之流民，令賑廳，更勿領送，留置設賑。慶州府尹柳以復，本以諂媚之性，釣取才諂之稱，濫典雄府，驟按名藩，物情之致駭，固已久矣。其在西邑，要得善賑之譽，不稟朝家，私市他國穀物。論以邦憲，合置重辟，而不特不罪，又從而尉薦之，公議至今憤惋。且其任楊州也，以睦來善所居一面，劃給來善，凡民戶納官之物，皆令直輸其家，有若采邑供奉者然。噫！來善不道之言，厚誣國母，爲今日臣子者，罔不腐心切齒，而以復身爲命吏，擅割民戶，陰奉凶人。此不但爲蔑法循私之罪而已，前後所犯，關係俱重，不可以事在既往，而不加懲治。請削奪官爵。今番渡海譯官之船所載米穀，多至五百餘石。敗沒之患，未必不由於此。似聞萊府近處闖帥、邊將及幕裨

갈라 주어서 흉인(凶人)을 몰래 받들게 하였습니다. 이는 법을 무시하고 사정(私情)을 따르는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전후에 범한 바가 관계됨이 모두 중하니, 일이 이미 지나간 때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해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소서. 이번 바다를 건너간 역관(譯官)의 배에 실은 미곡이 백여 석에 이르도록 많았으니, 침몰할 우려는 반드시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듣건대 동래부(東萊府) 근처의 곤수(關帥)11670)와 변장(邊將) 및 막비(幕裨)11671)의 무리가 붙여서 실은 것 또한 많다고 하는데, 이는 대마도에 흉년이 들어 1곡(斛)의 쌀값이 백금(白金) 7, 8냥(兩)이 되기 때문에 금화와 바꾸어 이익을 늘이려고 한 것입니다. 배를 탄 사람은 모두 거간꾼[駟儉]의 무리여서 법을 범하면서 장사하는 것이 이미 통악(痛惡)한데, 곤수와 변장에 이르러서는 몸은 변경을 지키는 신하가 되었고 일은 이웃적(敵)에 관계되는데도 상역(商譯)과 친밀하여 몰래 재화(財貨)를 통하였으니, 국법으로 논하면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여 계문(啓聞)해 처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아니한다. 설진(設賑)11672) 과 사문(査問)의 일은 아뢴 바에 의하라.”

하였다. 뒤에 조사해 보니 끝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영남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대론(臺論)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으나, 조사하는 일이 엄하지 못하여 잠상(潛商)의 무리가 요행히 국법을 면하였으니 몹시 분하다.”

輩所附載亦多。蓋馬島凶荒，斛米之價，白金七八兩，故欲以貨殖利也。乘船人雖皆駟儉之類，冒法行商，已極痛惡。至若關帥、邊將，則身爲邊臣，事關隣敵，而昵比商譯，潛通貨財，論以邦憲，合置重典。請令本道，嚴查啓聞處置。”答曰：“不允。設賑及查聞事，依啓。”後查事竟無實，嶺南人皆言：“臺論無少差爽，而查事不嚴，使潛商之徒，倖道邦法”，莫不痛惋。以復事再啓，從之。

	<p>하였다. 유이복의 일을 가지고 두 번째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3월 30 일(을해) 1번째기사</p>	<p>판부사(判府事) 서문중(徐文重)이 차자(劄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p> <p>“요즈음 조정에서 축성(築城)의 의논이 있어 조정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나 성상의 뜻이 특별히 굳으시니, 신은 진실로 국가의 안위(安危)가 달린 바를 가볍게 시험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묘당(廟堂)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어 장차 축성(築城)을 시작한다고 들리는데, 이것은 국가의 큰 일이므로, 비록 널리 묻고 의논한다 하더라도 만전(萬全)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수상(首相)이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좌상(左相)은 병중에 있는데, 다만 한두 신하와 더불어 한 마디 말하는 사이에 단정하였으니, 전번에 금영(禁營)의 의논이 족히 경계가 될 만합니다. 조정에서 진양(晉陽)의 계획(11676) 을 계획해 물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이 있고 물에는 강도(江都)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곳을 버리고 따로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땅을 구하려 하면, 신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기를, ‘가까운 땅에 성을 만들어서, 급할 때에 임하여 옮겨 들어가서 도성을 비우고 청야(淸野)하면, 적이 얻을 것이 없어서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다른 군대가 도성을 지키다가 도성이 함락되면 물러가서 북성(北城)을 지킨다.’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중히 여기는 바는 적이 달려오는 바인데, 성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완급(緩急)이 있지만 성을 공격하는 자 또한 차례가 있겠습니까? 장강(長江)11677) 일대는 기호(畿湖)11678) 가 아울러 통하는데, 청야(淸野)의 계획이 쉬운 일인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북한산성이 비록 험준하지마는 성안이 바깥보다 심하여 산록(山麓)이 서로 가리고 높고 낮음이 썩 동떨어져서, 호령(號令)이 서로 미치지 못하고 머리와 꼬리가</p>	<p>○乙亥/判府事徐文重上劄。 略曰：</p> <p>日者朝家有築城之議，而廷論不一，上意特堅， 臣固知安危所係， 不宜輕試也。 忽聞廟議已決， 築城將始， 此國之大事， 雖博詢廣議， 難保其萬全。 況首相未還， 左揆在病， 而只與一二臣， 斷定於片言之間， 向者禁營之議， 足以爲戒也。 朝家爲晉陽之計， 陸有南漢， 水有江都， 今欲舍此兩地， 別求洞開四門， 敵不敢入之地， 臣以爲難也。 今謂爲城於咫尺之地， 臨急移入， 空城淸野， 敵無所獲， 不能久留。 又曰， 他軍守都， 都城失守， 退守北城。 夫我之所重， 敵之所趨， 守城者誠有緩急， 而攻城者亦有次第耶？ 長江一帶湖畿竝通， 淸野之策， 臣未知其易也。 北城雖險阻， 而內甚於外， 山麓互蔽， 高低懸絕， 號令不能相及， 首尾難以接應， 壓臨之勢， 與賊共之， 我不可專恃。 且以一都城， 猶爲闊大， 而又爲此一城， 棄舊則勢孤， 竝守則力分， 失一城則一城難保。 況專意於北城， 以</p>

접응(接應)하기 어려우며, 위에서 내려다 보는 형세를 적과 함께 가져 우리만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도성이 넓고 크다고 하여 또 하나의 성을 만드니, 옛 도성을 버린다면 형세가 외롭게 되고 두 성을 모두 지킨다면 병력이 나누어지게 되어, 한 성을 잃으면 한 성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북한성 한 곳에만 마음을 쓰고 도성을 버리는 땅으로 삼는 것이겠습니까? 아! 형혹성(熒惑星)의 변은 진실로 병화(兵禍)의 조짐이며, 굶주린 백성이 길에 가득하고 도적이 몰래 일어나는 때를 당하여, 못 백성을 움직여 역사를 일으켜서 미치지 못할 뉘우침을 끼치는 일은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지형(地形)이 진실로 준험하고 재화(財貨)가 진실로 넉넉하며 백성이 재물을 바치기를 위하여 자식처럼 와서 부역하는 것이 과연 여러 신하들의 아뢰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제때가 아닌 역사는 가볍게 일으킬 수 없으며,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일은 시험할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시어 성명(成命)을 빨리 정지하소서. 국가가 불행하여 해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원근(遠近)의 굶주린 백성을 급급히 구제하여 병든 자는 구호하고 죽은 자를 매장하면, 비록 죽을 쑤는 가마솥[粥釜] 밖에서 죽을지라도 끝내 원망하여 탓하는 자가 없는 것은 은혜가 이르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는 기색(氣色)이 번번이 양식을 주기 앞서 나타나서, 한갓 일을 끝어서 미루어 나가지만 일삼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보리 이삭이 이미 뻗으나 아직도 설죽(設粥)하지 아니하여, 어린이는 길거리에서 죽고 건장한 이는 남쪽 지방으로 향하였으니, 이는 모두 전하의 적자(赤子)11679) 인데 어찌 신충(宸衷)11680) 을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듣건대, 장차 거느리고 성을 쌓는 역사에 부역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굶주린 자를 마땅히 먹여 살려야 하고, 이미 먹이고 나서 사역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당당한 성조(聖朝)에 어찌 1, 2천 석의 쌀 소비를 근심하여, 이러한 전일에 없는 일을 하여 민심을 크게 잃겠습니까? 이

都城爲等棄之地者乎? 噫! 熒惑之變, 固是兵象, 而當此餓莩載路, 盜賊竊發之日, 決不可動衆興役, 以貽無及之悔. 地形誠險矣, 財貨誠足矣, 民願輸財, 子來赴役, 果有如諸臣奏對者, 非時之役, 不可輕舉, 危疑之事, 不可嘗試. 伏乞夫揮乾斷, 亟寢成命. 國家不幸, 連歲災祲, 遠近飢民, 汲汲接濟, 病者救之, 死者埋之, 雖斃於粥釜之外, 而終無怨尤者, 思無不至也. 今則不然, 厭苦之色, 輒先於給糧, 徒事延拖, 以至今日, 麥秀已發, 尙不設粥, 幼稚斃於街路, 壯者轉向南土, 此皆殿下赤子, 寧不盡傷於宸衷耶? 卽聞將領赴城役. 此必以飢者當餽. 既餽而役, 費可以省, 堂堂聖朝, 何憂一二千石之米, 爲此無前之舉, 大失民心也? 此類不食久矣. 縱有形骸, 何忍使便赴力役之事? 遠近流聞, 以爲役使飢民, 自聖朝始, 豈不大傷於如保之政乎? 願寢飢民赴役之命, 仍爲設粥, 無失顛望之心.

答曰: “茲事業已反覆思量, 斷然行之, 決難撓改. 至於飢民赴役, 匪曰徒恤

우리들이 먹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비록 형체는 있을지라도, 어찌 차마 다시 힘드는 역사에 나아가게 하겠습니까? 원근에서 전하여 듣고서 말하기를, ‘끓주린 백성을 사역(使役)하는 것이 성상의 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 백성을 어린애처럼 보호하는 정치에 어찌 크게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건대, 끓주린 백성을 부역시키는 명을 정지하고, 그대로 설죽(設粥)하여 먹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잃지 말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을 이미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헤아려서 단연코 행하였으니, 결코 바꾸기 어렵다. 끓주린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은 한갓 경비를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제해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어찌 설죽(設粥)보다 낫지 않겠는가? 경은 양해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상소하기를,

“묘당(廟堂)의 의논이 북한산성은 도성(都城)과 가까움으로 해서 편리하다고 하나, 신이 불편을 고집하는 바는 바로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변이 있으면 군신(君臣) 상하가 마땅히 북성으로 들어갈 것인데, 창졸간 위급한 즈음에 도성의 자녀(子女)를 과연 다 옮기겠으며, 옥백(玉帛)·중기(重器)를 과연 모두 옮기겠습니까? 대저 종묘(宗廟)·사직(社稷)과 궁궐이 있는 도성을 그 자녀(子女)·중기(重器)와 함께 모두 적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도성은 북성과 주객(主客)·내외(內外)의 구별이 있고, 서로의 한계를 말한다면 겨우 한 산등성이의 짧은 성첩인데, 이제 적을 복심(腹心)에 두고 우리는 좁은 비탈의 한 구석에 혹처럼 붙고 박처럼 달려 있을 뿐이니, 그 불편함의 하나입니다. 국가에

經費, 其於濟活之道, 豈不愈於設粥乎? 卿其諒哉!” 禮曹判書金鎭龜上疏曰:

廟議以北城之近都城爲便, 而臣所以執不便, 正以其太近也。 脫有事變, 君臣上下, 當入北城, 而倉卒顛沛之際, 都人子女, 其果盡徙乎? 玉帛、重器, 其果悉遷乎? 夫以廟社、宮闕所在之都城, 竝其子女、重器, 付之於敵。 都城之於北城, 有主客內外之別, 而語其相限, 僅一山岡之短堞, 今乃置敵於腹心, 而我則贅寄匏懸於偏側之一隅而已, 不便一也。 國家用力於南漢、江都, 殆累十百年, 修城池積芻糧, 蓋靡極不用, 若又加設北城, 國力誠難遍及。 必有革罷舊城之議, 罷之則百年之功可惜, 不罷則北城之事未完, 不便二也。 近來人心波蕩, 風俗陵頹, 國無倫紀, 家蔑倫常。 《孟子》曰: “城郭不完, 非國之災。” 以臣視今, 所可憂者, 在於根本, 而乃以南北數千里外, 未可逆料之事, 汲汲於築城之役, 非計之得者。 設令外侮, 眞有必至之憂, 城之果築, 與宗廟、宮室、官司、

서 남한산(南漢山)과 강도(江都)에서 힘을 쓴 지 거의 수십 백 년이며,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추량(芻糧) 쌓기를 극진하게 하지 않음이 없는데, 만약 또 북성을 더 설치하면 국가의 힘이 진실로 두루 미치지 어렵습니다. 반드시 구성(舊城)을 혁파하자는 의논이 있을 것이니, 이를 혁파하면 백 년동안 쌓은 공이 아깝고, 혁파하지 않으면 북성의 일이 완전하지 못할 것이니, 그 불편함의 둘입니다. 근래에 인심이 흔들리고 풍속이 퇴폐하여, 나라에는 윤기(倫紀)가 없고 집에는 윤성(倫常)11681)이 없습니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성곽(城郭)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나라의 재앙(災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신이 오늘날의 일을 살펴보건대, 근심스러운 것은 근본에 있으니, 남북(南北)수천 리 밖은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일로써 성을 쌓는 역사에 급급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설령 외적[外侮]이 참으로 반드시 이를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성을 다 쌓는 것과 종묘(宗廟)·궁실(宮室)·관사(官司)·창유(倉庾)11682)를 세우는 것과, 민호(民戶)가 들어 살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여러 해 사이에 모두 이룩하기가 쉽지 아니하니, 속담에 이른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것과 비슷하지 아니합니까? 그 불편함의 셋입니다. 국가가 불행하여 해마다 수재와 한재가 일어나서 축적(蓄積)이 모두 텅 비어 백성이 대단히 위급한 처지에 있으니, 비록 작은 공사[興作]로 그만둘 수 없는 일도 가볍게 손을 댈 수가 없는데, 하물며 북한성은 주위가 30여 리에 이르니 남한성에 비하면 10리가 더할 뿐만이 아닙니다. 남한성을 쌓는 데 완풍 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가 그 일을 주관하여, 한때 중외(中外)의 힘을 다하여 3년 만에 비로소 겨우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사세(事勢)가 조종(祖宗)의 융성(隆盛)할 때보다 절대로 미치지 못하고, 역사할 곳이 더 넓고 큼니다. 사변에 대비하는 것은 설사 먼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은 어찌 간절히 경계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 불편함의 넷입니다. 아! 방금의 국세(國勢)는 비유컨대, 큰 병이 든 사람과 같아서

倉庾之建，以至民戶之入處，累年之間，未易成集，不幾於諺所謂“渴者之掘井”乎？不便三也。國家不天，歲仍水旱，蓄積蕩竭，生民倒懸，雖少小興作，不可已之事，亦不可輕易施手。況北城周回，可至三十餘里，視南漢不翅加一十里。南漢之築，完豐府院君李曙主其事，竭一時中外之力，三年而始草創。今事勢萬萬不及於祖宗盛時，而役處浩大，又有甚焉。陰雨綢繆，藉口長慮，傷財害民，豈非切戒？不便四也。噫！方今國勢譬如大病之人，四肢、百骸，無不受傷，奄奄有危亡之憂。誠宜上下相勉，抑費耗慎動作，惟日齊心，壹意於寬民裕國之方。或者旻天回怒，末俗善變，稍埃豐和，徐而圖之未晚也。試以築城所需糧米，移補賑饑之用，計其役價錢布，許減隣族之侵徵，則豈不爲鞏固邦本之一事也？

判府事尹趾善上筭曰：

伏聞築城之計已決，大臣、諸宰違覆之言，殿下主先入而竝却之。必以此爲

사지(四肢)·백해(百骸)가 손상되지 아니함이 없어, 목숨이 장차 끊어지려고 하여 위망(危亡)의 근심이 있으니, 진실로 상하가 서로 힘써서 소비를 억제하고 동작(動作)을 삼가서, 오직 날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백성을 너그럽게 하고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 방법에 마음을 전일하게 하면, 혹시 하늘이 노여움을 돌이키고 말세의 풍속이 착하게 변할 것이니, 조금 풍년이 들고 나라가 태평하기를 기다려서 천천히 이를 도모해도 늦지 아니합니다. 시험삼아 축성(築城)에 수요되는 양곡 쌀을 굶주림을 구호하는 데 옮겨서 보태어 쓰고, 그 역가(役價)11683)의 전포(錢布)를 계산하여 이웃과 친족이 침징(侵徵)을 감면하기를 허락한다면, 어찌 나라의 근본을 공고히 하는 한 가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윤지선(尹趾善)은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앞드려 듣건대, 축성(築城)할 계획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대신(大臣)과 여러 재신(宰臣)들의 위복(違覆)하는 말을 전하께서 선입견(先入見)을 주장하여 모두 물리치셨다 합니다. 반드시 이를 금성 탕지(金城湯池)의 믿을 만한 곳으로 여기고, 또 도성 백성이 참으로 자식처럼 와서 부역하기를 원하고 있고, 굶주린 백성이 기뻐 뛰면서 성을 쌓는 일을 감당할 만하다고 여겨 행하기를 결심하신 것입니까? 신은 혹시 깊이 생각하지 못하신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무릇 성을 지키는 방법은 진실로 산곡(山谷)의 험준을 중시(重視)하지만, 큰 근본은 민심을 얻고 잃음에 있습니다. 조정에서 이미 도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하여 북성(北城)으로 철수해 들어가서, 온 나라의 백성을 버려지는 땅에 두고 아침저녁 사이에 어육(魚肉)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이때를 당하여 국가의 은신(恩信)이 과연 칼날과 화살 밑에서 우리를 버린다는 한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신은 안팎이 서로 원망하고 상하(上下)가 서로

金湯可恃，而又以都民，眞有子來之願，飢民可堪踊躍之策，而決意行之耶？臣恐或未深思也。凡守城之道，固以山谷之險爲重，而大本在於民心得失。朝廷既以都城爲不可守，捲入北城，以一國人民，置之等棄之地，以待其朝暮魚肉，則當此之時，國家恩信，果能使無棄子之歎於鋒鏑之下耶？不然則臣恐內外互怨，上下交怒，賊未入而群情已鼎沸，區區斗城之內，又何望保有時日耶？所謂退守清野之議，臣不敢知也。且城池之不得修築，入於丙子約書，備後之策，未知得失如何，而目前之辱，恐致無限境界也。至於饑民之役使，尤萬萬不可。朝家既失於領送本土之舉，夏序已屆，尙不設賑，而今欲驅赴於木石之役，朝家本意，雖在救其翳桑之饑，人必不信，況未必然者耶？雖以臣言耄而不足取，稍待兩大臣登朝，更加商確，無致後日之悔焉。

上俱以已諭予意答之。

	<p>노여워하여, 적이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민심이 이미 솔의 물이 끓듯이 소란하게 될까 싶으니, 보잘것 없는 작은 성 안에서 또 어찌 시일을 끝면서 보존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른바, ‘물리가 지키며 청야(淸野)한다.’는 의논은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성지(城池)를 수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자년 11684)의 약서(約書)에 들어 있는데, 후일을 대비하는 계획의 득실(得失)은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으나, 눈앞의 옥됨이 한계가 없는 지경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기민(饑民)을 사역하는 데 이르러서는 더욱 한번 옳지 못합니다. 조정에서 이미 본토로 보내는 일을 실패하였고, 여름철이 이미 이르렀으나, 아직 구호하는 일을 마련하지 아니하면서, 이제 몰아다가 목석(木石)의 역사에 나가게 하려고 하니, 조정의 본뜻은 비록 다만 굶어 죽는 사람을 구호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드시 믿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꼭 그렇지도 아니한 것이겠습니까? 비록 신의 말은 늙어서 죽히 취할 것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두 대신이 조정에 올라오기를 조금 기다려서 다시 상량(商量)하여, 후일의 뉘우침을 초래(招來)함이 없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p> <p>“이미 내 뜻을 개유(開諭)하였다.”</p> <p>하였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康熙) 42년) 4월 1일 (병자) 3번째기사</p>	<p>이조 판서 김구(金構)가 대간의 소계(疏啓)와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차자(劄子)에 배척당하였다 하여 상소하기를,</p> <p>“유개(流丐)를 돌려보내는 일은 신도 감히 반드시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겠지</p>	<p>○吏曹判書金構，以臺諫疏啓及原任大臣之劄斥，上疏曰：</p> <p>流丐還送之舉，臣亦不敢必其無失，古</p>

만, 옛사람도 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죽(設粥)이 효과가 없음은 실로 명백한 징험이 있으니, 떠돌아 다니다가 구렁에서 죽은 송장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본 고장으로 가서 농사를 짓게 하여 편하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외방에서 설죽(設粥)하지 아니하는데 서울에서만 시행한다면, 그 형세가 장차 도착한 백성을 모두 일으켜서 물결처럼 달려와 죽을 먹으러 나아가도록 하며, 인하여 의탁할 곳을 잃게 할 것이니 어찌 민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 도(道)에 영솔해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3분의 2가 되었는데, 대계(臺啓)가 거듭 품(稟)한 뒤로는 겨우 10분의 1이 되었으니, 대계가 먼저 발의(發議)한 때문에 민정(民情)을 의혹하게 한 소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증공(曾鞏)11690)의 흉년을 구제하는 의논에 이르기를, ‘장년(壯年)은 두 되 어린이는 한 되를 먹이면, 들에서 지내어 비바람을 맞는 백성이 서로 이끌고 날마다 두되의 양식을 위에서 주기를 기다리게 되어, 형편이 반드시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이 일체 모든 일을 폐지하고 목숨만 살아가는 계획을 하게 될 것이니, 이는 바로 굶주려 죽는 자를 기르고 기르는 것일 뿐이며 백성을 위하는 장구한 계획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옛사람이 백성에게 그 농사를 폐지하고 의탁할 곳을 잃는 것을 근심함이 이와 같습니다. 하루에 두 되의 쌀도 오히려 그러하는데, 하물며 하루에 두어 홉(斛)의 죽이겠습니까? 신이 설죽(設粥)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뜻은 대개 이와 같습니다. 계획을 말한 것이 시행되지 못한 뒤에, 또 한결같이 언자(言者)의 말에 의하여 일이 지연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마침내 민정(民情)을 잃고 국체(國體)를 손상시키는 데로 돌아감을 면치 못하였으니, 신이 비록 만 번 죽을지라도 이 백성에게 사죄할 수 없습니다. 북한성(北漢城)의 의논은, 신도 모두가 좋고 결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에서 백 년 앞날을 근심함이 없다면, 오히려 고식적(姑息的)으로 눈앞의 안일(安逸)만을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변경의 사변이 한 번 일어나서 갈 만한 곳이 없게 된다면, 장차 국가를 어느 곳에 두겠으

人有行之者矣。設粥無效，實有明驗，與其流離輾轉，爲溝壑之瘠，無寧還其本土，復其田業，使之安插之爲愈。今外方不設粥，而京師獨行，則其勢將盡動土着之民，奔波就粥，仍爲失所，寧不愍然乎？諸路領送，初爲三分之二，臺啓覆稟之後，僅十之一，未必不由於臺啓，先發民情疑惑之致也。曾鞏救荒議曰：“壯者人二升，幼者一升，使暴露之民，相率日待二升之廩于上，則其勢必不暇乎他，一切廢百事，以偷爲性命之計，是直以餓莩之養，養之而已，非爲百姓長計。”古人之於民，憂其廢農失所也如此。日二升之米猶然，況日數合之粥乎？臣之不欲設粥，意蓋如此。言計不行之後，又一依言者之言，而事端遷就，以至今日，終不免失民情損國體之歸，臣雖萬死，無以謝斯民矣。北城之議，臣亦非謂萬善無欠，而倘使國家，百年無憂，猶可以姑息偷安。萬一邊塵一警，靡所可往，則將置國家於何處，又不知何人，能爲國家計者？此臣區區過慮，其不達事宜之罪，有不可逃矣。

며 또 어느 사람이 능히 국가를 위한 계책을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의 구구한 지나친 생각으로 사의(事宜)에 통달하지 못한 죄를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대계(臺啓)와 간소(諫疏)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 나라를 근심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며, 대신(大臣)의 차자(劄子)는 지나치게 혐의할 필요가 없다. 경은 사임하지 말고 굶주린 백성을 구호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이인엽(李寅燁)이 또한 진소(陳疏)하여 자핵(自劾)하기를,

“백성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길에서 대부분 도망해 흩어져서 이익이 없는데 돌아감을 면치 못하였으니, 곁에서 꾸짖는 말이 칩칩(喋喋)11691) 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이 또한 그 처치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批答)을 내려 권하여 힘쓰게 하였다. 정언(正言) 김보택(金普澤)이 또 인피하며 조목조목 변명하기를,

“유민(流民)이 만일 1분(分)이라도 본토에서 생활할 도리가 있으면, 처음부터 어찌 고향을 떠나 흩어지기를 좋아하였겠습니까? 부모 처자도 서로 보전하지 못하면서 어찌 농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은 고향 땅에 편안히 살면서 옮기기를 어려워하는 것이니, 떠돌아 다니는 거지 외에는 어찌 물결처럼 다투

答曰：“臺啓、諫疏，非有深意，言出憂國，大臣之劄，不必過嫌。卿其勿辭，凡於調賑之事，益加盡心。”李寅燁亦陳疏自劾以爲，民不領意，途多逃散，未免爲無益之歸，不待傍責之喋喋，而臣亦自知其處置之失宜，上賜批責勉。正言金普澤，又引避逐條辨破曰：“流民如有一分生理於本土，初豈樂爲離散哉？父母妻子，亦不得相保，則尙何田業之可論？人情安土重遷，流離丐乞者外，豈有奔波就粥於京師？雖發令招集，揆以事理，必無至者矣。構又以願歸者逃散，歸咎於臺啓，而臺啓未發之前，賑廳抄出領送，而輒皆鳥散，此亦因臺啓而然耶？曾鞏議，果有日待升米等語，而其下獨不言五十萬錢、一百萬粟之請貸乎？今賑廳，惟以恤財費簡應接爲務，而拯救之策，乃反責之於無麪不托之外方重臣。雖引鞏言，臣則以爲，朱夫子所謂規規然計較於飢民口吻中者，爲今日切戒也。寅燁以喋喋責言官，喋喋，卽古人指目嗇夫者，而加之於臺閣，果合於相敬之道耶？爭論是非，乃臣職責，而重臣務守前見，厭人違己，必欲置臺諫於沮國事

	<p>어 와 서울에서 죽을 얻어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비록 영을 내려 불러 모을 지라도 사리로 헤아리건대, 반드시 오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김구(金構)는 또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도망해 흩어진 것을 대계(臺啓)에 허물을 돌렸으나, 대계가 발의되기 전에 진청(賑廳)에서 뽑아내어 영솔해 보냈는데도 문득 새처럼 흩어졌으니, 이것도 대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증공(曾鞏)의 의논에 과연, ‘날마다 한 되의 쌀을 기다린다.’는 등의 말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50만 전(錢)과 1백만 곡식의 대여(貸與)를 청한다.’고 한 것은 어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청(賑廳)에서는 다만 재물의 비용을 아끼고 응접(應接)을 간략하게 하는 것만 힘쓰고, 구제하는 계획은 도리어 밀가루가 없어서 수제비를 만들지 못하는 외방의 중신(重臣)에게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비록 증공(曾鞏)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신은 생각하기를, 주자(朱子)가 이른바, ‘자질구레하게 굶주린 백성의 입만 따진다.’는 것이 오늘날 간절한 경계가 될 것입니다. 이인엽이 첩첩(喋喋)하다고 언관(言官)을 꾸짖었는데, 첩첩은 바로 옛 사람이 색부(嗇夫)11692) 를 지목하여 말한 것인데, 대각(臺閣)에게 그런 말을 하니 서로 공경하는 도리에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다투고 논하는 것은 바로 신의 직책인데, 중신(重臣)이 전의 의견을 힘써 지켜 남이 자기의 의견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여, 반드시 대간을 나라일을 저해하고 민심을 의혹하게 하는 죄에 두려고 하니, 신이 어찌 감히 편안히 있겠습니까?”</p> <p>하고, 곧 물러가서 물론(物論)을 기다렸는데, 사헌부(司憲府)에서 처치(處置)하여 출사(出仕)하기를 청하였다.</p>	<p>惑民情之科，臣何敢晏然?” 乃退待物論，憲府處置請出仕。</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4월 5일</p>	<p>행 사직(行司直) 이인엽(李寅燁)이 상소하기를, “지금 성(城)을 만들기에 적합한 땅을 의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탕춘 대성(蕩</p>	<p>○庚辰/行司直李寅燁上疏曰： 今夫宜城之地， 議者必曰蕩春、洪福，</p>

(경진) 1번째기사

春臺城)과 홍복 산성(洪福山城)이라고 말하는데, 형세의 험준함이 어느 곳이 낮고 어느 곳이 못한지를 피차 비교해 헤아리지 않고서, 곧 한 마디 말하는 사이에 갑자기 막대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자량(資糧)과 기계(器械) 같은 것은 원근을 물론하고 오히려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지만, 성자(城子)에 이르러서는 한 번 쌓은 뒤에 뜻에 따라 옮길 수 있겠습니까? 성을 지키는데 쓰는 것은 샘물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탕춘대성(蕩春臺城) 앞의 한 굽이의 물은 여름에는 가물고 겨울에는 마르며,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비록 흙을 쌓아서 물을 가둔다 하더라도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할 듯합니다. 이같은 형세를 마땅히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니, 가볍게 큰 역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약조(約條)의 말은 여러 신하들이 이미 여러 번 진달하였는데, 지금 큰 성을 서울 가까운 땅에 새로 쌓으면 성벽이 가로세로 뻗쳐서 길에 다니는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인데, 저들이 만약 물으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없으나, 또한 그럴 염려가 전연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를 피하는 방법은 만전(萬全)을 기하기에 힘써야 하는데, 어찌 혹시라도 무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북성(北城)의 동쪽 기슭은 바로 서울 내룡(來龍)의 산맥인데 술가(術家)의 말은 비록 깊이 믿을 것이 못되지만, 성조(聖祖)11702)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치하여 3백년 동안 아끼고 보호하던 땅을 마땅히 쉽사리 파서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성터를 닦고 쌓을 즈음에 산을 파고 돌을 깨뜨려서 지맥(地脈)을 파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만약 뒷날에 작은 불길함이 있으면 근거없는 의론이 떴지어 일어나서 반드시 허물을 이에 돌릴 것인데, 장차 무슨 말로 그 의혹을 풀겠습니까? 아! 해마다 거둬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되었는데, 가령 성을 쌓아서 백 가지 이익이 있고 한 가지 해(害)도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시의(時宜)에 아주 어긋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라에 삼공(三空)11703)이 있어 공사(公私)가 텅 비었으니, 그 형세가 또 고을의 흠부(欠

形便險阻，孰勝孰否，今不較量彼此，乃於片言之頃，遽決莫大之舉。如資糧、器械，無論遠近，猶可以人力搬運，至於城子一築之後，其可隨意推移乎？城守之用，莫過於水泉，而蕩春臺前一曲之水，夏旱冬涸，地皆沙石，雖欲築土儲水，恐未易辦。此等形勢，宜先審視，而徑舉大役，必有後悔。約條之說，諸臣已屢陳，而今創大城於京都密邇之地，雉堞縱橫，行路之所共見。彼如問之，可得無事而已乎？此不敢謂必然，亦不可謂全無此慮。謀國之道，務出萬全，何可冀無事於或然乎？北城東麓，卽京都來龍之脈也，術家之說，雖不足深信，而聖祖肇創，建邦設都，三百年慳護之地。不宜容易鑿破，而城基開築之際，不得不鑿山破石，侵傷地脈。倘於異日，有些休咎，則浮議朋興，必歸咎於此，將何辭而解此惑乎？噫！連歲荐飢，民窮財竭，就令築城，有百利無一害，決知其大拂於時宜也。且國有三空，公私赤立，其勢又不得不誅求縣邑之欠賦，刻徵市戶之逋債。臣恐此舉，將以備患，而適所以召亂也。見方飢民滿路，賑事日

賦)11704) 를 독촉해 받고 시호(市戶)의 포채(逋債)11705) 를 가혹하게 징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신은 이 일은 장차 환난(患難)을 대비하려는 것이지만 난(亂)만 불러 일으킬까 싶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굶주린 백성이 길에 가득하여 구제하는 일이 날로 급한데도, 너무 오래 지연시켜 비난하는 의논이 마구 일어납니다.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만 나라가 편안하므로, 옛부터 성철(聖哲)의 교훈은 반드시 백성을 구호하는 일로써 근본을 삼았고, 성지(城池)를 먼저하고 인민을 뒤에 하는 일로써 국가의 깊고 먼 장래의 생각으로 삼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선왕(先王)의 적자(赤子)가 불행히 흉년의 재앙을 만나서 오직 부모(11706) 가 가까이 있다는 마음으로 의지하여 먹여 주기를 바라는데, 구휼을 맡은 신하가 이에 ‘둘째 일’이라고 말하니, 저 소민(小民)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실망하여 마음이 떠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비록 높은 성벽이 솟아 있더라도 백성이 진심으로 불쫓지 않는다면,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진정(賑政)11707) 에 전심하여 때에 맞추어 구호하면, 바야흐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까 합니다. 대저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산과 계곡이 험준한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기(吳起)11708) 가 이른바, ‘군주의 덕에 있고, 지세의 험준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진실로 격언(格言)입니다. 오직 성명께서 실덕(實德)으로써 실정(實政)을 행하여, 서민으로 하여금 모두 윗사람을 친하고 장관(長官)을 위해서 죽는 의(義)를 알게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성(城)을 이루어 반석처럼 안전할 것인데, 어찌 ‘어디로 가서 의탁하겠느냐?’ 하는 한탄이 있겠습니까? 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감히 저지(沮止)시키기 위한 의론만이 아닙니다. 일찍이 생각하건대, 천하의 일은 스스로 근본과 말단(末端)이 있는데, 지금 관방(關防)과 군정(軍政)이 허술하여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먼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신칙하여 수륙(水陸)의 형편을 살펴보고, 각각 믿을 만한 곳을 정하여 많은 병력을 나누어 두고 지방 방비의 형

急, 而遷延太久, 訾議橫生。夫民惟邦本, 本固邦寧。自古聖哲之訓, 必以恤民爲本, 未聞以先城池後民人, 爲國家深長慮者。先王赤子, 不幸而罹災凶, 惟以父母之孔邇, 依歸仰哺, 而主賑之臣, 乃以爲第二件事, 彼小民聞之, 得無絕望離心乎? 縱令崇墉屹屹, 民不歸心, 誰與守之? 臣謂宜專心於賑政, 及時而救之, 庶收方散之民情也。大抵固國之道, 雖在山谿之險, 而吳起所謂在德不在險者, 實格言也。惟在聖明, 以實德行實政, 使民庶皆知有親上死長之義, 則衆心成城, 安如磐石, 夫焉有何歸之歎乎? 臣之爲此說者, 亦非敢徒爲沮止之論也。嘗以爲天下事, 自有本末, 今關防、軍政之踈虞, 無一可恃, 先飭道臣、帥臣, 審視水陸形便, 各定信地, 分置重兵, 以增藩垣之勢, 則雖有外寇, 亦不至有傳國都之患, 此臣所謂當先者也。不先慮此, 而規規於斂入一城之計, 誠不能禦之於邊外, 表裏山河, 盡以與敵, 而徒擁單師, 獨守孤城, 則雖使般倮築之, 墨翟守之, 顧何補於危亡乎? 蓋聞洪福形便, 不可與北城比, 既連陸路, 又與南

세를 증가시킨다면, 비록 외구(外寇)가 있을지라도 국도(國都)에 접근하는 근심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신이 이른바, 마땅히 먼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생각하지 않고서 한 성(城)으로 거두어 들어가는 계획만 힘쓰는데, 진실로 변경 밖에서 적을 방어하지 못하여 안팎 산하(山河)를 모두 적에게 주고 한갓 고단한 군사를 데리고 홀로 외로운 성을 지키면, 비록 반수(般僮)11709) 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고, 목직(墨翟)11710) 으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할지라도 나라가 위망(危亡)하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듣건대, 홍복 산성(洪福山城)은 형세가 북성에 견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육로(陸路)에 연하였고 또 남한(南漢)과 기각(掎角)의 형세가 있으니, 마땅히 양주(楊州)로 하여금 부치(府治)11711) 를 홍복 산성 안으로 옮기게 하여 세월을 끌면서 차차로 쌓게 할 것입니다. 만일 해방(海防)을 근심한다면 강화(江華)·교동(喬桐)과 영종도(永宗島)·대부도(大阜島) 등 섬에 전함(戰艦)을 더 두고 서로 연락하여 각각 제어하게 하고, 수원(水原) 등의 고을을 좌보(左輔)로 삼고 장단(長湍) 등의 고을을 우보(右輔)로 삼으며, 안흥(安興) 등의 진(鎭)은 남해(南海)를 방비하고 소강(所江) 등의 진은 서해(西海)를 방비하게 하여, 섞여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성원(聲援)하면 적이 감히 바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다른 도(道)의 육로에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아니함이 없으면, 울타리가 중복되고 산하(山河)의 지세(地勢)가 견고(堅固)하여, 비록 급변을 당하더라도 거의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이 임진년 초기에 진관(鎭管)의 제도를 회복하기를 청하였는데, 진관은 조종조(祖宗朝)에서 설치한 바로 군정(軍政)의 대강령[大綱]입니다. 한가할 때에 옛 제도를 수복(修復)하여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저축하며 험한 요새를 골라 지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허비하는 데 비할 바가 아니며, 한 번 규제(規制)를 정하면 저절로 점차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묘당(廟堂)에 내려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漢爲掎角之勢，宜令楊州，移府治於洪福之內，持以歲月，旋旋營築。如以海防爲憂，則江華、喬桐、永宗、大阜等島，增置戰艦，羅絡相連，使各控制，水原等邑爲左輔，長湍等邑爲右輔，安興等鎭備禦南海，所江等鎭備禦西海，參錯相望，互爲聲援，則敵不敢徑突。推之他道陸路，莫不皆然，藩籬重複，襟抱固密，雖當緩急，庶有所恃矣。故相臣柳成龍，壬辰初請復鎭管之制。鎭管者，祖宗朝所設置，而軍政之大綱也。及時閑暇，修復舊制，鍊兵峙糧，擇守險要，此等事件，非如勞民費財之比，一定規制，自可漸就。伏願下廟堂稟處焉。

答曰：“大臣筭批，已諭予意，而所謂來龍之說，令該監，廣詢稟處。”後，觀象監提調金昌集，請招集諸地師，以寅燁所陳，各令獻議，許之。校理權尙游白上曰：“堪輿家茫昧，本不足信，築城，國之大事，而欲決於一二地師之口，恐乖事體。”上曰：“太祖大王定鼎時，亦問于地師，蓋以耕當問奴也。一番論難，庸何妨也?”居數月，諸地

	<p>하니, 답하기를,</p> <p>“대신(大臣)의 차자(筭子)에 대한 비답(批答)에 이미 내 뜻을 밝혔다. 이른바, 내룡(來龍)을 파괴한다는 말은 해감(該監)으로 하여금 널리 물어서 품처하게 하라.”</p> <p>하였다. 뒤에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김창집(金昌集)이 여러 지사(地師)를 불러 모아서, 이인엽(李寅燁)의 진달한 바를 가지고 각각 의논을 올리게 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교리(校理) 권상유(權尙游)가 임금에게 아뢰기를,</p> <p>“감여가(堪輿家)11712) 는 허황하여 본래 믿을 것이 못되며 축성(築城)은 나라의 큰 일인데, 한두 지사(地師)의 말로써 결정하려고 하면 사체(事體)에 어긋날까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나라를 정하실 때에도 지사에게 물으셨으니 대저 ‘밭을 가는 일은 마땅히 종[奴]에게 물어야 한다.’는 까닭이다. 한번 논난(論難)하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는가?”</p> <p>하였다. 두서너 달이 지나서 여러 지사(地師)들이 비로소 모여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내룡(來龍)의 맥을 파서 깨뜨리는 것은 해가 있다.’고 하였으나, 유독 동지(同知) 신경윤(愼景尹)은 해가 없다고 하였는데, 마침 성역(城</p>	<p>師始會議，皆以爲，鑿破來脈，有害，獨同知愼景尹以爲無害，會城役中寢。寅燁平居，以廟略自任，多所經紀，而空言無施，其疏條陳頗多，而上不賜採納，命稟處者，惟來龍事而已，識者惜之。然其論賑事，侵軋同事之人，有若已無所與者然，人皆疑其心迹。</p>
--	--	---

	<p>役)이 중지되었다. 이인엽은 평소에 묘당(廟堂)의 계략을 스스로 맡아서 경기(經紀)11713) 함이 많았으나 빈말 뿐이고 실시됨이 없었으며, 그 상소에 조목별로 진달함이 자못 많았는데도 임금이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품처(稟處)를 명한 것은 다만 내용을 파서 깨뜨리는 일 뿐이어서, 식자(識者)들이 이를 애석히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진휼(賑恤)을 논할 일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침해하고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는 것처럼 한 것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의 자취를 의심하였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康熙) 42년) 4월 7일 (임오) 1번째기사</p>	<p>비로소 구창(舊倉)에서 죽(粥)을 마련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호하였다.</p>	<p>○壬午/始設粥于舊倉，以賑飢民。</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康熙) 42년) 4월 9일 (갑신) 3번째기사</p>	<p>부제학(副提學) 김진규(金鎭圭)와 교리(校理) 이관명(李觀命)이 차자(筮子)를 올리기를, “이제 큰 제사를 친히 행사하려고 재계(齋戒)를 이미 마쳤고, 대가(大駕)가 장차 거동하려고 하는데 뜻밖에 상신(相臣)이 이때 졸(卒)하였으니, 옛 예(禮)의 ‘대부(大夫)가 졸하였는데, 제사를 당하면 고(告)하지 아니한다.’는 의(義)로써 헤아리건대, 마땅히 계달할 수 없지만 승정원(承政院)에서 명소(命召)를 반납(返納)함으로 인하여 우러러 품(稟)하기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지금은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종묘(宗廟)의 예(禮)는 지극히 중하기 때문에 부자(夫子)11717)가 ‘예를 이룰 수 없다.’고 증자(曾子)의 물음에 답하였으나, 대부(大夫)의 상(喪)에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친향(親享)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춘추(春秋)》를 상고해 보건대, ‘노(魯)나라 소공(昭公) 15년 12월 계유일에 무궁(武宮)에 제사가 있었는데, 악(籥)11718)이 들어오자 숙궁(叔弓)이 졸(卒)하니, 악(樂)을 없애고 행사를 마</p>	<p>○副提學金鎭圭、校理李觀命上筮曰： 今茲大禴親享，齋已致矣，駕將動矣，而不意相臣，卒於此際。揆以古禮，大夫卒，當祭則不告之義，不宜啓達，而政院因還納命召，不免仰稟，今無可論矣。惟是宗廟之禮至重，故夫子以不得成禮，答曾子之問，而不及於大夫之喪，則親享之仍行，固其宜也，而竊稽《春秋》，魯昭公十五年二月癸酉，有事于武宮，籥入，叔弓卒，去樂卒事，先儒許其得禮之變。然而叔弓則既蒞事而卒於祭所，與今日事差殊。我國典禮，於國恤卒哭後，大祀用樂。今</p>

쳤다.’고 하였는데, 선유(先儒)가 예(禮)를 잘 변경하여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숙궁(叔弓)은 이미 제사의 일에 임하였다가 제소(祭所)에서 졸하였으니, 오늘날의 일과는 다릅니다. 우리 나라 전례(典禮)는 국휼(國恤)의 졸곡(卒哭) 후에는 큰 제사에 악(樂)을 쓰는데, 이제 옛 예를 인용(引用)하여 악(樂)을 없애려고 하면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노(魯)나라 선공(宣公) 8년 6월 신사일에 태묘(太廟)에 제사가 있었는데, 중수(仲遂)가 수(垂)에서 졸하였으나 임오일에 그래도 역(釋)11719) 하였으니, 성인(聖人)이 그것이 예절에 어긋남을 비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호씨(胡氏)11720)의 춘추전(春秋傳)에 이르기를, ‘역(釋)이란 것은 제사지낸 이튿날에 빈시(賓屍)하는 것이고, 유(猶)라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가하다는 말이다. 중수(仲遂)는 나라의 경(卿)인데 졸하였는데도 오히려 역(釋)하였으니, 대신을 사랑하고 대우하는 예(禮)를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지금 종묘 제사에 비록 그 예가 중하므로 친향(親享)을 폐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釋)한다.’라는 비난을 참작하면 마땅히 의(義)를 일으킬 바가 있지만, 의식 절차를 변하고 줄이는 사이와 관(裸)11721) 을 드리고 악(樂)을 쓰는 예는 모두 신(神)에게 제사하는데 관계되므로 망령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복(飲福)과 수조(受胙)11722) 같은 것은 대개 주제(主祭)하는 사람이 신(神)의 은혜를 받는 절차이므로, 관헌(裸獻)에 비하면 자못 가벼운데 만약 지금의 제의(祭儀)로써 그 역(釋)하지 아니하는 뜻을 구하려고 하면, 다만 이 한 가지 절차만은 변경해 줄이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또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珣)의 의논에 말하기를, ‘기복(碁服)과 대공복(大功服)은 장사 후에 바야흐로 평시와 같이 제사하되, 다만 수조(受胙)는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왕조(王朝)의 예(禮)와는 다를지라도, 또한 제사에 수조(受胙)하지 않는 하나의 방증(傍證)이 될 만합니다.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강구(講究)하여 품정(稟定)하도록 하소서.”

欲引古禮而去樂，則未知其爲的確，而魯宣公八年六月辛巳，有事于太廟，仲遂卒于垂，壬午猶釋，聖人譏其非禮。胡氏之《傳》曰：“釋者，祭之明日，以賓尸也，猶者可已之辭。仲遂，國卿也。卒而猶釋，則失寵遇大臣之禮。以此觀之，今於廟祀，雖以其禮重，不廢親享，而參以猶釋之譏，宜有所義起，而變殺於儀節之間。裸獻用樂之禮，皆係享神，不可妄議，而若乃飲福、受胙，蓋是主祭之人，受神賜之節，比裸獻頗輕。若以今之祭儀，欲求其不釋之意，則惟此一節，似可變殺矣。且文成公李珣之論以爲，期、大功，葬後方祭如平時，但不受胙。此雖異於王朝之禮，亦可爲享祀不受胙之一旁照也。亟命有司，講究稟定。

上命禮曹，議于大臣，右議政申琬議：“叔弓之卒，去樂，廟祀用樂，專爲事神，不係於主祭之君，則先儒何以許其得體？無乃裸獻登降之儀，亦有所隨時變殺，不專以享神爲重耶？或云叔弓，卒於祭所，與今差殊，而仲遂卒於垂，聖人譏其猶釋，則可見其不以內外而有

하였다. 임금이 예조(禮曹)에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니, 우의정 신완(申琬)은 의논하기를,

“숙궁(叔弓)이 졸(卒)하여서 악(樂)을 없앤 것과 종묘 제사에 악을 쓰는 것은, 오로지 신(神)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주제(主祭)하는 군주에게 관계되지 아니 하는데, 선유(先儒)가 어찌하여 그것이 사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관헌(裸獻)의 오르고 내리는 의식도 또한 때에 따라 변쇄(變殺)함이 있고, 오로지 신을 제사하는 것만 중함을 삼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숙궁(叔弓)은 제소(祭所)에게 졸하였으니 지금과 다르다.’고 하나, 중수(仲遂)는 수(垂)에서 죽었고 성인(聖人)이 오히려 역(釋)한 것을 비난하였으니, 거기에서 안과 밖으로써 차별을 두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釋)은 바로 빈시(賓屍)의 제사여서 큰 제사와 같지 아니한데, 진씨(陳氏)11723)가 말하기를, ‘《춘추》의 법에, 제사를 당하여 경(卿)이 졸(卒)하면 악(樂)을 쓰지 아니하고 이튿날 역(釋)하지 않기 때문에, 숙궁(叔弓)이 졸하자 소공(昭公)이 악을 없애고 제사를 마쳤으니, 군자(君子)가 사체의 적당함을 얻었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살펴본다면 풍악을 없애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수조(受胙)하지 않는 것과 음복(飲福)하지 않는 것은 비록 한때 의를 일으키는 데서 나왔을지라도, 이미 경전(經傳)의 명문(明文)이 없습니다. 또 선정신(先正臣)이이(李珥)의 의논은 단지 사가(私家)의 기공복(碁功服)만 논하였고 왕조(王朝)의 전례(典禮)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써 방증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서문중(徐文重)은 의논하기를,

所差別也。釋，即賓尸之祭，與大享不同，而陳氏曰：‘《春秋》之法，當祭，而卿卒則不用樂，明日不釋，故叔弓之卒，昭公去樂卒事，君子以爲得體。’觀此則其去樂則明甚矣。至於不受胙，不飲福，雖出一時之義起，既無經傳之明文，且先正臣李珥之論，只論私家期功，而不及王朝典禮，以此旁照，未知爲的證也。”判府事徐文重議：“儒臣陳筭，蓋引經說事宜採施，而某節當省，造次問難以仰對。”禮官請上裁，上下教曰：“裸獻用樂，皆係享神，決難輕議，飲福、受胙，亦異賓尸之祭。今此筭論，未知其的確也。”遂不果行。

	<p>“유신(儒臣)이 진달한 차자(筭子)는 대개 경설(經說)에서 채용하여 시행할 만한 일을 인용하였는데, 어느 절(節)을 마땅히 줄일 것인지는 창졸간에 우러러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p> <p>하였다. 예관(禮官)이 임금의 재결을 청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p> <p>“관헌(裸獻)에 악(樂)을 쓰는 것은 모두 신(神)을 제사하는 데 관계되므로, 경솔히 의논하기가 어렵다. 음복(飲福)과 수조(受胙) 또한 빈시(賓屍)의 제사와 다르니, 지금 이 차자(筭子)의 논의가 정확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p> <p>하였는데, 마침내 실행되지 못하였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4월 12 일(정해) 1번째기사</p>	<p>이조 판서 김구(金構)가 상소했는데, 대략 이르기를,</p> <p>“신이 연중(筵中)에 주달한 본뜻은 대개 만일 위급한 사변이 있어 의탁할 곳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는, 백성을 구휼하는 일은 도리어 두번째 일이 된다고 한 것이며, 사변이 없을 때에도 마땅히 백성의 구휼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세(文勢)와 어맥(語脈)이 진실로 스스로 분명하니, 이는 가설(假說)의 말에 불과합니다. 이인엽(李寅燁)은 참으로 변난(變難)이 이미 일어나 온 도성이 솔의 물이 끓듯이 소란한 데도 오히려 장차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만을 일삼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신은 이인엽과 더불어 처음에 유개(流丐)를 거느리고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기를 청하였으나 비를 만나 조금 지연되었는데, 대계(臺啓)가 갑자기 일어나고 그 뒤에 진소(賑所)가 오래지나 정하여져 초7일부터 설죽(設粥)하였으나, 이 앞의 날짜도 계산하여 마른 양식을 주었으니, 또한 구제하는 바가 없이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은 아닙니다. 유개가 죽은 것이 네 사람인데, 비록 배불리 먹고</p>	<p>○丁亥/吏曹判書金構上疏。 略曰：</p> <p>“臣之筵奏本意，蓋以爲脫有緩急，無所依歸，則到此地頭，賑民反爲第二件事云爾，非謂無事之時，亦當以賑民爲緩也。 文勢、語脈，儘自分曉，此不過假設之辭。 李寅燁信以爲，變難既作，滿城鼎沸，而猶將以賑民爲事而已乎？ 臣與寅燁，初請領還流丐，而遇雨稍遲，臺啓遽發。 其後賑所，久而乃定，自初七日設粥。 前此亦計日給乾糧，又非無所賑而任其死也。 流丐死者四人，雖飽樂之日，累千人一朔之內，豈無三四病亡者乎？ 賑民而民無死</p>

즐길 때라 하더라도 여러 천 명의 사람 가운데 한 달 안에 서너 사람의 병들어 죽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백성을 구제하여 사망하는 백성이 없으면 될 것인데, 하필 설죽(設粥)에만 구애하겠습니까? 신이 혜국(惠局)에서 일의 순서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음이 이인엽만 못하여 모든 일을 반드시 물은 뒤에야 행하였으며, 벼슬이 이미 같고 일도 또한 같으므로 처음에서 끝까지 서로 어긋난 적이 없었는데도, 뜻밖에 비방하는 논의가 어지럽게 떠드는 즈음에 도리어, ‘지연시킨 것이 너무 오래되어 거둬 민심을 잃었다.’는 등의 말로써 공격 배척함이 자못 심하여, 국외(局外)에서 방관(傍觀)만 하고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한 것이 있으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원하옵건대, 신이 백성의 일에 근심하지 아니한 죄를 다스려서 사망으로 하여금 설죽(設粥)을 늦춘 것은, 신 한 사람의 소견에 말미암은 것임을 환하게 알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卿)의 본 뜻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이인엽의 상소 가운데 침해하고 배척한 말이 많아서 자못 화평함을 잃었으니,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이인엽이 또 상소하기를,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데 무릇 굶주림이 있으면, 반드시 시기에 미쳐 구제하기를 불에 타는 것을 구제하고 물에 빠지는 것을 건지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백성의 부모가 된 도리입니다. 지난번 설죽(設粥)을 품정(稟定)한 뒤에 좌우로 구애되고 또 지연됨에 이르러서, 비단 바깥 의논이 어지럽게 떠들 뿐만 아니라 백성의 바라는 바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였는데,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亡足矣，何必拘於設粥乎？臣於惠局，諳鍊首尾，不如寅燁，每事必問而後行。官既同而事亦同，未有終始逕庭者，而不意謗議噂沓之際，乃反以遷就太久，重失民心等說，攻斥殊深，有若局外旁觀，初無與知者，良亦異矣。乞正臣不恤民事之罪，使四方曉然知緩於設粥，由臣一人之獨見也。

答曰：“卿之本意，予豈不知？李寅燁疏中，語多侵斥，殊欠和平，予以爲過也。安心勿辭。”寅燁又上疏曰：

人君以民爲天。凡有饑餓，必及時賑之，如救焚拯溺者，爲民父母之義也。日者設粥稟定之後，左右牽掣，復至淹遲，不但外議噂沓，民望亦且缺然，而賑民第二之說，又發於此際，彼小民，安知其假設之辭，而不爲之怨懟乎？國無門庭之寇，民有溝壑之瘠，緩急先後，不翅較然，而言之不認，乃至於此，此臣竊憂於失民心者也。昔在壬辰，干戈搶攘，而宣廟，猶以賑民爲急，至募粟而濟之，則雖於顛沛倉卒之間，可見其本末輕重之所在。藉令真有變亂，

둘째 일이라는 말이 또 이즈음에 나왔으니, 저 소민(小民)들이 어찌 그 가설(假說)의 말임을 알아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는 문 앞의 도적이 없는데 백성은 구렁에 쓰러지는 송장이 있으니 완급(緩急)과 선후가 분명할 뿐만 아닌데, 말을 삼가지 못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신이 못내 민심을 잃음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전 임진년에 전쟁이 어지러웠던 데도 선조(宣祖)께서 오히려 백성을 구휼하는 것을 급무(急務)로 삼아서 곡식을 거두어 구제하기까지 했으니, 비록 위급하고 창졸한 때라 하더라도 그 본말(本末)과 경중(輕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참으로 변란이 있어 백성이 장차 굶주려 죽게 되면, 신은 오히려 백성의 구제를 첫째로 삼겠습니다. 만약 이 말이 시행되게 된다면 비록 성(城)이 포위되는 때를 당할지라도, ‘부엌에 물이 잠겨서 개구리가 알을 낳아도, 백성이 배반할 뜻이 없다.’(11732) 는 것을 책임지우기가 어려울까 합니다. 구휼하는 일이 하루가 급하다고 하는 것은 대신이 차자(筭子)로 인하여 발론된 것인데, 이는 신과 김구가 같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김구에게만 허물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한 마디 말을 망령되게 내어서, 공사(公私)가 모두 막히고 동료(同僚) 사이에 의심과 노여움이 함께 이르게 되니, 신은 진실로 부끄럽고 뉘우쳐서 혀를 잡아매어 말을 못하게 하여도 미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卿)은 사직하지 말고 빨리 공무를 집행하라.”

하였다. 이에 김구와 이인엽이 함께 인피(引避)해 들어가 진휼하는 일을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 두에 연신(筵臣)이 권하여 직무에 힘쓰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패초(牌招)를 명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而民將飢死，臣則猶以爲救民，當爲第一。若使此說得行，則雖當圍城之時，恐難責於沈竈產蛙，民無反意也。賑事日急云者，因大臣筭而發也。此則臣與構，均任其責，而非歸咎於構者也。臣一言妄發，公私兩梗，同席之間，疑怒交至，臣誠慙悔，捫舌而無及也。

答曰：“卿其勿辭，從速行公。”於是構、寅燁，俱引入，無主賑者。後，筵臣請賜責勉，上命牌招，仍曰：“築城事，右相、吏判，實主其議，此非私利害，不過爲宗社他日之慮。公心可否，固無不可，而章牘之間，侵詆多端。如金構，向日筵白，亦豈以賑民，眞爲第二事耶？李寅燁之疏，有若以構不思賑民，惟以城役爲急者然，良可慨也。”

	<p>“축성(築城)의 일은 우상(右相)과 이판(吏判)이 진실로 그 의논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해(利害)를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宗社)를 위하여 훗날을 염려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공심(公心)으로 가부를 논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함이 없지만, 장독(章牘)11733) 사이에 침범해 꾸짖음이 많으니, 김구가 전일 연중(筵中)에서 아뢰던 것이 또한 어찌 백성을 구휼하는 일을 참으로 두번째 일로 삼은 것이겠는가? 이인엽의 상소에 김구가 백성 구휼을 생각하지 않고서 다만 성역(城役)만 급무(急務)로 삼는 것처럼 했으니, 진실로 개탄할 만하다.”</p> <p>하였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4월 13 일(무자) 3번째기사</p>	<p>지평(持平) 유언명(兪彦明)이 상소하기를,</p> <p>“재상(宰相)은 군주의 팔과 다리이고 대각(臺閣)은 임금의 귀와 눈인데, 한 편을 치우치게 중하게 여기고 한 편을 치우치게 뒤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말을 받아들이는 즈음에 일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고, 재상에게서 나온 말은 뜻을 굽혀 반드시 따르시고 대각에게서 나온 말은 문득 경멸의 뜻을 보이시니, 신은 민망스럽게 여깁니다. 근래의 일로써 징험하건대, 굶주린 백성을 분고장으로 보내는 것은 바로 왕정(王政)의 큰 실수여서 대각에서 이를 간(諫)하였으나, 채택해 시행하지 못하여 마침내 백성의 원망을 불러 일으키고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켰으니, 비록 중신(重臣)이 잘못을 자책하고 뉘우침이 있더라도 이미 지난일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북성(北城) 쌓는 일의 적당 여부는 뜰에 가득한 신하들의 의논이 서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었으나, 요컨대 모두 국가를 위하는 계책이니, 비록 그 추향(趨向)이 같지 않더라</p>	<p>○持平兪彦明上疏曰：</p> <p>宰相，人主之股肱，臺閣，人主之耳目，不可偏重而偏落也。殿下，於聽納之際，無論事之是非，言出宰相，屈意必從，言出臺閣，輒示輕侮，臣竊悶之。以近事驗之，領送飢民，是王政之大失着，臺閣爭之而未蒙採施，畢竟招民怨而損國體。雖有重臣，訟悔之章，何益於已事？北城便否，盈庭之議，互有甲乙，而要之皆爲國家計，雖其所趨不同，豈爲是沮戲之計哉？右揆之一意築斯，豈爲緩急之備，原任大臣之筭論利</p>

도 어찌 이처럼 저희(沮戲)하기를 피하겠습니까? 우상(右相)이 한결같은 뜻으로 이 성을 쌓으려는 것은 진실로 완급(緩急)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차자(筭子)로 이해(利害)를 논한 것은 마침 의견이 그러한 것입니다. 진실로 도성(都城)을 구획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의리를 잃지 아니하였는데, 전하께서 ‘뜻밖의 차진(筭陳)’이라고 비답하셨으니, 애석하게도 대신(大臣)을 존경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굶주린 백성을 사역하여 이 성을 쌓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흉년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주 작은 영작(營作)11736) 으로 한 고을이나 한때의 급함을 구제할 만한 것이지, 어찌 백년을 의탁할 땅을 만들어서 아주 많은 수효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계책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여위고 굶주려서 병든 백성을 한 말의 쌀이나 한 필의 무명을 주어 몰아다가, 높은 산과 급한 비탈의 위에서 돌을 메고 흙을 지는 역사에 나가게 한다면, 그들이 죽지 않는 것은 요행일 뿐, 역사는 완실하지 못하고 정치는 어질지 못합니다. 오늘날 급한 바는 백성을 구출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는데, 이에 성을 쌓는 것을 첫째 일로 삼으니, 백성은 죽더라도 구호하지 않고서 다만 축성만 급무(急務)로 삼는다면,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니 비록 성이 있더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원하건대, 다시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피를 합하여 경영하여 힘을 쌓고 때를 기다려서 거행하고,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진구(賑求)에 마음을 쓰도록 하소서.”

하고, 상소 끝에 또 청하기를,

“여러 영문(營門)과 태복시(太僕寺)의 곡물을 발매(發賣)하여, 진청(賑廳)으로 보내어 진휼하는 밀천에 보충하소서. 을해년11737) 신포(身布)를 탕감(蕩減)한 뒤에, 수령이 몰사(沒死)한 수효를 거것으로 늘여서 회부(會付)한 곡식을

害, 適意見然也, 固不失於體國忠君之義, 而殿下批之以意外筭陳, 惜乎, 非敬大臣之道也。 若其役飢民築斯城, 亦有不然者。 所謂凶年興役, 如小小營作, 可以救一縣一時之急者, 豈是爲百年倚恃之地, 而救千萬頷顛之計哉? 今也驅羸贏飢病之民於斗米、匹綿之間, 赴據石負土之役於高岡峻阪之上, 則其不死幸耳。 爲役則不實, 以政則不仁也。 今日所急, 莫先於賑民, 而乃以築城爲第一件事, 民死而不救, 惟城之爲急。 民盡劉矣, 雖有城, 可得以守諸! 亦願更與諸大臣, 合謀經營, 蓄力待時而舉, 亟命有司, 專意於賑救焉。

疏末, 又請諸營門、太僕發賣穀物, 移送賑廳, 以補賑資。 乙亥身布蕩減之後, 守令虛張沒死之數, 冒減會付之穀, 有勿罪之教, 然後始以實告者宜罪之, 以懲貪汚。 答曰: “有懷疏陳, 予用嘉之。 第赴擔石負土之役於高岡峻阪之上, 民死不救, 惟城爲急等語, 大失本意。 他餘事, 令該曹稟處。” 後, 備局覆奏, 發賣事涉細瑣, 追罪不免失

	<p>불법으로 감한 것은 처벌하지 말라는 하교가 있는 연후에, 비로소 실고(實告)한 자는 마땅히 처벌하여 탐오(貪汚)를 징계해야 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마음에 품은 바가 있어 상소로 진달하니, 내가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높은 언덕과 가파른 비탈에서 돌을 메고 흙을 지게 하여, 백성은 죽더라도 구제하지 않고서 다만 축성만 급무(急務)로 삼는다.’는 등의 말은 본뜻을 아주 잃었다. 다른 나머지의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p> <p>하였다. 뒤에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곡물을 발매하는 것은 일이 자잘구레한 데에 관계되며 추죄(追罪)하는 것은 실신(失信)을 면치 못하니,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윤허하였다.</p>	<p>信, 宜置之, 允之。</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5월 9일 (계축) 2번째기사</p>	<p>특별히 어장(御醬)11868) 여섯 항아리와 공곽(貢藿)11869) 1천 근을 진청(賑廳)에 내려보내 죽을 끓이는 자료에 보태게 하였다.</p>	<p>○特下御醬六甕、貢藿千斤于賑廳, 以補煮粥之資。</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5월 9일 (계축) 3번째기사</p>	<p>이보다 먼저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바다를 건너던 역관(譯官)이 침몰한 이유로 넉넉한 부물(賻物)을 보냈는데, 대신(大臣)이 시친(屍親)11870)에게 나누어 주기를 청하니, 부제학(副提學) 김진규(金鎭圭)가 아뢰기를,</p> <p>“《춘추(春秋)》의 의리에 신하는 사사로이 사림이 없는 것이며 《예기(禮</p>	<p>○先是, 對馬島主, 以渡海譯官敗沒, 優致賻物。 大臣請分給屍親, 副提學金鎭圭言: “《春秋》之義, 人臣無私交。 《禮》曰: ‘束脩之間, 不出境人。’ 臣不可與他國人, 私相與受。</p>

	<p>記》에 이르기를 ‘속수(束脩)11871)의 위문은 국경을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신하는 다른 나라 사람과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지 못합니다. 설령 통신사(通信使)가 빠져 죽었더라도 부물(賻物)을 보낼 수가 없는데, 하물며 미친 한 역관(譯官)이겠습니까? 이웃 나라를 사귀는 도리는 오직 예의(禮義)에 있는데, 이제 무엇에 근거하여 허락하겠습니까? 마땅히 좋은 말로 물리쳐서 국가의 체면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니, 차왜(差倭)가 오래 관중(館中)에 머물면서 서계(書契)를 얻어 가기를 원하였다. 이때에 와서 묘당에서 복계(覆啓)하기를,</p> <p>“유신(儒臣)의 말은 비록 의리를 지키는 바가 있을지라도 지금 이 부물을 보낸 것은 사사로이 사귀는 의리가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또 저들이 후한 뜻으로 보냈는데, 지금 만약 의리에 의거하여 받지 않는다면 먼 나라 사람을 실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귀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을까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 의논에 따라 받기를 명하고, 회답하는 서계(書契)를 만들어 차왜(差倭)에게 주게 하였다.</p>	<p>設令信使滄溺，尙不可致賻。況譯舌之卑微乎？交隣之道，惟在禮義，今將何所據而許之？宜善辭而却之，以尊國體。”上令廟堂稟處。差倭久留館中，願得書契以去。至是，廟堂覆啓：“儒臣之言，雖有所執，今此致賻，與無私交之義，似有間焉。且彼以厚意遺之，今若據理不受，則非但遠人失望，恐有乖於交隣之道也。”上從其議，命受之，作回答書契，以給差倭。</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5월 20 일(갑자) 5번째기사</p>	<p>백성의 진휼(賑恤)을 폐지하였다. 진휼청 제조(賑恤廳提調)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p> <p>“신이 진소(賑所)에 가서 기민(飢民) 3천 2백 80명에게 아침밥을 지어서 나누어 먹이고 길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돌아갈 양식을 제급(題給)하였으며, 병이 위독한 1백 여 명을 뽑아서 감관(監官)을 정해 그대로 머물러 두어</p>	<p>○罷賑民。賑廳提調金昌集啓言：“臣出往賑所，飢民三千二百八十名。作朝飯分饋，計道里遠近，題給歸糧；抄篤病百餘名，定監官仍留救護。頃日內下銀千六百兩，以米代給，且諭以聖意，莫不感祝而去。”云。設賑凡四</p>

	<p>구호하게 하고 전일 대궐에서 내린 은(銀) 1천 6백 냥(兩)을 쌀로 대신 주었습니다. 또 성상의 뜻을 유지(諭示)하니, 모두 감축(感祝)하면서 갔습니다.”</p> <p>하여, 진청(賑廳)을 설치한 지 무릇 43일 만에 폐지하였다.</p>	<p>十三日而罷。</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6월 9일 (계미) 1번</p>	<p>북사(北使)가 돌아가니,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전송하였다. 연회 때에 전례(前例)대로 종호(從胡)11952)에게 술과 반찬을 주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빼앗아서 거의 다 먹으니, 어막(御幕)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람의 소리가 시끄러웠으므로 보는 이가 모두 놀랐다. 승정원에서 병조(兵曹)의 금란 낭관(禁亂郎官)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癸未/北使歸。 上幸慕華館餞之。 宴時， 例給從胡酒膳， 我人攫奪殆盡， 御幕咫尺， 人聲喧嘩， 見者莫不駭之。 政院請推兵曹禁喧郎， 從之。</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6월 13 일(정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장차 연회를 베풀어 북사(北使)를 대접하려 하니, 피곤하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임금이 다시 반드시 친림(親臨)하려는 뜻을 관중(館中)에 알리니, 우의정 신완(申琬)이 ‘더위를 무릅쓰고 거둥하면 손상을 당할까 두렵다.’는 뜻으로 차자(笱子)를 올려 간(諫)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고 드디어 관소(館所)에 거둥하였는데, 북사(北使)가 뜰에 내려서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므로 도감(都監)이 다투었으나 되지 아니하여 청대(請對)해 아뢰었다. 도승지(都承旨) 유집일(兪集一)이 아뢰기를,</p> <p>“주인과 손님은 으레 균등한 예(禮)를 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뜰에 내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후일 전송할 때에 전하께서도 마땅히 뜰에 내리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저쪽에서 뜰에 내리면 이쪽에서도 뜰에 내려가고, 지금 뜰에 내려서지 아니하면 뒤에 뜰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게 타이르면 저들이 반드시 굽힐 것입니다.”</p> <p>하였다. 통관(通官)으로 하여금 그 말에 의하여 다투게 하니, 북사(北使)가 비로소 굽혀서 뜰에 내려와 맞이하였다. 임금이 여덟 술잔을 돌리고 인하여 수필(手筆)을 사례하는 뜻을 언급하자, 상칙사(上勅使)가 말하기를,</p>	<p>○丁亥/上將設宴， 待北使， 辭以困憊。 上更以必欲親臨之意， 報于館中。 右議政申琬， 以冒炎動駕， 恐致傷損， 上笱諫， 上不聽， 遂幸館所。 北使不肯沒階以迎， 都監爭之不得， 請對稟達。 都承旨兪集一曰：“主客例爲均敵之禮。 彼若不肯下階， 則後日餞時， 殿下亦不當降階。 若曉之以彼降則此降， 今不降則後不降之意， 則彼自屈矣。” 使通官， 依其言爭之， 北使始屈， 沒階迎之。 上行八酌， 仍及謝手筆之意， 上勅言：“譯者不分曉， 乞以文字書惠。” 命注書書給， 承旨洪受疇， 請竝寫日昨迎接時說話以示之。 有曰：“海隅偏邦， 未嘗見皇帝筆蹟， 今於使華之臨， 蒙此特賜之恩。 此前古未有之盛典， 亦外服難得之至寶。</p>

	<p>“역자(譯者)가 분명히 알지 못하였으니, 문자(文字)로써 써서 주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주서(注書)에게 써서 주기를 명하였다. 승지(承旨) 홍수주(洪受疇)가, 그 저께 영접할 때의 설화(說話)를 아울러 써서 보이기를 청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p> <p>“바다 구석 작은 나라가 일찍이 황제의 필적(筆跡)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칙사가 왕림(枉臨)하여 이런 특별히 하사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는 전고(前古)에 없는 거룩한 은혜이며 또한 외복(外服)의 얻기 어려운 중요한 보물입니다. 아름다운 글을 받들고 수필(手筆)의 매우 정성스러움을 감송(感頌)하였으며, 제후(諸侯)의 법을 신칙(申飭)하니, 얼굴을 맞대고 명하신 듯 정녕(丁寧)하게 받들겠습니다. 이제부터 바다 동쪽 궁벽한 땅에 문식(文識)을 숭상하는 큰 교화를 영구히 입겠습니다.”</p> <p>하였는데, 홍수주(洪受疇)의 글이다. 승지가 으레 문답하는 말을 찬술(撰述)하는 것인데 홍수주가 승정원에 있다가 붓을 잡고 괴롭게 읊조리며 생각을 많이 써서 글을 지었고, 써서 주기를 건백(建白)함에 미처서는 자못 스스로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나라를 빛낸 사람처럼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p>	<p>攀奉寵章，感頌手書之(勒) [勤] 摯，飭厲候度，悅承面命之丁寧。從今左海之窮壤，永囿右文之弘化。”云。受疇之文也。承旨例撰問答說話。受疇在政院，握管苦吟，費思成文，及其建白書給也，頗自矜喜，有若華國者然，不知人之竊笑也。</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康熙) 42년) 6월 20일(갑오) 2번째기사</p>	<p>선무사(宣武祠)에서 치제(致祭)하였는데, 특별히 양(羊)과 돼지를 썼다.</p>	<p>○致祭宣武祠，特用羊豕。</p>
<p>숙종 38권, 29년</p>	<p>예조에서 인현 왕후(仁顯王后)의 재기(再碁) 후에 왕세자(王世子)가 길복(吉</p>	<p>○禮曹以仁顯王后再期後，王世子即吉</p>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7월 2일
(병오) 2번째기사

服)을 입는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아아! 부모의 상(喪)에 스물 일곱 달이 지나서야 상복(喪服)을 벗는 것은 고
 금의 변통할 수 없는 제도로써 귀천(貴賤)이 없이 똑같은 것이다. 이번 이 길
 복(吉服)을 입는 절목도 비록 예관(禮官)의 억측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 것이
 지만, 나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열 다섯 달 만
 에 담제(禫祭)11990) 를 지내고 담제 뒤에 변제(變除)하는 것도 이미 압굴(壓
 屈)11991) 의 뜻이 있는 것인데, 하필 재기(再碁)가 겨우 지나자 바로 순전히
 길복(吉服)을 써서 평상시와 같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참으로 인정상 편
 안한 바가 못되니 세자의 마음이 또한 다시 어떠하겠는가? 내 생각에 그대로
 심제(心制)11992) 를 지키다가 10월에 이르러 길복을 입는다면 예경(禮經)에
 도 어긋남이 없고 인정에도 서운함이 없는 듯하니, 대신과 좌찬성(左贊成)·호
 조 참판(戶曹參判)에게 문의해 보고, 또 유신(儒臣)들에게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하여 품달(稟達)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뢰기를,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왕검(王儉)의 《고금집기(古今集記)》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심제(心制)는 스물 일곱 달 만에 마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송
 (宋)11993) 나라의 효건(孝建)11994) 2년에 여러 공주(公主)들이 심담(心禫)
 과 소의(素衣)를 스물 일곱 달 만에 벗었다.’ 하였으며, 근세에 문경공(文敬
 公) 김집(金集)이 지은 《의례문해속편(疑禮問解續編)》에도 누군가가 묻기를,
 ‘부재 모상(不在母喪)에 열 한번째 달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열 세번째 달에
 상제(祥祭)를 지낸다면 심상(心喪)의 복(服)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벗어야 합
 니까? 어떤 이는 마땅히 《통전(通典)》에 의거하여 재기월(再碁月)의 그믐날
 에 벗어야 한다 하고, 어떤이는 담월(禫月)에 벗어야 한다 하며, 또 어떤 이
 는 정일(丁日)11995) 에 벗어야 한다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스물 일곱 번
 째의 삭일(朔日)11996) 에 길복(吉服)으로 가묘(家廟)에 들어가 참례(參禮)함

節目, 磨鍊以啓, 傳曰: “噫! 父母之
 喪, 二十七月而除, 乃古今不易之制,
 無貴賤一也。 今此即吉之文, 雖非禮
 官之臆斷, 予以爲未安也。 內喪在先,
 則十五月而禫, 禫後變除, 已是壓屈之
 意, 何必再碁纔過, 遽用純吉, 自同平
 常哉? 此實非人情之所安, 而世子之
 心, 亦復如何? 予意以爲, 仍持心制,
 至十月而即吉, 庶不悖於禮經, 而可無
 憾於人情。 問議于大臣及左贊成、戶
 曹參判, 亦令儒臣, 博考典禮以稟。”
 弘文館啓: “《杜氏通典》云: ‘王儉
 《古今集記》云: 「心制終二十七
 月」’ 又稱宋孝建二年, 諸公主心禫素
 衣, 二十七月, 乃除。 近世文敬公金
 集所撰《疑禮問解續編》, 有問: ‘父
 在母喪, 十一月練, 十三月祥, 則心喪
 之服, 當除於何時, 除於何所耶? 或云
 當依《通典》, 哭除於再期之月晦, 或
 云當除於禫月, 或云當除於丁日。 妄
 意當二十七月之朔, 以吉服入廟參禮而
 喪畢, 飲食處常之節。’ 在於此時。
 遇仲月行祀後, 當有復寢之禮, 未知如
 何? 集曰: ‘鄙意, 古無變除之節。 旣
 曰心本非服也, 何變除之有? 若除於再

으로써 상기(喪期)가 끝난다고 봄이 타당하겠으며, 음식과 평상시의 범절도 이 때에 고쳐야 할 것이요, 중월(仲月)11997) 을 맞아 제사를 지낸 후에 마땅히 복침(復寢)의 예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김집(金集)이 말하기를, ‘나의 의견으로는 옛날에는 변제(變除)의 절차가 없었고, 기왕 심제(心制)라 한다면 본디 상복이 아니니, 어떻게 변제(變除)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재기일(再碁日)에 벗는다고 한다면 심제(心制)도 과연 재기(再碁)에 끝나는 것인가? 담월(禫月)이나 정일(丁日)은 그래도 될 수가 있지만, 길제(吉祭) 때를 기다려 평상시대로 회복하면 변제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합당한 변제가 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성인(聖人)이 정(情)에 따라 상복(喪服)을 만들었기에 억제도 하고 신장(伸張)도 하였으나, 내상(內喪)을 먼저 당했을 때 열 석 달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고 열 다섯 달 만에 담제(禫祭)를 지내게 한 것은 이 존(二尊)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담제 후에 심제(心制)로 3년의 상기(喪期)를 다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정의를 다하려는 뜻입니다. 즉 《예기(禮記)》에 이른바 예는 줄이고 정은 늘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대개 주년(周年)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재주(再周)에 상제(祥祭)를 지내며, 담제(禫祭) 뒤에는 섬(織)11998) 을 입고 사월(徙月)11999) 에 음악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3년의 본뜻에다 변감(變減)해 가는 절차를 갖춘 것입니다. 압굴(壓屈)의 상복에 있어서도 비록 열 다섯 달에 끝나기는 하지만, 선왕(先王)의 예절에 심상(心喪)이란 제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 마땅히 담제의 섬과 사월의 악의 기일을 기다린 후에 길복(吉服)을 입고 평상시대로 회복하여야만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왕검(王儉)의 예설이나 효건(孝建)의 제도도 모두 이 뜻을 취할 것이요, 김집의 물음에 답한 글에 이르러서 더욱 정밀하게 구비되었습니다. 비록 왕조(王朝)의 예제(禮制)를 논한 바는 아니지만, 달상(達喪)12000) 의 의리는 상하(上下)에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제(心制)

期, 則心制果盡於再期乎? 禫月、丁日, 猶之可也, 而終不若待吉祭之期, 而復常, 無事於變除, 而自爲變除之爲當也.’ 臣等竊惟, 聖人緣情制服, 有壓有伸。 內喪在先, 十三月而祥, 十五月而禫者, 明無二尊之義也。 禫後心制, 以盡三年之期者, 達孝子之情也。 卽《禮》所謂禮殺而情伸者也。 蓋周而練, 再周而祥, 禫而繼徙月樂, 此固三年之體, 而變殺之漸也。 壓屈之服, 雖止十五月, 而先王之禮, 既有心喪之制, 則當待禫繼徙月樂之期, 卽吉復常, 方盡於天理人情矣。 王儉之說, 孝建之制, 皆得此意。 至於金集答問之書, 尤爲精備。 雖非論王朝禮制, 達喪之義, 可通上下。 然則心制卽吉, 當在吉祭之期。 王世子心制, 若除於再期之日, 則是不能恰倣三年之體, 而無以盡殺禮伸情之義矣。” 禮曹遣郎官, 問議于大臣、儒臣, 判府事尹趾善議: “既練而祥, 既祥而禫, 仍從心制, 以終三年, 卽有先朝已行之禮。 以情而言, 雖無窮已, 以禮而論, 自有限節。 今於再期之後, 全無變除之節, 猶持心制, 則卽係創制, 有難輕議。

와 길복은 입는 것은 길제(吉祭)의 기일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왕세자의 심제를 재기일에 벗는다 한다면 이는 3년의 본뜻을 바르게 본받았다 할 수 없으며, 예는 줄이고 정은 늘린다는 본의를 다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낭관(郎官)을 보내어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문의하니, 판부사(判府事) 윤지선(尹趾善)은 의논하기를,

“연제(練祭) 뒤에 상제(祥祭)를 지내고 상제 뒤에 담제를 지내며, 이내 심제(心制)에 따라 3년을 마치는 것은 선조(先朝)에 이미 행했던 예절입니다. 정으로 말한다면 비록 끝이 없는 일이나 예로 논한다면 한정된 절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재기(再碁) 뒤에 전연 변제(變除)의 절차 없이 그대로 심제(心制)를 지킨다면 이는 새로운 법도를 만드는 일이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 부재모상(父在母喪)을 당했을 경우 재기(再碁) 뒤에도 감히 평인(平人)과 같다고 하지 않는 것은 사사로이 그 남은 슬픔을 다하려 함이지 이미 전례(典禮)에 기재된 바가 아니니, 이제 이 일을 왕조의 의제(儀制)에 건주어 논하려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판부사 서문중(徐文重)은 의논하기를,

“공가(公家)의 전례(典禮)를 신(臣)이 자세히 모릅시다마는, 사대부의 통상(通喪)의 제도로써 말한다면 담월(禫月)이 지나면 길복(吉服)을 입고 음식의 범절도 따라서 바꾸며, 혹 제명(除命)을 받아 공무(公務)를 집행하는 사람도 있으니, 미루어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왕세자의 복제에는 담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심제(心制)를 지킨다 하는데, 최초의 정일(丁日)의 기일을 지나서 그 달을 다한다 하면 도리어 중월(中月)12001)의 예제보다 더 중한 것이 되니, 예가(禮家)의 본뜻이 아닌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신완(申琬)은 의논하기를,

“예관(禮官)이 올린 의절(儀節)은 을해년(12002)에 행했던 전례(前例)에 의거

今世士大夫家父在母喪者，雖再碁後，不敢自同恒人，此則私自致其餘哀而已，既非典禮所載，則今乃擬議於王朝儀制，未知其合宜也。” 判府事徐文重議：“公家典禮，臣未之詳，而以大夫士通喪之制言之，則禫月既已即吉，飲食之節，亦隨而變，或有有除命行公者，可以推而上之也。今日王世子之服，特以無禫之故，仍持心制，過初丁之期，以盡其月，則反有重於中月之制，恐非禮家之本意也。” 右議政申琬議：“禮官所上儀節，乃據乙亥已行之例。此所謂喪制從先祖者，而第碁、禫變除，則古聖人制禮之意，出於隨其禮節，有所降殺也。即吉與否，惟在於緣人情之所安而行之也。士大夫父在母喪，雖在再碁之後，不敢以無禫而徑先服吉，從仕者，誠以禮雖有節，情有所不忍也。父母之喪自天子達於庶人，可推而上之也，聖教允當。” 領府事尹趾完議：“該曹儀註，明有援據，無以議爲，第聖上體諒世子情理，欲爲變通，則似無不可。士大夫爲母心喪之人，再碁後雖從吉，而不服華盛之服，必待中月，始乃復常，其在從義之

한 바로, 이는 이른바 상제(喪祭)는 선조(先祖)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제와 담제에 변제(變除)를 하는 것은 옛 성인(聖人)의 예(禮)를 제정한 뜻이 예절에 따라 조금씩 강쇠(降殺)하는 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길복을 입고 안 입고는 다만 인정의 편암함에 따라 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대부가 부재모상(父在母喪)을 당하여 비록 재기(再碁) 후라도 담제가 없다 해서 경솔하게 앞질러 길복(吉服)을 입거나 종사(從仕)하지 않는 것은 예에는 비록 한정된 절도가 있으나 인정상 차마 못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상(喪)은 천자(天子)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미루어 올라 갈 수 있는 것이니, 성교(聖敎)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고, 영부사(領府事) 윤지완(尹趾完)은 의논하기를,
 “예조의 의주(儀註)는 분명히 끌어댄 근거가 있으니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상께서 세자(世子)의 정리(情理)를 생각하여 변통하려고 하신다면 불가할 것도 없습니다. 사대부가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심상(心喪)을 입은 사람이 재기(再碁) 후에 비록 길복을 입기는 하지만, 화려한 옷은 입지 않고 반드시 중월(中月)을 기다렸다가 평상시대로 회복하니, 의(義)를 따르는 뜻에서 이 예절을 채용하는 것이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판부사 최석정(崔錫鼎)과 좌찬성 윤拯(尹拯)은 사양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호조 참판 권상하(權尙夏)는 의논하기를,
 “예조에 내린 전교를 보니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을 참작하신 것으로써, 결점을 지적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 옥당(玉堂)에서 상고하여 올린 의논은 변정할 수 없는 의논이라 할 수가 있으니, 다시 더 어리석은 의견을 말하여 외람되고 번다하다는 비난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상의 재가(裁可)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판부(判付)를 내리기를,
 “재기(再碁) 후에도 세자는 그대로 심제(心制)를 지키고 있다가 스물 일곱달

道, 不害采用此禮。” 判府事崔錫鼎、左贊成尹拯, 辭而不對, 戶曹參判權尙夏議: “伏見下該曹之敎, 參酌於天理人情者, 可謂無所間然, 且得見玉堂所攷進之說, 又可謂不易之論, 復何容愚淺之見, 犯僭汰之譏哉? 伏惟上裁。” 上下判付曰: “再碁後世子仍持心制, 至二十七月而卽吉可也。” 禮官復言: “卽吉時別無卜日行祭之事, 來十月朔祭, 王世子以黑團領將事, 祭後着吉服還宮, 似合禮意。” 從之。

	<p>이 되어서 길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예관이 다시 아뢰기를, “길복을 입을 때에는 따로 좋은 날을 가려서 제사를 지낼 것은 없고, 오는 10월 삭제(朔祭)에 왕세자께서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 후 길복을 입고 궁궐로 돌아오심이 예의(禮意)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8월 14 일(정해) 2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경녕전(敬寧殿)의 재기(再基)인데 슬픔이 새롭다. 대궐에서 별다례(別茶禮)12073) 를 지내려고 하는데, 내가 마침 몸이 편치 못하여 세자(世子)를 보내 섭행(攝行)하게 하니, 섭섭한 마음이 매우 심하다. 전작례(奠酌禮)12074) 는 따로 날을 받아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p>	<p>藥房入診，上曰：“今日是敬寧殿再基，愴悼如新。自內欲行別茶禮，予適未寧，遣世子攝行，缺然甚矣。奠酌禮，擇日舉行。”</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8월 27 일(경자) 1번째기사</p>	<p>강원도 관찰사 홍만조(洪萬朝)가 임금에게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면유(勉諭)하였다. 이조 판서 이유(李濡)가 동시에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지방은 큰 흉년이 들었으니, 진휼책(賑恤策)이 더욱 급합니다. 앞으로 어사(御史)도 내려보내야겠지만 마땅히 먼저 도사(都事)에게 단기(單騎)로 왕래하면서 모든 일을 검칙(檢飭)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p>	<p>庚子/江原觀察使洪萬朝陛辭，上引見勉諭。吏曹判書李濡，同時入對言：“關東大饑，賑政尤急。將發遣御史，而宜先令都事，單騎往來，檢飭凡百。”許之。</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9월 15 일(무오) 2번째기사</p>	<p>임금이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신완(申琬)이 아뢰기를, “조금 전 전라 감사의 장계(狀啓)를 보니, 도내에 있는 각 아문(衙門)과 여러 궁가(宮家)의 전답(田畓)이 당초 집복(執卜)12106) 할 때부터 매우 과중하였고, 또 흉년을 당해도 원래 재감(災減)12107) 의 규정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두곡(斗斛)12108) 도 가장 커 차인배(差人輩)들이 부당하게 더 징수하는 폐해가 심하다 합니다.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다시 타량(打量)하여 결부(結負)를 작성하게 하고, 재해를 입은 곳은 일일이 급</p>	<p>上引見大臣、備局諸宰。領議政申琬曰：“卽見全羅監司狀啓，則以爲道內各衙門，諸宮家田畓，當初執卜，已極過重，而又當凶歲，元無災減之規，民皆呼冤，且斗斛最大，差人輩多有濫觴之弊。令該邑守令，打量作結後，被災處，一一給災，行用斗斛，亦爲較正。其中差人之橫濫者，依前日定奪，</p>

재(給災)하며, 쓰고 있는 두곡(斗斛)도 다시 조사해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차인(差人)들이 부당하게 더 징수(徵收)하는 데 대해서는 전일의 정탈(定奪)에 따라 본도(本道)에서 죄를 다스리도록 하여 줄 것을 청해 왔습니다. 각 아문이나 여러 궁가의 전답도 똑같이 한 나라의 일이니, 같고 다름이 있게 하여 백성들의 원성(怨聲)을 초래해서는 아니되겠으며, 차인(差人)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도 마땅히 적발되는 대로 엄중히 다스리되, 이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여러 도(道)의 유생들의 고강(考講)과 해서(海西)의 별호위(別驍衛)나 총융청(摠戎廳)의 아병(牙兵)의 상번(上番)과, 명천(明川) 이남의 진봉 호장(進俸戶長) 및 강원도의 변장(邊將)의 취재(取才)를 정지하라 명하고, 서북의 월과(月課)·영서(嶺西)의 공천(公賤)·군병(軍兵)의 신포(身布)의 3분의 2를 올해 12109)의 예대로 줄이라 명하였으니,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훈련 대장(訓練大將) 이기하(李基夏)가 도감 군병(都監軍兵)의 여름철 옷감을 가을에도 나눠주지 못하였다 하여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포(布) 3백 동(同)을 빌려 주길르 청했는데, 이 때에 와서 또 아뢰기를,
 “요사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포보(砲保)의 가포(價布)가 재량으로 줄이는 가운데 들어갔으므로, 중순(中旬)의 시상(施賞)을 못하여 군정(軍情)이 실망하고 있으니, 청컨대 강도(江都)의 포(布) 1백 동만 빌어 시상의 자료로 쓰게 하여 주소서.”

하니, 허가하였다. 이기하는 오랫동안 훈국(訓局)에 있으면서 재물을 함부로 썼고, 또 여러 대의 선산에 석물을 성대히 세워서 창고가 텅비어 옷감과 상품의 용도가 있을 때마다 차대(借貸)를 청하니, 물의(物議)가 떠들썩하였다. 이 정청(整廳)을 설치하라 명하고, 이유(李濡)·이인엽(李寅燁)·민진후(閔鎭厚)·윤

自本道囚治爲請矣。 各衙門、諸宮家田畝，同是一國事，則不可使有異同，以致民怨，而差人作挈之弊，亦宜隨現重究，使之依此施行何如？” 上曰：“依爲之。” 命停諸道儒生考講及海西別驍衛、摠戎牙兵上番，明川以南進俸戶長，江原道邊將取才，減西北月課，嶺西公賤、軍兵身布三分之二，如乙亥例。 以年凶也。 初訓練大將李基夏以都監軍兵夏節衣資，到秋未頒，請貸南漢木三百同，至是，又奏言：“近因飢荒，砲保價布，入裁省中，不得設行中旬，軍情缺望。 乞得江都木百同，以爲施賞之資。” 許之。 基夏久處訓局，濫用財貨，又盛治累世石役，帑藏一空，衣資、賞齋之用，輒請借貸，物議譁然。 命設整廳，以李濡、李寅燁、閔鎭厚、尹世紀、俞集一，管其事。 初，上命濡，變通良役，久不決。 至是，濡奏言：“此，國之大事，非臣一人所可獨爲。 若別爲設廳，逐日會議，則數月之內，可以就緒矣。” 領議政申琬，亦言其可，上許之。 濡仍曰：“朝臣中俞集一、朴權，俱明敏曉世務，臣欲與此二人同事，而權既受

세기(尹世紀)·유집일(兪集一)에게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이 유에게 명하여 양역(良役)을 변통(變通)하게 했는데, 오랫동안 결정이 나지 않았다. 이 때에 이르러 이유가 아뢰기를,

“이것은 나라의 큰 일이니 신이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 청(廳)을 만들어 날마다 모여서 의논한다면 몇 달 안으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영의정 신완(申琬)도 그 말이 옳다고 하여 임금이 윤허한 것이다. 이유가 이어서 아뢰기를,

“조신(朝臣)들 중에는 유집일과 박권(朴權)이 모두 명민(明敏)하여 세무(世務)를 잘 알고 있으므로, 신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였는데, 박권은 이미 경상 감사의 소임을 맡았고, 유집일도 북도(北道)로 나가게 되었으니, 실로 가석(可惜)한 일입니다. 이미 나간 사람은 불러오기가 어렵지만, 나가지 않은 사람은 남아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번(北藩)에도 책임자를 구하기가 어렵겠지만, 내직(內職)과 외직(外職)은 경중(輕重)의 구별이 있으니, 마땅히 변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은 대신에게 물었다. 신완(申琬)이 유집일이 일을 맡길 만하다고 대단히 칭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북쪽의 관문(關門)이 비록 소중하기는 하나, 이 일은 팔도(八道)의 군정(軍政)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임무가 더욱 중대하니, 그의 감사 임무를 바꾸어 함께 군제(軍制)를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드디어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고, 낭청(郎廳)은 문관(文官)·무관(武官)·음관(蔭官)을 논하지 않고 가려서 임명하여 모두 8원(員)이 되었다. 유집일은 도량도 좁고 재주도 적은데, 약간의 말주변이 있어 조그만 재능을 자랑하여 팔며 진취(進取)를 꾀하고 있었으니, 신완이 책자로 조목별로 진달한 일은 모두 유집일이 주장한 것이다. 묘당(廟堂)에서는 시무(時務)에 통달한 줄 알고 추장(推獎)하여 비국 당상(備局堂上)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공론이 허락

任嶺臬， 集一又將北出， 實爲可惜。已出者雖難還入， 未去者猶可留之。此時北藩， 亦難其人， 而內外輕重有別， 宜賜變通。” 上問大臣。 琬盛稱集一可任以事， 上曰：“北門雖重， 此事實係八路戎政， 爲任尤大， 宜遞其藩任， 同議軍制。” 遂設廳。 郎廳， 不論文、武、蔭擇差， 凡八員。 集一編量小技， 薄有口給， 銜鬻寸能， 以爲進取計， 如申琬冊子條陳事， 皆集一所主張也。 廟堂以爲， 曉達時務， 至加推詡， 欲差備局堂上， 而公議不許， 乃爲集一， 別設一局。 集一益自負妄， 欲紛更庶事， 識者知其必敗。

	<p>하지 않으니 이에 유집일을 위하여 일국(一局)을 따로 설치하였다. 그러자 유집일은 더욱 망령되게 잘난 체하며 모든 일을 뜯어 고치려 들었으므로, 식자들은 그가 반드시 실패할 줄을 알았다.</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10월 10 일(임오)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이여(李畬)가 먼저 성충(聖聰)을 밝히고 언로(言路)를 넓히려는 내용으로 진계(陳戒)하니, 임금이 가납하였다. 우의정 김구(金構)가 아뢰기를, “근래 듣건대,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할 때의 하교(下教)나 의관(醫官)들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요즈음 옥색(玉色)이 수척하여 병의 뿌리가 알지 않 않습니다. 대개 공사(公事)를 모두 다 살펴본 뒤에 어선(御膳)을 겨우 드시게 되니, 속 기운이 허약해 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조정 신하들의 논의(論議)가 과격할 때에는 성심(聖心)이 격뇌(激腦)하여, 비록 도로 즉시 풀린다 하더라도 그럴 때에는 스스로 몸이 평안하지 못함을 깨닫는다고 하시니, 신은 매우 근심스럽고도 민망하게 여깁니다. 보통 사람도 근력(筋力)이 미칠 수 있는데 처신을 게을리한다면, 그 잘못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도 미치지 못하고 날마다 하는 일도 힘이 달리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국사(國事)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병침(丙枕)12128) 까지 편안하지 못하여 옥체(玉體)를 손상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옛날 송나라 신하 부필(富弼)이 주달한 일이 마음에 거슬려서 <천자의> 옥색(玉色)이 매우 사나우니, 부필이 정색하고 말하기를, ‘천자(天子)의 희로(喜怒)는 진실로 절도가 있어야 하므로, 일시적인 사기(辭氣)는 천자가 노할 바가 아닙니다.’ 하자, 황제가 노여움을 그쳤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교훈될 만한 말입니다. 대개 제왕(帝王)의 희로(喜怒)와 형상(刑賞)은 대상에 따라 알맞게 부여하는 것이지, 자신이 몸소 관여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흑시라도 격뇌(激腦)에서 나온다면, 다만 일에 해로울 뿐 아니라 정치에도 해롭습니다. 게다가 성궁(聖躬)의 병의 원인이 반드시 희로(喜怒)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데서 연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p>	<p>壬午/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李畬，首以開聖聰廣言路陳戒，上嘉納之。 右議政金構曰：“頃聞藥房入診時下教，及醫官所傳，近來玉色消瘦，病源不淺。 蓋公事必盡爲酬應而後，方進御膳，多有中氣虛乏之時。 且於朝臣論議過激處，聖心激惱。 雖旋即釋然，伊時自覺不平云，臣竊憂懼。 凡人筋力，有可及，而處之以怠惰，則其責在我。 若其精神之不逮，日力之不足，則末如之何。 萬機雖煩，顧何至於丙枕之不安，玉體之傷損乎？ 昔宋臣富弼，奏事拂意，玉色嚴厲，弼正色曰：‘天子喜怒，固有其節。 一時辭氣，非天子之怒’，帝爲之霽怒。 此誠格言也。 夫帝王喜怒、刑賞，物各付物，已無所與焉。 苟或出於激惱，則非但害於事，亦且害於政。 況聖躬疾病之源，未必不由於喜怒之失節，則今日之憂，莫大於此。 害事害政，有不暇言，唯願平心靜養，益勉聖德，以盡慎疾之道。” 上曰：“陳戒切至，予當留意</p>

	<p>없으니, 그렇다면 오늘날의 근심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일이나 정치에 대한 해로움이야 그만두고라도 다만 바라건대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서 성덕(聖德)에 더욱 힘쓰시고, 병을 조심하는 방도를 다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계(陳啓)한 바가 매우 절실하고 지극하니, 내가 마땅히 유념하겠다.”</p> <p>하였다.</p>	<p>焉。”</p>
<p>숙종 38권, 29년 (1703 계미 / 청 강희 (康熙) 42년) 12월 15 일(병술) 1번째기사</p>	<p>제주(濟州)에 큰 기근(饑饉)이 들었으므로, 진휼청(賑恤廳)에 명하여 곡식 8천 석(石)을 양남(兩南)의 연해(沿海)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고, 통제영(統制營)·수영(水營)에서 관할하는 배로 운반해서 진휼(賑恤)하게 하였다.</p>	<p>丙戌/濟州大饑，命賑恤廳分定穀八千石于兩南沿海各邑，以統、水營船隻載運以賑之。</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1월 11 일(신해) 4번째기사</p>	<p>갑산(甲山)의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였다.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흉년에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정사(政事)와 무마(撫摩)하는 책임은 수령에게 있는 것이다. 수령이 된 사람이 진실로 지성으로 무마하고 마음을 기울여 조치한다면, 어찌 겨울철이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굶어죽는 시체가 길에 널려 있을 리 있겠는가? 갑산 부사(甲山府使) 이원명(李元命)은 중중(從重) 추고(從重)하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열읍(列邑)에 신칙하여 진구하는 정사가 소루해서 백성들이 구령을 메우는 일이 없게 하라.”</p> <p>하였다. 이어 본도(本道)에서 올리는 대구어(大口魚)의 가미(價米)를 진구(賑救)하는데 보충시킴으로써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이라고 명하였다.</p> <p>전교(傳敎)하기를,</p>	<p>甲山，民饑多死。道臣以狀聞，上下備忘曰： 凶歲賑民之政，撫摩之責，在於守令。爲守令者，苟能至誠撫摩，着心料理，則豈有冬序未半，餓殍載路之理耶？甲山府使李元命，從重推考，令道臣，申勅列邑，毋使賑政踈漏，赤子填壑。仍命以本道所上大口魚價米，補賑，以示軫恤之意。</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2월 22 일(임진) 2번째기사</p>	<p>“상궁(尙宮) 최씨(崔氏)는 황조(皇朝)의 궁녀(宮女)로 나이가 80에 가까웠다. 이제 황제의 나라가 무너진 해를 당하였으니 더욱 진휼(軫恤)하여야 한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넉넉하게 지급하라.”</p> <p>하였다.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 심양(瀋陽)에 계실 적에 황조(皇朝)가 망하여 내인(內人)들이 모두 도망하였는데 그 때 궁녀 2인을 데리고 돌아와서 궁</p>	<p>傳曰：“尙宮崔氏，以皇朝宮女，年迫八十。今遇運移皇祚之歲，尤宜軫恤。其令該曹，優給衣資、食物。”孝宗大王在瀋中時，值皇朝新亡，內人皆奔竄，得二宮女以歸，置之宮中，常加矜恤。一人先病死，崔氏獨存。至</p>

	<p>중에 두고 항상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었다. 그런데 1인은 먼저 병사(病死) 하였고 최씨만이 생존해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임금(上)이 물품을 사여(賜與) 하라고 특명(特命)하니,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였다.</p>	<p>是，上，特命賜賚，聞者感激。</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4월 17 일(병술) 2번째기사</p>	<p>재령(載寧)에 실화(失火)로 70여 가호(家戶)가 연소되었는데, 노인(老人) 몇 사람이 상처를 입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해주(海州)에도 또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아홉 사람이나 된다고 도백(道伯)이 계문(啓聞)하니, 아울러 홀전(恤典)을 거행(舉行)하라고 명하였다.</p>	<p>載寧失火，延燒七十餘家，老人數人，被傷幾死，海州又有淪死者九人，道臣以聞，竝命舉恤典。</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4월 28 일(정유) 5번째기사</p>	<p>이 때에 백성들이 기근이 심하므로, 조정에서는 진휼청(賑恤廳)에 명하여 강창(江倉)에서 죽을 썬어 이를 먹이었는데, 2천여 인에 이르렀다. 진청(賑廳) 당상(堂上) 민진후(閔鎭厚)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설죽소(設粥所)의 굶주린 백성은 거의가 잔약한 어린이로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많았으니, 보기에 비참하고 가련하였습니다. 신(臣)은 백성들로 하여금 구활(救活)하는 데 따라 노비(奴婢)를 삼도록 허락하였으나, 자원한 사람은 아주 적었으니, 이는 대개 전일에 있어서 입안(立案)하여 성급(成給)한 후에 사대부(士大夫) 집안에서 노비(奴婢)로 칭하여 혹은 도로 찾아가며, 심지어는 역가(役價)를 징수(徵收)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개유하고 또 혹은 역지로 맡기니, 전후하여 받아간 자가 40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만약 강원(江原)·함경(咸鏡) 양도(兩道)의 어사(御史)가 진계(陳啓)한 절목(節目)에 의하여 구활(救活)한 자 15세 이상은 그 몸이 노역할 것을 허락하고, 15세 이하는 영구히 노비(奴婢)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다만 거두어 기르는 날짜가 일찍이 정한 기한이 없으므로, 길러준 날짜가 많지 않아도 수양(收養)했다고 혼칭(混稱)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60일로써 한정하고, 진휼을 마치기를 기다려 묘당(廟堂)에 품의하여 날짜를 계산하여 분등(分等)한 다음 열록(列錄)하여 계하(啓下)한 후에 비로소 입안(立案)을 성급(成給)함이 편의할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時，民飢甚，朝家令賑恤廳，設粥江倉以哺之，多至二千餘人。賑廳堂上閔鎭厚白上曰：“設粥所飢民，多兒弱無依者，所見慘憐。臣令民人等，隨其救活，許作奴婢，而自願者絕少。蓋以前立案成給之後，士大夫家稱以奴婢，或爲還推，至徵役價故也。臣反覆開諭，且或勒授，前後受去者，僅至四十人。今若依江原、咸鏡兩道御史所陳節目，救活者十五歲以上，許役其身，十五歲以下，永作奴婢似好，而但收養日數，曾無定限，率育不多日，而混稱收養者多。今則限以六十日待畢賑，稟議廟堂，計日分等，列錄啓下後，始成給立案爲便。”從之。</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5월 20 일(무오) 3번째기사</p>	<p>밤 2경(更)에 임금이 작은 승여(乘輿)를 타고 흥인문(興仁門)을 나가 선농단(先農壇)에 갔는데, 앞뒤의 고취(鼓吹)와 시신(侍臣)의 의절(儀節)을 없애고, 기장(旗仗)과 군병(軍兵)을 감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단(壇)이 있는 근처의 화곡(禾穀)을 만약 밟아 상하게 하면, 기우제를 지내는 본뜻이 아니니 각별히 신칙하고, 또 남초(南草)12429) 와 막걸리를 금하라.” 하였다.</p>	<p>夜二更，上，乘小輿，出興仁門，詣先農壇，去前後鼓吹，侍臣儀節，減旗仗、軍兵，下敎曰：“壇所近處，禾穀若致踏損，則有非祈雨本意，各別申飭，又禁南草、酒醪。”</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5월 30 일(무진) 2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좌의정 이여(李畬)가 아뢰기를, “이번의 가뭄은 실로 국가 존망의 빌미가 달려 있습니다. 축적(蓄積)된 것이 비었고 백성들이 이산(離散)하는데, 중외(中外)를 돌아다 보아도 한 가지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옛날 주 선왕(周宣王)은 가뭄을 만나서 몸을 근신(謹慎)하고 공구(恐懼)하여, 문무(文武)의 정사를 닦아 회복해 중흥(中興)의 업적을 이루었으니, 지금 운한(雲漢)의 시(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계획으로는 오직 마땅히 조종(祖宗)의 덕정(德政)을 닦아 회복할 뿐입니다. 성상께서 가뭄을 민망히 여기는 전교가 정령하고 간측(懇惻)하니, 여러 아랫사람들이 그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궁금(宮禁) 사이에 편계(偏係)의 사(私)를 제거하지 못하여서, 연한(燕閑)12456) 한 즈음에 경외(敬畏)의 실상이 미진하니, 조종의 덕정(德政)에 비해 어떻겠습니까? 궁중의 일은 비록 감히 알 수가 없으나, 옛날 우리 중종(中宗)·선조(宣祖)·양조(兩朝)의 자녀(子女)가 무척 번성하였으나, 출함(出閤)하기 전에는 외간에서 왕자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 다. 지금 듣건대, 왕자를 위해서 큰 제택을 짓고 있다고 하니, 이 역시 조종(中宗)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원하던 대로 조종(中宗)께서 하지 않던 바를 하지 마시고, 오직 조종(中宗)에서 재변을 만나 공구하던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으시어 급하지 않은 비용을 일체 정지하고, 일용의 쓰임을 절약하기에 힘써 재변을 그치게 하는 방도를 다하소서.”</p>	<p>引見大臣、備局諸臣。左議政李畬曰：“今茲之旱，實係國家存亡之幾。蓄積空虛，生靈化離，環顧中外，無一善策。昔周宣王遭時旱暵，能側身恐懼，修復文武之政，以致中興之業，今於《雲漢》之詩，可知矣。爲今之計，惟當修復祖宗之德政而已。聖上悶旱之敎，丁寧懇惻，群下孰不感動，而第於宮禁之間，未祛(褫) [偏] 係之私，燕閒之際，未盡敬畏之實，其視祖宗德政何如也？宮中之事，雖不敢知，而昔我中、宣兩朝，螽斯甚盛，而出閤之前，外間不知有王子矣。今聞爲王子，方營甲第云，此亦祖宗朝所未有也。竊願毋爲祖宗之所不爲，惟以祖宗遇災恐懼之心爲心，不急之費，一併停止，日用之需，務存節約，以盡弭災之方也。”上曰：“王子第宅之造給，非今斯今也”，色頗不豫。畬入對，輒眷眷</p>

	<p>하니, 임금(王)이 말하기를, “왕자의 제택(第宅)을 조급(造給)한 것은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여가 입대(入對)하여 문득 간곡(懇曲)하게 면계(勉戒)하였으니, 제법 대신의 체모를 얻었다. 명하기를, “삼화(三和)를 독진(獨鎭)으로 하여 청남(淸南)12457)의 수륙군(水陸軍)을 총괄하게 하라.” 하였는데, 어영 대장(御營大將) 윤취상(尹就商)의 말을 따른 것이다. 지평(持平) 이동언(李東彦)이 금란(禁亂)의 폐단에 대해 말하기를, “헌부(憲府)에서 비록 백사(百司)를 조관(照管)하지만, 시전(市廛)의 승두(升斗)·칭자(稱子)12458)와 각색 난진(亂塵)을 일일이 검찰(檢察)하는 것은 너무 자질구레하니, 이제부터 난전의 모든 일은 다 경조(京兆)12459)에 이관(移管)시키고, 기마(騎馬)·신사(神祀)·회음(會飲) 등의 금함은 오로지 헌부에서 위임해야 합니다.” 하니, 묘당(廟堂)에서 품처하라고 명하였다.</p>	<p>勉戒，頗得大臣體。命以三和爲獨鎭，攄淸南水陸軍。從御營大將尹就商之言也。持平李東彦言禁亂之弊曰：“憲府雖照管百司，而至於市廛升斗、秤子，各色亂塵，一一檢察，太涉細瑣。宜自今亂塵凡事，皆移于京兆，騎馬、神祀、會飲等禁，專委憲府。”命廟堂稟處。</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5월 30일(무진) 3번째기사</p>	<p>진휼(賑恤)을 파하였다. 기민(飢民)이 무릇 2천 5백 89명이니, 밥을 지어 나누어 먹이고, 도리(道里)의 원근을 헤아려 양식을 주어 흠어 돌려보냈으며, 그 나머지 병이 심한 자 1백여 인은 감관(監官)을 정하여 구호(救護)하게 하였다.</p>	<p>罷賑民。飢民凡二千五百八十九名，作飯分饋；計道里遠近，給糧散歸；其餘篤疾者百餘人，定監官救護。</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6월 30일(무술) 2번째기사</p>	<p>정언(正言) 김만근(金萬謹)이 상소하기를, “군신(君臣) 모자(母子)의 윤의(倫義)는 지극히 중하고 또 엄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피할 곳이 없으니, 한 번만 패역(敗數)해도 나라는 나라 꼴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세(李命世)는 지난 해 연주(筵奏)에서 무함이 명릉(明陵) 12530)에까지 미쳤으니 실로 윤의(倫義)의 죄인인데, 이어 녹수(錄囚)하는 거조로 인하여 외람되게 소석(疏釋)의 은전을 입었습니다. 대저 지금 이명세의 사당(私黨)이 된 자들은 그 말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돌리어 반드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야 그만두려 했으니, 이는 본디 논할 것도</p>	<p>正言金萬謹上疏曰： 君臣母子之倫義，至重且嚴，無所逃於天地之間。一有數敗，國不爲國矣。李命世之頃年筵奏，誣及明陵，實是倫義之罪人，而乃因錄囚之舉，猥被疏釋之典。夫今之黨私命世者，歸其言於有無之間，必欲白脫而後已。是固無可論，而廷議亦失於太寬，分其言與心</p>

없으나, 조정의 의논 역시 너무 관대한 데로 그르쳐 그 말과 마음을 나누어 논하여 용대(容貸)할 자료를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명세가 능범(凌犯)에 뜻을 두었다면 죄가 어찌 유찬(流竄)에 그치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혹 한결같이 그 말과 같은 데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패(司敗)12531)의 전형(典刑)을 거론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좋은 자리에서 편안히 쉬도록 하였으니, 그 정범(情犯)을 참작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갑자기 완전히 석방하였으니, 유독 윤이(倫彝)를 붙들고 명의(名義)를 심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신은 일이 비록 지났으나 그래도 다시 중지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한 것은 본래 인정(人情)에 따른 것으로, 아들이 친상(親喪)에 3년 동안 쵸전(餽奠)하는 것은 대개 죽은 자 섬기는 것을 살아 있을 때처럼 하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례(家禮)》·《대명집례(大明集禮)》·《오례의(五禮儀)》의 우제조(虞祭條)에 모두 단지 조석(朝夕)의 전(奠)만 파(罷)하고 상식(上食)을 파하라는 글은 없습니다. 비록 고례(古禮)로 말하더라도 《국어(國語)》에는 ‘일제(日祭)’라는 글이 있고, 횡거(橫渠) 12532)와 속수(涑水) 12533)는 모두 ‘3년 사이에는 쵸연(几筵)을 철폐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日祭)가 있다.’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조석으로 마땅히 쵸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선 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은 답인서(答人書)에서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은 모두 3년 동안 상식(上食)을 올리니, 예(禮)는 마땅히 후(厚)한 것을 좇아야 하며, 시속(時俗)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3년 동안 상식하는 것은 실로 인정상 그 만들 수가 없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왕실에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시종 준행하여 감히 어기지 못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당연한 제도를 함부로 고쳐서 세도(世道)를 해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박세당(朴世堂)은 본래 집요한 성격으로 일생 동안 괴이함을 행하였는데, 처음에는 감히 경전(經典)을 훼손하여 그의 사설(邪說)을 만들었고, 마침내는 상

而論之，以爲容貸之資。苟使命世，有意凌犯，則罪奚止於流竄而已？惟其中心所存，或不至於一如其言，故不舉司敗之典刑，使得偃息於善地，可謂參酌其情犯，而今乃遽爾全釋，獨不念大乖於扶倫彝植名義之道乎？臣謂事雖既往，猶可還寢也。先王制禮，本緣人情。人子之於親喪，三年饋奠，蓋出於事死如生之義，故《家禮》、《大明集禮》、《五禮儀》之於虞祭條，皆只罷朝夕奠，而無罷上食之文。雖以古禮言之，《國語》有日祭之文，橫渠、涑水，皆以爲三年之間，不撤几筵。故有日祭，或以爲朝夕當饋奠。先正臣李滉答人書曰：“今人皆終三年上食。禮宜從厚，從俗行之可也。”以此見之，三年上食，實出於人情之所不可已。是以，上自天家，下至賤士，終始遵行，罔敢違戾，而不幸有擅改常制，以爲世道害者。朴世堂，本以執拗之性，一生行怪，始敢毀壞經傳，以濟其邪說，終乃變易喪制，以誤其後人，臨死遺令，勿設朝夕上食。凡在聽聞，莫不爲駭。似聞世堂，藉口於古禮卒哭後，不復饋食下室之文，而是

제(喪制)를 변경하여 후세 사람을 그르쳤으며, 죽음에 임해서 조식의 상식을 설행하지 말라고 유언(遺言)하여 듣는 자들이 다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듣건대 박세당이 고례(古禮)에, ‘졸곡(卒哭) 후에는 다시 하실(下室)에서 궤식(饋食)하지 않는다.’는 글을 핑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있습니다. 고금의 예제(例制)는 이미 같지 않음이 있으니, 본디 굳게 지키면서 억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례에는 부(婦)가 구고(舅姑)에 대하여 기년(基年)의 복제(服制)로 하였는데, 송(宋)에 이르러서 3년으로 가복(加服)하였고, 구생(舅甥)은 서로가 시마복(緦麻服)12534 을 하였는데 당(唐)에 이르러 소공(小功)12535 으로 가복하였음을 《가례(家禮)》에 모두 인용하여 드디어 통행하는 제도가 되었으니, 이런 유(類)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고례가 의심되어 행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복제(服制)에는 행하지 않고 제례(祭禮)에만 행하려 합니까? 더군다나 이항의 논의가 이미 저와 같고, 또 신의 선조(先祖)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이 문인(文人)의 물음에 답하면서 주자서(朱子書)의, ‘후하게 하는 것은 해롭지 않다.’는 가르침을 인용하여 정론(定論)을 삼았으니, 무릇 후학(後學)인 자는 마땅히 선유(先儒)가 강정(講定)한 바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 시왕(時王)의 제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세당은 망령되이 잘못된 견해를 믿고는 함부로 상제(喪制)를 고쳤으므로 이미 매우 무엄한데, 더군다나 그의 문도(門徒)들이 번성하여 외람되게 높이 숭상함을 가하였습니다. 이번 이 일을 만약 징치(懲治)하지 않으면 서로 전하여 본받아 방제(邦制)를 무너뜨리고 민속(民俗)을 무너뜨릴 것이니, 그럴 염려가 만무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먼저 제사를 폐한 죄를 바로 잡고, 조령(條令)을 만들어 중외(中外)에 신칙하여 민속(民俗)을 후한 데로 돌아가게 하고, 예제를 무너뜨림이 없게 하소서.

춘추 대의(春秋大義)는 바로 천지(天地)의 상경(常經)인데, 우리 나라는 병자

有可辨者。古今禮制，既有不同，固不可膠守強行，故古禮，婦爲舅姑服期，而至宋加服三年，舅甥相爲緦，而至唐加服小功，《家禮》竝引之，遂爲通行之制。若此類甚多。若謂古禮之疑而難行者，今不必行，則何不行之於服制，而乃行於祭禮乎？況李滉之論既如彼，且臣先祖文元公長生答門人間，引朱子書，不害爲厚之教，以爲定論。凡爲後學者，惟當遵守先儒之所講定，且無背於時王之制，而世堂妄持謬見，擅改喪制，已極無嚴，而況其門徒寔繁，猥加尊尙。今於此事，若不懲治，則轉相倣效，以底隳邦制而敗民俗，不可謂萬無此慮也。願命禮官，先正廢祭之罪，作爲條令，申飭中外，使民俗歸厚，禮制無壞焉。《春秋》大義，卽天地之常經，而我國自丙、丁以後，力有所屈，勢有所壓，雖不得伸此義於天下，而我聖祖薪膽一念，可質神明。殿下夙夜孜孜於繼述之方，值此舊甲之重回，慨念皇運之覆亡，特以建廟之議，明詔有司，緦禮將舉矣。大臣欲與首相，同對面稟，而遷延旬朔，更不提論，臣未知其故也。使大

년12536) ·정축년12537) 이후 힘이 굽히고 형세가 억압을 당해 비록 천하에 이 의리를 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성조(聖祖)께서 와신상담(臥薪嘗膽)한 일념은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가 있으니, 전하께서는 주야로 계술(繼述)하는 방도에 부지런하시어 이처럼 구갑(舊甲)12538) 이 다시 돌아오는 때를 만나서 황조(皇朝)의 운명이 복망(覆亡)한 것을 개념(概念)하시고, 특별히 묘(廟)를 세울 의논을 유사(有司)에게 밝게 명(命)하시어 장차 옥례(縟禮)를 거행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신(大臣)이 수상(首相)과 함께 입대(入對)하여 면품(面稟)하려고 하다가 10여 일간이나 끌면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있으니,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대신들로 하여금 이 일을 거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마땅히 의절(儀節)의 융쇄(隆殺)12539) 를 강구하고, 동우(棟宇)를 영건(營建)할 곳을 보아 질애(窒碍)된 바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한 마땅히 명백하게 그 불가함을 지적해 진달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의 유고(有故)로 인해 성전(盛典)을 지체되게 하고 있으니, 사체(事體)에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수상이 비록 병이 있어 관원을 보내 문의(問議)하여도 불가하지 않을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은 이미 그를 해직(解職)시켰으니, 더욱 무엇을 지체해 기다리겠습니까? 근래에 조정의 계획이 으레 인순(因循)함이 많아 장소(章疏)와 장계(狀啓)가 모두 주사(籌司)의 헌 종이 되고 있는데, 이번 큰 의논에 다시는 그런 예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원하건대 대신을 칙려하여 즉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신은 조정에서 사람을 임용하는 길에도 역시 개탄한 바가 있습니다. 총재(冢宰)12540) 의 직임은 정석(鼎席)12541) 에서 지적의 거리인데, 지금 맡은 자가 일찍이 청조(請耀)하는 일에 극력 앞장서서 오랑캐의 조정에 먹여주기를 바랐으니, 이미 우리 성조(聖祖)께서 신설(伸雪)하기를 도모하는 대의(大義)를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오만한 글을 오게 하여 옥됨이 성궁(聖躬)에까지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 대의에 죄를 얻은 소이(所以)를 따져보면 비단 한 때 일을

臣, 以此舉爲可, 則惟當講究乎儀節隆殺之宜, 相視乎棟宇營建之所, 以爲有所窒礙, 則亦宜明白指陳其不可, 而今也不然, 因一人之有故, 致令盛典稽滯, 事體恐不宜爾也。 首相雖有疾, 遣官問議, 固無不可。 況今已解其職, 尤何所遲待耶? 近來廟謨, 例多因循, 章疏、狀啓, 舉爲籌司之故紙, 而今於大議, 不可復用此例。 願勅勵大臣, 劃卽稟處也。 臣於朝廷任人之道, 亦有所慨惋者。 冢宰爲任, 去鼎席咫尺, 而今之所委畀者, 曾於請耀之舉, 極力首事, 望哺虜庭, 既使我聖祖圖伸之大義, 斃敗無餘, 媒致慢書, 辱及聖躬。 究其所以, 得罪於大義者, 則不但爲一時誤事之比, 而朝廷之上, 是非不明, 柄用彌隆, 此固有識之所竊歎。 其在自新之道, 惟當精白一心, 勉贖前愆, 而秉銓以來, 凡於注擬之際, 未厭物情, 非議沓至, 尙自蹲據。 事多煩擾, 難掩矜衒之習, 心存征利, 未免瑣屑之誚。 長此不已, 則終必至於病國家之政, 傷士夫之風, 而況聖明方講《春秋》之義, 則尤不可不明示斥退, 使群下, 曉然於大義之所在也。

그르친 것에 비할 바가 아닌데도, 조정에서의 시비가 밝지 못하여 요직에 임용함이 더욱 융숭하니, 이는 유식한 사람이 못내 탄식하는 바입니다. 그의 자신(自新)하는 도리에 있어서 오직 마땅히 마음을 정백(精白)하게 가져 전이 허물을 속(贖)해야 하는데, 전형(銓衡)을 담당한 이후로 모든 주의(注擬)를 하는 즈음에 여론을 진정(鎮定)하지 못하여 비난하는 의논이 몰려왔으나, 아직 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번요(煩擾)한 일이 많아 자만하는 습관을 감추기가 어려워지며, 마음은 이욕(利慾)만을 취하고 있어 잔달다는 비방을 면하지 못하니, 이런 것을 조장하고 그치게 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국가의 정사를 병들게 하고, 사대부의 풍속을 손상시키는 데 이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명께서 바야흐로 춘추(春秋)의 의리를 강(講)하고 계시니, 더욱 분명하게 물리쳐 배척함을 보여 여러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대의의 소재(所在)를 효연(曉然)히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말하기를,
 “지금 정언 김만근(金萬謹)의 소를 보니 윤의(倫義)를 가탁(假託)하여 몇 가지 일을 조진(條陳)하였는데, 일편(一篇)의 정신(精神)은 아랫 조목의 진술한 바에 있어 가위 말은 여기에 있으나 뜻은 저곳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기탄(忌憚)없음이 심하지 않은가? 아! 이조 판서 이유(李濡)는 국가의 중임을 받고 일에 따라 힘을 다하여 모든 구획(區劃)하는 일이 거의 제대로 맞아 첫째도 공(公)이요, 둘째도 공이어서 그 환히 밝은 정성은 고인(古人)에게 부끄럽지 않다. 지난해 조곡(糶穀)을 청한 일에 있어서는 대개 올해(12542) · 병자년(12543)의 큰 흉년을 겪은 나머지 공창(公倉)·사창(私倉)이 텅비어 진민(賑民)할 계책이 없었으니, 그 때의 건백(建白)한 것은 역시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며, 널리 묘당(廟堂)에 물어서 비로소 단행한 것이니, 이른바 대의에 죄를 얻었다는 말이 과연 공심(公心)에서 나온 것인가? 함정에 빠뜨리는 데 급해서 함부로 침척(侵斥)하니, 그

上下備忘記曰：

今觀正言金萬謹疏，托以倫義，條陳數三事，而若夫一篇精神，在於下款所陳，可謂言在此而意在彼也。豈非無忌憚之甚者乎？噫！吏曹判書李濡，受國重任，隨事竭力，凡所區畫，率多中窾，一則公耳，二則公耳，炳炳之忱，無愧於古人也。至於頃年請糶事，蓋乙、丙大殺之餘，公私赤立，賑民無策，伊時建白，亦出於爲國家重民命之意，而廣詢廟堂，始乃斷行，則所謂得罪大義者，果出於公心耶？急於擠陷，恣意侵斥，其心所在，不難知也。此而置之，必至於空朝廷而後已，不可不深惡痛斥。正言金萬謹，固城縣令除授，當刻內辭朝，給馬發送。政院再啓，繳還不聽。萬謹之論濡，如煩擾瑣屑等語，實采輿誦，而但其追提往事，顯有挾雜之意，公議亦不快然。上方寵任濡，摧折言者，斥黜瘴鄉，大失優容臺閣之道，人皆駭歎。其上所陳數件事，語多可采而上亦不省。

	<p>의 마음이 있는 바를 알기 어렵지 않다. 이대로 그냥 두면 반드시 조정을 텅 비게 한 후에야 그만둘 것이니, 깊이 미워하여 통렬히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 김만근을 고성 현령(固城縣令)에 제수하여 지금 곧바로 사조(辭朝)하게 하고 말을 주어 보내라.”</p> <p>하니, 정원(政院)에서 작환(繳還)12544) 하기를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만근이 이유를 논하면서 ‘번요(煩擾)하고 잔달다.’라고 하는 말들은 실로 여론을 말한 것이었으나, 다만 지나간 일을 뒤쫓아 거론한 것은 뚜렷이 협잡(挾雜)의 뜻이 있어 공의(供議)도 역시 불쾌하게 여겼다. 임금이 바야흐로 이유를 총임(寵任)하여 말하는 자를 꺾어 장향(瘴鄉)12545) 으로 척출하니 대간을 너그럽이 용납하는 도리를 크게 잃어 사람들이 모두 놀라 탄식하였으며, 그가 진달한 몇가지 일은 채납(採納)할 말이 많았으나 임금 역시 살피지 않았다.</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7월 19 일(정사) 2번째기사</p>	<p>처음에 양전(兩殿)과 세자궁(世子宮)에 봉진(封進)하는 양남(兩南)·강원(江原) 등 도(道)의 3명일(三名日)12566) 물선(物膳)은 을해년12567) 부터 양을 감 했고, 북도(北道)의 물선은 정축년12568) 부터 정봉(停封)했으며, 강원도의 삭선(朔膳)도 역시 임오년12569) 부터 양을 줄였으니,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옛 규정대로 회복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명하기를,</p> <p>“명년 가을을 한하여 우선 감하라.”</p> <p>하였다. 전정(殿庭)의 헌가(軒架)와 전후부(前後部)의 고취(鼓吹) 역시 지난 해 부터 임시로 정지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예조에서 계품(啓稟)하니, 또 명하기를,</p> <p>“명년 가을을 기다려 다시 품하라.”</p> <p>하였다.</p>	<p>初, 兩殿、世子宮所封兩南、江原等道三名日物膳, 自乙亥量減, 北道物膳, 自丁丑停封, 江原道朔膳, 亦自壬午量減, 以連歲凶荒故也。至是, 禮曹請復舊規, 上命限明秋姑減。殿庭軒架前後部鼓吹, 亦自上年權停, 至是禮曹啓稟, 又命待明秋更稟。</p>
<p>숙종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p>	<p>대신 및 금부(禁府)·형조의 당상(堂上)이 청대(請對)하여 범월(犯越)한 죄인의 일을 탐전(榻前)에서 품정(稟定)하였다. 이보다 앞서 좌의정 이여(李畬)가 사</p>	<p>大臣及禁府、刑曹堂上請對, 以犯越罪人事, 稟定於榻前。前此左議政李畬,</p>

<p>(康熙) 43년) 7월 20 일(무오) 3번째기사</p>	<p>행(使行)이 가까운데 형조 판서 이익수(李益壽)의 유고(有故)로 인하여 감률(勘律)하지 못하였다 하여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입시해서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기를 청하니, 대신도 역시 함께 들어왔다. 형조 참판 유집일(兪集一)이 문안(文案)을 가지고 아뢰기를, “김예진(金禮進) 등 세 사람은 재차 월경(越境)하는 죄를 범하여 세 명의 호인(胡人)을 죽인 자이고, 김유일(金有一) 등 두 사람은 따라가 동참(同參)한 자입니다.” 하니, 이여가 말하기를, “범죄가 3등(等)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후에 국경을 넘어 변을 일으킨 일로 조사 하는 사신(使臣)이 세 차례 나왔는데, 손수 살해한 범죄자는 입참(立斬)하고 재산을 적몰(籍沒)하며 그 처자(妻子)를 종으로 삼고, 따라간 자는 단지 참(斬)에 처하였을 뿐인데, 을축년(12570)에는 저들의 회자(回咨)로 따라간 자는 감사(減死)하였고, 신미년(12571)에는 율(律)에 준(准)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조사하는 사신을 보내 오지 않고 곧바로 우리 나라에서 감률(勘律)하게 하였으니, 최후의 신미년 예를 써서 중한 데 따라 감단(勘斷)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여가 또 말하기를, “정범(正犯) 이외에 다른 죄인은 자문(咨文) 가운데에 말을 넣어 회자(回咨)를 기다려 처리함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상고(商賈)는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라.” 하고, 또 명하기를, “그 때의 감사(監司) 이진휴(李震休)와 병사(兵使) 이홍술(李弘述)은 모두 파직(罷職)하고, 지방관도 아울러 파직하여 유(流) 3천리에 처하며, 죄인의 원적관(原籍官)은 5자급(資級)을 강등하고, 지방관으로 기미를 알고</p>	<p>以使行迫近，而因刑判李益壽有故，不得勘律，請令次官，入侍議處，大臣亦與之同入。刑曹參判兪集一，持文案奏曰：“金禮進等三人，再次犯越，惟殺三胡者，金有一等二人，隨往同參者也。” 奮曰：“罪犯有三等之分矣。前後以作變犯越事，查使三次出來，犯手殺害者，皆勘以立斬，籍沒妻子爲奴，隨往者只處斬而已。乙丑則彼中回咨，隨往者則減死，辛未則準律。今旣不送查使，直自我國勘律，則似當用最後辛未例，從重勘斷。” 上可之。 奮又以爲：“正犯外他罪人，則似當措辭于咨文中，待回咨處之。” 上命商賈則減死定配。 又命其時監司李震休、兵使李弘述，竝革職，地方官竝革職，流三千里，罪人原籍官降五資，地方官之知機捕捉者，只革職，不能覺察者，極邊充軍。 判義禁洪受濇、知義禁閔鎮厚，援例稟決如右。 禮曹判書閔鎮厚曰：“頃見金萬謹之疏，朴世堂家廢朝夕上食云者，極爲可駭。古禮雖有不復饋食之文，而朱子旣有定論，我朝國制，亦行三年日祭，則別生異議，公然停廢，其違聖訓而背邦禮，莫此爲甚。</p>
--	---	---

	<p>포착(捕捉)한 자는 단지 과직만 하며, 깨달아 살피지 못한 자는 극변(極邊)에 충군(充軍)하라.”</p> <p>하였는데, 판의금(判義禁) 홍수헌(洪受濼)과 지의금(知義禁) 민진후(閔鎭厚)가 예(例)를 이끌어 위와 같이 품결한 것이다.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p> <p>“지난번 김만근의 소를 보니 박세당(朴世堂)의 집안에서는 조석의 상식(上食)을 폐한다고 말한 것이 매우 해괴합니다. 고례(古禮)에 비록 다시는 궤식(饋食)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으나, 주자(朱子)가 이미 정론(定論)함이 있고, 우리나라 제도는 또한 3년 동안의 일제(日祭)를 행하는데, 별도로 다른 의논을 내어 공공연히 정폐(停廢)하였으니, 성훈(聖訓)을 어기고 방례(邦禮)를 등진 것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명을 하여 아들이 부득이 봉승(奉承)한 것이니, 박세당의 아들은 진실로 깊이 죄를 주어서는 안되지만 조가(朝家)에서 분명히 신칙하면 스스로 마땅히 각오(覺悟)하여 바른 데로 돌아올 것인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혹 본받아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화(聖化)에 누(累)가 됨을 마땅히 다시 어떻게겠습니까? 별도로 교조(教條)를 세워 엄히 징계함을 보여서, 만일 아버지가 있고 어미 상을 당한자는 기년(基年)에 마땅히 궤연(几筵)을 철거(撤去)할 것이나, 이외에 부모의 상에 3년 동안 상식하지 않는 자는 불효(不孝)로 논정(論定)하여 법률로 만들면, 실로 풍속을 바로잡는 도리에 합당할 것입니다.”</p> <p>하고, 이여는 말하기를,</p> <p>“박세당은 평생 은밀한 사리를 찾고 괴이한 짓을 하여 바로 하나의 이단(異端)이기 때문에 매사가 이렇습니다. 고례(古禮)로 말하더라도 《의례(儀禮)》에는 ‘졸곡(卒哭)하면 다시는 하실(下室)에 궤식(饋食)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이른바 하실에 궤식한다는 말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궁(壇弓)12572)에는, ‘이미 부(祔)하면 오직 조석으로 곡배(哭拜)한다.’ 하였으니, 이는 상식</p>	<p>父有治命，子不得不奉承，則世堂之子，固不可深罪，而朝家明飭，則自當覺悟而歸正。況他人或有效而化之者，則其爲聖化之累，當復如何？宜別立教條，嚴示懲戒。如父在母喪者，期而當撤几筵，此外父母之喪，不設三年上食者，則以不孝論，定爲法律，實合正風俗之道。” 奮曰：“世堂平生，索隱行怪，卽一異端，故每事如此。以古禮言之，《儀禮》卒哭，不復饋食於下室，所謂下室饋食，未能的知。《檀弓》既祔，惟朝夕哭拜，此則似無上食，而張橫渠、司馬光，皆行上食之禮，朱子以爲：‘禮宜從厚，又無嫌於僭，且當從之。’且《朱子家禮》，既成服，有朝夕哭奠、朝夕上食，而至葬後止朝夕奠，小祥止朝夕哭，大祥撤几筵，而其間不復言朝夕上食，止於何時，其必在撤几筵之後明矣。朱子以後定禮如此，而世堂立異於朱子，故不從此禮。且禮以時王之制爲重，故曰：‘非天子不議禮。’孔子聖人也，而猶必從周，此古今之通義也。世堂之事，不惟悖於朱子之訓，而又不遵時王之制，此其關係亦不輕矣。然異端之類，</p>
--	---	--

이 없는 듯하나 장횡거(張橫渠)와 사마광(司馬光)은 다 상식하는 예(禮)를 행하였고,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예는 마땅히 후한 것을 따라야 하며, 또 참람한 혐의가 없으면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이미 성복(成服)하면 조석(朝夕)의 곡전(哭奠)과 조석의 상식이 있는데, 장례 후에 이르면 조석전을 그치고, 소상(小祥)에는 조석곡을 그치며, 대상(大祥)에는 궤연을 철거한다.’라고 하였는데, 박세당이 주자에 대해 이론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는 시왕(時王)의 제도가 중하기 때문에, 이 예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는 시왕(時王)의 제도가 중하기 때문에, ‘천자(天子)가 아니면 예를 의논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공자(孔子)는 성인(聖人)인데도 오려 반드시 주(周)를 따르겠다고 하였으니(12573), 이것이 고금의 통의(通議)입니다. 박세당의 일은 비단 주자의 가르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시왕(時王)의 제도도 따르지 않았으니, 이는 관계된 바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異端)의 유(類)로 양왕손(楊王孫)의 나장(裸葬)(12574) 이 예(禮)에 어긋났지만, 옛날의 제왕(帝王)이 내버려둔 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치죄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세당의 일은 신 역시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상에는 상식(上食)을 행하였었는데 유독 그 자신만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오히려 부모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미안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부모의 명을 따라서 부득이 행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뜻에는 그대로 두고자 합니다. 민진후가 직책이 방례(邦禮)를 맡고 있어 이처럼 진달하니, 그 말은 옳습니다. 우리 나라의 예속(禮俗)이 이미 이루어져 부모의 상에는 상식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나, 수하(手下)의 상에는 그런 일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그런 조짐은 방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례(定例)를 세워서 만일 어긋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금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如楊王孫之裸葬，悖於禮經，而古昔帝王，置之度外者，以不足治也。世堂之事，臣亦聞之，於其父母之喪，則亦行上食，獨於其身，使其子不行。此猶知於父母，則不行爲未安也。其子則因父命不得行，此非可罪，故臣意則欲置之。閔鎮厚職掌邦禮，有此陳達，其言則正矣。我國禮俗已成，父母喪宜無廢上食之人，而至於手下喪，則亦未保其必無。其漸不可不防，立爲定制，如有違悖者，宜禁之。” 上曰：“朴世堂事，良可駭然。三年朝夕祭，乃是通行之禮，則何敢廢之乎？但此是渠之一家事，豈至於害及風俗耶？” 鎮厚曰：“苟知非禮，則操風化之權者，不可不以正導之。如或有他人化之者，其害必益無窮。今以不孝論斷之意，定爲法律，則孰敢有違拒者乎？” 上曰：“予意似不至此，故見萬謹之疏，而批答中不爲舉論矣。禮判之言，誠是，依此定律施行可也。” 戶曹判書洪受濂，以有民怨，請令司僕寺，勿侵民田曰：“喬桐民人，呈狀以爲，松家島，乃民人年年耕作之地，而近來稱以牧場，奪入於司僕。蓋以煤音鳥牧場，與之

	<p>“박세당의 일은 참으로 놀랍다. 3년 동안 조석으로 제사하는 것은 바로 통행하는 예인데, 어찌 감히 폐한단 말인가? 다만 이는 그의 한 집안 일이니 어찌 해가 풍속에까지 미치겠는가?”</p> <p>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p> <p>“참으로 예가 아님을 알면 풍화(風化)의 권병(權柄)을 잡은 자가 오히려 이끌지 않을 수 없으니, 만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면 그 해가 반드시 더욱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효(不孝)를 논단한다는 뜻으로써 법률을 정하면 누가 감히 어기고 역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내 생각에 거기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김만근의 소를 보고도 비답(批答)한 가운데 거론 하지 않은 것이다. 예조 판서의 말이 참으로 옳으니, 이에 의해서 법률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 옳겠다.”</p> <p>하였다. 호조 판서 홍수헌(洪受濂)이 민원(民怨)이 있다 하여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민전(民田)을 침해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기를,</p> <p>“교동(喬桐) 백성들이 정장(呈狀)하기를, ‘송가도(松家島)는 백성들이 해마다 경작하던 땅이나, 근래에 목장(牧場)이라고 칭하면서 빼앗아 사복시에 붙였는데, 대개 매음도(煤音島) 목장과 경계를 연(連)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해서 빼앗기게 되었다고 해마다 등문(登聞)하였지만, 문득 사복시에 내리고 끝내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상고(詳考)하여 보니 원래 송가도라는 목장 이름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런 흉년이 겹치는 해에 민결(民結)이 크게 줄어든 때를 당하여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아 목장에 편입시키는 것은 매우 흉민(恤民)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사복시의 목장으로 공주(公州)·흥양(興陽)·태안(泰安)·흥해(興海) 등지는 모두 옛 목장을 수습(收拾)한 것이며, 그 가운데 마위전(馬位田)12575) 으로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것도 날날이 출급(出給)했는데, 민전(民田)은 마침내 출</p>	<p>連境，故混同見奪。連年登聞，而輒下於司僕，終不得伸理云。今考《輿地勝覽》，則元無松家島牧場之稱。況當此凶荒荐歲，民結大縮之時，奪入民田於牧場，甚非恤民之意也。且司僕牧場，公州、興陽、泰安、興海等地，皆以古牧場收拾者也。其中馬位田，爲宮家所折受者，一一出給，而民田終不出給。只據《輿覽》古場之說，而奪取民人世耕之田，不亦謬甚乎？泰安大小山，則因臺啓，曾已與民，而洪州、興海等處，則尚不出給。既無所養之馬，而只令如金砮輩，肆其貪虐而已，何補於國乎？”</p> <p>畜曰：“司僕喂馬之資，既不貲，軍營立馬，亦有時雇立。其餘用度甚繁，每患難繼，故有此古牧場收拾之事。《輿覽》所錄，雖難取信，而若入於圖籍者，則自司僕不可輕給矣。”</p> <p>受濂曰：“宮家則還給，而民田則不給，其爲民冤大矣。司僕喂馬之資，例自戶曹劃送，雖無此，不患不足。何至視民不如牧馬乎？”</p> <p>上不從。受濂又曰：“內間需用凡物，或自尙衣院，或自戶曹，有不時取納之事，有時分付尙衣院，使該院下吏，直令徵</p>
--	---	--

급하지 않고, 단지 《여지승람》의 옛 목장이란 말에 의거하여 백성들이 대대로 경작하던 전답을 빼앗으니, 잘못됨이 심하지 않습니까? 태안(泰安) 대소산(大小山)은 대계(臺啓)로 인하여 이미 백성들에게 주었으나, 홍주(洪州)·흥해(興海) 등처는 아직도 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르는 말이 없는데, 단지 김빙(金氷)같은 무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탐학을 부리게 할 뿐이니, 나라에 무엇이 이롭겠습니까?”

하고, 이어는 말하기를,

“사복시에서 말을 먹이는 밀천이 이미 한량이 없고, 군영(軍營)의 입마(立馬)도 역시 때때로 고립(雇立)해야 하며, 그 밖의 용도도 매우 번다하여 매양 잇대기 어려운 것을 걱정해 왔기 때문에, 이런 옛 목장을 수습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지승람》에 수록된 것을 비록 믿기는 어렵지만, 만약 도적(圖籍)에 들어 있으면 사복시에 경솔히 출급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수현은 말하기를,

“궁가(宮家)에는 출급하고 민전(民田)은 출급하지 않으니, 백성들의 원망이 큼니다. 사복시에서 말을 먹이는 밀천은 으레 호조(戶曹)에서 계획해 보내니, 비록 이것이 없더라도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 없는데, 어찌 백성 보기를 말 기르는 것만도 못한 데 이르렀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의 따르지 않았다. 홍수현이 또 말하기를,

“내간(內間)에 쓰이는 모든 물건을 혹 상의원(尙衣院)에서, 혹은 호조(戶曹)에서 불시(不時)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고, 때때로 상의원에 분부하여 해원(該院)의 하리(下吏)로 하여금 곧바로 호조(戶曹)에서 징출(徵出)한다 하니,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간에 참으로 쓸 것이 있으면 호조에서 가져다써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상의원에서 한갓 전언(傳言)으로 징납하는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出於戶曹。 臣未知果有是事否？ 自內苟有所需， 則取用於戶曹， 無所不可， 而尙衣院， 徒以傳言徵納， 甚爲無理矣。” 上曰：“此特依前例爲之也。” 受瀆曰：“尙衣院宜有草記稟旨之事。” 上曰：“此非特今日爲然， 元無草記事矣。”

	<p>“이는 특별히 전례(前例)에 의해 하는 것이다.” 하였다. 홍수현이 말하기를, “상의원에는 마땅히 품지(稟旨)를 초기(草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특별히 오늘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초기하는 일이 없었다.” 하였다.</p>	
<p>숙보 39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1월 7일 (정미) 1번째기사</p>	<p>황감(黃柑)을 반궁(泮宮)606) 에 내리고 선비들을 시험하였다. 으뜸을 차지한 사람 윤세수(尹世綏)를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도록 명하였다. 이 때에 옥당(玉堂) 조도빈(趙道彬)이 대독(對讀)으로 참시(參試)하였는데, 윤세수는 바로 조도빈의 표숙(表叔)이어서 사람들이 사(私)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였다.</p>	<p>丁未/賜柑泮宮試士，命居魁人尹世綏，直赴殿試。時，玉堂趙道彬，參試對讀。世綏，卽道彬之表叔，人疑其有私。</p>
<p>숙중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8월 5일 (임신)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말하기를, “북로(北路)의 개시(開市) 때에 곡물(穀物) 및 다른 물화(物貨)로써 청마(淸馬)를 사들이는 것은 진실로 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나, 말을 서로 바꾸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말 8, 9필로 청마 한 필과 바꾸는데, 저쪽 사람은 바꾸어 간 뒤에 길러 청마로 양성(養成)하여 도로 가지고 와서 또다시 이와 같이 교역(交易)합니다. 이 때문에 북로(北路)는 마축(馬畜)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니, 이는 금단(禁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신이 원접사(遠接使)로 서관(西關)을 왕래하면서 들으니, 저쪽 사람들은 암말을 더욱 구한다고 하는데, 이는 번식(蕃殖)시키기 위해서이며, 우리의 말이 이로 말미암아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개시(開市)의 일은 북병사(北兵使)가 주관(主管)하니, 특별히 신칙(申飭)하면 이익되는 바가 있을 듯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태채(趙泰采)는 말하기를, “말[馬]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소를 가지고 말 한 필과 바꾸는 것도 또한</p>	<p>壬申/引見大臣。備局諸臣。左議政李畬曰：“北路開市時，以穀物及他貨，貿取淸馬者，則固不當禁，而至於以馬相換者，我馬八九匹，易一淸馬，彼人換去後，養成淸馬，還爲持來，則又復如是交易，以此北路馬畜漸空云。此則不可不禁斷矣。”禮曹判書閔鎭厚曰：“臣以遠接使，往來西關，聞彼人甚求雌馬。蓋爲其蕃息，而我馬則由此漸縮，誠可慮也。開市事，北兵使主管，別爲申飭，則似有所益矣。”兵曹判書趙泰采曰：“不但馬也，以牛累頭，換一馬者，亦可切禁。且彼人買賣之際，必受其代馬，又求添價云，此則似不必禁矣。”上曰：“只給一馬，添他價相換者，勿禁，其餘則嚴禁可</p>

	<p>금지시켜야 합니다. 또 저쪽 사람이 매매(賣買)할 때에 반드시 그 대마(代馬)를 받고 또 값을 덧붙이기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금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말 한 마리만 주고 다른 것으로 값을 덧붙여서 서로 바꾸는 것은 금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엄금(嚴禁)하는 것이 가(可)하다.”</p> <p>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사섬시(司贍時)는 노비공(奴婢貢)12583) 의 면포(綿布)를 관장하여 무록관(無祿官)12584) 에게 달마다 2필(疋)을 주었는데, 근래에 호조(戶曹)로 이속(移屬)시키면서 무록관에게는 요미(料米)를 줍니다. 그러나 사섬시의 관원 세 사람은 맡은 일도 없이 다만 빈 관아(官衙)만 지키고 있으니, 마땅히 감생(減省)하여야 할 듯합니다.”</p> <p>하고, 이여는 말하기를, “예로부터 치도(治道)를 논할 적에는 용관(冗官)12585) 을 줄이는 것을 선무(先務)로 삼았습니다. 이미 직장(職掌)이 없이 다만 그 이름만 있으니, 도리로서는 마땅히 줄여야 합니다.”</p> <p>하고,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이는 바로 신이 진백(陳白)한 바입니다. 옛사람은 일없이 먹는 자를 폐기하는 것을 치도(治道)의 일단(一端)으로 삼으면서 송충(松蟲)의 재해(災害)에 이르러서도 또한 조정에 용관이 있는 소치(所致)라 하였으니, 이와 같은 한만(閑漫)한 벼슬아치는 줄이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직책을 맡은 것이 없다면 줄이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현재 있는 관원이 다른 관사(官司)로 옮겨질 때에는 그 공해(公廩) 및 모든</p>	<p>也。” 吏曹判書李頤命曰：“司贍寺掌奴婢貢綿布，無祿官月給二疋矣，近來移屬戶曹，而無祿官則給料。司贍官員三人，無所掌，而只守空廩，似當減省矣。” 奮曰：“自古論治道，以省冗官爲先。既無職掌，但其名，則理當減省矣。” 閔鎭厚曰：“此是臣所陳白者。古人以罷無事而食者，爲治道之一端，至於松蟲之災，亦以爲朝有冗官之致。如此閑漫之官，恐不可不減矣。” 上曰：“既無職掌，減省可也。” 頤命曰：“見存官員，移遷他司，其公廩及凡物，請命戶曹區處。” 從之。副應教李觀命，袖進朴世堂《思辨錄》辨破之說，因言曰：“臣與權尙游，猥膺辨破之命，臣等素昧經學，見聞寡謏，固不足發揮經旨，而義不敢固讓，略有論辨，未及脫藁，尙游又赴外任，書札往復，遷延時月，今始訖工，乃敢繕寫以進。仍念《思辨錄》中，背經悖道之語，不一而足。聖上投火之命，實出於痛斥之意，而臣取觀其書，無他神奇可以惑衆者，或用十三經注疏中，朱子已棄不取之剩語，或取他小說中，無用閑漫之危言，掠爲己有，間或強索</p>
--	---	---

<p>물건을 호조(戶曹)에 명하여 구처(區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응교(副應敎) 이관명(李觀命)이 소매 속에서 박세당(朴世堂)의 《사변록(思辨錄)》을 변파(辨破)한 설(設)을 꺼내어 바치고, 인하여 말하기를,</p> <p>“신이 권상유(權尙游)와 함께 외람되게 변파(辨破)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신 등은 본래 경학(經學)에 어둡고 견문(見聞)이 적어서 진실로 경서(經書)의 뜻을 발휘(發揮)할 수가 없었지만 의리상 감히 굳이 사양할 수가 없으므로, 대략 논변(論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탈고(脫稿)하지 못하여 권상유가 또 외임(外任)에 나갔으므로, 서찰(書札)로 왕복(往復)하여 시월(時月)을 천연(遷延)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공정(工程)을 마치고 이에 감히 선사(繕寫)하여서 올립니다. 인하여 생각하건대, 《사변록》 안에 경서의 뜻에 위배(違背)되고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말이 하나만이 아니니, 성상(聖上)께서 이 책을 불에 던져 버리라는 명령은 진실로 심히 배척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이 그 글을 가져와 살펴보건대, 별달리 신기(神奇)하여 못사람을 현혹시킬 만한 것이 없고 혹은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 가운데 주자(朱子)가 이미 버려서 취하지 않은 쓸데없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다른 소설(小說) 가운데 무릇 쓸모 없고 한만(閑漫)한 치언(卮言)12586)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간혹 억지로 강경한 의논을 찾아내어 오직 전현(前賢)보다도 뛰어난을 구하기를 힘썼으므로 비록 심상(尋常)한 사자(士子)라 하더라도 경전(經傳)의 조박(糟粕)만 대략 알면 그 허탄(虛誕)하고 망령된 것임을 엿볼 수 있어서 노불(老佛)12587)의 글처럼 빠지기 쉬운 것이 아니니, 이는 깊이 근심할 것이 못됩니다. 만약 본문(本文)을 불태워 없앤뒤에 그 문도(門徒)들이 혹시 그 스승의 말은 이와 같지 않아서 변파(辨破)한 설이 적결(擿抉)된 데서 나왔다고 한다면 또한 고정(考訂)12588) 할 수가 없으니, 내버려두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증공(曾鞏)의 《전국책(戰國策)》의 서문(序文)에 이르기를,</p>	<p>硬論，惟以求多於前賢爲務，雖尋常士子，粗識經傳糟粕，則可以立覩其誕妄，非若老、佛之書，易爲沈溺者，此不足深憂。若焚滅本文之後，其門徒或以爲其師之言，不若是而辨破之說，出於適扶云，則亦無以考訂，置之似宜矣。曾鞏《戰國策》序有曰：‘君子之禁邪說也，固將明其說於天下，使當世之人，知其說之不可從，然後以禁則齊，使後世之人，知其說之不可爲，然後以戒則明。豈必滅其籍哉？’此說儘有見，故朱子取之。臣意以爲姑留此書，使後世之人，曉然知其說之誣悖，恐或得宜。”李畚曰：“所謂《思辨錄》，臣亦見之，而其說至淺陋，誠不滿一哂。大凡異端之說高處，或出人意表，使人眩惑，故能爲世道之害，而此書則不然，稍有眼目，皆可辨之，朝家雖不禁遏，人孰信之？韓愈之言曰：‘人其人火其書。’朱子之詩曰：‘誰哉繼三聖，爲我焚其書？’前賢闢異端之嚴，固如是，而此書則本不足費力禁絕。今必自朝家，取以焚火，似太多事。且儒臣之言，不無意見，置之恐無妨。”上曰：“當初投火之命，出於</p>
--	--

‘군자(君子)가 사설(邪說)을 금함에 있어서 진실로 그 사설을 천하에 밝혀 당세(當世)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설을 좇을 수 없음을 알게 한 연후에 이를 금한다면 가지런해지게 되고,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설의 행할 수 없음을 알게 한 연후에 경계한다면 밝아지게 되니, 어찌 반드시 그 글을 없앨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이 참으로 견해(見解)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자(朱子)가 이를 취하였습니다. 신의 뜻은 우선 이 책을 남겨 두어서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환하게 그 무패(誣悖)12589) 를 알게 하는 것이 혹시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이여(李畬)는 말하기를,

“이른바 《사변록》을 신도 또한 보았는데, 그 말이 지극히 천루(賤陋)하여서 진실로 한번 웃음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대개 이단(異端)의 학설은 높은 것은 혹시 사람들의 뜻밖에서 나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세도(世道)의 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책은 그렇지 아니하여 조금만 안목(眼目)이 있으면 모두 이를 분별할 수 있으니, 조가(朝家)에서 비록 금알(禁遏)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누가 이를 믿겠습니까? 한유(韓愈) 12590) 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사람대로 두고 그 책을 불태운다.’고 하고, 주자(朱子)의 시에 이르기를, ‘누가 삼성(三聖)12591) 을 계승하여[誰哉繼三聖] 우리를 위해 그 책을 불태우겠는가? [爲我焚其書]’ 하였으니, 전현(前賢)이 엄격하게 이단을 물리치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으니, 이 책은 본래 힘들여 금지할 것도 못됩니다. 이제 반드시 조가(朝家)에서 취하여 불태운다면 너무 일이 많은 듯하며, 또 유신(儒臣)의 말도 의견이 없지 않으니, 버려 두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불속에 던지라는 명은 사설(邪說)을 엄중히 배척하는 뜻에서 나왔으나 대신과 유신(儒臣)의 진달한 바가 과연 의견이 있으니, 불태우지 않는 것이 가하다.”

嚴斥邪說之意，而大臣、儒臣所達，果有意見，勿焚可也。” 司諫金相稷啓曰：“近來人心，日益危惡，世變日漸層生。伏聞一種凶悖之徒，遮要行人於迂路，誘致愚氓於僻處，男割其陽，女剝其陰，其情狀之絕痛，實非殺人強盜之比。頃自畿邑，捉得其中小兒一人，移送捕廳云，而今已閱月，尙不搜捕，殊甚踈緩。請當該捕盜大將推考，嚴飭左、右捕廳，期於必捕。【或言割取人陰陽，用爲天疤瘡藥，自彼中購以重價，故無賴輩作黨割剝，潛送規利云。行旅不敢單行，亦不敢由僻路，冒晨夜而行。一時騷動，至發臺啓，而開城府十七歲兒童及五六歲流丐兒，俱被人割勢而去，原犯不得捕。留守嚴緝狀聞，實是一大變怪。】舉動時，各司下人，紛擾喧聒，其弊已極，至於班行之間，不成貌樣，請此後舉動時，令該曹，分付各司，另加申飭，而大小官員之多率下人者，亦令摘發警責。” 竝依啓。記事官李緯曬史歸白曰：“惟我端宗大王復位，實是曠世盛典。今其舊史中，以魯山君日記，書諸紙面，當時修史，自應如此，而到今復位之

하였다. 사간(司諫) 김상직(金相稷)이 아뢰기를,
 “근래에 인심이 날로 더욱 위태롭고 모질어져서 세변(世變)이 날로 점점 겹쳐
 발생합니다. 삼가 들건대, 일종의 흉패(凶悖)한 무리가 행인(行人)을 후미진
 길에서 가로막고 기다리다가, 어리석은 백성을 궁벽한 곳에 유치(誘致)하여
 남자는 그 양근(陽根)을 베고 여자는 그 음부(陰部)를 도려내니, 그 절통(絶
 痛)한 정상(情狀)은 실로 살인 강도(殺人強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난번
 에 경기(京畿)의 고을에서 그 중의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붙잡아서 포도청(捕盜
 廳)으로 이송(移送)하였다고 하는데, 이제 이미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수포(搜
 捕)하지 못하고 매우 소홀히 하여 지체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해당 포도 대
 장(捕盜大將)을 추고(推考)하고, 좌포도청(左捕盜廳)과 우포도청(右捕盜廳)을
 엄중히 신칙하여 체포하도록 기필하소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음
 부(陰部)와 양근(陽根)을 베어 내어 이것을 써서 천과창(天疤瘡)의 약을 만들
 면 청(淸)나라에서 비싼 값으로 구매(購買)하므로, 무뢰배들이 떼지어 베고 도
 려내어 가지고 몰래 보내어서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행려(行旅)가 감
 히 혼자 가지 못하고, 또한 감히 외진길로 지나가지 못하였으며, 새벽과 밤을
 무릅쓰고 길을 가게 되니, 한때 소동(騷動)하여 대계(臺啓)가 나오기에 이르렀
 다. 개성부(開城府)에서는 17세의 아동과 5, 6세의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아이
 가 모두 사람에게 거세(去勢)당하였으나, 원범(原犯)을 체포하지 못하고 유수
 (留守) 엄집(嚴緝)이 장문(狀聞)하였으니, 진실로 하나의 큰 변괴(變怪)이다.】
 거동(舉動) 때에 각사(各司)의 하인(下人)들이 분요(紛擾)하고 시끄러워서 그
 폐단이 이미 지극한데 반행(班行)의 사이에 이르기까지 모양(模樣)을 이루지
 못하니, 청컨대 이 뒤의 거동 때에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각사에 분부하여
 특별히 신칙(申飭)을 더하게 하시고 대소 관원(大小官員)으로서 하인을 많이
 거느린 자도 또한 적발(摘發)하여 경책(警責)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따랐다. 기사관(記事官) 이재(李縉)가 사책(史冊)

後，猶與燕山、光海，同作一例，無少
 區別，豈非未安之甚者乎？原史則固無
 可論，而外面所題《魯山君日記》五
 字，改以《端宗大王實錄》，恐爲得
 宜。”上詢諸筵中，左議政李畬以秘史
 體重難之。縉又曰：“列聖實錄中，多
 有附錄載行狀、哀冊文，今亦依此例，
 撰出一通文字，備錄端宗大王某年復位
 及改冊面日記字，爲實錄等事，實如復
 位時教文、諡冊等文，亦爲具載，合成
 附錄卷，同藏石室，則其於傳信永久之
 道，似爲詳盡矣。”李畬曰：“列聖實
 錄，皆有附錄，《端宗大王日記》雖不
 得改，若爲附錄。以記復位首末及仍
 存舊史之意，竝載復位教文及告廟、諡
 冊等文，爲可。”禮曹判書閔鎮厚以
 爲：“若以復位時文字，編成附錄，且
 記外面追改之意則尤好。”上曰：“復
 位後，仍稱日記，果未安。卷內文字，
 雖不可改，改書外面，未爲不可。外
 面書以《端宗大王實錄》，仍令撰出附
 錄可也。”鎮厚以茲事體大，不可無設
 局之舉。請令該館，稟旨而行之，上
 可之。

을 벌에 죄어 말리고 돌아와 아뢰기를,
“우리 단종 대왕(端宗大王)의 복위(復位)는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성전(盛典)입니다. 지금 그 옛 사책(史冊)속에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라고 지면(紙面)에 쓰여져 있는데, 당시 사기(史記)를 편수(編修)하던 때에는 당연히 응당 이와 같았어야 하겠지만 이제 복위(復位)한 뒤에 그대로 연산군(燕山君), 광해군(光海君)과 똑같이 일례(一例)로 만들어 조금도 구별이 없으니, 어찌 매우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원사(原史)는 진실로 논할 만한 것이 없지만, 겉면에 쓰여진 《노산군일기》 다섯 글자를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으로 고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연중(筵中)에 물었는데,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는 비사(祕史)의 사체(事體)가 중대하다 하여 어렵게 여겼다. 이재가 또 말하기를,
“열성(列聖)의 실록(實錄) 안에 흔히 부록(附錄)이 있어, 행장(行狀)과 애책문(哀冊文)을 실었는데, 이제 또한 이 예(例)에 의거(依據)해서 한 통(通)의 문자(文字)를 지어내어, 단종 대왕이 어느 해에 복위(復位)한 것 및 책면(冊面)의 일기(日記)라는 글자를 고쳐 실록(實錄)으로 한 등의 일을 갖추어 기록하고, 실로 복위(復位) 때의 교문(敎文)·시책문(諡冊文) 같은 글을 또한 함께 실어 합쳐 부록의 권(卷)을 만들어서 함께 석실(石室)에 간직한다면 영구히 전신(傳信)하는 도리(道理)에 상세히 살펴서 갖추는 것이 될 듯합니다.”

하였는데, 이여가 말하기를,
“열성(列聖)의 실록은 모두 부록이 있으니, 단종 대왕의 일기는 비록 고칠 수는 없다 하나, 만약 부록을 만들어서 복위한 수말(首末)과 구사(舊史)를 그전대로 보존하는 뜻을 기록하고 아울러 복위의 교문(敎文) 및 고묘(告廟)·시책(諡冊) 등의 글을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만약 복위 때의 문자(文字)로써 부록을 편성(編成)하고, 또 외면(外面)의 추

	<p>개(追改)한 뜻을 기록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복위한 뒤에도 그전대로 일기(日記)라고 일컫는 것은 과연 미안하다. 권(卷)안의 문자는 비록 고칠 수 없으나, 외면을 고쳐 쓰는 것은 불가(不可)하지 않으니, 외면은 《단종대왕실록》이라고 쓰고, 인하여 부록을 지어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민진후가, 이 일은 사체(事體)가 중대하여 설국(設局)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하면서 해관(該館)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이를 행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율게 여겼다.</p>	
<p>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8월 10일(정축) 3번째기사</p>	<p>의금부(義禁府)에서 김덕기(金德基)·한영휘(韓永徽)·이동언(李東彦)의 일로 언의(讞議)12593) 를 올리니, 임금이 명하여 모두 놓아주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세 사람이 지평(持平) 조태억(趙泰億)의 삭판(削版)하라는 논핵(論劾)을 받아 의금부 관리에게 내려 구핵(究覈)하게 하였는데, 김덕기가 공초(供招)하기를,</p> <p>“쌀자루[米袋]의 일은 집에 양친(兩親)이 있으므로, 과연 요(料)를 보낸 일이 있는데, 혹시 고을이 멀어서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을이 쇠잔(衰殘)하고 길이 멀어서 또한 달마다 요(料)를 보내지는 못하였는데, 사정(私情)이라고 일컬어 이로써 효도(孝道)로 다스리는 때에 죄를 받으니, 어찌 감히 한 마디 말로 억지로 변명하겠습니까? 면사(綿絲)를 거둔 일은 관아(官衙)의 이속(吏屬)이 그 삭료(朔料)를 가지고 누에고치를 사들여 관비(官婢)로 하여금 실을 만들게 하여 거둔 것으로 이는 각 고을에서 통행(通行)하는 일에 불과(不過)한데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갑자기 대신(臺臣)의 소장(疏章)에 넣었으니, 진실로 이 몸의 죄가 되나, 과독(課讀)이 매우 엄하다는 말은 도리어 한번 웃을 만합니다. 누룩[麴子]의 일은 더욱 이치에 가깝지 않으니, 제멋대로 탐도(貪饕)하고자 한다면 어찌 계책이 없음을 근심하</p>	<p>義禁府獻讞金德基、韓永徽、李東彦事，上命竝釋之。先是，三人等，被持平趙泰億削版之論，下吏究覈。德基供曰：“米袋事，家有兩親，果有送料之事。或因遠邑難致，買錢以送，而邑殘程迥，亦不得逐朔送料，以稱私情。以此受罪於孝理之下，則何敢一言強辨？收絲事，衙屬以其朔料，買得蠶繭，使官婢作絲收捧，不過各邑通行之事。此等微細，遽入臺章，固爲身罪，而課讀甚嚴之說，還可一笑。麴子事，尤不近理。欲肆貪饕，何患無策，而乃爲此至拙至淺之舉乎？銀貨出入，皆有簿記，又有典守之人，而胎銀踏麴，又當使人爲之，則不能隱諱於此，反欲隱諱於持去之際者，已不成</p>

여 바로 이런 지극히 졸렬(拙劣)하고도 천박(淺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은화(銀貨)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모두 장부의 기록이 있고, 또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 있으며, 은을 속에 싸서 누룩을 밟는 것은 또 마땅히 사람을 시켜하여야 하니, 여기에서 은휘(隱諱)할 수 없는데, 도리어 가져갈 때에 은휘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이미 말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 누룩이 비록 크다 하더라도 만약 열 몇 조각의 은을 속에 싼다면 결코 밟아서 누룩을 굳게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고, 설령 겨우 모양을 이룬다 하더라도 길이 멀고 짐이 무거워서 결코 많이 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이같은 별양(別樣)의 큰 누룩은 보는 사람이 반드시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길 것이니, 은휘(隱諱)하고자 하는 계책에서 벗어난다고 이를 만합니다. 금·은은 본래 가벼운 재화(財貨)인데, 이제 도리어 바꾸어 무겁고 커서 운반하기 어려운 물건을 만들면 저절로 발각될 것이니,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臺臣)이 비록 극도로 구함(構陷)하려고 하였으나 교묘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졸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룩은 몇 차례 올려 보낸 때가 없지 않았으나, 누룩을 만든 사람과 받아 가지고 온 관복(官僕)에게 묻는다면 추악한 무함을 씻을 수 있습니다. 동래부(東萊府)에서 새로운 은이 나온 뒤로 은의 유통(流通)의 길이 매우 좁아지고, 또 그것이 다른 물건과 다르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사사롭게 쓴 정상(情狀)이 없음을 천지 귀신에게 질정(質正)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불의 일은 부모의 나이가 높지만 이른바 백세 의금(百歲依衾)12594 을 가난하여 일찍이 만들어 두지 못하였는데, 삭봉(朔俸)이 넉넉해졌으므로 비단을 사들여서 이불 네 채와 두루마기·바지 각각 한 벌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늙은 아버지가 추은(推恩)을 받아 자급(資級)이 올랐으므로, 홍단령(紅團領)과 흑단령(黑團領) 두 가지를 또한 비단을 사서 갖추었는데, 지금 이 대계(臺啓)에서 네 채의 이불을 억지로 그 수량을 감절로

說。且麩子雖大，若胎十數片銀，決難踏堅成麩。設令僅成貌樣，遠路卜重，決難多致，而況如許別樣大麩，見者必爲疑怪，其於欲爲隱諱之計，可謂遠矣。金銀，本是輕貨，而今反變作重大難運之物，自致敗露，人雖至愚，必不爲此。臺臣雖欲極構，可謂欲巧反拙，而麩子則不無數次上送之時。問諸造麩者及領來官僕，則可雪醜誣矣。萊府，自新銀之後，銀路甚窄，且以其異於他物，不欲染指。分銖無私用之狀，可質於天地鬼神。錦衾事，父母年高，所謂百歲衣食，貧不曾造置，而朔捧餘優，故質得錦匹，造衾子四件及襖裳各一。適於其時老父，被推恩陞資，紅黑團領二件，亦以錦段質備矣。今此臺啓四衾，勒倍其數，團領何不舉論？爲父母侈恩之具，歸厚之資，竊謂人子情理之所不可已，則固非欲掩之事。移轉及分糶事，俱有曲折。大同米劃給廣州之時，慮其虛踈，一一斛量，廣民初謂之取剩不受，後乃盡數受去。糶穀分給時，從民願量給，所餘無多，而傾庫之後，又令鄉色監掃簸揚，五六月之間，白給飢民，而前後

늘리면서 단령은 어찌 거론(學論)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모를 위한 은전(恩典)을 사치스럽게 하는 도구와 귀후(歸厚)12595)의 물자(物資)는 인자(人子)의 그만둘 수 없는 정리(情理)라고 생각하였으니, 진실로 숨기고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전(移轉)하여 조곡(糶穀)을 나누어 준 일은 모두 곡절(曲折)이 있습니다. 대동미(大同米)는 광주(廣州)에 획급(劃給)할 때에는 그 허소(虛疎)함을 염려하여 일일이 휘[斛]로 되었는데, 광주 백성이 처음에는 남은 곡식을 가져온 것이라 하여 받지 않다가 뒤에 전체의 수량을 모두 받아갔으며, 조곡(糶穀)은 나누어 줄 때에 백성의 원에 따라 헤아려 주었더니, 남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비운 뒤에 또 향색(鄉色)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소제하고 키질하여서 5, 6월 무렵에 굶주린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전후로 헤아려 준 것이 모두 전해오며 두루 쓰이는 말과 휘를 썼으니, 어찌 작은 말로 바퀴 썼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향색(鄉色)과 고자(庫子)가 모두 있으니, 실상(實狀)을 분변(分辯)하여 밝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헤아려 주고 남은 그 수량이 얼마나 되며, 쥐가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잔단 것인데, 이것으로써 백성을 괴롭혀서 내 몸을 살찌게 하는 자료(資料)로 삼겠습니까? 장사(庄舍)의 일은 금천(衿川)의 박장(薄庄)을 계해년(12596)에 샀는데, 50여 두락(斗落)의 땅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초가(草家) 7간(間)과 와가(瓦家) 3간이 있는데, 원래 서까래 하나도 새로 보수한 일이 없으므로, 해가 오래되어 썩고 무너진 것을 모두 자가(自家)에서 요리(料理)하여 사들였습니다. 과연 수원(水原)에 있을 때에 마련한 것이라면 지급한 값은 반드시 관고(官庫)에서 나오고 가져다 준 사람으로 반드시 관속(官屬)이 있을 것이니, 엄중히 조사할 때에 과연 일분(一分)이라도 대계(臺啓)에 근사(近似)한 것이 있다면 비록 만번 죽임을 받더라도 마음에 달갑게 여기겠습니다. 염문(廉問)할 때의 일은 계속하여 그 피사(避辭)를 보건대, 곧 오두성(吳斗成) 및 유성(柳姓)의 아전을 증인으로 삼아 대신(臺臣)이 말하기를, ‘오두성과 서로 친하다면 반드시 뇌물을 써서 죄를

量給, 皆用流來行用之斗斛。豈有換用小斗之理乎? 鄉色、庫子俱在, 實狀不難辨明矣。量給之剩, 其數幾何, 鼠殘之餘, 何等鄙細, 而以為虐民肥己之資乎? 庄舍事, 衿川薄庄, 癸亥所買, 不過五十餘斗落種之地。中有草家七間、瓦家三間, 元無一椽新補之事, 年久朽傷, 而皆自家中, 料理買取。果是水原時所辦, 則所給之價, 必出官庫, 持給之人, 必有官屬。嚴查之際, 果有一分近似於臺啓者, 則雖萬戮甘心矣。廉問時事, 續見其避辭, 則乃以吳斗成及柳姓吏為證。臺臣以為, 與斗成相親也, 則必無行賂免罪之計, 謂之相踈也, 則不知御史主意之如何, 何敢直送米馱於猝然之頃乎? 參以人情事勢, 萬不近理, 而彼既證所聞之真的, 此則不待縷縷自明, 可以立辨其誣。至若末梢措語, 不覺痛迫。世豈有無父母之人, 而清朝孝理之下, 忍發此等絕悖之言? 始則稱以親庭送饋, 求罪於養親之節, 終則直斷以踈忽之罪。只緣不孝無狀, 平日言行, 無以見信於人, 致此罔極之言, 更無所達”云, 馬屎、水草等事, 亦皆據實以對。永徽

면할 계책이 없을 것이다.’ 하였으나, 서로 소원(疏遠)하다고 한다면 어사(御史)의 주의(主意)가 어떠한지 모른 채 어찌 감히 갑자기 쌀짐을 곧장 보냈겠습니까? 인정(人情)과 사세(事勢)로 참작하여도 절대로 이치에 가깝지 못한데 그가 이미 들은 바가 참되고 틀림없음을 증명하였으니, 이것이 누누이 스스로 변명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곧 그 무함(誣陷)을 분변(分辨)할 수가 있습니다. 만단의 조어(措語)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절박(切迫)함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세상에 어찌 부모 없는 사람이 있기에 청조(淸朝)의 효도(孝道)로써 다스리는 때에 차마 이런 아주 쾌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친정(親庭)에 음식물을 보낸 것을 핑계하여 어버이를 봉양하는 예절에 죄를 구(求)하다가 뒤에는 곧 소홀(疏忽)하였다는 죄로써 단정(斷定)하였는데, 다만 불효(不孝)하고 무상(無狀)한 것으로 인하여 평일(平日)의 언행(言行)이 남에게 신임받지 못하여서 이러한 망극(罔極)한 말을 이르게 하였으니, 다시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똥[馬屎]·수초(水草) 등 일도 모두 사실에 의거하여 대답하였다. 한영휘(韓永徽)는 공초하기를,

“은결(隱結)12597) 을 돈으로 거둔 일은 그 때 전결(田結)을 마감(磨勘)할 적에 늙은 어미의 병세(病勢)가 위급하여 혼자 부시(扶侍)12598) 하였으므로 미처 점검(點檢)하지 못하고 곧 화벌(禍罰)에 걸렸다가 상(喪)을 당하여 돌아왔는데, 그 후에 사단(事端)이 비로소 발생하였으니, 무엇을 인연하여 애걸(哀乞)하겠습니까? 만약 그 때의 도신(道臣)에게 묻는다면 실상(實狀)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욕(辱)이 가묘(家廟)에 미친 일은 세력이 강한 고을 사람이 토주(土主)12599)를 무함하는 말을 까닭없이 꾸며 전후에 번갈아 냈는데, 어느 날 감사(監司) 홍만조(洪萬朝)의 군관(軍官)인 정인서(鄭麟瑞)가 와서 말하기를, ‘지난밤에 한 개의 나무 조각으로 신주(神主)의 형상을 가짜로 만들어 감영

供曰: “隱結捧錢事, 其時田結之磨勘也, 老母病勢危急, 獨身扶侍, 未及點檢, 旋罹禍罰, 卽以喪還。 其後事端始發, 則緣何哀乞? 若問於其時道臣, 實狀可以暴白。 辱及家廟事, 邑人豪強, 誣陷土主之言, 白地粧撰, 前後迭出。 一日監司洪萬朝之軍官鄭麟瑞來言曰: ‘去夜有一木片, 假作主形, 投在營內庭際, 監司取而見之, 極爲驚痛以爲: 「此異於匿名書, 汝須往傳於判官」云。 與麟瑞相對而見, 則只是一片木, 且無粉面、旁題, 不過話辱此身之一木牌, 則家廟有何逢變之可論乎? 況此事在於遭喪數旬前, 而其時母病危篤, 雖欲棄歸, 其勢末由。 今乃以因仍踳據, 脅勒詬辱, 至於此極。 此事顛末, 今若覈問於麟瑞, 則可以立辨。 印信事, 荒迷罔極之際, 元不置在念頭, 成服後, 始乃移送, 而遭喪之官, 凡於傳掌文書, 例無踏印着押之事。 藉令萬分無狀, 有竊簿盜財之意, 修正重記, 自當任意增減, 留用印信於何處乎? 至於以房妓仍作哭婢, 隨喪載來之說, 實是人理之外, 則豈忍以如此絕悖之言, 勒加於人乎? 況喪行離發之後,

(監營) 안뜰에 던진 것을 감사가 이를 가져다 보고는 매우 놀라 마음 아파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익명서(匿名書)와 다르니 너는 모름지기 판관(判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정인서와 마주 대하여 이를 보았는데, 다만 한 조각 나무였으며, 또 분면(粉面)12600) 과 방제(旁題)12601) 도 없이 이 몸을 후욕(詬辱)한 한 목패(木牌)에 지나지 않았으니, 가묘(家廟)에 무슨 봉변(逢變)을 논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일이 상(喪)을 당하기 수순(數旬) 전에 있었는데, 그 때에 어미의 병이 위독하여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그 형세(形勢)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협록(脅勒)과 후욕(詬辱)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렀는데, 이 일의 전말(顛末)은 이제 정인서에게 핵문(覈問)하면 곧 분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신(印信)의 일은 한없이 당황하여 혼미한 즘음에 본디 염두(念頭)에 두지 않았다가 성복(成服) 뒤에 비로소 이송(移送)하였습니다. 상을 당한 고을 원이 무릇 문서(文書)를 전장(傳掌)12602) 할 때에는 으레 답인(踏印)12603) 하고 착압(著押)12604) 하는 일이 없으므로, 가령 매우 무상(無狀)하여 장부(帳簿)를 훔쳐 재물을 도둑질할 뜻이 있었다면, 중기(重記)12605) 를 수정(修正)하여 스스로 임의(任意)대로 증감(增減)하지, 인신을 남겨 두었다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방기(房妓)를 곡비(哭婢)로 삼아 수상(隨喪)12606) 케 하여 실어 왔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실로 사람의 도리(道理)에 벗어났으니, 어찌 차마 이같은 아주 패악(悖惡)한 말을 억지로 사람에게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상행(喪行)이 떠나온 뒤에 새 방백(方伯)12607) 이 곧 감영(監營)에 도입(到任)하여 반드시 관속(官屬)을 점고(點考)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니, 실어 온 일의 허실(虛實)은 새 방백 또한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사(家舍)의 일은 본래 세업(世業)이 있었으므로, 이런 영작(營作)은 하기 어려운 데에 이르지 않으며, 하물며 집을 판 값이 있는데, 어찌 별양(別樣)의

新方伯，旋即上營，必有點考官屬之舉，載來虛實，新伯亦可洞知。家舍事，素有世業，此等營作，不至難辦，而況有賣家之價，則豈藉別樣財力，而急於構人，至以莫非出於全州等說，恣意誣捏”云，其餘群從爭地，縱吏索娼及船米等事，皆據理發明。東彥供辭，先辨其父世茂疏救金煥之事而曰：“今乃推其子之罪，延及於既沒之親，夫孰非盡人之子，而忍爲此言耶？夫煥罪比希載、業同何如，而近日營救兩賊者，林立於朝著，猶保其爵位。亡父之因一時意見，泛論其調娛之道，亦何大罪？追加誣辱，恣意凌轢者，莫非此身之故。至於當喪時事，誠有不忍聞者。戊寅十一月望前，率妻往覲于亡父任所，母病猝重，過三日，亡父示憊。其時京外癘疫雖熾，衙中上下安寧，故初無疑慮之端矣。母病旋差，父病日加，一夜之間，病勢猝急。蒼黃急遽之中，罔知所爲，亂割臂血，和藥以進，而誠淺罪深，未蒙神佑，竟至不天。伊時哭扶此身，易服發喪者，座首安壽昌及醫人沈弘澤，而方當父病危重之時，今兵曹判書尹世紀，來到本

재력(財力)을 빌리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없기에 급하여 전주(全州)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없다는 등의 말로써 제멋대로 무함하여 날조(捏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그 나머지 여러 종형제(從兄弟)와 땅을 다툰 일과 아전을 놓아 창녀(娼女)를 찾은 일 및 선미(船米) 등의 일은 모두 사리(事理)에 의거하여 발명(發明)하였다. 이동언(李東彦)은 공사(供辭)에서 먼저 그 아버지 이세무(李世茂)가 김환(金煥)을 상소(上疏)하여 구제한 일은 변명하여 말하기를,

“이제 그 자식의 죄를 미루어 이미 죽은 아버지에게 미쳤으니, 대저 누구인들 남의 자식이 아니기에 차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저 김환의 죄가 장희재(張希載)와 업동(業同)에 비하여 어떠한데, 근일에 두 적(賊)을 영구(營救)하는 자는 조정에 늘어서서 그대로 그 작위(爵位)를 보전하고 있으며, 망부(亡父)가 한때의 의견으로 인하여 그 조화(調和)되어 즐겁게 하는 방도를 범론(泛論)한 것이 또한 무슨 큰 죄이기에 무욕(誣辱)을 추가(追加)하여 제멋대로 업신여겨 침범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이몸 때문이었습니다.

상(喪)을 당한 때의 일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차마 듣지 못할 것이 있으니, 무인년(12608) 11월 보름 전에 아내를 거느리고 망부(亡父)의 임소(任所)에 가서 뵈었는데, 어미의 병이 갑자기 중(重)하더니, 사흘을 지나자 망부(亡父)가 피로한 빛을 보였습니다. 그 때에 서울과 지방에서 여역(癘疫)이 비록 치성(熾盛)하였으나, 관아(官衙) 안의 상하(上下)는 편안하였으므로 처음에 의심스럽고 염려할 만한 단서(端緒)는 없었는데, 어미의 병은 곧 차도가 있었으나, 아버지의 병은 날로 더해 가더니, 하룻밤 사이에 병세가 갑자기 위급해졌습니다. 매우 급하게 서두는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팔을 마구 찢러 피를 약에 타서 드렸으나, 정성은 부족하고 죄는 깊어 신(神)의 도움을 입지 못하여 마침내 세상을 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에 곡(哭)하며 이 몸을 붙들어 주고 옷을 바꾸어 입혀서 발상(發喪)한 자가 좌수(座首) 안수창

邑, 入來病側而問病, 至送所帶京醫而診視, 則始終實狀, 人所共知。 諸人尙在, 可以立辨矣。 初喪時外人, 頗致疑畏, 忌不敢入, 故荒迷罔極之中, 凡百之事, 莫不親執, 則況於斂含之節乎? 凡士夫家, 外喪則外人之閑習於斂襲者, 例助執事之役, 而至於飯含之節, 則主喪之人, 若非狂易失性者, 豈有不自盡於此事者乎? 雖常漢至無狀者, 決不忍爲此, 而猝然以疑亂模糊之言, 誣陷以極惡大罪者, 是何心哉? 設令惡如鴟鴞, 滅絕人理, 離邊喪次, 既有庶弟、堂弟、堂叔, 次有亡父之兩姨弟, 亦有家奴數人, 而必謂之官奴替視飯含云者, 語意尤極凶慘。 替視二字, 無限包藏, 其所謂替視云者, 謂之代行耶? 謂之傍觀耶? 代行則不可謂替視, 傍觀則必不但一官奴而已, 其措語下字, 蓋可見不欲明白, 專務陰陷之狀也。 其所謂思欲一見, 替視飯含兩款事, 嚴查究問於伊時護喪上下諸人及醫人、鄉所官屬, 則至痛可以暴白。 喪葬凡需一款, 查問於本邑所謂長湍謄錄及喪葬時所用文書, 比對詳攷, 則可辨”云。 禁府以有明覈之命, 啓請行

(安壽昌)과 의원(醫員) 심홍택(沈弘澤)이며, 바야흐로 아버의 병이 위중한 때에 당하여 지금의 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세기(尹世紀)가 본고을에 내도(來到)하여 병석(病席) 곁에 들어와 문병(問病)하고, 데리고 온 경의(京醫)를 보내어 진시(診視)하기에 이르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실상(實狀)을 사람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직도 있으니, 곧 분별할 수 있습니다. 초상(初喪) 때에 외인(外人)이 매우 의심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꺼려하여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당황하여 혼미한 가운데 여러가지 일을 몸소 집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염습(斂襲)과 반함(飯含)의 예절이겠습니까? 무릇 사대부(士大夫) 집의 외상(外喪)에는 외인(外人)의 염습에 익숙한 자가 집사(執事)의 일을 돕는 것이 관례(慣例)입니다. 반함(飯含)의 예절에 이르러서는 상사(喪事)를 주장하는 사람이 미쳐서 실성(失性)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어찌 이 일에 스스로 힘을 다하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비록 지극히 무상(無狀)한 상한(常漢)일망정 결코 이런 일을 차마 하지 못할 것인데, 갑자기 모호(模糊)한 말로 의심하여 어지럽히고 극악(極惡)한 대죄(大罪)로 무함한 것은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설령 악행(惡行)이 치효(鴟梟)12609) 와도 같아서 인간(人間)의 정리(情理)를 멸절(滅絕)하여 상차(喪次)를 떠나 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서제(庶弟)·당제(堂弟)·당숙(堂叔)이 있고, 다음으로 망부(亡父)의 두 이제(姨弟)12610) 가 있으며, 또 가노(家奴) 몇 사람이 있었는데, 반드시 관노(官奴)가 반함(飯含)을 체시(替視)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의(語意)가 더욱 지극히 흉악하고 참혹합니다. 체시(替視)란 두 자(字)는 무한한 뜻을 내포(內包)하였으니, 이른바 체시란 것은 대행(代行)을 이르는 것입니까. 방관(傍觀)을 이르는 것입니까? 대행이라면 체시(替視)라고 이를 수 없고, 방관이라면 반드시 한 관노(官奴)일 뿐만 아니니, 그 조어(措語)한 글자는 대개 명백(明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힘써 몰래 무함(誣陷)하는 정상(情狀)을 볼 수 있습니다.

查，至是，京畿、慶尙、全羅三道查狀，陸續下禁府，禁府獻讞以爲：“金德基送錢造衾等事，皆出爲親之情，則此固膠東嗇夫觀仁之過，而又無擅用記付公物之事，則孝理之下，似不當以此爲罪。麩子胎銀，柴穀代錢，取剩私用，小斗給糶，大庄新舍，受賂縣邑之說，皆已歸虛，而馬屎作甕，水草刈乾等事，雖甚細瑣，蓋由於欲補公用，則尤無可論。親監庫門，掃出落板之穀，誠有隳壞體面，太傷苛密之失，而亦不必深咎。李東彥不在病側，替視飯含云者，各人招辭，不但稱冤，且盛稱其誠孝，求之天理人情，決知其無此。邑民致賻，各邑通規，所收合錢文，僅爲四百餘兩，其視長湍謄錄，殆減其半，而此皆還報殮殯時所用之債，至今未償者，亦過百兩，則七百兩載去之說，不足多辨。至於神主價，成冊中元無載錄處，則監司抹去云者，尤極孟浪。兩人似當有分揀之道。韓永徽侵虐僧徒，妓生哭婢等事，查啓中既已白脫，重記所付米布之數，不減於前官，而重記修正，皆着圖署，則印信出送之稍遲，固無可疑。田政疎漏，邦

그 이른바 한 번 보고자 생각하였다는 것과 반함(飯含)을 चे시(替視)하였다는 두 가지 일은 엄중히 사실을 조사하여 그 때의 호상(護喪)했던 상하(上下)의 모든 사람 및 의원과 향소(鄕所)의 관속(官屬)에게 구문(究問)한다면 지극한 원통함을 변명(辨明)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喪葬)의 모든 수용(需用)에 대한 한 조항은 본읍(本邑)에 사문(查問)하여, 이른바 장단 등록(長湍謄錄) 및 상장(喪葬) 때에 쓴 문서를 비교 대조하여 자세히 고찰(考察)한다면, 분변(分辨)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명확하게 핵실(覈實)하라는 명이 있었다 하여 사핵(查覈)을 행하기를 계청(啓請)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경기(京畿)·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세 도의 사장(查狀)이 연달아 의금부에 내리니, 의금부에서 헌언(獻讞)하기를,

“김덕기(金德基)의 돈을 보내고 이불을 만든 일은 모두 어머니를 위하는 정리에서 나왔으니, 이는 진실로 교동색부(膠東齋夫)의 인(仁)을 본 허물(12611) 일 것이며, 또 기부(記簿)의 공물(公物)을 함부로 쓴 일이 없으니, 효도(孝道)를 다스리는 때에 이로써 죄를 삼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

누룩으로 은(銀)을 싼 것, 딸나무와 곡식으로 돈을 대신한 것, <곡식의> 남은 것을 취하여 사용(私用)한 것, 작은 말로 조곡(糶穀)을 준 것, 큰 전장(田庄)과 새 집, 현읍(縣邑)에서 뇌물을 받은 설(說) 등은 모두 이미 헛된 것으로 돌아갔으며, 말뚝으로 벽돌을 만든 것과 수초(水草)를 베어 말린 일 등은 비록 매우 잦단 것이지만, 대개 공용(公用)을 보충하려고 한 데에서 말미암았으니, 더욱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친히 창고의 문을 감시(監視)하여서 판자(板子)에 떨어진 곡식을 쓸어 내게 한 것은 진실로 체면을 무너뜨리고 가밀(苛密)12612) 을 너무 손상시킨 과실(過失)이 있으나, 또한 반드시 깊이 허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언(李東彦)이 병석 곁에 있지 않고, 반함(飯含)을 चे시(替視)하였다고 한 것은 각 사람들의 초사(招辭)에서 다만 원통함을 일컬었

禁冒犯兩款事，雖有其失，而今既年久，且當居憂闋制，則到今不可追罪。縱吏索娼之說，殊甚褻污，而且無指摘之端，亦不須究覈，而辱及家廟事，自本道，既未查得，其時軍官鄭麟瑞，令刑曹推問曲折，起宅爭地等事，令漢城府查問。黃克吉事，待刑曹畢查稟處。”德基、東彦二人，先命放送。其後禁府，又以韓永徽家廟逢變一疑，奏讞曰：“臺啓以爲，粉面、旁題，箇箇宛然，而麟瑞招辭，元無粉面一邊，只有陷中一邊，而坐處稍遠，不能詳見，陷中填書云。以此觀之，臺諫所論，未免爽實。且真有逢變之事，故爲隱諱，仍爲蹲居之計，則揆以常情，必無是理。起宅爭地事，古老人崔聖達招辭，既如是明白，京兆郎廳，目見家舍之不侈，墻基之仍舊，則宏侈闢墻云者，亦皆歸虛，黃克吉米石事，領納時，既有干證，上言訴冤，亦出先發之計，刑曹題辭，已爲分(析) [析]，其非勒奪之狀，據此可知。”上，遂命一體放送。謹按金德基，居官以綜理細務自許，所爲類多鄙瑣，如馬糞作甃等事是也，其亦異乎命藏木屑者矣。至

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성효(誠孝)를 대단히 칭찬하고 있으니,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구(求)하여도 결코 이런 일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고을 백성이 부의(賻儀)를 내는 것은 각 고을의 공통된 규례(規例)로서, 거두어 모은 돈이 겨우 4백여 냥(兩)이 되는데, 장단 등록(長湍謄錄)을 보면 거의 그 반을 줄였으나, 이는 모두 염빈(殮殮)12613) 한 때에 쓴 빛을 갠 것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갠지 못한 것이 또한 백 냥을 넘으니, 7백 냥을 실어 갖다 는 말은 더 논변(論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주(神主) 값을 성책(成冊) 가운데에 본래 기록[載錄]한 곳이 없는 것은 감사(監司)가 지워버렸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 매우 맹랑한데, 두 사람이 마땅히 분간(分揀)할 방도가 있을 듯합니다. 한영회가 승도(僧徒)를 침학(侵虐)하고, 기생을 곡비(哭婢)로 삼은 일 등은 사계(查啓)12614) 에서 이미 무죄로 밝혀졌고, 중기(重記)에 기록한 미포(米布)의 수량이 전관(前官)보다 감손(減損)되지 않았으며, 중기를 수정(修正)하여 모두 도서(圖署)를 찍었으니, 인신(印信)의 출송(出送)이 조금 지체 되었지만 진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정(田政)이 소루(疏漏)하고 방금(邦禁)을 모범(冒犯)한 두 조항의 일은 비록 그 과실이 있으나, 지금 이미 해가 오래되고 또 아버지의 상중에 있어 복제(服制)를 마쳤으니, 지금에 와서 추죄(追罪)할 수는 없습니다. 아전을 놓아 창녀(娼女)를 찾았다는 말은 매우 더러운 짓이나, 또 지적(指摘)할 단서가 없으니, 또한 반드시 구핵(究覈)할 수 없으며, 욕이 가묘(家廟)에 미쳤다는 일은 본도(本道)에서 이미 사실을 조사하여 알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의 군관(軍官) 정인서(鄭麟瑞)를 형조(刑曹)로 하여금 곡절(曲折)을 추문(推問)하게 하였으며, 집을 짓고 땅을 다툰 일 등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사문(查問)케 하였습니다. 황극길(黃克吉)의 일은 형조의 사핵(查覈)을 마치기를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습니다.”

하니, 김덕기와 이동언 두 사람은 먼저 방송(放送)하도록 명하였다. 그 후 의금부에서 한 영회의 가묘(家廟)에 변괴(變怪)를 당했다는 한 조항을 가지고

於爲親受汚，何罪之有？置對皆首實，人皆善其無隱。韓永徽，固非介潔謹飭之士，而若謂之故諱家廟之變，貪戀半刺之任，則揆以常情，寧有是哉？但所遭之變，何等痛迫？宜其(立)自責如不容，登時棄歸，而永徽不能然，淹滯頗久。雖云親癘方欲，不堪作行，亦豈無扶將離次之道乎？大失自處之義，世以此訾之。李東彥，久居言地，遇事敢言。言事雖有駁雜之病，而不計利害，言人所難者多矣，頗有諫官風采。替舍之說，塞耳不忍聞。東彥素無不孝之行，豈遽有此？不待行查，決知其萬萬無是理也。然而此言，亦非趙泰億之創出。蓋東彥論人刻覈，荆棘滿世，怨憾次骨者，百計中傷，造謗蜚語，必有所自明者。所宜深察，而泰億樂爲之傳會，乃以人理所不忍爲之事，騰諸白簡，不少持疑，以售伐異之計，以快讎人之心，語意慘毒，鎔錙而下，泰億之爲人，從可知矣。

언의(讞議)를 아뢰기를,
“대계(臺啓)에 이르기를, ‘분면(粉面)과 방제(旁題)가 날날이 뚜렷하다.’고 하였는데, 정인서의 초사(招辭)에 ‘본디 분면(粉面)한 편은 없고 다만 함중(陷中)한 편만 있었는데, 얇은 곳이 좀 멀어서 함중에 써 넣은 글은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대간(臺諫)의 논한 바가 사실과 틀림을 면치 못합니다. 참으로 변괴를 당한 일이 있었으나, 일부러 이를 은휘(隱諱)하여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할 계책을 삼는다는 것은 상정(常情)으로 헤아려 보아도 반드시 이럴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집을 짓고 땅을 다룬 일은 고로인(古老人) 최성달(崔聖達)의 초사(招辭)에서 이미 이와 같이 명백하고, 경조(京兆)12615)의 낭청(郎廳)이 눈으로 가사(家舍)의 사치스럽지 않음과 담의 터전이 옛날 그대로인 것을 보았으니, 담터를 다투면서 굉장하고 사치스럽게 하였다는 말은 또한 모두 허투(虛套)로 돌아갔습니다. 황극길의 미석(米石)의 일은 받아들일 때에 이미 간증(干證)이 있었는데, 상언(上言)하여 원통함을 호소한 것 또한 선발(先發)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며 형조(刑曹)의 제사(題辭)에서 이미 분석(分析)하였으니, 그것이 능탈(勒奪)의 정상(情狀)이 아님을 이것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의 드디어 일체 방송(放送)하도록 명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덕기는 벼슬살이하며 세무(細務)를 종리(綜理)한 것으로써 자허(自許)하여, 소위(所爲)가 대개 비루하고 잔단 것이 많았으니, 말뚱으로 벽돌을 만드는 등 일이 이것인데, 그것은 또한 톱밥을 저장하도록 명령한 것 12616)과는 다르다. 어버이를 위하여 오욕(汚辱)을 받은 데 이르러서는 무슨 죄가 있겠는가? 사문(査問)에 대답하며 모두 사실대로 말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가 숨김이 없음을 착하게 여겼다. 한영휘는 진실로 개결(介潔)하고 근칙(謹飭)하는 인사(人士)는 아니나, 일부러 가묘(家廟)의 변고를 숨겨 반자(半刺)12617)의 직임(職任)에 마음이 끌렸다고 말하는 것은 상정(常情)으로

	<p>헤아려 보아도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다만 당한 변고가 어느 정도 통박(痛迫)한 것이니, 마땅히 그 자책(自責)하는 뜻을 세워 마치 몸을 용납치 못할 것같이 하며 즉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야 할 것인데, 한영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못 오랫동안 엄체(淹滯)하였으니, 비록 아버지의 병이 바야흐로 중하여서 길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하나, 또 어찌 부호(扶護)하느라고 그 자리를 떠날 방도(方道)가 없었겠는가? 자처(自處)하는 의리를 아주 잃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때문에 비난받은 것이다. 이동언은 오래도록 언지(言地)에 있었으므로, 일을 만나면 과감하게 말하였다. 일을 말할 때에는 비록 박잡(駁雜)한 병폐(病弊)가 있으나, 이해(利害)를 헤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렵게 여기는 것을 많이 말하니, 매우 간관(諫官)의 풍채(風采)가 있었다. 반함(飯含)을 제시(替視)하였다는 말은 귀를 막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일이니, 이동언은 본래 불효(不孝)한 행실이 없었는데, 어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조사(調査)의 시행을 기다리지 않고도 절대로 이럴 이치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p> <p>그러나 이 말은 또한 조태억(趙泰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이동언은 다른 사람을 논핵하는 바가 각박(刻薄)하여, 형극(荊棘)12618) 이 세상에 가득 찼으므로, 원한이 뼈에 사무친 자가 온갖 계책으로 중상(中傷)하여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내고, 뜯소문을 퍼뜨린 것이 반드시 자명(自明)한 바가 있으니, 조태억은 깊이 살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태억이 즐겨 부회(傳會)하여 사람의 정리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로써 백간(白簡)12619) 에 올려서 조금도 의심을 두지 아니한 채 반대편 사람을 공격하는 계책을 이루고,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였는데, 어의(語意)가 참혹하고도 악독하여서 막야(鑊鄒)12620) 도 이에 밀돌 것이니, 조억태의 사람됨을 따라서 알 만하다.</p>	
<p>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p>	<p>봉사(奉事) 홍우행(洪禹行) 등 13인이 박세당(朴世堂)의 문인임을 일컬어 상소하기를,</p>	<p>丁酉/奉事洪禹行等十三人, 稱以朴世堂門人, 上疏曰:</p>

(康熙) 43년) 8월 30
일(정유) 1번째기사

“대저 박세당이 저술한 《사변록(思辨錄)》을 공격(攻斥)하는 자가 혹은 경전(經傳)을 훼손시켰다고 하고, 혹은 성인(聖人)을 모멸(侮蔑)하였다고 하는데, 무릇 이 두 가지는 모두 말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주자(朱子)가 전해(箋解)12633) 하여 깊은 뜻을 밝혀 내었으므로, 마땅히 유감(遺憾)이 없을 것인데, 사람에게 경전(經傳)을 읽는 법을 가르칠 적에는 오히려 말하기를, ‘한 글자도 남겨 두지 말고, 선현(先賢)의 주설(註說)에서 오직 본문(本文)의 뜻을 구하라.’ 하였고, 또 경의(經義)를 변석(辨釋)하는 즘음에는 말하기를, ‘어느 것이 옳은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하고 말하기를, ‘두 말이 모두 통하여 감히 억지로 풀이할 수가 없으니, 아는 사람을 기다려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類)가 매우 많았으니, 진실로 의리는 한이 없고, 미묘한 말은 풀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또한 이 도리(道理)를 천하에 널리 알려서 후인(後人)을 천고(千古)에서 일으키려 한 것입니다. 왕백(王柏) 12634) · 요로(饒魯) 12635), 김이상(金履祥) 12636) 등 제유(諸儒)는 모두 주문(朱門)에 사숙(私淑)한 사람인데, 편(篇)·장(章)을 합하고 나누는 것과 학문을 논변(論辨)함에 있어서 민중(閩中) 12637) 의 서언(緒言)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많았으나, 논(論)하는 자가 유가(儒家)의 적전(嫡傳)으로서 허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明)나라의 진건(陳建) 12638) 이 한 책을 편찬(編纂)하여 《학부통변(學部通辨)》이라고 이름하고, 나흠순(羅欽順) 12639)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송(宋)나라 여러 대유(大儒)의 언론(言論)과 문자(文字)가 어찌 조금 출입(出入)한 곳이 없겠는가? 뒤의 유자(儒者)가 이에 있어서 신명(申明)함은 거리낄 것이 없다.’ 하였으니, 또한 선유(先儒)가 뒤의 군자(君子)를 기다리는 뜻입니다. 대저 나흠순은 명(明)나라의 대유(大儒)로서 주자(朱子)를 높이는 일을 한평생의 사업으로 삼았으나, 그 말이 이와 같았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일찍이 시신(侍臣)에게 이르

夫攻斥世堂所著《思辨錄》者，或謂之毀經，或謂之侮聖，凡此二者，皆不成說。朱子之爲箋解也，闡發微奧，宜無遺憾。然而教人讀經之法，猶曰：“不要留一字先儒註說，惟本文之意是求。”且於辨釋經義之際，有曰：“未詳孰是。”曰：“兩說皆通，不敢強解，以俟知者。”若此類甚多。誠爲義理無窮，微言難析，而亦所以公此道於天下，而起後人於千古也。王柏、饒魯、金履祥諸儒，皆朱門淑艾之人，而其於篇章之合分，學問之論辨，不遵閩中之緒言者，多矣。然而論者，至許以儒家嫡傳。皇明陳建，爲編一書，名之以《學部通辨》，至引羅欽順之言曰：“宋諸大儒言論文字，豈無小小出入處？後儒於此，不妨爲之申明”，亦先儒以俟後之君子之意也。夫欽順，皇明大儒，以尊朱子爲一生事業，而其言如此。伏況我宣祖大王，嘗謂侍臣曰：“《四書集註》，多有未穩處。欲稍刪削，以便觀覽。”先正臣李珥對曰：“此非臣學力所能獨當也。學問之士，不論出身與否，使參玉堂，同議刪削，恐得其宜。”此載李珥遺集中。

기를 ‘《사서집주(四書集註)》가 온당(穩當)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으므로, 조금 산삭(刪削)하여서 관람(觀覽)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니,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대답하기를, ‘이는 신의 학력(學力)으로 혼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학문하는 인사(人士)는 출신(出身) 여부를 논할 것 없이 옥당(玉堂)에 참여케 한 다음 서로 의논하여 산삭(刪削)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으니, 이것이 이이의 유집(遺集) 안에 실려 있습니다. 가령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어려운 것이 하나 있으면, 문득 이설(異說)로 남는 것이 참으로 논자(論者)의 말대로라면, 나훈손·진건 등 대유(大儒)와 선정(先正) 이이는 모두 경전을 훼손시키고 성현을 모욕한 사람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성조(聖朝)의 연교(筵敎)도 장차 실언(失言)하신 과거(過擧)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논자는 대체(大體)를 보지 않은 채 편견(偏見)만 굳게 지켜, 경전의 본말(本末)을 궁구(窮究)하지 않고, 선현(先賢)의 심적(心迹)을 살피지 않고, 다만 일언 반사(一言半辭)가 조금이라도 구주(舊註)에 어긋남이 있으면 놀랍고도 괴이한 일로 여겨 마치 큰 기회(忌諱)를 범한 것처럼 꾸짖어 금하니, 견식이 있는 사람이 이를 본다면 진실로 한 번 웃을 뿐입니다. 혹시 편협한 마음과 소인(小人)의 생각으로 그 원오(怨惡)12640) 를 풀고자하여 선유(先儒)를 원인(援引)하여 사람을 헐뜯는 자부(資斧)로 삼았다면, 천자(天子)를 끼고 제후(諸侯)를 호령하는 것12641) 이 실상은 한적(漢賊)으로서, 이는 바로 주자(朱子)의 죄인인데,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 아! 그 또한 민망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건대, 박세당이 《사변록》을 지은 것이 과연 경전을 훼손시킨 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또 변론(辨論)하여 차록(筭錄)할 때에 일체(一切) 완전(宛轉)12642) 할 수 없는 것이 형세(形勢)이니,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언적(李彦迪)은 평생 동안 주자를 존신(尊信)하였으니, 고복(顧復)12643) 함이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대학보유(大學

藉令一有疑難，便爲異說，眞如論者之言，則羅欽順、陳建之大儒，李珥之先正，率不免爲毀經侮聖之人，而聖祖筵敎，亦將歸於失言過擧耶？論者未睹大體，固守偏見，不究經傳之本末，不察先賢之心迹，惟是一言半辭，少有差殊於舊註，則驚怪呵禁，若犯大諱，識者見之，良足一笑。或以褊心小腸，逞其怨惡，引援先儒，把作毀人之資斧，挾天子令諸侯，其實漢賊。此正朱子之罪人，而不自覺悟，嗚呼其亦可哀也已。由是觀之，世堂之爲《思辨錄》，果犯毀經之罪耶否耶？且辨論筭錄之際，其不能一切宛轉，勢也，無足異者。先正臣李彥迪之平生尊信朱子，顧復何如，而其爲《大學補遺》也，變易刪沒，不甚留難。其說有曰偏而不周，曰昏而無得，曰上下文義，都不相屬，曰失其本末終始，而至於敗亂者，由其不講此義，曰一字之義不明，害流於生民，禍及於後世。其句語、辭氣，亦可謂欠宛轉不委曲之甚矣。凡若此者，豈出於詆毀輕侮之意哉？今世堂，於傳註全體，固已心悅誠服，聞有疑晦，憤悱求通，則辭句之或妨直截，亦

補遺》를 지으면서 변역(變易)하고 산삭(刪削)하는 것을 그다지 어렵게 여기지 않았습시다. 그 말에 이르기를, ‘편벽되어 주밀(周密)하지 못하다.’ 하고 ‘사리에 어두워서 얻을 것이 없다.’ 하고, ‘위아래의 글뜻이 모두 서로 맞지 않는다.’ 하고, ‘그 본말과 시종을 그르쳐서 패란(敗亂)에 이르게 된 것은 대의(大義)를 강구(講究)하지 않음에 말미암는다.’ 하고, ‘한 글자의 뜻이 밝지 않으면, 해(害)가 생민(生民)에게 전과되고, 화(禍)가 후세에 미치게 되는데, 구어(句語)와 사기(辭氣)가 또한 완전(宛轉)을 잃고 상세하지 못한 것이 심하다고 이를 만한다.’ 하였는데, 무릇 이와 같은 것이 어찌 경전을 저훼(詆毀)하고 성현을 경모(輕侮)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지금 박세당이 전주(傳註)의 전체에 대하여 진실로 이미 마음으로 기뻐하고 성심(誠心)으로 복종하지마는, 간혹 의심스럽고 사리에 어두운 것이 있으면 분발(憤發)하여 통하기를 구하였으니, 사구(辭句)가 혹 직절(直截)하는 것을 꺼린 것은 또한 그 성품이 고지식하여서 완곡(婉曲)12644) 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도(道)를 공격하여 폄강(貶降)하고 그 사람을 헐뜯어 배척하는 뜻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지금의 논자(論者)가 다른 사람을 대항하는 데에 급하여 앞뒤를 돌아보아 살필 겨를조차 없이 억지로 성인을 모멸한 죄를 더하고 있는데, 박세당은 진실로 논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홀로 선정(先正)의 처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철궐(撤饋)12645)의 한 항목에 이르러서는 예경(禮經)과 선유(先儒)가 논한 바에서 뚜렷하게 모두 근거할 수 있으니, 《의례(儀禮)》에 이르기를, ‘연양(燕養)의 궐수(饋羞)와 탕목(湯沐)의 찬(饌)을 다른 날과 같이 하고, 매달 초하루에 천신(薦新)할 적에는 하실(下室)에서 궐(饋)하지 않는다.’ 하고, 주(註)에 이르기를, ‘궐은 아침저녁의 식사이다.’ 하였으며,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졸곡(卒哭)이면 휘(諱)하여 산 사람으로 섬기는 것을 마치고 귀신으로 섬기는 것을 시작한다.’ 하고 주에 이르기를, ‘다시 하실(下室)에서 궐식(饋食)하지 않

其性戀而不能回婉耳。此果出於攻貶其道，毀斥其人之意耶？今之論者，急於持人，未暇顧察前後，勒加以侮聖之罪。世堂固無論，獨不爲先正地耶？至於撤饋一款，禮經及儒先所論，鑿鑿皆可據。《儀禮》曰：“燕養饋羞，湯沐之饌，如他日，朔月若薦新，則不饋于下室。”註云饋，朝夕食也。《禮記》曰：“卒哭而諱，生事畢而鬼事始。”註云：“不復饋食於下室，而鬼神祭之，至朔月月半而股奠。”蓋饋羞、湯沐，所以爲象生燕養之具，則饋食爲義，與所謂靈寢同未葬之前，親屍在世，故孝子不忍遽死其親，待以生存，既葬之後，若復象生於神主之前，則殆近於褻，故乃撤其靈寢與朝夕饋奠，獨有朔與月半股奠，以爲神主未入廟前，孝子泄哀寓慕之地。此聖人設法，所以辨乎死生之際，曲盡情理而爲之節焉者也。至於《國語》，所謂日祭，有不足爲證者，朱子曰：“《國語》日祭，不見他經，無明文，豈可信然哉？”周、漢以降，禮制多訛。臣未知三年上食，始於何代，而朱子時亦有之。朱子著《家禮》，彌文瑣節，織

고 귀신으로 제사하여서 초하루 보름에 이르러 은전(殷奠)을 드린다.’ 하였습
 니다. 대개 궤수·탕목은 살아있음을 상징하는 연양(燕養)의 도구가 되니, 궤식
 으로 뜻이 된 것은 이른바 영침(靈寢)과 같아서 미처 장사지내기 전에 아버이
 의 시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효자가 차마 갑자기 그 아버이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생존한 것으로 대우하고, 이미 장사 지낸 뒤에는 만약 신주
 (神主) 앞에서 다시 살아 있음을 상징한다면 이는 거의 더럽히는 데 가깝기
 때문에 비로소 그 영침(靈寢)과 아침저녁의 궤전(饋奠)을 거두고 홀로 초하
 루·보름의 은전(殷奠)만 남겨두어서 신주가 아직 사당에 들어가기 전에 효자
 가 슬픔을 펴고 사모하는 뜻을 붙이는 터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
 (聖人)이 법을 만들어 사생(死生)의 즘음에 분변(分辨)하여서 정리(情理)를 다
 하여 절도(節度)로 삼는 것입니다. 《국어(國語)》에 이른바 일제(日祭)는 증
 거를 삼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 있는데, 주자가 말하기를, ‘《국어》의 일제(日
 祭)는 다른 경전(經典)에는 보이지 아니하여 명문(明文)이 없으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주(周)나라·한(漢)나라로부터 내려오면서 예제(禮
 制)가 와전(訛傳)된 것이 많았으니, 신은 3년의 상식(上食)이 어느 시대에 시
 작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주자의 시대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주자
 가 지은 《가례(家禮)》에 미문 쇠절(彌文瑣節)12646) 이 모두 자세히 갖추
 어졌으나 유독 영침·상식 등 절목에 있어서는 그 시작만 들고 그 마침은 말
 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자의 뜻이 반드시
 3년을 마칠 때까지 상식하려고 하였다면, 어찌 중간에서 오히려 아침저녁 상
 식을 처음과 같이 할 것을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또 어찌 대상조(大祥
 條)에서, ‘영좌(靈座)를 거둔다.’고 한 아래에 또 상식을 그친다는 글을 밝혀서
 상세하게 되도록 다른 예(例)와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이 말하기를, ‘장사 지낸
 뒤에 아침저녁의 상식을 그만두어야 할지 그만두지 않아야 할지 조금 의심스

悉備具，而獨於靈寢上食等節目，舉其
 始而不言其終，誠有可疑者。若朱子
 之意，必欲終三年而上食，則何不於中
 間，明言猶朝夕上食如初，又何不於大
 祥條撤靈座之下，又著止上食之文，致
 其詳復，如他例也？是故，文元公金長
 生之言曰：“葬後朝夕上食，罷與不罷，
 尋常有疑。”若使《家禮》，明有考
 據，則以長生之深於禮學，篤信《家
 禮》，而何得曰尋常有疑也？蓋朱子之
 與人 問答，雖未有畫一之言，而其意
 未嘗不主古禮爲說。其答陸子靜書曰：
 “禮，虞後有几筵，但卒哭後，不復饋
 食於下室。”金長生按曰：“几筵，終
 三年，而上食則卒哭後當罷也。”李繼
 善問於朱子曰：“《檀弓》既祔之後，
 惟朝夕哭，拜朔奠”，而橫渠、涑水之
 說，與禮經不合，不知何如？”朱子曰：
 “今世已行之禮，不害爲厚，又無嫌於
 僭，且當從之。”金長生按曰：“詳此
 語意，謂朝夕饋食，古禮當罷，而從俗
 從厚，爲不害也。”夫曰，且當曰不害
 云者，其意亦非以俗禮，爲必可行，古
 禮爲必不可行也。且朱子之言，既如
 此，而其所以自行於其身者，則乃用古

러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가례(家禮)》로 하여금 명백하게 고거(考據)하는 바가 있게 하였다면, 김장생처럼 예학(禮學)에 깊고 《가례》를 독신(篤信)한 사람이 어찌 ‘조금 의심스러움이 있다.’고 말했겠습니까? 대개 주자가 다른 사람과의 문답에 비록 획일(劃一)한 말이 있지 않으나, 그 뜻은 일찍이 고례(古禮)를 위주(爲主)로 하여 말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그가 육자정(陸子靜) 12647)에게 대답한 글에 이르기를, ‘예(禮)에 우제(虞祭) 뒤에 케연(几筵)이 있으나, 다만 졸곡 뒤에는 하실(下室)에서 다시 케식(饋食)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김장생은 이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케연(几筵)은 3년을 마치지마는, 상식(上食)은 졸곡 후에 마땅히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계선(李繼善)이 주자에게 묻기를, ‘단궁(檀弓) 12648)에, 「이미 부제(祔祭)를 행한 후에는 오로지 조석곡(朝夕哭)만 하고, 삭전(朔奠)에 절한다.」고 하였는데, 횡거(橫渠) 12649)와 속수(涑水) 12650)의 학설은 예경(禮經)과 맞지 않으니,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 이미 행하여지는 예(禮)가 후(厚)한 데에 해로울 것이 없고, 또 참람(僭濫)의 혐의가 없으면 또 마땅히 이에 따라야 한다.’ 하였습니다. 김장생은 이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이 말의 뜻을 살핀다면 조석의 케식(饋食)을 고례(古禮)에는 마땅히 그만두어야 하나, 풍속에 따르고 후한 데에 따름이 해로울 것이 없음을 이른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또 마땅히 따라야 한다.’ 하고, ‘해로울 것이 없다.’ 한 것은 그 뜻이 또한 속례(俗禮)를 반드시 행하여야 하고, 고례(古禮)는 반드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자의 말이 이미 이와 같으면서도 그 스스로 그 자신이 행한 것은 곧 고례를 쓰고 속례를 쓰지 않았습니 다. 주자가 그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여 늘 한천정사(寒泉精舍)에 거처하고, 초하루·보름에만 돌아가 케연(几筵)에 전(奠)드렸는데, 한천(寒泉)은 무덤이 있는 곳이니, 이는 대개 장사지낸 뒤에 이미 조석상식의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여묘(廬墓)의 예절을 펴 수가 있고, 초하루·보름

禮, 而不用俗禮焉。朱子遭其母憂也, 常居寒泉精舍, 而朔望, 歸奠几筵。寒泉者, 丘墓所在也。此蓋葬後, 既無朝夕上食之事, 故可得伸其廬墓之節, 而朔望則有殷奠, 故來參几筵也。世之從俗而得伸其爲厚之情者, 固亦可矣, 好古而得行其執禮之誠者, 又何失耶? 惟彼筵白者, 讎嫉世堂, 入於骨髓, 及見其停饋之事, 欲售其文致之計, 闔然團出時王之制四字, 借重而藉口焉。夫所謂時王之制, 謂《經國大典》耶? 《五禮儀》耶? 《大典》既無概論, 而《五禮儀》, 初無別立仍行上食之文, 有何據而爲言耶? 設有可據之文, 而少有違異者, 其可人人而舉罪之耶? 苟然則禮非禮也, 乃律文也。如儒家爲禮, 只從時制而可, 則古先諸儒, 一生熟讀《五禮儀》一部足矣。何爲紛紜然廣引古禮, 取舍於其間耶? 且《喪禮備要》, 金長生所著, 而《成服條》曰: “此雖時王之制, 不可悉從”云。服制, 所係尤重, 宜其一遵《五禮儀》, 有難輕改, 而間有以禮自任之士, 引古禮爲言, 而不以差違於時王之制爲嫌, 朝家亦不宜發摘呵責。況此

에는 은전(殷奠)이 있기 때문에 와서 궤연에 참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속(時俗)을 따라 그 후한 정리(情理)를 펼 수 있는 것이 진실로 또한 좋다면, 옛 것을 좋아하여 그 예(禮)를 지키는 성의를 행할 수 있는 것 또한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오로지 저 경연(經筵)에서 아뢰 자가 박세당을 원수처럼 미워함이 골수(骨髓)에 사무쳐서, 그 궤식(饋食)을 정지한 일을 보고는 그 문치(文致) 12651) 의 계교를 이루고자 하여 암연(闇然)히 ‘시왕의 제도[時王之制]’라는 네 글자를 끌어내어 막중(莫重)함을 빌어서 구실(口實)로 삼는데, 그 이른바 ‘시왕의 제도’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이르는 것입니까, 《오례의(五禮儀)》를 이르는 것입니까? 《경국대전》에는 이미 개론(概論)이 없고 《오례의》에는 처음부터 그대로 상식(上食)을 행한다는 것을 따로 제정한 글이 없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설사 근거할 만한 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어긋나거나 달리하는 자가 있다 하여 어찌 사람마다 모두 죄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실로 그렇다면 예(禮)는 예(禮)가 아니고, 바로 율문(律文)인 것입니다. 만약 유가(儒家)의 예(禮)를 행하는 것은 단지 ‘시왕의 제도’만 따라야 한다면, 옛날의 여러 유자(儒者)는 일생에 《오례의》 1부(部)만 숙독(熟讀)하면 족할 것인데, 어찌 분운(紛紜)하게 널리 고례를 끌어다 그 사이에서 취하고 버린다는 것입니까? 또 《상례비요(喪禮備要)》는 김장생이 지은 것인데, 성복조(成服條)에 이르기를, ‘이것이 비록 시왕의 제도이나, 모두 따를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복제(服制)는 관계된 바가 더욱 중하니, 마땅히 한결같이 《오례의》에 따르고, 가볍게 고치기 어려운 바가 있는데, 간혹 예(禮)로써 자임(自任)하는 선비들이 고례(古禮)를 끌어다 어 말하면서 시왕의 제도에 조금 어긋나는 것을 혐의롭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 조가(朝家)에서도 마땅히 적발(摘發)하여서 가책(呵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물며 이 철회(撤饋)는 다만 한집안의 일이며, 또 의거할 만한 국전(國典)이 없는데 억지로 시왕의 제도를 어겼다 하여 예전(禮典)의 외에 따로 금

撤饋, 只是一家之事, 又無國典之可據, 而勒謂之背時王之制, 禮典之外, 別立禁條。 嗚呼此果可以厭服群情乎? 今之請罪之意, 欲罪其遺令者乎, 則從古禮者, 果有何罪耶? 欲罪其子孫之奉行者, 則是以遵父命爲罪也。 噫一邊人所仇嫉, 職由於碑文一事, 而至於彼數臣者, 與世堂家, 宿有嫌怨, 舉世之所共知, 無怪乎前後迭出, 陽詆陰毀, 生攻死斥, 不遺餘力也。 伏願殿下, 公聽竝觀, 痛斥構誣之私, 明示好惡之公。 疏入, 命還給。 是日筵中, 上曰: “洪禹行等上疏, 爲其師世堂伸辨, 而以《思辨錄》, 謂無一毫非處, 又不以遵時王制禮, 不以爲非。 至於侵斥大臣及禮判, 不遺餘力, 極爲可駭。 洪禹行罷職。” 其後, 左議政李奮上筭略曰: 所被僂辱之言, 雖閭巷罵詈相蹴踏者, 猶不至是也。 無論是非如何, 其爲朝廷之辱, 庸有極哉? 彼其意, 專欲以此尊其師道, 角勝公議, 不可復以道理相難。 若其拖引其子舊事, 欲歸之於私嫌, 尤不滿一哂。 臣先季父, 昔年所

조(禁條)를 제정하니, 아! 이것이 과연 군정(群情)을 기꺼이 복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죄를 청하는 뜻이 그 명령을 남긴 자를 죄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고례에 따른 것이 과연 무슨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자손으로서 봉행(奉行)한 자를 죄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른 죄로 삼는 것입니다. 아! 한쪽 사람에게 원수처럼 미움받는 바가 오로지 비문(碑文) 한 가지 일에 말미암았는데, 저들 몇 신하가 이르러서는 박세당의 집과 목은 혐원(嫌怨)이 있음을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아는 바이니, 앞뒤로 번갈아 나와서 겉으로 비방하고 은밀하게 헐뜯어 산 자를 공격하고 죽은 자를 배척하여서 여력(餘力)을 남기지 않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殿下)께서는 공정하게 듣고 함께 살펴보셔서 구무(構誣)하는 사의(私意)를 엄중하게 배척하시고, 호오(好惡)의 공정함을 명백히 보이소서.”

하였는데, 소가 들어가니 돌려주라 명하였다. 이날 연중(筵中)에서 임금이 말하기를,

“홍우행 등의 상소는 그 스승 박세당을 위하여 신변(伸辨)한 것인데, 《사변록(思辨錄)》을 털끝만큼도 그릇된 곳이 없다고 하고, 또 시왕의 제례(制禮)에 따르지 않은 것을 그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신(大臣)과 예조 판서를 침척(侵斥)하여 여력을 남기지 않았으니, 매우 놀랄 만하다. 홍우행을 과직하라.”

하였다. 그 뒤에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차자(筓子)를 올려 대략 이 르기를,

“받은 욱욕(僇辱)의 말은 비록 여향(閭巷)에서 욱설하여 꾸짖으며 서로 견어 차고 짓밟는 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비(是非)가 어떠한가를 논할 것 없이 그 조정(朝廷)의 욱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의 그 뜻은 오로지 이것으로써 그 사도(師道)를 높이려고 하여 공의

遭, 何足爲嫌於今日之是非哉? 臣不得不以爲憂者, 世道淪喪, 義理晦塞, 惟私意是肆。 彼禹行輩, 亦豈不知程、朱訓說, 不可侮, 通喪筵饋, 不可廢, 而急於阿好, 失其本心, 直欲推其師於大賢以上, 以爲定論, 恣其悖說, 無復顧憚, 此固非一日之故, 而其氣勢駸駸, 殆於無朝廷矣。 洪水、猛獸之害, 不特兆見而已, 恐不可不深留聖意也。 然且實由於如臣無狀, 猥居輔弼之任, 使朝廷不尊, 世道益敗。 謂可任其私憤, 加以惡言, 其玷累名器, 莫此爲大。 尙何抗顏仍據, 以益增罪戾乎? 伏乞聖明, 亟賜斥免。

答曰: “禹行輩悖理之說, 誠不足掛齒。 須體至意, 安心勿辭。” 謹按皇朝永樂中, 饒州儒士朱友季, 詣闕獻所著書, 專毀濂洛、關閩之說, 文皇帝覽之, 怒曰: “此儒之賊也”, 卽遣行人, 押友季還饒州。 會, 司府縣官, 聲其罪杖之, 悉焚著書。 當時處分如此, 而未聞其門徒, 有敢訟冤者。 今朴世堂門徒所爲如許, 亦足以觀世變云。

(公議)와 승부를 다투니, 다시 도리(道理)로써 서로 논란(論難)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아들의 옛일을 끌어대어 사혐(私嫌)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더욱 한 번 웃을 거리도 되지 못하니, 신의 죽은 계부(季父)의 지난날 조우(遭遇)한 바가 어찌 오늘의 시비(是非)에 혐의(嫌疑)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신이 근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도(世道)가 점차 무너지고 의리(義理)가 아주 막히게 되며, 오로지 사의(私意)만 자행(恣行)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홍우행의 무리 또한 어찌 정자(程子)·주자(朱子)의 훈설(訓說)을 모멸(侮蔑)할 수 없다는 것과 통상(通喪)12652)의 연궤(筵饋)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침하는 일에 급하여 그 본심을 잃고, 곧장 그 스승을 대현(大賢) 이상으로 밀어 올리고자 하여 정론(定論)으로 삼아 그 폐악(悖惡)한 말을 멋대로 하여서 다시 돌아보아 꺼리는 것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그 기세(氣勢)가 점점 커져서 거의 조정을 업신여기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홍수(洪水)·맹수(猛獸)의 해(害)12653)가 조짐이 보일 뿐만이 아니니, 정상계서 깊이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또 실로 신과 같이 무상(無狀)한 자가 외람되게 보필(輔弼)의 임무를 차지하여, 조정을 높이지 못하고 세도를 더욱 무너지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분(私憤)에 맡겨 악언(惡言)을 더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그 명기(名器)를 더럽히고 욕되게 함이 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뻔뻔스런 얼굴로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여 죄(罪)를 더욱 보탬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 속히 물리쳐 면직(免職)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홍우행 무리의 폐리(悖理)한 말은 진실로 입에 올릴 것도 못되니,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p>하였다.</p> <p>삼가 생각하건대, 명(明)나라 영락(永樂) 12654) 무렵에 요주(饒州)의 유사(儒士) 주우계(朱友季)가 궁궐(宮闕)에 나아가 저술한 책을 올렸는데, 오로지 염락관민(濂洛關閩)의 설(說)12655) 을 헐뜯었으니, 문황제(文皇帝)가 이를 보고 노하여 말하기를, ‘이는 유자(儒者)의 적(賊)이다.’ 하고 곧 행인(行人)12656) 을 보내어 주우계를 압송(押送)하여 요주(饒州)로 돌려보냈는데, 때마침 부(府)의 일을 맡은 현관(縣官)이 그 죄를 성토(聲討)하여 곤장(棍杖)을 때리고 저서(著書)를 모두 불태웠다. 당시의 처분이 이와 같았으나 그 문도(門徒)로서 감히 억울함을 호소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지금 박세당의 문도가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또한 세변(世變)을 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p>	
<p>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9월 7일 (갑진) 1번째기사</p>	<p>수찬(修撰) 이집(李堦)이 상소하기를, “어렵פות이 들건대, 연분(年分)12665) 의 사목(事目)은 다만 전재(全災)12666) 를 주고, 분재(分災)12667) 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올해의 농사가 대체로 흉년이 들었고, 삼남(三南)이 더욱 심한데, 그 중에 조금 곡식이 익은 것은 진실로 논할 것이 없지만, 겨우 전재(全災)를 면하고 태반이 결실(結實)하지 못한 곳에 이르러서는, 특히 드문드문 조금 곡식이 익은 까닭으로써 분재(分災)를 주지 않으니, 백성이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바라건대, 해부(該部)에 명하시어 속히 묘당(廟堂)에 나아가 더욱 자세히 강의(講議)하여 삼남(三南)에 분재(分災)를 헤아려 허락하게 하시고 도신(道臣)에게 거듭 명하시어 일체(一切)를 자세히 살펴서 재량(裁量)케 하신다면, 민심(民心)이 소생하여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대각(臺閣)은 곧 조정의 이목(耳目)이 되는 직임이니, 가려 뽑을 때에 어렵게 여기고 신중하게 하기를 별달리 하여야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 인물이 비록 매우 적다 하나, 처지(處地)와 인망(人望)이 어찌 역력히 뽑을 만한 자가 없겠</p>	<p>甲辰/修撰李堦上疏曰： 側聞年分事目，只給全災，不許分災。今歲穡事，大抵失稔，而三南爲尤甚。其中稍稔者，固無可論，至於僅免全災，太半不實之處。特以間間稍稔之故，不給分災，民之稱冤固也。乞命該部，亟就廟堂，熟加講議，量許分災於三南，申命道臣，一切審察而裁量，則民心庶可蘇慰矣。臺閣，卽朝廷耳目之寄，遴簡之際，難慎自別。方今人物雖甚眇然，處地人望，豈無歷歷可取者，而如金萬胄、韓以原之庸碌微瑣，崔慶湜之名稱未著，俱是輿望之所不許者，濫入吹噓之中。臣謂宜警責</p>

습니까? 김만주(金萬胄)·한이원(韓以原)처럼 용렬하고 미천하며, 최경식(崔慶湜)처럼 명칭(名稱)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모두 여망(輿望)이 허락하지 않는 바인데, 외람되게 취허(吹噓)12668) 하는 가운데에 넣었으니, 신은 마땅히 전관(銓官)을 경책(警責)하고, 인하여 명하시어 대신(臺臣)의 의망(擬望)을 말끔히 태거(汰去)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신(臺臣)의 지위가 이와 같이 구간(苟簡)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래에 언지(言地)에 있는 자가 진실로 한 마디 말이라도 지위가 높은 신하에게 미치면 옳은지의 여부(與否)를 논하지 않고 폐고(廢錮)하여 녹용(錄用)하지 않으니, 옛날 역사에서 일컫는 한번 울고나면 문득 물리쳐 버린다[一鳴輒斥去]는 것이 불행하게도 이에 가깝습니다. 한 번 시험삼아 일을 말하면, 다시 주의(注擬)를 허락하지 않으며, 취향(趣向)을 조금 달리하면, 문득 저역(沮抑)을 가하여서 오로지 이러한 작약하고 졸렬하여 보잘것없는 무리를 뽑아서 빈자리를 채우니, 신은 저속이 분개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힘쓸 일은 다만 거리낌없이 말하는 것으로써 물리쳐서 버리지 말고, 그 형평(衡平)에 힘써 임용한다면, 진실로 대신(臺臣)의 지위가 구간(苟簡)한 것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참하(參下)인 우관(郵官)을 변통하여 6품직으로 만든 뒤 거의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연한(年限)에 구애받아 자목(字牧)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차견(差遣)하는데, 심지어 근력(筋力)이 이미 쇠약하여 말을 타지 못하기도 하니, 그 우무(郵務)를 방폐(妨廢)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선부(選部)에 명하여 우관을 조용(調用)할 적에는 반드시 연한의 규정에 따라서 그 폐단을 바로잡게 하소서.

춘당대(春塘臺)에 친림(親臨)하여 시사(試士)하시는 것은 진실로 성대한 일인데, 주문(主文)12669) 의 신하가 만약 먼 외방에 있다면 그만이지만, 그 때에 시골에서 부름을 받아 서울에서 1일 노정(路程)에 이르러 시험 기일이 이미 박두하였으나,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살핀다면 비록

銓官，仍命清汰臺擬焉。 今日臺地之若是苟簡者，誠有由然矣。 近來處言地者，苟有一言逼及貴臣，則不問可否，錮廢不錄，史稱一鳴，輒斥去者，不幸近之。 一試言事，不許更擬，趣向稍別，便加沮抑，惟取此等疲劣無似之類，承乏補缺，臣竊慨然。 今日之務，但勿以敢言而擯棄，懋其衡平而任用，則固不患臺地之苟簡矣。 參下郵官，變通爲六品窠之後，率多以老廢拘限，不堪字牧之人差遣，甚至筋力已衰，不能跨馬，其妨廢郵務，莫此爲甚。 乞命選部，調用郵官，必循年限之規，以矯其弊。 春塘臺親臨試士，實是盛舉，主文之臣，若在遐外則已，廼者自鄉承召，及到京城一日之程，試期已迫，遲回不前。 原其意則雖出遜讓，觀其迹則似涉避事。 終至主試之任，臨急變通，事體所在，殊涉未安。 宜示警責，以礪朝紳焉。

上答以銓曹取舍，一循公議，則敢言擯棄之說，已未可曉，清汰之請，亦涉太過。 主文之臣，不卽前進，非出於避事也。 他餘事，令該曹稟處。

	<p>겸손하여 사양하는 데서 나왔다 하나, 그 행적(行迹)을 살펴본다면 일을 피하는 데에 관계된 듯합니다. 마침내 시험을 주관하는 임무를 급한 때에 임하여 변통하기에 이르렀으니, 사체(事體)의 있는 바가 매우 미안(未安)한 데에 관계됩니다. 마땅히 경책하는 뜻을 보여서 조정의 신하를 면려(勉勵)하여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답하기를,</p> <p>“전조(銓曹)에서 취사(取舍)를 한결같이 공의(公議)에 따르고 있으니,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을 배척해 버린다는 말은 이미 이해할 수 없고, 말끔히 태거(汰去)하기를 요청한 것도 너무 지나친 데 관계되며, 주문(主文)의 신하가 곧 앞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일을 피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른 나머지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p> <p>하였다.</p>	
<p>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9월 12 일(기유) 2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이정겸(李廷謙)이 아뢰기를,</p> <p>“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부인이 만년(晩年)에 곤궁하게 살았는데, 특별히 조가(朝家)의 월름(月廩)12695) 의 은전(恩典)을 입어 보존하게 되었 습니다. 이미 죽은 뒤에도 가난하여 장례(葬禮)를 치를 수가 없는데, 그 아들 박태회(朴泰晦)는 죄범(罪犯)이 매우 지극하여 귀장(歸葬)을 허락하지 않음은 법에 있어 당연하나, 성상(聖上)께서 예우(禮遇)하시던 유상(儒相)을 추념(追念)하시어 이제 부인의 상(喪)에 대하여 특별히 진휼(軫恤)을 베푸심이 마땅 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해조(該曹)에 명하여 장수(葬需)를 제급(題給)하게 하였다.</p>	<p>御晝講。參贊官李廷謙奏曰：“文純公朴世采夫人，晩年窮居，特蒙朝家月廩之典，得以保存矣。既死之後，貧無以襄葬。其子泰晦則罪犯窮極，不許歸葬，在法當然，而自上追念禮遇之儒相，今於夫人之喪，特加軫恤，則似乎得宜。”上是其言，命該曹，題給葬需。</p>
<p>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9월 21 일(무오) 1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사(知經筵事)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p> <p>“올해의 연사(年事)는 제도(諸道)가 모두 흉년을 면치 못하였으나, 유독 관서(關西)가 조금 낫기 때문에 일찍이 이미 계달(啓達)하여 차인(差人)을 위임해 보내고, 이제 바야흐로 곡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양남(兩南)12723) 의 도신</p>	<p>戊午/御晝講。知事閔鎭厚奏曰：“今年年事，諸道皆未免凶歉，獨關西稍勝，故曾已啓達，委送差人，今方貿穀，兩南道臣，連續告急。請令賑廳，預</p>

	<p>(道臣)이 연이어 급박함을 고하니, 청컨대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미리 구활(救活)하는 방도(方道)를 생각해 하소서. 그러나 진휼청의 미곡(米穀)이 넉넉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운송(運送)하는 것 또한 그 계획이 없으니 형세(形勢)가 매우 민망합니다.</p> <p>양남(兩南)이 비록 흉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조금 충실한 곳이 있으니, 이제 만약 조금 충실한 곳에서 곡식을 사들여 더욱 〈흉년이〉 심한 곳으로 옮겨 진휼(賑恤)한다면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 관서(關西)의 관례(慣例)에 의하여 제색(諸色)의 군병(軍兵)과 노비(奴婢)의 신포(身布)를 민원(民願)에 따라 쌀로 대신 바치게 한다면 현재의 쌀값을 조치하여 갖추어 두었다가, 각 해당 관사에 충당(充當)하여 보내 줄 수 있을 것이니, 청컨대 이 뜻으로 각사(各司) 및 제도(諸道)에 분부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민진후가 바야흐로 진휼청을 관장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구획(區劃)하니, 백성이 매우 이에 힘입었다.</p>	<p>思救活之道，而賑廳米穀不敷，自京運送，亦無其計，勢極可悶。兩南雖曰凶歉，其中亦有稍實處。今若買穀於稍實處，推移賑恤於尤甚處，則似爲便好。依關西例，諸色軍兵及奴婢身布，從民願以米代捧，則卽今米價，可以措備，充送於各該司。請以此意，分付各司及諸道。”上從之。鎮厚方管賑廳，盡心區畫，民頗賴之。</p>
<p>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10월 14 일(신사) 5번째기사</p>	<p>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진규(金鎭圭)가 황단(皇壇)의 높이, 너비와 제사를 지내는 의식(儀式)을 임금 앞에서 품정(稟定)하였다. 명하여 너비는 우리나라의 사직단(社稷壇)에 의하여 사방 25척으로 하고, 높이는 중국의 사직단에 따라 5척으로 하고, 단폐(壇陛)는 땅에서 단면(壇面)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아홉 계단으로 하고, 등가(登歌)·헌가(軒架)는 한결같이 사직단(社稷壇)의 제도를 본받고, 제물(祭物)의 품식(品式)은 명조(明朝)의 의식(儀式)을 준용(遵用)하고, 제기(祭器)는 《집례(集禮)》의 도식(圖式)에 의거하고, 신좌(神座)인 황장방(黃帳房)12770)은 《회전(會典)》의 도설(圖說)에 의거하고, 팔일무(八佾舞)12771) 등의 기구는 남교(南郊)·북교(北郊)에서 쓰던 것을 추이(推移)하여 쓰고, 제사를 지내는 의문(儀文)은 《집례(集禮)》의 친왕(親王)이 인종(仁宗)을 향사(享祀)하는 예(禮)로써 참작하여 마련하게 하였다.</p>	<p>禮曹參判金鎭圭以皇壇高廣，行祭儀式，稟定於上前。命廣依我國社稷壇，方二十五尺，高從中朝社稷壇爲五尺，壇陛自地至壇面，通爲九級，登歌、軒架，一倣社壇之制，祭物品式，遵用皇朝之儀，祭器依《集禮》圖式，神座黃帳房，依《會典》圖說，八佾等器，則以南、北郊所用，推移用之，行祭儀文，則以《集禮》親王享仁(祖)〔宗〕之禮，參酌磨鍊。</p>
<p>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p>	<p>임금이 해소(咳嗽)의 징후가 있어서 약방(藥房)에서 문안하니 하교하기를, “나의 화증(火症)이 뿌리 내린 지 이미 오래고 나이도 쇠해가 날로 더욱 깊은</p>	<p>上有咳嗽之候，藥房間安，下教曰：“予之火症根柢已久，而年歲向衰，日</p>

<p>(康熙) 43년) 12월 11 일(정축) 2번째기사</p>	<p>고질이 되어간다. 무릇 사람의 일시적 질환은 고치기 쉽지만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화증이다. 그러나 장년 때에는 그 피로함을 모르겠더니 수년 이래로 병세(病勢)가 더해가고 차도는 없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심하여, 오랜 시간동안 수응(酬應)하면 화열이 위로 올라 비록 한겨울이라도 손에서 부채를 놓을 수가 없다. 피부는 꺼질하고 정신이 날로 혼모(昏耗)해지며 심지어는 가슴이 답답하여 트이지 않는다. 또 이번 겨울부터는 화기가 오르면 코가 타고 목이 건조하여 기침이 문득 나오니, 그 조짐이 좋지 못하다. 무릇 화증을 고치는 방법은 조식(調息)하는 것이 최상이고 탕약이나 환약은 그 다음인데, 매일 일에 시달려 조섭(調攝)할 겨를이 없고 단지 목은 뿌리와 썩은 풀로써 그 효과를 바라니, 이 어찌 작수(勺水)로써 수레에 실린 장작불을 끄려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실로 두려운 근심이 있다.”</p> <p>하였다. 약방 제조(藥房提調) 민진후(閔鎭厚) 등이 아뢰기를, “지금 본원(本院) 계사(啓辭)의 비답을 보건대, 십행(十行)의 운음(綸音)이 반복해 정녕하여 병을 얻는 근원과 화증을 치료하는 처방을 갖추어 논열(論列)하셨으니, 신들이 받들어 읽고는 놀라고 황공하여 더욱 근심과 초조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국가의 만기(萬機)에 수응(酬應)하신 것이 여러 해가 되어 노심초사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해소의 증후가 계시고, 본래 일시적으로 우연히 상하신 데 비할 바가 아니니, ‘조식(調息)이 가장 으뜸이요, 탕제(湯劑)와 환제(丸劑)는 다음이라’는 하교가 참으로 지당합니다. 엿드려 생각하건대, 조양(調養)의 방도는 심화(心火)를 식히고 사려(思慮)를 더는 것만 같음이 없습니다. 전후의 여러 신하들이 누차 이를 진달하였고 전하께서도 역시 자애(自愛)하지 않음이 아니나 우리 나라는 부서(簿書)가 호번(浩繁)하여 매양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겨를이 없으니, 이것이 실로 오늘날의 절실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옛사람들이 정신(精神)을 보호하고 아끼는 교훈을 본받아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조용히 관성(觀省)하시어 평탄한</p>	<p>益深痼。凡人一時之疾恙易治，而最難治者，火症也。然而盛壯之時，不知其勞矣，數年以來，有加無錫，今日甚於昨日，今年甚於昨年，酬應頗久，火熱上升，雖當隆冬，手不釋扇。肌膚暗鑠，精神日耗，甚至於匈膈，亦不寬豁，又自今冬，火升則鼻焦喉乾，咳嗽輒發，其漸不佳。凡治火之道，調息爲上，湯丸次之，而日事勞攘，將理無暇，只以陳根腐草，欲冀其收效，是何異於以勺水救車薪之火哉？實有凜凜之憂也。”藥房提調閔鎭厚等啓曰：“即伏見本院啓辭之批，十行綸音，反復丁寧，備論受病之源，治火之方，臣等奉讀驚惶，益不勝憂煎之至。聖上酬應萬機，積歲勞焦，惟此咳嗽之候，固非一時偶傷之比。調息爲上，湯丸次之之教，誠爲至當，而第伏念調養之方，莫過於清火省慮。前後諸臣，屢以此仰陳，殿下亦非不自愛，而我國簿書浩繁，每致宵旰不暇，此實今日切悶處。伏願殿下，益加體念於古人保惜精神之訓，凡於事至之時，從容觀省，平心裁處，毋徒以事務之積滯爲慮，亦令廟堂，更取入啓文書中，不緊者務從</p>
---	--	---

마음으로 재처(裁處)하시고, 부질없이 사무(事務)의 적체(積滯)됨을 걱정하지 마시며, 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입계(入啓)한 문서 가운데에서 긴급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는 데 힘써 예람(睿覽)을 간편하게 하심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의 대답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옛날부터 나라를 가진 자는 근면하면 흥왕하고 안일(安逸)하면 멸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상(商)나라 중종(中宗)은 감히 게으르게 편안함을 누리지 않았고 주(周)나라 문왕(文王)은 밥을 먹을 겨를도 없었으니, 이는 정사(政事)에 부지런한 실상으로서 영원한 국운(國運)을 누린 것은 반드시 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걱정하고 부지런함으로써 질병이 되었다는 말은 전일에 듣지 못하였으니, 무일(無逸)12859) 한 편을 본다면 어찌 경계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가?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 국가의 대권(大權)을 총람(摠攬)하여 청단(聽斷)하는 데 게으름이 없었고, 몸소 만기(萬機)를 보살피느라 침식을 잇기에 이르렀으니, 우근(憂勤)의 덕과 나라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정성이 지극하다 이를 만하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임어(臨御)한 지 여러 해에 점차 처음같지 않아 기무에 염증이 나서 괴로와하는 뜻이 자주 밖으로 나타났다. 지금 약원의 비답에 심지어는 ‘날마다 정무(政務)에 시달려 조섭(調攝)할 겨를도 없다.’고 하교(下敎)하면서 수고로움이 질병을 이루었는가 지나치게 의심하고 적의(適宜)한 조섭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자리에서 물러나 한가한 데로 나아가갈 뜻이 드러나 있으니, 안일(安逸)한 마음의 조짐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아! 연령(年齡)이 바야흐로 장년기(壯年期)에 접어들어 주 문왕(周文王)이 수명(受命)한 해에 해당하니, 바로 정신을 가다듬어 나라를 다스림이 날마다 새로와야 할 것이지 어찌 일시의 질병으로써 갑자기 싫어하고 게으른 뜻의 하교(下敎)가 있을 수 있겠는가?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안일(安逸)을 즐기는 생각을 일찍이 잊지 않아 마음에서 발단(發端)되었으니, 정사에

省約，以便睿覽，恐爲得宜。”上以知道答之。

【史臣曰：“自古有國家者，未有不以勤而興，以逸而廢也。商宗之不敢荒寧，周文之不遑暇食，乃其勤政之實，而享國永年，必由斯道。憂勤致疾，未或前聞，觀於《無逸》一篇，曷不知所戒哉？上卽阼以來，摠攬權綱，聽斷無倦，躬親萬機，至忘寢食，憂勤之德，願治之誠，可謂至矣，而奈何臨御多年，漸不如初，厭苦機務之意，屢形於外？今於藥院之批，至以日事勞攘，將理無暇爲教。過疑憂勞之成疾，不思節宣之合宜，顯有釋位就閑之意，逸豫之心，不特兆見而已。噫！聖算方當中身，卽文王受命之歲，正宜勵精圖理，日新一日。何可以一時疾疢，遽有厭倦之教哉？厭煩樂逸之念，固未嘗忘也，發於心害於政，庸有既乎？】

<p>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12월 20 일(병술) 1번째기사</p>	<p>해로움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이에 앞서 단제(壇祭)의 날짜를 대신들의 의논으로 인하여 매년 정월 상순으로 정했는데, 여러 의견이 초봄에는 기후가 쌀쌀하여 임금이 친히 나와 제사 드리기가 어렵고, 매양 섭행(攝行)하는 일이 많으면 사체(事體)에 미안하다고 하였다.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입시켰을 때 품의(稟議)하기를, “신은 일찍이 동쪽으로 순수(巡狩)하는(12873) 뜻을 빌어 3월에 거행하기를 청했으나 여러 의논이 너무 멀다고 하였으니, 지금 다시 제기(提起)하고자 하지 않습니다만, 돌아보건대 이 제단의 설치(設置)는 처음에 마침 명(明)나라가 멸망한 지 회갑(回甲)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하의 감모(感慕)하는 정성을 붙인 것이니, 후일에는 비록 성이 함락(陷落)된 날을 반드시 쓰지 않더라도 이번 봄만은 3월 상순(上旬)에 이르러 택일(擇日)하여 거행한다면 아마도 명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여러 대신에게 순의(詢議)하라 명하였다. 이여(李畬)가 대답하기를, “1년에 한번 거행하는 제사는 시절에 따라 항상 지내는 제사와는 같지 않으니, 진실로 가릴 만한 날이 있다며 굳이 맹월(孟月)과 중월(仲月)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단의 제사는 실로 고금에 없었던 예(禮)이며 정월은 한해의 으뜸이니, 원월(元月)로써 대사(大祀)를 거행함이 그 예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 합당할 것입니다. 예관들은 전하께서 친히 제사를 거행하기 어려움과 앞으로 자주 섭행(攝行)할 것을 염려하여 3월로 정하려 하는데, 이 역시 사세(事勢)로써 말한 것이요 제례(祭禮)를 주(主)로 삼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건대, 3월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문득 기일(忌日)과 같은 뜻이 있으니, 인정에는 비록 가까운 듯하나 고례(古禮)에는 의거할 곳이 없으며, 금년 봄에 <단제를> 를 거행하는 것은 뜻이 같지 않으니, 이 달을 그대로 쓰는 것은 예(禮)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월에 동쪽으로 순수(巡狩)한 것은 3대</p>	<p>丙戌/先是, 壇祭日期, 因大臣議定以每年正月上旬。 諸議多以爲春初, 日候必凜冽, 難於親祀, 每多攝行, 則事體爲未安。 禮曹判書閔鎭厚因入侍稟曰: “臣曾借東巡狩之義, 請行於二月, 諸議謂迂遠。 今不欲更提, 而顧此設壇, 初由於適值大明淪喪之回甲, 以寓聖上感慕之至誠, 後雖不必用, 城陷之日, 如今春之爲, 至於三月上旬, 卜日而行之, 恐不爲無名。” 上遂命詢議諸大臣。 李畬對曰: “一年一行之祭, 與時節常祀不同, 苟有可取之日, 則不當拘於孟、仲朔。 今此壇祀, 實爲古今曠絕之禮。 正月爲一歲之元, 以元月行大祀, 庶合於重其禮之義, 而禮官爲慮上躬親行之難, 前頭攝行之頻, 欲定於三月, 此亦以事勢言也, 非主於禮意也。 但念三月行祀, 便同忌辰之義, 在人情雖若褻近, 於古禮未有經據。 今春所行, 則意有不同, 仍用此月, 未見合禮。 二月東巡狩, 三代以降雖設行, 上古之世, 若時巡岳, 厥有意義。 春月既殷, 東方之氣方行, 聖帝之巡東服觀東后, 必以此月, 則東后之有事於</p>
---	---	---

(代)12874) 이후에도 거행하였으나, 상고(上告)의 세대(世代)에 이때 동악(東岳)12875) 을 순수(巡狩)한 것은 그 뜻이 있었습니다. 봄철은 이미 깊어 동방의 기운이 바야흐로 운행(運行)되어서 황제가 동쪽 나라를 순수하여 동방 제후(諸侯)와 만나보는 것을 반드시 이 달로써 하였으니, 동쪽 제후가 황령(皇靈)에 대한 일에 있어서도 이 달로 취택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므로 제향(祭享)을 올리는 도리는 시기를 소중히 여기는데, 봄은 네 계절의 으뜸이 되고 2월은 봄의 중간이니, 이로써 말한다면 의당 처음에 정한 바대로 2월에 단제를 거행함이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오나, 오직 전하께서 여러 의논을 참고하여 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신은 예관이 정한 바 울창(鬱鬯)12876) 을 쓰지 않는 절차(節次)에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예서(禮書)에 이르기를, ‘제사에는 반드시 관(裸)12877) 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생육(生肉)과 익은 고기를 올리는데, 제사는 관(裸)을 소중함으로 삼으니 관(裸)이란 신(神)을 강림(降臨)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제사에 관계된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관(裸)이다. 대개 천제(天祭)는 양(陽)을 구하는 것이니 쉼나무를 태우는 것이 이것ियो, 지제(地祭)는 음(陰)을 구하는 것이니 털과 피[毛血]를 땅에 묻는 것이 이것ियो, 인신(人神)에게 드리는 제사[祀人]는 음양(陰陽)을 구하는 것이니 강신은 먼저 음(陰)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황조(皇朝)의 제례에 강신과 아울러 익은 음식을 올리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모두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근거(根據)가 있을 것이나, 지금 이미 우리 나라의 제례를 참작해 쓰면서 강신은 취하지 않고 단지 익은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써 소중함을 삼으니, 제례의 뜻에 비추어 어찌 큰 흠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단(壇)과 묘(廟)가 같지 않다 하더라도 단(壇)은 실로 묘(廟)의 뜻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묘(太廟)에 황제(皇帝)가 관례(裸禮)를 친행(親行)하는 것은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실려 있는데 다만 의주(儀註)가 상세하지 않을 뿐입니다. 원방구(圓方丘)12878) 의 제사에

皇靈，取於此月，庶幾近之，故行祭之道，以時氣爲重，而春爲四時之首，二月爲春之中，以此言之，依當初所定，行於二月，亦未爲全無所據，惟在聖上參群議而行之。且臣於禮官所定，不用鬱鬯之節，不能無所疑。禮曰：‘祭必先裸，乃後薦腥薦熟，祭以裸爲重，裸，所以降神。’又曰：‘祭之屬，莫重於裸。蓋祀天求之陽，燔柴是也，祀地求之陰，瘞毛血是也。祀人求之陰陽，裸所以先求諸陰也。’若曰，皇朝之禮，并裸薦熟而不著，則依此并已之，猶爲有據。今既參用我朝之禮，而不取裸，但以薦熟爲重，揆以禮意，豈不大段欠闕耶？藉曰，壇與廟不同，此壇實有廟意，而皇朝太廟，皇帝親行裸禮，著於《大明集禮》特儀註有不詳耳。至於圓方丘之無裸禮，非可援用於此壇，此爲祭禮所重，非他儀節之比。更令禮官，詳講而審定之，恐不可已也。”李濡對：“以今日此舉，追思再造罔極之恩，以寓欲報之誠，二字揭號，其意可見。試以當時事言之，天朝將士之奉帝命，克復京都，卽癸巳四月，則惟我東方宗社之復得血食，一

관례(裸禮)가 없는 데 이르러서는 이 제단에 원용(援用)할 일이 아니라, 이는 제례의 소중함이 다른 의례 절차와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강구(講究)하여 확정(確定)함을 그만두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이유(李濡)는 대답하기를,

“오늘의 이 거사는 우리 나라를 회복(恢復)시켜 준 망극한 은혜를 추사(追思)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정성을 붙인 것이니, <대보(大報)> 두 글자의 게호(揭號)에서 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삼아 당시의 일로써 말하건대 천조(天朝)의 장사(將士)가 황제의 명을 받들고 서울을 수복(收復)한 것이 곧 계사년(12879) 4월이었는데, 우리 동방의 종묘 사직이 다시 제사를 흠향하게 되었으므로 온 나라 군신(君臣)이 성덕(盛德)에 감축(感祝)하여 세상이 끝나도록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에 있으니, 지금 4월에 이 제단의 제사를 거행한다면 그 의의를 취하는 것이 절실(切實)하고 명백하여 아마도 3월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하였다. 또 예관(禮官)이 강신하는 예의 가부(可否)를 다시 물으므로 인하여 대답하기를,

“단제(壇祭)와 묘제(廟祭)는 같지 않아 한갓 황조(皇朝)의 방구(方丘)의 의식(儀式)에 강신하는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사직(社稷) 이하 여러 단(壇)도 또한 그러합니다. 만약 쉼나무를 태우고 털과 피를 <땅에> 묻는 것이 하늘과 땅에 제사지내어 신을 구하는 도(道)라면, 선농단(先農壇)은 곧 인신(人神)을 제사드리는 곳으로 9변(變)의 악(樂)을 씀이 종묘(宗廟)와 다를 것이 없는데, 울창(鬱鬯)을 베풀지 않고 다만 모혈반(毛血盤)만 있으니, 이로 본다면 모혈은 홀로 사지(祀地)에만 쓰는 것이 아니며, 단과 종묘의 제례는 각각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제단(祭壇)은 비록 묘의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만약 장전(帳殿)만 설치(設置)하고 행사를 치를 뿐이라면 순수한

國君臣，感祝盛德，沒世不忘者，正在於此。今以四月行此壇之祭，其取義之襯切著明，恐有勝於三月。”又因禮官之更問裸禮當否，對曰：“壇與廟不同，非但皇朝方丘之儀無裸，我朝社稷以下諸壇，亦然。若曰燔柴瘞毛血，是祀天地求神之道，則先農壇，乃所以祀人神，樂用九變，與宗廟無異，而不設鬱鬯，只有毛血盤。以此觀之，毛血不特爲祀地之用，而壇與廟之禮，各有其義。此壇雖云有廟意，初若定以設帳殿行事而已，則純用廟禮，亦無不可，而既已歸重壇制於此，而參酌折衷，務合常變，豈不難哉？純用廟禮，則鬱鬯一節，自在其中，更無疑難之端，如其不然，則依先農壇毛血之禮而行之，恐亦無損於求神之道歟！”他大臣，或以禮官言爲是，或稱病不對。上命更問于在外大臣，崔錫鼎對：“以今此壇祀之禮，厥有意義，既與常文典禮，其體自別，則行祭時日，不必拘於孟朔。禮官之說，不無所見，改卜他月，恐或得宜。至於裸禮一款，祭之屬，莫重於裸，是禮經所載，而今既參用我朝之禮，則不行裸鬯一節，只以薦

중묘의 예를 쓰더라도 또한 불가함이 없을 것인데, 이미 단(壇)의 제도(制度)를 이보다 중하게 여겨 참작(參酌)하고 절충하여 상례(常禮)와 변례(變禮)에 맞추기를 힘쓰니,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순전히 묘례(廟禮)를 쓴다면 ‘울창주(鬱鬯酒)’의 한 절차가 스스로 그 가운데에 있으니, 다시 의심스럽고 어려운 단서(端緒)가 없을 것이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선농단(先農壇)의 모혈(毛血)을 묻는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여도 아마도 구신(求神)의 도(道)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다른 대신들이 혹은 예관의 말을 옳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병을 핑계하여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명하여 다시 밖에 있는 대신에게 묻도록 하니, 최석정(崔錫鼎)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 단에 제사하는 예(禮)가 그 의의가 있어서 이미 정해진 문자(文字)의 전례(典禮)와는 그 체제가 구별된다면, 이제 행제(行祭)하는 시일을 정월달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예관(禮官)의 말이 참작할 바가 없지 않으니, 다른 달로 고쳐서 택정(擇定)함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관례(裸禮)의 한 조목에 이르러서는 ‘제례의 절차에 있어서 강신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 예경(禮經)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우리 조정의 제례를 참작하여 쓰면서 울창주(鬱鬯酒)로 강신하는 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단지 천숙(薦熟)12880)으로써 소중함을 삼는 것은 결함이 될 듯하니, 강구(講究)하여 거행함이 경건한 정성을 다하는 뜻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묘(廟)로 하지 않고 단(壇)으로 한 것은 두루 생각한 데서 나왔으니, 비록 단제(壇祭)의 제도를 썼다 하더라도 실은 묘(廟)를 세운 것과 같아서 술로 강신하는 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단제의 날짜는 예관의 설(說)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熟爲重，似爲欠闕，講而行之，實合於自盡其敬之義。” 上下教曰：“不廟而壇，出於周思，則雖用壇制，實同立廟，裸鬯一節，不可不行。壇祭日期，從禮官之說可也。”

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12월 21
일(정해) 1번째기사

약방 제조(藥房提調) 민진후(閔鎭厚)가 의관(醫官)을 데리고 들어와 진찰하였는데, 좌의정 이여(李畚), 우의정 이유(李濡) 역시 입시하였다. 이여가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구년조(舊年條)의 환곡(還穀)과 신포(身布)의 징수를 정지(停止)하기를 청한 것으로 인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의해서 처리하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피폐한 백성의 불쌍한 것을 묘당 역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외방의 저축(貯蓄)이 모두 포핍(逋欠)12881)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점차 이를 수습하지 않으면 오래 갈수록 어려운 처지가 되는 까닭에 처음에 이미 참작하여 차등을 두어 영(令)을 반포하였고 또 대신 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지금은 선달이 장차 다하여 창고를 봉(封)할 날이 멀지 않으니, 비록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시켜도 실효가 없을 것이고 단지 조정의 명령이 자주 바뀌는 흠만 있게 되고 맙니다. 신포(身布)도 역시 차등을 두어 받아들이게 했는데, 반드시 이미 받아들인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니, 만약 또 먼저의 명령을 변경한다면 이미 받아들인 것이 중간에서 소모(消耗)되기가 쉽고, 뒤에 다시 침징(侵徵)하기를 그치지않아 백성이 도리어 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령(朝令)을 가벼이 고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고, 이유(李濡)와 민진후(閔鎭厚)의 말도 또한 그러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여가 말하기를,
 “국가에서 방면(方面)의 직임(職任)을 맡기고 위엄과 권한(權限)을 주어 한 도(道)를 규찰(糾察)하고 먼 지방을 진압(鎭壓)하게 하는 것이 그 뜻이 어찌 우연하겠습니까? 신이 전 감사(監司) 이제(李濟)의 소를 보니, ‘이상익(李相翼)이 노비(奴婢)의 쟁송(爭訟)으로 인하여 그 외가(外家) 선조(先祖)의 악행(惡行)을 드러냈으므로 이로 인해 추문(推問)하여 다스렸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실로 풍화(風化)에 관계된 일입니다. 감사가 풍헌(風憲)12882)의 직책을 맡아 마땅히 징계하고 치죄(治罪)하다가 비록 불행히 죽었더라도 이것

丁亥/藥房提調閔鎭厚率醫官入診，左議政李畚、右議政李濡，亦爲入侍。畚曰：“因臺臣請停，舊年條羅穀身布之徵捧，有令廟堂稟處之命。疲氓之可矜，廟堂亦非不念，而外方倉儲，皆歸積逋，若不漸次收拾，久益難處，故初既參酌差等頒令，又許代捧。今則臘月將盡，封倉不遠，雖令停捧，未有實效，但爲朝令數變之歸。身布亦令差等收捧，必不無已捧之處。若又變改前令，則其所已捧者，易致花消於中間，而後復侵徵不已，民反受弊。故朝令不宜輕改。”濡、鎭厚之言，亦然，上從之。畚曰：“國家置方面之任，畀以威權，使之糾察一路，鎭服遐遠，其意豈偶然哉？臣見前監司李濟疏則以爲：‘李相翼因奴婢爭訟，暴揚其外先惡行，因此推治’云。果爾則實關風化。監司任風憲之職，固當懲治，雖不幸致死，此是邂逅。以此至於坐罷，不亦過乎？朝家不信濟疏，反以相翼子稱冤之言，罪罷，烏在委寄之意乎？”閔鎭厚曰：“臣近聞李濟挾私之說，元無所據。遽因其子之擊錚，至罷監司，臣竊以爲太過矣。臣又聞相

	<p>은 우연히 생긴 일인데 이로써 파직에 이르렀으니, 또한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이제의 상소를 불신하고 도리어 이상익 아들의 억울하다는 말로써 파직했으니, 위임(委任)시킨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p> <p>하였고,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p> <p>“신이 요사이 들으니, 이제(李濟)가 사(私)를 두었다는 설(說)은 원래 근거할 바가 없는데, 갑자기 이상익 아들의 격쟁(擊錚)으로 인하여 감사를 파직하는데까지 이르렀으니, 신은 저으기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또 듣건대 이상익의 아들 이인재(李仁裁)가 사정을 호소(呼訴)한 가운데에 복수(復讐)를 하지 못하면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합니다. 감사가 형문(刑問)하다가 살인하였는데, 죽은 자의 아들이 문득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국가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인재(李仁裁) 형제가 반드시 복수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서울과 지방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p> <p>박태원(朴泰遠)이 산(山)을 차지한 데에 대한 옳고 그름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나, 설령 민희갑(閔喜甲)의 아버지가 협박을 받아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박태원(朴泰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정에서 가두고 벌을 주는 것 또한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데, 민희갑이 도끼를 들고 금부(禁府)의 문밖에서 박태원을 맞아 치려고 하여 박태원이 간신히 피해 화를 면했다고 하니, 만약 국가에 조금이라도 기강이 있게 했다면 백성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어찌 이에 이르겠습니까?”</p> <p>하였다. 이여가 다시 먼저 아된 말을 신명(申明)하니, 임금이 드디어 ‘사(私)를 두었다.’라는 한 조목을 조사하여 조치하라고 명하였다.</p>	<p>翼子仁裁原情中，有不復不葬之語。監司刑推殺人，而死者之子，輒欲復讎，則其何以爲國乎？仁裁兄弟，必欲復讎之說，大播京外。如朴泰遠占山曲直，未知何如，而設令閔喜甲之父，被脅自殺，此豈在京泰遠之所知耶？朝家囚禁施罰，亦不可謂輕歇，而喜甲持斧子，迎擊於禁府門外，泰遠僅得避免云。如使國家，少有紀綱，民之不畏法，何至於是耶？” 奮更申前說，上遂命覈挾私一款以處之。</p>
<p>숙종 40권, 30년 (1704 갑신 / 청 강희 (康熙) 43년) 12월 28일(갑오) 3번째기사</p>	<p>이정청(釐整廳)에서 오군문(五軍門)12913) 의 군제(軍制)를 고치고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節目)을 올렸다. 처음에 임금이 양민의 신역(身役)으로 가장 괴로운 백골 징포(白骨徵布)12914) 가 지금의 고폐(痼弊)가 된다고 하여 이를 변통하려고 생각하였다. 이에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여 이유(李濡)</p>	<p>釐整廳進五軍門改軍制及水軍變通節目。初，上以良民身役最苦，白骨徵布，爲當今痼弊，思有以變通之命，設廳釐整，而命李濡，主其事，以閔鎭</p>

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민진후(閔鎭厚)·이인엽(李寅燁)·유득일(兪得一)·유집일(兪集一) 등을 당상(堂上)으로 삼았으며, 낭속(郎屬)들을 차출하여 함께 힘을 합쳐 강구(講究)토록 하였는데, 두 해를 넘겨 비로소 오군문(五軍門)의 군제(軍制)를 고치고 또 양남(兩南)의 수군(水軍)을 변동하는 절목을 올리게 되었다.

총융청(摠戎廳)은 옛 군제(軍制)에 좌영(左營)은 수원(水原), 중영(中營)은 남양(南陽), 우영(右營)은 장단(長湍)으로 이에 속한 군병(軍兵)과 장초(壯抄)12915 등 제색군(諸色軍)12916 이 통틀어 2만 1천 3백 39인이었는데, 고친 군제는 중영이 3부(部)이고, 좌우영(左右營)이 각 2부(部)로, 매부는 각 2사(司)요, 매사는 각 5초(哨)이고, 매초는 각 1백 25인인데, 제색군(諸色軍)을 그냥 두거나 이동시키며 혹은 가감하여 다시 대오(隊伍)를 만들어 1만 5천 1백 81인을 정리해서 일군(一軍)의 제도를 편성(編成)하였고, 또 그 나머지 제군(諸軍)과 옮겨서 새로 보탠 자를 아울러 군수보(軍需保)라 칭하며, 양인(良人)은 쌀 12두(斗)를 거두고 노군(奴軍)은 6두(斗)를 거두어 군수(軍需)를 보충(補充)했는데 통틀어 2만 3천 1백 57인으로서 구제에 비하여 그 수가 증가되었다.

수어청(守禦廳)은 옛 군제에 전영(前營)이 광주(廣州), 좌영이 양주(楊州), 우영이 원주(原州), 후영(後營)이 죽산(竹山)이고 좌우부(左右部)와 중부(中部)에 소속한 제색군까지 포함 3만 9천 5백 89인이며,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치첩(雉堞)12917 에는 2천 2백 68으로 대첩(大堞)의 수첩군(守堞軍)은 8인, 중첩의 수첩군은 6인, 소첩은 4인이었는데, 고친 군제는 매첩에 2인씩 체감(遞減)하였다. 우영 원주는 도리(道里)가 자못 멀어서 급할 때에 쓰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혁파하고, 좌영 양주를 고쳐서 중영을 만들었으나 광주의 군병이 너무 많아 중영과 후영에 분속(分屬)시켜 삼영(三營)을 균일한 제도로 했으며, 좌부군(左部軍) 3분의 1과 중부군 3분의 2를 대장(大將)의 친병(親兵)에 이속

厚、李寅燁、兪得一、兪集一等，爲其堂上，差出郎屬，同加講究，再闕歲，始上五軍門改軍制及兩南水軍變通節目。摠戎廳則舊軍制，左營水原，中營南陽，右營長湍軍及壯抄等諸色軍，通共二萬一千三百三十九人，而改軍制，定以中營三部，左右營各二部，每部各二司，每司各五哨，每哨各一百二十五人，而以諸色軍，存移加減，改其作隊，釐爲一萬五千一百八十一人，以成一軍之制，又以其所餘諸軍及移來新添者，竝稱軍需保，良人則收米十二斗，奴軍則六斗，以補軍需，通共二萬三千一百五十七人，比舊制其數有加焉。守禦廳則舊軍制，前營廣州，左營楊州，右營原州，後營竹山，及左右部、中部屬諸色軍，通共三萬九千五百八十九人，南漢山城雉堞，二千二百六十八，大堞守堞軍八人，中堞六人，小堞四人，而改軍制，每堞遞減二人。右營原州則以道里稍遠，臨急難用，革罷之，改左營楊州爲中營，而以廣州軍太多，分屬於中、後營，以爲三營均一之制，以左部軍三分之一，中部軍三分之二，移屬大將親兵，一分則移屬右

(移屬)시키고, 나머지 1분은 우부에 이속시키어 단지 좌우부만 두고 중부는 역시 혁파(革罷)하였으며 중부 아병(牙兵)12918) 으로서 호서(湖西)에 있는 자 역시 혁파(革罷)시켰다. 둔아병(屯牙兵)12919) 은 구제에 비해 양인은 감하여 쌀 6두(斗)를 받고 노군(奴軍)은 또 반액으로 감했으며, 좌우부의 아병은 구제에 비하여 양인은 10두(斗)로 감봉(減捧)하였고 노군(奴軍)은 그대로 4두(斗)를 받았다. 삼영(三營) 이부(二部)로 정하여, 매영은 각 5사(司)요, 매사는 각 5초(哨)이며, 매부는 아병 각 16초(哨)요 마병(馬兵) 각 3초인데, 훈어마 보군(訓御馬步軍)·친아병(親牙兵)과 모두 1만 6천 5백 인이며, 대장 이하 표하군(標下軍)·군수 노보(軍需奴保) 등 제색군(諸色軍)까지 포함 3만 2천 3백 50인이다.

훈련 도감(訓練都監)은 구 군제에 일영(一營)·이부(二部)·26초(哨) 및 제색군(諸色軍)의 군수보(軍需保)·포보(砲保)·향보(餉保) 등을 그대로 옛 정원대로 두고 다시 증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대년군(待年軍)12920) ·용진(龍津)의 진군(陣軍), 각읍의 취철 모군(吹鐵募軍)·연군(鉛軍)·유황점 모군(硫黃店募軍) 등의 군(軍)은 모두 옛 정원의 반을 감하였으며, 관리청(管理廳) 소속으로 송도(松都)에 예속된 군사도 또한 이를 감하였다. 또 도감 군제(都監軍制)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이 군문(軍門)은 장정(長征)의 군대로 가만히 앉아서 태창(太倉)의 곡식을 축내고 있는데 군병의 액수를 계산한다면 일군(一軍)의 제도에도 차지 않으나, 군총(軍摠) 5천여 인을 양성하는 데 1년간 소요(所要)되는 경비를 따진다면 족히 2년 2개월간 윤번제(輪番制)로 복무할 3만여 명의 군사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향군(鄉軍)에서 승호군(陞戶軍)12921) 으로 된 자들은 전가(全家)가 상경(上京)하여 객지에서 굶주림을 원망하고 그 몸을 게을리하여 고난(苦難)을 이겨나갈 힘이 없으니, 몇 해 동안 훈련시켜 양성한 군사가 장차 쓸모없는 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식자(識者)들은 모두 도감(都監)의 제도를

部, 只存左右部, 而中部則亦爲革罷, 中部牙兵在湖西者, 亦革罷。屯牙兵比舊制, 良人則減捧米六斗, 奴軍則又減半, 左右部牙兵比舊制良人則減捧十斗奴軍則仍捧四斗。定以三營二部, 每營各五司, 每司各五哨, 每部牙兵各十六哨, 馬兵各三哨, 及訓御馬步軍、親牙兵, 竝一萬六千五百人, 及大將以下標下軍需奴保等諸色軍, 通共三萬二千三百五十人。訓練都監則舊軍制, 一營二部二十六哨, 及諸色軍軍需保、砲保、餉保等, 仍存舊額, 不復增減。只就待年軍、龍津陣軍、各邑吹鐵募軍、鉛軍、硫黃店募軍等軍, 皆減舊額之半, 管理廳所屬, 以屬松都亦減之。且論都監軍制曰: “此軍門, 以長征之軍, 坐靡太倉之粟, 計軍兵之額, 不滿一軍之制, 而以軍摠五千餘人, 一年所養之費, 足養二年二朔輪番三萬餘之軍, 且鄉軍陞戶之類, 全家上京, 舉怨客地之饑餒, 惰其四肢, 殊無耐苦之筋力, 幾年訓養之卒, 將爲無用之歸。識者皆欲罷都監之制, 增輪番之軍, 而設局既久, 規制略定, 不敢容易議罷”云。御營廳則舊軍制五部各五司、別

	<p>폐지하고 윤번제(輪番制)로 복무할 군사를 늘리고자 하나 설국(設局)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규제(規制)가 대략 정해져 있어 용이하게 혁파를 의논할 수 없습 니다.” 하였다. 어영청(御營廳)은, 옛 군제는 5부(部)에 각 5사(司)와 별삼사(別三司)가 있고, 매사에 각 5초(哨), 별중(別中) 1초(哨)로 모두 1백 41초이고, 매초에는 1백 34인으로 자보(資保)·마보(馬保)·관보(官保) 등 제색군을 총합하면 10만 6천 2백 70인이었는데, 개정된 군제(軍制)에는 5부(部)로 정하여, 매부에 각 5사(司)요, 매사에 각 5초(哨)이며, 매초에 1백 27명이니, 5부 25사에 도합 1백 25초와 각양의 표하(標下)와 삼보인(三保人)과 치중(輜重) 등의 군대까지 통합 8만 6천 9백 53인이 된다. 또 본청의 군제에 대하여 논하기를, “어영(御營)과 금위(禁衛) 양군은 모두 향군으로서 윤번의 절차를 성글게 하고 그 멀리 나가는 노고를 덜게 했으니, 창설한 좋은 규모는 당(唐)나라의 부위병(府衛兵)12922) 을 본받았고 양영(兩營)이 비등한 것은 또 서한(西漢)의 남북군(南北軍)12923) 을 모방하였으나 물고기 비늘처럼 잇닿게 설영(設營)하여 자못 상략(詳略)과 다과(多寡)가 같지 않음이 있으니, 그 양군문의 구제에 약간의 수정(修正)을 가하여 그 군오(軍伍)의 규모를 정하여 그 액수의 다과를 고르게 하여 한편이 더 가볍거나 더 무겁게 하는 폐단을 없애어 마치 수레의 두 바퀴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게 하여 훈국(訓局)이 중간에 있으면 족히 삼군(三軍)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단지 한 영(營)의 부(部)·사(司)와 대오(隊伍)의 법은 매부에 각 5사(司), 매사에 각 5초(哨), 매초에 각 1백 27명으로 하면 그 수가 기준에 합당할 것입니다. 본청은 정제(定制) 이외에 또 남은 군사 2천여 인이 있는데 부·사에 소속시킬 데가 없으므로 5부 외에 따로 3사를 만들어도 군사가 남아 또 별중초(別中哨)를 만들었으니, 금위영(禁衛營)에 비해서 남은 수가 너무 많아 기치(旗幟)와 호령(號令)의 방식(方</p>	<p>三司, 每司各五哨, 別中一哨, 竝一百四十一哨, 每哨一百三十四人, 及資保、馬保、官保等諸色軍, 通共十萬六千二百七十人, 而改軍制, 定以五部, 每部各五司, 每司各五哨, 每哨一百二十七名, 五部二十五司, 合一百二十五哨, 及各樣標下、三保人、輜重等軍, 通共八萬六千九百五十三人。且論本廳軍制曰: “御營、禁衛兩軍, 俱以鄉軍, 踈其輪番之次, 除其長征之勞, 創設之善規, 實法唐之府衛兵, 兩營之均敵, 且倣西漢之南北軍, 而鱗次設營, 頗有詳略多寡之不同, 就其兩軍門舊制, 略加刪潤, 定其軍伍之規模, 均其額數之多寡, 使無偏輕偏重之弊, 如車兩輪, 如鳥兩翼, 而訓局居中, 足爲三軍之制。但一營部、司、隊伍之法, 每部各五司, 每司各五哨, 每哨各一百二十七名, 恰準其數云。本廳則定制之外, 又有餘軍二千餘人, 無可屬部、司之故, 五部外, 別作三司, 尙有餘軍, 又作別中哨, 比諸禁衛營, 餘數太多, 旗幟、號令, 方色錯亂。且一哨百廿七人, 足備三旗九隊錚鼓、火兵之任, 則七人加數, 尤無所據。今此變通改</p>
--	---	---

色)12924) 이 착란(錯亂)되었습니다. 또 1초에 1백 27인이니, 즉히 3기(旗) 9대(隊)의 쟁고(鐙鼓)와 화병(火兵)의 임무를 갖추 수 있는데 7인의 숫자를 더한 것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를 변통(變通)하여 제도를 고치는 것은 단지 군병의 액수를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부·사를 정돈하여 양영(兩營)이 균형을 잡게 하며 용잡(冗雜)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하여 피차간에 경중의 폐단이 없게 하고자 함이니, 한 번 이정(釐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금위영(禁衛營)은 옛 군제에 5부는 각 5사와 별양사(別兩司)가 있고, 매사에 각 5초와 별중(別仲) 1초가 있는데 모두 1백 36초로, 매초는 1백 27인 및 삼보인(三保人), 경외(京外)의 표하(標下)와 별효위(別驍衛)·별파진(別破陣) 등군이 통합 9만 1천 6백 96인이었는데, 개정된 군제는 5부 25사로 1사에 5초, 1초에 1백 27인은 어영청의 제도와 한결같이 하고 제색군을 아울러 통합 8만 5천 2백 74명이다. 오군문(五軍門)에서 줄인 군액은 통계 3만 6천 7백 93인인데 이를 각도와 각읍에 분급(分給)하여 도망하고 물고(物故)된 군병의 대신에 보충하게 하였으며, 군문의 장교 역시 액수를 정하되 간략한 데 따르도록 힘썼다.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節目)에 말하기를,

“수군의 제도는 《대전(大典)》을 상고하여 보니, 대맹선(大猛船) 1척에 수군 80명, 중맹선에는 60명, 소맹선에는 30명이라 하였는데, 대맹선은 지금의 전선(戰船)이요, 중맹선은 지금의 귀선(龜船)이고, 소맹선의 지금의 방패선(防牌船)이니, 병선(兵船)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선제(船制)가 차츰 커져서 큰 것은 좌우 노로(櫓)12925) 사이가 혹은 24간에 이르고 노젓는 군사가 1백 20명이 필요하니, 고제(古制)의 80명의 노군(櫓軍)으로는 결코 운용할 수가 없고 귀선과 방패선의 노군 역시 그 수로 기준을 삼기가 어려운데, 토졸(士卒)로서 구차하게 수를 채워 실제로 허술하게 되었으니, 한번 변통하는 것은 사세상

制, 不但在於軍兵減額之計, 蓋欲整頓部、司, 均齊兩營, 除冗雜不緊之類, 無彼此輕重之弊, 則不可不一番釐整”云。 禁衛營則舊軍制五部, 各五司、別兩司, 每司各五哨、別中一哨, 竝一百三十六哨, 每哨一百二十七人及三保人、京外標下、別驍(尉) [衛]、別破陳等軍, 通共九萬一千六百九十六人, 而改軍制, 五部二十五司, 一司五哨, 一哨百廿七人, 一如御營之制, 竝諸色軍, 通共八萬五千二百七十四名。 五軍門所減軍額, 通計三萬六千七百九十三人, 分給各道各邑, 俾充軍兵逃故之代, 軍門將校, 亦定額數, 務從簡約。 水軍變通節目曰: “水軍之制, 取考《大典》, 則大猛船一隻, 水軍八十名, 中猛船六十名, 小猛船三十名云。 大猛船, 卽今之戰船, 中猛船, 猶今之龜船, 小猛船, 亦今防牌船, 及兵船之類, 而船制漸大, 大者左右櫓, 或至二十四間, 應入櫓軍, 當爲一百二十名, 以古制八十名之櫓軍, 決不可運用, 龜、防船櫓運, 亦不能準數, 而各以士卒, 苟充備數, 實涉虛疎, 一番變通, 勢所不已。 且設置戰船之初, 必

	<p>그만두어서는 안됩니다. 또 전선을 설치한 시초에 반드시 원군(元軍)으로 하여금 번갈아 입방(入防)하게 하였으며, 군사를 놓아 보내고 그 대신 면포(綿布)를 거두는 것은 금법(禁法)이 지엄하였는데, 지금은 원군이 전혀 입방(入防)하지 않고 모두 번포(番布)를 거두어 약간 명의 배를 지키는 사람만 고용하여 세우고, 그 나머지 면포는 제반의 수용(需用)에 써버렸으니 그 치병(治兵)하는 방도가 참으로 지극히 한심합니다. 한번 수군의 신포(身布)를 1필로 감액한 뒤로부터 수영(水營)의 각진(各鎭)에서 급대(給代)12926) 한 군졸의 원성이 무리지어 일어난다는 뜻으로써 문보(文報)가 답지하는데, 일찍이 급대(給代)한 자는 사환이나 하졸이 아니면 모두 공장(工匠)이나 잡류(雜類)들이니, 참으로 이른바 ‘길러만 놓고 쓰지는 못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변통하고 개정(改正)할 일을 아래에 조열(條列)합니다.</p> <p>1. 수군이 산군(山郡)에 산재(散在)하여 모두 물에 익숙하고 배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므로 원군(元軍)의 신포(身布)를 거두어 진하(鎭下)의 백성에게 급대(給代)하고 고용해서 세우는 것은 심히 허술한 일입니다. 지금 마땅히 이에 따라 단속하는 법도를 정하여 각기 진하에 사는 백성 중에서 양민과 천인으로 신역(身役)의 유무(有無)를 물론하고 근실(勤實)한 자를 가려서 속오군(束伍軍)12927)의 규례에 의하여 영원히 충정(充定)하여 군안(軍案)를 만들어 두고 본관의 연호 잡역(煙戶雜役)12928)과 변장(邊將)의 과외(科外) 징렴(徵斂)은 일체 강제할 것.</p> <p>1. 전선(戰船)에 수용하여 부리는 군졸은 이미 진하(鎭下)에 거주하는 백성으로 정하고 아울러 이를 단속하면 평상시에 비록 대령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한 번 부르면 나와서 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일과 같이 급대(給代)를 할 필요가 없고 혹은 농사 짓고 혹은 어업(漁業)을 하면서 임의로 출입(出入)하게 하되 단지 멀리 나가는 것은 허락치 말고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변장에게 신고해서 수유(受由)하여 왕래하</p>	<p>令元軍，輪回入防，而放軍收布，禁法至嚴。今則元軍，全不入防，盡捧番布，雇立若干守船之人，而餘布盡歸於諸般需用，其於詰戎之方誠極寒心。一自水軍布減一疋之後，水營各鎭，以給代軍卒，怨言朋興之意，文報沓至，而曾前給代者，若非使喚、下卒，則皆是工匠、雜類，眞所謂所養非所用，故變通釐革，條列于左。一，水軍散在山郡，皆非習水制船之人，故收捧元軍身布，給代鎭下之民，使之雇立者，亦甚虛疎。今宜就此而定爲團束之制，以各其鎭下居民中，勿論良賤有無役，擇其勤實者，依束伍例，永爲充定，成置軍案，本官烟戶雜役、邊將科外徵斂，一切減除。一，戰船容入軍卒，既以鎭下居民，並爲團束，則常時雖不待令，臨急可得一呼而登船。不必如前給代，或作農或漁採，任其出入，但不許遠出，如有不得已之故，則必告邊將，受由往來，習操時點閱外，鎭將不得私使，違者論以私用軍兵之罪。公、私賤，雖納貢於本司、本主，而私賤不許捉去。一，統水營以下各鎭騶卒、使喚之類，參酌差等，定其額數，</p>
--	--	--

	<p>게 하며, 연습(鍊習)할 때나 점열(點閱)하는 외에는 진장(鎭將)이 이들을 사사로이 부리지 못하게 하되 여기는 자는 군병을 사사로이 부린 죄로써 논할 것이며,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비록 본사(本司)나 본주(本主)에게 납공(納貢)은 하더라도 사천을 붙잡아 가는 것은 허락하지 말 것.</p> <p>1. 통영(統營) 수영(水營) 이하 각진의 추졸(驍卒)과 사환의 부류는 참작하여 차등을 두고 그 액수를 정하여 달마다 돌려가며 급대(給代)하고 단속 중에 있는 선직(船直)과 무상(舞上) 등은 매달 원정군(元定軍)으로 번갈아 급대(給代)하여 전선(戰船)을 수호(守護)하게 할 것.</p> <p>1. 각 진보(鎭堡)에 거주하는 백성이 만약 흉년을 만나면 기근을 면하기 어려우니, 지금부터 시작하여 감영(監營)에서 거주민의 다소를 상찰(詳察)하여 각읍의 저치미(儲置米)를 혹 천 석(石) 혹 5, 6백 석씩 갈라서 급여하며 해마다 조적(糶糶)12929) 을 잘하여 취해지는 이자(利子)는 매달 변장(邊將)의 급료 1석(石)을 지급하고 또 춘추로 습조(習操)할 때에 군졸의 양식을 보충하며, 그 나머지는 군기(軍器)나 잡물(雜物)의 수보(修補) 비용으로 쓰고 감영에 보고하여 회감(會減)12930) 하도록 할 것.</p> <p>1. 수군의 신포(身布)는 이미 1필로 감하여 다른 보인(保人)과 다름이 없으니, 신포의 승척(升尺)12931) 을 한결같이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의 예에 의하여 받아들일 것.</p> <p>1. 통제사(統制使)의 삭포(朔布)는 1백 20필이고, 수사(水使)는 1백 10필, 첨사(僉使)는 15필, 만호(萬戶)·별장(別將)·권관(權管)은 10필로 하되, 경사(京司) 구채(丘債)12932) 의 예에 의하여 매월마다 회감(會減)할 것.</p> <p>1. 각영(各營)과 진(鎭)에 딸린 육물가(陸物價)는 그 나머지 연포로 마련하여 제급(題給)하고, 일체 전과 같이 나누어 징수(徵收)하지 말 것.</p> <p>1. 방패선(防牌船)은 대개 서해(西海)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조선(造船)한 뒤에 이를 걸어 매어두고 썩고 상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군졸의 수</p>	<p>遂朔輪回給代, 而團束中船直、舞上等, 則每朔元定輪回給代, 俾得看護戰船。 一, 各鎭堡居民, 若值凶歲, 則難免飢饉。 自今爲始, 自監營詳察居民多少, 以各邑儲置米, 或千石或五六百石, 參酌劃給, 年年糶糶, 而取耗之數, 則一朔給邊將料一石, 又於春秋習操時, 以此充給軍卒之糧, 其餘則用下於軍器、雜物修補之費, 報監營會減。</p> <p>一, 水軍布, 既減一疋, 則與他保人無異, 身布升尺, 一依騎、步例收捧。</p> <p>一, 統制使朔布一百二十疋, 水使一百十疋, 僉使十五疋, 萬戶、別將、權管十疋, 依京司丘債例, 逐朔會減。 一, 各營、鎭陸物價, 以其餘布, 磨鍊題給, 切勿依前分徵。 一, 防牌船, 蓋出於西海之用, 而造作之後, 仍爲掛置, 任其朽傷, 軍卒之數, 比兵船三倍。 自今去其防牌, 專爲輜重, 而軍卒則罷定於本鎭諸色軍逃故之代。 一, 水營造船時, 材木曳下時給代等價本, 及三升【絨布俗名。】風帆旗幟、油芑【油紙備雨者。】等物修補時, 以本營餘布, 除用會減, 如戶曹卜定加時【木名造鳥銃者。】木進上, 箭竹及著</p>
--	---	---

는 병선에 비해 3배가 되니, 지금부터 그 방패(防牌)는 버리고 오로지 치중(輜重)에만 힘쓸 것이며, 그 군졸은 혁파(革罷)하여 본진(本鎭) 제색군(諸色軍)의 도망치고 물고(物故)된 자 대신으로 충정(充定)할 것.

1. 수영(水營)에서 조선(造船)할 때와 재목을 끌어내릴 때 급대(給代)하는 등의 가본(價本) 및 삼승(三升)12933) 【용포(絨布)의 속명(俗名)이다.】 으로 된 풍범(風帆)12934) 기치(旗幟)와 유둔(油苴) 【유지(油紙)로서 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등의 물건을 보수(補修)할 때에는 본영(本營)의 여포(餘布)를 이끌어 쓰고 회감(會減)할 것이며, 호조에서 복정(卜定)한 가시목(加時木) 【나무 이름으로 조총(鳥銃)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과 진상(進上)하는 전죽(箭竹) 및 기로소(耆老所)와 중추부(中樞府)의 약가(藥價)·절선(節扇)12935) ·세찬(歲饌)과 사신(使臣)의 구청(求請)·칙사(勅使) 때 복정(卜定)하는 물품 같은 것도 역시 여포(餘布)로써 갖추어 보낼 것.

1. 경군문(京軍門)에서 구청(求請)하는 군기(軍器)에 드는 물품은 만약 그 값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일체 시행하지 말고, 각진(各鎭)에서 구청하는 서찰은 규례에 의하여 거절할 것이며, 경외(京外)의 아문(衙門)이 공사(公事)를 올릴 때에 인정(人情)을 요구하는 자는 적발 보고하여 엄중하게 치죄(治罪)할 것.

1. 1년 동안 여포(餘布)를 사용하고 남은 재고의 수는 연말에 책으로 만들어 비국에 올려 보내어 그 수량을 알게 하며, 여포를 남용한 자는 위제(違制)의 율로 다스리되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논죄할 것. 【수군(水軍)을 조련할 때에 호궐(犒饋)에 쓰는 소 값과 상품(賞品) 및 수사(水使)의 사명일(四名日)에 쓰는 제태(祭馱) 2필(疋) 값 같은 것도 또한 여포(餘布)에서 쓰는 것을 허락했으나, 자질구레한 것을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

각 선군(船軍)의 제정(制定)한 액수에는 전선(戰船) 1척에 선직(船直)·무상(舞上)·타공(舵工)·요수(繚手)·정수(碇手)·사수(射手)·화포장(火炮匠)·포수(砲手)·포도장(捕盜將)·노군(櫓軍)이 포함 1백 64인이요, 귀선(龜船)은 1백 48인이며,

所·中樞府藥價、節扇、歲饌、使臣求請、勅使時卜定物種，亦以餘布備送。 一，京軍門求請軍器所入等物，若不送價本，則切勿施行，各鎭求請之簡，據例防塞，京外衙門公事進呈時，人情需索者，摘發論報，從重科罪。 一，一年餘布用下遺在之數，年終成冊，上送備局，以爲知數之地，濫用餘布者，論以違制之律，計贓論罪。 【如水操時，犒饋牛價、賞格及水使四名日祭馱二疋價，亦許用餘布，煩碎不盡記。】 各船軍制定額數云，戰船一隻，船直、舞上、舵工、繚手、碇手、射夫、火炮匠、砲手、捕盜將、櫓軍並一百六十四人，龜船一百四十八人，偵探船七十九人，兵船十七人，伺候船五人。 各營、鎭防軍布磨鍊數云，統營八戰船元防軍，不立防軍，射夫、添射夫，並七千六百三十六人，每人捧綿布二疋，計除風高風和各六朔給代之數，及各船陸物價，虞候屬給代，朔布之數，餘布六千五百疋零。 左水營、釜山等鎭、全羅左右水營、防踏等鎭餘布，以此爲準，多寡不同，而各有定數。 各船陸物，亦爲磨鍊，戰船、兵

정탐선(偵探船)은 79인이요, 병선(兵船)이 17인이며, 사후선(司候船)은 5인입니다. 각영과 진의 방군(防軍)에서 군포(軍布)를 마련한 수효에는 통영(統營) 8전선(戰船)의 원방군(元防軍)은 방군을 세우지 않고 사부(射夫)와 첨사부(添射夫)가 모두 7천 6백 36인으로 매인당 면포(綿布) 2필씩을 받는데 풍고(風高)와 풍화(風和)의 각 6개월에 대한 급대(給代)의 수량 및 각선(各船)의 육물가(陸物價)와 우후(虞候)에 속한 급대(給代)와 삭포(朔布)의 수량을 공제하면 여포(餘布)가 6천 5백필 남짓합니다. 좌수영·부산(釜山) 등의 진과 전라(全羅) 좌·우수영 및 방답(防踏) 등 진의 여포도 이에 준하여 다과(多寡)는 다르나 각기 정수(定數)가 있습니다. 각선의 육물가(陸物價)를 또한 마련하였고, 전선·병선·사후선·정탐선·귀선(龜船) 1척에 대해 1년에 드는 물건과 초둔(草屯)진석(眞席) 같은 종류에까지도 모두 차등을 두어 값이 메겨져 있고, 심지어는 사후선(司候船)에 쓰는 표주박 2개의 값까지도 면포 3척 6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니, 이를 반포(頒布)하여 시행하라고 분부하였다. 이 일은 이유(李濡)가 주관하였으나 대체로 유집일(兪集一)이 강구하여 정한 것이요, 민진후와 유득일(兪得一) 또한 함께 의논하였는데, 이인엽(李寅燁)은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진달하고 종시 참여하지 않았다. 수군 절목이 이미 반포된 뒤에 경상도 관찰사 김연(金演)과 통제사 이창조(李昌肇)가 서로 잇따라 치계(馳啓)하여 그 불편함을 말하였는데, 이창조의 말이 묘당(廟堂)을 침범하였고, 전라수사(全羅水使) 이석관(李碩寬)은 수군포(水軍布) 3필을 종전과 같이 함부로 징수했다 하여 모두 죄를 입었으며, 그 뒤에야 시행되었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백골 징포(白骨徵布)의 폐단은 참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고 수군의 편벽된 고역(苦役)은 참으로 늦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문의 수만 군사를 줄이어 허부(虛簿)의 도망하고 물고(物故)된 대신에 보충하게 하였고, 방군(防軍)의 군포 한 필을 제하고 해곤(海關)12936)의 수용(需用)

船、伺候船、偵探船、龜船一隻一年容入物件，如草蓆、眞席等種，皆定價有差，甚至伺候船瓢子二介，亦定價布，三尺六寸”云，命頒布施行。此事李濡主之，而大抵兪集一所講定也。閔鎮厚、兪得一，亦與同議，李寅燁疏陳其不可，終始不預焉。水軍節目旣頒之後，慶尙觀察使金演、統制使李昌肇，相繼馳啓，言其不便。昌肇語侵廟堂，全羅水使李碩寬，擅徵水軍布三疋如舊，皆被罪，其後乃得施行。

【史臣曰：“白骨徵布之弊，誠不可不革矣，水軍偏苦之役，誠不可不寬矣。減軍門數萬之兵，而充虛簿逃故之代，除防軍一疋之布，而定海關需用之數，一以慰疲氓，一以塞奸竇，其於變通之道，不可謂不善，而第釐定之際，或輕加沙汰，不無張說奏罷戍兵之失，如太損御營兵之類是也；或過爲剋減，有異劉晏優給船費之意，如約定陸物價之類是也。若此類，難保永久而無弊也。噫！除一弊生一弊，智者所難免。況其下焉者乎？李濡荷上委任，銳意矯弊，此外又欲大有所釐正，而志勤而才短，兪集一以曉解事務自許，而有輕率

에 필요한 액수를 정하여 한편으로는 피로해서 지친 백성을 위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간리(奸吏)의 농간을 막았으니, 변통하는 도리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개정(改正)할 즈음에 혹 경솔히 가려서 버림을 더하여 옛날 장열(張說)이 수병(戍兵)을 주파(奏罷)한 실수(12937)가 없지 않았으니 어영병(御營兵)을 너무 삭감한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이며, 혹은 지나치게 삭감하여 유안(劉晏)이 선비(船費)를 넉넉히 지급(12938)한 뜻과는 다름이 있으니, 육물가(陸物價)를 간략히 정한 것이 이런 부류인데, 이 같은 일은 영구히 폐단이 없을 것이라 보장(保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 한 폐단을 줄이면 한 폐단이 생기는 것은 지혜있는 자도 모면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그 아래에 있는 자이겠는가? 이유(李濡)는 임금의 위임을 떠맡아 폐단을 바로잡는 데에 힘썼고, 이 밖에도 또 크게 개혁(改革)하려고 하였는데 뜻은 부지런했으나 재주가 짧았으며, 유집일(兪集一)은 사무에 밝다고 자처하였으나 경솔하고 말을 쉽게 하는 병통이 있었다. 민진후는 또한 예민(銳敏)하고 경솔하여 혹 생각을 두루하지 못했는데 거기다 조론(朝論)마저 엇갈려 일을 끝내지 못하고 시비만 일어났으니, 이에 식자(識者)들이 그 분운(紛紜)함을 기롱하였다.

이후에 이정청(整廳)에서 또 군포(軍布)·균역(均役)과 해서(海西)의 수군을 변통하는 절목(節目)을 올렸으니, 그 균역 절목(均役節目)에 이르기를, “각읍에서 바치는 신포(身布)의 승척(升尺)이 반드시 균일한 정식(定式)이 있고 난 뒤에야 방해되고 불편한 점이 없을 것이므로 묘당(廟堂)에서 의논하여 우선 변통해서 어떤 색목(色目)을 물론하고 한결같이 기병·보병의 신포를 따라 6승(升)의 면포(綿布) 40척(尺)을 받아들이는 뜻으로써 경외(京外)에 분부 하였습니다.

기병·보병·경기병(京騎兵)·호련대보(扈輦隊保) 등 34색목은 모두 2필씩 바치는 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국(備局)에서 돈으로 환산할 때는 매필에 2냥 5전으로 정했으니, 금후에는 한결같이 절목에 의거하여 그때에 닥쳐 참작해 절정

易言之病。 閔鎮厚亦頗過於輕銳，或不能周思，加以朝論橫潰，事未竟而是非蠱起，於是，識者譏其紛紜。”】

是後釐整廳，又進軍布、均役及海西水軍變通節目。 其均役目曰：“各邑所納身布之升尺，必須均一定式，然後可無掣肘難便之端，故就議廟堂，爲先變通，勿論某色目，一從騎、步身布，以六升綿布四十尺收捧之意，分付京外，而騎·步兵、京騎兵、扈輦隊保等三十四色目，皆是納二疋之役，自備局折錢時，定以每疋二兩五錢。 今後一依節目，臨時參酌折定，砲保、樂工保、樂生保三色目，各納二疋，而自備局，折錢稍多，自今一依騎、步施行。 水軍、漕軍、入防騎兵、有廳軍、司饗院分院匠人五色目，曾前皆納三疋，而水軍今既減其一疋，其他納三疋之類，亦皆減其一疋，定虜衛保、漁夫保此兩色，獨納一疋，依諸軍保收捧二疋，司僕寺諸員，曾前納二疋半，今減半疋，外方各營鎮、各邑，諸般良役，亦皆以二疋定式，毋得異同，而凡京外納二疋之類，勿論木花貴賤，一疋則本色，一疋則折錢收捧，永爲定式。 京外衙門，

(折定)할 것이며, 포보(砲保)·악공보(樂工保)·악생보(樂生保) 3색목은 각기 2필을 바치는데 비국에서부터 돈으로 환산할 때에 다소 많게 했으니, 지금으로부터 한결같이 기병·보병의 규례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수군과 조군(漕軍)·입방 기병(入防騎兵)·유청군(有廳軍)·사옹원(司饗院) 분원(分院)의 장인(匠人) 등 5색목은 종전에 모두 3필을 바쳤는데, 수군은 지금 이미 그 1필을 삭감했고, 그 밖의 3필을 바치는 무리들 역시 모두 1필을 삭감하였으며, 정로위보(定虜衛保)·어부보(漁夫保)의 이 두 색목은 홀로 1필을 바쳤는데, 제군보(諸軍保)의 예에 의하여 2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복시 제원(諸員)은 종전에 2필 반을 바쳤는데 이제 반 필을 감하며, 외방의 각 영(營)·진(鎭)과 각읍의 제반 양역(良役)도 또한 모두 2필로 규식을 정하여 이동(異同)이 없어야 합니다. 무릇 경외의 2필을 바치는 부류는 목화(木花)의 풍흉(豐凶)을 물론하고 1필은 본색(本色)으로, 1필은 돈으로 환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영구히 정식을 삼을 것이나, 경외 아문(衙門)에서 쌀로 받고자 한다면 향보(餉保)의 예에 따라 매필에 쌀 6두(斗)로 환산(換算)하되 돈으로 바꾸는 한 조항은 당년(當年) 시장의 물가에 따라 참작하여 가감하게 합니다. 또 경외에서 쓰는 것 역시 모두 돈과 면포를 반으로 나누어 출급(出給)한 연 후에야 수입과 지출이 합당할 것이며 영구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니, 이로써 분부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또 공사(公私) 소용의 마포(麻布)·면포(綿布)는 필을 만드는 데 길고 짧음이 같지 아니하여 만약에 재보지 않으면 척수(尺數)를 몰라 농간과 거짓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군포는 지금 6승(升) 40척(尺)을 한도로 하되 무릇 필을 만들 때 양쪽 끝에 겹쳐 접어서 매엽(每葉)마다 2척 5촌으로서 기준을 삼는다면 16엽이 40척의 기준에 해당할 것이니, 비록 천필을 쌓더라도 장단이 고르게 정리되어 재보지 않더라도 한번 보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후부터 공사(公私)에 행용(行用)하는 마포와 면포는 모두 이 법을 써서 고르지 않게

有欲以米收捧，則依餉保例，每疋折米六斗，折錢一款，隨當年市直，參酌加減。又京外需用，亦皆以錢布，參半出給，然後方合於量入爲出之道，而可以永久行之，以此分付舉行。又公私所用麻布、綿布，作疋長短不齊。若非尺量，則莫知尺數，奸僞百出。軍布今以六升四十尺爲限，凡作疋兩端，疊摺每葉，以二尺五寸爲準，則十六葉當準四十尺，雖積千疋，長短齊整，不待尺量，一見可辨。今後公私行用麻布、綿布，皆用此法，痛禁參差作疋，以杜奸僞之習。又麻布、綿布升數，尤難辨別，一任監色之操縱，賄賂公行，專由於此。自今綿布則定以六升，麻布則定以五升，每疋兩端數寸許，解其緯絲，每分一升八十縷，作髻而垂寸許於疋端，六升當爲六髻，五升五髻，一見可以立辨其升數矣。未織之布，依此組織，則可除京外操縱之弊，外方愚氓，或以創見，不肯遵行，則亦不必強令爲之，各邑一依民願而商處焉。如是定式之後，上納身布，升尺麤短，則當該守令，當被制書有違之罪，升尺準式，而猶且點退，則各其邑吏，卽告

필 만드는 것을 엄금하여 농간과 거짓의 습성을 막으소서. 또 마포·면포의 승수(升數)는 더욱 판별하기가 어려워서 감색(監色)12939)의 조종에 일임하였으므로 회뢰(賄賂)가 공행(公行)하는 것이 오로지 이에 말미암았으니, 지금부터 면포는 6승으로 정하고 마포는 5승으로 정하며, 매필마다 양쪽 끝의 두어 치 정도에 그 울[緯]을 풀어서 매양 1승을 80가닥씩 나누어 묶어 1치 정도를 매필의 끝에 드리우면 6승은 여섯 묶음이 되고, 5승은 다섯 묶음이어서 한 번 보면 그 승수(升數)를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짜지 않은 포목(布木)을 이에 의하여 짜게 한다면 경외에서 조종하는 폐단을 제거할 수가 있을 것이나, 외방(外方)의 어리석은 백성이 혹 처음 보는 일이라 하여 즐기어 준행(遵行)하지 않으면 또한 강제로 이를 시킬 필요는 없으니, 각읍은 한결같이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상량(商量)해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식을 한 뒤에 상납(上納)하는 신포(身布)의 승척(升尺)이 거칠고 짧다면 당해 수령(守令)은 마땅히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12940)의 죄를 입게 되며, 승척이 정식(定式)에 맞는데도 오히려 점퇴(點退)한다면 각각 그 읍의 아전을 곧바로 비변사에 고하게 하여 과연 호소한 바와 같은즉 어떤 상사(上司)를 물론하고 해당 낭청(郎廳)은 또한 제서 유위율로 치죄(治罪)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해서(海西)의 수군 절목(水軍節目)에는 대략 이르기를,
 “소강 방어사영(所江防禦使營) 및 백翎(白翎)·허사(許沙)·오차(吾叉)·등산(登山)·용매(龍媒)의 5진(鎭) 수군이 총합 4천 5백 71인데 마땅하게 헤아려 급대(給代)하고, 급대와 실제 세운 자의 수효를 제하면 그 여군(餘軍)이 1천 8백 83인이니, 사람마다 면포 2필씩을 받아들이어 이로써 전선·병선·방선(防船) 등의 육물가(陸物價)와 1년 두 차례의 조련(操鍊) 때 군인의 양곡 및 관가의 수용과 배를 만들 때의 공역(功役)·기치(旗幟)·기계(器械)를 보수하는 등의 비용에 충당합니다. 또 각진(各鎭) 밑에 있는 거주민으로서 포수·노군(槽

備局, 果如所訴, 則無論某上司, 當該郎廳, 亦以制書有違律罪之。” 海西水軍節目略曰: “所江防禦使營及白翎、許沙、吾叉、登山、龍媒五鎭水軍, 通共四千五百七十一人, 而量宜給代, 除給代實立之數, 餘軍爲一千八百八十三人, 人捧綿布二疋, 以此充給戰船、兵船、防船等陸物價, 一年兩操時, 軍人糧米及公家需用, 如造船時功役、旗幟、器械修補等價之費。 且以各鎭下居民, 永定砲手、櫓軍之役, 作隊成案。 防營戰船一隻, 櫓軍八十人、砲手二十四人, 防船一隻, 櫓軍二十四人、砲手四人, 兵船·小猛船·居刀船·夾船, 櫓軍、砲手, 遞減其數, 竝爲一百八十人, 白翎一百七十七人, 許沙以下以此爲差, 大抵倣三南水軍變通之例, 而略有增減。 又別抄軍官各鎭元額七十人中, 三十人以閑良充定, 減其番布, 只以射夫參操, 所江則係是防營, 事體自別, 故三倍其數。 又各鎭戰船所泊處, 令防禦使親審便好之地, 成冊上送, 又舟師代將之任, 必以曉解軍務者擇定, 依鄉將官之例, 仕滿陞資焉。” 又定校生落講者徵布之法。 其

軍)의 신역(身役)을 정하여 대오(隊伍)를 짓고 문안(文案)을 만들었습니다. 방어사영의 전선 1척에 노군 80인 포수 24인이요, 방선 1척에 노군 24인 포수 4인이며, 병선·소맹선(小猛船)·거도선(居刀船)·협선(夾船)은 노군과 포수의 수효를 체감(遞減)하여 모두 1백 80인으로 하고, 백령진은 1백 77인이며, 허사(許沙) 이하는 이로써 기준하여 차등을 두었으니, 대저 삼남(三南)의 수군을 변통한 예를 모방하여 약간 증감이 있었습니다. 또 별초군관(別抄軍官)은 각 진에 본래 액수가 70인인데, 그 가운데 30인은 한량(閑良)으로 보충하여 그 번포(番布)를 감하고, 단지 사부(射夫)로서 조련(操鍊)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소강(所江)은 방영(防營)에 매여 사체가 자별하므로 그 수를 3배로 정하였습니다. 또 각진의 전선이 정박해 있을 곳은 방어사(防禦使)로 하여금 적절한 곳을 친히 살펴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였으며, 또 주사 대장(舟師大將)의 임무는 반드시 군무를 밝게 아는 자를 택정(擇定)하고 향장관(鄉將官)의 예에 의하며, 임기가 차면 품급(品級)을 승진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또 교생(校生)의 낙강(落講)한 자에게 포목(布木)을 징수하는 법을 정했으니, 그 절목에 대략 이르기를, “각읍의 교생(校生)은 스스로 그 정액(定額)이 있는데 역(役)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재임(齎任)과 결탁하여 정액 외에 함부로 기록하였습니다. 매양 고강(考講)할 때를 당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자를 가려 군역에 충정하면 사지(死地)에 빠지는 것처럼 여겨 구족(九族)12941 이 모두 원망할 것이니, 대개 그 원망하는 바는 비단 징포(徵布)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군보(軍保)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데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주선하여 부탁하려고 드는 비용이 매우 많아서, 간혹 풍속(風俗)을 손상하는 놀랍고 해괴한 일도 있습니다. 도태되어 군역(軍役)에 충정(充定)된 뒤에 미처서는 혹은 병이 났다 핑계하고 혹은 도망갔다 칭탁하여 기어이 모면하고야 마니, 포목을 징수하여 나라의 용도에 돕는 것은 얼마 없고 한갓 간사한 폐단만 조장하여 해로움만 있고

節目略曰：“各邑校生，自有定額，而避役之類，夤緣齎任，冒錄額外，每當考講之時，不通者汰定軍役，則如陷死地，九族咸怨。蓋其所怨，非但爲徵布，實在於恥軍保之名，故百般周旋圖囑，所費甚多，間或有傷風敗俗可駭可愕之事。及其汰定之後，或稱病廢，或稱逃亡，期於蠲免而後已，徵布以補國用者無幾，而徒長奸弊，有害無益。論以一切之法，則冒屬額外者，直可查出定役，而一時汰定，亦多騷擾之慮。今若變通，無論額內外，一竝考講，不通者勿爲汰定軍役，仍存校案，依前以校生待之，以其落講之罰，只徵贖布，則此輩從前所怨恥者可除，而自知不通，只納贖而已，則必無糜費之弊，乖悖之習，而勤慢勸懲之道，亦可竝行於其中，得失利害，不啻較然矣。議者或以爲徵布於校儒，恐有傷於名義，此則不然。大小朝士之被推納贖，自是常行之法，而文臣之殿講，武臣之賓廳講，不通者，例皆推考徵贖，則以落講之罰，徵布於校儒，揆以名義，少無所傷。昔文忠公張維軍籍之疏有曰：‘其應在汰講者，或姑定武學，以開再試之

	<p>이익은 없습니다.</p> <p>일체 법으로서 논한다면 정액 밖에 함부로 소속된 자는 곧바로 조사해 내어 군역에 충정함이 옳으나, 일시에 가려 충정하면 또한 소요의 염려가 많으니, 지금 만약 변통하여 정액(定額) 이내와 이의를 물론하고 모두 고강(考講)에 붙여 불통(不通)한 자를 도태하여 군역에 충정하지 말고 교안(校案)에 두어 전과 같이 교생(校生)으로 대우하고 낙강(落講)한 벌로 단지 속포(贖布)12942) 를 징수한다면, 이 무리들이 종전의 원망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덜 수 있을 것이요, <강(講)에> 불통(不通)하더라도 다만 속포만 바칠 뿐인 것을 스스로 알 것이니, 반드시 재물을 허비하는 폐단과 괴패(乖悖)의 습성이 없어지며,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권장하고 징계하는 법도가 또한 그 가운데에 아울러 시행되어 이해(利害) 득실(得失)이 분명할 뿐만이 아닙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혹 교유(校儒)에게서 징포하는 것은 명의를 손상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소 조관(朝官)들이 추고(推考)를 입어 속포(贖布)를 바치게 하는 것은 상행(常行)의 법도이며, 문신의 전강(殿講)과 무신의 빈청강(賓廳講)에 불통(不通)한 자는 의례 모두 추고(推考)하여 속포를 징구했으니, 지금 낙강의 벌로 교유(校儒)에게서 군포를 징수하는 일은 명의를 해아려 조금도 손상됨이 없습니다.</p> <p>옛날 문충공(文忠公) 장유(張維)는 군적(軍籍)에 대한 소(疏)에서 말하기를, ‘응당 강(講)에서 제거할 자는 혹 잠시 무학(武學)에 두어 다시 응시할 길을 열어 주고, 재차 낙강하면 바야흐로 군역을 정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낙강(落講)한 자를> 모름지기 문득 정역(正役)에 충정할 필요는 없고 별달리 한 호칭(號稱)을 세워 군포를 거둔다.’ 하였으며, 문정공(文貞公) 김육(金堉)은 교생(校生)의 고강(考講)에 대한 논계에서 또한 말하기를, ‘낙강(落講)한 자를 군역에 충정하는 일은 조종조(祖宗朝)의 법제이나 정액(定額)의 안팎에 사족(士族)과 조금 신분이 낮은 자의 차별이 있으니, 신분이 낮은 자</p>	<p>地, 再落方定軍役。’ 又曰: ‘不須便定正役, 別立一號, 以收價布。’ 文貞公 金堉論校生考講之啓亦曰: ‘落講定軍, 固是祖宗朝法制, 而額內外有士族與稍卑之別, 稍卑者即定軍役, 士族則只徵罰布云云。’ 先輩所論如此, 實出於因時宜順人心之計, 故磨鍊節目, 條列于後。 一, 春秋兩巡考講, 乃是定規, 而今此變通之後, 只當一年一講, 而必於春初農前設行, 盡取額內外都數而考講, 其不通之類, 勿定軍役, 別作一案, 以爲徵贖之地, 其贖布, 以綿布二疋定式。 一, 講規, 必以經史中自願者, 抽牒試講, 其能通者, 則今年所講之書, 不當又爲應講於明年, 必須籍記冊名, 以次加其卷秩, 亦合勸獎長進之道。 一, 或有文才而偶然不通者, 發憤讀書, 經年之後, 願爲改講則許之, 而必以《論》、《孟》中抽牒考講, 能通者減去別案徵贖之中, 不通則更勿許改講, 而此類自本邑, 先爲試講後抄報都事, 無致混雜。 一, 落漏於講案者, 不肯納贖者, 代講者, 及符同作奸之齋任, 竝降定軍役。 一, 外方避役之輩, 別作稱號, 任自閑遊者及書院、祠宇所</p>
--	---	--

는 곧 군역에 충정하고 사족은 다만 벌포(罰布)를 징수한다.’고 운운하였으니, 선배의 논한 바가 이와 같은 것은 진실로 시세(時勢)의 적의함을 따르고 인심에 순응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목을 마련하여 아래에 조열(條列)합니다.

1. 봄·가을에 두 번 돌며 고강(考講)을 실시하는 것은 곧 정규(定規)이었으나, 이번 변통한 뒤로는 다만 1년에 한번 고강하되 반드시 초봄 농사 기간 전에 설행하여 정액 안팎의 수를 모두 취해 고강하고 불통한 자들은 군역을 정하지 말 것이며, 따로 한 문안(文案)을 만들어 속포(贖布)를 징수하되 그 속포는 면포 2필로서 정식을 삼을 것.

1. 고강의 규정은 반드시 경서(經書)와 《사기(史記)》 중 한 가지를 자원한 자로써 뽑아서 시강(試講)하고, 능통한 자는 금년에 강한 책을 또 명년에 강하게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책명을 기록하고 차례로 권질(卷秩)을 더하여, 발전을 권장하는 도리에 합당하게 할 것.

1. 혹 문재(文才)는 있으나 우연히 불통한 자가 발분 독서하여 해를 넘긴 뒤 다시 개강(改講)을 원하면 이를 허락하되 반드시 《논어(論語)》와 《맹자(孟子)》 중에서 뽑아 고강하여 능통한 자는 별안(別案)의 징속(徵贖) 가운데에서 삭감해 버리고, 불통한 자는 다시 개강을 허락하지 말것이니, 이러한 무리들은 본읍으로부터 먼저 시강한 뒤에서 뽑아서 도사(都事)에게 보고하여 혼잡을 이룸이 없게 할 것.

1. 강안(講案)에서 누락된 자와 속포(贖布) 바칠 것을 거부하는 자, 대리로 강을 한 자 및 부동(符同)하여 농간을 부린 재임(齎任)은 모두 군역에 강정(降定)할 것.

1. 외방(外方)에서 군역을 회피하는 무리가 칭호를 따로 만들어 한가로히 놀고 있는 경우 및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의 소속 아래에 있는 재생(齎生)으로서 교생(校生)과 상등(相等)한 유(類)는 또한 교안(校案)에 이름을 올려 일

屬下齎與校生相等之類，亦爲係名於校案，一體考講。一，年十五以上抄出考講，五十以後則除講除贖。一，北道及西關之江邊七邑校生，則連三次不通，然後降定軍役，乃是朝家優恤之意也。今後連三次不通者，亦勿定役，使之納贖。一，諸道各邑落講校生贖布，各其監營旬管，以其數報于備局，以爲補用於蠲減白骨徵布之資。” 竝命頒行于諸道。蓋五軍門軍制，則大抵閱鎮厚所改定也，水軍減布，金構所建議，而變通節目，則兪集一專掌成之，校生落講徵布節目，李濡獨自爲之。

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卷之四十

	<p>체로 고강하게 할 것.</p> <p>1. 나이 15세 이상을 뽑아서 고강에 나가도록 하고 50세 이후면 강(講)을 면제하며 속포도 면제할 것.</p> <p>1. 북도(北道)와 서관(西關)의 강변(江邊) 7읍의 교생은 연달아 3차를 불통한 연후에 군역으로 강정(降定)했으니 이는 곧 조정의 우대하고 홀민(恤民)하는 뜻이므로, 금후로 연 3차 불통자 역시 군역을 정하지 말고 속포를 바치게 할 것.</p> <p>1. 제도(諸道) 각읍의 낙강 교생의 속포(贖布)는 각기 감영에서 관장(管掌)하고, 그 수량을 비변사에 보고하여 백골 징포를 견감(蠲減)하는 밑천에 보충해 쓰도록 하소서.”</p> <p>하니, 아울러 제도(諸道)에 반포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대개 오군문(五軍門)의 군제(軍制)는 민진후(閔鎭厚)가 개정한 것이요, 수군(水軍)의 감포(減布)는 김구(金構)가 건의한 바이며, 변통 절목(變通節目)은 유집일(兪集一)이 전적으로 관장하여 성안했고, 낙강한 교생의 징포 절목(徵布節目)은 이유(李濡) 혼자서 만든 것이다.</p>	
<p>숙종 41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1월 3일 (무술) 2번째기사</p>	<p>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p> <p>“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 그런데 요즈음 해마다 흉년이 거듭 들어서 백성들이 바야흐로 신음하고 있으므로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은 마음이 백성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데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더구나 새봄을 맞이하여 동작(東作)12945)의 시기가 멀지 않으니, 어루만져 안집(安集)시키고 농상(農桑)을 권장하는 것이 진실로 급선무이다. 삼남(三南)의 재해(災害)를 가장 심하게 입은 곳에 대해서는 뜻을 기울여 구제하도록 하되, 불에 타는 사람을 구해내듯,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 해야 할 것이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별도로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내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본받게 하라. 그리고 군제(軍制)의 경우 조정에서</p>	<p>備忘記： 噫！民惟邦本，本固邦寧，而比歲荐饑，民方殿屎，夙夜一念，未嘗不在於懷保也。矧當新春，東作不遠，撫摩安集，勸課農桑，固皆急先之務，而在於三南被災最甚之處，着意濟活，不啻若救焚拯溺也。其令廟堂，別飭道臣，用體予軫恤元元之意。若夫軍制，朝家稍加釐正節目，纔頒中外，諸臣遵而不撓，少慰軍民之望。</p>

	<p>조금 이정(釐正)한 절목(節目)을 중외(中外)에 이제 막 반포하였으니, 여러 신하들은 준수하여 동요되지 말고 조금이라도 군민(軍民)의 소망을 위로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숙종 41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1월 13 일(무신)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대보단(大報壇)의 제기(祭器)와 규찬(圭瓚)12972) 은 한결같이 종묘(宗廟)에서 사용하는 체제와 모양을 따를 것을 품(稟)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p>	<p>禮曹以大報壇祭器、圭瓚，一從宗廟所用制樣爲稟，允之。</p>
<p>숙종 41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2월 10 일(갑술)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유(李濡)가 나아가 말하기를, “며칠 전 유생(儒生)이 올린 상소에 대하여 비답을 내릴 때 어제시(御製詩)를 함께 내리셨는데, 겸양하시는 뜻이 글 밖으로 넘쳤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야(草野)의 상소가 이와 같으니 여러 사람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와 같은 경사(慶事)를 만나게 되면 더러는 존호(尊號)를 청하기도 하고 더러는 진연(進宴)을 청하기도 하였으니, 비단 오늘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연 한 조목은 더욱 시국이 균색하다는 이유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고(故) 상신(相臣) 신흠(申欽)이 분명히 결정한 의논이 있으니 왕세자(王世子)가 성효(誠孝)로써 마땅히 상소하여 청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상(聖上)께서 아무리 겸양하여 억제하지만 어찌 날날이 모두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유득일(兪得一)과 승지(承旨) 김만채(金萬採)가 번갈아 시행하기를 청하였는데, 유득일이 더욱 극력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해에 예조 판서가 이것을 청하였으니 실로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그때 이미 결단코 윤허하여 따르기 어렵다는 뜻을 보였고 인하여 회포를 쓴 시(詩)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초야(草野)의 상소가 또 이와 같기 때문에 특별히 지</p>	<p>甲戌/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李濡進曰：“日昨儒疏賜批時，兼下御製，謙挹之旨，溢於辭表，群下咸聳。今者草野之疏如此，群情可見。自古若值如此之慶，則或請尊號，或請進宴，非今斯今。進宴一款，尤不可以時詘爲諉，故相臣申欽，明有定論。以王世子誠孝，宜有疏請。上雖謙抑，豈可每每不從乎？”兵曹判書兪得一、承旨金萬採，交口請行，得一言之尤力。上曰：“頃年禮判，以此爲請，實是萬萬意外。其時既示決難允從之意，仍有書懷之詩。今者草野之疏又如此，故特以所製詩，開示予意，更何言哉？”大司諫李廷謙曰：“世子率群臣上壽，少無歉於聖德矣。”濡又請之，校理趙道彬亦請之，上不從。廷謙力陳李濟罪罷之冤，上命勿罷。廷謙又言：“崔</p>

	<p>은 시(詩)로 나의 뜻을 보였으니, 다시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정겸(李廷謙)이 아뢰기를, “세자(世子)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상수(上壽)13025) 하는 것이 조금도 성덕(聖德)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이유(李濡)가 또 청하였으며, 교리(校理) 조도빈(趙道彬) 또한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정겸(李廷謙)이 이제(李濟)가 죄로 파직된 원통함을 극력 진달하니, 임금이 파직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정겸이 또 최계옹(崔啓翁)은 단연코 다른 마음이 없었는데도 파면하여 체직시키는 데 이르렀으니 언로(言路)를 여는 바가 아니라고 말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최계옹(崔啓翁)이 대신(大臣)을 침해하여 욕을 보였으니 어찌 이와 같은 사체(事體)가 있겠는가? 언관(言官)이란 이유로써 용서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정겸(李廷謙)이 말하기를, “조태억(趙泰億)의 경우는 최계옹(崔啓翁)의 존스런 태도와는 너무나 달라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진달하여 시휘(時諱)13026) 에 크게 저촉되었으니, 오늘날 언관(言官)되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신하는 장려할 만하여 죄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p>	<p>啓翁，斷無他腸，至於罷遞，非所以開言路。” 上曰：“啓翁侵辱大臣，豈有如許事體？不可以言官恕之矣。” 廷謙曰：“趙泰億則殊異啓翁之鄉態，而有聞畢陳，大觸時諱。今日爲言官，不亦難乎？此兩臣，可獎而無可罪矣。”</p>
<p>숙종 41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2월 21 일(을유) 4번째기사</p>	<p>경상도(慶尙道)의 기민(飢民)을 구휼하였는데, 각 고을에서 보고한 토지가 없는 기민이 모두 3만 9천 2백 56명이었으며, 도내(道內)에 전염병이 크게 발생해서 전후(前後)를 통하여 한창 앓는 자가 2백 35명이고 사망(死亡)한 자가 28명이었다. 도신(道臣)이 이 내용을 장계(狀啓)로 알렸다.</p>	<p>慶尙道飢民設賑，各邑所報無土飢民，竝三萬九千二百五十六名。道內染病亦爲熾發，通前後方痛者，二百三十五名，物故者二十八名。道臣以此狀聞。</p>
<p>숙종 41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3월 9일 (계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친히 명(明)나라 신종 황제(神宗皇帝)를 제사하였다. 자시(子時)에 임금이 의춘문(宜春門)으로부터 금원(禁苑) 북쪽을 따라 서쪽으로 가서 조종문(朝宗門)을 나가 단(壇)이 있는 곳에 이르러 제사를 거행하였다. 그 제문(祭文)에 이르기를,</p>	<p>癸卯/上詣大報壇，親祭大明神宗皇帝。子時，上自宜春門，循禁苑北而西，出朝宗門，詣壇所行祭。祭文曰：明承天命，誕撫四夷，惟帝御宇，我昭</p>

“밝게 천명(天命)을 받으시고, 크게 사이(四夷)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황제(皇帝)께서 재위(在位)하신 것은 우리 나라의 소경(昭敬)13118) 의 시기였으니, 크게 덮어 주신 덕화(德化)는 하늘처럼 컸습니다. 요복(要服) 보기를 수복(綬服) 보듯이 하여 문교(文教)를 펴고 무력(武力)을 떨쳤습니다. 그때에 만이(蠻夷)13119) 가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달라 하기에 의리(義理)로 대항하여 물리치니, 흉악한 칼날이 우리를 먼저 찔렀습니다. 우리의 칠실(七室)13120) 을 불태우고 우리의 팔도(八道)를 도륙하였으므로, 한구석으로 파친(播遷)가서 계시던 선왕(先王)께서 부모(父母)13121) 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였습니다. 황제께서 이에 노련하신 무력으로 장수(將帥)에게 명하여 와서 구원하게 하셨으니, 10만의 군사와 억만의 군량(軍糧)이었습니다. 황제의 위엄이 떨치는 바는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아서 요망한 기운이 곧바로 사그라지고 문득 강토[疆場]를 회복하였습니다. 조정의 논의가 처음에 두 갈래로 갈리었는데 오직 황제께서 이에 결단을 하셨으며, 참소하는 말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또한 오직 황제께서 분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멸망할 것을 보곤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제함이 있으신 것은 우리 황제의 현명함에 연유한 것이니, 무릇 이처럼 재생(再生)시켜 주신 것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이에 우리 제후(諸侯)의 지켜야 할 법도(法度)에 있어 더욱 공경을 바치었으며, 맹세코 자자손손(子子孫孫) 길이 조종(朝宗)13122) 을 바치려고 기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통(大統)이 3백 년으로 그치고 말았습니까? 종거(鍾簏)13123) 는 이미 옮겨 가고, 관구(冠屨)13124) 는 드디어 전도(顛倒)되었습니다. 중간에 일어난 변고(變故)들은 차마 무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힘이 미약한 것만 가슴아플 뿐, 은혜야 어찌 감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중하(中夏)가 풍미(風靡)하기를 희망하였는데 뜻이 이룩되지 않았으나, 그 뒤로 삼세(三世)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이(懈弛)하지 않고 있습니

敬時。丕冒之化，覆疇同大，視要如綏，揆教奮衛。時有卉服，于我假道，抗義以斥，凶鋒先劊。燬我七室，劉我八路，越在一隅，父母是愬。帝乃耆武，命將來援，十萬其師，億秭其運。皇威所振，若霆之擊，妖祲旋豁，奄復壇場。廷議初貳，惟帝是斷，讒說繼騰，亦惟帝辨。既存我亡，又憐我誠，始終有濟，由我帝明。凡此再造，伊誰之力？肆我侯度，益致其恪。誓期子孫，永效朝宗，云胡大曆，三百而終？鍾簏既移，冠屨遂倒，中間變故，蓋不忍道。自傷力弱，恩豈敢忘？尚希夏靡，而志未成。爾來三世，一念靡懈，嗟臣不肖，寢遠聖代。顧我屬國，至今猶活，而其大德，未報萬一。眷言西悲，述職何所，荒涼寢園，芬苾誰舉？曷以薦享，我心斯展？爰築靈壇，義取郊典。籩簋之式，奠獻之禮，倣于皇制，意亦有在。噫茲春季，靈運攸窮，人情既感，神理可通。絜神於天，譬水在地，惟誠之格，奚間遠邇？故國腥膻，于何陟降？昔所漸被，今宜胥蠶。龍旗鳳旌，彷彿東指，誰其衛侍，有臣楊李。芒芒海域，猶戴

다. 아! 신(臣)은 불초(不肖)하고, 성대(聖代)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돌아보건대, 우리 속국(屬國)은 지금까지 오히려 존재해 있는데도 그 큰 덕(德)은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쪽을 돌아보면 비감(悲感)만 일어나니 어느 곳에 술직(述職)13125) 하겠으며, 황량(荒涼)한 침원(寢園)13126) 에는 누가 제사를 올리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천향(薦享)하여야 제 마음을 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영단(靈壇)을 쌓았으니 의리는 교전(郊典)13127) 에서 취한 것이며, 변례(邊籥)의 의식(儀式)과 전헌(奠獻)의 예(禮)는 황제(皇制)를 모방하였으니, 여기에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아! 이 계춘(季春)에 영운(靈運)이 다해 갑니다. 인정(人情)이 이미 감동(感動)되었으니, 신리(神理)를 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신(神)이 하늘에 계시는 것은 물이 땅에 있는 것에 비유되니, 정성이 있으면 감통(感通)하는 것은 어찌 멀고 가까운 차이가 있겠습니까? 고국(故國)이 오랑캐의 땅이 되었으니, 혼령이 어디로 오르고 내리시겠습니까? 예전에 은택을 입었으니, 이제 마땅히 진기(振起)시켜야 합니다. 용기(龍旗)와 봉정(鳳旌)이 흡사 동쪽을 가리키는 듯한데, 누가 시위(侍衛)하는가 하면 신하 양(揚)13128) ·이(李)13129) 가 있습니다. 머나먼 해역(海域)에서도 오히려 황제의 인덕(仁德)을 떠받들고 있으니, 아마도 영령(英靈)께서는 웃으면서 쫓그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정결한 제사는 서직(黍稷)13130) 의 향기 로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존주(尊周)13131) 의 의리는 소경(昭敬)이 그 길을 열으셨고, 옛 은혜를 생각하여 그 뒤에도 폐기(廢棄)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조그마한 정성을 살피시어, 돌보아주고 도와주소서.”

하였는데,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진규(金鎭圭)가 지어 올렸다.】 단상(壇上)에 황색 장막을 둘러쳐서 방을 마련하여 거기에 신위(神位)를 봉안(奉安)하는데, 지방(紙榜)을 사용하였으며, 무(舞)는 팔일무(八佾舞)13132) 를 쓰고, 악장(樂章)을 지어서 연주하였다. 임금이 삼헌례(三獻禮)를 행하고, 음복

皇仁，庶幾揚靈，載笑不羶。矧伊明禮，非爲稷馨，尊周之義，昭敬是程。想惟舊恩，不棄其後，冀鑑寸悃，以願以祐。

【藝文提學金鎭圭製進。】設黃帳房於壇上，奉安神位，用紙榜，舞用八佾，撰樂章以奏。上行三獻禮，飲福禮畢，奉紙榜以燎。上親詣燎所，王世子率百官陪祭。上祭罷還宮，宣示御製、御筆于政院曰：

今曉祇詣皇壇，已舉殷禮。幾年經營，竟遂至願。事勢所拘，雖未准禮，此固可幸也。壇墀將事之際，恍若玉輅東巡，獲覩耿光，予懷當復如何？感極于中，自發於吟詠，所以示不忘也。嗟！爾銀臺、玉堂、秉筆之臣，其各和進。詩曰：“大報壇成肇祀親，時惟蠶月屬和春。衣冠濟濟班行造，磬筦將將醴幣陳。昔被隆恩銘在肺，今瞻神座涕沾巾。追思豈但微誠寓。切願寧陵聖志遵。

政院啓曰：“卽者司謁，以上教宣示。御製御筆，大報壇親祭後志感詩七言律一篇，竝序，臣等忙手開緘，聚首展玩，一字一句，皆從尊周血誠中流出，有以

(飲福)을 하였으며, 예(禮)가 끝나자 지방(紙榜)을 받들어 불살랐다. 임금 친히 지방을 불사르는 장소에 나아갔고, 왕세자(王世子)는 백관(百官)을 인솔하고서 임금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었다. 임금이 제사를 마치고 환궁(還宮)하여 어제(御製)·어필(御筆)을 승정원(承政院)에 알리고 말하기를,

“오늘 새벽에 공경히 황단(皇壇)에 나아가 이미 성대한 제례를 거행하였다. 몇년을 경영한 나머지 끝내 지극한 소원을 이루었으니, 일의 형세에 구애되어 비록 예(禮)에 준거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진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단(祭壇)에 올라서 제사를 지내려 할 때 황연(恍然)히 옥로(玉輅)13133)가 동으로 순수(巡狩)하여 경광(耿光)13134)을 보게 되는 듯하였으니, 나의 감회가 과연 어떠하겠는가? 감회가 마음에 가득하여 저절로 음영(吟詠)에 나타났으니, 잊지 않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아! 그대들 은대(銀臺)13135)와 옥당(玉堂)13136)과 병필(秉筆)13137)의 신하들은 각각 화답하는 시(時)를 지어 올리도록 하라.”

하였는데, 시(時)는 다음과 같다.

“대보단(大報壇) 이룩되어 비로소 친히 제사하니,
 시절은 잠월(蠶月)13138) 이라 화창한 봄날이네.
 관리들은 많고 성대하여 반열(班列)로 나아가고,
 주악(奏樂)을 연주하며 예폐(醴幣)를 진설(陳設)하네.
 예전에 융숭한 은혜 입어 가슴에 새기었는데,
 오늘 신좌(神座)를 쳐다보니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찌 다만 작은 정성을 기울일 뿐이라.
 영릉(寧陵)13139)의 성스러운 뜻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사알(司謁)이 주상의 전교로써 어제(御製)·어필(御筆)로 된 ‘대보단(大報壇)에 친히 제사한 뒤 감회를 적은 시’ 칠언률(七言律) 한 편(篇)과 병서(并

見大聖人所作出尋常萬萬。凡在瞻聆，孰不聳動？臣等一唱三歎，感涕自零，不知所以爲喻也。至於諸臣和進之命，可以匹休於廣載盛事。臣等文辭陋拙，恐不足以對揚休命，而聖教至此，敢不祇若？御製則請仍留院中，永作寶藏。”答曰：“知道。”翌日，都承旨黃欽、左承旨南致熏、右承旨趙泰東、左副承旨任胤元、右副承旨金致龍、同副承旨閔鎮遠、校理李肇、副校理南就明、修撰柳鳳輝、奉教李緯、待教洪禹瑞、假注書沈壽賢·金東弼·李眞儉·申畚等十五人，奉教和進。

	<p>序)를 알리기에 신 등이 바빠 봉함(封緘)을 열어 머리를 맞대고 펼쳐 보았습니다. 한 자(字) 한 구(句)가 모두 명(明)나라를 높이는 혈성(血誠) 가운데에서 흘러나와, 대성인(大聖人)께서 지으신 바가 보통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보고 듣는 사람이 누군들 공경하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은 일창 삼탄(一唱三歎)13140) 하여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바이며, 무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p> <p>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해 올리라는 분부에 있어서는 갱재(賡載)13141)의 훌륭한 일에 함께 다같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이 문사(文辭)가 거칠고 서툴러서 성상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들어 그 뜻을 널리 드높일 수가 없겠지마는, 성교(聖敎)가 이에 이르렀으니, 감히 공경하여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御製)는 그대로 승정원 안에 보관하여 길이 보장(寶藏)으로 삼기를 청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알겠다.”</p> <p>하였다. 그 다음날 도승지(都承旨) 황흠(黃欽), 좌승지(左承旨) 남치훈(南致薰), 우승지(右承旨) 조태동(趙泰東), 좌부승지(左副承旨) 임운원(任胤元),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치룡(金致龍), 동부승지(同副承旨) 민진원(閔鎭遠), 교리(校理) 이조(李肇), 부교리(副校理) 남취명(南就明), 수찬(修撰) 유봉휘(柳鳳輝), 봉교(奉敎) 이재(李緯), 대교(待敎) 홍우서(洪禹瑞), 가주서(假注書) 심수현(沈壽賢)·김동필(金東弼)·이진검(李眞儉)·신택(申奭) 등 15인이 전교를 받들어 시(詩)를 화답해서 올렸다.</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5월 2일 (갑자) 1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숙원 김씨 방(淑媛金氏房)에 사패(賜牌)13252) 하는 노비(奴婢)를 전례에 따라 정해 줄 일을 해사(該司)에 분부하라.”</p> <p>하였다. 이튿날 호조에서 아뢰기를,</p>	<p>甲子/傳曰: “淑媛金氏房賜牌奴婢, 依例定給事分付該司。” 翌日, 戶曹啓曰: “金淑媛房宣飯衣纒等物, 自封爵日爲始進排之意, 分付各該司。 田庄</p>

	<p>“김 숙원 방의 선반(宣飯)13253) ·의전(衣纏)13254) 따위 물건은 봉작(封爵)한 날부터 비롯하여 진배(進排)하라는 뜻을 각 해사에 분부하였습니다. 전장(田庄)을 살 가은(價銀) 4천 냥과 첨보두(添補豆) 1백 석(石)은 전례에 따라 본조(本曹)에서 실어 보내졌습니다마는, 첨보미(添補米)는 선혜청(宣惠廳)에서 실어 보내게 하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p> <p>하였다.</p> <p>사신(史臣)은 말한다. “임금이 춘추가 많아져 편찮을 때가 많은데, 내총(內寵)은 줄지 않고 또 신총(新寵)이 있어, 정사(政事)를 열도록 재촉하여 또한 봉작하였다. 못 신하가 근심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애석하게도 색에 대한 경계를 갖추 아뢰어 임금의 뜻을 깨우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또 작호(爵號)가 있는 후궁(後宮)에게는 으레 사여(賜與)가 있어 전택(田宅)·노비(奴婢)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국용(國用)을 소모하고 민폐를 끼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 궁장(宮庄)의 절수(折受)가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고, 백성이 생업을 잃고 고을들이 조폐(凋弊)하는 것이 흔히 여기에서 말미암으므로, 신하들이 여러 번 상소에 언급하였으나, 임금은 따르지 못할 뿐더러 이와 같이 더하니, 식자가 한탄하였다.”</p>	<p>買得價銀四千兩，及添補豆一百石，依例自本曹輸送，而添補米，則請令宣惠廳輸送。” 傳曰：“允。”</p> <p>【史臣曰：“上春秋向衰，未寧時居多，而內寵不衰，又有新寵，促令開政，亦爲封爵。 群下莫不憂之，惜乎，無一人備陳在色之戒，以悟上意也。 且後宮有爵號，則例有賜與田宅臧獲，無不贍足，其耗國用而貽民弊，非細故也。 宮庄折受，爲今痼弊，黎元失業，郡邑凋弊，多由於此。 諸臣累及於疏章，而上非徒不能從，又附益之如此，識者爲之竊嘆。”】</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5월 12 일(갑술) 1번째기사</p>	<p>이에 앞서, 명빈방(愼嬪房)의 차인(差人)이 고(故) 능천 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厚)의 후손인 구혁(具赫)의 전지(田地) 약간을 싼 값으로 억지로 샀는데, 차인 최필(崔秘)이 이로 말미암아 구인후의 내외 자손 집의 전지와, 구혁이 관 전지의 경계에 연결된 밀양(密陽)의 4백석지기와 김해(金海)에 있는 너댓 결(結) 이상을 죄다 빼앗고, 사기 전 1년의 세곡(稅穀)도 아울러 빼앗았으므로, 찰방(察訪) 구태주(具泰柱)가 연유를 갖추어 한성부(漢城府)에 정변(呈辨)하였으나, 해마다 결정(決正)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판윤(判尹) 민</p>	<p>甲戌/先是，愼嬪房差人，以賤直勒買故綾川府院君具仁厚後孫具赫之田如干。 差人崔秘，因此盡取仁厚內外子孫家田，與具赫所賣田連界者，密陽四百石播種處，及金海四五結以上，而竝與未買前一年稅穀而奪之。 察訪具泰柱，具由呈辨于漢城府，而連年未決。</p>

	<p>진후(閔鎭厚)가 반복하여 추핵(推覈)하였더니, 과연 구태주가 정소(呈訴)한 것과 같고 최필의 공사(供辭)도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므로, 민진후가 해조(該曹)로 하여금 최필을 가두어 죄주고, 산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집의 전지를 낱낱이 측량하여 내어 주며, 신사년(1326) 이전의 세곡도 찾아서 본주(本主)에게 주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한편의 말만으로는 믿을 만하지 못하니, 해조로 하여금 분명하게 사핵(查覈)하여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p>	<p>至是，判尹閔鎭厚反覆推覈，則果如泰柱所訴，秘供辭，亦不能自明。鎭厚請令該曹，囚秘科罪，除買得外，各家田一一打量出給，辛巳以前稅穀，亦推給本主，批曰：“一邊之言，不足取信。令該曹 明查稟處。”</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6월 10 일(임인)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당초에 서로(西路)의 적곡(糶穀)에 축난 것이 많으므로, 유망(流亡)하거나 절호(絶戶)된 것은 탕척(蕩蕪)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그때의 수령(守令)들이 이에 따라 터무니없이 수를 불러 탕감(蕩減)하였다. 그 수가 많아 30여만 석(石)이나 되었으므로 조정에서 다시 사핵(查覈)하게 하였더니, 각 고을에서 게을리하여 끝까지 사핵하지 않고, 늘거나 준것이 없다고 첩보(牒報)한 자가 31인이나 되는 많은 수에 이르렀다.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이 전에 순안(順安)을 맡았을 때에 또한 감사(監司)의 장문(狀聞) 가운데에 들어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우의정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이것은 사유(赦宥) 이전의 일에 관계되니, 한결같이 아울러 나문(拿問)을 청할 수 없으나, 또한 파직(罷職)·추고(推考)로만 그칠 수도 없습니다. 청컨대 입시(入侍)한 신하들에게 물으소서.” 하였다. 판윤(判尹) 민진후(閔鎭厚)가 참작하여 죄를 정하기를 청하고, 병판(兵判) 유득일(兪得一)은 말하기를, “신하의 죄는 속이는 것이 중대한 것이 되니, 어찌 추고하고 말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유득일이 사계(查啓)를 찾아 보고 비로소</p>	<p>壬寅/引見大臣。備局諸臣。初，西路糶穀，多逋欠，有流亡絶戶蕩蕪之命。其時守令，因此虛張蕩滅，其數多至三十餘萬石。朝家使之更查，則各邑慢不究覈，以無加減牒報者，至於三十一人之多。慶恩府院君金柱臣，以曾任順安，亦在監司狀聞中。至是，右議政李濡啓曰：“此係赦前事，有難一併請拿，亦不可罷職推考而止。請問于入侍諸臣。”判尹閔鎭厚請參酌定罪，兵判兪得一曰：“人臣之罪，欺瞞爲重，何可推考而止?”上不答。得一搜見查啓，始驚曰：“簿書浩多，不能詳察，豈勝惶恐? 國舅體貌與大臣同，何可與他同論乎?”上曰：“國舅有請拿請罷之例乎? 終不區別，混同請罪，殊甚未安。勿論。”濡曰：“查啓</p>

	<p>놀라 말하기를, “문부(文簿)에 적힌 것이 매우 많아서 상세히 살필 수 없으니, 어찌 황공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국구(國舅)의 체모는 대신(大臣)과 같은데, 어찌 다른 사람과 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구도 나문을 청하거나 과직을 청한 전례가 있는가? 끝내 구별하지 않고 혼동하여 죄를 청하니, 매우 미안하다. 논하지 말라.” 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사계 가운데에 있는 수령들도 모두 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어찌 다시 말하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병판은 사계를 가져다 본 뒤에 비로소 운운하였고, 당초에는 조금도 구별한 일이 없었다. 대신이 어찌하여 이러한가? 대신도 또한 미안하다. 이 일은 계하(啓下)13268) 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비국의 여러 신하들이 반드시 살펴보았을 것인데, 유득일의 말은 이제 비로소 볼 수 있었던 듯이 하니, 매우 정직하지 못하다.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 이유도 또한 대죄(待罪)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앞서 을유년(13269) 의 역서(曆書)가 완성되었는데, 청국(淸國)의 역서가 나오자 11월·12월의 대소(大小)가 서로 틀리므로, 본감(本監)에서 아뢰어 해당 역관(曆官)을 가두고 다시 산술(算術)에 밝은 자를 시켜 두세 번 계산하게 하였더니, 역관들이 ‘모두 해당 관원들이 추산(推算)한 것과 같고, 조금도 착오가 없다.’ 하므로, 본감에서 해당 관원을 석방하기를 청하고, 이어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반행(頒行)하기를 청하였다. 그 뒤에 역관들이 다</p>	<p>中守令，竝勿論乎?” 上曰：“既命勿論，更何云乎?” 又曰：“兵判取見查啓之後，始有云云，當初少無區別之事。大臣何乃如此? 大臣亦未安矣。此事啓下已久，備局諸臣，必已考見，而愈得一之言，有若今始得見者然，殊甚不直。從重推考。” 濡亦待罪，上曰：“勿待罪。” 先是，今乙酉曆書既成，淸國曆書出來，則十一月、十二月大小，與之相左。本監以此啓達，囚禁當該曆官，更令算術精明者，再三叩算，則曆官等以爲：“一如該官等所推算，少無差謬”云，本監請釋該官，仍請以我國曆書頒行矣。其後曆官等，復以爲：“求得往日赴京學算官遺置寫本一冊，則紙頭有細字數行，即所謂各年年根，而以四宮空九度加之，爲次年年根。試以此法而推算，則各年年根，無不脗合。至於今年年根，以此法較之，則二宮十空度，而本監《文字冊》所印，則二宮十四度也。以十空度，較諸今年與淸曆，果爲相符。空字四字相左，致有大小月之不同”云。本監以此意更啓，且曰：“取考冊子，果如其言。所謂《文字冊》者，乃西洋</p>
--	---	---

	<p>시 말하기를, “전일 부경(赴京)하여 산법(算法)을 배운 관원이 남겨둔 사본(寫本) 한 책에는 지두(紙頭)에 잔 글씨 두어 줄이 있었는데, 곧 이른바 연근(年根)이었으며, 4궁(宮)에서 비는[空] 9도(度)를 더하여 다음해의 연근을 만들었습니다. 시험 삼아 이 방법으로 추산하였더니, 각년(各年)의 연근이 모두 꼭 들어맞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올해의 연근에 이르러서도 이 방법으로 견주어 보았더니, 2궁에서 10궁도(空度)였는데, 본감의 《문자책(文字冊)》에 인쇄된 것은 2궁 14도였습니다. 10궁도로 올해에 견주면 청력(淸曆)과 과연 서로 들어맞는데, 공자(空子) 4자(字)가 서로 어긋나므로 대월(大月)·소월(小月)이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p> <p>하므로, 본감에서 이 뜻으로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책을 가져다 살펴보았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았습니다. 이른바 《문자책》이란 곧 서양(西洋)의 신법(新法)인 일전표(日躔表)·월리표(月離表)인데, 갑오년(1327)에 배워 올 때에 한 건(件)을 사 와서 인간(印刊)하여 전한 것입니다. 그 지두에 쓴 것은 곧 산법(算法)에서 임시로 빼 놓은 것인데, 그때 배워 온 관원이 미처 본책 가운데에 인간하여 넣지 못하였으므로, 4자가 잘못 인쇄되게 하였습니다. 역관들이 구습에 따라 추보(推步)하여 이토록 착오가 나게 하였다면, 이것은 태만하여 잘못 계산한 따위는 아니고, 해당 관원이 깊이 연구하지 못한 것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 11월·12월 장(張)은 제때에 미처 개정(改正)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어(進御)한 삼력일과(三曆日課)는 도로 내려 고쳐서 인쇄해 들이고, 대월·소월은 청력에 따라 시행한다는 뜻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팔도에 행회(行會)13271) 하게 하소서. 그리고 《문자책》의 진본(眞本)도 청컨대 이번의 절사(節使)가 갈 때 산법을 조금 잘 아는 자를 들여보내 사 오게 하여 바로잡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승지(承旨) 허지(許堧)가 말하기를,</p>	<p>新法日躔表月離表，而甲午年學來時，實得一件刊傳者也。其紙頭所書，卽算法假令之遺漏者，而其時學來之官，未及刊入于本冊中，致有四字之誤印，而曆官輩，因循推步，以致差誤至此，則此非怠慢誤算之比。當該官似不深究，而既知其誤，十一月、十二月張，不可不及時改正。進御三曆日課，還下改印以入，大小月從淸曆施行之意，令該曹，行會八道。《文字冊》眞本，請於今番節使時，入送稍解算法者，實來釐正。”從之。其後，承旨許堧以爲：“曆法關係至重，精加推算，俾無差謬者，乃其職耳。淸曆出來，始覺其相左，自朝家推問，則所當精究其度數，以驗《文字冊》之誤刊與否，而謂之推算不差，反謂淸曆之差謬。今當新曆造出，眞僞難掩之日，始有所云云，無論情實之如何，莫重曆書，致令差謬，至於御覽曆書，有此改修之舉，烏得無罪？當該官，請令攸司科罪。”乃勘以杖八十收贖之律。至是，禮曹判書尹世紀啓曰：“曆官輩前後所言，大相違拂，其彌縫周遮，欲掩其不謹之狀，終無所逃。以《書傳》所載曆象</p>
--	--	---

“역법은 관계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정밀하게 추산하여 착오가 없게 하는 것이 그 직분입니다. 청력이 나와서야 비로소 서로 다른 것을 깨닫고 조정에서 추문(推問)하였으며, 정밀하게 그 도수(度數)를 연구하여 《문자책》이 잘못 인간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인데, 추산이 틀리지 않았다 하여 도리어 청력이 틀렸다 하였습니다. 이제 신력(新曆)을 만들어 내어 진위(眞僞)를 엄폐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운운하였는데, 실정이 어떠한지를 물론하고 막중한 역사를 틀리게 하고, 어람(御覽)하는 역서까지도 이렇게 고치는 일이 있었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해 관원을 청컨대 유사(攸司)를 시켜 죄주게 하소서.”

하니, 장(杖) 80에 수속(收贖)하는 율(律)로 감죄(勘罪)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예조 판서 윤세기(尹世紀)가 아뢰기를,

“역관(曆官)들이 전후에 말한 것이 크게 서로 어그러지니, 임시변통으로 둘러 대어 그 삼가지 않은 것을 엄폐하려는 정상을 끝내 피할 수 없습니다. 《서경(書經)》에 실려 있는,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역상(曆象)13272) 하여 공경히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 주라.’ 하고, ‘희화(羲和)13273) 가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천상(天象)에 혼미하니, 제때에 앞서게 한 자도 죽여 용서하지 않고, 제때에 미치지 못하게 한 자도 죽여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면, 그 죄가 매우 무거우므로 가벼운 벌에 그칠 수 없습니다. 또 개인(改印)하여 반포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니, 중률(重律)로 논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이유(李濡)가 참작하여 도배(徒配)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개인적으로 진휼(賑恤)한 강승석(姜承碩) 등이 8백여 인을 완전히 살렸으니, 논상(論賞)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례를 살펴서 품처(稟處)하라고 명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日月星辰，敬授人時，與羲和尸厥官，昏迷天象，先時者，殺無赦，不及時者，殺無赦之義觀之，其罪甚重，不可薄罰而止。且改印頒布，曾所未有之舉也。似當論以重律。”上問大臣。濡請參酌徒配，從之。鎭厚言：“私賑人姜承碩等，全活八百餘人，宜論賞。”上命考例稟處。又言：“李如梅，壬辰以欽差義州鎮守參將，隨提督如松而來，丁酉再來，兄弟俱有再造之勳。其孫成龍，遼河之戰，來托我國，冀朝家之念其先庇護之也。今我聖上，克明大義之日，宜加撫恤其宗孫，世付司勇一遞兒，衆孫中一人，隨才錄用，則似有光於樹風聲之政矣。”濡亦以爲言，上悅從之。鎭厚又言：“當褒贈李之茵”，遂贈議政。之茵，號土亭，宣祖朝聞人也。鎭厚又請追伸皇甫仁、金宗瑞之冤，復其官爵，上重之，命問于諸大臣。

	<p>“이여매(李如梅)는 임진년(13274)에 흠차 의주 진수 참장(欽差義州鎮守參將)으로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을 따라 오고, 정유년(13275)에도 다시 와서 형제가 다 재조(再造)한 공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이성룡(李成龍)이 요하(遼河)의 싸움 때에 우리 나라에 와서 의탁한 것은 국가에서 그 선조를 생각하여 감싸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상께서 능히 큰 의리를 밝히시는 때이니, 그 종손(宗孫)을 돌보아 대대로 사용(司勇)한 체아(遞兒)를 주고, 중손(衆孫) 가운데서 한 사람은 재주에 따라 등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풍성(風聲)을 세우는 정사에 빛이 있을 듯합니다.”</p> <p>하고, 이유도 말하니, 임금이 기뻐서 따랐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이지함(李之菡)을 포증(褒贈)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드디어 의정(議政)을 증직(贈職)하였는데, 이지함은 호가 토정(土亭)으로서 선조(宣祖) 때에 이름난 사람이다. 민진후가 또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의 억울함을 추신(追伸)하여 그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이 어렵게 여기고 대신에게 물으라고 명하였다.</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7월 8일 (기사) 2번째기사</p>	<p>9월 13일에 진연(進宴)을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예조 판서 윤세기(尹世紀)가 우의정 이유(李濡)와 함께 연석(筵席)에서 내연(內宴) 13293)도 아울러 베풀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예조의 계품(啓稟)에 따라 이 명이 있었는데, 며칠 뒤에 이유가 윤세기와 함께 입시(入侍)하여 내연도 아울러 베풀기를 힘껏 청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윤허하였다. 승지 최중태(崔重泰)가 아뢰어 청할 때에, 심지어 관동(關東)을 안찰(按察)할 때에 수령(守令)이 내연을 멈춘다는 통보를 듣고 모두 다 담(膽)이 떨어졌다고 아뢰기까지 하였으므로, 그때의 의논이 비웃었다.</p>	<p>命以九月十三日，設行進宴。前此禮曹判書尹世紀，與右議政李濡，於筵席，請竝設內宴，上不許。至是，因禮曹啓稟，有是命，後數日，濡與世紀入侍，力請竝設內宴，上初難而終許之。承旨崔重泰陳請之際，至以按關東時守令聞停內宴之報，莫不膽落爲達，時議嗤笑之。</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7월 14</p>	<p>병조 참판 김진규(金鎭圭)가 상소(上疏)하여 내연(內宴)을 아울러 베풀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이미 선조(宣祖) 때의 전례를 따른 것인데, 내향(內享)은 선조께</p>	<p>兵曹參判金鎭圭，上疏陳內宴竝設之不可以爲： 今日之舉，既遵宣廟朝例，而內享則宣</p>

<p>일(을해) 2번째기사</p>	<p>서 끝내 윤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향례(享禮)는 세자가 주장하는 것인데, 빈궁(嬪宮)이 바야흐로 아버지의 상중(喪中)에 있으니, 예(禮)에 있어서도 그 곁에서 풍악을 울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향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내외(內外)가 상수(上壽)하는 예(禮)를 갖출 수 없습니다.”</p> <p>하고, 이어서 말하기를</p> <p>“어제 밤새도록 사나운 바람이 불어 큰 나무가 많이 뽑히고 벼가 쓰러져 상하였는데, 이것은 주(周)나라 때에 백성이 크게 두려워한 것이니, 작은 재이(災異)라 할 수 없습니다. 예관(禮官)은 직무가 재이를 맡았는데, 천재(天災)가 막 있던 날에 성상께서 윤택하시지 않는 내연을 청하였으니, 무슨 까닭입니까?”</p> <p>하고, 끝에 다시 이 일에 이의(異義)하였다 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의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답하였다.</p>	<p>廟終不許。且此享禮，世子所主，而嬪宮方持父喪，於禮不可舉樂於其側。若爲此而使不與宴，則不得備內外上壽之禮。</p> <p>仍言昨者獐風竟夜，大木多拔，禾穀偃傷，此周時邦人之所大恐，不可謂小災。禮官，職掌災異，而乃請聖上所不許之內宴於新有天災之日，何哉？末復以異議於茲事，請罪，上答以勿待罪。</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7월 14 일(을해) 3번째기사</p>	<p>왕세자가 상소하기를,</p> <p>“봄에 칭경(稱慶)에 대한 청은 마침내 윤택받았으나, 진연(進宴)하는 일은 곧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디 겸손하시는 성덕(盛德)에서 나온 것이나, 지극한 정의(情意)가 달려 있는 바이므로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지난번 예관(禮官)이 아뢰어 청함에 따라 비로소 윤택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하찮은 정성을 펼 수 있는 것일 뿐이 아니라, 대개 온 나라 안이 크게 바라는 정의에서 나온 것이니, 조정에 있는 신하는 다른 말이 없어야 마땅할 것인데, 김진규(金鎭圭)만은 유독 그것이 옳지 않다고 아뢰므로, 곧 내연(內宴)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신이 곧 다시 청해야 마땅하겠으나, 번독(煩瀆)하기가 두려워서 오히려 이렇게 늦었습니다. 일전에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간절히 말하여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내연도 아울러 베풀도록 윤택하셨으므로, 길일(吉日)이 이미 가려지고 성례(盛禮)가 장차 거행될 것이라 기쁨을 금할수 없었고, 구구한 정의를 조금 펼 수 있을 듯하였는데, 이제 김진규가</p>	<p>王世子上疏曰：</p> <p>伏以，春間稱慶之請，終蒙允許，而進宴一款，未卽舉行。此固出於挹遜之盛德，而至情所在，不勝缺望矣，頃仍禮官之陳請，始得蒙允。此不但臣之微誠獲伸也，蓋出學國顛望之情，則在廷之臣，宜無異辭，而金鎭圭獨陳其不可，旋寢內宴。臣卽當更請，而煩瀆是懼，尙此遲待矣。日昨大臣、諸臣，苦口筵奏，內宴亦許竝設，吉日已涓，盛禮將舉，竊不勝欣幸，庶可少伸區區之情，而今者金鎭圭，又爲提起，強執前見，必欲沮戲而後已。昔我宣祖朝，</p>

	<p>또 이론을 제기하여 전의 소견을 고집하며 반드시 방해하고야 말려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조(宣祖朝) 때 진연(進宴)하는 일을 당초에 겸양하여 윤택하지는 않았으나, 그때 이처럼 방해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규가 사제(私制)의 작은 예절에 핑계대어 드문 성례(盛禮)를 막으려 하니, 신은 저으기 개탄하는 바입니다. 아버이를 위하는 마음은 귀하건 천하건 한 가지입니다. 여염집의 상정(常情)으로 말하더라도 잔을 올려 헌수(獻壽)하는 일을 양친에게 아울러 베풀지 못하면 그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정의가 있는 데 따라 예도 혹은 따라서 바꿀 수 있으므로, 굽히고 높이거나 낮추는 도리를 성현(聖賢)도 때때로 썼으니, 이것이 이른바 임시 변통하되 그 바른 것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신의 상소와 대신과 여러 신하들의 간청을 굽어 살피시고 뜻밖에 일어난 논의에 흔들리지 마시어, 그대로 내연을 윤택하여 지극한 정의를 펴게 해 주소서.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행이겠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소(疏)의 사연은 본디 지극한 정의에서 나온 줄 안다마는, 김진규의 소는 의견이 같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방해할 뜻이 있겠는가?”</p> <p>하였다.</p>	<p>進宴一款，初雖謙讓不許，而其時未聞有如許沮戲之論。今鎮圭，托於私制之小節，欲沮稀有之盛禮，臣竊慨然也。爲親之心，無貴賤一也。雖以閭家常情言之，稱觴獻壽，不能竝設於兩親，則於其心安乎？情之所在，禮或隨變，故壓屈隆殺之道，聖賢亦有時而用之，此所謂權而不失其正者也。伏願聖明，俯察臣疏及大臣諸臣之懇，無撓於橫生之論，仍許內宴，以舒至情，不勝幸甚。</p> <p>答曰：“疏辭固知出於至情，而金鎮圭之疏，不過意見之不同，豈有沮戲之意也？”</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7월 23 일(갑신) 2번째기사</p>	<p>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진규(金鎮圭)가 왕세자의 상소 때문에 황궁하고 불안하여 금오문(金吾門) 밖에서 대명(待命)하니, 임금이 대명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물러가서 상소하여 인죄(引罪)하기를, “신(臣)은 본디 어리석으므로 전후에 걸쳐 연향(宴享)에 관한 일을 함부로 논하였습니다. 대개 충성하려는 정성에서 나왔으니 어찌 방해하려는 뜻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우리 춘궁(春宮)의 효심(孝心)이 매우 깊어서, 혹은 연례(宴禮)가 신의 말 때문에 수행되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므로 그 상소한 말이 이와 같았으며, 모두가 효심에서 촉발되어 나온 것이니, 신은 저으기 감탄하고 있습니다.”</p>	<p>兵曹參判金鎮圭，以王世子疏，惶恐不安，待命於金吾門外，上命勿待命。遂退歸，上疏引罪曰： 臣素慇懃，前後妄論宴事，蓋出願忠之誠，何嘗有沮戲之意，而惟我春宮，孝心深至，或慮宴禮之因臣言不果行，故其疏語如此，無非孝心所發，臣竊感歎。然而帝王家事親之道，非比匹</p>

	<p>다. 그러나 제왕가(帝王家)에서 아버이를 섬기는 도리는 필부(匹夫)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춘궁의 효심은 참으로 상수(上壽)하는 예절에만 그치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길이 효성을 범칙삼는 생각을 더욱 힘쓰고, 전하의 겸양에 간절하여 스스로 안일할 겨를이 없는 뜻을 우러러 이어받는다면, 어찌 더욱 큰 효성에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임금의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p>	<p>夫。今我春宮之孝心，諒不止於上壽之節，由是而益勉永言惟則之思，仰承殿下懇勤謙讓不自暇逸之志，則豈不尤有光於大孝哉？臣於此，伏切祈祝。上答以勿辭。</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8월 19 일(경술) 3번째기사</p>	<p>지돈녕(知敦寧) 김창집(金昌集)이 상소(上疏)하기를, “지난해 헌신(憲臣)이 강도(江都)13313) 의 진미(賑米)의 일 때문에, 이이명(李頤命)을 논핵(論劾)할 때에 전후의 수신(守臣)의 죄도 아울러 논하였습니 다. 신(臣)이 심부(沁府)13314) 를 수임(受任)한 것은 실로 이이명의 뒤를 이은 것인데, 이이명이 재임했을 때 마침 무인년(13315)의 기근을 만나, 본부(本府)의 은전(銀錢)을 덜어내 연조(年條)의 공물(貢物)과 바꾸어 그 쌀로 굶주린 백성을 먹여 살리고, 그 나머지 수량을 중기(重記)13316)에 적어서 본전을 보충할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항목의 은전은 모두 회계(會計) 이외의 물건이므로 실로 월계(月計)하여 장부에 올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수신(守臣)이 된 자가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살리기에 급하여, 비록 편의대로 죄다 가져다가 진자(賑資)로 돌렸다 하더라도 옛사람이 임금의 명이라 속이고 창고의 물건을 꺼낸 것에 비하면, 오히려 경중(輕重)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신은 참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그 연조를 서로 바꿀 때에도 또한 이미 혜청(惠廳)의 주관하는 신하에게 알리고 의논하였으니, 이는 본디 몰래 숨기고 한 일이 아닙니다. 신이 교체하여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문득 다시 거론하여 조정에 알린 것은 수령으로서 전관(前官)이 거짓으로 기록하고 옳긴 일을 드러내어 스스로 책임을 면하려는 것과 같으니, 그 사체(事體)와 도리에 있어서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신이 감히 생각을 낼 것이 아니며, 마침내 옹호해서</p>	<p>知敦寧金昌集上疏曰： 昨年憲臣，以江都賑米事，論劾李頤命也，竝論前後守臣之罪。 臣之受任沁府，實繼頤命之後，而頤命在任之時，適丁戊寅饑荒，捐出本府銀錢，換得貢物年條，以其米賑活饑民，錄其餘數於重記，以爲本錢充報之地。 臣意，此項銀錢，俱係會外之物，實與月計上簿者有間。 爲守臣者，目見民命近止，急於救活，雖便宜盡取，以歸賑資，其視古人矯制發倉，尚不無輕重之差。 臣固未知其爲罪，而況其年條相換之際，亦既通議於惠廳主管之臣，則此本非暗昧幽隱之事。 臣以交承之人，輒復舉聞，朝廷有若守令之發前官虛錄、(那) [那] 移之事，自免其責者，其在事體道理，果何如也？ 此誠非臣意慮之所敢出，而亦不料其終歸於掩覆之科也。 若其本色充補，固是早晚事，而</p>

	<p>덮어 준 죄로 돌아갈 것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본색(本色)의 보충으로 말하면 본디 조만간에 할일인데, 미연(未然)에 변통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쌓인 채로 있다가 썩도록 버려둔다면 이미 매우 아깝거니와, 그때 기근을 당하여 받기를 바라는 백성이 많았으므로, 신이 과연 한 번 나누어 주고 개색(改色)13317) 하여 도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公私)가 다 편리하다 하겠으니, 어찌 해독을 끼치는 것이 되겠습니까마는, 헌신(憲臣)의 말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조적(糶糴)하는 일이기는 하나, 풍문은 사실에 맞고 신의 경망한 죄도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p> <p>하니, 답하기를, “그때의 곡절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경(卿)에게는 혐의할 것이 없으니, 안심하고 행공(行公)하라.”</p> <p>하였다. 김창집이 상을 당하였다가 이제 막 복을 벗었으므로, 지금 비로소 그 일을 뒤미처 변명한 것이다.</p>	<p>苟於未然之間，不思變通之道，一任其堆積紅腐，既甚可惜，時當荐饑，民多願受，故臣果一番分給，改色還捧。此可謂公私兩便，豈足爲流毒之歸，而憲臣之言，乃至於此。雖其逐年糶糴一款，亦自以爲風聞爽實，而臣之妄率之罪，終亦有不可遁者矣。</p> <p>答曰：“伊時曲折，予已知之。於卿少無所嫌，安心行公。” 昌集丁憂服纒闋，故今始追辨其事。</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8월 27 일(무오) 2번째기사</p>	<p>정언 한중희(韓重熙)가 상소하여 청하기를, “조금 곡식이 여문 데는 논하지 말고 가장 심한 고을에 분재(分災)13318) 를 주도록 허락하고, 이어서 수의(繡衣)13319) 를 보내어 고을의 여역을 안행(按行)하게 하며, 신포(身布)의 축난 것은 우선 거두어들이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진연(進宴)을 이미 멈추었으니, 과거(科擧)의 일을 유독 거행할 수 없습니다. 대과(大科)·소과(小科)의 회시(會試)는 모두 내년 가을로 물려서 거행하소서.”</p> <p>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과방(罷榜)하고 시관(試官)을 죄주는 일은 대계(臺啓)를 따라야 하겠고, 이제 부터는 시관을 가려서 차출하소서.”</p> <p>하였다. 또 말하기를,</p>	<p>正言韓重熙，上疏請勿論稍實、尤甚邑，許給分災，仍遣繡衣，按行州閭，身布逋欠，姑勿侵徵；進宴既停，科事不可獨行，大小科會試，竝待明秋退行。仍言罷榜罪試官事宜，從臺啓，自今擇差試官。且言京兆之長，一向引入，司寇之長，還朝未易，隸院堂上，全不愼簡云云，答曰：“罷榜之舉，終涉重難。試官、主掌官，竝罷其職，掌試之任擇差事，申飭該曹而司寇之長，自當上來，京兆之長，更爲牌</p>

	<p>“경조(京兆)13320) 의 장(長)은 줄곧 인퇴(引退)하고, 사구(司寇)13321) 의 장은 조정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으며, 예원(隸院)의 당상(堂上)은 전혀 신중하지 않고,……”</p> <p>하였는데, 답하기를,</p> <p>“파방하는 일은 끝내 몹시 어려운 데 관계된다. 시관과 주장관(主掌官)은 아울러 파직하고 장시(掌試)의 임무를 가려서 차임하는 일은 해조(該曹)에 신칙(申飭)하라. 그리고 사구의 장은 마땅히 스스로 올라올 것이며, 경조의 장은 다시 패초(牌招)하라.”</p> <p>하였다.</p> <p>살펴보건대, 시관은 원성유(元聖兪)·이만선(李萬選)·정식(鄭栻)이고, 사구의 장은 이인엽(李寅燁)이며, 경조의 장은 서종태(徐宗泰)이고, 예원의 당상은 판결사(判決事) 이준상(李僑相)을 가리킨 것이다.</p>	<p>招。”按試官，卽元聖兪、李萬選、鄭栻也，司寇之長，卽李寅燁也，京兆之長，卽徐宗泰也，隸院堂上，指判決事金僑相也。</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8월 30 일(신유) 2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민진후(閔鎭厚)가 나아가 말하기를,</p> <p>“진연(進宴) 때에 여악(女樂)을 쓸 것인지를 예조(禮曹)와 진연청(進宴廳)이 상의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계셨으나, 진연을 멈추었기 때문에 다시 여쭙지 못하였습니다. 신(臣)은 이 일에 대하여 구구한 생각이 있습니다. 삼가 열성(列聖)의 지문(誌文)·행장(行狀)을 보건대, 세종조(世宗朝)의 회례(會禮) 때 비로소 여악을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성덕(盛德)의 일이므로 공렬(功烈)을 기재하는 글에 특별히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례의(五禮儀)》의 정지 회의(正至會儀)13322) 에 본디 여악을 쓴다는 말이 없고, 《악학궤범(樂學軌範)》으로 말하더라도 아악(雅樂)·속악(俗樂)을 또한 구작(九爵)13323) 에 분배(分排)할 수 있으니, 어찌하여 반드시 여악을 써야만 축성(祝聖)의 정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 때의 유훈(遺訓)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진(正殿)의 법연(法筵)에서 군신(君臣)이 경하하는 모임 때에 어찌 바르지 않은 색(色)과 예에 어그러지는 음(音)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진연은 이제</p>	<p>御晝講。知事閔鎭厚進曰：“進宴時用女樂與否，曾有禮曹與進宴廳相議稟處之命，而以進宴停止之故，不得更稟矣。臣於茲事，有區區所懷。伏見列聖誌狀，世宗朝會禮，始不用女樂，此實盛德事，故特書於記載功烈之文。《五禮儀》《正至會儀》，元無用女樂之語，雖以《樂學軌範》言之，雅、俗樂，亦足以分排於九爵，何必用女樂而後，方可盡祝聖之誠耶？不但世宗朝遺訓，必可遵守，正殿、法筵君臣慶會之時，何可用不正之色、非禮之音乎？進宴今雖姑寢，明秋則可以設行，以此永</p>

	<p>우선 멈추었으나 내년 가을에는 설행(設行)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으로 길이 정식(定式)을 삼아 만세의 법정(法程)이 되게 한다면 더욱 성덕(聖德)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된 것이 매우 옳다. 외연(外宴)에는 여악을 쓰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p>爲定式，俾作萬世法程，則尤有光於聖德矣。”上曰：“所達極是。外宴勿用女樂事，定式可也。”</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10월 12 일(임인) 2번째기사</p>	<p>임금이 팔로(八路)의 기근 때문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서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뜻을 보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근년에 큰 기근이 드는데다가 홍수·가뭄·벌레·우박·바람·서리의 재해 때문에 팔로에서 장문(狀聞)이 모두 마음을 아프게 한다. 바야흐로 가을철을 당하여서 백성이 이미 굶주리니, 내년 봄의 일을 미루어 알 만하다. 저 죄없는 백성이 장차 도랑과 골짜기를 메우며 죽게 될 것인데, 공사(公私)가 다 비어서 부고(府庫)가 씻은 듯하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하면 좋으랴? 잠을 자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에 내려가지 않는다. 백성의 임금에 대한 관계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와 같은데, 어찌 어떻게 할 수 없노라고 핑계대며 그 죽음을 서서 보겠는가? 도신(道臣)이 된 자는 바로 밤낮으로 생각하여 서둘러 구획(區劃)하고, 수령(守令)이 된 자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 가지로 힘쓰고, 지극한 정성(精誠)으로 구제해야 할 것이다. 관수(關帥)·변장(邊將)·우관(郵官)도 또한 절로 관하의 군졸이 있으니, 각각 진휼(賑恤)하여 쓰러져 죽는 것을 면하게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賑政)이 거의 끝날 때를 기다려 수의(繡衣)를 나누어 보내어, 근만(勤慢)을 살피게 하고 출척(黜陟)의 법을 밝히되, 혹 방자하게 혼자서 쟁긴 탐오(貪污)한 관리가 있으면 중률(重律)로 다스려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 너희 안도(按道)하는 신하들은 진심에서 나온 말을 분명히 듣고 즉시 선포하여, 내가 위임하고</p>	<p>上以八路饑饉，下備忘，以示隱恤之意。其略曰： 近歲大侵，加以水旱蟲雹風霜之災，八路狀聞，罔非傷心。方當秋節，民已乏食，來春之事，可推而知。惟彼無辜，將填丘壑，而公私赤立，府庫如洗。念及於此，若之何其，寢不安席，食不下咽。民之於君，猶子之於父，豈可諉之於無可奈何，而立視其死歟？爲道臣者，正宜晝思夜度，汲汲區畫，爲守令者，竭力盡心，多般拮据，至誠濟活。至若關帥、邊將、郵官，亦自有管下軍卒，宜各調恤，俾免顛隳。予俟賑政之垂畢，分遣繡衣，廉察勤慢，以明黜陟之典。或有貪官汚吏，肆然入己者，繩以重律，斷不饒貸。咨爾按道之臣，明聽心腹之誥，劃卽宣布，毋孤予委任策勵之意。災荒最酷</p>

	<p>격려하는 뜻을 저버리지 말라. 재황(災荒)이 가장 혹심한 곳에는 따로 감진어사(監賑御史)를 보내어 국가에서 각별히 돌보는 뜻을 보이지 않을 수 없으나, 양남(兩南) 강원도의 삭선(朔膳)13361) 과 경기·함경도의 물선(物膳)13362) 은 흉년에 재감(裁減)한 전례에 따라 가을까지 우선 감면하라.” 하였다.</p>	<p>之處，不可不別遣監賑御史，用示朝家另加軫恤之意，而兩南、江原道朔膳及京畿、咸鏡道物膳，依前凶歲裁減，限明秋姑減。</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11월 3 일(계해) 4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민진후(閔辰厚)가 아뢰기를, “성천(成川)의 유생(儒生)이 기자(箕子)의 서원(書院)을 새로 세워 그 화상을 봉안하고 상소하여 사액(賜額)을 청하였으나, 임금으로 동국(東國)에 임어(臨御)하였는데 서원을 세우고 사액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하므로 윤허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미 봉안하였으니, 돌보아 돕는 방도가 아주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가에서 제물(祭物)을 마련하여 보내고, 액호(額號)는 기자영전(箕子影殿)이라 써서 걸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藥房入診。提調閔鎮厚陳：“成川儒生創立箕子書院，奉安其畫像，上疏請額，而以君臨東國，而建院賜額，事體未安，不許矣。然既已奉安，不可全無顧助之道。自官備送祭物，額號則以箕子影殿書揭則爲好。”上從之。</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11월 5 일(을축)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이유(李濡)가 나라에 큰 경사가 있다 하여 더욱 심하거나 조금 여물었거나를 논하지 말고 다 분재(分災)를 주고, 묵은 조곡(糶穀)·신포(身布)와 도고(逃故)·인족(隣族)의 침징(侵徵)하는 따위로써 임오년13393) 이후의 것을 죄다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어서 민심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외방(外方)은 이에 따라서 할 수 있으나, 나에게 또 생각하는 바가 있다. 도성(都城)의 백성이 사랑하며 받드는 정성이 저렇게 간절하니, 어떻게 하면 위로하여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유가 말하기를, “도성의 백성에게는 달리 감면할 만한 신역(身役)이 없고 제급(題給)할 물건도 없으니, 천천히 의논하여 아낌이 마땅하겠습시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의하여 품정(稟定)하라.”</p>	<p>乙丑/引見大臣、備局諸臣。右議政李濡以國有大慶，請勿論尤甚稍實，皆給分災，舊糶、身布，逃故隣族被侵之類，自壬午以後，盡爲停捧，以慰悅民心，上曰：“外方可依此爲之，而予又有所思。都民愛戴之誠，如彼其切，何以則可以慰悅耶？”濡曰：“都民無他可蠲之役，又無題給之物，徐當相議以達矣。”上曰：“商確稟定。”濡曰：“東平尉鄭載崙筭子，臣亦見之，而可謂有遠慮矣。”上曰：“彼人必當知而不知矣。”濡曰：“我國之事，彼無不知之理。彼若詰問，則不必隱諱，無</p>

	<p>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의 차자(筓子)를 신(臣)도 보았는데, 원려(遠慮)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은 반드시 알면서 모르는 체할 것이다.” 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일을 저들이 모를 리가 없으니, 힐문하면 꼭 숨길 것 없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였다. 이유가 영남(嶺南)의 인재를 거두어 쓰기를 청하니, 임금이 각별히 거두어 쓰라고 명하였다. 이유가 경성 관관(鏡城判官) 박휘등(朴彙登)에게 여든이 된 늙은 어머니가 있다 하여 내지(內地)의 고을로 옮겨 제수(除授)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p>	<p>寧直言。” 濡請收用嶺南人才，上命各別收用。 濡以鏡城判官朴彙登，有八十老母，請移除內邑，上從之。</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康熙) 44년) 11월 13일(계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개인적으로 진휼(賑恤)하였음에도 벼슬을 제수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는데,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27인이라고 대답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진휼(賑恤)을 강구하는데, 전에 개인적으로 진휼한 사람에게 상당한 벼슬을 주라고 명하였음에도 아직 수용(收用)하지 않은 자가 이토록 많으니, 격려하여 권장하는 도리에 매우 어그러진다. 양진(兩銓)13406) 을 시켜 착실히 수용하게 하라.” 하였다.</p>	<p>癸酉/上問私賑人未授職幾何， 吏、兵曹以二十七人爲對， 傳曰：“今方講賑， 而曾前私賑人相當職承傳之未收用者， 至此之多， 殊非激勸之道。 其令兩銓， 着實收用。”</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康熙) 44년) 11월 17일(정축) 1번째기사</p>	<p>태학(太學)에서 황감(黃柑)을 반사(頒賜)하고 시사(試士)하여 이진유(李眞儒)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p>	<p>丁丑/頒柑太學試士， 賜李眞儒及第。</p>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p>	<p>왜인(倭人)이 공작미(公作米)13420) 를 허락받는 일 때문에 관소(館所)13421) 에 머물러 있으며 떠나지 않으므로, 동래 부사(東萊府使) 황일하</p>	<p>乙未/倭人以公作米請得事， 留館不去。 東萊府使黃一夏以聞， 議于大臣，</p>

<p>(康熙) 44년) 12월 5 일(을미) 1번째기사</p>	<p>(黃一夏)가 계문(啓聞)하였다.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니, 서문중(徐文重)은 말하기를, “한때 변통한 일이 백년의 큰 폐단이 되었습니다. 차왜(差倭)13422) 가 관소에서 지체하며 해를 넘기도록 버티 사체(事體)를 손상시키니, 단지 공급(供給)하는 폐단이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조한 것이 아니므로 여탈(與奪)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팔로(八路)에 기근이 들어 진휼(賑恤)하는 일이 바야흐로 시작되었으니, 이때에 쌀을 남에게 주기에는 넉넉하지 못한 형세입니다. 을유년조로 공급(公給)하는 목면포(木綿布)는 본색(本色)으로 내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그 실상을 거론하여 엄한 말로 막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신완(申琬)의 의논도 같았다. 최석정(崔錫鼎)은 말하기를, “왜인에게 공급하는 면포(綿布)를 쌀로 대신 주는 것은 왜인의 간청에서 나온 것이고, 당초에 약조한 것이 아니니, 구습(舊習)에 따라 번번이 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일입니다마는, 교린(交隣)하는 도리는 처치를 마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도(對馬島)의 살길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미곡(米穀)에 의지하므로, 전에 와서 청하였을 때에 사리에 의거하여 엄준하게 막을 줄 몰랐던 것은 아니나, 허락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다시 청하였을 때에도 막지 않았던 것은 실로 후의(厚意)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굳게 지키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왜인이 절망(絶望)하여 유감을 품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차왜가 오래 지체하며 버티고 사체를 크게 손상시키니, 특별히 헤아려 허락하되 수년이 넘지 않게 연한을 작정하고, 그 뒤에는 다시 청하지 말도록 엄하게 약속하여, 한편으로는 먼곳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장래의 폐단을 막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윤지완(尹趾完)은 말하기를, “신(臣)이 왕년에 일본으로 사명을 받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이</p>	<p>徐文重以爲：“一時變通之事，轉成百年巨弊。差倭淹館，閱歲相持，虧損事體，不但供給之弊而已。然此非約條，與奪在我，八路飢荒，賑事方始，此時以米與人，勢所不贍。乙酉條公給木綿布，不得不以本色出給之意，舉其實狀，嚴辭防塞爲宜。”申琬議亦同。崔錫鼎以爲：“倭供綿布，以米代給，出於倭人之懇請，初非約條，因循每給，事未妥當，而第交隣之道，貴在處置之得宜。馬島生理，全賴我邦之米穀，曾前來請，非不知據理峻塞，而未免許副，其後更請，亦不防塞，實出厚意。今若牢守不許，則倭人之絕望懷憾，勢所必至。差倭之久滯相持，大損事體，特爲量許，而酌定年限，毋過數年，後勿更請，嚴加約束，一以慰遠人之心，一以杜將來之弊，似宜。”尹趾完以爲：“臣於昔年奉使日本，還到馬島，謂通事倭曰：‘此島形勢，無生穀之土，汝輩何以生活耶？’對曰：“未得朝鮮米之前，生子者不忍見其長而餓死，輒皆投水，今則生子皆舉。島中因此蕃盛，亦雖日本之人，實無異於朝鮮之邊氓’云矣。公作米許給，</p>
--	---	---

르러 통사왜(通事倭)에게 말하기를, ‘이 섬의 형세로 보아 곡식을 생산할 땅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조선의 쌀을 얻기 전에는 자식을 낳은 자가 그 자식이 자라가고 굶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곧 죄다 물에다 던졌는데, 지금은 자식을 낳으면 다 키우므로 섬 안이 이 때문에 번성하니, 또한 비록 일본 사람이기는 하나 실은 조선의 변민(邊民)과 다를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공작미를 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나라의 계책으로 논하자면 대단한 잘못이니, 엄한 말로 막는 것이 사체상 당연하겠으나, 저들이 쌀을 청하고 청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식을 낳아 키우고 못 키우는 데에 관계되므로, 죽을 힘을 다하여 굳이 다투는 것입니다. 혹 처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된 뒤에 마침내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면 나라의 체면을 손상할 듯하니, 최석정의 의논이 마땅한 듯합니다.”

하고, 이여(李畬)는 말하기를,
 “왜인에게 공급하는 목면(木綿)을 쌀로 바꾸어 주는 것은 본디 약조한 것이 아니라 한때의 특별한 허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릇된 관계가 된 것이니, 엄하게 막는 것이 진실로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대마도의 살길은 오로지 우리의 쌀에 의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견제하는 방법도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니, 효종조(孝宗朝) 이후로 이미 이 길을 연 데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 이제 일체 거절하여 갑자기 그 희망을 끊기는 어렵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공급하는 목면을 쌀로 바꾸어 주는 것은 본래 약조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닌데, 한때 특별히 허락한 것 때문에 번번이 기한을 물려 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왜인의 정상이 매우 가증스러우나 살길에 관계되는 것이라 일체 굳게 막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우선 5년으로 한정하여 쌀로 주는 것을 허락하되, 이 뒤로는 감히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엄하게 약속하라.”
 하였다.

論以國計，大段誤着，嚴辭防塞，事體當然，而彼人之請米與否，便係生子舉不舉之間，抵死固爭。或至難處之境，而後終不得不許，則恐損國體，崔錫鼎之議，似爲得之。” 李畬(之) [以] 爲：“倭供木綿作米，本非約條，因一時特許，今成謬例。嚴加防塞，固似得宜，而馬島生理，專仰我米，我之所以羈縻者，亦以此爲資。自孝廟朝以後，已開此路，豈無深意？今難一切拒塞，頓絕其望。” 傳曰：“公給木綿作米，本非約條所載，而因一時特許，每請退限。倭人情狀，雖甚可惡，生理所關，有難一切牢塞。今姑限五年，以米許給，而今後毋敢更生希望之心事，嚴加約束。”

<p>숙종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12월 11 일(신축) 1번째기사</p>	<p>이성(利城)의 무인(武人) 정두근(鄭斗根)이 상소하여 북로(北路)의 민폐 5조(條)를 아뢰었다. 첫째는 면천(免賤)으로 곡식을 모으는 것이고, 둘째는 감진어사(監賑御史)를 보내지 말 것이고, 셋째는 우선 호피(虎皮)·표피(豹皮)의 봉진(封進)을 감면하는 것이고, 넷째는 친기위(親騎衛)를 폐지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봉수 별장(烽燧別將)을 가려서 정하는 것이었는데, 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p>	<p>辛丑/利城武人鄭斗根，疏陳北路民瘼五條。一曰免賤募穀，二曰勿遣監賑御史，三曰姑減虎、豹皮封進，四曰罷親騎衛，五曰擇定烽燧別將也。答曰：“令廟堂稟處。”</p>
<p>숙보 42권, 31년 (1705 을유 / 청 강희 (康熙) 44년) 7월 11 일(임신) 1번째기사</p>	<p>인견(引見) 때에 우의정 이유(李濡)·호조 판서 조태채(趙泰采)가 내연(內宴)도 아울러 베풀기를 굳이 청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선조(宣祖)에 이미 내연을 베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하였다. 조태채가 말하기를, “선조(宣祖)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전쟁이 채 끝나지 않았고 손상된 것이 미처 회복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조정의 신하들이 오히려 내연을 청하였으니, 성상(聖上)께서 끝내 윤허하지 않으시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고, 승지 최중태(崔重泰)가 말하기를, “신이 번병(藩屏)에 있을 때에 도내(道內)의 수령(守令)들이 내연을 베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나 다 담(膽)이 떨어졌다 하였으니, 인정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제신(諸臣)이 더욱 간절히 쟁집(爭執)하니, 임금(上)이 억지로 따르며 말하기를, “오늘 대신·제신이 이처럼 애써 말하여 청하므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르나, 반드시 충분히 절약하여 안궐의 연수(宴需)는 한 자리에 갖추는 것을 넘지 말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최중태가 청조(淸朝)674)의 법종(法從)675) 으로서 임금(上)의 지척에서</p>	<p>壬申/引見時，右議政李濡、戶曹判書趙泰采，固請竝設內宴，上曰：“宣廟朝，既不許設內宴，到今此事，心甚不安。”泰采曰：“宣廟朝則何等時也？干戈未定，瘡痍未起。然而廷臣猶請內宴。聖上之終始靳許，恐爲過重矣。”承旨崔重泰曰：“臣之在藩時，道內守令，聞勿設內宴之奇，莫不膽落。人情此可見矣。”諸臣爭執愈懇，上勉從曰：“今日大臣、諸臣，若是其苦口陳請，不得不勉從，而必須十分節損，內外宴需，使無過一筵之備可也。”重泰以淸朝法從，乃於咫尺之天，忍爲諂媚之態，公然欺誣，不顧羞恥，人皆唾鄙，謂之膽落承旨。</p>

	<p>구태여 아침하는 꼴을 보이며 버젓이 속이고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다 침을 뱉으며 더러워하고 ‘담락 승지(膽落承旨)’라 불렀다.</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1월 1일 (경신) 1번째기사</p>	<p>비망기(備忘記)를 감사(監司)와 유수(留守)에게 내리기를, “아! 선달이 다가고 봄철은 닥쳐 천지(天地)가 온통 화창하여 우로(雨露)의 혜택을 말랐던 풀뿌리도 힘입고 있는데, 서러운 우리 동포(同胞)의 백성은 거듭 흉년을 만나 유독 위망(危亡)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백성의 부모(父母)가 되어 마땅히 어떤 심회(心懷)를 가져야 할 것인가? 아! 여러 해 동안 흉년으로 공사(公私)가 탕진(蕩盡)이 되어 진휼(賑恤)을 베풀 것도 영원치 못하고, 곡식을 모은 것이 많지도 않으니 팔로(八路)에서 먹여주기를 바라는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구제해 살려서, 한 사람이라도 수척(瘦瘠)하여 죽는 이를 없게 할 것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매 기력(氣力)이 약해짐을 깨닫지 못하겠다. 아! 백성을 진휼하는 책임을 경(卿) 등에게 분부하오니, 진구(賑救)하는 데 부지런하고 아니함에 백성의 생사(生死)가 달려 있으니, 이에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아! 그대 방백(方伯)13452) 은 과매(寡昧)한 <내가> 백성 보기를 다친 자 보는 듯한 뜻을 생각하고, 지난 겨울에 각별히 유시(諭示)한 전지(傳旨)를 본받아서 백성이 굶주리는 것을 보거든, 자기의 굶주림과 같이 여겨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지성으로 하면 거의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하여 생각건대, 농사란 천하의 큰 근본이다. 사람이 할 일을 먼저 일으켜 행한 다음에야 땅에서 생산되는 일이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맹춘(孟春)의 달에 모두가 봉강(封疆)13453) 을 수리(修理)하고, 경술(徑術)13454) 을 자세히 살펴 명확히 하며, 구릉(丘陵)과 판험(坂險)13455) 과 원습(原隰)13456) 으로 토지(土地)가 적합한 곳인가, 오곡(五穀)13457) 을 심을 만한 곳인가를 잘 살펴서,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이 대개 이러한 뜻이다. 비록 보통 해에 있어서도 농사로 권장하는 것을 급선무(急先務)로 삼아야 하는데, 더구나 큰 흉년을 당한 때이겠는가? 함께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다시 신칙하여 혹</p>	<p>朔庚申/備忘記, 下監司、留守曰: 噫! 臘盡春生, 天地同和, 雨露之惠, 枯莢亦被, 而哀我同胞之民, 荐遭饑荒, 獨陷危亡, 爲民父母, 當作何懷? 噫! 頻年不稔, 公私蕩然, 設賑匪遠, 而聚穀不多。 八路仰哺之赤子, 若何以善爲濟活, 無一捐瘠耶? 念及于此, 不覺氣短也。 噫! 賑民之責, 付諸卿等, 賑救之勤否, 而生民之死生係焉, 其可忽哉? 咨爾方伯, 思寡昧如傷之意, 體前冬別諭之旨, 視民之饑, 若己之饑, 終始必以至誠, 則庶可有濟矣。 仍念農者, 天下之大本也。 人事興於前而後, 地事成於後。 是以孟春之月, 皆修封疆, 審端(經) [徑] 術, 善相丘陵坂險原隰, 土地所宜, 五穀所殖, 以教導民者, 蓋此意也。 雖在常年, 勸農固爲急先之務, 而矧當大侵之歲乎? 竝宜惕念, 更加申飭, 或給種糧, 或警懶惰, 毋使田野荒廢, 是亦方伯之職也。 卿其知悉舉行。 且以前後埋葬餓死人等, 歲月已久, 不無露出之患, 下教京兆, 使之另飭各部, 一一審察,</p>

	<p>은 종자(種子)나 식량(食糧)을 주고, 혹은 나태[懶情]한 것을 깨우치게 해서 전야(田野)를 황폐(荒廢)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또한 방백의 직책이다. 경은 자세히 알아 거행하도록 하라.”</p> <p>하고, 또 전후(前後)에 굶어 죽은 사람들을 매장(埋葬)한 것은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노출(露出)될 근심이 없지 않으니, 경조(京兆)13458)에서 각 부서에 특별히 타일러 일일이 자세히 살펴보고 착실하게 과서 묻게 하여, 백골을 가리고 시체를 묻어 준다는 뜻을 간직하라고 하고하였다.</p>	<p>着實埋瘞，以存掩骼埋胔之意。</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1월 18 일(정축) 1번째기사</p>	<p>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오명준(吳命峻)이 영남(嶺南)의 대동곡(大同穀)을 얻어서 관동(關東)을 진휼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허가하였다. 오명준이 인하여 홍수헌(洪受濼)과 최창대(崔昌大)가 다투어 말한 일을 진달하며 말하기를,</p> <p>“홍수헌은 말소리가 본래 나직하므로 최창대가 혹시 미처 듣지 못했을 리가 있으니, 홍수헌이 한 말을 최창대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실상(實狀)입니다. 최창대는 유악(帷幄)에 오래 시종한 사람으로서 군부(君父)에게 의심을 받는다면 어찌 몹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지금 유신(儒臣)이 아뢰는 것을 듣건대, 곡절(曲折)이 그러하겠다.”</p> <p>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집(李堦)이, 임방(任墜)이 김흥경(金興慶)을 논핵한 데 대하여 말하기를,</p> <p>“친병(親病)으로써 핑계를 대는 것은 이것이 매우 잘못입니다.”</p> <p>하고, 오명준이 또 아뢰기를,</p> <p>“이세필(李世弼)이 선위(禪位)할 때에 미처 진소(陳疏)하지 않은 것은 대개 헌신(憲臣)으로서 자처(自處)하려고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또한 이를 옳게 여겼다.</p>	<p>丁丑/召對玉堂官。侍讀官吳命峻請得嶺南大同穀，以賑關東，上許之。命峻仍陳洪受濼、崔昌大爭言事，以爲：“受濼語聲本低，昌大容有未及聞之理。受濼之出言，昌大之不聞，並是實狀。昌大以久侍帷幄之人，受疑於君父，豈不冤甚？”上曰：“今聞儒臣所達，曲折然矣。”侍讀官李堦言，任墜論金興慶有曰：“諉以親病，此甚非矣。”命峻又陳李世弼之未及陳疏於禪位時，蓋不欲以憲臣自處故也，上亦是之。</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p>	<p>우의정(右議政) 서종태(徐宗泰)가 출사(出謝)13496) 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위로하여 유시하는 데 지극함을 갖추었다. 서종태가 사사(辭謝)하면</p>	<p>己卯/右議政徐宗泰出謝，上引見，慰諭備至。宗泰辭謝，仍略陳寅畏之方，</p>

<p>(康熙) 45년) 1월 20 일(기묘) 1번째기사</p>	<p>서 인하여 인외(寅畏)13497) 하는 방법과 절손(節損)하는 도리를 대략 아뢰니, 임금(嘉納)하였다. 서종태가 또 속히 복상(卜相)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서종태가 인하여 이유(李濡)의 심사(心事)가 다름이 없음을 아뢰고 친절히 불러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유의 하는 바가 매우 공평하지 못한 까닭으로 언급(言及)한 바가 있었으나, 이제 이미 일이 지났으니, 어찌 한결같이 이와 같이 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주서(注書)로 하여금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우항(金宇杭)을 인입(引入)하게 하여 격려하여 보내고, 또 옥당(玉堂)의 관원을 소대(召對)하였다. 오명준이 관동(關東)에 회부(會付)된 모곡(耗穀)13498)을 백급(白給)13499) 하는 일과,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에게 속량(贖良)을 허락하는 일과 매작첩(賣爵帖)을 성급(成給)13500) 하는 일을 아뢰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節損之道，上嘉納。宗泰又請速爲卜相，上許之。宗泰仍陳李濡心事之無他，請敦召，上曰：“濡之所爲，極不公，故有所言及，而今已事過，何可一向如是乎？”上令注書，引入京畿監司金宇杭，勉勵以送，又召對玉堂官。吳命峻陳關東會付耗穀白給事，公私賤許贖事，賣爵帖成給事，上皆從之。</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1월 21 일(경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가서 백관(百官)의 조참(朝參)을 받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채(趙泰采)가 거두어 들인 조세(租稅)가 1년을 지탱하기 어렵다 하여 강도미(江都米) 2만 석(石)을 운반해 와서 보충하여 쓸 것을 청하고, 도승지(都承旨) 이진휴(李震休)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거듭 기록된 것으로 벌(罰)을 당한 유생(儒生)을 특별히 해벌(解罰)을 허락하여 경과(慶科)에 나가게 할 것을 청하니, 모두 허가하였다.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세재(李世載)는 기내(畿內)에 기황(飢荒)이 들었으므로 기민(飢民)을 자세히 가려서 모곡(耗穀)을 백급(白給)할 것을 청하고, 개성 유수(開城留守) 한성우(韓聖佑)는 본부(本府)가 조폐(凋弊)된 이유로써 구제할 수 있는 대책 몇 조목을 아뢰니, 모두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야(李壘)와 사간(司諫) 남취명(南就明)이 아뢰기를, “전라 병사(全羅兵使) 이혜주(李惠疇)는 일찍이 서곤(西關)13501)에 부임하여, 천냥(天兩)에 가까운 은화(銀貨)로써 양마(良馬) 여러 필(匹)을 사서</p>	<p>庚辰/上御仁政門，受百官朝參。戶曹判書趙泰采以收租難支一年，請運來江都米二萬石補用，都承旨李震休請不錄名疊錄被罰儒生，特許解罰，俾赴慶科，並許之。刑曹參判李世載，以畿內飢荒，請精抄飢民，白給耗穀，開城留守韓聖佑，以本府凋弊，陳救濟策數條，並令稟處。大司諫李壘、司諫南就明啓曰：“全羅兵使李惠疇，曾任西關，以近千銀貨，買得良馬累匹，分賂權要。與受不可不明白，以解疑惑，請拿問查處。”答曰：“更加詳察。”三啓而允。持平金一鏡啓曰：“前掌樂</p>

	<p>권관 요직(權官要職)에 있는 사람에게 뇌물로 나누어 주었으니, 주고 받은 것을 명백히 하여 의혹을 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조사해 처리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다시 더 상세히 살피라.”</p> <p>하였는데, 세 번 아뢰어서야 윤희하였다. 지평(持平) 김일경(金一鏡)이 아뢰기를, “전(前) 장악정(掌樂正) 이정익(李楨翊)은 본래 용렬한 사람으로써 또 무거운 허물이 있는데,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붙어서 다시 청관 현직(淸官顯職)에 통하자, 한 장의 소(疏)를 올려 ‘은혜를 팔아 복을 구한다.[市恩徼福]’는 네 글자으로써 여러 대신(大臣)의 죄안(罪案)으로 삼았습니다. 아!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고 복은 어디로부터 생기는 것인데, 누구에게 은혜를 팔고 어느 곳에서 복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래로는 대신을 위협하고 위로는 항거하며 핍박하는 바가 있었으니, 청컨대 아주 먼 변방으로 정배(定配)하소서.”</p> <p>하였으나 【재계(再啓)에는 ‘드러나게 항거하고 핍박함이 있어서 휘존(諱尊)하는 의리와 기기(忌器)하는 혐의를 일찍이 조금도 걱정함이 없으니, 진실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겠는가?’로 고쳤고, 삼계(三啓)에는 또 ‘그 마음을 진실로 헤아릴 수 없도록 생각함이 아주 패악하니, 이것이 어찌 신자(臣子)로서 감히 입밖에 꺼낼 것인가?’ 하는 등의 말이 있었다.】 윤희하지 않았다가 뒤에서야 다만 파직하여 서용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p>	<p>正李楨翊，本以闒茸，且有重累，而諂附當路，復通淸顯，投進一疏，以市恩徼福四字，爲諸大臣之罪案。噫！恩從誰出，福從何生，市於誰人，徼於何地？下以脅勒大臣，上有捭逼之所，請極邊定配。”【再啓改以顯有捭逼諱尊之義，忌器之嫌，曾不少恤。苟有嚴畏之心，安敢乃爾？三啓又有其心誠不可測，造意絕悖，是豈臣子所敢發口等語。】不允，後只命罷職不敘。</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1월 23일(임오) 2번째기사</p>	<p>대사간(大司諫) 이야(李埜)와 사간(司諫) 남취명(南就明)이 아뢰기를, “영암(靈巖)의 갈두산(葛頭山)은 곧 선재(船材)를 키워서 기르는 곳으로, 지난 번에 수사(水使)가 충해(蟲害)의 손실이 있다고 핑계하여 비국(備局)에 속여 보고하였습니다. 비국에서 김홍적(金弘績)을 차출해 보내 그로 하여금 베어</p>	<p>大司諫李埜、司諫南就明啓曰：“靈巖葛頭山，卽船材長養之所也。向者水使，稱有蟲損，瞞報備局，備局差遣金弘績者，使之斫賣補賑。弘績混斫生</p>

	<p>팔아서 진휼(賑恤)을 돕게 하였는데, 김홍적은 생송(生松)을 섞어 베어서 온산을 민둥민둥하게 만들었고, 얻은 재물은 누만 냥(累萬兩)이었으나 약간만 진휼청(賑恤廳)에 바치고는 모두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는데도, 이로 인하여 상을 받고 본진(本鎭)의 첨사(僉使)가 되었으니, 호남(湖南)의 사람이 분개하며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수사(水使) 신찬(申璨)과 갈두 첨사(葛頭僉使) 김홍적을 모두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였으나, 윤희하지 않다가 재차 아뢰어서야 윤희하였다.</p>	<p>松，童盡一山，獲貲累萬，略納賑廳，盡歸私橐，因此受賞，爲本鎭僉使，湖南之人，莫不憤駭。請水使申璨、葛頭僉使金弘績，竝拿問定罪。”不允，再啓，允之。</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3월 1일 (기미) 2번째기사</p>	<p>헌납(獻納) 이조(李肇)가 소(疏)로써 호서(湖西)의 세 창고에 군량[軍餉]이 저축된 것을 기울여서, 도신(道臣)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여러 고을에 고루 나누어 주어서 진휼을 돕게 하고, 상납(上納)할 대동미(大同米)는 절반은 정봉(停捧)하였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다 받아들이는 뜻으로 아뢰니, 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p>	<p>獻納李肇，疏陳湖西三倉軍餉，傾儲以付道臣，使之均分列邑以補賑，上納大同，折半停捧，待秋畢捧之意，答曰：“令廟堂稟處。”</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康熙) 45년) 4월 18일(을사) 1번째기사</p>	<p>관장(官長)을 독시(毒弑)13604 한 죄인(罪人) 월심(月心) 등을 경옥(京獄)으로 옮겨, 대신(大臣) 이하의 관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니, 월심 등이 이미 네 차례의 형신(刑訊)을 받고 이르기를, ‘본주(本州)에 있을 때에 치도(治盜)의 형벌로 겁을 주므로, 무복(誣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니, 국청(鞠廳)에서 아뢰어 말하기를, “각 사람들의 초사(招辭)에서 말하기를, ‘비상(砒礪)이 상수리 열매 크기만한 것을 소주(燒酒) 한 병에 넣었는데, 목사(牧使)가 반 잔을 마셨다.’고 하니, 반 잔을 마시고 40일 뒤에 죽은 것은 사리(事理)에 거의 맞지 않은 듯하므로, 다시 엄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삼성 추국(三省推鞠)13605 을 하는데 본래 절목에 따라 캐어 묻는 규례가 없으니, 청컨대 형조(刑曹)로 이송(移送)하여 엄하게 신문하여 실정(實情)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윤희하였다.</p>	<p>乙巳/毒弑官長罪人月心等，移之京獄，令大臣以下按治。月心等，既受四次之刑，而謂以在本州，怯於治盜之刑，不得不誣服云。鞠廳啓言：“各人招辭以爲：“砒礪如橡子大者，納於一瓶燒酒，而牧使飲半盃”云，半盃之飲，致死於四十日之後，似不近理。不可不更加嚴覈，而省鞠本無逐節盤問之例，請移送刑曹，嚴訊得實。”允之。</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4월 20 일(정미)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가 상부(相府)13609) 에 있을 때에 조곡(糶穀) 문서(文書)의 잡란(雜亂)함을 염려하여, 각도(各道)에 분부해 등급을 나누어 뽑아 보고하게 한 것은 탕감(蕩減)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소민(小民)들이 본 의도는 알지 못하고 희망(希望)이 날로 간절하니,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거조(舉措)가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축년(13610) 이전에 받지 못한 것은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는 최석정의 말과 대략 같았다. 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은 말하기를, “그 탕감을 바라는 자는 대다수가 토호배(土豪輩)이므로 정밀하게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채(趙泰采)와 우참찬(右參贊) 민진후(閔鎭厚)는 모두 탕감하려고 하니,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최석정이 아뢰기를, “남구만(南九萬)과 유상운(柳尙運)은 심사(心事)가 다름이 없고, 거두어 서용한 지 이미 오래 된 뒤로 새로 죄에 범한 것이 없는데, 연신(筵臣)이 뜻을 거슬림으로 인하여 파직(罷職)의 명을 내렸으나, 잠리(簪履)13611) 를 버리지 않는 도리에서 아마도 마땅히 이와 같이 헤서는 안될 듯합니다.” 하였다. 서종태도 말하고, 부제학(副提學) 윤지인(尹趾仁)도 또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모두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임금은 김창협(金昌協)이 조정에 나올 뜻이 없다는 이유로써 김창집(金昌集)에게 하교(下敎)하여, 그로 하여금 임금의 뜻을 전하여 알려서 출사</p>	<p>丁未/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崔錫鼎言：“判府事李濡， 在相府時， 慮糶穀文書之雜亂， 分付各道， 使之分等抄報， 非出蕩減之意， 而小民不知本意， 希望日切， 不可無慰悅之舉。 丁丑以前未捧者， 竝蕩減爲好。” 上問諸臣， 左議政徐宗泰， 與錫鼎言略同。 右議政金昌集言：“其希覬蕩減者， 多是土豪輩。 精查甚難， 不可許。” 戶曹判書趙泰采、 右參贊閔鎭厚， 皆欲蕩減， 上從其言。 錫鼎陳：“南九萬、 柳尙運， 心事無他， 收斂已久之後， 無新罪犯， 而因筵臣忤旨， 下罷職之命。 不棄簪履之道， 恐不當如是。” 宗泰亦言之， 副提學尹趾仁， 又陳之， 上曰：“歲月既久， 竝敍用。” 上以金昌協無意造朝， 下敎昌集， 使之傳致。 上意敦勉出仕， 昌集起謝， 仍陳昌協， 不但情勢爲然， 病在膏肓， 實無運動之勢。 然異數至此， 謹當以此傳言。 錫鼎以經費不足， 欲移用西關、 北道田稅穀物， 昌集、 鎭厚以爲：“北路田稅些少， 不可取用。” 上命只取用西路田稅。 鎭厚仍言：“每於北關、 關東凶歉之時， 嶺南偏受其害。 今宜設倉於寧海地，</p>
--	--	--

	<p>(出仕)하도록 돈면(敦勉)하니, 김창집이 일어나 사례(謝禮)하고는 인하여 아뢰기를,</p> <p>“김창협은 정세(情勢)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병이 고맹(膏盲)13612) 에 있어 사실 운동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나 이수(異數)13613) 가 이에 이르니, 삼가 마땅히 이로써 전언(傳言)하겠습니다.”</p> <p>하였다. 최석정이 경비(經費)가 부족(不足)한 이유로써 서관(西關)·북도(北道)의 전세(田稅)인 곡물(穀物)을 옮겨서 쓰려고 하니, 김창집과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p> <p>“북로(北路)의 전세는 아주 적으니, 취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다만 서로(西路)의 전세를 취하여 쓸 것을 명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인하여 말하기를,</p> <p>“매양 북관(北關)과 관동(關東)에 흉년이 들 때에 영남(嶺南)이 치우치게 그해를 받으니, 지금 마땅히 영해(寧海) 지방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충주(忠州)의 양진(楊津)이나 아산(牙山)의 공진(貢津)의 예(例)와 같이 하소서.”</p> <p>하니,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p> <p>“영해(寧海) 지방에서 단독 담당하면 반드시 폐단(弊端)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므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p> <p>“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마침내 그 말을 따랐다.</p>	<p>如忠州楊津、牙山貢津之例。” 昌集以爲：“寧海獨當，必有弊端。” 鎭厚陳其不必然，上遂從其言。</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5월 29 일(병술) 3번째기사</p>	<p>부수찬(副修撰) 이해조(李海朝)가 상소(上疏)하여 그 아버지가 무함(誣陷) 당한 상황을 아뢴 것이 자못 천여언(千餘言)이었는데, 답하기를,</p> <p>“선경(先卿)13631) 이 무함당한 것은 지금 이미 환히 다 알고 있으니,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p> <p>하였다. 이에 앞서 현종조(顯宗朝) 때 대관(臺官) 이지익(李之翼)이 이해조의 아버지 이일상(李一相)을 탄핵하여 말하기를, ‘변방의 장수에게서 뇌물로 쌀을</p>	<p>副修撰李海朝上疏， 陳其父被誣之狀， 殆千餘言， 答曰：“先卿被誣， 今已洞悉， 勿辭察職。” 先是， 顯宗朝臺官李之翼劾海朝父一相以爲：“受邊帥賂米。” 朝廷按驗無實， 遂拿之翼， 而白一相之冤。 及今大臣引此事， 請緘問</p>

	<p>받았다.’ 하기에 조정에서 안험(按驗)한 결과 사실이 없으므로, 드디어 이지익을 나치(拿致)하여 이일상의 억울함을 밝혔다. 지금에 와서 대신이 이 일을 끌어 이야(李壘)를 함문(緘問)하기를 청하니, 이지익의 아들 이인상(李寅相)이 전의 일을 제시(提示)하면서 이일상을 여지 없이 추악하게 욕하기 때문에, 이해조가 소(疏)로써 변명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p>	<p>李壘，之翼之子寅相，疏提前事，醜辱一相無餘地，故海朝以疏辨之如此矣。</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6월 17일(계묘) 1번째기사</p>	<p>강원도 감진 어사(江原道監賑御史) 오명준(吳命峻)이 복명(復命)하고 진민도(賑民圖)를 올렸다. 이때에 관동(關東)에 크게 기근(饑饉)이 들어 오명준이 왕명을 받들어 진휼(賑恤)을 감독하고 돌아오게 되자, 이 그림을 만들어 바친 것이다. 그림 그린 것은, 모두 곡식을 운반하여 분배해 진휼(賑恤)하는 일과 유민(流民)이 돌아와 모여 살면서 늙고 파리한 사람이 때 지어 찬축(攢祝)하는 형상인데, 어떤 사람이 오명준을 보고 이르기를, ‘그대의 그림이 진실로 아름다우나, 거의 정협(鄭俠)의 유민도(流民圖)13676)와는 뜻이 다르다.’고 하니, 오명준이 부끄러워하는 기색(氣色)이 있었다.</p>	<p>癸卯/江原道監賑御史吳命峻復命，進賑民圖。時，關東大饑，命峻承命監賑，及歸作此圖以獻，而所畫者，皆運粟分賑之事，及流民還集，老羸攢祝之狀，或謂命峻曰：“君之畫誠美矣，殆與鄭俠流民圖異意。”命峻有慙色。</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7월 9일(갑자)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진연(進宴)의 일로써 설청(設廳)하고 낭청(郎廳)13696)을 나오게 할 것을 청하였으니, 대체로 작년에 진연(進宴)할 것을 금년으로 물려서 행하라는 분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처음에는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다시 품(稟)할 것을 명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또 다시 이달 그믐에 보아서 품정(稟定)하라고 한 것을 최석정(崔錫鼎)과 민진후(閔鎭厚)가 두 번 세 번 진청(陳請)하므로, 그제야 윤허한 것이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선조(先朝) 때에 재생청(裁省廳)을 설치하여 고(故) 상신(相臣) 이단하(李端夏)와 신의 선신(先臣)13697)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고, 고(故) 판윤(判尹) 이광하(李光夏)와 고(故) 감사(監司) 홍득우(洪得禹)를 낭관(郎官)으로 삼아서 시행하여 강론(講論)하여 결정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기사년13698)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폐지시켰으니, 지금 마땅히 강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p>	<p>甲子/藥房入診。領議政崔錫鼎以進宴請設廳，出郎廳。蓋昨年進宴，有退行於今年之教故也。上，初命待秋成更稟，至是又令更觀今晦而稟定。錫鼎及閔鎭厚，再三陳請，乃允之。鎭厚言：“先朝設裁省廳，使故相臣李端夏，及臣之先臣主管，故判尹李光夏，故監司洪得禹爲郎，行之五六年，講定成法，至己已無端廢閣。今宜講行。”上可之。</p>

<p>숙종 43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7월 24 일(기묘) 2번째기사</p>	<p>하니, 임금의 옷이 옳게 여겼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서문유(徐文裕)가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서문유가 말하기를, “작년에 민진후(閔鎭厚)가 진연(進宴)할 때에 여악(女樂)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아악(雅樂)이나 속악(俗樂)을 마련(磨鍊)하자는 뜻으로 진달(陳達)하였습니다. 대개 사직(社稷)이나 문묘(文廟)에 사용하는 것이 아악(雅樂)이 되고 거동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속악(俗樂)이 됩니다. 연례(宴禮)나 제향(祭享)에는 악장(樂章)이 같지 않으니, 만약 아악(雅樂)을 사용하게 되면 며칠 사이에 반드시 기일(期日)에 맞게끔 교습(敎習)시켜 기예(技藝)가 성숙(成熟)하기가 어려우며,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을 섞어서 사용하면 또한 간섭(干涉) 제지(制止)시킬 근심이 많을 것이니, 속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대신(大臣)의 뜻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속악으로 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서문유가 말하기를, “진연(進宴)할 때에 입참(入參)하는 여러 신하들의 복색(服色)이 정식(定式)으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오례의(五禮儀)》에는 ‘정월 초하루와 동짓날 모이는 의식에는 상복(常服)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니, 상복은 곧 흑단령(黑團領)입니다. 외의(外議)에서는 혹 말하기를, ‘서총대(瑞葱臺) 도본(圖本)에 의하여 시복(時服)으로 예(禮)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주상께서 이미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시면 마땅히 흑단령으로 예를 행한다.’고 하였으니, 친림(親臨)하신 법전(法殿)에서 여러 신하들이 헌수(獻壽)하는 것은 사체(事體)의 중요함이 서총대(瑞葱臺)에서 일시에 연례(宴禮)를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어떤 복색(服色)으로 법을 정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禮曹判書徐文裕請對入侍。 文裕曰：“昨年，閔鎭厚以進宴時不用女樂，以雅、俗樂磨鍊之意，陳達矣。 蓋用之社稷、文廟者，爲雅樂，用之舉動者，爲俗樂矣。 宴禮、祭享，樂章不同，若用雅樂，則時日之間，必難及期敎習成才，雜用雅、俗樂，亦多掣肘之患，以俗樂磨鍊似宜。 大臣之意亦然，故敢達。” 上曰：“以俗樂定用。” 文裕曰：“進宴時入參諸臣服色，未有定式之事。 《五禮儀》，正至會儀則以常服磨鍊，常服卽黑團領也。 外議或以爲：‘依瑞葱臺圖，以時服行禮爲宜’，或以爲：‘自上既御仁政殿，則當以黑團領行禮’云。 親臨法殿，群臣上壽，事體之重，與瑞葱臺一時宴禮有異，以何服色定式乎？” 上曰：“法殿親臨，事體自別，不宜用時服。 定以黑團領可也。” 文裕曰：“考見瑞葱臺題名，有京畿監司入參之例矣。 今番參宴宰臣，其數甚少，且有前例，宜令一體入參。” 上曰：“依爲之。”</p>
--	---	---

	<p>“법전(法殿)에 친림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하니, 마땅히 시복(時服)을 사용할 수는 없다. 흑단령(黑團領)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서문유가 말하기를,</p> <p>“서총대(瑞葱臺)에 제명(題名)된 것을 상고하여 보건대,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입참(入參)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연(參宴)하는 재신(宰臣)의 그 수효가 매우 적고 또 전례(前例)도 있으니, 마땅히 똑같이 입참(入參)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대로 하라.”</p> <p>하였다.</p>	
<p>숙종 44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8월 3일 (무자) 1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작년에 감면한 3도(道)의 물선(物膳)을 복구할 일을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내년 가을까지 우선 감면하라고 명하였다.</p>	<p>戊子/禮曹以昨年所減三道物膳復舊事, 稟啓, 上命限明秋姑減。</p>
<p>숙종 44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8월 27 일(임자) 1번째기사</p>	<p>인정전(仁政殿)에서 진연(進宴)하여 아홉 번 술잔을 돌리고 과하였다.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인정전의 북벽(北壁)에 남향으로 설치하였다. 장악원(掌樂院)에서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 벌여 설치하였다. 전설사(典設司)에서 왕세자(王世子)의 위치(位次)를 어좌 동남에 서향으로, 2품(品) 이상인 종친(宗親)·의빈(儀賓)의 자리를 왕세자의 뒤 북과 남에, 2품 이상인 문관(文官)·무관(武官)의 자리를 어좌 서남에 모두 겹줄로 서로 향하고 북이 위가 되게, 승지(承旨)의 자리를 서남 모퉁이에 북향으로 동이 위가 되게, 사관(史官)은 그 뒤에, 당상(堂上) 3품인 종친의 자리를 전계(殿階) 위 동에, 당상 3품관인 문관·무관의 자리를 전계 위서에, 시신(侍臣) 당하(堂下) 3품 이하의 자리를 전계 위 동과 서에, 전(殿)에 오르지 않는 자의 자리를 남계(南階) 위 동·서에다 매등(每等)·매위(每位)가 겹줄로 서로 향하고 북이 위가 되게 설치하였다. 이날 초엄(初嚴)13786) 을 북치니, 병조(兵曹)에서 제위</p>	<p>壬子/進宴於仁政殿, 九觴乃罷。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仁政殿北壁向南。掌樂院展軒懸於殿庭。典設司設王世子位次於御座東南西向, 宗親、儀賓二品以上位於王世子後北南, 文、武二品以上位於御座西南, 俱重行, 相向北上, 承旨位於西南隅, 北向東上, 史官在其後, 宗親堂上三品位於殿階上之東, 文、武堂上三品官位於殿階上之西, 侍臣堂下三品以下位於階上東西, 不陞殿者位於南階上東西, 俱每等每位重行, 相向北上。 鼓初嚴, 兵曹勒諸</p>

(諸衛)를 정제하여 정계(正階)와 전정에 노부(鹵簿)·의장(儀仗)을 벌이고 동서로 군사를 진열시키되 모두 정식으로 하고, 태복정(太僕正)이 전정 중도(中道)의 좌우에 여련(輿輦)과 장마(仗馬)를 진배(進排)하였다. 이엄(二嚴)을 북치니, 종친·문관·무관이 모두 문 밖으로 나아가고, 왕세자가 나와서 인정전 문 밖으로 나아갔다. 중엄(中嚴)에 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니,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함문(閤門) 안에서 전정에 들어와서 사배(四拜)하고 나가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갔다. 삼엄(三嚴)에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3품 이하인 종친·문관·무관이 동서의 편문(偏門)을 거쳐 들어가 배위(拜位)에 나아가고, 왕세자가 막차(幕次)에서 나와 서향하여 섰다. 북소리가 그치니, 내문(內門)·외문(外門)을 닫았다. 임금이 여(輿)를 타고 나오니, 이때에 의장이 움직이고 음악은 여민락만(與民樂慢)을 연주하였다.

임금이 여에서 내려서 좌에 오르니, 노연(爐煙)이 오르고, 위관(衛官)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왕세자가 동문을 거쳐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고, 2품 이상인 종친·문관·무관이 동편문(東偏門)을 거쳐 들어와 배위에 나아갔다. 전의(典儀)가, ‘사배(四拜)하라.’ 하고, 찬의(贊儀)가, ‘국궁(鞫弓)·사배·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창(唱)하니, 왕세자와 종친·문관·무관이 다 사배하였다. 이때에 사옹 제조(司饗提調)가 주기(酒器)를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고,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모두 꿇어앉고, 제조가 휘건함(揮巾函)을 받드니 음악이 시작되고,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내시(內侍)가 꿇어앉아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찬안(饌案)을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고, 별행과(別行果)를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예방 승지(禮房承旨) 심극(沈極)이 화반(花盤)을 받들고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니 음악이 시작되고, 내시가 꽃을 받아 익선관 오른쪽에 꽂으니 음악이 그쳤다. 제조가 염수(鹽水)를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고, 공안(空案)을 찬안(饌案) 오른쪽에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衛，陳鹵簿、儀仗於正階及殿庭，東西列軍士，竝如式，太僕正進輿輦及仗馬於殿庭中道左右。鼓二嚴，宗親、文武之官，俱就門外，王世子出就仁政殿門外。中嚴，上具翼善冠、袞龍袍，御宣政殿，近侍及執事官內閣入庭，四拜而出，典樂率工人入就位。三嚴，執事官先就位，宗親、文武三品以下，由東西偏門入就拜位，王世子出次西向立。鼓聲止，闕內、外門。上乘輿以出，於是仗動樂奏《與民樂慢》。上降輿陞座，爐烟升，諸衛官入侍。王世子由東門，入就拜位，宗親、文武及二品以上，由東偏門入就拜位。典儀曰四拜，贊儀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宗親、文武官，皆四拜。於是，司饗提調進酒器，樂作，進訖，樂止。王世子以下皆跪，提調奉揮巾函，樂作，詣座前跪，內侍跪進訖，樂止。提調進饌案，樂作，進別行果訖，樂止。禮房承旨沈極奉花盤詣座前跪，樂作，內侍受花，插于翼善冠之右，樂止。提調進鹽水，樂作，以空案置饌案之右，樂止。王世子以下，跪如前，提調進小饌，樂奏《千年萬歲曲》，進

이하가 전과 같이 꿏어앉고 제조가 소찬(小饌)을 바치니 음악은 천년만세곡(千年萬歲曲)을 연주하고,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가 첫 잔[爵]을 바치고 대치사관(代致詞官)이 바쁜 걸음으로 어좌 앞에 나아가 꿏어앉아 치사하기를, ‘왕세자 모(某)는 삼가 천천세(千千歲)의 수(壽)를 올립니다.’ 하고, 임금이 잔을 드니 헌가(軒架)13787)에서 음악을 시작하여 여민락 만을 연주하고, 제조가 점(坵)13788)에 잔을 도로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꿏어앉고 제조가 고기를 베어 꿏어앉아 찬안 오른쪽에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고, 만두(饅頭)를 바치고 나니 음악이 그쳤다.

반수(班首)인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둘째 잔을 바치고 처음과 같이 대치사(代致詞)하고, 승지가 어좌 앞에 나아가 꿏어앉아 전명(傳命)을 아뢰고 나와 전계(殿階)에 임하여 서향해서 선교(宣敎)하기를, ‘경(卿)들의 잔[觴]을 공경히 들라.’ 하고, 임금이 잔을 첫 잔 때와 같이 들고, 점에 잔을 도로 놓으니 음악이 그쳤다. 왕세자 이하가 삼고두(三叩頭)13789) 하고 공수(拱手)하여 이마에 대고 세 번 산호(山呼)하기를, ‘천세(千歲), 천세, 천천세(千千歲)!’ 하니, 악공(樂工)·군교(軍校)가 큰소리로 호응하였다. 왕세가 이하가 사배한 뒤에 왕세자가 어좌 동편으로 올라가 서향하여 앉고, 승지·사관이 물러가 전계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앉고, 종친·문관·무관이 각각 동서의 반차(班次)에 나아갔다. 사옹 부제조(司饗副提調)가 왕세자에게 찬탁(饌卓)을 바치고, 보덕(輔德)이 꽃을 바치고 집사자(執事者)가 종친·문관·무관이 찬탁에 나아가 꽃을 뿌렸다. 임금이 전교(傳敎)를 내리기를, ‘시위(侍衛)하는 제장(諸將)에게 꽃을 내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시위하는 제장은 자리에 나아가라.’ 하였다. 제조가 탕(湯)을 바치니 음악이 시작되었는데 곡은 소찬을 바칠 때와 같았다. 왕세자 이하가 자리를 떠나 부복(俯伏)하였는데, 무릇 탕을 바치고 잔을 바칠 때에는 다 이와 같이 하며 음악을 연주하고 그쳤다. 연잉군(延昞君)이 세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오운개서조곡(五雲開瑞朝曲)

訖, 樂止。王世子進第一爵, 代致詞官趨詣御座前跪, 致詞曰: “王世子某, 謹上千千歲壽。” 上舉爵, 軒架作樂, 奏《與民樂慢》, 提調復爵於坵, 樂止。王世子以下跪, 提調割肉跪進于饌案之右, 樂作, 進饅頭訖, 樂止。班首領議政崔錫鼎進第二爵, 代致詞如初, 承旨詣座前跪, 啓傳命出臨階西向, 宣敎曰: “敬舉卿等之觴。” 上舉爵如第一爵, 復爵於坵, 樂止。王世子以下, 三叩頭, 控手加額, 山呼者三, 曰千歲千歲千千歲, 樂工、軍校, 高聲應之。王世子以下四拜後, 王世子升詣御座東偏西向坐, 承旨、史官, 退就殿階上北向坐, 宗親、文武官, 各就東西班次。司饗副提調供王世子饌卓, 輔德供花, 執事者詣宗親、文武官饌卓散花。上下傳敎曰: “侍衛諸將賜花。” 又傳曰: “侍衛諸將就位。” 提調進湯, 樂作, 曲如進小饌。王世子以下, 離位俯伏, 凡進湯進爵時, 皆同, 樂止。延昞君進第三爵, 上舉爵, 樂奏《五雲開瑞朝曲》, 舞童入作初舞。賜酒, 王世子以下, 離位跪飲, 進湯, 樂奏《清平曲》。延齡君昀, 進四爵,

을 연주하고 무동(舞童)이 들어와 초무(初舞)를 추었다. 술을 내리니, 왕세자 이하가 자리를 떠나 꿇어앉아 마셨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청평곡(淸平曲)을 연주하였다. 연령군(延齡君) 이훤(李田)이 네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정읍 만기(井邑慢機)를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아박(牙拍)을 추었다. 이하 여섯 번 잔을 바치고 술을 내릴 때에도 위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가 다섯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보허자영(步虛子令)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향발(嚮鑾)13790) 을 추었다. 임금이 막차에 들어가 사알(司謁)을 시켜 전교하기를, ‘공인(工人)들에게 음식을 먹이라.’ 하였다. 한참 뒤에 임금이 진좌(殿坐)하고, 탕을 바치니, 음악은 하운봉(夏雲峰)을 연주하였다. 임양군(臨陽君) 이환(李桓)이 여섯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여민락 만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무고(舞鼓)를 추었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였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일곱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보허자영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광수(廣袖)를 추었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유황곡(維皇曲)을 연주하였다. 영돈녕(領敦寧) 김주신(金柱臣)이 여덟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여민락 영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향발을 추었다. 탕을 바치니, 음악은 정동방지곡(靖東方之曲)을 연주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채(趙泰采)가 아홉째 잔을 바치고 임금이 잔을 드니, 음악은 보허자영을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광수를 추었다. 소선(小簫)을 물리고 대선(大簫)을 바치니, 음악은 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을 연주하였다. 이어서 여민락을 연주하고 처용무(處容舞)를 바치었다. 철악(徹樂)하고, 최석정이 나아가 영만(盈滿)하여 편안할 때에 위망(危亡)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진계(陳戒)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심국(沈極)이 기구 제신(耆舊諸臣)과 시연 제신(侍宴諸臣)의 부모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上學爵，樂奏《井邑慢機〔井邑慢機〕》，舞童入作牙拍。以下六爵，賜酒如上儀。進湯，樂奏《桓桓曲》。判府事李濡進第五爵，上學爵，樂奏《步虛子令》，舞童入作嚮鑾。上入幕次，令司謁傳教曰：“工人等饋饌。”良久上殿坐進湯，樂奏《夏雲峰》。臨陽君桓，進第六爵，上學爵，樂奏《與民樂慢》，舞童入作舞鼓，進湯，樂奏《洛陽春》。東平尉鄭載崙進第七爵，上學爵，樂奏《步虛子令》，舞童入作廣袖，進湯，樂奏《維皇曲》。領敦寧金柱臣進第八爵，上學爵，樂奏《與民樂令》，舞童入作響鑾，進湯，樂奏《靖東方之曲》。戶曹判書趙泰采進第九爵，上學爵，奏樂《步虛子令》，舞童入作廣袖，退小簫，進大簫，樂奏《太平年之樂》。仍奏《與民樂》，處容舞進。徹樂，錫鼎進陳戒盈滿安不忘危之意，上嘉納。極請耆舊諸臣及侍宴諸臣父母年七十以上者，皆賜食物，領府事南九萬以路遠未及上來，亦賜別諭招來，上可之。徹案，王世子以下，降就拜位，行四拜。左通禮跪告禮畢，上還內。

	<p>자에게는 모두 음식을 내리고, 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은 길이 멀기 때문에 미처 올라 오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별유(別諭)를 내려 불러오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칠안(徹案)하고서 왕세자 이하가 내려가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를 행하였다. 좌통례(左通禮)가 꿇어앉아 예(禮)가 끝났음을 고하니, 임금이 대내(大內)로 돌아갔다.</p> <p>진연(進宴)에 참여한 신하들은 동벽(洞壁)은 연잉군(延昞君) 이금(李吟)·연령군(延齡君) 이훤(李田)·임창군(臨昌君) 이훈(李焜)·임양군(臨陽君) 이환(李桓)·회원군(檜原君) 이윤(李倫)·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해창휘(海昌尉) 오탈주(吳泰周)·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전성군(全城君) 이혼(李混)·동원군(東原君) 이집(李漵)·영창군(瀛昌君) 이침(李沈)·영신군(靈慎君) 이형(李滢)·진평군(晋平君) 이택(李澤)·임원군(林原君) 이표(李杓)·해풍군(海豐君) 이수(李燧)·오성군(烏城君) 이형연(李炯淵)·운흥군(雲興君) 이영(李暉)·서천군(西川君) 이황(李桴)·화춘군(花春君) 이정(李澣)·능흥군(綾興君) 이순형(李純馨)·성평군(星坪君) 이탁(李濯)·영운군(靈雲君) 이의천(李義天)·대원군(帶原君) 이광윤(李光胤)·밀성군(密城君) 이식(李栻)·전산군(全山君) 이심(李深)·화릉군(花陵君) 이조(李洮)·금천군(錦川君) 이지(李楮)·밀창군(密昌君) 이직(機李)·능풍군(綾豐君) 이순겸(李純謙)·화평군(花坪君) 이시헌(李時憲)·여창군(驪昌君) 이형협(李炯協)·영순군(靈順君) 이유(李洙)·동창군(東昌君) 이정(李炆)·광선군(光善君) 이장(李漳)·함릉군(咸陵君) 이극(李極)·함평군(咸平君) 이홍(李泓)·영창군(靈昌君) 이익형(李翼馨)·해성군(海城君) 이억(李億)·여흥군(驪興君) 이해(李垓)·과릉 도정(坡陵都正) 이삼(李參)·과산 도정(坡山都正)</p>	<p>參宴諸臣, 東壁, 延昞君吟、延齡君田、臨昌君焜、臨陽君桓、檜原君倫、東平尉鄭載崙、海昌尉吳泰周、錦平尉朴弼成、全城君混、東原君漵、瀛昌君沉、靈慎君滢、晋平君澤、林原君杓、海豐君燧、烏城君炯淵、雲興君暉、西川君桴、花春君澣、綾興君純馨、星坪君濯、靈雲君義天、帶原君光胤、密城君栻、全山君深、花陵君逃、錦川君楮、密昌君機、綾豐君純謙、花坪君時憲、驪昌君炯協、靈順君洙、東昌君炆、光善君漳、咸陵君極、咸平君泓、靈昌君翼馨、海城君億、驪興君垓、坡陵都正參、坡山都正杉、昌寧都正獐、杞安都正構、密豐都正坦、益寧都正梯、西陵都正煜、儒川都正澣、光山都正河、靈原都正億, 【以上宗親。】 知製教許頻、沈仲良、趙湜、鄭來祥, 【以上通政。】 輔德崔啓翁、弼善李熊徵、文學趙泰億、司書李台佐、說書李世德、知製教柳憲章·李浚·崔昌大·李夏源·丁時潤·朴行義·李大成。 西壁, 判中樞柳尙運·徐文重、領議政崔錫鼎、判中樞李濡、左</p>
--	--	---

	<p>이삼(李杉)·창녕 도정(昌寧都正) 이장(李樟)·기안 도정(杞安都正) 이구(李構)·밀풍 도정(密豐都正) 이탄(李坦)·익녕 도정(益寧都正) 이제(李梯)·서릉 도정(西陵都正) 이옥(李煜)·유천 도정(儒川都正) 이정(李滯)·광산 도정(光山都正) 이하(李河)·영원 도정(靈原都正) 이헌(李櫛) 【이상 종친(宗親)이다.】·지제교(知製敎) 허경 (許穎)·심중량(沈仲良)·조식(趙湜)·정내상(鄭來祥) 【이상 통정 대부(通政 大夫)이다.】·보덕(輔德) 최계옹(崔啓翁)·필선(弼善) 이웅징(李熊徵)· 문학(文學) 조태억(趙泰億)·사서(司書) 이태좌(李台佐)·설서(說書) 이세덕(李世德), 지제교 유현장(柳憲章)·이준(李浚)·최창대(崔昌大)· 이하원(李夏源)·정시윤(丁時潤)·박행의(朴行義)·이대성(李大成)이고, 서벽(西壁) 은 관중추(判中樞) 유상운(柳尙運)·서문중(徐文重),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관중추 이유(李濡)·좌의정(左議政) 서종대 (徐宗泰) 【이상 상신(相臣)이다.】·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채(趙泰采)·병조 판서(兵曹判書) 조상우 (趙相愚) 【이상 승정 대부(崇政大夫)이다.】·좌참찬(左參贊) 엄집(嚴緝)·판윤 (判尹) 민진후(閔鎭厚) 【이상 정헌 대부(正憲大夫)이다.】·지중추(知中樞) 강현(姜覲)·유득일(兪得一),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인엽(李寅燁)· 부사직(副司直) 윤세기(尹世紀)·예조 판서(禮曹判書) 서문유(徐文裕) 【이상 자헌 대부(資憲大夫)이다.】·동지돈녕(同知敦寧) 김석연 (金錫衍)·부제학(副提學) 이돈(李墩)·호조 참판(戶曹參判) 황흠(黃欽), 부 호군(副護軍) 이진휴(李震休)·홍시주(洪時疇), 동지중추(同知中樞) 이홍술 (李弘述)·훈련 도정(訓練都正) 원진수(元振殊) 【이상 가의 대부(嘉義 大夫)이다.】·예조 참판(禮曹參判) 홍만조(洪萬朝)·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 基夏)·부사직(副司直) 김중기(金重器), 부호군(副護軍) 황진문(黃震文)· 김중원(金重元)·민함(閔涵)·박선흥(朴宣興)·남필성(南弼星)·남치훈(南致熏)·박권</p>	<p>議政徐宗泰, 【以上相臣。】 慶恩府院 君金柱臣、戶曹判書趙泰采、兵曹判 書趙相愚, 【以上崇政。】 左參贊嚴 緝、判尹閔鎭厚, 【以上正憲。】 知中 樞姜覲·兪得一、吏曹判書李寅燁、 副司直尹世紀、禮曹判書徐文裕, 【以 上資憲。】 同知敦寧金錫衍、副提學 李塾、戶曹參判黃欽、副護軍李震休 ·洪時疇、同知中樞李弘述、訓練都 正元振殊, 【以上嘉義。】 禮曹參判洪 萬朝、韓城君李基夏、副司直金重 器、副護軍黃震文·金重元·閔涵· 朴宣興·南弼星·南致熏·朴權、敦 寧都正李弘逸、左尹李思永、右尹李 健命、刑曹參判姜銑、兵曹參判尹以 道、京畿觀察使金字杭、工曹參判金 演、吏曹參判崔錫恒、江華留守閔鎭 遠、開城留守韓聖佑、南溪君洪璠, 【以上嘉善。】 黃海觀察使許墀、忠 清觀察使李彦經、忠清兵使李弘肇、 副司果李國芳·尹鼎和·成瓘、副護 軍朴昌漢·任胤元·趙泰東·金弘楨 ·林濩·權尙游·崔重泰、禮曹參議 尹德駿、戶曹參議李東旻、兵曹參議 申鉉、參知呂必容、判決事元聖兪、</p>
--	--	---

<p>(朴權), 돈녕 도정(敦寧都正) 영(永)·우윤(右尹) 이건명(李健命)·형조 참판(刑曹參判) 참판(兵曹參判) 윤이도(尹以道)·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공조 참판(工曹參判) 김연(金演)·이조 참판(吏曹參判) 강화 유수(江華留守) 민진원(閔鎭遠)·개성 유수(開城留守) (韓聖佑)·남계군(南溪君) 홍숙(洪壽), 【이상 가선 대부(嘉善大夫)이다.】·황 해 관찰사(黃海觀察使) 허지(許埤)·충청 관찰사(忠淸觀察使) (李彦經)·충청 병사(忠淸兵士) 이홍조(李弘肇), 부사과(副司果) (李國芳)·윤정화(尹鼎和)·성관(成瓘), 부호군(副護軍) 박창한(朴昌漢), 임윤원 (任胤元)·조태동(趙泰東)·김홍정(金弘楨)·임호(林濩)·권상유(權尙游)·최중태(崔重 泰), 예조 참의(禮曹參議) 윤덕준(尹德駿)·호조 참의(戶曹參議) (李東旻)·병조 참의(兵曹參議) 신임(申鎡)·참지(參知) 여필용(呂必容)· 판결사(判決事) 원성유(元聖兪)·형조 참의(刑曹參議) 이희무(李喜茂)· 대사성(大司成) 이만성(李晩成)·이조 참의(吏曹參議) 윤지인(尹趾仁) 【이상 통정 대부(通政大夫)이다.】·집의(執義) 이사상(李師尙)· 장령(掌令) 이익한(李翊漢)·지평(持平) 이정제(李廷濟)·헌납(獻 納) 박휘등(朴彙登)·정언(正言) 한배주(韓配周)·응교(應教) 이집(李堦), 교리(校理) 오명준(吳命峻)·이조(李肇), 부교리(副校 理) 유봉휘(柳鳳輝)·임수간(任守幹), 수찬(修撰) 남취명(南就明)·조태일 (趙泰一), 지제교(知製教) 이탄(李坦)·이의만(李宜晩), 협률랑(協律郎) 장악정 (掌樂正) 이덕영(李德英)·도승지(都承旨) 이동욱(李東郁)·좌승지(左承旨) 임순원(任舜元)·우승지(右承旨) 심극(沈極)·좌부승지(左副承旨) 박필명(朴弼明)·우부승지(右副承旨) 김상직(金相稷)·동부승지 (同副承旨) 조태로(趙泰老)·주서(注書) 구만리(具萬里)·봉교(奉 敎) 이재(李緯), 대교(待敎) 홍우서(洪禹瑞)·이진검(李眞儉), 검열(檢</p>	<p>이홍일(李弘逸)·좌윤(佐尹) 이사영(李思 永)·우윤(右尹) 강선(姜銑)·병조 김우항(金宇杭)· 최석항(崔錫恒)· 한성우 (韓聖佑)·남계군(南溪君) 홍숙(洪壽), 【이상 가선 대부(嘉善大夫)이다.】·황 해 관찰사(黃海觀察使) 허지(許埤)·충청 관찰사(忠淸觀察使) 이언경 (李彦經)·충청 병사(忠淸兵士) 이홍조(李弘肇), 부사과(副司果) 이국방 (李國芳)·윤정화(尹鼎和)·성관(成瓘), 부호군(副護軍) 박창한(朴昌漢), 임윤원 (任胤元)·조태동(趙泰東)·김홍정(金弘楨)·임호(林濩)·권상유(權尙游)·최중태(崔重 泰), 예조 참의(禮曹參議) 윤덕준(尹德駿)·호조 참의(戶曹參議) 이동암 (李東旻)·병조 참의(兵曹參議) 신임(申鎡)·참지(參知) 여필용(呂必容)· 판결사(判決事) 원성유(元聖兪)·형조 참의(刑曹參議) 이희무(李喜茂)· 대사성(大司成) 이만성(李晩成)·이조 참의(吏曹參議) 윤지인(尹趾仁) 【이상 통정 대부(通政大夫)이다.】·집의(執義) 이사상(李師尙)· 장령(掌令) 이익한(李翊漢)·지평(持平) 이정제(李廷濟)·헌납(獻 納) 박휘등(朴彙登)·정언(正言) 한배주(韓配周)·응교(應教) 이집(李堦), 교리(校理) 오명준(吳命峻)·이조(李肇), 부교리(副校 理) 유봉휘(柳鳳輝)·임수간(任守幹), 수찬(修撰) 남취명(南就明)·조태일 (趙泰一), 지제교(知製教) 이탄(李坦)·이의만(李宜晩), 협률랑(協律郎) 장악정 (掌樂正) 이덕영(李德英)·도승지(都承旨) 이동욱(李東郁)·좌승지(左承旨) 임순원(任舜元)·우승지(右承旨) 심극(沈極)·좌부승지(左副承旨) 박필명(朴弼明)·우부승지(右副承旨) 김상직(金相稷)·동부승지 (同副承旨) 조태로(趙泰老)·주서(注書) 구만리(具萬里)·봉교(奉 敎) 이재(李緯), 대교(待敎) 홍우서(洪禹瑞)·이진검(李眞儉), 검열(檢</p>	<p>刑曹參議李喜茂、大司成李晩成、吏 曹參議尹趾仁, 【以上通政。】執義李 師尙、掌令李翊漢、持平李廷濟、獻 納朴彙登、正言韓配周、應教李堦、 校理吳命峻·李肇、副校理柳鳳輝· 任守幹、修撰南就明·趙泰一、知製 教李坦·李宜晩、協律郎掌樂正李德 英、都承旨李東郁、左承旨任舜元、 右承旨沈極、左副承旨朴弼明、右副 承旨金相稷、同副承旨趙泰老、注書 具萬理、奉教李緯、待教洪禹瑞·李 眞儉、檢閱李澤·洪致中·申靖夏、 假注書宋成明·李濟。不陞殿者, 進 宴廳郎廳金昌國·尹澤·李遂大、監 造官鄭壽期·洪可相·李鼎佐、禮賓 主簿柳載和、繕工假監役申載、通禮 閔震元·洪景濂、相禮成瑛、酒卓官 權益隆·洪重亨·曹夏奇·朴守義· 張震煥·任諫、翊衛司官任敵·李箕 翊·鄭希先·李齊說·朴泰成·孟淑 夏·趙正誼·洪禹寧·李簪·申思永 ·宋堯佐·趙斗彬·徐宗選、兵曹郎 官申弼賢·閔鎭東·黃翼再·徐命遇 ·韓祉、都摠府官安相漢·韓聖欽、 尙瑞直長韓璠·李老成、致詞官尹植</p>
---	---	--

關) 이택(李澤)·홍치중(洪致中)·신정하(申靖夏)·가주서(假注書) 송성명(宋成明)·이제(李濟)이고, 전계(殿階)에 오르지 않은 자는 진연청 낭청(進宴廳郎廳) 김창국(金昌國)·윤택(尹澤)·이수대(李遂大), 감조관(監造官) 정수기(鄭壽期)·홍가상(洪可相)·이정좌(李鼎佐), 예빈 주부(禮賓主簿) 유재화(柳載和)·선공 가감역(繕工假監役) 신재(申載), 통례(通禮) 민진원(閔震元)·홍경렴(洪景濂), 상례(相禮) 성환(成煥), 주탁관(酒卓官) 권익룡(權益隆)·홍중형(洪重亨)·조하기(曹夏奇)·박수의(朴守義)·장진환(張震煥)·임원(任諫)·익위사간(翊衛司官) 임선(任諫)·이기익(李箕翊)·정희선(鄭希先)·이제열(李齊說)·박태성(朴泰成)·맹숙하(孟淑夏)·조정익(趙正誼)·홍우녕(洪禹寧)·이당(李當)·신사영(申思永)·송요좌(宋堯佐)·조두빈(趙斗彬)·서종선(徐宗選), 병조 낭관(兵曹郎官) 신필현(申弼賢)·민진동(閔鎭東)·황익재(黃翼再)·서명우(徐命遇)·한지(韓祉), 도총부관(都摠府官) 안상한(安相漢)·한성흠(韓聖欽), 상서 직장(尙瑞直長), 한숙(韓孺)·이노성(李老成), 치사관(致詞官) 윤식(尹植)·조성복(趙聖復), 선전관(宣傳官) 이석관(李碩寬)·유윤흥(柳胤興)·한날(韓琮)·홍원익(洪元益)·예모관(禮貌官) 조이중(趙彝重)·박성기(朴省己)·정달행(丁達行)·권성규(權聖揆)·조이하(趙彝和)·이세망(李世望)·이득하(李得夏)·이세방(李世芳)·송우석(宋禹錫)이었다.

사신은 논한다. “임금이 즉위한 지 이제 32년이 되었는데, 조석(朝夕)으로 가까이 닦친 근심은 없으나, 인사(人事)가 여러 번 잘못되어 구징(咎徵)이 자주 나타나고, 기근(饑饉)·여역(癘疫)이 없는 해가 없으므로, 민생의 곤궁이 참으로 이미 극진한데다가, 군비(軍備)가 정제되지 않고 변방에 대한 계획이 오랫동안 허술한 것을 식자가 한심하게 여기니, 또한 태평하여 무시한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연(進宴)한 일 또한 풍형 예대(豐亨豫大)13791) 한 때의 일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러나 위로 왕세자로부터 아래로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러 번 칭찬 뒤에야 허락하였고, 겸허한 덕이 시사(詩詞)에까지 보이며, 밖으로는 기악(伎樂)을 쓰지 않고 안으로는 명부(命婦)를 줄여 절목(節目)

·趙聖復、宣傳官李碩寬·柳胤興·韓琮·洪元益、禮貌官趙彝重·朴省己·丁達行·權聖揆·趙彝和·李世望·李得夏·李世芳·宋禹錫。

【史臣曰：“上之即位，于今三十有二年，雖無朝夕迫近之憂，而人事屢失，咎徵數見，饑饉、癘疫，無歲無之，民生之困，固已極矣。加以戎備不飭，邊謀久踈，南憂北釁，識者寒心，亦非升平無事之時也。今此進宴之舉，無亦近於豐亨豫大之歸歟？然上自王世子，下至諸臣，屢請而後乃許，沖謙之德，至見於詩詞，至於外而不用妓樂，內而減去命婦，節目之間，多從儉約，又可見節省之盛德也。”】

	을 마련할 때에 많이 검약(儉約)을 따랐으니, 또한 절약하는 성덕(盛德)을 알 수 있다.”	
숙종 44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9월 2일 (정사) 1번째기사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 “병가(兵家)의 승산(勝算)은 양항(糧餉)에 달려 있는데,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신보(申報)한 곡물의 수량을 보면, 영변(寧邊)은 관방(關防)이 가장 중요한 곳이나, 곡물이 매우 적으니, 급할 때에 어떻게 믿겠습니까? 감사에게 분부하여 각 고을의 여유 있는 곡물을 거두어 영변 근처에 쌓아 두게 하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 “전사(前史)를 두루 보아도 험조(險阻)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는데, 우리 관애(關陔)의 여러 곳은 산이 다 험해서 동선령(洞仙嶺) 같은 곳에도 나무가 없으니, 마땅히 더 신칙(申飭)해야 합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 “신지(信地)는 미리 정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충주(忠州)·단양(丹陽)으로 하여금 조령(鳥嶺)·죽령(竹嶺)에 둔수(屯守)하게 하고, 황간(黃澗)·영동(永同)과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추풍령(秋風嶺) 안팎을 지키게 하소서.”</p> <p>하였는데, 특진관(特進官) 김연(金演)이 문경(聞慶)을 올려서 부(府)로 삼고, 방어사(防禦使)를 겸하여 조령을 지키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확(商確)하게 하였다.</p>	<p>丁巳/御晝講。 同知事李寅燁曰：“兵家勝算，在於糧餉。 見平安監司穀物報數， 寧邊以關防最重處， 穀物甚少， 緩急何恃？ 宜分付監司， 各邑穀物有裕者， 收積於寧邊近處。” 又言：“歷觀前史， 險阻處必有樹木， 而關陔諸處山， 皆濯濯， 如洞仙嶺， 亦無樹木， 宜加申飭。” 又言：“信地不可不預定， 使忠州、丹陽， 屯守鳥、竹兩嶺， 使黃澗、永同及營將， 守秋風嶺內外。” 特進官金演， 請陞聞慶爲府， 使兼防禦使， 使守鳥嶺， 上竝令廟堂， 商確爲之。</p>
숙종 44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9월 4일 (기미) 1번째기사	<p>교리(校理) 이조(李肇)·부교리(副校理) 유봉휘(柳鳳輝)가 차자(筭子)를 올려 진연(進宴) 때문에 면계(勉戒)하는 뜻을 대략 아뢰고, 도 원옥(冤獄)을 심리하고 군정(軍政)을 신칙(申飭)하고 수령(守令)에 대하여 출척(黜陟)하는 법을 엄하게 해야 하며 검약(儉約)은 궁금(宮禁)에서 비롯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시혜(施惠)를 널리 퍼지 않았다고 하여 전세(田稅)·대동(大同) 가운데에서 적당히 줄여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己未/校理李肇、副校理柳鳳輝， 上筭以進宴， 略陳勉戒之意， 又言理冤獄飭軍政， 守令嚴黜陟之典， 儉約自宮禁而始， 且以施惠不廣， 請於田稅、大同中， 量宜減給， 上嘉納， 令廟堂稟處。</p>
숙종 44권, 32년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차자를 올리기를,	領議政崔錫鼎上筭曰：

<p>(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9월 5일 (경신) 2번째기사</p>	<p>“90세 이상 된 서민(庶民)인 노인은 가자(加資)받았습니다. 성적(成籍)을 살펴 보면 80세 이상이 2백 50여 인인데, 그 안에서 90세 이상은 26인이고, 1백 세가 넘는 자는 3인에 지나지 않아서 그 수가 매우 많지는 않습니다. 10여 석의 쌀과 두어 마리의 소로 술과 고기를 장만하고, 음식을 대략 갖추어 넓고 트인 곳에서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맡아서 공궤(供饋)하게 하면, 일이 번거롭지 않고도 은혜가 실로 넓을 것이니, 덕혜(德惠)를 널리 베푸는 데에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p>	<p>庶老九十以上，得蒙加資。以成籍考之，八十以上，二百五十餘人內，九十以上，廿六人，過百歲者三人，其數不至太多。如將十餘石米數頭牛，辦備酒肉，略具聲樂，就寬敞處，令禮官領饋，則事不煩而恩實溥，其於推廣德惠，似乎得宜。 答曰：“依此施行。”</p>
<p>숙종 44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9월 16일(신미) 1번째기사</p>	<p>경복궁(景福宮)에서 노인연(老人宴)을 행하였는데, 연회에 참여한 자가 1백 50인이었다.</p>	<p>辛未/行老人宴於景福宮。與宴者一百五十人。</p>
<p>숙종 44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9월 25일(경진) 1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이인엽(李寅燁)이 말하기를, “나라에 경례(慶禮)가 있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날 군향(軍餉)이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바치는 것을 줄이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최초의 2년 조(條)를 줄여 받으라고 명하였다. 또 말하기를, “기로(耆老)에게 음식을 제급(題給)하였으니, 종신(宗臣)에게도 고르게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따랐다. 시독관(侍讀官) 조태억(趙泰億)이 최석정(崔錫鼎) 등을 힘껏 구제하여 말하기를, “친국(親鞫) 때에 책유(責諭)하신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에 어그러집니다. 위사(衛士)가 둘러서서 모시는 때에는 사체(事體)가 더욱 손상됩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정식(鄭弼)도 자못 구제하며 해명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庚辰/御晝講。知事李寅燁言：“當此國有慶禮，別爲施惠之日，軍餉雖重，不可無減捧之道。”上命以最初二年條減捧。又言：“耆老食物，題給宗臣，亦宜均施。”上從之。侍讀官趙泰億，力爲營救崔錫鼎等以爲：“親鞫時責諭，有乖敬大臣之道。衛士環侍，事體尤傷。”檢討官鄭弼，亦頗救援，上曰：“潛雖已斃，前頭此輩，必有繼起之患，其憂誠不小矣。君父既痛其情狀，則在大臣之道，何敢緩緩庭鞫，命下之後，日已過午，無意開坐？若欲</p>

	<p>“이잠(李潛)은 비록 이미 죽었지만 앞으로 이런 무리가 반드시 잇달아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그 근심이 참으로 작지 않다. 임금(李)이 이미 그 정상을 통탄스럽게 여겼으면, 대신의 도리로 어찌 감히 느릿느릿 할 수 있으리마는, 정국(庭鞠)하라는 명이 내려진 뒤에 날이 이미 한낮이 넘었는데도 개좌(開坐)할 뜻이 없었다. 만약 인혐(引嫌)하려면, 한편 국문(鞠問)을 시작하고 한편 차자(筓子)를 올려 좌상(左相)을 나오게 하도록 힘써도 안될 것이 없는데, 약방(藥房)에서 문안한 뒤에 차자를 올린다는 핑계로 도로 궐외(闕外)로 나갔으니, 만약 그대로 날이 저물었다면 그날 정국을 끝내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전부터 이런 사체는 없었다.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신하가 오히려 간쟁(諫諍)할 수 있는데, 허물며 대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어찌 위사가 둘러 서 있다 하여 책유하지 못하겠는가? 옥당(玉堂)이 비록 논사(論思)하는 벼슬이라 하더라도 어찌 감히 이러한 일로 쟁론(爭論)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引嫌，則一邊開鞠，一邊陳筓，勉出左相，未爲不可，而藥房問安之後，稱以陳筓，還出闕外，若仍致日暮，則其日庭鞠，終不得爲之(乎) [矣]。自古無如許事體矣。君父有過，臣僚猶可諫也。況大臣有失，豈可以衛士，環列而不爲之責諭乎？玉堂雖曰論思之官，豈敢以如此事爭論乎？”</p>
<p>숙종 44권, 32년 (1706 병술 / 청 강희 (康熙) 45년) 12월 26 일(경술) 1번째기사</p>	<p>반궁(泮宮)13890) 에 감(柑)을 나누어 주고 조석명(趙錫命)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p>	<p>庚戌/頒柑於泮宮，賜趙錫命及第。</p>
<p>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1월 12 일(병인) 2번째기사</p>	<p>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지평 민진동(閔鎭東)이 임홍(林泓)을 도배(鳥配)하라는 명을 환수(還收)하여 강이징(姜以徵)과 더불어 일체 엄문(嚴問)할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임금이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이때 밤이 이미 깊었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물러가려고 하였는데, 임금이 각자에게 감귤(柑橘)을 한 쟁반씩 내려 주었다.</p>	<p>召對玉堂官。持平閔鎭東啓請林泓還收鳥配之命，與以徵，一體嚴問，上不允。時，夜已深，諸臣欲退，上賜柑橘各一盤。</p>
<p>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7월 1일 (신해) 1번째기사</p>	<p>간원(諫院)에서 아뢰기를, “송릉(崇陵)의 두 능(陵) 위를 덮어두었던 초둔(草苫) 따위의 물건을 훔쳐 간변고(變故)는 보통 때에 고의적으로 일을 만든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니, 놀랍고 해괴한 일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전수(典守)하는 관원이 직사(職</p>	<p>朔辛亥/諫院啓曰：“崇陵兩陵上蓋覆草苫等物，偷去之變，非如常時故爲生事之比，事之驚駭，莫此爲甚。典守之官，慢於職事，致有此變，請當該陵官，</p>

事)에 대만하여 이런 변고가 있게 되었으니, 청컨대 해당 능관(陵官)을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해서(海西)에 대동법(大同法)을 설행(設行)하자는 의논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 신은 개탄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이 한 도의 생령(生靈)들이 도탄(塗炭)에 빠진 상황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려움이 있어, 설혹 공역(供億)13986)의 번거로움을 관서(關西)와 균등(均等)하게 한다 하더라도 경사(京可)에 상납(上納)하는 것이 많은 정도가 다른 도(道)보다 갑절이나 되며, 평소에 정한 제도(制度)가 없기 때문에 부역(賦役)이 균등하지 못하고 징렴(徵斂)이 절도가 없습니다. 관리는 후한 녹봉을 받는 길이 있지만, 백성들은 원래 살아나갈 도리가 없어 탄식하고 조심하며 원망을 국가로 돌리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예사롭게 보아 다른 일처럼 대충대충 넘기며, 교혁(矯革)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삼남(三南)·기보(畿輔)는 널리 균역(均役)의 은혜를 입어 조금 버터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대동법이 유독 이 도에만 시행되지 않으니, 실로 일시 동인(一視同仁)의 정치(政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이 혹은 ‘양전(量田)을 하기 전에 대동법을 먼저 시행할 수 없다.’ 하고, 혹은 ‘대동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한(定限)이 있으나 객행(客行)의 옴은 일정한 수가 없으니, 만약 겹쳐서 이르는 경우라도 당한다면 마련해 낼 도리가 없다.’ 하며, 혹은 ‘오두 수미(五斗收米)는 이미 경비(經費)에 관계되니 성급하게 혁파할 수 없고, 본도의 저치(儲置) 또한 몹시 영성(零星)하여 그 수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이는 그렇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양전을 먼저 시행하고 그 뒤에 대동법을 설행한다면 진실로 좋겠지만, 지금 행용(行用)하는 전안(田案)으로 결수(結數)를 계산해 다른 도의 예(例)와 같이 조세(租稅)를 거둔다면, 또한 족히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백성들의 힘을 펴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양전과 대동법은 스스로 좋은 일인데, 어찌 이것들이 서로 구애가 되어 끝

拿問定罪。海西大同設行之議，久矣而迄未也，臣不勝慨然。蓋此一路生靈塗炭之狀，有難勝言，(容) [客] 使供億之煩，均於關西，京司上納之多，倍於他道，而以其素無定制之故，賦役不均，徵斂無節。官吏有厚奉之路，黎元無聊生之道，歎息愁恨，歸怨國家，此豈可視爲尋常，從他悠泛，不思所以矯革之道乎？顧念三南、畿輔，普被均役之惠，稍得支吾，而大同之法，獨不行於此路，實有乖於一視同仁之政矣。今之議者，或以爲：‘量田之前，不可先行大同。’或以爲：‘大同之捧，有定限，客行之來，無常數，若值疊到，無以支辦。’或以爲：‘五斗收米，既關經費，不可徑罷，本道儲置，亦甚零星，不足以當其數’，此則有不然者矣。先行量田，而後設大同則固好矣，以卽今行用之田案，計結收稅，如他道之例，則亦足以均賦役而紓民力。且量田、大同，自是好事，豈可以此相礙，終使良法，不卽行哉？至於支勅之需，蓋聞一路民情，雖使民間，依前辦納，猶勝於大同未設之前，唯願速行。蓋其民情之不憚於自當，此可見矣。若夫五

	<p>내 좋은 법을 즉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칙행(勅行)의 비용을 마련하는 데 이르러서는, 한 도의 민정(民情)을 듣건대, ‘비록 민간(民間)으로 하여금 전과 같이 마련해 바치도록 하여도 오히려 대동법을 설행하기 전보다는 나은 것이니, 오직 빨리 설행하기만을 원한다.’ 하였으니, 대개 그 민정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을 꺼리지 않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두 수미(五斗收米)의 경우, 당초에 각사(各司)의 공물가(貢物價)로 따로 마련했다가 중간에 가도(假島) 군비(軍費)의 자본으로 전용(轉用)하여 그대로 두고 혁파(革罷)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만약 대동법을 설행한다면, 이것은 응당 혁파해야 하는 것 가운데 있을 것인데, 유사(有司)의 신하가 만약 경비(經費)의 부족을 염려한다면, 마땅히 여러 도의 여유 있는 곡식을 추이(推移)해 충당하여 써야 할 것이니, 어찌 이것 때문에 구애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빨리 해서(海西)의 대동법을 강행(講行)하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대동법의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p> <p>하였다.</p>	<p>斗收米，當初以各司貢物價，別爲磨鍊，中間爲轉餉假島之資，仍存不罷者，今若設行大同，則此在應罷之中。有司之臣，若以經費不足爲慮，則當以諸道有裕穀，推移充用，豈可以是爲拘乎？請令廟堂，斯速講行海西大同之法。” 答曰：“依啓。大同事令廟堂稟處。”</p>
<p>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7월 11 일(신유) 2번째기</p>	<p>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頤命)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엿드려 들으니, 해사(該司)에서 8월 14일로 각릉(各陵)을 수개(修改)하는 기한으로 계하(啓下)하였다고 하는데, 일기(日期)가 너무 늦추어진 듯하니, 또한 몹시 미안합니다. 을해년(13989) 에 목릉(穆陵)의 사토(沙土)가 비로 손상된 것이 3월에 있었는데, 해조(該曹)에서 달을 꺼리어 8월로 가려서 올리자, 인묘(仁廟)께서 특별히 기한을 앞당기라고 명하셨으니, 마땅히 해조로 하여금 다시 일관(日官)에게 묻도록 하소서. 또 말하는 자들이 이미 성가(聖駕)가 친히 살필 것을 청하였으니, 그 뜻은 전날 봉심(奉審)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개(修改)한 뒤에 다른 말이 그래도 그치지 않는다면, 능침(陵寢)의 사체(事體)에 있어서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p>	<p>右議政李頤命上筭曰： 伏聞該司，以八月十四日，啓下各陵修改之期云，日期似太遲，亦甚未安。乙亥穆陵沙土雨傷，在於三月，而該曹以月忌，擇以八月，則仁廟特命進期。宜令該曹，更問日官。且言者既以聖駕親省爲請，則其意不信於前日之奉審。若修改之後，異言猶不絕，則陵寢事體，決不可使人，少有疑心。浮議重於泰山，足令人心疑亂，更加三</p>

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박한 의논은 태산(泰山)보다 무거워 족히 사람의 마음을 의심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것이니, 다시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두루 여러 대신에게 물어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의주부(義州府)에서 봉성(鳳城)으로 치보(馳報)하여 통고(通告)하는 일은 전에 이미 탑전(榻前)에서 정탈(定奪)하였으므로, 비국(備局)의 당신(堂臣)으로 하여금 문자를 찬출(撰出)해 거의 이미 정당(停當)하였고, 장차 입계(入啓)해 행회(行會)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부사(判府事)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변방이 비록 시끄럽고 곤란한 듯하지만, 크게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저 사람들이 만약 나라의 명령 없이 사사로이 와서 삼(蓼)을 채취하였다면, 국경을 넘어 침범하며 소란을 떠는 것은 모두 사죄(死罪)에 관계된다. 비록 봉성에 치보(馳報)한다 하더라도 일을 일으키기 쉬울 것이며, 만약 또 과연 봉성의 사람이라면 우리 나라는 봉성과 더불어 혼단(釁端)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해마다 행리(行李) 때문에 그 원독(怨毒)을 받고 있으며, 또 우리 백성이 간섭(干涉)하지 않았는지를 또한 알 수가 없으니, 지금은 마땅히 은인 자중하면서 우선 치보하여 통고하지 말고 천천히 사세(事勢)를 볼 것이며, 변방에 크게 견딜 수 없는 일이 있는 뒤에야 다시 의논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 또한 이것을 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에게 문의하였더니, 대의(大意)가 유상운의 말과 서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두 대신은 변방의 일에 노련하고 익숙하여 반드시 깊이 염려하고 각고(却顧)한 바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그 말을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일이 이미 품재(稟裁)를 거쳤기에 무단히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엇드려 원하건대, 예단(睿斷)으로 재량(裁量)하소서. 도성(都城)을 개축(改築)하는 의논이 시행되지 않아 단지 여러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훼손된 곳을 따라 보수(補修)하게 하였으므로, 요사이 이에 의거해 거행하고 있는데, 단지 훈련 도감(訓鍊都監)·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 세 군

思，令禮官，遍詢於諸大臣稟處。義州府馳通鳳城事，前已定奪於榻前，令備局堂臣，撰出文字，幾已停當，將入啓行會矣。判府事柳尙運以爲：“邊上雖似擾困，不至大段難堪，彼人若無國命，而私來採蓼，越境侵擾，俱係死罪。雖馳通鳳城，易於生事，若又果是鳳城人，則我國不可與鳳城生釁。年年行李，受其怨毒，且我民之不爲干涉，亦不可知，今宜隱忍，姑勿馳通，徐觀事勢，邊上有大不可堪，然後可以更議。”云。臣亦以此，問議于領府事南九萬，則大意不與尙運之言相左。二大臣諳練邊事，必有深慮却顧者，宜從其言，而事經稟裁，不可無端中止，伏乞睿裁。都城改築之議不行，而只令諸軍門，隨毀隨補。近日依此舉行，而但訓、御、禁三軍門，有財有兵，可以自辦，守禦、摠戎廳，則每當城役，責出錢布於備局，此實難繼之道矣。伏聞前日定奪之時，廟堂爲慮此二軍門無財力，欲只令訓、御、禁三軍門，分授信地，以當其修築之役，作爲節目，未及啓下。宜令備局，取其曾成節目，參商熟講，一定規制，至爲允當。忠

문에는 재력(財力)과 군사가 있어 스스로 마련할 수가 있고,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은 매번 성역(城役)을 맡을 때마다 비국(備局)에다 돈과 포(布)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니, 이것은 실로 계속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었드려 든건대, 전날 정탈(定奪)할 때 묘당(廟堂)에서 이 두 군문이 재력이 없는 것을 염려하여, 단지 훈련 도감·어영청·금위영 세 군문만 신지(信地)를 나누어 주어 그 수축하는 역사를 맡도록 절목(節目)을 만들었으나 미처 계하(啓下)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마땅히 비국으로 하여금 그 일찍이 만든 절목을 가져다가 참상(參商)하고 숙강(熟講)하게 하여 한결같이 규례(規例)를 정한다면 지극히 윤당(允當)하겠습니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허지(許墀)가 본도(本道) 우도(右道)의 재이(災異)가 든 고을을 또한 좌도(左道)의 예에 의거하여 가을을 기다려 신포(身布)를 상납(上納)하게 했다고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지금 가을 곡식의 결실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았고, 지금 맥황(麥荒)의 때에 독촉할 수는 없으니, 그 청한 바에 의거해 가을을 기다려 즉시 바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처음에 좌도로 청하였다가 허락을 받음으로 인하여 제멋대로 우도에 까지 베푼 것은 우연한 불찰(不察)이 아닌 듯하오니, 마땅히 경책(警責)하여 그 잘못을 징계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이 차자에서 제1조로 진달한 바는, 올해년에 능침의 사초(莎草)를 수개(修改)하였을 때 일기(日期)를 정해 올리라는 명이 있었는데, 대개 3월에서 8월까지는 거의 반년에 이르기 때문이었다. 몇 달 사이는 올해년처럼 너무나 먼 경우까지는 이르지 않을 듯하고, 나의 심분 살피고 삼가는 정성으로 말해도 끝내 8월달에 사초를 고쳐 만전(萬全)을 기하는 것만 같지 않다. 그러나 차자의 말이 이와 같으니, 다른 조목과 아울러 예관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되, 다시 봉심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다. 치통(馳通)의 한 가지 조항은 두 대신이 말한 바에 다소 의견이 있으니, 우선 치보하지 말고 다시 의논하는 것

淸監司許墀，以本道右道災邑，亦依左道，待秋上納身布，馳啓矣。即今秋成，不過數月，今不可督責於麥荒之時，似當依其請，使之待秋即納，而始以左道爲請，因其許而擅施於右道，似非偶然不察，宜有警責，以懲其失。

答曰：“卿筭第一條所陳乙亥陵莎修改時，有進定日期之命者，蓋三月之於八月，殆致半年故也。數月之間，似不至於乙亥之太遠，而以予十分審慎之誠言之，則終不若八月改莎之爲萬全也。然而筭語如此，竝與他條，令禮官稟處，而再審之舉，決不可爲也。馳通一款，兩大臣所言，儘有意見，姑勿馳通，更議爲宜。第三條、四條，竝依筭辭爲之，而監司之初不詳察，擅施於右道，殊甚未安，特施問備之罰，以示警責之意。卿勿以浮議，一向引嫌，速出視事。”

	이 마땅하겠다. 제3조와 제4조는 아울러 차자의 말대로 하되, 감사가 처음부터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마음대로 우도에 시행한 것은 크게 몹시 미안하니, 특별히 문비(問備)의 벌을 베풀어 경책하는 뜻을 보이라. 경은 부박한 의논 때문에 한결같이 인협(引嫌)하지 말고 속히 나와 정사(政事)를 보도록 하라.” 하였다.	
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7월 27일(정축) 1번째기사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이 ‘달마다 주는 주육(酒肉)을 보내고 제1과록(第一科祿)을 발급(頒給)한 것은 모두 송시열(宋時烈)을 우대(優待)하던 특은(特恩)이며 본래 법전(法典)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상소하여 사양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다음날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남구만이 이 때문에 불안하여 장차 강가로 물러나 돌아가려고 하니, 《대전(大典)》에 따라 4품록(四品祿)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며, 월름(月廩)은 미두(米豆)를 없애고 봄·가을과 세시(歲時)에 따로 주급(周急)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丁丑/奉朝賀南九萬, 以月致酒肉, 頒給第一科祿, 俱是優待宋時烈之特恩, 本非法典所載, 上疏辭之, 上慰諭不許。翌日, 領議政崔錫鼎白上曰: “九萬以此不安, 將退歸江上。宜從《大典》, 給四品祿, 月廩去米豆, 春秋及歲時, 宜別爲周。” 上從之。
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8월 4일 (계미) 1번째기사	예조(禮曹)에서 삼명일(三名日)에 제도(諸道)에서 봉진(封進)하는 바를 다음해 가을까지 기한으로 하여 잠시 감(減)하였는데, 올해 동지(冬至)부터 복구(復舊)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청하자, 또 명하여 다음해 가을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잠시 감하게 하였다.	癸未/禮曹以三名日諸道所封, 限明秋姑減, 自今年冬至, 當復舊爲請, 又命限明秋姑減。
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9월 9일 (무오) 2번째기사	영광군(靈光郡)에 정배(定配)한 죄인(罪人) 혼(混)이 가다가 임피(臨陂)에 이르렀는데 병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다고 도사(都事)가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은 일찍이 능(陵)을 수호(守護)한 노고가 있으니, 본현(本縣)으로 하여금 향의(鄉醫)를 가려서 보내고 약물(藥物)을 잇달아 지급(支給)하여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앞으로 갈 일을 분부하라.” 하였다. 혼은 종신(宗臣)들 가운데서 가장 총애가 있었으므로 은명(恩命)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靈光郡定配罪人混, 行到臨陂, 病不得前進, 都事以啓, 傳曰: “此人曾有守陵之勞。令本縣擇送鄉醫, 藥物連續覓給, 待差前進事分付。” 混在宗臣中, 最有寵故恩命如此。

<p>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9월 22 일(신미) 1번째기사</p>	<p>명선(明善)·명혜(明惠) 두 공주방(公主房)에 각각 쌀 20곡(斛)과 목면(木綿) 1백 필을 하사하여 제수(祭需)에 보태게 하였다. 두 공주는 곧 임금의 누이인데, 미처 이강(釐降)14010) 하지 못하고 요절하였으므로, 임금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슬프게 생각하였는데 전에도 누차 은휙(恩恤)이 있었다.</p>	<p>辛未/各賜明善、明惠兩公主房米廿斛、木綿百疋，以補祭需。兩公主，卽上妹也。皆未及釐降而夭，上久益哀念，前以屢有恩卹。</p>
<p>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11월 2 일(경술) 3번째기사</p>	<p>또 비망기에 이르기를, “옛날 송나라 태조는 일찍이 한때 시원하게 감정을 풀려고 하여 한 가지 일을 잘못 판결하고서는 종일토록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무진년14028) 에 한때의 희노(喜怒)로 인하여 함부로 법을 받드는 아전을 죽이고는 스스로 통렬하게 뉘우치고 책망하며 마음 속에 항상 잊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다만 한 가지 일을 잘못 판결하고서 종일토록 즐거워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겠는가? 그가 비록 지극히 천하지만, 인명은 지극히 중하고 받든 바는 법이었는데, 머리를 늘어뜨리고 죽었으니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는다. 해조(該曹)에 명하여 헌리(憲吏)의 처자(妻子)에게 쌀과 베[布]를 넉넉히 주도록 하라. 아! 인주(人主)의 존엄함으로 죄없는 자를 죽이고, 뉘우치고 책망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하고, 이어 중외(中外)의 관리(官吏)는 감히 희노(喜怒)로 남형(濫刑)하여 사람을 죽이지 말도록 신칙(申勅)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헌리(憲吏)의 죽음이 어찌 억울하지 아니한가? 그 당시의 처분은 실로 지나친 일 중에서도 큰 것이다. 그런데 이에 20년이 지난 뒤에 능히 추념(追念)하여 특별히 은전(恩典)을 베풀고 뉘우치며 책망하는 뜻이 언표(言表)에 넘치니, 허물을 두 번 되풀이하지 아니한다는 성훈(聖訓)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아! 정당하도다.”</p>	<p>又備忘記: 昔宋太祖，嘗乘快，誤決一事，終日不樂。予曾於戊辰，因一喜怒，妄殺奉憲之吏，痛自悔責，心常不忘。豈特一事誤決，終日不樂而已？渠雖至賤，人命至重，所奉者法，而駢首殞命，惻然之心，久而未已。其令該曹，憲吏妻與子，優給米布。噫！以人主之尊，殺無辜而悔責至此，況他人乎？ 仍勅中外官吏，毋敢以喜怒，濫刑殺人。 【史臣曰：“憲吏之死，豈不冤哉？伊時處分，實是過舉之大者，而乃克追念於廿稔之後，特施恤典，悔責之意，溢於言表，可謂無愧於不貳過之聖訓。嗚呼臆哉！”】</p>
<p>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11월 2 일(경술) 4번째기사</p>	<p>또 비망기에 이르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고 올해는 물난리가 일어났으니, 재해(災害)가 예사롭지 아니한데, 관동(關東)·북관(北關)·관서(關西)·해서(海西)가 더욱 심하다. 면화 농사에 이르러서는 팔도가 흉년이 들었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p>	<p>又備忘記: 國家不幸，比歲不稔，今年水潦，災害非常，而關東、北關、關西、海西爲尤甚焉。至於綿農，八路大無，哀我民</p>

들이 어떻게 한 해를 마치고 허다한 신역(身役)은 어떻게 마련해 내겠는가? 내 생각이 이에 미치니 마음에 측연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림에 용도를 절약하고 인민을 사랑한다.’ 하였으니, 넉넉하도다! 말씀이여!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용도를 절약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며, 용도를 절약하는 근본은 반드시 헛된 비용을 통렬하게 혁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평상시에도 도리어 그러해야 하거늘, 하물며 이와 같이 기근이 겹친 나머지이겠는가? 또 재해를 가장 혹심하게 당한 도(道)에는 민사(民事)가 바야흐로 급하니, 무릇 구제하여 살릴 방책을 때맞춰 강구(講究)하기를 마치 불과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것처럼 한 뒤에야, 우리 적자(赤子)로 하여금 구렁에 쓰러지는 것을 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속히 강구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친민(親民)하는 관원은 수령(守令)만한 것이 없는데, 진휼의 정사를 목전에 당하여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니, 따로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특별히 가려서 차임(差任)하도록 하라. 또한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하유(下諭)하여 주진(賑賑)의 정사에 마음을 다해 요량하여 처리하되, 만약 백성을 편하게 하는데 관계된 것이라면 즉각 조목조목 아뢰라. 아! 올 봄의 반진(斑疹)은 실로 유행(流行)하는 재앙은 아니었으나, 사망의 참혹함은 거의 독역(毒疫)만큼 심하였으니, 저 죄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 경중(京中)과 관서(關西)에는 이미 홀전(恤典)을 거행하였지만, 이 외에 다른 도 가운데서 역질(疫疾)로 죽은 것이 더욱 심한 곳은 일체로 구휼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그리고 함경도에서 진상하는 대구어(大口魚)의 가미(價米)는 전처럼 재감(裁減)하여 진휼하는 자급에 보태도록 하고, 관동의 세초(歲抄)는 특별히 정지하도록 하여 나의 간곡하게 백성을 염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斯，何以卒歲，許多身役，何以辦出？予念及此，惻然于心也。孔子曰：“道千乘之國，節用而愛人。”富哉言乎！爲邦之道，莫先於節用，而節用之本，必自痛革浮費。始在平時尙然，矧此荐飢之餘乎？且被災最酷之道，民事方急，凡所以濟活之策，及時講究，如救焚拯溺，然後使我赤子，庶免顛壑。其令廟堂，斯速議處。親民之官，莫如守令，而賑政當前，尤宜慎簡。另飭銓曹，別爲擇差。亦宜下諭于四道監司，賑賑之政，盡心料理，苟係便民，劃卽條奏。噫！今春斑疹，實非流行之災也，死亡之慘，殆甚毒疫，哀彼無辜，不覺殞淚。京中及關西，已行恤典，而此外他道中疫死尤甚處，不可不一體顧恤，亦令廟堂稟處。咸鏡道進上白大口魚價米，依前裁減，俾補賑資，關東歲抄，特令停止，用示予曲軫元元之意。

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11월 7
일(을묘) 1번째기사

이해에는 농사가 흉년이 들고, 또 봄부터 가을까지 반진(班疹)의 역질이 있어 전국을 거의 다 휩쓸었으므로 죽은 자를 셀 수가 없었다. 아약(兒弱)으로 요찰(夭札)14042) 한 것이 더욱 심하여 여항간(閭巷間)에 어린아이가 드물었고, 외방에서는 온 집안이 몰사(沒死)한 경우도 부지기수였으니, 실로 가장 혹심한 재앙이었던 것이다. 임금이 비망기로 묘당(廟堂)에 유시하기를, “재해를 가장 혹심하게 당한 도(道)에는 민사(民事)가 마야흐로 급하니, 무릇 구제하여 살릴 방책을 때맞춰 강구(講究)하기를 마치 물과 불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내고 건져내는 것처럼 한 뒤에야, 우리 적자(赤子)로 하여금 구렁에 쓰러지는 것을 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속히 강구하여 처리하게 하라. 그리고 올해 봄의 반진(班疹)은 사망의 참혹함이 거의 독역(毒疫)만큼 심하였다. 경중(京中)과 관서(關西)에는 이미 홀전(恤典)을 거행하였지만, 이 외에 다른 도 가운데서 역질(疫疾)로 죽은 것이 더욱 심한 곳은 일체 구휼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금년 팔도의 농사는 양서(兩西)와 관동(關東)·관북(關北)의 네 도(道)가 더욱 심한데, 가을부터 여러 도에서 장계로 청한 것을 차례로 복주(覆奏)하였고, 진청(賑廳)을 주관하는 신하들도 강구(講究)한 바가 많습니다. 관서와 관북은 모두 은화(銀貨) 수천 냥을 올려보내어, 아울러 진휼 물자와 바꿀 것을 청하였으므로 모두 지휘하여 구처(區處)하였습니다. 관서는 또 면포(綿布)를 얻어 곡식으로 바꾸어 운반해 가기를 청하였으므로, 또한 양남(兩南)에 있는 대동목(大同木) 및 병조에 봉납(捧納)할 것을 참작하여 획급(劃給)하였는데, 그 대신[代]은 본도로 하여금 추후에 보충하게 할 것입니다. 관동·관북은 진청에서 돈 5천 냥을 차등 있게 획급하였고, 해서(海西)는 지금 마땅히 순문(詢問)하여 참작해 획급할 것인데, 이제 막 특교(特敎)로 인하여 관동의 전세(田稅)·대

乙卯/是年, 年事失稔, 且自春至秋, 有班疹之疾, 殆遍域中, 死亡無算。 兒弱夭札者尤甚, 閭巷間小兒爲之稀少, 外方全家沒死之類, 不知其數, 實是災沴之最酷者也。 上以備忘記, 諭廟堂曰: 被災最酷之道, 民事方急, 凡所以濟活之策, 及時講究, 如救焚拯溺, 然後赤子庶免顛壑。 其令廟堂, 斯速議處。 今春斑疹, 死亡之慘, 殆甚毒癘。 京中及關西, 已行恤典, 此外他道中疫死尤甚之處, 不可不一體顧恤, 亦令廟堂稟處。

至是, 備邊司啓曰: “今年八路年事, 兩西及關東、北四道爲尤甚, 自秋間諸道狀請, 次第覆奏, 賑廳主管之臣, 多所講究矣。 關西、關北, 俱以銀貨累千兩上送, 並請換得賑資, 故俱有指揮區處。 關西又請得綿布, 以爲貿穀運去之地, 故亦以兩南所在大同木及兵曹所納, 參酌劃給, 其代則令本道, 追後充報。 關東、北則自賑廳劃給錢五千兩有差, 海西則今當詢問, 參酌劃給, 纔因特敎, 關東田稅、大同捧留, 人蔘價米, 自該曹參酌

동(大同)과 그리고 봉납하여 머물러 두었던 인삼가미(人蔘價米)를 해조에서 참작해 감(減)해서 보내게 하였으며, 관북의 대구어가미(大口魚價米)를 머물러 진흥 물자에 보태게 하였으니, 은혜됨이 큼니다. 해서의 오두수미(五斗收米)와 관서의 육두수미(六斗收米)는 아울러 각각 1두를 감하여 우휙(優恤)하는 뜻을 보이게 하였으니, 또한 마땅함을 얻은 듯합니다. 또 올해의 반진(班疹)에 대해 생각하건대, 서북(西北)에서 시작되어 팔도에 두루 퍼졌고, 아약(兒弱)으로서 죽은 수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할 지경이니, 그 생민(生民)의 재역(災厄)이 여역(癘疫)보다 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름에 역기(疫氣)가 한창 치성(熾盛)하던 날 조가(朝家)에서 외방에 신칙하고, 도 의원(醫員)과 약을 보내 마음을 다하여 구제해 살리게 하였습니다. 또 따로 동교(東郊)·서교(西郊)에다 도사(禱祀)를 설행하고, 외방의 경우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제사를 설행하여 정성으로 기양(祈禳)해 재앙을 막을 방도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에 홍역(紅疫)으로 온 집안이 몰사(沒死)하거나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살아남은 무리는 경중(京中) 및 관서에는 미곡(米穀)을 제급(題給)하여 이미 홀전(恤典)을 베풀었으나, 다른 도는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도신(道臣)에게 분부(分付)하여 각 고을의 역질로 죽어 의탁할 곳이 없는 무리를 초출(抄出)해서, 그 곳에 있는 모곡(耗穀)을 제급(題給)하고 각각 그 도에 나누게 하여 특교로써 민휙(憫恤)하게 여기는 뜻을 효유(曉諭)하소서. 생각건대, 이번의 요찰(夭札)은 모두 우리의 적자(赤子)로서 참으로 불쌍하고 측은하니, 그 역환(疫患)이 더욱 심한 관서 및 동북의 세 도에 나아가 따로 제퇴(祭醮)를 지내게 하되,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절차는 예조로 하여금 마련해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앞서 병조 관서(兵曹判書) 이인엽(李寅燁)이 상소하여 무인년 14043 이전의 적곡(糴穀)을 탕감(蕩減)하는 가운데서 군항 곡물(軍餉穀物)은 마땅히 혼동하여 건감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서산 군수(瑞山郡守) 유태명

減送，關北之大口魚價米，留補賑資，爲惠大矣。海西五斗收米、關西六斗收米，並各減一斗，以示優恤之意，亦似得宜。且念今年斑疹，始自西北，遍滿八路，兒弱死亡之數，不知其幾，其爲生民之災厄，有甚於癘疫。曾在夏間疫氣方熾之日，朝家申勅外方，且送醫藥，使之悉心濟活。又別行禱祀于東、西郊，而外方則令道臣設祭，(處) [虔] 誠祈禳，以盡消弭之(之)道。其後紅疫全家沒死，鰥寡孤獨餘存之類，京中及關西題給米穀，已施恤典，而他道則未及舉行，今宜分付于道臣，抄出各邑疫死無依之類，題給所在耗穀，分俵于各其道，以特教曉諭悶恤之意。念此夭札，皆吾赤子，誠可矜惻。就其疫患尤甚關西及東北三道，別致祭醮，而設祭儀節，宜令禮曹，磨鍊舉行。

前此兵曹判書李寅燁疏言，戊寅以上糴穀蕩減中，軍餉穀物，不當混同蠲減，又瑞山郡守柳泰明疏請，敗船拯米及軍餉米未收，在戊寅以上者蕩減，領議政崔錫鼎與戶曹判書尹世紀、禮曹判書趙泰采、禮曹參判閔鎮遠，同辭請減，

(柳泰明)이 상소하여 패선(敗船)의 증미(拯米)14044) 및 군향미(軍餉米)로서 거두지 못한 무인년 이전의 것을 탕감할 것을 청하였는데,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호조 판서 윤세기(尹世紀)·예조 판서 조태채(趙泰采)·예조 참판 민진원(閔鎭遠)과 더불어 같은 말로 탕감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이르러 비변사(備邊司)에서 또 아뢰기를,
 “10년 이상 된 것은 연조(年條)가 이미 오래 되었고 징수하여 거두어 들이기 도 쉽지 아니하므로, 풍환(馮驩)이 분권(焚券)14045) 한 뜻을 취하여 탕감할 것을 품(稟)하여 청했습니다. 군향곡(軍餉穀)에 이르러서는 사건이 자별(自別)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내(圻內)의 백성들은 거개 많이들 남한(南漢)과 강도(江都)로 <곡물(穀物)>을 옮겨 갔고, 호서(湖西)의 백성들 또한 많은 경우가 전적으로 양진(楊津) 등의 세 창고에 의지하니, 명색이 견감한다 하고서 만약 군향을 제외시킨다면 실질적인 은혜가 창생(蒼生)에게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구별하여 진달하지 아니하였고, 끝에 가서 유태명(柳泰明)의 상소로 인하여 감히 일체 탕감할 뜻을 진달하였던 것인데, 여러 재신(宰臣)들이 찬동하고 이미 윤허를 받았습니다. 병판(兵判)이 상소에서 논한 바 대의(大意)는 진실로 좋으나, 이 전에 없던 일을 만났음을 그으기 생각하여 특별히 광탕(曠蕩)의 은전을 내렸는데, 이미 반포해 두루 알린 뒤에 갑자기 변경시킨다면 법령(法令)이 백성에게 불신당하여 되려 결망(缺望)으로 귀착되고 원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 최석정과 여러 재신(宰臣)들의 생각으로는 모두 지금 와서 도로 받는다는 것을 매우 어렵게 여기고 있으니, 이 한 가지 조항은 다시 변경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기묘년14046) 이후에 군향(軍餉)으로 이전(移轉)한 것은 그 수가 또한 스스로 적지 않으니 점차 준봉(準捧)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무인년 이전의 군향을 탕감하라는 영(令)은 진연(進宴) 뒤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예(例)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을 민간에 효유(曉諭)하여 모두 듣고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이

上從之。至是，備邊司又啓曰：“十年以上則年條既遠，徵捧未易，故取馮驩焚券之義，稟請蕩滅。至於軍餉穀，非不知事件之自別，而圻內之民，率多移轉於南漢、江都，湖西之民，亦多專賴於楊津等三倉，名爲蠲糶，而若除軍餉，則實惠未及於蒼生，故初不區別陳達，末後因柳泰明疏，敢陳一體蕩滅之意，諸宰同聲，已蒙允可。兵判疏中所論，大意誠好，而竊念逢此無前之舉，特施曠蕩之典，既已頒降，知委之後，遽爾中變，則法令不信於民，而反歸缺望與怨之歸。臣錫鼎及諸宰之意，皆以到今還捧爲重難，此一款，有難更改。己卯以後移轉軍餉，其數亦自不少，此則不可不漸次準捧，戊寅以上軍餉蕩滅之令，出於進宴後特恩，此不可因以爲例之意，曉諭民間，咸使聞知。請以此分付於諸道。”竝從之。

	<p>로서 여러 도에 분부(分付)하소서.” 하니, 아울러 따랐다.</p>	
<p>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11월 9 일(정사) 3번째기사</p>	<p>지평(持平) 이대성(李大成)이 상소하기를, “지난번에 하늘이 위엄을 떨쳐 재해가 거듭 닥치니 상하가 근심하고 당황하 며 그 원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어제의 비망기(備忘記)를 보건 대, 정녕하고 간측(懇惻)하여 족히 하늘의 노여움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었기 에, 크게 외고 감탄하며 더욱 마음속에 격동되는 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드려 성교(聖敎)를 읽건대, 특별히 봉당(朋黨)과 절용(節用) 두 조목을 끄집 어 내어 제일의(第一義)로 삼았으니, 오늘날 말할 만한 것으로서 또한 어찌 이를 버리고 다른 데서 구하겠습니까? 아! 오늘날의 봉당이 문호(門戶)가 분 할(分割)되고 순식간에 뒤집히어 신구(新舊)로 하여금 그 위치를 바꾸게 하며, 조저(朝著)가 환국(換局)하는 것이 어찌 한갓 당론(黨論)을 하는 자가 능히 스 스로 마련하는 데서만 나왔겠습니까? 성명(聖明)께서 장차 한쪽 편을 사람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한쪽 편을 사람을 물리치시니, 아래로부터의 주의(注 擬)는 혹 감히 드러내 놓고 취사(取舍)하지 못하고, 전지(銓地)와 삼사(三司) 의 망(望)도 참착(參錯)한 것이 없지 아니 한즉, 천점(天點)이 내리는 바에 먼 저 분류(分類)를 더하여 반드시 청로(淸路)와 요진(要津)이 한 가지 색으로 잡 색(雜色)이 없게 한 뒤에야 그만둡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 자기와 다른 자 를 밀쳐 내려고 대략 시험삼아 떠보면 수답(酬答)이 메아리치듯 엄준(嚴峻)함 을 더하며, 옛날의 잘못과 목은 허물을 일제히 폭로하고 드러내어 마침내 중 론(衆論)이 잇따라 일어나게 만들어 허물을 집어내고 끌어내므로, 비록 그 지 위가 높고 드러나 일찍이 의중(倚重)했던 자라고 할지라도 배척해 쫓아내기가 어렵지 아니하니, 옛날의 이른바 ‘양탕 지비(揚湯止沸)14047)’와 ‘포신 구화 (抱薪救和)14048)’가 불행하게도 가까운 것입니다. 이를 추적해 보건대, 진 하의 마음으로는 비록 〈봉당을〉 ‘미워한다.’고 하시지만, 전하께서는 단지</p>	<p>持平李大成上疏曰： 迺者上天疾威，菑害荐臻，上下憂惶， 莫知所出。伏見日昨備忘，丁寧懇惻， 有足以感回天怒，莊誦感歎，尤覺有激 于中。伏讀聖敎，特拈朋黨及節用兩 條，爲第一義，則今日之所欲言者，亦 豈舍此而他求也？噫！今之朋黨，門分 戶割，倏忽翻覆，使新舊易位，朝著改 局者，豈徒出於黨論者所能自辦？聖明 將用一番人，先斥一番人，自下注擬， 或不敢顯然取舍，銓地、三司之望，不 無參錯者，則天點所下，先加類分，必 使淸路要津，一色無雜而後已。或有 排一異己，略試提掇，則酬答如響，加 以嚴峻，舊愆宿過，一齊暴揚，遂使衆 論繼起，牽累句引，雖其位致隆顯，曾 所倚重者，斥逐無難，古所謂揚湯止 沸，抱薪救火者，不幸近之。跡此觀 之，殿下之心，雖曰惡之，殿下非徒不 能遏絕，乃反有以助成也，烏在其深惡 痛嫉也？若此，則雖日日而教戒，人人 而告諭，徒見其潰裂而不見其消融也。 殿下若能先使在我之衡鑑，益盡其公</p>

막고 끊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도와서 이름이 있으니, 어디에 그 깊이 싫어하고 통렬히 미워하심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이와 같다면 날마다 가르치고 경계하며 사람마다 알려주고 타이르더라도, 다만 그 궤열(潰裂)하는 것만을 볼 뿐이요, 그 소용(消融)하는 것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먼저 몸에 있는 형감(衡鑑)14049) 으로 하여금 더욱 그 공정하고 밝음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비우시며 생각을 넓히시어 한결같이 중정(中正)의 도리로써 판단하신다면, 당습(黨習)이 어찌 혁파(革罷)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조정의 논의가 어찌 화협(和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정의 신하들 또한 어찌 타파(打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단지 만 마리의 말이 아울러 내달려 중간에서 발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뒤섞여 같이 돌아가는 데로 이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들이 비록 혈성(血誠)과 공심(公心)이 있으며 억센 주먹과 날랜 발길이 있더라도 결단코 그것이 시행될 바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구하시되, 무릇 봉당(朋黨)을 제거하는 방도에 세밀히 궁구(窮究)함이 없지 않으며, 시조(施措)에 드러나게 하는 것을 비유컨대, 한번 뺨을 침에 한 손바닥이 피 묻고 한 번 움킴에 한 줄기의 흉터가 생기는 것같이 하여 반드시 깎아내고 쓸어내는 것을 기약하신다면, 어진이는 받드는 데 즐거워하여 그 공정한 도리를 다할 것이고, 불초(不肖)한 자는 죄벌을 두려워하여 감히 봉비(朋比)의 습관을 방자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세월이 흐른다면 십 년이 못가서 탕평(蕩平)의 복(福)이 저절로 이르러 될 것입니다. 아! 옛날 당론(黨論)이 처음 나뉘는 즈음에 사류(士類)가 반으로 분열되어 싸움이 날로 심해졌는데 광해조(光海朝)에 이르러 극도에 도달했습니다. 세 분 성상(聖上)께서 서로 이어 오시며 통렬하게 징비(懲毖)를 더하시고, 용사(用舍)·거조(舉措)하는 사이에 편계(偏係)를 완전히 제거하시어 한결같이 탕평(蕩平) 공정(蕩平公正)한 마음을 가지셨으므로, 사부

明, 虛心曠懷, 一裁以中正, 則黨習安得以不革, 朝論安得以不協哉? 今日廷臣, 亦豈無思欲打破者, 而只爲萬馬竝逐, 中難駐足, 終至於爛熳同歸而已。故在下者雖有血誠至公, 羸拳大踢, 決知其無所施也。苟殿下, 以至誠求之, 凡諸去朋黨之道, 靡不細究, 發諸施措者, 譬如一攔一掌血一捧一條痕, 必期於剗削掃除, 則賢者樂於奉承, 得盡其公正之道, 不肖者怵於罪罰, 不敢肆朋比之習。如是而持以悠久, 積以歲月, 則不待十年, 蕩平之福, 自可致矣。噫! 在昔黨論初分, 士類中裂, 鬪鬪日甚, 至於光海朝而極矣。三聖相承, 痛加懲毖, 用舍舉措之間, 絕去偏係, 一以蕩平公正爲心, 故士夫之風習大變, 朝廷之上, 終無敢以黨色爲言者, 群僚和協, 朝著寧謐, 使國家享有和平之福, 殆五十年所矣。不幸近年以來, 習俗汚下, 轉益乖激, 以至於此, 則殿下之所以導率群下者, 有歎于建極之道。殿下於用舍之間, 率多偏係, 朴鳳齡、崔啓翁、柳泰明等, 初無可罪之端, 天點斬下, 今已數年, 此皆出入臺閣, 屢言得失者也。鳳齡則以非斥李

(士夫)의 풍습이 크게 변하여 조정에서 감히 당색(黨色)을 말하는 자가 없었으며, 여러 신료들이 화협(和協)하고 조정이 조용하여 나라로 하여금 화평(和平)의 복을 향유하게 한 지 거의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근래에 습속(習俗)이 더러워지고 타락하여 갈수록 더욱 괴격(乖激)해져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여러 아랫사람들을 인도하여 거느리는 것이 건극(建極)의 도리에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용사(用舍)하는 사이에 대략 편계(偏係)됨이 많으시어, 박봉령(朴鳳齡)·최계옹(崔啓翁)·유태명(柳泰明) 등은 애초에 죄줄 만한 단서가 없었는데도 천점(天點)을 내리심을 아끼신 지가 지금 이미 몇 해가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대각(臺閣)에 출입하면서 여러 차례 득실(得失)을 말한 사람들입니다. 박봉령은 이유민(李裕民)을 비난하고 배척한 상소로 보건대, 그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은 마땅히 장려하고 추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 때문에 버림받고 배척당했으니, 끝내 성세(聖世)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최계옹의 지난달의 상소(上疏)는 스스로 질박(質樸)하고 곧은 뜻을 붙였으며, 그 말을 이미 ‘실상이 없다.’고 하였으면, 그만둘 뿐이었는데, 대장(臺章)으로 탄핵하고 논박하였으니 이미 지극히 놀라우며, 이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오랫동안 청조(淸朝)의 기물(棄物)이 되었으니, 성상의 언로(言路)를 크게 넓힘과 인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부족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호조와 병조의 저축은 전하의 부고(府庫)가 아님이 없으니, 마땅히 써야 할 것을 쓴다면 불가할 것이 없으며 마땅히 정원(政院)을 경유하여 궁부(宮府)를 일체로 하는 뜻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들건대 대내(大內)로 들어가는 물건은 거개가 촌지(寸紙)로서 액정(掖庭)에 내리는 데 소용되는 숫자가 걸핏하면 많은 데 이른다 고 하니, 크게 절약하는 뜻이 없습니다. 혜국(惠局)에서 해마다 쓰는 쌀은 스스로 정식(定式)이 있는데, 삼가 들으니, 요사이 해마다의 몫을 앞당겨 써서 몇 년의 몫을 이미 범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을

裕民疏觀之，其愛君之忱，宜加獎誦，而以言棄斥，終非聖世之美事。況啓翁頃日之疏，自附樸直之義，其言既曰無實，則置之而已，臺章彈論，已極駭然，而因此一事，久作淸朝之棄物，在聖上恢張言路，愛惜人才之道，豈不有歉乎？戶、兵曹積儲，罔非殿下之府庫，當用而用，固無不可，所當關由政院，以示宮府一體之義，而伏聞內入之物，率以寸紙降下掖庭，所需之數，動至夥然，殊無節約之意。惠局歲用之米，自有定式，而伏聞近日，引用年條，已犯數年之科。若此不已，則更過數年，未知又將引幾年條也。尙方歲供貂鼠、狐貉之屬，數外迫獻，不啻倍蓰，許多匠手，一入內役，動經數月，綺羅、綃素之類，不時需入，殆無虛日，直徵於市廛，受價於地部者，計以歲年，動費千百。各司供上之際，掖庭人之刁蹬，日以益加，賄賂公行，低昂立判，聽聞所及，莫不駭歎。伏願益加猛省，必以節用二字，存諸方寸，毋或有濫觴之患，不勝幸甚。目昨糴穀之分等退捧，可見憫恤之聖心，飢民當有更(蘇) [蘇] 之喜。第念關北、

그만두지 아니한다면 몇 년을 지난 뒤에는 또 장차 몇 해의 몫을 끌어다 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방(尙方)에서는 해마다 바치는 초서(貂鼠)와 호락(狐貉) 등속을 정해진 숫자 외에 추가로 바치게 하는 것이 몇 갑절이 될 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공장이 한 번 대내(大內)의 일로 불리어 들어가면 몇 달을 지내며, 기라(綺羅) 초소(綃素) 등을 불시에 수입(需入)하는 것이 거의 거르는 날이 없어, 시전(市廛)에서 곧장 징수하므로 값을 지부(地部)14050) 에서 받는 것이 해를 두고 계산한다면 천백금(千百金)을 소비하는 폭이 됩니다. 각사(各司)에서 공상(供上)하는 즈음에는 액정(掖庭)14051) 사람들의 조등(刁蹬)14052) 하는 것이 날로 더욱 증가하여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농락(籠絡)이 판명되니, 듣고서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드려 원하옵건대, 더욱더 맹성(孟省)하시어 반드시 ‘절용(節用)’ 두 글자를 마음에 두시고 혹시라도 남상(濫觴)하는 근심이 없도록 하신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적곡(糴穀)을 등급을 나누어 물려서 받도록 하였으니, 민휫(憫恤)하는 성심(聖心)을 볼 수 있으며 굶주린 백성들이 마땅히 다시 소생하는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관북(關北)과 양서(兩西)는 비록 해협(海峽)의 차이가 지는 구별은 있지만, 균등하게 큰 흉년이 들었으니 세초(歲抄)는 우선 정지를 허락하여 다음해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각 병영(兵營)에서 수용(需用)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신(帥臣)에게 신칙(申飭)하여 십분 절손(節損)하고 옮겨서 충당해 쓴다면, 거의 다 죽게 된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나가는 데 전적으로 뜻을 기울이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삼로(三路)의 인심 또한 편고(偏苦)14053) 의 원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누누이 진계(陳戒)한 것이 오로지 충성과 사랑에서 나왔으니, 내가 길이 가상하게 여긴다.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관북과 양서의 세초를 정지하는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속히 품처(稟處)하게 하라.”

兩西，雖有海峽差殊之別，均之爲大殺，歲抄姑許停止，以待來歲。若其各闕需用之費，則申飭帥臣，十分節損，推移充用，則庶使垂死之民，得以專意於自活，而三路人心，亦無偏枯之怨矣。

答曰：“縷縷陳戒，亶出忠愛，予甚嘉尙。可不留心焉？關北、兩西歲抄停止事，令廟堂，從速稟處。”廟堂覆啓，請依施，從之。

	하였다. 묘당에서 복계(覆啓)하여 그에 의해 시행할 것을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11월 13 일(신유) 2번째기사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쓸데 없는 비용을 재성(裁省)14055) 할 일을 진달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재성은 먼저 어공(御供)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터이니, 우선 별단(別單)을 써서 들여서 생감(省減)하는 바탕으로 삼으라.” 하였다. 예조 참판 민진원(閔鎭遠)이 기민(圻民)을 진휼(軫恤)하는 방도를 진달하고, 최석정이 봄 가을의 대동미(大同米)를 각각 1두(斗)로 감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기 도사(京畿都事)가 전정(田政) 때문에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취상(尹就商)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윤취상은 일찍이 대장(大將)을 거쳤으므로 수원에 부임케 하였던 것이고, 또한 수거(修擧)14056) 할 일이 있다 하여 잉임(仍任)시키려고 하자, 최석정이 찬성하였으므로 드디어 잉임시키라고 명하였다. 사간(司諫) 이하원(李夏源)이 다투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崔錫鼎以裁省冗費事陳達， 上曰：“裁省當先從御供始。 爲先別單書入， 以爲省減之地。” 禮曹參判閔鎭遠， 陳圻民軫恤之道， 錫鼎請春秋大同米， 各減一斗， 從之。 京畿都事， 以田政， 啓罷水原府使尹就商。 上以就商曾經大將， 赴水原， 亦有修擧， 欲仍任， 錫鼎贊之， 遂命仍任。 司諫李夏源爭之， 不聽。
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12월 12 일(경인) 1번째기사	황감(黃柑)을 반궁(泮宮)에 내려 주라고 명하고 선비를 시험하였는데, 수석을 차지한 유생 서명연(徐命淵)에게 급제(及第)를 내려 주었다.	庚寅/命賜柑于泮宮試士， 賜居首儒生徐命淵及第。
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12월 16 일(갑오) 1번째기사	임금이 직접 인신(印信)을 위조한 죄인 손자철(孫自哲)에 대한 삼복(三覆)을 행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감사(減死)해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는데, 헌부(憲府)에서 다투었으나, 윤희하지 아니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선부(李善溥)가 아뢰기를, “천안 군수(天安郡守) 신필현(申弼賢)이 시관(試官)으로서 시소(試所)에 이르니, 무뢰한 거자(擧子)들이 길을 가로막고 맹세를 요구하여 사정(私情)을 쓰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말한 뒤에야 비로소 입장을 허락하였습니다. 도사(都	甲午/上親行三覆印信僞造罪人孫自哲。 上特命減死定配， 憲府爭之， 不允。 大司諫李善溥啓曰：“天安郡守申弼賢， 以試官赴試所也， 無賴擧子， 遮路要盟， 明言其不用私情， 然後始乃許入。 都事黃翼再聞奇驚駭， 舍其徒衆， 微服間途， 乘昏疾入， 體貌傷損， 舉措

	<p>事) 황익재(黃翼再)는 그 소식(消息)을 듣고 깜짝 놀라 그 도중(徒衆)을 버리고 미복(微服)을 입은 채 사잇길로 밤을 틔타 재빨리 들어갔으니, 체모의 손상됨과 거조(擧措)의 해괴함이 원근에 전파되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파직하소서. 그리고 본도(本道)로 하여금 변을 일으킨 유생을 상세히 조사하여 중중 과죄(從重科罪)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근래에 삼남(三南)의 수령이 간활(奸猾)하게 불법을 저지르는데, 사사로이 대동 처치미(大同儲置米)를 내다가 이리저리 화매(和賣)하여 그 남는 이익을 죄다 사가(私家)로 들이니, 청컨대 따로 염찰(廉察)을 더하시고 한결같이 장률(贓律)로써 논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p> <p>하였다.</p>	<p>駭異，傳播遠邇，作一笑囿。請竝罷職，仍令本道，詳查作變儒生，從重科罪。”上曰：“依啓。”又啓曰：“近來三南守令之奸猾不法者，私出大同儲置米，和賣翻轉，以其餘利，盡入私家。請另加廉察，一切論以贓律。”上曰：“依啓。”</p>
<p>숙종 45권, 33년 (1707 정해 / 청 강희 (康熙) 46년) 12월 17일(을미) 2번째기사</p>	<p>장령(掌令) 유명응(兪命凝)이 상소하여 기내(畿內)의 이미 받아 이전(移轉)할 것을 그대로 각 고을에 머물러 두어 민간에서 운송하여 바치는 폐단을 없애 줄 것을 청하고, 또 말하기를, “각 고을의 경내(境內)에서 만약 도적이 일어나는 사고를 당한다면 순영(巡營)에 치보(馳報)하고, 순영에서는 그 적도(賊徒)의 많고 적음과 포치(捕治)한 여부를 상고하여 계문(啓聞)해 상벌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 각 군문(軍門)의 둔전 별장(屯田別將)은 한결같이 아울러 도태시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답험(踏驗)하고 수세(收稅)하는 등의 일은 모두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뜻을 착실히 하여 구관(句管)하게 하되 과조(科條)를 엄격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닷가의 고을에서 만약 조선(漕船)이</p>	<p>掌令兪命凝上疏，請畿內已捧移轉，仍留各邑，以除民間運納之弊，又言：各邑境內，如逢賊患，馳報巡營，自巡營考其賊徒多少，捕治能否，啓聞賞罰。宮家、各衙門、各軍門屯田別將，一併汰削，踏驗收稅等事，皆令本官，着意句管，嚴立科條。沿海邑若聞漕船致敗之報，切勿替送，監色、守令，劃卽馳往，看檢拯出，俾不奸偷，一依分糶賑饑之例。</p>

	<p>침몰했다는 보고를 들으면, 절대로 대신 보내지 말고 감색(監色)과 수령(守令)이 즉시 달려가 검사하여 건져내어서 간사하게 훔쳐내지 못하도록 하되, 한결 같이 조곡(糶穀)을 나누어 기민(饑民)을 진휼(賑恤)하는 규례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소사(疏辭)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p> <p>하였다.</p>	<p>答曰：“疏辭令廟堂稟處。”</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2월 8일 (을유) 2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니,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해서(海西)14130)의 대동(大同)의 일을 실시함에 있어 지금 두 가지 의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하자면 해서의 각읍(各邑)에는 사사로운 대동(大同)14131)이 있어서 헐(歇)한 곳은 치우치게 헐하고 고달픈 곳은 치우치게 고달픕니다. 만약 1결(結)에 대하여 12두(斗)로 정하면 역무(役務)를 균등하게 할 수 있으나, 전결(田結)이 이미 적으므로 형세가 지용(支用)하기에 어려우니, 함경도(咸鏡道)의 예(例)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상정법(詳定法)을 행하되, 3, 4등으로 나누어 각읍(各邑)의 민력(民力)의 고흥(苦歇)을 따라서 참작하여 재감(裁減)14132) 하면, 백성이 실지의 혜택을 입을 것이며, 또한 폐해를 구제하는 도리가 될 만하니, 아직은 이로써 분부(分付)하여 연사(年事)가 조금 풍년 들기를 기다려 균전(均田)14133) 한 뒤에 바야흐로 대동법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오며, 하나는 말하자면 한 도(道)를 통틀어 역무(役務)를 균등하게 한 뒤에야 조정의 처치(處置)가 아주 마땅하며, 그래야 민원(民怨)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대동법을 행하자는 자는 3분의 1이고 위의 상정법을 행하자는 자는 3분의 2가 있습니다.”</p> <p>하고, 예조 판서 이인엽(李寅燁)은 말하기를, “대동법(大同法)을 이와 같이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대읍(大邑)·중읍(中邑)·소</p>	<p>引見大臣、備局諸臣。領議政崔錫鼎曰：“海西大同事，卽今有兩議。一則以爲，海西各邑，有私大同，而歇處偏歇，苦處偏苦。若定以一結十二斗，則可爲均役，而田結既少，勢難支用，依咸鏡道例，姑行詳定法，分三四等，就各邑民力之苦歇，參酌裁減，則民蒙實惠，亦可爲救弊之道，姑以此分付，待年事稍稔，均田後方用大同爲宜；一則以爲，通一道均役，然後朝家處置得當，而可無民怨云。右大同者三分居一，右詳定者三分居二矣。”禮曹判書李寅燁曰：“大同既如是難行，則以大、中、小邑分三等，名以詳定，就其苦重之役，或減其半，或減三分之一，雖不能通一道均役，猶勝於今日之倒懸，此詳定之比大同差勝也。”上命新監司，下往後商量啓聞。</p>

	<p>읍(小邑)으로써 3등급으로 나누어 상정(詳定)으로써 이름하되, 그 역무(役務)의 고중(苦重)에 따라서 혹 그 반(半)을 감하든가 혹은 3분의 1을 감한다면, 비록 한 도를 통틀어 역무(役務)를 균등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오늘날의 심한 고통보다는 나은 것이니, 이것이 상정법(詳定法)이 대동법(大同法)에 비하면 조금 나은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새로 임명된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내려간 뒤에 상량(商量)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였다.</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2월 29 일(병오) 1번째기사</p>	<p>옥당관을 소대(召對)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송정명(宋正明)이 감영(監營)·병영(兵營)에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것과 염분(鹽盆)14166) ·어전(漁箭)14167)에 수세(收稅)하는 폐단을 진달하니,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여 각도(各道)로 하여금 사문(查問)하여 혁파(革罷)한 뒤에 계문(啓聞)하게 하였다.</p>	<p>丙午/召對玉堂官。 侍讀官宋正明陳監、兵營設屯及鹽盆、漁箭收稅之弊，上納其言，令各道查問，革罷後啓聞。</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4월 16 일(임술)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돈녕(知敦寧) 김창협(金昌協)은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다시 돈면(敦勉)을 더하여 반드시 소치(召致)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흉문(凶聞)이 갑자기 이르렀으니, 어찌 경악과 애도(哀悼)함을 견디겠는가? 장수(葬需)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넉넉히 제급(題給)하게 하고, 담군(擔軍)도 또한 본도(本道)로 하여금 주게 하여서 나의 뜻을 표(表)하게 하라.”</p> <p>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임수간(任守幹)이 상소하여 출향(黜享)에 참조(參疏)한 사람도 소통(疏通)하자는 일로써 말을 하였으니, 매우 방사(放肆)하다. 소비(疏批)14268)에 의처(議處)하라고 하고(下教)한 것은 시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공론(公論)에 의대(擬待)하여 이를 처리하려고 한 것인데, 이제 조태구(趙泰耆)의 소사(疏辭)를 보니 사의(辭意)가 엄정하고 시비(是非)가 명쾌하다. 임수간(任守幹)을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라.”</p> <p>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연달아 장문(狀聞)을 보니 여역(癘疫)이 점점 치성(熾盛)한 지경에 이르렀다.</p>	<p>壬戌/藥房入診。 上曰：“知敦寧金昌協，屢召不來，而前頭更加敦勉，必欲召致矣，意外凶聞遽至，曷勝驚悼！葬需令該曹，從優題給，而擔軍亦令本道題給，以表予意。” 上曰：“任守幹之疏，以黜享參疏之人，疏通事爲言，極爲放肆矣。 疏批以議處下教者，非欲施行，擬待公論而處之矣。 今觀趙泰耆之疏，辭意嚴正，是非明快。 任守幹罷職不敍。” 上曰：“連觀狀聞，癘疫漸至熾盛，而湖南爲尤甚，死亡者最多，極爲驚慘。 更令醫司，下送藥物，申飭道臣，各別救活，以示國家軫恤之意可也。” 都提調李濡曰：“近來京中癘疫，亦漸熾蔓。 得聞蓮池洞，有一</p>

	<p>그리고 호남(湖南)이 더욱 심하여 사망(死亡)한 자가 가장 많다고 하니, 매우 경참(驚慘)14269 하다. 다시 의사(醫司)로 하여금 약물(藥物)을 내려 보내게 하고, 도신(道臣)을 신칙(申飭)하여 각별히 구활(救活)하게 하여서 국가에서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임이 옳겠다.”</p> <p>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근래에 경중(京中)의 여역(癘疫)도 또한 점점 성하게 만연(蔓延)되고 있습니다. 연지동(蓮池洞)에 한 사부(士夫)가 있는데, 온 집안이 몰사(沒死)하여 시체(尸體)를 수렴하지 못한 지가 거의 열흘이나 보름 가량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이 매우 경참(驚慘)하니, 이와 같은 유(類)는 듣는 대로 즉시 고희(顧恤)하도록 함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매우 놀랍고 비참하니, 이에 의하여 분부(分付)하라.”</p> <p>하였다.</p>	<p>士夫，闔家沒死，不得收尸者，幾至旬望云。事極驚慘。如此之類，使之隨聞顧恤宜當。”上曰：“事極驚慘。依此分付。”</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康熙) 47년) 5월 29일(갑진) 2번째기사</p>	<p>대사성(大司成) 이제(李濟)가 10조(條)를 소(疏)로 진달하기를, “첫째, 공천(公薦)하는 권점(圈點)14356 의 규정은 양 도목(兩都目)14357) 때에 재중(齋中)에서 권점(圈點)할 적에 그 점수가 많은 자를 뽑는 까닭으로 방외(方外)의 생원(生員)·진사(進士)로서 권점(圈點)의 수(數)가 많은 이를 끌어들이게 되어 그 조급하게 경쟁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니, 학문이 정심(精深)하고 행실이 탁이(卓異)한 사람은 진실로 쉽게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를 거재(居齋)14358 하며 허물과 비방이 없고 경학(經學)이 있는 자와 순과(旬課)14359 나 통독(通讀)14360) 에서 분수(分數)14361) 가 우등(優等)인 자와 경시(京試)나 향시(鄉試)를 여러 번 보았으며 합격하지 못한 자는 이 3조(條)로써 3인을 뽑아서 서용(敍用)하는 터전으로 삼으소서.</p> <p>둘째, 태학(太學)에서 양사(養士)하는 액수(額數)는 지금 호조(戶曹)에 내려 공궤(供饋)하는 수는 곧 75인이나, 근년에는 경생(經生)14362) 이 점점 많아져</p>	<p>大司成李濟疏陳十條： 一曰，公薦圈點之規，兩都日時，自齋中圈點，取其點多者，故引致方外生、進，多點圈數，長其躁競之習，學精行異之人，固不易得，而累年居齋，無疵謗有經學者，旬課、通讀，分數優等者，京、鄉試累學不中者，以此三條，取三人，以爲敍用之地。二曰，太學養士之額，卽今戶曹所下供饋之數，乃七十五人，而近年則經生漸多，幾至百餘，其中下齋，至於二十人之多。考見《大典》，則隨其生、進不足之數，</p>

서 거의 1백여 인에 이르고, 그 중에서 하재(下齋)14363)에는 20인이나 많아졌습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상고하여 보면 그 생원(生員)·진사(進士)의 부족한 수를 따라서 하재에 들어가기를 허락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상재(上齋)에도 이미 정원을 초과하였고, 하재에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관중(館中)의 물력(物力)으로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참작하여 반감(半減)하고 궐원(闕員)이 있더라도 보충하지 말도록 하여 10인에서 그치게 하소서.

셋째, 반권점(半圈點)의 법(法)을 파(罷)하고 있는 곳에서 부시(赴試)하도록 할 것이며,

넷째, 《경국대전(經國大典)》 중에는 사학(四學)14364)의 생도(生徒)는 각각 1백 인인데, 지금은 단지 하재(下齋)에 5인만이 있어서 경유(京儒)의 치경(治經)14365) 하는 자들이 전강(殿講)14366)에 참여하기를 넘겨다보고 이름을 빌어 대신으로 들어가, 군주를 속이는 비난[欺君之譏]을 돌아보지 않으니, 선비의 풍습(風習)이 미워할 만합니다. 그러니 학당(學堂)마다 6인으로 정액(定額)하고, 본관(本館)의 당상관(堂上官)과 학관(學官)이 《대전(大典)》에 의하여 시강(試講)한 뒤에, 전강(殿講)에 허입(許入)할 때에는 한결같이 실지대로 입재(入齋)하게 하고 바꾸지 못하도록 하소서.

다섯째, 사학(四學)의 겸관(兼官)은 군문 낭청(軍門郎廳)의 예(例)에 의하여 비록 파직(罷職) 중에 있더라도 서용(敍用)하여 환급(還給)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그 나머지 5조(條)는 곧 호조(戶曹)의 1년에 응당 내려야 할 쌀은 양현고(養賢庫)에 직접 드리게 하고, 호조(戶曹)에서 대출(貸出)한 미포(米布)는 우선 탕감(蕩減)하며, 본관(本館)의 노비(奴婢)는 공문(公文)을 보내어 수습(收拾)하고, 사간원(司諫院)과 예조(禮曹)의 예에 따라 보내는 면포(綿布) 2동(同)을 사고(查考)하여 혁파(革罷)하고 반인(洋人)14367) 이 도사(屠肆)14368)를 하는 것을 금리(禁吏)가 함부로 잡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일이었는데, 대답하기를,

許入下齋，而今則上齋既已過額，而下齋猶爲猥多，致令館中物力不支。參酌減半，有闕勿補，十人而止。三曰，罷半圈點之法，許令所在赴試。四曰，《大典》中四學生徒，各一百，今則只有下齋五人，而京儒之治經者，覬參殿講，借名代入，不顧欺君之譏，士習可惡。每學以六人爲額，本館堂上與學官，依《大典》試講後，許入殿講時，一從實入齋，無得移易。五曰，四學兼官，依軍門郎廳例，雖在罷職，請敍還付。其餘五條，卽戶曹一年應下米，直納養賢庫，戶曹所貸米布，爲先蕩減，本館奴婢行關收拾，司諫院、禮曹例送綿布二同，查考革罷，洋人屠肆，勿許禁吏之橫挈事也。

答曰：“條陳之事，令廟堂稟處。”

	<p>“조목별로 진달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6월 13 일(무오) 1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공궐(空闕)14380) 은 비록 시어(時御)14381) 의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체(事體)가 지중(至重)하니, 엄수(嚴豎)14382) 는 말은 쇄소(洒掃)의 역(役)을 더욱 마땅히 근신(謹慎)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창덕궁(昌德宮)이 아무도 없는 빈 때를 당하여 하나의 한성(韓姓)을 가진 내관(內官)이 있었는데, 악인(樂人)을 많이 거느리고 주찬(酒饌)을 많이 베풀어, 대내(大內)의 깊숙하고 엄숙한 곳에서 잔치를 차리고 놀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방종(放縱)하고 무엄(無嚴)한 풍습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중중 과죄(從重科罪)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p>	<p>戊午/憲府啓曰：“空闕，雖非時御之所，事體至重， 嚴豎掌灑掃之役， 尤宜謹慎， 而近當昌德宮空虛之時， 有一韓姓內官， 多率樂人， 廣設酒饌， 遊宴於大內深嚴之地， 略無顧忌。 放縱無嚴之習， 不可不懲， 請從重科罪。” 答曰：“依啓。”</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6월 17 일(임술) 1번째기사</p>	<p>한재(旱災) 때문에 근시(近侍)를 보내어 전망인(戰亡人)을 제사하는 일로 일찍이 특교(特敎)가 있었으나, 임금이 친제(親祭)하여 비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이 드디어 정지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기우제(祈雨祭)를 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정원(承政院)에서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주고 근시(近侍)를 보내어 쌍령(雙嶺)의 전망 장사(戰亡將士)에게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아! 나의 보잘것 없는 몸이 욕되게 대위(大位)에 있으므로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한 지 이에 삼기(三紀)14395) 가 되었다. 다만 그야말로 덕(德)이 적어서 스스로 재이(災異)를 불러서 한 번의 한재(旱災)가 가을까지 미쳐서 대지(大地)가 타는 것과 같다. 조금 내린 비[小霈]는 즉시 걷히고 고택(膏澤)14396) 이 또 그치게 되었다. 서성(西成)14397) 의 희망이 끊어졌으므로, 백성들의 명(命)이 그치게 되었다. 근심하는 마음이 불사른 듯하여 아픔이 내</p>	<p>壬戌/以旱災，遣近侍，祭戰亡人事，曾有特敎，而因親祭得雨，事遂寢，至是又行祈雨祭，故政院啓稟，上下親製祭文，遣近侍，致祭于雙嶺戰亡將士。其文曰： 噫予眇躬，忝居大位。夙夜祇慄，于茲三紀。惟其德涼，自速災異。一旱涉秋，大地如燬。小霈旋收，膏澤又闕。西成望斷，民命近止。憂心焚灼，痛若在己。從古致旱，多由冤氣。靜言思之，豈無所以？追提丙、丁，至今切齒。人謀不臧，虜騎猝</p>

	<p>몸에 있는 것 같다.</p> <p>예로부터 가뭄을 이루는 것은 원기(冤氣)로 말미암음이 많으니, 조용히 생각 하건대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병자년(14398)·정축년(14399)의 난(亂)을 추억(追憶)하여 제론(提論)하면 지금까지도 분하여 이가 갈린다. 사람의 계획이 착하지 못하여 오랑캐의 기병[虜騎]이 갑자기 이르렀다. 심도(沁都)(14400)가 지척(咫尺)이었는데 초계(初計)를 이루지 못하였다. 외로운 성(城)은 달무리처럼 포위되었으니, 군졸은 약(弱)하고 군량(軍糧)은 다 떨어졌다. 백등(白登)(14401)이 위급(危急)하여 외부의 구원을 날마다 기다렸더니, 아! 너희 영남(嶺南)의 충의(忠義)의 군사들이 분기(奮起)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았다. 국난(國難)을 구하러 나아간 천리(千里) 길에는 연화(煙火)를 서로 바라보고 행재(行在)(14402)를 아주 가까이 해서는 사기(士氣)가 저절로 갑절이나 나므로 천안(天顏)(14403)에 희색(喜色)이 있었다. 승전(勝戰)의 보고(報告)를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전군(全軍)이 패전(敗戰)한 것은 일찍이 뜻밖의 일이었다.</p> <p>해골(骸骨)을 베개로 삼은 사장(沙場)과 원한을 머금고 있는 구천(九泉)에서 굳센 혼백이 굶주린 지 70년이 넘었으니, 하늘이 음산할 때 귀신이 통곡함을 어찌 이를 들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상(傷)하고 눈앞에 비참함이 무엇이 이것보다 크겠는가? 옛날 무진년(14404)에 영릉(寧陵)(14405)에 일이 있어 여연(輿輦)이 쌍령(雙嶺)을 지나다가 거기(車騎)를 잠깐 멈추게 되었다. 이에 보신(輔臣)에게 명하여 손으로 날날이 가리켜 보게 하였으니, 어찌 구슬프고 비통함을 견디겠는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씻었다. 세월이 비록 오래 되었으나 한결같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으니, 이 끝이 없는 재앙을 만나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가 친히 글을 지어 번민하고 원통함을 이에 위로한다. 살아서는 이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었으니, 유명(幽明)은 달라도 한가지 이치이다. 다만 너희 많은 혼령(魂靈)들은 붕류(朋類)를 끌고 와서 하늘의</p>	<p>至。沁都咫尺，初計未遂。孤城月 暈，卒弱糧匱。白登危急，外援日 俟。嗟爾嶺南，忠義之士。奮不顧 身，赴難千里。烟火相望，行在密 邇。士氣自倍，天顏有喜。捷書之 報，舉切懸企。全師敗衄，曾是不 意。枕骸沙場，飲恨九地。毅魄餒 而，餘七十禩。天陰鬼哭，寧可聞此？ 傷心慘目，孰大於是？昔歲戊辰，寧陵 有事。輦過雙嶺，少停車騎。爰命輔 臣，以手歷指。曷勝悽悲？爲汝拭 淚。歲月雖久，一念未弛。值此極 無，靡所不思。我親爲文，煩冤是 慰。生旣殉國，幽明一理。惟爾群 靈，携朋挈類。導達天和，歆此我 觶。亟霑甘澤，蘇我赤子。邦家寧 謐，自今伊始。故茲教示，想宜知 悉。</p>
--	--	--

	<p>화기(和氣)를 인도해 이르게 하여 이 날의 술잔[觴]에 흠향(歆饗)하고, 빨리 감택(甘澤)을 내리게 하여 우리 적자(赤字)14406 들을 소생(蘇生)하게 하라.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함이 지금부터 비롯될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자세히 알지어다.” 하였다.</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6월 26 일(신미)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뜻대로 비가 왔다는 이유로써 다시 정전(正殿)에 환어(還御)하고 상선(常膳)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명하여 29일부터 거행(舉行)하게 하였다.</p>	<p>禮曹以得雨，更請還御正殿、復常膳，命以自二十九日舉行。</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7월 18 일(임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강원도[關東]에서 진상하는 인삼(人蔘)의 폐단(弊端)을 말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늘 변통(變通)하려고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요즈음 어사(御史)의 서계(書啓)에 이에 관한 폐해를 극도로 말했는데도 아직도 지체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의원(內醫院)의 복주(覆奏)와 감사[道臣]의 장문(狀聞)이 또 이와 같으니, 민심(民心)의 큰 소망을 크게 볼 수가 있다. 옛적에 송(宋)나라 인종(仁宗)은 밤에 군 양고기가 생각났으나 배고픈 것을 참고서 먹지 않았었는데, 더구나 민폐(民弊)가 큰 것이겠는가? 그것을 내의원[內局]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재감(裁減)하여서 내가 관동(關東)의 백성을 진념(軫念)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니, 내의원(內醫院)에서 복주(覆奏)하여 봄철[春等]에는 10근을, 가을철[秋等]에는 5근을 특별히 영구토록 감하게 하였다.</p>	<p>壬辰/上下敎曰：“關東進上人蔘之弊，言之已久，每欲變通而未果矣。頃者繡衣書啓，極言此弊，而姑此遲待。內醫院之覆奏，道臣之狀聞，又如此，民心顛望，大可見矣。昔宋仁宗夜思燒羊，忍飢不食。況民弊之大者乎？其令內局，稟旨裁減，以示予軫念東民之意。”內醫院覆奏，春等十斤，秋等五斤，特爲永減。</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7월 22 일(병신)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기사년14429) 정월에 영의정(領議政) 김수흥(金壽興)이 고(故) 판서(判書) 김종직(金宗直)의 시호(諡號)를 정하고 직위(職位)를 추증(追贈)하는 일로써 진백(陳白)하여 임금으로부터 상고하여 품처(稟處)하라는 일로 명령을 내린 자가 이제 20년의 오랜 세월이 이르렀는데도, 아직까지 복계(覆啓)하지</p>	<p>禮曹啓曰：“己巳正月，領議政金壽興，以故判書金宗直定諡贈職事，陳白，自上詳考稟處事命下，而今至二十年之久，尙未覆啓。雖未知其間曲折之如何，而蓋金宗直之初諡文忠，後改以文</p>

	<p>않았습니다. 비록 그 중간의 곡절(曲折)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없지마는, 대저 김종직의 처음 시호는 문충(文忠)이었는데, 뒤에 문간(文簡)으로써 고치었습니다. 그 연대가 매우 멀어서 또한 상고할 만한 문자(文字)가 없으니, 그 중간의 사실(事實)은 비록 상세히 알 수 없지마는, 대신(大臣)이 계달한 것으로써 살펴본다면 또한 변별(辨別)할 만한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대개 이원(李龜)은 김종직의 시호를 문충(文忠)으로 의논한 사람으로서, 연산조(燕山朝)에 좌죄(坐罪)되어 곽산(郭山)으로 귀양갔다가 갑자년(1443)에 이르러서는 이원까지 가죄(加罪)를 받게 되었으니, 문충(文忠)을 문간(文簡)으로 고친 일은 그 사이에 있었다고 상상(想像)됩니다. 중종(中宗)께서 정국(靖國)하는 데 미처서는 제일 먼저 김종직의 원한(冤恨)을 씻어 이미 그 관직(官職)을 회복 시켰으며, 또 그의 아내에게 녹미(祿米)를 주고 그 자손(子孫)을 녹용(錄用)하였습니다. 문충(文忠)의 복시(復諡)도 마땅히 그 때에 있었어야 할 것인데도 아들이 어리고 화란(禍亂)이 겨우 진정(鎮定)되자, 원통함을 호소하여서 복시(復諡)를 청할 수 없어 적요(寂寥)하게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제까지 복시(復諡)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충의(忠義)의 선비가 개석(慨惜)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청컨대 지난날 대신(大臣)의 진청(陳請)에 의하여 그 시호를 회복할 것을 윤택(允)하시어.”</p> <p>하니, 전교하기를, “지금까지 천취(遷就)1443) 된 것은 진실로 매우 미안하니 즉시 복시(復諡)하라.”</p> <p>하였다.</p>	<p>簡。其年代綿邈，亦無可考文字，其間事實，雖未詳知，以大臣所達觀之，抑不無可辨之端。蓋李龜以宗直議諡文忠之人，燕山朝坐謫郭山，及至甲子，龜竝被加罪，以文忠改文簡之事，想在其間，而逮至中廟靖國，首雪宗直之冤，既復其官，又廩其妻，錄用其子孫，則文忠之復諡，宜在其時，而子在幼沖，禍亂甫定，未能訴冤而請復，寂寥數百年，至今未復，此所以忠義之士，慨惜而抑鬱者也。請依向日大臣陳請，許復其諡。”傳曰：“至今遷就，實甚未安，卽爲復諡。”</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康熙) 47년) 8월 27일(경오) 2번째기사</p>	<p>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어 청하기를, “전연 낫[鎌]을 대어 곡식을 거두지 못할 곳은 특별히 급재(給災)를 윤택(允)하시어.”</p> <p>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해조에서 복계(覆</p>	<p>諫院啓請全不掛鎌處，特許給災，上令該曹稟處。該曹覆啓依施。</p>

	啓)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肅宗 46卷, 34年 (1708 戊子 / 청 강희 (康熙) 47年) 8月 27 日(庚午) 3번째기사	호조(戶曹)의 계사(啓辭)에, “은결(隱結) 10결(結) 이상을 사용(私用)하다 드러난 것은 적곡(糶穀)을 허록 (虛錄)한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이 뒤 인견(引見)할 때에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청하기 를, “10결 이상은 5년을 한정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以戶曹啓辭，私用隱結十結現露以上， 依糶穀虛錄例施行，傳曰：“知道。” 是後，引見時，領議政崔錫鼎請十結以 上，限五年永不敍用，上許之。
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9월 25 일(무술) 4번째기사	이조 참의(吏曹參議) 조태동(趙泰東)이 상소(上疏)하여 청하기를, “내년 봄에 진휼(賑恤)을 끝내는 기간을 한정하여 수령(守令)을 내직(內職)으 로 옮기는 것을 윤허(允許)하지 말고, 또한 옮겨서 제직(除職)하지도 않으며, 임 기가 찬 수령도 맥추(麥秋)를 한정하여 그대로 유임(留任)시키어 진휼(賑恤)하 는 일을 책임지게 하소서.”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고 비답(批答)하였다.	吏曹參議趙泰東上疏，請限明春畢賑 間，守令勿許內遷，亦勿移除，瓜滿守 令，限麥秋仍任，以責賑事，批以令該 曹稟處。
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9월 29 일(임인) 2번째기사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니,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제도(諸道)에서 더욱 심하게 재해(災害)를 입은 고을만은 당년조(當年條)의 제반 신역(諸般身役)을 특별히 3분의 1을 감하여 주고, 병술년(1450) 이상의 신포(身布)14505) 도 잠정적으로 수봉(收捧)을 중지하며, 경기(京 畿)의 대동미(大同米)는 특별히 2두(斗)를 감하여 주고, 인천(仁川)은 더욱 흥 년이 들었으니 특별히 3두(斗)를 감하여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또한 이의(異議)하는 말이 없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引見大臣、備局諸臣。領議政崔錫鼎 言：“諸道尤甚被災邑，當年條諸般身 役，特減三分之一，丙戌以上身布，姑 爲停捧，京畿大同米，特減二斗，仁川 尤歉，特減三斗似宜。”諸臣亦無異 辭，上從之。
숙종 46권, 34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언경(李彦經)이 본도(本道)에 상정(詳	甲辰/黃海道觀察使李彦經，疏請本道

<p>(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10월 2 일(갑진) 1번째기사</p>	<p>定)14506) 하는 것을 조금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기를 상소하여 청하니, 묘당(廟堂)에 이를 내리었다. 이튿날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연중(筵中)에서 상정하는 것을 빨리 거행하도록 하되, 각 고을의 출미(出米)는 4, 5등으로 나누게 하고, 영수(營需)의 관수(官需)와 상공(上供) 등의 값은 한결같이 호서(湖西)14507)의 예(例)에 의하여 하자는 뜻으로써 진품(陳稟)하니, 임금이 즉시 분부(分付)하게 하였다.</p>	<p>詳定，稍待年豐舉行，下廟堂之翌日，領議政崔錫鼎於筵中，以詳定使之斯速舉行，而各邑出米，分爲四五等，營需官需及上供等價，一依湖西例爲之之意，陳稟，上令卽爲分付。</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10월 3 일(을사) 2번째기사</p>	<p>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인엽(李寅燁)이 상소(上疏)하기를, “금년의 흉년[凶歉]은 여러 도(道)가 대저 동일한 듯하나, 대충 이를 논한다면 경기[畿甸]가 더욱 심하고, 충청도가 다음이고, 전라도가 또 다음이고, 경상도가 또 다음이니, 마땅히 그 긴급(緊急)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따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도·경상도 [兩南]는 비록 흉년든 곳이 있더라도 본도(本道)의 곡물(穀物)로 스스로 옮기어서 빌어먹는 사람을 구휼(救恤)할 수 있으며, 충청도 3창(三倉)이 있으나 해마다 이전(移轉)하므로 유저(遺儲)가 지극히 적으니, 또한 다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경기는 각 고을의 환곡(還穀)이 그 수량이 많지 않으니, 급하면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쌀을 이전하지 않을 수 없으나, 두 곳은 군량으로 소모되어 축나는 것이 진실로 많습니다. 지금 진청(賑廳)에는 약간의 저축(儲蓄)이 있지만, 명년 봄에 서울 백성[都民]이 굶주림을 당하여 오히려 그것을 구제(救濟)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어려운 고비가 다른 곳에 파급(波及)될까 두렵습니다. 경상도 영(營)에서는 별도로 모은 쌀이 50여만 곡(斛)에 이른다고 들은 듯하니, 만약 그 연변(沿邊)에 소재(所在)한 3, 4만 석(石)을 이른 봄까지 운반해와서 시기(時期)에 미치어 전라도·경상도 양도(兩道)에 나누어 진구(賑救)하고, 또 경기의 더욱 심한 고을은 올 가을의 대동미(大同米)를 대전(代錢)하자는 요청이 어지럽게 몰려오고 있으니, 본청(本廳)의 형세가 비록 매우 절박(切迫)하더라도 민사(民事)도 또한 마땅히 개연(愀然)14510) 하게 여길 수는</p>	<p>吏曹判書李寅燁上疏曰： 今年荒歉，諸道大抵同然，而概以論之，畿甸爲尤甚，湖西次之，湖南又次之，嶺南又次之，當隨其緊急而爲之。兩南雖有失稔處，本道穀物，自可推移沾丐，湖西有三倉，而連年移轉，遺儲至些，亦不可盡分。畿甸則各邑還穀，其數不敷，急則不得不移轉江都、南漢之米，而兩處軍餉耗縮，固多。卽今賑廳，略有儲畜，而明春都民阻飢，猶懼其不濟，恐難波及於他處。似聞嶺南營別會米，至於五十餘萬斛，若其沿邊所在三四萬石，趁早春運來，以爲及時分賑於兩道。且畿甸尤甚邑，今秋大同代錢之請，紛然沓至。本廳形勢，雖甚切迫，民事亦不宜愀然，許令納錢，亦似便宜。春間因大同木作米之際，參量中外市直，加捧二斗之意，定奪分付，而民情不無稱冤之端。頃者</p>

	<p>없으니, 납전(納錢)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또한 편의(便宜)할 듯합니다.</p> <p>춘간(春間)에 대동목(大同木)14511) 으로 인하여 작미(作米)할 즘에는 중외(中外)의 시가(市價)를 참작[參量]하여 두 말[二斗]을 더 징수(徵收)한다는 뜻으로 정탈(定奪)하여 분부(分付)하였는데, 민정(民情)에 칭원(稱冤)14512) 하는 사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론(臺論)에도 또한 이 일을 논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좁쌀[小米]로써 그 더 징수하는 수량을 대신 징수한다면 민력(民力)이 매우 어려운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고, 실지의 혜택(惠澤)도 아래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충청·전라·경상도 [三南]의 여러 도(道)는 일체로 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기의 춘추(春秋)의 수미(收米)는 쌀[大米]로 수봉(收捧)하면 민력(民力)이 진실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정축년 14513) 에 이미 시행(施行)한 예(例)에 의하여 경기에서 거두는 쌀은 좁쌀로 대신 징수한다면, 또한 약간 1분의 걱정은 풀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 “소사(疏辭)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빨리 품처(稟處)하게 하라.”</p> <p>하였다.</p>	<p>臺諫，亦論此事矣。 今若以小米，代捧其加捧之數，則民力不至甚難，而實惠可以下究， 三南諸道，一體知會宜矣。 畿甸春秋收米，以大米收捧，則民力誠有所不逮者， 依丁丑已行之例，畿米以小米代捧， 則亦可以稍紓一分矣。</p> <p>答曰：“疏辭令廟堂，作速稟處。”</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康熙) 47년) 10월 4일(병오) 1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금년에 농사가 흉년이 든 것은 을해년(14514) ·병자년(14515) 과 다름이 없습니다. 겨울철이 미치기 전에 유산(流散)하는 이가 서로 잇닿게 되고, 마을의 사이에서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 도(道)를 안찰(按察)하는 신하는 마땅히 덕의(德意)를 선포(宣布)하여 진휼(軫恤)로 무마(撫摩)하는 일에 여가가 없어야 할 것인데도, 충청 감사(忠淸監司) 이선부(李善溥)는 순력(巡歷)하는 즘에 열읍(列邑)의 백성이 10명 또는 1백 명씩 떼를 지어 길 양쪽에서 호소하며 재해(災害)를 입은 참상(慘狀)을 진정(陳情)하려고 하였으나, 이선부는 그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머래채를 휘어잡고 들어와 장벌(杖罰)을 베풀어 내쫓기까지</p>	<p>丙午/憲府啓曰：“今年穡事之凶歉，無異乙、丙。 未及冬節，流散相續，閭里之間，生意索然。 當此之時，按道之臣，所當宣布德意，撫摩軫恤之不暇，而忠淸監司李善溥巡歷之際，列邑民人，什百爲群，挾路呼訴，欲陳被災之慘，則善溥厭其紛鬧，不少假借，至於摔入杖罰而斥逐之。 此豈停車問瘼之意哉？ 民情抑鬱，聽聞爲訝，不可無規警之道。 請李善溥從重推考。” 不</p>

	<p>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수레를 멈추고 백성의 고통을 위문(慰問)하는 뜻이겠습니까? 민정(民情)의 억울함을 청문(聽聞)하는 이가 의아(疑訝)하고 있으니, 규경(規警)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선부를 종종 추고(從重推考)하소서.”</p> <p>하였으나, 유희(允許)하지 않았다.</p>	<p>允。</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10월 8 일(경술) 2번째기사</p>	<p>강화 유수(江華留守) 박권(朴權)이 청대(請對)하여 농업(農業)에 방해(妨害)가 있는 이유로써 진강 목장(鎭江牧場)을 혁파하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 뒤에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이 연중(筵中)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두 목장은 전부터 혁파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진강(鎭江)은 마종(馬種)이 가장 좋아서 효종조(孝宗朝)에 특별히 명하여 혁파하지 못하게 하였고, 북일(北一)은 태복시(太僕寺)의 방색(防塞)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태복시(太僕寺)에서 목장(牧場)을 빼앗긴 곳이 자못 많으니, 본시(本寺)의 형세도 또한 매우 염려할 만하므로, 그것을 공동 구제하는 길은 마땅히 다 막을 수는 없으니, 북일 목장(北一牧場)만은 내 주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이르기를,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팔준마(八駿馬)는 진강(鎭江)의 품종(品種)에 있었다.’ 하니, 그 지방에서 양마(良馬)를 생산한 것은 옛부터 그러하였다. 효종(孝宗)께서 특별히 교유(教諭)하시었음은 성의(聖意)가 있는 데가 있었으니, 이제 와서 혁파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북일 목장(北一牧場)만은 특별히 내 주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p>江華留守朴權請對，以有妨農業，請罷鎭江牧場，上令廟堂稟處。是後，大臣及備局諸臣覆奏筵中曰：“兩牧場，自前有革罷之議，而鎭江則馬種最善，孝廟朝，特命勿罷，北一則因太僕防塞，至今仍存矣。太僕牧場見奪處頗多，本寺形勢，亦甚可慮，而其在共濟之道，不宜盡塞，北一場出給似宜矣。”上曰：“《龍飛御天歌》以爲：‘太祖大王八駿馬，有鎭江種’云。其地之產良馬，自古而然。孝廟特教，聖意有在，到今罷之重難。北一場特爲出給可也。”</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10월 30</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니, 부제학(副提學) 조태구(趙泰耆)가 말하기를,</p> <p>“신이 마침 호조(戶曹)의 문서(文書)를 보니, 왕자군(王子君)의 집을 매매(賣</p>	<p>壬申/引見大臣、備局諸臣。副提學趙泰耆曰：“臣適見戶曹文書，有王子君家舍買賣定價之事。初以銀三千三</p>

일(임신) 1번째기사

買)하는 데 값을 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銀) 3천 3백여 냥으로써 계달(啓達)하였는데, 값을 줄여서 정하라는 교시(敎示)가 있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성상(聖上)의 비용(費用)을 줄이는 뜻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비록 참작(參酌)하여 감정(減定)하더라도 그 액수가 거의 3천 냥에 가까우니 돈[錢]으로써 계산한다면 만 냥(萬兩)을 넘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것은 진실로 시세(時勢)가 아니며 또한 일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신이 승정원(承政院)에 있을 때에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돈 2만 냥을 청하여 기민(饑民)을 진구(賑救)한다 하였으나, 국고의 저축이 고갈되어 유사(有司)가 응낙(應諾)하지 못했으므로, 신은 가만히 상심(傷心)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궁가(宮家)의 비용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굶주린 백성들이 들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국가에서 구렁에 빠져죽는 백성은 구휼(救恤)하지 않으면서도 한 채의 큰 집[巨第]을 건축하는 데에 비용은 만 냥이 넘는다.’고 할 것이니, 나라의 체면(體面)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적에 한 문제(漢文帝)는 백금(百金)을 아끼어 노대(露臺)14526) 를 건축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것은 중인(中人) 열 집의 재산(財産)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지극한 말입니다. 지금 만약 이것을 연출(損出)하여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한다면 활인(活人)하는 것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또 이 구가(具家)는 바로 우리 인조 대왕(仁祖大王)의 외가(外家)이며, 인헌 왕후(仁獻王后) 14527) 의 부모[考妣]의 사당(祠堂)이 있습니다. 훈척(勳戚)이 여러 세대(世代)를 전수(傳守)하는 집이 하루아침에 국가(國家)에 들어오고, 끝내는 그 사당(祠堂)을 헐어서 옮기게 될 것이니 첫번째 불가한 것이며, 왕자(王子)의 제택(第宅)이 시문(市門)에 가까운 것이 두번째 불가한 것이며, 그 집이 시장(市場)에 가까워서 본 값은 매우 비싼데 값을 감하여 준다면 원통하다고 일컬을 것이며, 값을 시가(時價)에 따라서 준다면 3천 냥도 오히려 적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집을 사려고 한다면 어느 곳인들 되지 않겠습니까?

百餘兩啓達，而有減價之敎。此固出於聖上省費之意，而雖參酌減定，厥數殆近三千，以錢計之，則過萬也。臣以爲此實非時，亦非事宜也。向日臣在政院時，忠淸監司請錢二萬，以賑饑民，而國儲罄竭，有司無以應之，臣竊傷之。今一宮家之費，至於如此，飢民間之，必曰：‘國家不恤填壑之民，而營一巨第，所費過萬’云爾，則其於國體，何如也？昔漢文帝惜百金，而不營露臺曰：‘此中人十家之產。’誠至言也。今若捐此賑民，則所活豈不多乎？且此具家，乃我仁祖大王之外家也，仁獻王后考妣祠堂在焉。勳戚累世傳守之家，一朝入於國家，終於撤移其祠堂，一不可也，王子第宅近市門，二不可也，厥家近市，本直甚高，減給則稱冤，准給則三千猶少也。國家如欲買家，則何處不可，而必買此難便之家，以招人之竊議乎？三不可也。今若求之於巷僻近闕之處，所費不至若是之多，而必不致駭人之瞻聆。且王子出閣之期尚遠，而襁孀無他子弟，其宮亦當爲王子之本第，何必他求？設或不得已別爲營第，當此災異沓臻，八路同飢

	<p>그런데 반드시 이 난편(難便)한 집을 사서 사람들의 몰래 비평하는 것을 초래(招來)하는 것입니까? 이는 세번째 불가한 것입니다.</p> <p>이제 만약 번두리에 궁벽(窮僻)하면서 대궐(大闕)에 가까운 곳에다 구한다면 비용이 이와 같이 많은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사람의 보고 듣는 이에게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왕자(王子)가 살림을 나는[出閣] 시기가 아직 멀었으며, 명빈(楨嬪)14528) 은 다른 자제(子弟)가 없으니, 그 궁(宮)도 또한 마땅히 왕자의 본제(本第)가 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다른 데에서 구하는 것입니까? 설혹 마지못해서 별도로 제택(第宅)을 건축하더라도 이러한 재이(災異)가 거듭 겹쳐서 팔도(八道)가 같이 굶주리는 날을 당하여 제택을 건축하는 것은 몹시 공구 수성(恐懼修省)하는 뜻이 아닙니다.</p> <p>삼가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마음에 두시고 채택해 받아들이시어 속히 성명(成命)을 중지하시고, 유사(有司)를 신칙하여 한결같이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으로써 급무(急務)를 삼으시는 것이 진실로 변변치 못한 신의 소망(所望)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根本)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습니다. 민생(民生)이 자기 직업을 즐거워하여 국가가 편안하게 되면, 어찌 왕자(王子)의 제택(第宅)이 없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궁가(宮家)를 지어 주는 것을 만약 내가 창시(創始)하였다면, 부제학(副提學)의 주달(奏達)이 옳겠지마는, 이것은 조종조(祖宗朝)에 이미 시행된 규례(規例)이다. 또 집은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니, 어찌 한 가지 예(例)만으로 이를 정하겠는가? 이로써 방색(防塞)하는 것은 진실로 뜻밖의 일이다.”</p> <p>하였다. 조태구(趙泰耆)가 말하기를,</p> <p>“신은 청컨대 그 말을 끝내겠습니다. 조종조(祖宗朝)의 일로써 말한다면 신의</p>	<p>之日, 求營第宅, 甚非恐懼修省之意。伏願聖明, 留神採納, 亟寢成命, 申飭有司, 一以救民爲急, 實區區之望也。民惟邦本, 本固邦寧。民生樂業, 國家乂安, 則豈憂王子之無第宅乎?” 上曰: “宮家造給, 若是予創開, 則副學所達可矣, 而此乃祖宗朝已行之規。且家舍隨其大小, 而價以之低昂, 何可一例爲之? 以此防塞, 誠是意外也。” 泰耆曰: “臣請畢其說。以我祖宗朝事言之, 臣之先祖漢川尉趙無疆, 卽成宗朝駙馬也。官營第宅, 其堡不過四五百間, 間架之數, 亦甚狹少, 故舍之存, 臣猶及見之。東陽尉申翊聖家, 前有壓臨之人家, 翁主深以爲悶, 請建數架屋以障之, 宣廟不許建屋, 特下亂簾數浮遮蔽。此則臣聞之熟矣。祖宗朝崇儉之德, 有如是者, 此豈非殿下之所當法者乎?” 錫鼎曰: “儒臣所達, 誠是切至之論也。近年連值凶歉, 國儲蕩然, 忠清道前後所送賑資, 殆至萬餘兩, 前頭無以繼之。王子出閣, 當在數年之後, 雖未知內間形勢之如何, 而第宅營造, 姑停無妨。儒臣所達, 宜加體念矣。” 上曰: “成造須用吉年,</p>
--	---	---

선조(先祖) 한천위(漢川尉) 조무강(趙無疆)은 곧 성종조(成宗朝)의 부마(駙馬)입니다. 관아(官衙)에서 제택(第宅)을 건축하였으나, 그 터가 4, 5백칸을 지나지 않았으며, 간가(間架)의 수도 또한 매우 협소(狹少)했는데, 옛집이 있는 것을 신도 오히려 보게 되었습니다.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의 집은 앞에 눌러 굽어보는 인가(人家)가 있으므로, 옹주(翁主)가 매우 민망하게 여겨 수가옥(數架屋)을 세워 막아 주기를 청하였으나, 선조(宣祖)께서 집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완렴(輓簾) 수부(數浮)를 내려 주어 막아 가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이 익히 들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검소(儉素)함을 숭상(崇尚)한 덕은 이와 같은 것이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전하(殿下)께서 마땅히 본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유신(儒臣)이 주달(奏達)한 것은 진실로 간절하고 지극한 의논(議論)입니다. 근년에 연달아 흉년을 만나 국고의 저축한 것이 죄다 없어져서 충청도(忠淸道)에 전후(前後)로 보내었던 진자(賑資)만도 거의 만여 냥(兩)에 이릅니다마는, 앞으로는 잇달 수가 없으니, 왕자(王子)의 출함(出閤)은 마땅히 수년(數年) 뒤에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내간(內間)의 형세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지마는, 제택(第宅)을 영조(營造)하는 것은 우선 정지시키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유신(儒臣)이 주달(奏達)한 것을 마땅히 더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집을 건축[成造]하는 것은 반드시 길년(吉年)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명년에 역사를 시작한 뒤에도 자칫하면 수삼 년을 경과(經過)하고, 혹은 5, 6년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형세가 쉽지 않은 것이 자연히 이와 같을 것이므로, 집을 비록 사서 둔다 하더라도 본시 금년 안에 반드시 영조(營造)하려는 의도(意圖)는 아니다. 유신(儒臣)이 진달(陳達)한 것은 곡절(曲折)을 알지 못한다고 이를 만하다.”

明年始役之後，動經數三歲，或至五六年，形勢之未易，自然如此。家舍雖爲買置，本非今年內必欲營造之意也。儒臣所達，可謂不知曲折矣。”大司憲李廷謙曰：“儒臣之言，雖不概於聖心，自上顯有拂鬱之色，臣以爲有嫌於聖德也。但此家，宜與延祔君家舍無異，而比其家過累百金，日後次次添價之弊，亦不可不念矣。”泰耆曰：“若以三千兩買基，造家時，又將費累千金，豈不過重耶？”上曰：“延祔君家價，乃二千兩也。家之基垆、間架有異，故價之多少不齊。今若一依給價，則其主必將稱冤，何可勒定？此言全不知妙理矣。”

	<p>하니, 대사헌(大司憲) 이정겸(李廷謙)이 말하기를, “유신(儒臣)의 말이 비록 성심(聖心)에 감동시키지는 못하여 성상께서 불울(拂鬱)한 기색(氣色)이 현저히 있으셨지마는, 신은 성덕(聖德)에 겸연(慊然)14529 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집은 마땅히 연잉군(延礽君)의 집[家舍]과 다름이 없는데도 그 집과 비교하여 누백 금(累百金)을 더 주었으니, 일후(日後)에 점차로 값을 더 보태는 폐단(弊端)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조태구(趙泰耆)는 말하기를, “만약 3천 냥으로써 터를 사면 집을 지을 때에는 또 장차 누천 금(累千金)을 소비하여야 하니, 어찌 과중(過重)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잉군(延礽君)의 집 값은 바로 2천 냥이었다. 집의 터[基垆]와 간가(間架)가 다름이 있는 까닭으로 값의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았는데, 이제 만약 한결같이 준 값에 의하면 그 주인이 반드시 장차 원통함을 일컬을 것이니, 어찌 강제로 결정하겠는가? 이 말은 전연 묘리(妙理)를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康熙) 47년) 12월 4일(병오) 1번째기사</p>	<p>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아!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根本)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다.’고 하였는데, 해마다 흉년이 거듭 들어 백성[邦本]이 날로 초췌(瘵瘁)하므로, 한밤중에 생각하니 어찌 근심하고 탄식함을 금하겠는가? 더구나 금년의 대단한 가뭄[亢旱]은 근래에 없었던 것인데다 풍재(風災)와 상재(霜災)까지 잇따라 농사[稼穡]가 병들게 되었다. 슬프다! 우리 백성이 모두 죽어 구령을 메우게 되었으니, 간절한 생각은 다친 자를 보는 듯하며 슬픔은 내 몸에 있는 듯하다. 명년 봄의 진휼(賑恤)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늦춤을 허용할 수가 없다. 해마다 진휼(賑恤)을 실시(設施)하여 저축한 것이 죄다 없어졌으니, 망연</p>	<p>丙(子) [午] / 備忘記: 噫! 民惟邦本, 本固邦寧, 而比歲荐饑, 邦本日瘁, 中夜以思, 曷堪憂歎? 況今年亢旱, 輓近所無, 繼以風霜, 稼穡卒瘁. 哀我民斯, 舉將填壑, 念切如傷, 恫若在己. 明春調賑, 不容少緩, 而連年設賑, 積儲罄竭, 茫然無以爲計. 然而君之視民, 如父視子, 寧有子有急病, 而父忍愒視者耶? 凡係賑民之政,</p>

	<p>(茫然)하여 계책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나 임금이 백성을 보기를 아버가 아들을 보는 것과 같이 해야만 하니, 어찌 자식(子息)이 급한 병이 있는데도 아버가 차마 개시(愬視)14560) 하는 자가 있겠는가? 무릇 백성을 진휼하는 관계의 행정(行政)은 겨우 감사[道臣]가 장계(狀啓)로 청하고 묘당(廟堂)의 복계(覆啓)로 인하여 약간은 이미 구획(區畫)하였지마는 그것을 열읍(列邑)에 신유(申諭)하여 일에 마음을 두고 제활(濟活)하는 것은 오로지 감사[方伯]에게 있다. 다만 생각하건대 진정(賑政)이 거의 없는 해가 없었는데, 인정(人情)은 혹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끝에는 태만(怠慢)함이 없지 않으니, 이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일이다. 사의(事宜)에 이르러서는 전후의 비망기(備忘記)에 이미 죄다 알렸으니 이에 많은 고명(誥命)을 하지 않는다. 아! 그대들 감사는 나의 명령을 공경하여 마음을 다하여 봉행(奉行)할 일을 경기(京畿)·충청(忠淸)·전라(全羅)·경상(慶尙)·황해(黃海)의 5도 감사(監司)에게 하유(下諭)하는데, 겨울철[冬序]이 장차 다하여 농사철[春農]이 멀지 않았으니, 여러 도에 신칙(申飭)하여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여서 농무(農務)를 중하게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다.</p>	<p>纔因首臣之狀請，廟堂覆啓，略已區畫，而若其申諭列邑，着意濟活，專在方伯。但念賑政，殆無虛歲，人情或不無始勤終怠，此最可慮也。至於事宜，前後備忘，已悉之矣，茲不多誥。咨爾方伯，欽哉予命，悉心奉行事，下諭于京畿、忠淸、全羅、慶尙、黃海五道監司，而冬序將盡，春農不遠，申飭諸道，勸課農桑，用示重農務之意。</p>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康熙) 47년) 12월 13일(을묘) 4번째기사</p>	<p>헌납(獻納) 이윤문(李允文)이 아뢰기를, “정팔익(鄭八翼)이 밀지(密地)에게 살기를 도모한 것은 강현(姜覲)이 방자(放恣)한 형상을 지진(指陳)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강원 감사(江原監司) 송정규(宋廷奎)는 타고난 성품이 사납고 고약하며 가도(家道)가 폐란(悖亂)하여 제류(僣流)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 진실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응부(雄府)를 맡아 교묘히 뇌물[包饋]을 써서 재능을 자랑하여 명예(名譽)를 사서 본직(本職)에 외람되게 있었으며, 한 지방을 맡긴 일을 저버리고 오로지 탐욕[饕餮]만을 일삼았습니다. 인삼(人蔘)</p>	<p>獻納李允文啓言：“鄭八翼密地圖生，因指陳姜覲放恣狀。”又啓曰：“江原監司宋廷奎，賦性狠愎，家道悖亂，見棄僣流，固已久矣，而累典雄府，巧行(乞) [包] 饋，銜能賈譽，濫叨本職，孤負委寄，專事饕餮。人蔘減捧，寔出聖德，而封進之際，恣意舞弄，蔘體差小，則托以不合享上，蔘體差大，則諉於貽弊日後，而竝歸私橐，本營衣資</p>

을 감봉(減奉)케 한 것은 이는 성덕(聖德)에서 나왔는데도, 봉진(封進)할 즈음에 방자한 마음으로 법을 남용하여 삼(蔘)의 몸통이 조금 작으면 진상(進上)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핑계하고, 삼의 몸통이 조금 크면 일후의 폐해(弊害)를 끼치게 된다고 핑계하여 모두 제주머니로 돌렸으며, 본영(本營)의 의자(衣資)를 책출(責出)하는 것은 본시 전례(前例)가 없었는데, 면주(綿紬)와 목화(木花)를 싼값으로 억지로 사고는 유래(流來)한 전화(錢貨)를 예(例)를 어기면서 훔쳐 주어 흑독하게 남은 이익(利益)을 취하고, 초피(貂皮)를 사서 기녀(妓女)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양전(量田)하는 행정(行政)에 이르러서는 해(害)가 더욱 컸습니다. 전형(田形)은 다섯 가지가 있어서 증감(增減)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도, 자기의 교지(巧智)를 부리려고 하여 처음으로 별형(別形)을 더하였으나, 파쇄(破碎)하고 번설(煩屑)하여 이치상 결국(結局)하기가 어려우므로, 수관을 두드려 전결(田結)을 정할 때에 도리어 5전(五田)에서 부세(賦稅)를 내는 전례를 답습(踏襲)하였습니다. 전정(田政)의 크게 난잡한 것이 뒤엎힌 노끈과 같을 뿐만이 아닌데도, 잘못된 점을 바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허물을 수령(守令)에게 돌립니다.

마음을 쓰는 것이 교밀(巧密)하고 처사(處事)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어긋났는데도, 전간(田間)에 출몰(出沒)하며 말을 타고 따라다니는 것이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열 가지에 한 가지도 남지 않은 민력(民力)이 공돈(供頓)14566)에 다 써버려서 전지(田地)를 버리고 도피(逃避)하는 무리가 앞뒤에서 하는 것을 서로 바라보는데, 그 형세가 개량(改量)하는 데에 궁박하고 이치가 작용(作用)14567) 하는 데에 굽히게 되자, 곧 이미 문란(紊亂)한 전정(田政)을 들어 어리석고 무식한 감관(監官)에게 오로지 위임(委任)하여 감관이 이르는 곳에는 온 마을이 달아나 피하니, 가련(可憐)한 이 강원도의 백성들은 아니 유독 무슨 죄가 있기에 궁핍(窮乏)하여 도적(盜賊)이 되는 것입니까? 형세가 반드시 이르는 바엔 <서로가> 불러모아 산(山)에 올라 열 명·백 명으로 떼를 지

責出，本無前例，而綿紬、木花，輕價勒買，流來錢貨，越例散給，刻取奇羨，買貂悅妓。至於量田之政，爲害益巨。田形有五，不容增減，而欲逞已巧，創加別形，則破碎煩屑，理難結局，而叩算定結之時，反襲五田出賦之套。田政胡亂，不翅亂繩，而不思易轍，歸咎守令。用意巧密，處事乖戾，而出沒田間，騎從如雲。十不存一之民力，竭於供頓，棄田逃避之輩，項背相望，及其勢窮於改量，理屈於作俑，則乃舉既紊之田政，專委蚩蠢之監官，監官所到，闔村奔屏，哀此東民，抑獨何辜？窮而爲盜，勢所必至，嘯聚登山，十百爲群，放砲數罪，呼聲動地，廷奎竄身挾房，僅以經夜者累次矣。民心獷悍，雖極驚心，而若使廷奎，律身奉法，處事寬平，則其結冤逢變，寧至此境？謗徹京輦，怨歸朝家，不可不明正僨事之罪，以謝一方之民。請罷職不敘。”

答曰：“刑官之陳達，意在審克，而今乃疑之以密地圖生，斥之以豈非放恣，固已未安。末端事，宋廷奎之爲政詳明，方受均田之命，盡心奉行，而構罪擊去，遽出此際，尤未曉其意之所在

어 방포(放砲)하면서 수죄(數罪)14568) 하니, 부르짖는 소리가 지축(地軸)을 진동하였으므로 송정규(宋廷奎)는 몸을 협방(挾房)에 숨기고서 겨우 밤을 지낸 것이 여러 차례였습니다. 민심(民心)이 포악하고 사나와서 비록 매우 마음을 놀라게 했지만, 만약 송정규(宋廷奎)로 하여금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봉행(奉行)하여 처사(處事)가 관평(寬平)하였더라면, 그가 원수(冤讐)를 맺고 변을 당한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비방하는 원망은 서울[京輦]에 사무쳤고 원한(怨恨)은 조정[朝家]에 돌아갔으니, 일을 망친 죄를 밝혀서 바로잡아 한 지방의 백성에게 사죄(謝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형관(刑官)의 진달(陳達)한 것은 뜻이 죄상(罪狀)을 자세히 조사하는 데 있는데도 이제 곧 밀지(密地)에서 살기를 도모한다는 이유로써 의심하고 어찌 방자(放恣)하지 않는가라는 이유로써 배척한 것은 진실로 미안(未安)하다. 말단(末端)의 일은 송정규(宋廷奎)의 행정(行政)이 상명(詳明)하여 바야흐로 균전(均田)하는 명을 받고 마음을 다하여 봉행(奉行)하는데, 죄를 꾸며서 쳐버리는 것이 갑자기 이 즈음에 나왔으므로, 더욱 그 뜻이 있는 곳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관동(關東)의 한 도(道)는 만산(萬山)의 사이에 처하여 농민(農民)이 모두 산언덕[山崖]에 불지르고 바위틈에 흙을 퍼 구차하게 1년 동안 수확하는 밀천으로 삼고 있는데, 땅의 기름기[土膏]가 이미 다하면 문득 다른 산(山)으로 옮겨 개간(開墾)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지(田地)는 상형(常形)이 없어 도공(圖貢)14569)에서 빠진 것이 매우 많으며, 상전(上田)으로써 하전(下田)이 되고, 하전(下田)으로써 상전(上田)이 된 것이 또 매우 많으므로, 조정[朝家]에서 개량(改良)하자고 의논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기근(饑

也。勿煩。”

【史臣曰：“關東一道，處於萬山之間，農民率皆火草山崖，布土巖隙，苟以爲一年收穫之資，土膏已竭，則便移墾他山。以此田無常形，而見遺於圖貢者甚多，以上爲下，以下爲上者，又甚多，朝家之議所以改量者，蓋久矣，而饑饉連年，民心易搖，卒無敢不顧民怨，而主張其論者。至是，廷奎爲崔錫鼎所薦拔，濫授藩臬，委以均田之任，而未幾果以煩苛取敗。夫民不可與慮始，又況末世人心悍惡，雖別揀寬厚忠恕之人，而任其政，猶不可保其無怨。況以廷奎之怪刻，而俾之專行己志，烏能不擾其民而償其事乎？廷奎，素以殘忍薄行，爲人所指目。彼大臣者，亦豈不知其然，而特其性喜變更之故，廷奎改量之議，所以一入，而卽與之合，及其赴任而馳奏方策也，廟堂之上，方稱之以能，而一道之內，已騷然而動矣。大臣之用人，不審如此，其何以爲國？初廷奎趨附允文之黨甚密，至是悉背之，允文輩既皆切齒，及按東臬，沈仲良、李宇謙等，皆以管下守令，厭爲其下，事廷奎倨甚，廷奎怒，因事斥去。

饑)이 해마다 들어 민심(民心)이 쉽게 요동(搖動)되니, 끝내 감히 민원(民怨)을 돌아보지 않고서 그 의논을 주장(主張)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서 송정규(宋廷奎)는 최석정(崔錫鼎)의 천거(薦舉)로 발탁되어 외람되게도 감사에 임명되어 균전(均田)의 임무를 맡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과연 번가(煩苛)한 이유로써 실패(失敗)를 당하였다. 무릇 백성은 더불어 시초(始初)를 계획할 수가 없는데, 또 더구나 말세(末世)의 인심(人心)이 사납고 악독하므로, 비록 관후(寬厚)하고 충서(忠恕)한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그 행정(行政)을 위임하더라도 오히려 그 원망이 없기를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송정규의 괴상하고 각박한 성품으로써 그로 하여금 제 뜻대로 오로지 행하도록 하였으니, 어찌 그 백성을 요란(搖亂)하게 하고 그 일을 망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송정규는 본시 잔인(殘忍)하고 각박한 행실로써 사람들의 지목(指目)을 받았으며, 저 대신(大臣)이라는 자도 또한 어찌 그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였겠는가? 다만 그 성품이 변경(變更)하는 것을 좋아한 까닭으로 송정규의 개량(改量)하자는 의논이 한 번 들어오게 되자, 즉시 함께 합심(合心)하게 되었고, 그가 부임(赴任)하여서 그 방책(方策)을 치주(馳奏)할 적에는 묘당(廟堂)의 위에서 한창 일을 잘한다는 것으로써 칭찬하고 있는데도, 한 도(道)의 안에서는 벌써 소연(騷然)하게 동요(動搖)되었다. 대신(大臣)이 사람을 등용(登用)할 적에 살피지 못한 것이 이와 같으니, 그가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처음에 송정규는 이윤문(李允文)의 당(黨)에 추부(趨附)하여 매우 밀접하더니, 이때에 이르러서는 모두 배반하였다. 이윤문의 무리가 이미 모두 분개하여 이를 갈고 있었는데, 강원도의 감사(監司)가 되자, 심중량(沈仲良)과 이우겸(李宇謙) 등이 모두 관하(管下)의 수령(守令)으로서 그의 하관(下官)이 된 것을 싫어하여 송정규를 섬기기를 매우 거만하게 하니, 송정규가 분노하여 사건(事件)으로 인하여 척거(斥去)하였다. 심중량 등이 더욱 분노를 품고서 마침내 이윤문을 사주(使嗾)하여 송정규를 제거시켰다. 이윤문의 탄핵(彈劾)이 비록 사감(私憾)

仲良等益含憤，遂嗾允文而去之。允文之彈，雖出私憾，而廷奎之敗，人皆快之。”】

<p>숙종 46권, 34년 (1708 무자 / 청 강희 (康熙) 47년) 12월 27 일(기사) 1번째기사</p>	<p>에서 나왔지마는, 송정규의 실패는 사람들이 모두 시원하게 여기었다.”</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니, 최석정(崔錫鼎)이 진언(進言)하기를,</p> <p>“황주(黃州)의 극성(棘成)이 앞으로는 마땅히 역사(役事)를 시작해야만 하는데 병사(兵使) 민함(閔涵)은 나이가 많아 쇠약(衰弱)한데다 또 병들었으니, 잠정적으로 개차(改差)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려보내어 역사를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이인엽(李寅燁)이 진언(進言)하기를,</p> <p>“근래에 재이(災異)가 거듭 겹쳐지고 괴상한 운기(雲氣)가 해와 달[兩曜]에 나타났으며, 국세(國勢)와 인심(人心)이 한 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이 만약 송(宋)나라에 복을 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오직 인재(人才)를 수용(收用)하는 것은 정사(政事)에 급무(急務)가 되는데, 외람되게도 신과 같이 조감(藻鑑)14600) 이 없는 자로써 전선(銓選)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설령 초야(草野)에 유일(遺逸)한 현인(賢人)이 있고 하관[下僚]에 침굴(沈屈)한 재능이 있더라도 어찌 알아서 이들을 천거(薦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순포(純褒)할 수령(守令)을 초계(抄啓)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조상우(趙相愚)·이익수(李益壽)가 초계(抄啓)한 사람을 뽑아서 여러 차례 상확(商確)하였으나, 끝내 내심(內心)이 성실하여 외표(外表)를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쌓은 공효(功效)가 우이(優異)하여 옛날의 순량(循良)14601) 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재(人才)는 다른 시대에서 빌릴 수가 없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서로 취사(取舍)를 의논하여 차례대로 조용(調用)한다면 마땅히 실효(實効)가 있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의 뜻을 물었다. 최석정(崔錫鼎)은 말하기를,</p> <p>“지난해에 황해도 어사(黃海道御史) 박만정(朴萬鼎)이 서계(書啓)하기를, ‘연안 부사(延安府使) 이관주(李觀周)는 청정(淸靜)하여 아무 일을 하지</p>	<p>已已/引見大臣、備局諸臣。 崔錫鼎進曰：“黃州棘城來頭當始役，而兵使閔涵，年衰且病，姑宜改差，擇送他人，使之董役。” 上可之。 李寅燁進曰：“近來災異疊荐，謫見兩曜，國勢人心，無一可恃。 天若祚宋則已，不然則無可爲矣。 目今惟人才之收用，政爲急務，而猥以如臣無藻鑑者，畀以銓任。 設或草野有遺逸之賢， 下僚有沈屈之才，何能知而舉之乎？ 頃有純褒守令抄啓之命， 而取趙相愚、李益壽所抄者，累次商確，終未見有惻惻無華，積效優異，無讓於古之循良者焉。 然而才不借於異代，令廟堂，相議取舍，循次調用， 則似當有實效矣。” 上問大臣之意。 錫鼎曰：“頃年黃海道御史朴萬鼎書啓以爲：‘延安府使李觀周，淸靜無爲，闔境晏然，終年民不見吏。’ 如此之人，便與古所謂循良者無異矣。 卽今亦豈無惻惻無華之人，而其爲吏不要赫赫之譽，故罕入於褒啓中矣。 須別爲聞見，另加選用，而方伯及御史所褒啓之類，亦令十分精抄。 且州郡抄之不行，已過十年。 今若精抄，則循良</p>
---	---	--

않아도 경내(境內)가 편안하여 한 해를 마치도록 백성이 관리(官吏)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문득 옛날에 이른바 순량(循良)이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또한 어찌 내심(內心)이 성실하고 외표(外表)를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사람이 없으리요마는, 그들이 관리(官吏) 일을 하면서赫赫(赫赫)한 명예(聲譽)를 요구하지 않은 까닭으로 포계(褒啓)하는 속에 들어가기가 드뭅니다. 모름지기 별도로 듣고 본 것을 특별히 선용(選用)을 가하며, 감사[方伯]와 어사(御史)가 포계한 등류(等類)도 또한 십분 정초(精抄)하도록 하고, 또 주군(州郡)에서 가리는 것도 행하지 않은 지가 벌써 10년을 지났습니다. 지금 만약 정초(精抄)하도록 한다면 순량(循良)한 관리가 마땅히 그 속에 들어갈 것이니, 일체로 거행(舉行)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상우(趙相愚)는 말하기를,
“대저 과거(科擧)를 설치하여 인재(人才)를 뽑는 것은 진실로 장차 쓰려는 것인데, 출신(出身)하는 수효는 많고 거의(擧擬)하는 자리도 적어서 혹은 촌록(寸祿)14602) 도 받지 못하고서 시골[鄉曲]에서 늙어 죽는 자도 있으며, 혹은 10여 년을 벼슬길을 구하여 서울[京洛]에 오래 머물고 있다가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홍패(紅牌)14603) 를 짊어지고 빌어먹다가 얼어 죽는 자도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넉넉히 화기(和氣)를 감상(感傷)할 만한 일이며, 국가(國家)에서 사람을 등용(登用)하는 도리(道理)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서 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 도(道)의 교양관(教養官)을 비록 일찍이 혁파(革罷)하였더라도 이제 만약 다시 설치하여 문신(文臣)의 포굴(抱屈)14604) 한 사람으로써 나누어 임명한다면, 거의 가난하고 배 고피는 사람에게 접제(接濟)14605) 할 수 있을 것이니, 또한 인재(人才)를 성취(成就)하는 도리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인엽은 말하기를,
“이 무리에게는 인재(人才)를 교양(教養)할 만한 자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之吏，當入其中，一體舉行，似宜矣。”上從之。趙相愚曰：“夫設科取人，固將用之，而出身之數多，舉擬之寡少，或有未沾寸祿，而老死于鄉曲者，或有十餘年以求仕，淹滯于京洛，而不勝飢寒，負紅牌行乞而僵死者。此誠足以感傷和氣，而國家用人之道，亦不當如是矣。諸道教養官，雖嘗罷革，而今若復設，以文臣之抱屈者分差，則庶可以接濟窮餓之人，而亦不無成就人才之道矣。”寅燁曰：“此輩絕無可以教養人才者矣。”上曰：“教養官分差事，有區處之意，而無擇人之實矣。”議遂止。閔鎮遠曰：“摠戎廳屯軍，自釐正廳，使之抄送成冊，將爲移定他役，其代則以軍門餘軍劃給矣。其後摠戎使金重器論報以爲：‘本廳凋弊，屯田亦未免弊棄’云。還給其屯軍何如？”錫鼎亦以爲言，上從之。正言具萬理啓曰：“日昨李允文之論劾宋廷奎也，一則曰，有一象胥，貸出過百貨，而未卽償，大小家資，竝被攫去，卒使負債之人，有雉經之舉；一則曰，其在濟州時，搜括珍奇，諂事要津；一則曰，人蔘封進之際，初不稱量，竝歸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교양관(敎養官)을 나누어 임명하는 일은 변통하여 처리하는 뜻은 있으나, 사람을 선택(選擇)하는 실상(實狀)은 없다.”
 하여, 의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민진원(閔鎭遠)은 말하기를,
 “총융청(摠戎廳)의 둔군(屯軍)을 이정청(釐正廳)에서 뽑아 보내어 책자(冊子)를 만들도록 하여 장차 다른 역사에 옮겨서 정하고, 그 대신으로는 군문(軍門)의 남은 군사로써 획급(劃給)하소서.”
 하였다. 그 뒤에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가 논보(論報)하기를,
 “본청(本廳)이 조폐(凋弊)하므로 둔전(屯田)도 또한 폐기(弊棄)됨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니 그 둔군(屯軍)을 환급(還給)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최석정(崔錫鼎)도 또한 말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언(正言) 구만리(具萬理)가 아뢰기를,
 “일전에 이윤문(李允文)이 송정규(宋廷奎)를 논핵(論劾)할 적에, ‘한 가지는 한 명의 통역관(通譯官)에게 대출(貸出)한 것이 백화(百貨)가 넘었는데도 즉시 상환(償還)하지 못하니, 크고 작은 가자(家資)를 모두 움켜가고 마침내 빚진 사람으로 하여금 목을 매어 죽게[雉經]하는 일이 있었고, 한 가지는 그가 제주(濟州)에 있을 때에 진기한 물건을 찾아모아서 권세(權勢)가 있는 사람[要津]에게 아첨하여 섬긴 일이고, 한 가지는 「인삼(人蔘)을 봉진(封進)할 즈음에 처음에 저울로 달지 않고 모두 제주머니[私囊]에 돌려보냈는데 심약(審藥)과 삼상(蔘商)이 모두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한 것이고, 한 가지는 옷감[衣資]을 책출(責出)하는 것은 본시 전례(前例)가 없는데도 면주(綿紬)와 목화(木花)를 헐값으로 억지로 사들이고 유래(流來)한 전화(錢貨)는 준례(準例)를 어겨서 흠어주고서 흑독하게 이익(利益)을 취하고 초피(貂皮)를 무역(貿易)하여 기녀(妓女)를 즐겁게 하며 서울에서나 지방에서나 모두 물주(物主)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일이 있었다면 그 죄상(罪狀)을 논하여 다만

私囊，審藥、蔘商俱在，焉可誣也？一則曰，衣資責出，本無前例，而綿紬、木花，輕價勒買，流來錢貨，越例散給，刻取奇羨，貿貂悅妓，於京於外，皆有物主。果有是事，則論其罪狀，不但罷職不敘而止，或非實狀，則置之黜黜之科，不可無辨暴之舉。請拿問覈處。” 上曰：“依啓。”

	<p>과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않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혹시 실상(實狀)이 아니면 암담(黯黮)14606) 한 죄과(罪科)에 버려두고서 분변 폭로(暴露)하는 거조(舉措)가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핵처(覈處)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p> <p>하였다.</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1월 2일 (갑술) 1번째기사</p>	<p>양구(楊口)의 백토(白土) 파내는 역사를 재차 과(罷)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양구는 고을이 잔약하고 백성들이 가난하므로 사옹원(司饗院)에 명하여 다른 고을의 백토를 옮겨 오도록 했었는데, 사옹원에서 양구의 백토가 아니면 그릇이 몹시 거칠고 흙이 생기게 됨을 들어 아뢰면서 다시 가져다가 쓰기 청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었다가, 영(令)을 반포하기 전에 마침 양구 현감(楊口縣監) 이당(李當)이 차사원(差使員)이 되어 입대(入對)하여, 백토 파내는 역사를 과하면서부터 다행히 다른 폐단은 없다고 진달하자, 임금이 민폐(民弊)가 되어 온 것을 알아차리고서 다시 과하도록 명한 것이다.</p>	<p>朔甲戌/命更罷楊口掘土之役。 初以楊口， 邑殘民貧， 命司饗院， 移取他邑白土， 司饗院奏以非楊土， 則器甚苦窳， 請更取用， 上從之， 令未頒， 適楊口縣監李當， 以差員入對， 陳其自罷掘土之役， 幸無他弊， 上知爲民弊， 又命罷之。</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1월 15일(정해) 1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했다. 당초에 평안도 관찰사 권성(權暉)이 강가의 일곱 고을에서 과거(科擧)를 보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를 계청(啓請)하니, 예조(該曹)에서 중신(重臣)을 내보내 문재(文才)와 무재(武才)를 아울러 뽑는 일로 복계(覆啓)하고서 행회(行會)14617) 했었다. 이에 이르러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 “이는 온 도(道)에다 과거를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사체(事體)가 조금 가벼운 것이니, 제주(濟州)에서와 남한(南漢)에서의 전례대로 어사(御史)를 차임(差任)하여 보내되, 문재는 단지 약간의 인원만 뽑고 무재에 있어서는 직부(直赴)14618) 하게 하거나 혹은 급분(給分)14619)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청컨대 입시(入侍)한 제신들에게 물어보소서.”</p> <p>하고, 더러는 말하기를,</p>	<p>丁亥/引見大臣、備局諸臣。 初平安觀察使權暉， 啓請設科江邊七邑， 尉悅人心， 禮曹以遣重臣， 竝取文武事， 覆啓行會。 至是， 領議政崔錫鼎以爲：“此與通一道設科有異， 事體差輕， 依濟州、南漢例， 差遣御史， 文則只取若干人， 武， 直赴或給分似好， 請詢問入侍諸臣。” 或言：“文武俱設， 既無前例， 且關後弊， 只試武才爲宜。” 或言：“既已行會， 不可中改， 歸重武才， 文取數人無妨。” 上命差遣御史， 只取</p>

	<p>“문재와 무재를 한꺼번에 뽑는 일은 이미 전례가 없던 것이고, 또한 뒷날의 폐단과 관계가 있으니, 단지 무재 시험만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고, 더러는 말하기를,</p> <p>“이미 행회를 한 일이어서 중간에 변경할 수는 없으니, 무재에 중점을 두고 문재는 몇 사람만 뽑는 것이 무방합니다.”</p> <p>하자, 임금이 어사를 차임하여 내보내서 단지 무재만 뽑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단지 오일(五日) 개시(開市)만을 허급하였다가, 본도(本道)의 장계(狀啓)에 따라 그 뒤에 조시(朝市)를 보도록 하되 단지 어물과 채소의 교역(交易)만 허락하고 쌀의 교역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인(倭人)들이 말하기를,</p> <p>“저희들의 생활이 다만 개시 때의 미곡(米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진실로 지탱해 가기가 어려우며, 미곡의 교역도 허락해 줘는 또한 약조(約條)에 실려있는 일입니다.”</p> <p>하였다. 최석정이 제신들에게 물어보아 허급해 주기를 청하니, 판윤(判尹)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p> <p>“몇 되의 쌀은 여러 섬의 쌀과는 다른 것이니 진실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개시(開市)를 단지 이른 아침으로만 한정하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오가는 것을 금지하고, 따라서 본부(本府)에서 관원을 보내 세를 거두는 규정을 혁파한다면 피아(彼我)의 사람들이 남잡한 것을 하는 폐단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제신들이 모두 조태채의 말을 옳다고 여기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공조 참판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p> <p>“전하(殿下)께서 총명하시고 예지(叡智)하심이 옛적의 명철(明哲)한 임금에게 양보할 것이 없는데도, 국가의 일이 날로 그릇되어가고 재변(災變)이 겹치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까닭을 따져 보면 모두가 상하(上下)의 심정과 뜻이 막</p>	<p>武才。初，東萊倭館，只許五日開市，因本道狀啓，後設朝市，而只許魚菜，不許米升之交易，倭人以爲：“渠輩生理，只憑開市時米穀，若塞此路，實難支過，而竝許米升，亦載在約條。”錫鼎請詢問諸臣而許施之，判尹趙泰采言：“米升異於石斛，固不可禁。每日開市，只限早朝，而晚後則禁其往來，仍罷本府遣吏收稅之規，可無彼我人濫雜之弊。”諸臣皆以泰采言爲是，上從之。工曹參判閔鎭遠曰：“殿下聰明睿智，無讓於古先哲辟，而國事日非，災咎荐疊，究厥所以，都是上下情志否塞之致耳。殿下之引接臣僚，不過曰備局次對、法筵開講、各司官輪對、辭朝監·兵使引見，而次對所稟，只是簿書之末，法筵惟訓誥數語是討，輪對官堇能記其所掌，監、兵使，則每以到任後隨事馳啓爲言，殿下亦未嘗親出玉聲，與之反復。如是而止，則雖日三接，亦何益乎？自古賢君之爲國，皆以立志爲本，故行王行霸，惟其志。今殿下臨御四十年，王霸兩道，無一可論，此實坐無立志。臣竊望大奮發大振作。聖心如有所思，而疏啓有可底</p>
--	---	---

혀버린 소치입니다. 전하께서 신료(臣僚)들을 인접(引接)하시는 때가 비국(備局)의 차대(次對)14620) 와 경연(經筵)의 진강(進講)과 각사(各司) 관원의 윤대(輪對)·사조(辭朝)와 감사(監司)·병사(兵使)를 인견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차대 때에 품하는 것은 단지 부서(簿書)에 관한 말단인 것이고, 경연에서는 오직 훈고(訓誥)에 관한 몇 마디 어구를 토론하는 것이고, 윤대에 나온 관원들은 겨우 그가 관장(管掌)하고 있는 것에 관해 기록하는 것이고, 감사나 병사는 매양 부임한 다음에 일에 따라 치계(馳啓)하겠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전하께서는 또한 일찍이 친히 옥성(玉聲)을 내시어 이들과 함께 반복해 보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만다면 비록 하루에 여러 번 접견한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적부터 현명한 임금의 나라 일을 할 적에 모두가 뜻 세우기를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왕도(王道)를 시행하거나 패도(霸道)를 시행하거나 오직 그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지 40년이 되었는에도 왕도나 패도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도 논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뜻을 세운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臣)이 그욕이 바라건대 크게 분발하고 크게 진작(振作)하시어, 혹시라도 성상께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계시거나 상소나 계사(啓辭) 내용에 시행해 볼 만한 말이 있게 된다면, 큰 일에 있어서는 바로 대신들을 불러 의논하시고 작은 일에 있어서는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이나 혹은 승지를 불러 의논하시어 곧바로 즉시 거행하고, 더러는 옛글과 선조(先朝)의 일기(日記)를 열람하시다가도 오늘날에 합당한 사항이 있게 되면 즉시 근신(近臣)을 불러 묘당(廟堂)에 가지고 가서 의논해 보아 거행하도록 하고, 대소의 조신(朝臣)들이 더러는 시골에서 돌아왔거나 더러는 외방(外方)의 소임에 있다가 조정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게 되면 민간의 사정과 열읍(列邑)의 병폐를 물어 보시되,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이 있으면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거행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주장(晝講) 때에는 경전(經傳)의 세밀하고 오묘한 뜻을

行者, 大事卽召大臣議之, 小事召備局堂上或承旨議之, 劃卽舉行, 或披覽古書及先朝日記, 事有合於今者, 卽召近臣, 使就議廟堂而行之, 大小朝臣, 或自鄉或以外任還朝者, 召問民間事及列邑之弊, 宜有變通者, 卽令廟堂, 稟旨舉行。晝講則務以經傳微奧之旨, 反復問難, 輪對則必問各司官所居鄉邑, 俾達邑弊民瘼, 竝及其監司、守令之賢否, 又命備局及六曹堂上, 時時持未回啓文書, 入奏而決之, 六房承旨, 亦令逐日持公事入侍, 不拘體貌, 無時燕見於寢室, 如家人父子之爲, 則上下情志流通, 而廷臣之賢愚邪正, 亦莫逃於聽言觀貌之際, 弭災應天之道, 亦不外此。” 上嘉納之。 鎮遠又奏: “無論職秩高下, 閑散軍職、軍門將校, 自外來者, 必以沿路所聞見, 農形、市價、盜賊、災異之有無, 及窮民之抱冤者, 京差之作弊者, 守令之貪虐者, 作爲單子而條列之, 呈于備局, 備局取考慮實, 如有異聞, 必上聞之, 且自上時或招見, 親自詢問, 則遐遠民情, 庶無壅闕矣。” 上曰: “朝家處事, 自有大體, 不可若是瑣屑。 且末世人心澆薄, 呈

반복해서 묻고 논란하길 힘쓰시고, 윤대할 때에는 반드시 각사(各司) 관원들의 살고 있는 고을을 물어 보아 그 고을의 병폐와 민간의 폐해 및 감사(監司)·수령(守令)의 현명 여부를 진달하도록 하시고, 또 비국 및 육조(六曹)의 당상들에게 수시로 회계(回啓)하지 못한 문서를 가지고 와 입주(入奏)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육방(六房)의 승지들에게도 또한 날마다 공사(公事)를 가지고 와 입시(入侍)하여 체모(體貌)에 구애하지 말고 언제나 침실(寢室)에서 연현(燕見)할 수 있게 하기를 한 가정의 부자간처럼 하게 한다면, 상하의 심정과 뜻이 잘 유통되고 조정 신하들의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과 간사하고 올바른 것도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용모를 관찰하는 동안에 가리울 수 없게 될 것이고, 재변을 해소해 가고 하늘에 응답하는 도리도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민진원이 또 아뢰기를,
 “관직의 고하를 논할 것 없이 한산 군직(閑散軍職)이나 군문(軍門)의 장교(將校)로 외방(外方)에서 올라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로(沿路)에서 듣거나 본 농사 형편과 시장 물가, 도둑과 천재 이변의 유무 및 빈궁한 민간의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 서울에서 보낸 차관(差官)의 폐단 부리는 자, 수령(守令) 중에 탐오(貪汚)하고 잔학(殘虐)한 자들을 단자(單子)에다 조목조목 열거하여 비국(備局)에 정상(呈上)하게 하고, 비국에서 허실(虛實)을 고찰해 보되 혹시라도 특이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위에 계문(啓聞)하고, 또한 때로는 정상계서도 불러 보고 친히 스스로 하문(下問)해 보신다면, 먼 외방의 민간 실정이 거의 막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가(朝家)의 일 처벌해 가는 방법은 본래부터 대체(大體)가 있는 것이어서 이처럼 자질구레하게 할 수는 없다. 또한 말세(末世)라 인심이 야박해져, 정단(呈單)하게 하는 것이나 초문(招問)하거나 하는 일은 반드시 뒷 폐단이 있

單招問等事，必有後弊。上段所達輪對官等事，亦然，至於備局事，亦有緩急，不必一一卽爲舉行。” 鎮遠謝，又奏：“君臣猶父子也，父子間何言可諱乎？王世子春秋鼎盛，而尙無元孫誕降之慶。自上深軫宗社之憂，俾盡救嗣之方，又於引接臣僚之際，使出坐御床側，參聞機務，燕侍之時，亦問以政令得失，使明習國事，則進益必多矣。” 上答以竝當留念。又奏：“兩王子之於王世子，必須致嚴於名分，而亦令源源陪侍，使尊卑隆殺之節截，天顯友愛之情篤，實殿下齊家之一大法也。” 上曰：“此言亦好矣。” 又奏：“伏聞去冬闕內調馬時，一王子見內乘、別軍職、宣傳等飢餒之狀，備酒饌以餉，武士輩皆醉飽矜誇云。見人飢寒，推其惻隱之心，思有以濟之，此誠仁之端也。豈不美哉？第王子之私，施惠於朝臣，事理甚不當。王子方在沖年，雖不及深思，而次知、宦侍輩，不能諫止，誠可惜也。伏望申飭宦侍，使知此意。” 上良久曰：“唯。” 司諫李觀命，論故判敦寧府事權是經在世，爲其無子，取族人子爲子，未幾而死，則取諸孫行，

게 될 것이다. 앞 조항에 진달한 윤대관(輪對官) 등의 일도 또한 그렇고, 비국에 있어서의 일도 또한 완급(緩急)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일이 즉시 거행할 수는 없다.”

하였다. 민진원이 진사(陳謝)하고, 또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아비와 아들의 사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자 사이에 무슨 말인들 은휘(隱諱)할 수 있겠습니까? 왕세자(王世子)께서 춘추(春秋)가 한창인데도 아직 원손(元孫)이 탄생하는 경사가 없으므로, 성상께서 깊이 종사(宗社)에 관한 근심을 진념(軫念)하시어 구사(求嗣)하는 방도를 다하도록 하였고, 또 신료(臣僚)들을 접견(接見)하실 적이면 어榻(御榻)의 측근에 나와 앉아서 기무(機務)를 참여하여 듣도록 하셨으니, 한가로이 모시게 될 적에도 또한 정령(政令)에 있어서는 잘잘못을 물어 보시어 분명하게 국가의 일들을 익히도록 하신다면 진보하여 유익하게 되는 바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마땅히 모두를 유념(留念)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두 왕자(王子)가 왕세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명분(名分)에 엄격해지도록 하되, 또한 끊임없이 배시(陪侍)하도록 하여, 존비(尊卑)에 관한 높고 낮은 예절이 절연(截然)해지고, 하늘에서 받은 우애의 정이 돈독해지게 하는 것이 진실로 전하께서 제가(齊家)를 해 가는 하나의 큰 법도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이야기도 또한 좋은 말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지난 겨울에 대궐 안에서 조마(調馬)14621 할 때에 한 왕자가 내승(內乘)·별군직(別軍職)·선전관(宣傳官) 등이 굶주리는 상황을 보고서 술과 음식을 마련해서 먹이므로 무사(武士)들이 모두 취하고 배가 부르게 먹고서

以爲繼後，而又取繼子(第)，爲第二養子，喪出之後，繼孫及養子，皆服衰麻，倫常之乖悖，莫此爲甚。請令禮官，稟旨釐正，以正風化，上令該曹稟處。

	<p>자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리고 추워하는 것을 보고서 그 측은(惻隱)하게 여기는 마음을 미루어 도와 주려고 생각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인(仁)의 발단(發端)인 것입니다.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왕자가 조신(朝臣)에게 사사로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리에 매우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왕자가 바야흐로 어린 나이이므로 비록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차지(次知)·환시(宦寺)들이 간(諫)하여 만류하지 못했음은 진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환시들을 거듭 신칙하여 이런 뜻을 알아차리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한참 있다가 ‘알았다.’ 하였다. 사간 이관명(李觀命)이 논계(論啓)하기를,</p> <p>“고(故)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권시경(權是經)이 생존했을 때에 아들이 없으므로 동족(同族)인 사람의 아들로 양자(養子)를 삼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죽으니, 손자 향렬의 사람으로 계후(繼後)를 삼고서 또한 계후가 된 사람의 아우를 제2의 양자를 삼았는데, 초상이 난 뒤에 계후한 소자와 양자가 다같이 최복(衰服)을 입었으니, 윤리(倫理)에 어긋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시정하여 풍화(風化)를 바로잡게 하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康熙) 48년) 1월 28일(경자) 3번째기사</p>	<p>왜인(倭人)들이 대차왜(大差倭)와 재판왜 차왜(裁判倭差倭) 등에게 공급하는 것 중에 숙마(熟麻)·산마(山麻)·초석(草席)·철정(鐵釘)·범죽(帆竹) 등의 물건을 감하기를 허락하고, 또 재판 차왜에 요(料)로 주는 콩 50석을 감하게 되었다. 훈별배(訓別輩)가 차왜가 겹치어 오므로 소비가 호번(浩繁)하다는 뜻으로 재판 차왜에게 말을 하고, 차왜가 대마도(對馬島)에다 말을 하여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p>	<p>倭人許減大差倭及裁判倭、差倭等供給中，熟麻、山麻、草席、鐵釘、帆竹等物，又減裁判、差倭料豆五十石。訓別輩以差倭疊到，所費浩繁之意，言于裁判差倭，差倭通于島中而有是矣。</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p>	<p>양주(楊州) 유생(儒生) 최유태(崔有泰)가 팔도(八道)에 통문(通文)하기를, “천지 사이의 지극히 사특한 기운이 왕안석(王安石)의 신경(新經)에 의탁하여</p>	<p>楊州儒生崔有泰通文八路曰：天地間至邪之氣，托於安石之新經，流</p>

(康熙) 48년) 2월 21
일(계해) 2번째기사

사해(四海)에 독이 퍼지다가, 그 여파가 동방(東方)에 흘러와 난적(亂賊) 윤후(尹鑄)가 뒤이어 일어나 장구(章句)를 변란(變亂)하게 되었었고, 끝에는 그만 창궐(猖獗)하게 되어 서계(西溪)란 노부(老夫)가 다시 전철(前轍)을 밟게 되어 《사변록》 하나가 크게 우리의 사도(斯道)를 어지럽히게 되었는데, 다행히 높이 드러난 요경(堯鏡)14674) 을 힘입어, 간사한 귀역(鬼賊)이 도피할 수 없게 되었었다. 그러나 오히려 징토(懲討)가 엄중하지 않아 남아 있는 뿌리가 퍼지게 되었다.

요사이에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경전(經傳)을 무너뜨리려는 뜻을 가지고 마음으로 성현을 업신여기는 데 달갑게 여기며 《예기유편(禮記類編)》을 지어냈는데, 그 서문(序文)에 ‘탈루 착란(脫漏錯亂)된 것을 바로잡아 문리(文理)에 따라 순탄하게 했을 뿐이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백세토록 기다리더라도 의혹스러울 것이 없다.’고 해 놓았다. 기세(氣勢)에 눌리게 되므로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해독(害毒)을 입게 됨이 어찌 단지 천리(千里)에 피를 흘리는 데 그칠 뿐이겠는가? 또한 그 부록(附錄) 가운데 말한 바 가제(家弟)니 아자(兒子)니 족질(族姪)이니 문생(門生)이니 한 말들은 더욱 매우 해괴(駭怪)하고 패려(悖戾)한 것이다. 이는 무슨 최석정의 가문에 예(禮)를 아는 사람이 이처럼 많은 것인가?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장보(章甫)들의 거사(舉事)에 있어서는 진실로 온 이 나라의 공론(公論)으로 하는 일인데, 제생(諸生)들을 유인(誘引)하여 쫓아내고 반궁(泮宮)의 복예(僕隸)들을 억류해 놓는 것이 조태억(趙泰億)에게서 나왔고, 일에 앞서 고알(告訐)하여 천충(天衷)을 격뇌(激惱)하게 하는 상소가 이사상(李師尙)에게서 저질러졌고, 임금의 뜻에 영합(迎合)하고 대신에게 아첨하는 의논이 윤회(尹會)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는 이른바 ‘임금의 좌우에 상국(相國)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저 조태억은 평소에 기세 부리는 것이 방자하고 망령된 사람으로, 지난해에

毒四海，餘波東注，鏞賊繼起，變亂章句，末乃猖獗，西溪老夫，復踵前軌，《思辨一錄》，大紊吾道，幸賴堯鏡之高懸，莫逃鬼賊之回互，然猶懲討不嚴，遺根滋蔓。近者領議政崔錫鼎，志在毀經，心甘侮賢，撰出《禮紀類編》，其序曰：“正其脫亂，從順文理而已。”又曰：“俟百世而不惑。”氣勢所壓，人莫敢誰何，其所爲害，奚但流血千里而止哉？且其附錄中所謂家弟、兒子、族姪、門生之稱，尤極駭悖。是何錫鼎之門，知禮者多也？至於館學、章甫之舉，實是一國之公議，而誘逐諸生，縛留泮隸之舉，出於泰億，先事訐告，激惱天衷之疏，出於師尙，迎合上意，獻媚大臣之論，出於尹會。此所謂王左右，無非相國之人也。彼泰億平生使氣，縱恣妄悖，頃年庠製，以三木關青衿，變學宮爲畫地，儒疏將上，陳章迎擊，今又移其習於爲大臣立功之地。惜乎！名門有此鄙夫也。師尙行己不正，作事陰秘，大行王妃賓天之日，適滯湖西，赴哭客館，嚼肉斟酒，貌衷心悅，鄉儒目覩，指以無母。尹會以訟牛者爲祖，反師

반궁(泮宮)의 제술(製述) 시험 때에 삼목(三木)14675) 으로 청금(淸衿)14676) 들을 막고서 학궁(學宮)을 변하여 획지(劃地)14677) 를 만들다가, 유생(儒生) 들의 상소가 장차 올라오게 되자, 소장(疏章)을 진달(陳達)하여 앞질러 공격하는 짓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한 그런 습성을 옮겨 대신을 위해 공을 세우는 소지(素地)를 만들고 있다. 애석하도다. 명문가(名門家)에 이런 비루한 지아비가 있다니. 이사상은 행신이 올바르지 못하고 하는 일이 음흉하고 숨기는 사람이라 대행 왕비(大行王妃)께서 승하(昇遐)하시던 날 마침 호서(湖西)에 체류(滯留)하고 있었는데, 객관(客館)으로 달려가 곡(哭)해야 할 것이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외모로만 슬퍼하는 양하고 속 마음은 기뻐하므로, 향유(鄕儒)들이 이를 보며 국모(國母)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탄(指彈)했었다. 윤희는 소를 가지고 송사한 사람이 조부이고 스승을 배반한 사람이 아버지인 사람이다. 권세 있는 가문에 이처럼 붙어 살며 기회를 노렸다 손뼉을 치면서 거실(巨室)들의 앞잡이 노릇을 달갑게 여겼다. 다른 것으로도 온 세상이 침 뱉으며 비루하게 여기는 일은 말을 하기도 추한데 어떻게 꾸짖겠는가?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오늘날의 지나친 거조(舉措)는 진실로 이사상 등의 무리가 저지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만일 비답(批答)한 분부가 준엄하다 하여 망설이고 물러서서 마침내 한 마디도 진달하여 폭백(暴白)하지 않는다면, 3백 년 동안 원기(元氣)14678) 를 배양(培養)해 온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이제 원컨대 팔도의 다사(多士)들은 소리를 합쳐 대궐에 호소하여 사특한 부류가 경서(經書)를 무너뜨리고 성현을 업신여긴 죄를 성토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윤희(尹會)가 보고서 대각(臺閣)에 나아가 인피(引避)하기를, “이번에 최유태라는 사람이 유생이란 이름을 가장하고 성균관과 사학에 통문을 보내 대신을 모함하되, 한편으로는 바른대로 진달한 승선(承宣)과 아무 까닭이 없는 유신(儒臣)까지 언급했습니다. 신(臣)에 있어서는 더욱 한층 더하여

者爲父。 蝨附權門，乘機抵掌，甘爲巨室之鷹犬。 從他舉世之唾鄙，言之醜矣，何足責也？ 第伏念聖上今日過學， 宣由師尙輩之沮遏， 而若以批旨之嚴峻， 逡巡退步， 終無一言陳暴， 則三百年培養元氣之意， 果安在哉？ 今願與八路多士， 齊聲叫閤， 以討邪流毀經侮聖之罪。

會見之詣臺引避曰： “今有崔有泰者， 假托儒名， 通文館學， 捏誣大臣， 傍及直陳之承宣， 無故之儒臣， 至於臣， 轉加一層， 醜詆之言， 上及先故， 敢以舉世所不聞所不知之言， 鑿空創出， 僂辱備至。 蓋此等手段， 固有主張之人。 戶曹正郎金樛， 以邪毒之性， 挾文墨之技， 言貌佞詐， 蹤迹陰秘， 凡係朝論， 無不參涉， 出入主論之家， 作爲心腹， 鼓動唇吻。 加以近來逞憾於厥叔之被劾， 蓄憤於復科之見格， 益肆蛇蝎之性， 輒售嚙噬之計， 凡所以敲撼搢紳， 壞敗國事者， 靡不用極。 前後激成排軋之論者， 非止一二， 今又嗾其猶子， 首倡疏論， 出入泮村， 指揮謀計， 挾助儒生， 違拒君命。 今番攙入於草記者， 亦其代撰之疏也。 如此回互不正之人，

막된 옥을 하는 말이 위로 선대에까지 미치고, 감히 온 세상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터무니 없이 만들어 내어 가지가지 모욕을 했습니다.

대개 이러한 수단은 본디 주장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조 정랑(戶曹正郎) 김유(金樛)는 간사하고 악독한 성질에다 문묵(文墨)의 재주를 낀 사람으로서, 아침 잘하는 말과 간사한 용모에다 행적이 음흉하고 숨기어 무릇 조정 공론의 관계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없고, 의논을 주장하는 사람의 집에 드나들며 심복(心腹)이 되어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사이의 그의 숙부(叔父)가 탄핵받은 것 때문에 감정 풀이를 하고, 복과(復科)가 저지받은 것 때문에 분을 품고서 더욱 독사(毒蛇) 같은 성질을 베풀어 문묵 물어뜯을 계획을 하되, 무릇 진신(摠紳) 들을 공격하여 흔들어대고 국가 일을 파괴하여 망치기를 극도로 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전후에 배격하고 알력하는 의논을 격동시켜 만들어낸 것이 한두 가지만이 아닌데, 이번에는 또 그의 유자(猶子)14679) 를 조종하여 앞장서서 상소하자는 논을 주창하게 해 놓고 반촌(泮村)에 드나들며 계책을 지휘하고 유생들을 협조(挾助)하여 임금의 명을 거역하게 한 것인데, 이번에 초기(草記)에다 들이민 상소도 또한 그가 대신 지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사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하루도 서울에 머물러 두어 국가를 어지럽게 할 수 없기에, 신(臣)이 장차 투비(投畀)14680) 하기를 계청(啓請)하려고 했었는데, 미처 계사(啓辭)를 올리기 전에 그가 그만 도리어 일에 앞서 공격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최유태는 또한 단 사람이 아니고 곧 김유와 같은 고을의 친근하고 허물 없는 사이고 보면, 그 통문(通文)을 지어 주었을 실상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아! 태학(太學)은 예의와 겸양(謙讓)을 근본으로 삼는 곳인데, 김재로(金在魯)가 방자하게 기망(欺罔)하는 짓을 하여 임금의 명령을 이기려고 한 것도 이미 세상 도의의 커다란 변고입니다. 이병정(李秉鼎)은 이택(李澤)의 질자(姪子)로서 사사로운 원한을 끼고서 수상(首相)을 모함하는 짓을 하고, 【이택이

不可一日留置於京輦，以亂國家，故臣將欲請投畀，啓未及發，渠乃反爲先事狙擊之計。所謂有泰，又非別人，乃是樛同鄉親昵之間，則製給通文之狀，灼然可知也。噫！太學以禮讓爲本，而在魯肆然欺罔，角勝君命，已是世道之大變，而秉鼎以李澤之姪子，挾其私怨，構捏首相，【澤嘗以記注事與錫鼎互相疏辨。】而又復冒恥喪廉，汲汲新薦。遠度以亂家之子，猥忝親薦，冒沒入齋，偃然薦望，差出同任。人之無恥，胡至於此？臣竊痛惋也。”後數日，處置請出，趙泰億亦陳疏自辨。

【史臣曰：“時，泰億出入榮顯，嗜利無恥之徒，皆附之，聽其潛嗾，構捏朝紳，人皆側目，而恐爲中傷，莫敢發。由是益恣肆無忌，其在上前，輒飾辭而銜能，獻媚而自固。至是，自言：“嘗論罪三臣，以此得罪時議，爲人所陷。”上以爲然，每陳疏，輒以優批答之。是時，錫鼎食河豚幾死，南九萬聞而笑曰：“可撰之書非一，何必《禮編》，可食之物甚多，何必河豚？”此雖似戲劇，而實則不滿於《類編》也。”】

	<p>일찍이 기주(記注)에 관한 일로 최석정(崔錫鼎)과 서로 상소하여 변명했다.】 또 다시 수치(羞恥)를 무릅쓰고 염치가 없이 급급하게 신천(新薦)을 받았었습니다. 홍원도(洪遠度)는 난가(亂家)의 아들로써 외람되게도 신천(新薦)을 받아 염치없이 입재(入齋)하였고, 버젓이 천망(薦望)을 받아 이 소임에 차출(差出)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염치가 없는 것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신은 그욕이 통탄스럽게 여깁니다.”</p> <p>하였다. 며칠 뒤에 처치(處置)하여 출사(出仕)하게 하기를 청하고, 조태역도 또한 상소를 진달하여 자신을 변명했다.</p> <p>사신(史臣)은 말한다. “이때 조태역이 영현(榮顯)한 관직에 드나들자 이익(利益)을 즐기는 염치없는 무리들이 모두 따라 붙어서 그의 은밀한 사주(使噓)를 듣고 조정의 진신(摠紳)들을 모함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결눈질하면서도 중상(中傷)받게 될까 두려워서 감히 말을 하지 못했었다. 이로 말미암아 더욱 방자해지고 기탄함이 없이 임금의 탐전(榻前)에서도 문득 언사를 꾸며 능력을 자랑하며 아첨하는 말을 하여 스스로 굳히었다. 이에 이르러 스스로 말하기를, ‘일찍이 세 신하를 논죄(論罪)하다가 이 때문에 시의(時議)에 죄를 얻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모함받게 되었다.’고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겨서 소를 진달할 적마다 으레 우악(優渥)하게 비답했었다. 이때에 최석정(崔錫鼎)이 하돈(河豚)14681)을 먹고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남구만(南九萬)이 듣고서 비웃기를, ‘저술할 만한 글이 한 가지만이 아닌데 하필이면 《예기유편(禮記類編)》이고, 먹을 만한 물건이 매우 많은데 하필이면 하돈이나?’고 했었다. 이는 비록 농담한 것 같으면서도 실지로는 《예기유편》을 불만스럽게 여긴 것이다.”</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3월 25</p>	<p>사헌부에서 논계(論啓)하기를, “별감(別監) 송정희(宋鼎熙)라는 사람이 6, 7명의 불량한 젊은 사람들과 창녀(娼女)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며 거문고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p>	<p>憲府論: “別監宋鼎熙爲名者, 與惡少六七人, 會飲娼家, 而琴歌嗚咽, 酒肉狼藉, 本府禁吏, 登時執捉, 則毆打所</p>

<p>일(병신) 2번째기사</p>	<p>고, 술과 고기가 낭자(娘藉)하므로, 본부(本府)의 금리(禁吏)가 그때를 타 잡으려고 하자, 소유(所由)14690) 를 구타했고, 징계하여 다스리려고 하자 피하여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미한 일이지는 하지만 기강(紀綱)에 관계가 있는 일이니, 잡아 가두고 죄를 과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由，欲爲懲治，則隱避不見。事雖微細，關係紀綱，請囚禁科罪。”從之。</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5월 5일 (을해) 2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했다. 판윤(判尹) 유득일(兪得一)이 아뢰기를, “도성(都城) 안팎에서 땅을 개간(開墾)하는 것은 일찍부터 금령(禁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곳저곳에서 함부로 경작(耕作)하고 있고, 궁성(宮城)이 지척(咫尺)인 땅이나 현관(賢關)이 밀접한 곳도 또한 기간(起墾)한 데가 많아 문득 전야(田野)와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듣건대 흥덕동(興德洞)에는 무논이 거의 5, 6석(石)을 낙종(落種)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니, 마땅히 일체 아울러 금단해야 하겠습니까. 다만 목화(木花) 밭은 벼나 기장을 심은 데와는 차이가 있으니 이는 아직 금단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모두 송금(松禁)에 관한 율(律)대로 장(杖) 1백과 도(徒) 3년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장 1백’을 일정한 규정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집의 남상하(南相夏)가 논계(論啓)하기를, “부사과(副司果) 이윤문(李允文)은 언책(言責)14695) 을 빙자하여 감히 음흉한 꾀를 부리려 한 것이, 송정규(宋廷奎)의 일을 포함한 상황에서 이미 모두 탄로(綻露)되었으니, 마땅히 부끄럽게 여기며 위축(萎縮)되어야 할 것인데, 외람되게도 군함(軍銜)을 써서 상소하여 다시 핵실(覈實)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고, 안옥(按獄)하는 신하들을 침범하고 욕하여 현저하게 험박하여 버티려는 뜻이 있었으니,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引見大臣、備局諸宰。判尹兪得一曰：“都城內外開墾土地，曾有禁令，而人不畏法，處處冒耕，宮城咫尺之地，賢關密邇之處，亦多起墾，便有田野氣象。又聞興德洞有水田，殆落種五六石云。當一併禁斷，而第木花田，與禾黍有間，此則姑令勿禁，其餘竝依松禁律，杖一百徒三年爲宜。”上命以杖一百定式。執義南相夏論：“副司果李允文憑藉言責，敢售陰計，宋廷奎事，構誣之狀，已盡綻露。所當愧縮，而猥以軍銜投疏，至請更覈，侵詆按獄之臣，顯有脅持之意。請削奪官爵。”上曰：“罷職不敘。”又以允文疏，率爾捧入，請推當該承旨，上從之。左議政徐宗泰言請推之過，相夏遂引避退出。相夏蓋以廷奎血黨，不顧嫌疑，徑發報復之論，入侍諸臣，無不駭笑。</p>

	<p>“과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라.”</p> <p>하였다. <남상하가> 또 이윤문의 상소를 경솔하게 받아들인 것을 들어 해당 승지를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추고하기를 청한 것은 과당한 일임을 말하니, 남상하가 드디어 인피(引避)하여 물러갔다. 남상하는 대개 손정규의 혈당(血黨)이면서 혐의(嫌疑)를 돌아보지 않고 앞질러 보복(報復)하는 논의를 하므로, 입시(入侍)한 제신(諸臣)들이 해괴하게 여겨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5월 16 일(병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관소(館所)에 거둥하여 연향(宴享)을 거행하였다.</p>	<p>丙戌/上幸館所，行宴享。</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6월 22 일(신유) 1번째기사</p>	<p>사간원에서 논계(論啓)하기를, “봉상시(奉常寺)는 제향에 쓰이는 것을 맡는 곳인데, 갖가지의 봉진(封進)하는 물건들을 간사한 이서(吏胥)의 무리들이 멋대로 옮겨버리고서 매양 제물을 봉진해야 할 때를 당해서는 공물 주인(貢物主人)들에게 독촉하므로 공물 주인들이 이미 그 해의 것을 준납(准納)한 뒤에도 해를 끌고 있는 폐해(弊害)를 면하지 못하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문서(文書)를 고찰하여 사징(查徵)하고 율(律)대로 죄를 과하게 하기 바랍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辛酉/諫院論：“太常係是祭享所需，各項封進之物，奸吏輩任自那移，每當祭物封進之時，督責貢物主人，主人等既已准納當年條之後，又未免引年之弊。請令有司，按簿查徵，依律科斷。”從之。</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7월 5일 (갑술) 2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진수(李震壽)가 창고에 남아있는 절반의 곡물(穀物)과 산성(山城)에 있는 군향(軍餉)을 적당하게 요량하여 분조(分糶)14733 하는 일을 이미 먼저 각 고을에 분부해 놓고, 이어 품처(稟處)하기를 장청(狀請)하였는데,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이는 비록 백성을 위하는 뜻에서 한 일이지는 하지만, 먼저 주어놓고 뒤에야 계품(啓稟)함은 일이 전도(顛倒)된 것이니, 청컨대 추고(推考)하소서.”</p>	<p>引見大臣、備局諸宰。全羅監司李震壽以折半留庫穀物及山城軍餉，量宜分糶事，先已分付列邑，而仍爲狀請稟處，左議政徐宗泰以爲：“此雖出爲民之意，而先給後稟，事涉顛倒，請推考。”上可之。仍下教曰：“大抵姑息之政多，故作事漸不如古。守令以姑</p>

<p>하니, 임금의 옳다고 하였다. 이어 하교(下敎)하기를, “대저 행정을 우선 편하게 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점점 그진만 못하게 된다. 수령(守令)도 우선 편한 대로 논보(論報)하고 감사(監司)도 우선 편한 대로 장청(狀請)하고서, 물리어 받는 짓을 하고 감해서 받는 짓을 하므로 국고(國庫)의 곡식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는 우선만 편하려고 하는 병폐가 아닐 수 없기에 내가 일찍이 개탄해 왔다.” 하니, 세종대가 또한 미처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은 즉시 정지하게 하기 청하자,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공조 참판 조태구(趙泰耆)가 많은 말을 하며 아뢰기를, “고 참판 조한영(曹漢英)이 경진년(1473)에 올린 상소 한 장은 늙연(凜然)하여 존주(尊周)14735) 하는 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연경(燕京)의 감옥에 있을 적에 위태로운 모욕을 두루 겪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역명(易名)14736) 하는 특전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세종대는 또 아뢰기를, “그의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시호(諡號)를 내릴 만합니다.” 하니, 증직(贈職)하고 시호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조태구가 또 고(故) 부윤(府尹) 황일호(黃一皓)가 참혹하게 화입은 상황을 진달하며 같이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제의 거동 때에 남별궁(南別宮)의 홍진문(紅箭門) 밖을 지날 적에 그가 원통하게 죽은 상황을 상상하자 마음에 매우 측은하였다. 허락한다.” 하였다. 세종대가 또 고 판서 박장원(朴長遠)의 명망 덕행 행신을 진달하며 특별히 의정(議政)을 증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사간 이이만(李頤晩)이 논계(論啓)하기를, “토호(土豪)들이 소민들에게 끼치는 폐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요(富饒)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자 놀이하느라 돈과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p>	<p>息而論報，監司以姑息而狀請，退捧減捧，國穀漸縮。此莫非姑息之病，予嘗慨然矣。”宗泰又請未及分給者，使即停止，上可之。工曹參判趙泰耆，盛言故參判曹漢英庚辰一疏，凜然有尊周之誠。三年燕獄，危辱備至，而終不屈服，宜有易名之典。宗泰又稱其節概文章，可合賜諡，命贈職贈諡。泰耆又陳故府尹黃一皓，被禍慘然之狀，請一體贈諡，上曰：“日昨舉動時，過南別宮紅門外，想其冤死之狀，心甚惻然也。其許之。”宗泰又陳故判書朴長遠，名德行檢，請特贈議政，上許之。司諫李頤晩論：“土豪之貽害小民，不可勝言。富饒者多積〔子〕〔財〕貨、錢穀，散給貧丐之類，以田土文券，爲其典當，及利息日滋，無以准償，以其所典當者，仍成買賣，奪其田土，且稍有氣勢者，誘聚游民，曲加庇護，脫免烟役，公然驅使，甚至屠牛販利，匿結逃賦。請申飭各道監司，摘發科治。”上從之。又論：“廚院副提調坡山都正杉，行己鄙陋，處事狂悖，視膳之際，舉措乖戾。且路遇大臣，不識回避，及其被呵，隨後哀乞，</p>
---	--

	<p>흩어 놓으며 전토(田土)의 문서를 전당(典當) 잡았다가, 이자가 날로 불어나 갚을 수 없게 되면 그 전당 잡은 것을 그대로 매매(買賣)한 것으로 만들어 그의 전토를 빼앗아버리고, 또한 조금 세력이 있는 사람은 유민(遊民)들을 유혹하여 모아 이모저모로 비호(庇護)해 주며 연호(烟戶)의 부역을 포탈하여 면하게 해 놓고서 공공연히 구사(驅使)하고 있고, 심지어는 소를 도살하여 이익을 남기는 짓을 하고 전결(田結)을 숨기어 부역을 피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청컨대 각도 감사(監司)를 신칙하여 적발해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따랐다. 또 논계하기를,</p> <p>“사용원 부제조(司饗院副提調) 파산 도정(坡山都正) 이삼(李杉)은 행신이 비루하고 처사가 광패(狂悖)하여, 시선(視膳)할 적에 거조(舉措)가 어그러졌습니다. 또 길에서 대신을 만나서도 돌아설 줄을 알지 못하다가 꾸지람을 받게 되자 뒤따라 가며 애걸(哀乞)하는 짓을 했었으니,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p> <p>하였으나, 임금의 따르지 않다가 여러 번 아뢰서야 비로소 윤허하였다.</p>	<p>請遞差。”上不從，屢啓始允。</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7월 28일(정유) 1번째기사</p>	<p>진하정사(陳賀正使) 임양군(臨陽君) 이환(李桓), 부사(副使) 유집일(兪集一), 서장관(書狀官) 이익한(李翊漢)이 사폐(辭陞)하니, 임금의 인견(引見)하고 선은(宣醞)14754 하였다.</p>	<p>丁酉/陳賀正使臨陽君桓、副使兪集一、書狀官李翊漢辭陞，上引見宣醞。</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8월 1일(기해) 2번째기사</p>	<p>이에 앞서 삼명일(三名日)14755) 에 제도(諸道)에서 봉진(封進)하는 방물(方物)·삭선(朔膳)·물선(物膳)을 흉년 때문에 감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복구(復舊)하기를 청하니, 임금의 또 내년 가을까지 그대로 감하도록 명하였다.</p>	<p>先是，三名日諸道所封進方物、朔膳、物膳，因年凶減省，至是，禮曹請復舊，上又命限明年秋姑減。</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10월 5일(임인) 1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했다.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p> <p>“엄집(嚴緝)은 청백(清白)하고 빈궁(貧窮)한데다가 나이가 늙고 병이 침중하니, 상당한 약물(藥物)을 내리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의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순포(純褒)·순핍(純貶)을 초계</p>	<p>壬寅/引見大臣、備局諸臣。左議政徐宗泰，陳嚴緝清白貧窮，年老病重，宜給相當藥物，上可之。先是，有純褒純貶抄啓之命，而吏曹久不舉行。至是，判書崔錫恒言：“純褒抄啓，固</p>

(抄啓)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조(吏曹)에서 오래도록 거행하지 않았었다. 이에 이르러 판서 최석항(崔錫恒)이 아뢰기를,
 “순포(純褒)의 초계(抄啓)는 진실로 마땅히 십분(十分) 살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인데 대강대강 뽑아서 올렸으니, 순핍(純貶)의 초계도 합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수의(繡衣)14787)가 탐문할 적에 빠짐없이 자세하게 않는 것이 아니지만, 비관과 명예의 허실(虛實)이 더러는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종전부터 탐문할 때 죄를 입었던 사람이 뒷날에는 더러 볼 만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설령 참으로 죄를 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초계(抄啓)에 들어가버리면 곧 금고(禁錮)하는 것이니, 이름을 써 놓고 그 사람을 금고하는 것은 아마도 성세(聖世)에 마땅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탄핵받은 어사(御史) 중에 대관(臺官)이 논계(論啓)하여 지탄(指彈)하게 된 사람은 전조(銓曹)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다시는 검거(檢擧)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단지 순포(純褒)만 써서 입계(入啓)하도록 하였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조상우(趙相愚)가 아뢰기를,
 “사람은 청렴한 자와 탐오한 자가 있는가 하면 국가에는 상과 벌이 있는 법인데, 만일 이번에 순포(純褒)만 서계(書啓)하고 순핍(純貶)은 덮어 둔다면, 돌아보건대 어떻게 권면하고 징계하는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교리 이진검(李眞儉)이 또한 아뢰기를,
 “탐오(貪汚)한 무리는 이름을 써서 입계(入啓)하여 영구히 앞길을 폐기(廢棄)해 버리더라도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또한 상벌이 분명한 다음에야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것이기에, 포장(褒獎)만 하고 핍척(貶斥)이 없음은 아마도 권면하고 징계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하고, 최석항은 아뢰기를,
 “탐오하여 법에 어긋난 짓을 하는 사람은 대관(臺官)이 규핵(糾劾)하게 되고

宜十分審慎，從略抄進，而純貶抄啓，未知其得當。蓋繡衣廉問，非不詳悉，而毀譽虛實，或多爽實。從前廉問時被罪人，日後或不無可觀之事。設令真有負犯，一入抄啓，便是禁錮，書名錮人，恐非聖世所宜。臣意被劾御史，見彈臺啓者，自銓曹，參酌輕重，勿復檢舉宜當。”上可之，只令書入純褒。判敦寧趙相愚曰：“人有廉貪，國有賞罰。今若書入純褒，而掩置純貶，則顧安有勸懲之意哉？”校理李眞儉亦言：“貪汚之類，書名入啓，永廢前程，少無所惜，且賞罰分明，然後人知畏法，有褒無貶，恐非勸懲之道。”錫恒曰：“貪汚不法之人，則臺官可以糾劾，朝家亦可重究，豈可謂無勸懲乎？”上是錫恒言。先是，朝議欲修築都城，斲石車運，軍儲匱竭，而朝論矛盾，竟又中寢。於是，兵曹判書金宇杭請只修女牆，乃分授禁衛營、御營廳、訓練都監，同力修築。大司諫李壘論：“禁中跟隨，自有定限，而近來宰相、名官出入時，騶從過多，請申飭騎曹，一依定式施行。都城內白晝行喪，明有禁令，而近來常漢輩，白日裹尸，恣出都門。

	<p>조가(朝家)에서도 또한 엄중하게 구핵(究覈)하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권면하고 징계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최석항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이에 앞서 조정 의논이 도성(都城)을 수축(修築)하고자 하여 돌을 캐서 수레로 운반하느라 군자(軍資)의 저축이 고갈되니, 조정 의논에 모순(矛盾)이 생겨 마침내 또한 중지하게 되었다. 이에 병조 판서 김우항(金字杭)이 단지 여장(女牆)14788) 만 수축할 것을 계청(啓請)하고 바로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훈련 도감(訓練都監)에 나누어 맡기며 힘을 합쳐 수축하게 했다. 대사간 이야(李堉)가 논계하기를,</p> <p>“금중(禁中)에 있어서는 근수(跟隨)14789) 가 본시 일정한 한도가 있는 법인데, 요사이의 재상(宰相)과 명관(名官)이 드나들 때에 추종(騶從)이 지나치게 많으니, 청컨대 거둬 기조(騎曹)에 신칙하여 한결같이 정식(定式)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도성 안에서 대낮에 행상(行喪)을 함은 분명한 금령(禁令)이 있는데, 요사이의 상한배(常漢輩)들이 백주에 시체를 싸가지고 멋대로 도성 문으로 나가니, 청컨대 경조(京兆)로 하여금 거둬 오부(五部)를 신칙하여 엄중하게 금단(禁斷)을 가하게 하소서.”</p> <p>하고, 장령 양성규(梁聖揆)가 논계하기를,</p> <p>“송금(松禁)14790) 은 거둬 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산직(山直)들과 결탁하여 계방(契房)을 만들어 놓고 멋대로 몰래 베고 있으니, 청컨대 경조(京兆)로 하여금 일체 금단하게 하소서.”</p> <p>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請令京兆，申飭五部，嚴加禁斷。”掌令梁聖揆論：“松禁非不申嚴，而無賴之徒，與山直輩，結爲契房，任自偷斫，請令京兆，一切禁斷。”竝從之。</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11월 6 일(계유) 1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 윤지인(尹趾仁)이 본도(本道)의 재해(災害)를 장계하여 올해에 거둬 쌀과 콩을 감해 주기를 청하므로, 묘당(廟堂)이 정공(正供)에 관한 것임을 들어 윤희하지 말기 청하니, 임금이 특별히 요량하여 감하도록 명하여, 온도를 통해 특히 심한 고을은 1결(結)에 2두(斗)씩 감하고, 그 다음의 고을은 1두씩 감했다.</p>	<p>癸酉/平安道觀察使尹趾仁狀陳本道災荒，請減歲收米豆，廟堂以爲係是正供，請勿許，上特命量減，通一道每一結，尤甚邑減二斗，次邑減一斗。</p>
<p>숙종 47권, 35년</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했다. 도제조(都提調)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p>	<p>藥房入診。 都提調崔錫鼎陳畿邑敗船</p>

<p>(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11월 9 일(병자) 2번째기사</p>	<p>“경기(京畿) 고을들의 파선(破船)되어 건진 쌀은 잔 물에 젖어버려 백성들이 먹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 다시 거둔다면 백징(白徵)14804) 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p>	<p>拯米，爲鹹水所浸濕，民不得食，而到今還捧，無異白徵也。 上命停捧。</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12월 10 일(병오)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했다. 도승지 박필명(朴弼明)이 아뢰기를,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여(李畬)·김창집(金昌集)이 도성(都城) 밖에 와 있고, 대사헌 최규서(崔奎瑞) 등 외방(外方)에 있던 제신(諸臣)이 성상의 환후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도 모르고 있다가 약원(藥院)을 옮기어 차렸음을 듣고서 경황없이 올라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지 않다가, 물러간 뒤에야 하교하기를, “이번의 증세는 본시 가볍지 않은 것인데다가, 더구나 중기(中氣)가 갑자기 허해졌다. 그때 스스로 헤아리기를 참으로 한없는 걱정이 있게 되겠다 여겼고, 바로 지금도 병의 증세가 또한 머리를 돌렸다고 할 수가 없다. 오늘 박필명이 대신들의 일을 진달하면서, 증세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여, 약원(藥院)에 있는 자신의 병의 증세를 가볍거나 무겁거나의 중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만일 그렇다면 약원을 옮겨 둘 필요도 없고, 의관(醫官)이 대령(待令)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신하된 사람의 분의(分義)와 도리가 어찌 이러할 수 있겠느냐? 무릇 신하된 사람으로서 군부(君父)의 병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을 마음에 항상 해괴(駭怪)하게 여겨 왔다. 결단코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우선 중중(從重) 추고(從重推考)하라.” 하니, 박필명이 물러나와 명을 기다렸다.</p>	<p>丙午/藥房入診。 都承旨朴弼明曰：“奉朝賀南九萬、判府事李畬·金昌集，來到城外，大司憲崔奎瑞等，在外諸臣，不知上候輕重，聞藥院移設，驚惶上來矣。” 上不答，退出後下教曰：“今番證候，本自不輕。 況腫處〔膿〕潰，閱月水刺厭進之餘，今初四日，中氣暴虛。 伊時自量，實有無窮之憂，而卽今病情，亦不可謂回頭矣。 今日，朴弼明以大臣事陳達，而乃以不知輕重爲言。 身在藥院，以證候置之輕重之間。 若然則藥院不必移設，醫官不必待令。 人臣分義道理，豈容若是？ 凡爲人臣而歇視君父之病者，心常駭然。 決不可置之，姑先從重推考。” 弼明进出胥命。</p>
<p>숙종 47권, 35년 (1709 기축 / 청 강희 (康熙) 48년) 12월 19 일(을묘) 1번째기사</p>	<p>반궁(泮宮)에 감자(柑子)를 내리고,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여 수석을 차지한 이봉익(李鳳翼)에게 급제를 내렸다.</p>	<p>乙卯/賜柑試士于泮宮， 居首人李鳳翼賜第。</p>

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1월 5일
(신미) 2번째기사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인정(人情)이 험난한 때를 당하면 쉽게 경계하게 되나, 평강(平康)한 때를 만나면 반드시 방자해지니, 《시경(詩經)》에, ‘자주 그대의 하인을 돌아보면 그대의 집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마침내 몹시 험한 길을 넘어가는 것이 일찍이 생각지도 못한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이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위예(違豫)하신 환후(患候)가 시종 80일 동안 줄곧 증세가 여러 번 바뀌었으니, 이러한 때에는 성심(聖心)의 두려워하심이 어찌 자주 돌아보는 데에 비교할 뿐이겠습니까? 이제 위험한 때를 넘긴 후이나, 바로 마땅히 늘 두려워하고 삼가시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인데, 요사이에 처분(處分)하시는 것이 조금 경쾌(輕快)하신 듯하다고 수백 가지의 주독(奏牘)을 일시에 모두 들이도록 하였고, 약원(藥院)의 직숙(直宿)도 또한 파출(罷黜)하도록 명하셨으니, 이를 미루어 본다면 의복·음식과 기거(起居)의 절차도 더러 그 마땅함을 잃을 것이니, 그 해로움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성교(聖敎)를 받든즉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문서를 모두 본 후에 수라(水刺)를 들겠다.’ 하셨으니, 이 때문에 끼니때를 잃은 적이 많았습니다. 무리(無理)하심이 이와 같으니, 이미 평일의 절선(節宣)14817) 하는 도리가 아닌데, 더구나 이는 손상(損傷)된 후이니 더욱 절실히 경계하시어야 합니다. 천하의 일이 만가지로 다르나 이치는 오직 하나뿐이니, 병을 치료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무릇 학문을 하는 요체는 본래 두 가지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나머지 조섭(調攝)하는 것은 바로 난리와 흉년에 시달린 백성들을 보호하듯 하여야 하는 것이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삼가면 또한 천덕(天德)에 상달(上達)될 수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통찰(洞察)하시고 본원(本源)을 밝혀 영구히 복을 비는 기본(基本)으로 삼으소서. 어제 내리신 비망기(備忘記)에 모든 도(道)에 권농(勸農)하라는 하교(下敎)가 있으셨는데, 조용히 조섭하는

判府事李頤命上筭曰：
 人情當險艱則易戒，就平康則必肆。
 《詩》不云乎？“屢顧爾僕，不輸爾載，終踰絕險，曾是不意。”向者違豫之候，首尾八旬，證情屢變。此時聖心之懷然危懼，奚翅屢顧？及今踰險之後，正宜常存畏慎，而近日處分，稍似輕快，數百奏牘，一時併入，藥院直宿，亦命罷黜。推此以往，服膳起居之節，或失其宜，其爲害可勝言哉？臣嘗承聖敎有曰：‘必畢覽文書，而後進食。’故多失其時。拘迫若是，已非平日節宣之道。況此損傷之後，尤爲切戒。天下之事，萬殊一理，治病治國，與夫爲學之要，本非二致。病餘調攝，正若懷保兵荒之民，戒懼謹獨，亦可上達天德。伏願殿下，洞察此理，澄清本源，以基祈永之福也。昨下備忘，有諸道勸農之敎。靜攝之中，不忘邦本，疾病之後，善端開發，渙汗之下，民情鼓舞，此亦回泰之一大機會也。雖山林之士，可以幡然造朝，而在外諸大臣，自罷問安之後，聯翩出城，亦乞益加敦勉，責之以共濟時艱。
 上答曰：“憂念寡躬，筭語懇至，深用

	<p>가운데서도 방본(邦本)을 잊지 아니하시고 질병을 앓으신 후에 선단(善端)이 개발되며 조서(詔書)가 내려오자 민정(民情)이 고무되니, 이 또한 태평(泰平)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큰 기회(機會)입니다. 비록 산림의 선비라 하더라도 번번히 조정(朝廷)에 나와야 할 것인데, 외방(外方)에 있는 여러 대신들이 문안(問安)하기를 스스로 그만둔 후에 잇달아 도성(都城) 밖으로 나가니, 또한 바라건대 더욱 돈면(敦勉)을 더하셔서 현재의 난국(難局)을 구제하도록 책려(責勵)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과공(寡躬)14818) 을 근심하여 염려해 주는 차자(筓子)의 말이 간곡하고 지극하여 깊이 감탄하였다. 돈면하는 일도 또한 나의 뜻에 부합된다.” 하였다.</p>	<p>感歎。敦勉事，亦合予意也。”</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1월 12 일(무인) 1번째기사</p>	<p>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차자(筓子)를 올려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구(救)하기를, “연신(筓臣)이 일찍이 성상께서 위노(威怒)를 때때로 갑자기 내시는 것은 절도(節度)에 맞지 않는다고 넉지시 아뢰자, 성상께서 하교(下教)하시기를, ‘내가 심화(心火)가 있어 항상 이 경계를 지키는데, 더러 자제(自制)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 마땅히 뜻을 더하여 노여움을 잊고 이치를 따르는 데에 체찰(體察)하겠다.’는 훈계가 계시니, 군하(群下)가 마음을 다스리는 공효(功效)를 항상 흠양(欽仰)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환후(患候)는 크게 증세가 안정되어 가므로, 지금은 마땅히 정양(靜養)하며 유적(愉適)하게 해서 천화(天和)를 이끌어 회복시켜야 하오니, 심기(心氣)를 항상 평순(平順)하게 가질 수 있도록 힘쓰셔야 화열(火熱)이 물러가고 수라(水刺)를 드시는 것도 날로 나아져서, 마땅히 며칠 안되어 강복(康復)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격뇌(激惱)·불평(不平)하는 거조(舉措)가 계시니, 이는 조섭(調攝)하시는 마땅함에 매우 손상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미신(微臣)의 깊은 걱정이 실</p>	<p>戊寅/左議政徐宗泰上劄救藥院諸臣曰：筓臣嘗以聖上威怒，有時暴發不中節，陳諷，聖上教之曰：‘予有心火，常持此戒，而或不能自制。當加意體察於忘怒觀理之訓’，群下常欽仰治心之功矣。今聖候大勢向安，政宜靜養愉適，導復天和，務使心氣，常在順境，火熱退聽，匙著日勝，當不日益有康復之喜，而忽有此激惱不平之舉。此於調將之宜，深有致損之慮。微臣深憂，實在於此，不宣爲聖上不中節之過舉也。</p> <p>上答曰：“予於藥院之臣，有何憎嫉之心哉？大抵近日入診問候，頗涉泛泛，</p>

	<p>로 이러한 데에 있으니, 참으로 성상을 위하여 절도(節度)에 맞지 않는 지나친 거조가 아닙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의 답하기를,</p> <p>“내가 약원(藥院)의 신하들에게 어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두어서이겠는가? 대저 요즈음 입진(入診)하고 문후(問候)할 때에 자못 범범(泛泛)하기 때문에, 어제 비답(批答) 가운데에서 ‘수라를 드는 것이 만약 열흘 동안만 조금 나아질 것 같으면 평소와 같이 회복될 수 있겠다.’고 하교하여, 대략 은미한 뜻을 보여서 함부로 넘기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입시(入侍)할 때에도 전일과 다름이 없었고, 도정(都政) 등의 일도 미처 복선(復膳)14831) 되기도 전에 거행하려 하므로, 물려서 거행하라는 하교가 도리어 판부(判付)에서 나왔으니, 곧 시질(侍疾)하는 데에 삼가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내가 더욱 크게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거듭 엄지(嚴旨)를 내렸던 것이다.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차자(劄子) 가운데 진달한 계사(啓辭)에는 으레 가볍게 조치하라는 말을 했는데, 대개 본지(本旨)를 잃은 것이다. 《인경(麟經)》 14832)의 말에 이르러서는 이를 인용(引用)하여 인신(人臣)의 시질(侍疾)을 밝히는 데에 지나지 않았으나, 사체(事體)가 매우 중하다. 경의 차자의 말이 이러하니, 내가 혹시라도 여러 신하들의 본정을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삭출(削黜)은 너무 지나치니, 특별히 도로 거둘 것을 명한다.”</p> <p>하였다.</p>	<p>故日昨批答中，水刺若得，旬日差勝，則可以復常之教，略示微意，俾勿放過矣，厥後入侍，無異前日。如都政等事，欲行於未復膳之前，而退行之教，反出於判付，無乃不謹於侍疾耶？是予所以大加駭異，荐下嚴旨者也。原任大臣劄中啓辭陳達，例爲從輕之說，蓋失本旨也。至於麟經之言，不過引此，以明人臣侍疾，事體甚重也。卿之劄語如此，予或未察諸臣之情耶？黜罷太過，特命還寢。</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1월 12일(무인) 3번째기사</p>	<p>이날 임금이 신기(神氣)가 더욱 불평(不平)하여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임금이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에게 말하기를,</p> <p>“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같은데, 무슨 말인들 다하지 못하겠는가?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여 죄를 얹는 것이 아니다. 대개 중기(腫氣)가 끓어 터진 후에는 한결같이 오한(惡寒)과 신열(身熱)이 나는데, 이는 화증(火症)이 분명하다. 화(火)란 반드시 안정된 마음으로 조섭(調攝)한</p>	<p>是日，上神氣尤不平，藥房入診，上謂都提調李頤命曰：“君臣猶父子，何言不盡？藥院諸臣，予非憎嫉而構罪。蓋膿潰後一向寒熱，明是火症。火者必須靜慮調攝而後，寒熱庶或不發，寒熱不發而後，水刺漸次可進，藥院諸</p>

	<p>후에야 오한과 신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며, 오한과 신열이 일어나지 않은 후에야 수라(水刺)를 차츰 들 수 있는데,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수라의 문후(問候)는 자못 범범(泛泛)하게 넘기고, 곧 도목정(都目政)이 지연되고 오랫동안 인견(引見)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였다. 나는 다만 안정하며 조섭(調攝)하여 평소와 같이 회복될 것을 바라고 있으니, 도목정은 수라를 드는 것이 평소처럼 회복된 후에 그것을 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아래에서 진청(陳請)해야 마땅할 것인데, 도리어 관부(判付)에서 나왔으니 도치(倒置)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래서 엄교(嚴敎)를 내릴 즈음에 언어가 경솔하여 대간(臺諫)의 말이 곧 내가 죄를 엮은 것처럼 하였으나, 내가 어찌 신하를 미워하고 질투하여 죄를 엮을 뜻을 갖겠는가?”</p> <p>하니, 이이명이 말하기를, “하교(下敎)가 이와 같으시니, 성상의 뜻이 있는 바를 알 만합니다. 환연(渙然)하게 개석(開釋)해 주시니, 여러 신하들 또한 어찌 감읍(感泣)하지 않겠습니까?”</p> <p>하였다.</p>	<p>臣，水刺問候，頗涉泛泛，乃以都目遷就，引見久曠爲言。予只欲安靜調治，以冀復常，都目政，水刺復常後爲之之意，自下所當陳請，而反出於判付，可謂倒置，故嚴教之際，言語易過。臺諫之言，乃以予若構罪者然，予豈有憎嫉構罪之意哉？” 頤命曰：“下教如此，可知聖意之攸在矣。渙然開釋，諸臣亦豈不感泣乎？”</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1월 15일(신사) 2번째기사</p>	<p>임금이 명일(明日)에 경덕궁(慶德宮)으로 이어(移御)하려 하자, 보덕(輔德) 권첨(權詹)이 임금의 환후(患候)가 수라를 드는 것도 오히려 나아짐이 없고, 오한·신열의 증세가 때로 다시 일어나는데, 이러한 때에 수고로이 움직이는 것은 아마도 감기를 더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써 상소하여 정지하기를 빌었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p>	<p>上將以明日，移御于慶德宮，輔德權詹，以上候匙箸之進，尙未有勝，寒熱之候，時復發作，此時勞動，恐有添感之慮，上疏乞寢，上不納。</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2월 3일 (무술) 3번째기사</p>	<p>정언(正言) 이정제(李廷濟)가 상소하여, 희로(喜怒)를 간술(簡率)하게 하고 기거(起居)를 삼가며 음식을 절제(節制)하는 것으로써 제1의 요도(要道)로 삼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이 진실로 죄과(罪過)가 있다면 일에 따라 밝게 책망하여도 불가한 바가 없을 것인데, 격뇌(激惱)한 하교(下敎)를 점차 더하셔서 신자(臣子)로서 차마 듣지 못할 것이 있는 데 이르렀습니다. 후사(喉司)와 경</p>	<p>正言李廷濟上疏，請以簡喜怒，慎起居，節飲食，爲第一要道，又言：藥院諸臣，誠有罪過，則隨事明責，無所不可，而激惱之教，輾轉層加，至有臣子所不忍聞者。喉司、經幄，或駢繫於廷尉，或迸散於禁門，氣象愁沮，</p>

악(經幄)의 신하를 혹은 모두 정위(廷尉)14838) 에 가두기도 하고, 혹은 금문(禁門)14839) 에 물리쳐 흩어지게 하시니, 기상(氣象)은 근심에 잠겨 꺾이고 대소 신하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며, 은대(銀臺)14840) 의 신하를 일시에 곧바로 나문(拿問)하게 하신 데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국조(國朝)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오(金吾)14841) 에서 전례에 따라 형신(刑訊)을 청한 것은 사방의 청문(聽聞)을 놀라게 함이 있으니, 만일 위노(威怒)가 조금도 풀리지 않는다면 측근(側近)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장차 향양(桁楊)14842) 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일은 이를 말해도 이로울 바가 없으며, ‘떨지 않아 회복한다.’라는 것을 《주역(周易)》에서도 길(吉)하다고 일컬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전하(殿下)께서 이미 그 허물을 깨달으셨다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마셔서 전후의 중도(中道)에 지나친 엄비(嚴批)를 모두 도로 거두도록 명하시되, 이 다음에는 한 마디의 말이 나오더라도 혹은 함부로 지나치지 마소서.”

하였다. 또 말하기를,

“명소(命召)를 기다리라고 하신 하교(下教)는 이제 10일이 지났으나 다시 명이 있지 아니하였으니, 예(禮)로써 진퇴(進退)시키는 뜻이 아닙니다. 윤지완(尹趾完)에 대한 비지(批旨) 가운데 자못 미안(未安)함을 보이시니, 성덕(聖德)을 손상시킴이 있습니다. 유신(儒臣) 【곧 홍우서(洪禹瑞)이다.】 이 사헌부의 많은 대신(臺臣)을 체차(遞差)하도록 처치(處置)함은 드러나게 봉영(逢迎)한 혐의(嫌疑)가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도 또한 일개 신자(臣子)로서 감히 약원의 신하들이 전혀 잘못된 바가 없는데, 까닭없이 죄를 얻었다는 것인가? 그 말하는 바가 참으로 무엄(無嚴)하도다. 사대부(士大夫)가 염치(廉恥)와 의리(義理)에서 어긋남을 놓아둘 수가 없어 처치(處置)하여 체차(遞差)를 청한 것인데, 마땅함에 어그러짐을 억지로

大小駭懼。至於銀臺之一時直拿，實是國朝之所無，金吾之循例請刑，有駭四方之聽聞。威怒若不少霽，則近密諸臣，舉將受桁楊之刑耶？雖然已過之事，言之無益，不遠之復，《易》所稱吉。惟願殿下，既悟其過，則毋吝其改，前後過中之嚴批，悉令收還，嗣後一言之發，毋或放過焉。又言，命召之使待下教，今浹一句，更未有命，非進退以禮之意。尹趾完批旨之間，頗示未安，有傷聖德。儒臣【卽洪禹瑞也。】處置之併遞憲府多臺，顯有逢迎之嫌。

答曰：“爾亦一臣子，敢以藥院之臣，謂全無所失，而白地構罪耶？其所爲言，固已無嚴，而士夫廉義，不可放倒，則處置請遞，未見乖當，而勒加逢迎之目，尤可異也。”廷濟以嚴批引避，諫院處置出仕。

	<p>봉영(逢迎)하였다는 지목을 더하니, 더욱 괴이(怪異)하다.” 하였다. 이정제가 엄비(嚴批)로써 인피(引避)하니, 사간원(司諫院)에서 출사(出仕)하도록 처치하였다.</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2월 7일 (임인) 1번째기사</p>	<p>사간(司諫) 박휘등(朴彙登)이 상소하여, 영남(嶺南)에 겨울철에 마땅히 체차(遞差)해야 할 수령(守令)을 고찰(考察)해서 먼저 차송할 것과 때에 미처 진홀[賙賑]하기를 청하자,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p>	<p>壬寅/司諫朴彙登疏請嶺南冬考守令當遞者, 先爲差送, 及時賙賑, 上從之。</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2월 8일 (계묘) 1번째기사</p>	<p>임금이 여러 증세가 조금 나왔다 하여 직숙(直宿)을 파하도록 명하였는데, 제조(提調) 등이 상선(常膳)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물러갈 수 없다 하여 윤직(輪直)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癸卯/上以諸證差減, 命罷直宿, 提調等以常膳未復, 不可徑退, 請輪直, 不許。</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2월 11일(병오) 1번째기사</p>	<p>진하(陳賀)할 때 각도의 방물 물선(方物物膳)을 반으로 감하여 봉진(封進)하도록 명하였다.</p>	<p>丙午/命陳賀時各道方物物膳, 減半封進。</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2월 15일(경술) 1번째기사</p>	<p>임금의 환후 및 세자의 학질이 평복(平復)된 두 경사(慶事)를 종묘(宗廟)에 고하고,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고, 팔방(八方)에 반교(頒敎)·반사(頒赦)하였는데, 그 교문(敎文)에 이르기를, “왕(王)은 말하노라. 여러 달 동안 위예(違豫)하였고, 잇따라 예기치 못한 재해(災害)를 당하였는데, 하늘에서 휴조(休兆)14847) 를 펴게 되어 마침내 병이 낫는 경사를 보게 되었다. 이에 사방에서 일제히 손뼉 치며 기뻐함을 당하여 어찌 10행(行)으로 크게 베풀어 고하는 것을 늦추겠는가? 생각하건대 내가 과매(寡昧)한 자질(資質)로 외람되이 간대(艱大)한 기업(基業)을 이어받았다. 흥거(興居)14848) 함에 있어서 절선(節宣)의 도를 삼가야 하는데, 영위(榮衛)가 혹 어그러지고, 근력(筋力)이 한창때[鼎盛]의 나이와 달라서 감상(感傷)함</p>	<p>庚戌/以上候及世子瘡患平復, 兩慶告宗廟, 百官陳賀, 頒敎八方, 頒赦。其敎文曰: 王若曰, 積月違豫, 屬遭無妄之災; 自天申休, 聿覩乃瘳之慶。 茲當四方之齊抃, 詎緩十行之誕敷? 言念寡昧之資, 叨承艱大之業。 興居慎節宣之道, 榮衛或愆; 筋力異鼎盛之年, 感傷尤易。 頃緣結核之爲祟, 久遲合瘡之奏功。 病源雖在於下焦, 分野則重; 醫技未效於內托, 湯丸屢更。 以平昔惕</p>

이 더욱 쉬웠다. 지난번에 결핵(結核)이 빌미가 되어 종기(腫氣)가 아무는 효험이 오랫동안 지체되었다. 병의 근원이 비록 하초(下焦)에 있다 하나, 분야(分野)가 중하고 의술[醫技]이 내탁(內托)14849) 하는 데에 효험이 없으므로, 탕약(湯藥)과 환약(丸藥)을 여러 번 바꾸었으나 평소 두려워하고 부지런한 정성으로 오랫동안 수응(酬應)을 폐하게 되니, 신민(臣民)이 근심하고 사랑하는 정성이 초조하고 황급해 함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神明(神明)께서 보호하여 도와주심에 힘을 입어 이에 침식[寢膳]이 평선(平善)됨을 얻었다. 천하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으니 만물이 함께 소생(蘇生)하고, 양춘(陽春)의 절계가 되니 따라서 화기(和氣)가 바야흐로 화창하다.

군하(群下)가 비록 모두 춤을 추고 손뼉치며 기뻐하였으나, 두려워하고 삼가는 마음이 오히려 절실하였다. 상자(床第)가 겨우 안정되었으나 조금 나았다는 경계(警戒)가 오히려 있으며, 시저(匙筋)14850) 를 겨우 들었으나 수척해질 걱정이 자못 깊다. 농무(農務)에 진념(軫念)하며 정섭(靜攝)할 때에도 이에 유고(諭告)를 내려서 바야흐로 화창한 봄날에 진정(賑政)을 의논하도록 하였으니, 백성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본래 뜻은 비록 굳게 겸양(謙讓)을 지키려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이 기쁨을 표시하도록 청함을 막기 어려웠다. 지난번 세자의 병이 나았으므로, 마땅히 종묘[宗祧]에 경사(慶事)를 고했어야 하는데, 과궁(寡躬)의 병이 오래 낫지 아니함으로 인연하여 조야(朝野)에서 진하(陳賀)하는 것을 도리어 늦추었다. 생각하건대 질병의 근심이 물러가고, 칠발(七發)14851) 의 갑작스러움을 기뻐하자마자 해로움이 없는 휴조(休兆)에 이르러 다시 한때의 평료(平了)함을 보게 되었다.

은 나라의 크게 바라는 바에 따라 축강(祝岡)하는 여정(輿情)에 부응하였다. 향기로운 제물을 진열했으니, 이미 청묘(淸廟)에 공경을 표시하고, 조칙(詔勅)을 널리 포고(布告)하고, 또 대정(大庭)에 널리 고하였다. 모든 허물을 탕척(蕩滌)하는 것은 《희경(羲經)》14852)의 뇌우(雷雨)의 해괘(解卦)를 본받았

勤之誠，久廢酬應；而臣庶憂愛之懼，可想焦遑。幸賴神明之護持，爰致寢膳之平善。歡騰區宇，與品彙而俱蘇；節屆陽春，導和氣而方暢。伊蹈扑縱均於群下，然畏愼尚切於一心。床第甫安，少愈之戒猶在；匙筋纔舉，多瘠之慮轉深。軫農務於靜攝之時，諭告斯降；議賑政於方春之日，民事寧忘？素志雖堅於執謙，衆請難遏於飾喜。向儲殿痼患之良已，慶宜告於宗祧；緣寡躬愆度之彌留，賀尚稽於朝野。惟疾之憂夫去，纔喜七發之霍然；罔害之休鼎臻，復見一時之平了。纔循率土之顛望，勉副祝岡之輿情。芬苾式陳，既揭虔於淸廟；絲綸載布，又播告於大庭。蕩垢滌瑕，法羲經雷雨之解；行慶施惠，順月令生育之功。自本月十五日昧爽以前，雜犯死罪以下，咸有除之，在官者各加一資，資窮者代加。於戲！醫國惟在於體仁，養心莫先於持敬。歲民無恙，匪邇遐而同歡；淸明在躬，與天地而合德。自今伊始，咸與維新。故茲教示，想宜知悉。【大提學姜覲製邊。】

	<p>고, 경사(慶事)를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월령편(月令篇)14853) 의 생육(生育)하는 공효를 따르는 것이니, 이달 15일 매상(昧爽)14854) 이전부터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고 관직에 있는 사람은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되, 자궁자(資窮者)14855) 는 대가(代加)14856) 하도록 하라. 아!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에는 오직 인(仁)을 체득(體得)하는 데 있고, 심성(心性)을 기르는 데에는 경(敬)을 가지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 해마다 백성들이 무恙(無恙)하여 원근(遠近)에 둘러서서 함께 기뻐하며 깨끗하고도 밝은 마음을 지니면, 천지(天地)와 더불어 덕화(德化)가 합하여질 것이니, 이제부터 비롯하여 모두 유신(維新)하는 데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마땅히 자세히 알라.”</p> <p>하였다. 【대제학(大提學) 강현(姜覲)이 지어 바쳤다.】</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2월 16일(신해) 1번째기사</p>	<p>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김창집(金昌集)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엽(李寅燁)도 또한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남구만 등 세 대신을 극진히 위유(慰諭)하고, 인하여 경저(京邸)에 머물러 있도록 명하였으나, 남구만 등 세 대신이 모두 물러갈 것을 청하여 진소(陳疏)하였다. 서종태가 말하기를, “성상의 환후(患候)가 새롭게 차도(差度)가 있으심은 곧 모든 일이 오직 새로와질 기미이니, 진덕(進德)하시는 공효(功效)에 마땅히 날로 새로와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서정(庶政) 또한 뜻을 더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서종태가 세 대신에게 거듭 유교(諭敎)를 더하여 받드시 머물러 있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로(年老)한 세 대신이 동시에 올라왔으니, 내가 매우 기뻐다. 오늘 받드시 머물러 있겠다는 대답을 들은 후에야 인대(引對)를 파함이 좋겠다.”</p> <p>하니, 세 대신이 모두 칭사(稱謝)하였다. 서종태가 또 말하기를, “이러한 큰 경사를 당하여 원근(遠近)의 민정(民情)이 기뻐하며 고무(鼓舞)하</p>	<p>辛亥/引見奉朝賀南九萬、判府事李畬·金昌集。左議政徐宗泰、戶曹判書李寅燁，亦入侍。上慰諭九萬等三臣，甚至仍令留住京邸，九萬等三臣，皆請退而陳疏。宗泰言：“聖候新差，卽庶事維新之幾。進德之功，宜懋日新，而庶政亦宜加意。”上嘉納之。宗泰請更加諭敎於三大臣，必使留在，上曰：“年老大臣，同時上來，予深用欣喜。今日必聞留住之諾，然後引對可罷也。”三臣皆稱謝。宗泰又言：“當此大慶，遠近民情，歡欣鼓舞。自前如此之時，例有慰悅之舉。就累年身布未收中，蕩滅其一二條，誠大惠</p>

는데, 전부터 이러한 때에는 으레 위안하여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곧 여러 해 동안 거두지 못한 신포(身布)14862) 가운데 그 한두 해 조(條)를 탕감(蕩減)하면 진실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나의 뜻이다.”

하였다. 이인엽(李寅燁)이 아뢰기를,
 “무인년(14863) 이전의 거두지 못한 신포(身布)의 일은 신이 이미 진소(陳疏)하였는데, 기묘년(14864) 이후도 또한 거두지 못한 신포가 있으니, 한두 해조를 탕감해 준다면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겠으나, 만약 5년을 한정한다면 민정(民情)을 모두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김창집이 말하기를,
 “신포는 진실로 유망(流亡)하여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으나, 또한 받아들일 만할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해 탕척(蕩滌)할 때의 일로써 살펴보건대, 각 고을의 색리(色吏)14865) 들이 사사로이 훔쳐 먹고 인하여 상납(上納)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러한 습관은 미워할 만하며 지금도 이런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하고, 이여가 말하기를,
 “중간에서 간사한 꾀를 쓰는 폐단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상세히 살피게 함이 가(可)합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나라에 큰 경사(慶事)가 있을 때 크게 혜택을 베풀면, 그 사이에 비록 요행히 이 혜택을 입는 폐단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상세히 살피는 책임이 유사(有司)에게 있으니, 어찌 이에 구애받아 큰 혜택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기묘년(14866) 이후 5년을 한정하여 탕감하도록 명하였다. 이인엽이 말하기를,

矣。”上曰：“此乃予意也。”寅燁曰：“戊寅以上未收身布事，臣既疏陳，而已卯後，亦有之，蕩減一二年條，其惠不敷。若限以五年，則民情可以胥悅矣。”昌集曰：“身布固有流亡未捧者，而亦不無可捧而未捧者。以頃年蕩滌時事觀之，各邑色吏，私自偷食，仍不上納者有之，此習可惡。今亦未必無此弊也。”奮曰：“中間用奸之弊，該曹詳察可矣。”九萬曰：“國有大慶，大施惠澤，其間雖不無倖蒙之弊，詳察之責，有司存焉，豈可拘於此，而不施大惠乎？”上命己卯後，限五年蕩減。寅燁言：“嶺南被災三十餘邑，而沿江海十三邑，爲尤甚，湖南則尤甚者七邑，兩處大同，亦宜斟酌蕩減。”上命嶺南十三邑、湖南七邑大同，特減一斗。

	<p>“영남(嶺南)은 재해(災害)를 입은 곳이 30여 고을인데, 강과 바다에 인접한 13고을이 가장 심하며, 호남(湖南)은 가장 심한 고을이 7고을이니, 두 곳은 대동미(大同米)14867) 도 또한 헤아려 당감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영남의 13고을과 호남의 7고을은 대동미를 특별히 한 말[斗]씩 감하도록 명하였다.</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2월 30 일(을축) 2번째기사</p>	<p>예조 판서(禮曹判書) 강현(姜覲)이 청대(請對)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성상께서 환후(患候)가 평복(平復)되신 것은 실로 종사(宗社)의 큰 경사(慶事)이므로, 이미 종묘(宗廟)에 고하고 반사(頒赦)하였으며, 과거(科擧)를 베풀어 경사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세자께서 술잔을 올려 헌수(獻壽)하는 것은 곧 차례에 있어서 응당 거행해야 할 일인데, 대신(大臣)이 유고(有故)하여 미처 진품(陳稟)하지 못하였고, 해조(該曹)의 초기(草記)는 천박하고도 졸속한 글이어서 윤택받지 못하였습니다. 세자께서는 정리(情理)를 펼 만한 곳이 없을 것이므로, 감히 이에 청대(請對)하였습니다. 이는 신(臣) 한 사람만의 말이 아니고, 곧 여러 대신들의 뜻이기도 하며, 여러 대신들의 뜻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온 나라 신민(臣民)들의 바라는 뜻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에 고하고 진하(陳賀)한 것도 마음에 불안(不安)하였는데, 예관(禮官)과 승정원(承政院)에서 서로 잇따라 진청(陳請)하였으므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연(進宴)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결코 거행할 수 없다고 종신(宗臣)과 해조(該曹)의 비답(批答)에서 이미 말하였다.”</p> <p>하니, 강현 등이 힘써 청하여 마지 아니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도 또한 차자(筵子)를 올려 청하였으나, 임금이 또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禮曹判書姜覲請對白上曰：“聖候平復，實是宗社大慶，既告廟頒赦矣，設科稱慶矣。王世子獻壽稱觴，乃次第應行之事，而大臣有故，未及陳稟，該曹草記，誠淺文拙，未蒙允俞。世子情理，無處可伸，故敢此請對。此非臣一人之言，即諸大臣之意也，非特諸大臣之意，亦一國臣民之望也。”上曰：“告廟陳賀，亦不安于心，而禮官、政院，相繼陳請，故不得不許之。至於進宴，決不可行，宗臣之批，該曹之批，已言之矣。”覲等力請不已，上終不許。左議政徐宗泰亦上筵請之，上又不許。</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4월 7일</p>	<p>전(前) 판서(判書) 엄집(嚴緝)이 졸(卒)하였다. 엄집은 벼슬살이하면서 청렴하고 근신하여 스스로 신칙(申飭)하였다. 만년(晩年)에는 병이 들어 종사(從仕)하지 못하였고 가난하여 의약(醫藥)을 의뢰할 수가 없었는데, 좌의정 서종태</p>	<p>壬寅/前判書嚴緝卒。緝，立朝清謹自飭。晩年，病不從仕，貧不能資醫藥，左議政徐宗泰白其狀，上命給相當藥</p>

<p>(임인) 1번째기사</p>	<p>(徐宗泰)가 그 실상을 아뢰자 임금(徐宗泰)이 적당한 약물(藥物)을 주도록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 76세이다.</p>	<p>物。至是卒，年七十六。</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4월 12 일(정미) 2번째기사</p>	<p>왜인(倭人)이 초량촌(草梁村)에서 옮겨간 후 여염(閭閻)에 왕래(往來)할 수 없게 되자, 아침에 저자가 설 때마다 우리 나라 남녀들이 섞여가면 남자들이 가진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팔리지 않고, 여인들이 가진 것은 비록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꼭 팔리기 때문에, 아침 저자에 나가는 사람은 모두 여인들이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권이진(權以鎭)이 초량(草梁)과 부산(釜山)의 해부(海夫) 및 시골 사람들을 불러 타이르기를, ‘이는 어채(魚菜)를 파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의 아내와 딸을 파는 것이다. 그대들도 사람인데,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느냐?’ 하였다. 이로부터 여인들을 보내지 않고 남자들을 보내자, 왜인의 무리들이 어채가 부족하여 구해서 사지 않을 수 없다는 핑계로 금표(禁標) 밖에 함부로 나가니,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이상집(李尙畚)이 장계(狀啓)하기를, “훈도(訓導)·별차(別差) 무리들에게 간사한 실상이 있으니, 청컨대 논죄(論罪) 하소서.” 하고, 권이진(權以鎭)은 장계하기를, “왜인들이 훈도와 별차를 쫓아내려고 으레 함부로 나가기 때문에, 조정에서 훈도와 별차를 죄주지 아니함이 벌써 전례가 되었으니, 지금 논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날 비국 당상관(備局堂上官) 민진후(閔鎭厚)·이인엽(李寅燁)이 청대(請對)하고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권이진의 말이 옳다. 만약 훈도와 별차를 죄준다면, 어찌 뒷날의 폐단이 없겠는가?” 하였는데, 이인엽이 말하기를, “훈도·별차는 왜관(倭館)에 출입하므로, 왜인의 동정(動靜)을 마땅히 알지 못</p>	<p>倭人自草梁村移出之後，不得往來閭閻，而每於朝市時，我人男女雜往，則男子所持，雖善不售，女人所持，雖惡必售，故赴朝市者，皆女人也。東萊府使權以鎭，招諭草梁、釜山海夫村人等曰：“此非賣魚菜也，乃賣汝妻、女也。汝亦人耳，何忍爲此？”自是，不送女人而送男子，倭人輩托稱魚菜不足，不得不救買，闌出禁標外，慶尙左水使李尙畚狀啓以爲：“訓導、別差輩，有奸狀，請論罪。”以鎭狀言倭人欲逐訓、別，例爲闌出，故朝家不罪訓、別，已成前例，今不可論罪。是日，備局堂上閔鎭厚、李寅燁，請對稟奏，上曰：“以鎭言是矣。若罪訓、別，豈無後弊乎？”寅燁曰：“訓、別出入倭館、倭人動靜，宜無不知，知而不告，固可罪。雖曰朦不覺察，亦宜警責。令本道水使，決棍後，仍令察任可矣。”鎭厚曰：“聞外議以爲：‘訓、別輩厭憚府使，則與倭同謀，使之闌出，爲逐去府使之計。今以鎭頗操切，訓、別輩，致有此舉’云。此亦未知</p>

할 리가 없을 터인데,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실로 죄줄 만합니다. 비록 어리석어 깨달아 살피지 못하였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깨우치도록 꾸짖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도(本道)의 수사(水使)로 하여금 결곤(決棍)한 후에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민진후는 말하기를,

“듣건대 외의(外議)에 이르기를, ‘훈도·별차의 무리가 부사(府使)를 싫어하여 꺼리게 되면, 왜인과 함께 모의(謀議)하여 <왜인을> 함부로 나가게 함으로써 부사를 쫓아 보내는 계책으로 삼는데, 지금 권이진이 자못 조절(操切)14946) 하니, 훈도·별차의 무리가 이러한 일이 있게 하였다.’ 합니다. 이 또한 반드시 그러한 것인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왜인이 함부로 나갔을 때 훈도·별차가 반드시 몰랐을 리는 없으니, 그 죄를 모면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수사(水使)에게 분부(分付)하여 결곤하라고 명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동래 부사가 왜인이 함부로 나간 일로 인하여 청하기를, ‘정축년(14947)의 예(例)에 의거하여 관수왜(館守倭) 및 1대관왜(一代官倭), 구(舊) 3대관왜(三代官倭)는 모두 공억(供億)을 거두고, 공작미(公作米)14948)는 신(新) 3대관왜에게 주소서.’ 하였는데,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동래 부사가 정축년의 예에 의거하기를 청하였다는 것은 옳다.”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왜인의 교사(狡詐)가 날로 심해지니, 이러한 일은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듣건대 정축년에는 먼저 관수왜(館守倭)와 송사왜(送使倭)를 책유(責諭)하여 무리들이 자복(自服)한 후에야 비로소 공억(供億)을 거두었습니다. 또 대관왜(代官倭)가 왜인들을 구검(拘檢)한 일이 원래 없었으니, 한

其必然，而倭人闖出之時，訓、別必無不知之理，其罪在所難免。” 上命分付水使決棍。 鎮厚曰：“東萊府使因闖出事，請依丁丑年例，館守倭及一代官倭，舊三代官倭，竝撤供，公作米給新三代官倭云矣。 此事當如何處之？” 上曰：“萊府請依丁丑例云者，是矣。” 鎮厚曰：“倭人狡詐日甚，此等事，不可不嚴處，而但聞丁丑年，先責諭館守倭及送使倭，渠輩自服，然後始撤供。 且代官倭，元無拘檢諸倭之事，一併撤供，恐或太過。 朝家處分，貴在詳審，今宜先加責諭。” 寅燁亦以爲然，上命姑先責讓。

	<p>결같이 모두 공역을 거두는 것은 아마도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조정의 처분(處分)은 상세하게 살핌을 귀히 여기니, 이제 먼저 책유(責諭)를 더하심이 마땅합니다.”</p> <p>하였는데, 이인엽 또한 옳게 여기니, 임금이 우선 먼저 책양(責讓)하도록 명하였다.</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4월 25일(경신) 1번째기사</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잔치를 받았다. 세자(世子)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술잔을 올리며 헌수(獻壽)하였는데, 술잔을 아홉 차례 올리고 곧 거두었다. 영의정(領議政) 이여(李畚)가 억외(抑畏)14960) 하는 마음을 더욱 보 존하라는 뜻으로 앞에 나아가 진계(陳戒)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이 명일(明日)의 내연(內宴)14961) 때에 더욱더 잘 조섭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庚申/上御崇政殿，受宴。世子率百官，稱觴獻壽，觴九行乃撤。領議政李畚，以益存抑畏之意，進前申戒，上嘉納之。判府事李頤命請於明日內宴時，益加善攝，上從之。</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5월 6일(경오) 3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이여(李畚)가 진연(進宴) 후에 추은(推恩)14969) 하는 일을 품주(稟奏)하기를, “병술년(14970)에는 30년으로써 경사(慶事)를 치렀기 때문에, 사부(士夫)·평민(平民)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는 은전(恩典)이 있었으나, 지금은 성상의 환후(患候)가 평복(平復)되신 것으로써 경사를 치렀으므로, 의의(意義)가 조금 다르니, 가자하는 한 가지 조항은 거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술년에는 2품으로서 70세 이상된 사람에게는 특별히 의자(衣資)와 쌀·고기를 내려 주었고, 당상관의 문신(文臣)으로서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이와 무신으로서 일찍이 부사(府使) 이상을 지낸 사람 및 음관(蔭官)으로서 일찍이 4품 이상을 지낸 사람에게는 쌀과 고기를 내려 주었는데, 이는 가자하는 것과는 다르니 거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방민(坊民)과 각사(各司)의 공물인(貢物人)은 장빙미(藏氷米)14971) 를 3년을 한정으로 견감(鑷減)하여 주는 것이 혜택을 미치게 하는 도리가 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역(坊役)의 괴로운 폐단을 내가 평소 신칙(申飭)하였는데, 오히려 더욱 심</p>	<p>引見大臣、備局諸宰。領議政李畚，以進宴後推恩事，稟奏曰：“丙戌年以三十年稱慶，故士夫、平民，皆有加資之典，而今則以聖候平復稱慶，義意稍異，加資一款，不必舉行。丙戌年二品年七十以上，特賜衣資、米肉，堂上文臣曾經實職者，武臣曾經府使以上者，蔭官曾經四品以上者，賜以米肉。此則與加資有異，行之無妨。坊民及各司貢物人，藏氷米，限三年鑷減，似爲推惠之道。”上曰：“坊役苦重之弊，予當申飭，而猶且滋甚，更宜申明，俾無民怨也。”畚曰：“坊役中最苦者，負持軍也。應立十名，則例出二十名，應立二十名，則例出三四十名云。若</p>

	<p>해지니, 거듭 신명(申明)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함이 마땅하겠다.”</p> <p>하니, 이여가 말하기를,</p> <p>“방역(坊役) 가운데 가장 괴로운 것은 부지군(負持軍)14972) 으로서, 응당 10명을 세우면 으레 20명이 나가고, 20명을 세우면 으레 3, 40명이 나간다고 합니다. 만약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역(役)을 피하는 길을 엄중히 막고, 또 병조(兵曹)에 신칙(申飭)해서 무릇 부지군으로 응당 들어와야 할 인원수를 차비(差備)와 여러 상사(上司)들에게 물어 참작하여 규칙(規式)을 정하고, 함부로 정하지 못하게 하면 거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우의정 김창집(金昌集)·판돈녕(判敦寧) 민진후(閔鎭厚)가 함께 아뢰기를,</p> <p>“이는 방민(坊民)의 명색(名色)이 많고 역사(役事)에 응하는 자들이 적은 까닭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약 본역(本役)이 조금 가벼운 자를 덜어내어 방역(坊役)에 응하게 하면 조금 균등(均等)해질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병조(兵曹)와 한성부(漢城府)에 변통(變通)하도록 명하였다. 이여가 말하기를,</p> <p>“의주(義州)의 죄인(罪人) 하막룡(河莫龍)은 사신(使臣) 행차를 따라 들어갔다가 뒤로 떨어져서 저들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죄가 이미 무거운데, 붙잡아 보낼 즈음에 또 도망하여 숨었으니, 해당되는 율(律)로 단죄(斷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고, 김창집 또한 이를 말하니, 임금이 변상(邊上)에서 효수(梟首)하도록 명하였다. 이여가 말하기를,</p> <p>“동래 부사(東萊府使) 권이진(權以鎭)이 왜관(倭館)의 공봉(供奉)을 철폐하는 일로써 논열(論列)하여 장문(狀聞)하였습니다. 대개 조정에서는 애초에 관수왜(館守倭)가 이미 그 죄를 자복(自服)한 것을 알지 못하고, 책유(責諭)한 후에</p>	<p>令京兆，嚴防避役之路，又飭兵曹，凡負持軍應入之數，問於差備及諸上司，參酌定式，俾勿濫定，則庶可省弊。”</p> <p>右議政金昌集、判敦寧閔鎭厚，皆言：“此由於坊民，名色夥然，應役者少故也。若除出本役稍歇者，使應坊役，則可以稍均。”上命兵曹、漢城府變通。奮曰：“義州罪人河莫龍，隨使行入去，落留彼中，其罪已重，而捉送之際，又爲逃躲，不可不斷以當律。”昌集亦言之，上命梟示境上。奮曰：“東萊府使權以鎭，以倭館撤供事，論列狀聞。蓋朝家初不知館守倭，已服其罪，使之責諭後撤供矣，今見狀啓，則館守倭聽代館倭所懇，以致闌出，渠自慙悔云。此便是服罪也。雖以魚菜托辭，更無可詰之端。丁丑年，既有撤供前例，依狀啓撤供似當。”上可之。持平李禎億論：“護軍韓配夏，性本狠戾，得罪名教，舉世唾鄙，恥與同列。自叨藩臬，恣行胸臆，鞫獄死囚，符同起訟，偷占士夫之族山，而怒其本官之不承風旨，則置諸貶目，而終至移訟。曾居內浦，與一生、進人，情好甚篤，而及爲方伯，欲奪其先山，刻期掘移於</p>
--	--	--

공봉을 철폐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장계(狀啓)를 보건대, 관수왜가 대관왜(代館倭)의 간청을 듣고 함부로 나가게 된 것을 저들이 점차 후회한다고 하니, 이는 문득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비록 어채(魚菜)를 핑계하여 말하였다 하더라도 거듭 힐책(詰責)할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정축년(1493)에 이미 공봉을 철폐했던 전례가 있으니, 장계에 의거하여 공봉을 철폐함이 마땅할 듯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지평(持平) 이정억(李禎億)이 논핵하기를, “호군(護軍) 한배하(韓配夏)는 성품이 본래 몹시 사납고 고약하여 명교(名教)에 죄를 지었으므로, 온 세상에서 침을 빨아 비루하게 여기고 동렬(同列)에 참여하기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곤수(關帥)에 부임하고부터 탐욕을 자행하고, 국옥(鞠獄)의 사수(死囚)와 부동(符同)하여 송사(訟事)를 일으켜 사부(士夫)의 족산(族山)을 구차히 차지하였는데, 그 본관(本官)이 풍지(風旨) 1494)를 받들지 않는 데에 노하여, 폄목(貶目)에 두고 마침내 이송(移訟)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찍이 내포(內浦)에 있을 때에는 한 생원(生員)·진사(進士)와 정호(情好)가 매우 돈독하였는데, 방백(方伯)이 되자 그 선산(先山)에 빼앗으려고 묘를 파서 한 달 안에 이장(移葬)하도록 금을 그어 기한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축(牛贖) 1495)의 돈은 고을의 쇠잔하고 번성한 데에 따라 각각 정해진 액수가 있는데, 매월 독촉해서 받아들여 죄다 뒤로 돌렸습니다. 자신이 도주(道主)가 되어 감히 노비(奴婢)를 추쇄(推刷) 1496)하려고 감영(監營)의 하례(下隸)를 나누어 보내어 마을에 들이닥치니, 온 도(道)에 원망이 자자하고 무고(無辜)한 사람들이 하늘에 하소연하였습니다. 청컨대 삭거 사판(削去仕版)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교리(校理) 이만견(李晩堅)이 계청(啓請)하기를, “능히 허문(虛文)을 떨쳐 버리고 힘써 실덕(實德)을 닦으셔서 재해(災害)를 그

一朔之內。牛贖之錢，隨邑殘盛，各有定數，逐朔督捧，盡歸尾閭。身爲道主，敢自推奴，分遣營隸，〔墮〕突閭里，一道嗷嗷，無辜籲天。請削去仕版。”上不從。校理李晩堅請克祛虛文，務修實德，以爲弭災之本，上嘉納之。晩堅又請亟允崔錫鼎遠竄之啓，上不許。

	<p>치게 하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이만견이 또 최석정(崔錫鼎)을 멀리 귀양보내자는 계달(啓達)에 빨리 윤희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5월 11일(을해) 2번째기사</p>	<p>사간원(司諫院)에서 논핵하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사상(李師尙)은 본래 음험(陰險)하고 추비(麤鄙)14977)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신이 중한 허물을 지니고 있어서 청의(淸議)에 용납되지 못할 줄을 알고 권요(權要)에게 아첨하여 불쫓아 당원(黨援)을 체결(締結)하고, 무릇 위태롭고 궂은 일에는 소매를 걷어 붙이고 담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관학(館學)의 유생(儒生)들이 참서(僭書)를 분변(分辨)하여 장차 궐문에 호소하려 하자, 몸이 후설(喉舌)14978) 의 지위에 있으면서 미리 알소(訐訴)하고는 많은 선비들의 대론(大論)을 막아 계달(啓達)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가 상신(相臣)에게 아첨하고 천총(天聰)을 가린 정상은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또 근년에 흉잠(凶潛)을 친국(親鞫)하였을 때 성교(聖敎)가 엄절(嚴切)했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임부(林溥)를 두둔한 것으로써 무겁게 죄견(罪譴)을 입었으니, 모의(謀議)를 엿어맨 자취는 성명(聖明)께서 이미 통촉(洞燭)하신 바였습니다. 영남(嶺南)의 방백(方伯)이 됨에 미쳐서는 임부(林溥)의 종형(從兄) 임연(林演)이 임부의 옥사(獄事)에 관련되어 도내(道內)에 유배(流配)되자 역마(驛馬)를 보내어 맞아들이고, 함께 거처(居處)하며 지나치게 술을 권하여 마침내 쓰러져 죽기에 이르렀으니, 의혹(疑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영(監營) 부서(簿書)의 쌀·콩 6, 70섬을 내어주고, 또 각 고을로 하여금 운구(運樞)하고 호상(護喪)케 하였습니다. 그 흉적(凶賊) 임부를 몰래 사주(使喉)하여 대옥사(大獄事)를 구성(構成)하고, 여러 죄인들과 더불어 시종 화응(和應)한 실상이 밝게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옥후(玉候)가 미령(靡寧)하여 중외(中外)에서 마</p>	<p>諫院論：“慶尙監司李師尙，本以陰險麤鄙之人，自知身負重累，不容於淸議，諂附權要，締結黨援，凡諸危怕僭譎之事，無不攘臂擔當。昨年館學章甫，爲辨僭書，將欲叫闥，則身居喉舌，徑先訐訴，致令多士大論，遏而不達。其求媚相臣，欺蔽天聰之狀，萬萬絕痛。且於頃年凶潛親鞫之時，聖敎不啻嚴切，至以營護林溥，重被罪譴，則綢繆謀議之迹，業已聖明之所洞燭，而及按嶺臬之後，溥之從兄演，干連溥獄，見配道內者，送駟邀致，與同寢處，過勸盃酌，終至致斃。人之疑惑，固無所不有，而出給營簿米太六七十石，且令各邑，運樞護喪。其陰喉凶溥，構成大獄，與諸罪人終始和應之狀，昭不可掩，而況當玉候違豫，中外焦遑之時，稱以壽宴，招集守宰，大設宴具，廣聚女樂。道內守令中，或言其不可，則諉以略設，恣意醺樂，沈湎流連，無異平常。渠雖無狀，苟知人臣分義，</p>

	<p>음을 즐기며 허둥대었을 때에 수연(壽宴)을 핑계하며 수재(守宰)를 불러 모아 잔치의 공구(供具)를 크게 베풀고 여악(女樂)을 널리 모으자, 도내(道內)의 수령(守令) 가운데 더러 불가(不可)함을 말하였으나, 간략하게 베풀다고 핑계하고 제멋대로 잔치하여 즐기면서 술에 빠져 유련(流連)함이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무상(無狀)하다 하더라도 실로 인신(人臣)의 분의(分義)를 안다면 어찌 감히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청컨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p> <p>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p>	<p>則安敢乃爾? 請削奪官爵, 門外黜送。” 上允之。</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5월 13 일(정축) 2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지금 한재(旱災)가 이와 같으니, 도성(都城)의 성가퀴[女墻] 역사(役事)는 마땅히 우선 정지하였다가 가을을 기다려 다시 쌓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진연(進宴) 후에 은택(恩澤)을 뒤쫓아 베푸는 일은 지난번에 이미 품정(稟定)하였습니다. 병술년(1498)의 등록(謄錄)에는, 대신(大臣)·재신(宰臣)·당상관(堂上官)의 부인(夫人)으로 70세 이상에게는 쌀과 고기를 내고, 기로(耆老)·종반(宗班)으로 나이가 70이상인 사람에게는 의자(衣資)·쌀·고기를 내려 주었으며, 조사(朝士)의 부인 및 사부(士夫)의 부녀(婦女)로서 나이 80이상과 상한(常漢)의 부녀자로서 90세 이상에게는 모두 쌀과 고기를 내려 주었으며, 상한으로 나이가 90이상에게도 또한 쌀과 고기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제 또한 마땅히 이 예(例)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중인(中人)·서얼(庶孽) 무리의 늙은이들도 또한 모두 참여시킴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의 허락하였다.</p>	<p>右議政金昌集請對言: “目今旱災如此, 都城女墻之役, 宜令姑停, 待秋更築。” 上可之。 昌集又言: “進宴後推恩施惠事, 頃已稟定, 而丙戌謄錄則大臣、宰臣、堂上官夫人年七十以上賜米肉, 耆老、宗班年七十以上賜衣資、米肉, 朝士夫人及士夫婦女年八十以上, 常漢婦女九十以上, 竝賜米肉, 常漢年九十以上, 亦沾米肉之賜。 今亦宜用此例, 而中庶輩年老者, 亦宜竝參。” 上許之。</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6월 12 일(병오) 3번째기사</p>	<p>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의관(醫官) 정시계(丁時悌) 등을 감률(勘律)하는 일로써 품지(稟旨)하니, 임금의 삭직(削職)하여 놓아 보내도록 명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최계옹(崔啓翁)이 사령(赦令)으로 인하여 김춘택(金春</p>	<p>藥房入診。 提調閔鎭厚, 以醫官丁時悌等勘律事, 稟旨, 上命削職放送。 鎭厚又言: “濟州牧使崔啓翁, 因赦令, 置金春澤於放秩, 置吳始復於稟秩。</p>

澤)을 방질(放秩)에 두고, 오시복(吳始復)을 품질(稟秩)을 두었습니다. 김춘택은 애초에 뚜렷한 죄가 없었고, 단지 몸가짐을 근신(謹慎)하지 않음으로써 멀리 유배(流配)되었는데, 말이 임부(林溥)의 옥사(獄事)에 관련되었다 하여 또 나치(拿致)하였습니다. 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돌아갔으면 마땅히 배소(配所)로 돌려보내야 할 것인데, 국청(鞠廳)에서 제주에 이배(移配)하기를 청하니, 사람들이 모두 명분(名分)이 없다고 하였으며, 그때 추국(推鞠)에 참여한 대신(大臣)들 또한 너무 지나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명(律名)이 아주 중한데 목사(牧使)가 직접 석방을 청한 것은 자못 경솔한 데 관계됩니다. 만약 금부(禁府)에서 예(例)에 따라 복주(覆奏)하고 의시(依施)15019) 한다면, 사체(事體)가 미안(未安)하므로, 감히 품(稟)합니다.”

하니, 임금이 육지(陸地)로 내보내어 감등(減等)하라고 명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오시복(吳始復)은 죄명이 매우 중하여 가볍게 의논하기 어려운데, 외의(外議)가 더러 말하기를, ‘애초에 이미 그를 용서해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면, 10년 동안 천극(梃棘)15020) 한테다가 또 전에 없던 대패(大霈)를 당하였으니, 참작하여 조금 감등하는 것도 또한 무방할 것이다.’라고 한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시복은 죄명이 매우 중해서 비록 대패(大霈)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쉽사리 감등할 수가 없다. 그대로 귀양보냄이 옳다.”

하였다. 임금이 직접 민진후에게 은배(銀杯)를 내리고 몸소 명(銘)을 지어 술을 경계하였다. 이보다 앞서 약방에서 입진하였을 때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아뢰기를,

“민진후는 본래 술을 좋아하여 한가하면 문득 취하는데, 비록 사무를 방해하기에 이르지는 않으나, 그 몸을 상할까 두려우니 성상께서 마땅히 그를 친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春澤初無顯著之罪， 只以持身不謹遠竄， 辭連溥獄， 又爲拿致。 事皆歸虛， 則當還發配所， 而鞠廳請移配濟州， 人皆以爲無名， 其時參鞠大臣， 亦自以爲太過。 然其律名甚重， 牧使之直請全釋， 殊涉率爾。 若自禁府， 循例覆奏依施， 則事體未安， 故敢稟。” 上命出陸減等。 鎮厚曰：“始復罪名甚重， 有難輕議， 而外議或以爲：‘初既貸之不死， 則十年梃棘， 又當無前大霈， 參酌稍減， 亦無所妨’云。” 上曰：“始復罪名甚重， 雖當大霈， 不可輕易減等。 仍配可也。” 上面賜鎮厚銀盃， 自製銘以戒酒。 先是， 藥房入診時， 都提調李頤命言：“鎮厚素嗜酒， 少閑輒醉。 雖不至有妨事務， 恐傷其身， 自上宜親戒之。” 是日， 上命小宦， 出小銀盃以賜曰：“過飲則必傷身害事， 故酒誥曰：‘其敢崇飲？’ 賓之初筵章曰：‘三爵不識， 矧敢多？’ 又今賜小盃， 盃心刻銘， 庸示勉戒之意， 卿以此盃飲之， 無過三爵。” 銘曰：“無彝於酒， 以德將之。 毋曰何害。 其害日滋。” 鎮厚拜受曰：“謹奉聖教， 何敢過酌。”

	<p>하였다. 이날 임금이 소환(小宦)에게 명하여 작은 은배(銀杯)를 나오게 하여 내리면서 말하기를, “과음(過飲)하면 반드시 몸을 상하게 하고 일을 해칠 것이므로, 주고(酒誥)15021) 에 이르기를, ‘감히 술 마시기를 숭상하겠는가?’ 하였고, 빈지초연장(賓之初筵章)15022) 에는 이르기를, ‘석 잔의 술이면 기억을 잃게 되는데, 하물며 더 마시라고 권하겠는가?’ 하였다. 이제 이 작은 술잔을 내리고, 잔 북판에 명(銘)을 새겨서 경계(警戒)하기에 힘쓰라는 뜻을 보이니, 경(卿)은 이 잔으로 마시되, 석 잔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는데, 명(銘)에 이르기를, ‘술 마시기를 늘 하지 말고, 덕(德)으로써 몸을 가지도록 하라. 어찌 해로우랴 이르지 말라. 그 해(害)가 날로 심해지리라.’ 하였다. 민진후가 절하여 받으며 말하기를, “삼가 성교(聖敎)를 받들었으니, 어찌 감히 과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p>	
<p>숙종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6월 12일(병오) 4번째기사</p>	<p>박세당(朴世堂)의 아들 박태한(朴泰翰)이 3년 동안 상식(上食)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써 간혔는데, 공초(供招)를 바치기를, “망부(亡父)께서 3년 동안 상식(上食)하는 것이 고례(古禮)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기록해서 유계(遺戒)로 삼았고, 졸곡(卒哭)15023) 후에는 아침저녁의 상식을 폐지하되, 단지 삭망(朔望)의 은전(殷奠)15024) 만을 설행(設行)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망부가 역견(臆見)으로써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졸곡에 생사(生事)가 끝나고, 귀사(鬼事)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였는데, 정주(鄭註)에는 이르기를, ‘다시 하실(下室)15025) 에서 궤식(饋食)하지 않고, 귀신으로서 이를 제사한다.’ 하였고, 소주(疏註)에는 이르기를, ‘삭망에 은전(殷奠)을 설행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고례에 졸곡 후에는 상식을 설행하지 않는다는 명문(明文)입니다. 주자(朱子)가 육자수(陸子壽)에게 답한 글에 이르기를 ‘《예기》에 우제(虞祭)</p>	<p>朴世堂子泰翰, 以不行三年上食, 被囚納供曰: “亡父以三年上食, 不合古禮, 著爲遺戒, 使卒哭後, 止朝夕上食, 只設朔望殷奠, 此非亡父以臆見所定也。 《禮記》曰: ‘卒哭, 生事畢而鬼事始.’ 鄭註云: ‘不復饋食於下室, 而鬼神祭之.’ 疏云: ‘至朔月, 月半而殷奠.’ 此古禮, 卒哭後不行上食之明文也。 朱子答陸子壽書云: ‘禮虞後有几筵, 但卒哭後不復饋食於下室.’ 朱子丁祝夫人憂, 常居寒泉精舍, 朔望歸奠几筵, 此又朱子自停上食之明證。 李</p>

후에는 케연(几筵)이 있으나, 단지 졸곡 후에는 다시 하실에서 케식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주자가 축부인(祝夫人)의 상(喪)을 당하여 항상 한천 정사(寒泉精舍)에서 거처하다가, 삭망에만 돌아와서 케연에 제수(祭需)를 올렸으니, 이것이 또 주자가 스스로 상식을 정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계선(李繼善)이 또 장횡거(張橫渠)와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상(喪)을 마칠 때까지 케식한 것으로써 예경(禮經)에 맞지 아니함을 물으니, 답하기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禮)는 후하게 함이 해롭지 않고, 또 분수에 지나칠 혐의도 없으니, 이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이 김헌(金獻)의 물음에 답하기를, ‘주자는 다른 형제가 없었으므로, 아침저녁 상식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다.’ 하였으니, 이 또한 상식을 폐지한 명문입니다. 또 강석기(姜碩期)의 물음에 답하기를, ‘고례(古禮)에는 분명히 이를 파(罷)하였다.’ 하고, 또 한천 정사의 일을 끌어대어 증거로 삼으면서, 맨 끝에 주자가 또 ‘이를 좇아야 한다.’고 한 부분으로써 정론(定論)을 삼았습니다. 그 아래에 또 말하기를, ‘아침저녁의 케식을 고례에서는 반드시 과하였으나, 세속(世俗)에 따라 후하게 함을 좇는 것은 해롭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금 주자가 끌어낸 졸곡 후에는 다시 케식하지 않는다는 것과 문원공(文元公)15026) 이 논한 고례에서는 분명히 과하였다는 것으로써 말하건대, 이는 바로 예(禮)의 올바른 뜻입니다.

또 주자가 이른바, ‘마땅히 이를 좇아야 한다.’는 것과, 문원공이 이른바, ‘세속을 따라 후하게 함을 좇는 것이 해롭지 않다.’는 것으로써 살펴보건대 이는 바로 예(禮)의 여의(餘意)입니다. 또 아조(我朝)의 명가(名家)에서 행한 바로써 이를 증명하건대 고(故) 참판(參判) 최명창(崔命昌)은 효(孝)로써 칭찬받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신주(神主) 앞에 아침저녁으로 상식하는 것은 번독(煩瀆)한 일로 제사(祭祀)가 아니므로 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안국(金安國)이 최명창의 비문(碑文)

繼善又以橫渠、溫公終喪饋食，不合禮經爲問，則答以見行之禮，不害爲厚，又無嫌於僭，且當從之。先正臣文元公金長生，答金獻之問曰：‘朱子無他兄弟，朝夕上食，不可付之於他人。’此亦廢上食之明文。又答姜碩期之問曰：‘古禮分明罷之。’又引朱子寒泉之事以證之，而末乃以朱子，且當從之之教爲定論。其下又曰：‘朝夕饋食，古禮當罷，而從俗從厚，爲不害也。’今以朱子所引卒哭後，不復饋食，及文元公所論古禮分明罷之云者言之，此是禮之正意也。且以朱子所云：‘且當從之。’及文元公所謂：‘從俗從厚爲不害。’云者觀之，此是禮之餘意也。且以我朝名家所行者證之，故參判崔命昌，以孝見稱，而其言曰：‘神主前朝夕上食，煩瀆而非祭祀，非徒不必行也，正所不當行也。’金安國撰命昌碑文，稱述其既葬罷上食之遺語，而曰：‘其子一遵遺命，不敢違，父子可謂兩得矣。’姜碩期之問，文元公亦曰：‘今人葬後，或廢上食何如？云，則當其時士大夫葬後廢上食者，非止一二人可知矣。亡父之遺言於子孫者，有何滅絕

을 지으면서 이미 장사지내고 상식을 파하라고 한 유언을 칭찬하여 술회(述懷)하기를, ‘그의 아들이 유명(遺命)을 한결같이 준행(遵行)하여 감히 어기지 아니하니, 부자(父子)가 모두 마땅함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강석기의 물음에 문원공이 또한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이 장사지낸 후에 더러 상식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으니, 그 당시 사대부(士大夫)로서 장사지낸 후에 상식을 폐지한 자가 한둘에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부(亡父)가 자손에게 유언한 것이 어찌 고례를 멸절(滅絕)한 죄와 인륜(人倫)을 밝히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해가 오래된 후에 대계(臺啓)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례를 멸절하였다는 것으로써 죄안(罪案)을 정하여 만드니, 어찌 원통함이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의금부에서 언의(讞議)하여 아뢰기를,

“박태한(朴泰翰)이 공초(供招)한 바는 그 아버지의 유계(遺戒)를 매우 칭송하여 실로 고례를 좃았다고 하였는데, 갑신년(15027)의 성교(聖敎)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3년의 아침저녁 제사는 곧 통행하는 예(禮)이니, 어찌 감히 이를 폐지할 수 있겠는가?’ 하시고, 인하여 3년의 상식을 설행하지 않는 자는 불효로 논하고, 율(律)을 정하여 시행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태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혹(迷惑)된 소견을 고집하여 마침내 아침저녁 상식을 폐지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해연(駭然)합니다. 이미 그 아버지의 유계를 칭송하였으니, 불효의 죄로 곧 단정함은 혹 과중할 듯하며, 마땅히 조정의 명령을 어긴 죄로써 감조(勘照)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대사헌(大司憲) 정호(鄭濞)가 상소하기를,

“박태한이 주자(朱子)가 상식을 폐지하였다고 무방(誣罔)한 것은 단지 한천(寒泉)에서 수묘(守墓)하다가, 본가(本家)에 돌아와 삭망(朔望)에만 전(奠)을 드렸다는 것으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은 일찍이 이를 말하는 자를 몹시 배척하여, ‘고례에서 반환(返魂)은 반드시 망인(亡人)

古禮之罪，人倫不明之事，而到今年久之後，臺啓乃以不畏國法，滅絕古禮，定爲罪案者，豈非冤痛之甚乎？”禁府讞奏曰：“泰翰所供，盛稱其父遺戒，實遵古禮，而甲申聖敎中有曰：‘三年朝夕祭，乃通行之禮，則何敢廢之乎？’仍有不設三年上食者，以不孝論之，定律施行之命，則泰翰之終始執迷，遂廢朝夕上食者，誠甚駭然。既稱其父之遺戒，則直斷以不孝之罪，似或過重，宜以違拒朝令之罪勘照。”上可之。

大司憲鄭濞上疏曰：

泰翰之誣朱子廢上食者，只以守墓於寒泉，歸奠朔望於本家爲證，而先正臣宋時烈嘗痛斥世人之爲說者曰：“古禮返魂，必於亡人平居之舊宅，故朱子祝夫人之喪，返魂於本家。本家既有劉令入及其諸子，則朝夕上食，自如常儀，而躬自守墓，朝夕省哭，及至每月朔望，往來參奠，自是情禮當然。今世士夫家守墓之禮，亦用此例者甚多，何可以此，疑朱子之廢上食乎？且以《家禮》上食之文，指初喪虞以前而言，爲文元公之所論斷，而此一條，元不見於文元公所撰《疑禮問解》之書，未知泰

이 평소 거처하던 옛집에 하기 때문에, 주자(朱子)도 축부인(祝夫人)의 상(喪) 때에 본가에 반혼(返魂)하였는데, 본가에는 이미 유명인(劉令人)과 여러 아들이 있었으니, 아침저녁의 상식은 자연히 평소의 예의(禮儀)와 같이 하였을 것이며, 자신은 스스로 수묘하여 아침저녁으로 살피며 곡하고, 매월 삭망이 되면 왕래하여 참전(參奠)하였을 것이다. 이는 인정과 예의에 당연하므로, 금세(今世)의 사대부(士大夫) 집안에서 수묘하는 예(禮)도 또한 이 예(例)를 쓰는 자들이 매우 많은데, 어찌 이로써 주자가 상식을 폐지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가례(家禮)》의 상식(上食)의 글로써 초상(初喪) 우제(虞祭) 이전을 가리켜 말한 것은 문원공이 논단(論斷)한 바라고 하였는데, 이 한 조목(條目)은 원래 문원공이 찬(撰)한 《의례문해(疑禮問解)》의 책에는 보이지 않으니, 박태한이 어떤 사람의 차록(筭錄)한 것을 들추어 내어 이를 빙자해서 무탄(誣誕)한 말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가례》의 문의(文義)로써 논하건대, 초상에서 초빈(草殯)15028) 한 후에는 조석전(朝夕奠)·조석곡(朝夕哭)·조석상식(朝夕上食)이 있는데, 예(禮)에는 차츰 감삭(減削)하는 뜻이 있으므로 장사지낸 후에는 조석전을 그만둔다는 글이 있으나, 조석곡과 조석상식은 자연히 그대로 행한다는 과목(科目)이 있습니다. 소상(小祥) 후에는 단지 조석곡만 그만둔다는 글이 있고, 상식을 그만둔다는 절목(節目)은 없으며, 대상(大祥) 후에 이르러 궤연을 거둔다는 글이 있으나, 상식의 절목은 이에 이르러야흐로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쇄(降殺)15029) 하는 절목이 명백하여 의심할 바가 없는데, 박태한이 고집하여 상식을 폐지하는 증거로 삼았으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주자가 이미 문인(門人)의 물음에 대한 것과 《가례》의 후세에 전하는 글에서 모두 폐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예(禮)를 정하였는데, 자신이 친상(親喪)을 입었으면서 홀로 정폐(停廢)했다는 것이 과연 사리(事理)에 가깝습니까?

翰挾摘何人之筭錄者，有此藉重誣誕之說耶？蓋以《家禮》文義而論之，初喪既殯之後，有朝夕奠、朝夕哭、朝夕上食，而禮漸殺之義，故葬後有止朝夕奠之文，而朝夕哭、朝夕上食，自在仍行之科。小祥後只有止朝夕哭之文，而無止上食之節，及至大祥後，有撤几筵之文，上食之節，到此方止。降殺之節，明白無疑，而秦翰執以爲廢上食之證，不亦謬乎？朱子既於門人之問及家禮傳後之文，皆以不可廢之意，爲定禮，而躬服親喪，獨自停廢者，是果近理乎？至其供辭之末曰：“承朝命廢父言，實無明白禁令”云者，此何說也？古今天下，寧有君臨萬方而教民廢父言之法乎？鯀陞洪水，舜命禹治水，但使之順水道而治之而已，未聞後世，以舜教禹治水，爲廢父言之禁令也。秦翰少知君臣、父子之倫，則何敢以如此無倫之說，嘲侮朝廷至此乎？王府奏讞，亦以其違父亂命爲是，而不以廢祭爲不孝，直斷以違拒朝命之罪。其所謂朝令者，但指其尋常禁令而言也。豈可以諉父遺戒，廢上下通行之禮，得罪人倫者，當此罰乎？

	<p>그 공사(供辭)의 맨 끝에 이르러, ‘조정의 명은 받들고 아버의 말은 행하지 말라 함은 실로 명백한 금령(禁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이 무슨 말입니까? 고금 천하에 어찌 임금(萬方)에 임어(臨御)하여 백성들에게 ‘아버의 말은 행하지 말라.’고 하교(下敎)하는 법이 어찌 있겠습니까? 곤(鯀)이 홍수(洪水)를 막아 공적(功績)을 이루지 못하자, 순(舜)이 우(禹)에게 치수(治水)를 명하였는데, 단지 물길을 순조롭게 하여 이를 다스리도록 하였을 뿐이니, 후세에서 순이 우로 하여금 치수를 하게 하면서 아버의 말을 행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다는 것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박태한이 군신(君臣) 부자(父子)의 인륜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차례가 없는 말로써 조정을 조롱하고 업신여김이 이에 이르렀습니까? 왕부(王府)15030) 에서 언의(讞議)하여 아뢰는 것은 또한 아버의 난명(亂命)15031) 을 좇는 것으로써 옳다고 여겨서 제사(祭祀)를 폐지함을 불효라 하지 않고, 조정의 명을 거역한 죄로 직단(直斷)하자고 하였는데, 이른바 조정의 명령이란 단지 심상(尋常)한 금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어찌 아버의 유계라는 핑계로써 상하가 통행하는 예(禮)를 폐지하여 인륜에 죄를 지은 자에게 이 벌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금오(金吾)에서 언의(讞議)하여 아뢰는 실당(失當)함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하였다.</p>	<p>答曰：“金吾奏讞，予未見其失當也。”</p>
<p>숙보 48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康熙) 49년) 2월 3일 (무술) 1번째기사</p>	<p>정언(正言) 이정제(李廷濟)가 상소하여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구(救)하면서 맨 먼저 질환(疾患)을 삼가는 방도를 아뢰었는데, 대략 이르기를, “어제 중도(中道)에 지나친 일은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참으로 번뇌(煩惱)하여 손상될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궁(移宮)하셨을 때의 거동은 바로 조섭(調攝)하는 날을 당하였으니, 어찌 밖에서 엄습하여 속으로 손상된 병환이 아니었겠습니까? 초방(椒房)906) 의 봉작(封爵)도 또한 조용히 조섭하신 끝에 있었으니 걱정을 덜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올리는 수라[膳羞]에 더러 기름진</p>	<p>戊戌/正言李廷濟疏救藥院諸臣，首陳慎疾之道。略曰：日昨過中之舉，雖在平常之時，實有煩惱致傷之憂。頃間移宮之幸，正當調將之日，豈無外襲內傷之患耶？椒房封爵，亦在靜攝之餘，則不可謂省思慮矣，膳羞所進，或有油膩之物，則不可</p>

	<p>음식물이 있었으니, 음식을 조절(調節)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달 동안 환후(患候)가 계속 가운데 섭양(攝養)하시는 바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평일보다 더함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 네 가지로써 보더라도 아주 존념(存念)을 더하지 못하셨습니다. 진실로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조금 나았을 때 경계하는 마음을 깊이 가지시고, 혹 잠시라도 소홀하지 마소서.”</p> <p>하니, 【나머지는 위에 보인다.】 임금의 이를 받아들였다.</p>	<p>謂節飲食矣。積月違豫之中，其所攝養，竊想有加於平日，而於斯四者，不能痛加存念。誠願聖上，深存少愈之戒，毋或暫忽焉。【餘見上。】</p>
<p>숙종 49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9월 16 일(정미) 3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이 강원 감사(江原監司) 서종헌(徐宗憲)의 장계(狀啓)로써 품주(稟奏)하기를,</p> <p>“본도(本道)의 양전(量田)15152) 을 이미 완료하였는데, 이 도는 전토(田土)가 본래 척박하고 영서(嶺西)에서는 속전(續田)15153) 이 원전(元田)15154)에 들어간 것이 많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억울함을 하소연하니, 청컨대 삼남(三南)의 예에 의거하여 영서(嶺西)의 수미(收米) 2두(斗)를 견감(蠲減)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여러 재신(宰臣)들에게 순문(詢問)한 후 윤허하였다. 김창집이 이어 아뢰기를,</p> <p>“정선(旌善)의 양전(量田)은 마침 수령(守令)이 없어서 소홀하여 어긋난 폐단이 많으니, 전 종사관(從事官) 이사성(李思晟)을 보내어 다시 이정(釐正)을 더함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p> <p>“지난번에 교리(校理) 이정신(李正臣)이 고려(高麗) 태조(太祖)의 제청(祭廳)과 석물(石物)을 수개(修改)할 것을 청하였는데, 흉년이 들고 역사(役事)가 커서 재력(財力)을 관비(辦備)하기 어렵고, 또 전조(前朝)의 능묘(陵墓)를 수개(修改)하였을 때 그 석물(石物)을 아울러 고친 것은 일찍이 전례(前例)가 없으니, 그 분영(墳塋)과 제청(祭廳)만 수보(修補)하도록 명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p>	<p>引見大臣、備局諸宰。右議政金昌集，以江原監司徐宗憲狀啓，稟奏曰：“本道之量田已完，而此道田土素薄，嶺西續田，多入元田，民皆稱冤。請依三南例，減嶺西收米二斗。”上詢問諸宰後許之。昌集仍陳旌善量田，適無主倅，多有踈繆之弊，宜遣前從事官李思晟，更加釐正。”上許之。昌集又言：“頃者校理李正臣，請修改高麗太祖祭廳及石物，而歲歛役巨，財力難辦，且前朝陵墓修改時，竝改其石物，曾無其例，命修其墳塋及祭廳，似或得宜。”上可之。上曰：“適見戊子春坊日記，本院闕員差出牌招之啓，有牌招事不允之批。此乃重牌招之意也。近來玉堂、春坊，循例入直時，皆請牌招，前所未有之事，申飭可也。”兵曹判書閔鎮厚請量減移御時卜物輸運及舉動時負持軍各色名數，以除坊民之弊，上可</p>

	<p>다.”</p> <p>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마침 무자년(1515)의 춘방 일기(春坊日記) 15156)를 보건대, 본원(本院)의 궐원(闕員)을 차출하여 패초(牌招)하기를 계청하였으나, 패초하는 일은 윤택(允許)하지 않는다는 비답이 있었으니, 이는 패초를 중하게 여기는 뜻이었다. 근래에 옥당(玉堂)과 춘방(春坊)에서 전례에 따라 입직(入直)할 때, 모두 패초하도록 청한 것은 전에 없던 일이므로 신칙(申飭)함이 옳다.”</p> <p>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이어(移御)할 때, 복물(卜物)의 수운(輸運)과 거동(舉動)할 때 부지군(負持軍)의 각색 명수(名數)를 헤아려 줄여서 방민(坊民)의 폐해(弊害)를 덜도록 청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언강(李彦綱)이 청하기를,</p> <p>“공장(公杖)으로 인하여 운명(隕命)하였다고 격고(擊鼓)해서 억울함을 호소(呼訴)하는 무리는, 먼저 사문(查問)을 시행하여 과연 사정(私情)을 두고 남형(濫刑)한 데에 관계되면 그 수령(守令)을 죄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민(部民)이 <수령을> 고소(告訴)한 율(律)로 논단(論斷)하소서.”</p> <p>하고, 인하여 말하기를,</p> <p>“근래에 인심이 교사(巧詐)하여 경외(京外)에서 소송하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아니하면, 격고(擊鼓)하고 혹 상언(上言)해서 ‘부탁을 들어주었다 [聽囑].’, ‘사사로움을 좃았다 [循私].’는 등의 말을 가지고 송관(訟官)을 위협하니, 송관(訟官)들은 모두 비방(誹謗)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 시일을 지연시키면서 기꺼이 결송(決訟)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낙송(落訟) 15157) 하여 격쟁(擊錚)할 경우 다시 사핵(查覈)하여, 만약 송관을 구무(構誣)한 일이 있으면, 율(律)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함이 합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는 형관(刑官)이 참작하여 처리하는 데 달려 있으니, 격쟁(擊錚)하는 자를</p>	<p>之。刑曹判書李彦綱，請因公杖隕命擊鼓訟冤之類，先行查問，果係挾私濫刑，則罪其守令，不然則論以部民告訴之律，仍曰：“近來人心巧詐，京外訟者，小不如意，輒擊鼓或上言，以聽囑循私等說，脅持訟官，訟官皆懷避謗之心，延拖時月，不肯決訟。自今落訟擊錚者，更加查覈，如有構誣訟官之事，依律科罪，似合宜。”上曰：“此在刑官參量處之，擊錚者，不必一一查問也。向日慶尙監司俞命弘狀啓，備言此弊，廟堂覆奏有曰：‘處決一從公平，則京司奔訴之弊，可以自祛。’此言誠是矣。爲官者，苟以公心處決，則雖或差誤，此由於意見之不逮，可謂公罪，而末世公不勝私，強弱異勢，強者理曲而多勝，弱者理直而多屈，民安得不冤乎？爲訟官者，當不計其人之強弱，只觀訟理曲直，而定其立落，苟有請囑者，雖理直而或置落科，則此弊庶可止息，申飭諸道，只令公正處決可也。”大司諫柳鳳輝言：“近因荐凶，年年設賑，而隨其備穀多少，爲之論賞高下，遂至濫取緋玉，遍歷州牧，凶年視同奇貨，災邑便成倖門。請自今畢</p>
--	--	---

일일이 사문(査問)할 필요는 없다. 지난날 경사 감사(慶尙監司) 유명홍(兪命弘)이 장계(狀啓)하여 이러한 폐단을 갖추어 말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처결(處決)하는 데에 한결같이 공평(公平)함을 따르면, 경사(京司)에 달려와 호소하는 폐단이 저절로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이 진실로 옳다. 관원(官員)이 된 자가 진실로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처결(處決)한다면, 비록 차오(差誤)가 있더라도 이는 의견이 미치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공죄(公罪)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세(末世)에서는 공정함이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강자(强者)와 약자(弱者)가 세력이 다르므로 강자는 이치가 바르지 못해도 이기는 자가 많고, 약자는 이치가 곧고 바르면서도 지는 자가 많을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송관(訟官)이 된 자는 마땅히 그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을 계교하지 말고, 단지 송사(訟事)의 이유가 옳고 그른가만 살펴보아 그 입락(立落)을 정하고, 진실로 청축(請囑)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이치가 곧고 바를 망정 혹 낙과(落科)로 처치(處置)한다면, 이러한 폐단은 거의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제도(諸道)에 신칙(申飭)해서 단지 공정하게 처결하도록 함이 옳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유봉휘(柳鳳輝)가 말하기를,

“근년에 거듭 흉년이 들어 해마다 진휼(賑恤)을 베푸는데, 그 비축한 곡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논상(論賞)의 고하(高下)를 삼으므로, 마침내 외람되게 비옥(緋玉)15158)을 받아 주목(州牧)을 두루 역임(歷任)하게 되니, 흉년(凶年)을 기화(奇貨)와 같이 보게 되었고, 재해(災害)를 받은 고을은 문득 요행(僥倖)의 문(門)을 이루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진휼(賑恤)을 마치고 장문(狀聞)한 후에 곡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논상(論賞)하던 일을 일체 시행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체 막을 수는 없으나, 간신(諫臣)이 계달(啓達)한 본의(本意)가 모두 좋다.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고 해조(該曹)에서 복계(覆啓)할 때에, 또한 마땅히

賑狀聞後，穀物論賞，一切勿施。” 上曰：“不可一切防塞，而諫臣所達本意儘好。道臣狀聞及該曹覆啓時，亦宜詳審，俾無冒濫事，申飭可也。” 又言：“近來宰臣請浴之行，太涉紛紜。實病人所共知者外，竝宜勿施。請令政院察處。” 上從之。執義李世最言：“今番忠淸左道監試設科時，以陰城縣監李世機，差定試官。本道文臣守令，非止一二，而乃以秩卑之人，苟然充差，科場不嚴，國體有損。請忠淸監司洪重夏，從重推考。” 上允之。閔鎮厚請申明乙卯定式先聖、先賢子孫、七般賤役之外，毋得頓免軍役，王姓人亦依此例施行。承旨李濟繼言：“箕子、文成公、文益漸子孫，憑藉免軍役之舊規，竝與相當之役，而百計圖免。新羅敬順王子孫，符同兵曹下吏，圖出受教文籍，瞞過守令，中間脫漏者，其弊甚多。” 上竝命申飭。

<p>숙종 49권, 36년</p>	<p>상세하게 살펴서 모람(冒濫)된 일이 없도록 신칙(申飭)함이 옳다.” 하였다. <유봉휘가> 또 말하기를, “근래에 재신(宰臣)들이 목욕을 청하는 일이 너무 분운(紛紜)하니, 진실로 병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경우 외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컨대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살펴서 처분(處分)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君)이 그대로 따랐다. 집의(執義) 이세최(李世最)가 말하기를, “금번에 충청 좌도(忠淸左道)에서 감시(監試)를 설과(設科)하였을 때, 음성 현감(陰城縣監) 이세기(李世機)를 시관(試官)으로 차정(差定)하였습니다. 본도(本道)에 문신(文臣)의 수령(守令)이 한둘에 그치지 않는데, 관질(官秩)이 낮은 사람으로 구차스럽게 채워서 차정하였으니, 과장(科場)이 엄중하지 못하고 국체(國體)에 손상됨이 있었습니다. 청컨대 충청 감사(忠淸監司) 홍중하(洪重夏)를 종종 추고(從重推考)하소서.” 하니, 임금(君)이 윤택(允)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을묘년에 정식(定式)한 선성(先聖)·선현(先賢)의 자손(子孫)과, 칠반 천역(七般賤役)15159) 외에는 군역(軍役)을 탈면(頗免)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을 거듭 밝히고, 왕씨(王氏)의 사람들도 또한 이 예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자, 승지 이제(李濟)가 잇달아 말하기를, “기자(箕子)·문성공(文成公)15160) ·문익점(文益漸)의 자손(子孫)은 군역(軍役)을 면제한 구규(舊規)를 병자하여, 그 해당된 부역(賦役)까지도 여러 가지로 계책을 내어 모면하고자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의 자손은 병조(兵曹)의 하리(下吏)와 부동(符同)하여, 수교 문적(受敎文籍)을 도득(圖得)해 내고는 수령을 속여 중도에서 벗어나 빠졌으니, 그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하니, 임금(君)이 아울러 신칙(申飭)하도록 명하였다.</p>	<p>給京畿失稔尤甚邑未除草, 全不掛鎌</p>
--------------------	---	--------------------------

<p>(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9월 25 일(병진) 2번째기사</p>	<p>대지 못한 곳에 전재(全災)15161) 를 주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조정에서 단지 천반 포락(川反浦落)15162) 과 수침(水沈)·복사(覆沙)의 곳에만 급재(給災)를 허락하도록 하였는데, 관찰사(觀察使) 신임(申銓)이 여러 번 장계(狀啓)하여 힘써 청하니, 이에 허락한 것이다.</p>	<p>處, 全災。 初, 朝家只許川反浦落, 水沈、覆沙災, 觀察使申銓屢狀力請, 乃許之。</p>
<p>숙종 49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11월 6 일(병신) 1번째기사</p>	<p>황감(黃柑)을 반사하고 반궁(泮宮)15219) 에서 시사(試士)하여, 수석(首席)을 차지한 유생(儒生) 권익관(權益寬)은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라 명하였다.</p>	<p>丙申/頒柑試士于泮宮, 命居首儒權益寬, 直赴殿試。</p>
<p>숙종 49권, 36년 (1710 경인 / 청 강희 (康熙) 49년) 11월 10 일(경자) 2번째기사</p>	<p>간원(諫院)에서 논하기를, “육포(肉脯) 또한 금물(禁物)에 관계되므로, 헌리(憲吏)가 붙잡은 것은 애초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며, 과연 이것이 사송(賜送)한 물건이라면 또한 반드시 서표(書標)가 있는 후에야 마야흐로 병험(憑驗)할 수 있는 것이니, 대관(臺官)이 반드시 핵실(覈實)하여 처분하고자 하였던 것은 뜻이 상세하게 살피려는데 있었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조사하여 처결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수본(手本)을 앞세워 금리(禁吏)를 죄주도록 청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해당 내관(內官)을 추고(推考)하고, 이후 하사한 육포(肉脯)를 들고 낼 때에는 반드시 서표(書標)를 지참하는 일을 거듭 신칙(申飭)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내관(內官)을 추고(推考)하는 일은 당초의 수본(手本)이 이미 전교로 인한 것이었고, 또 사송(賜送)할 때에는 본래 서록(書錄)이 있으니, 신칙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p>	<p>諫院論: “肉脯亦係禁物, 憲吏執捉, 初非異事。 果是賜送之物, 則亦必有書標, 然後方可憑驗。 臺官之必欲覈處, 意在詳審, 而不待本府查決, 徑先手本, 至有請罪禁吏之舉。 請當該內官推考, 此後賜脯出入時, 必持書標事, 更加申飭。” 上答曰: “內官推考事, 當初手本, 既因傳教, 且賜送本有書錄, 不必申飭矣。”</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1월 5일</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양역(良役)을 변통(變通)하는 일로 여러 신하들과 논란(論難)하니, 혹은 ‘마땅히 양천 종모역(良賤從母役)15307) 의 규례(規例)를 회복해야 한다.’고도</p>	<p>甲午/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徐宗泰, 以良役變通事, 與諸臣論難, 或以爲宜復良賤從母役之規, 或以爲宜</p>

(갑오) 1번째기사

하고, 혹은 ‘마땅히 호포(戶布)와 구전(口錢)의 법(法)을 행해야 한다.’라고도 하며, 혹은 ‘긴요하지 않은 명목(名目)으로 투속(投屬)하는 길은 마땅히 막아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에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입담(立談)하는 사이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조용히 강구하여 변통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개성 유수(開城留守)의 사호(使號)를 품정(稟定)하도록 명하니, 우의정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당초 대흥 산성(大興山城)을 축조(築造)할 때에 조가(朝家)에서 관리사(管理使)의 칭호를 주었는데, 이제까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하고, 서종태도 또한 이르기를,
“사호(使號)로 제수하는 것이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관리사(管理使)의 이름을 주게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 정시선(鄭是先)이 승교(乘轎)한 일로 인하여 불안(不安)해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수교(受教) 가운데 ‘음무(蔭武)15308)는 승교(乘轎)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유수(留守)와 방백(方伯)을 아울러 지칭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 이는 마땅히 명백한 정식(定式)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서종태(徐宗泰)·김창집(金昌集)이 모두 이르기를,
“이미 유수(留守)와 방백(方伯)을 임명하였다면, 비록 음무(蔭武)라 하더라도 승교(乘轎)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를 윤택하였다. 제신(諸臣)이 또 이르기를,
“호남(湖南)의 진도(珍島) 등 6읍(邑)은 재황(災荒)이 특히 심하니, 마땅히 고희(顧恤)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여 춘추미(春秋米)를 1결(結)마다 1두(斗)씩 특별히 감(減)해 주도록 하였다.

行戶布、口錢之法，或以爲宜防不繁名目投屬之路。上以爲：“非立談間可定，使之從容講究變通。”上命稟定開城留守使號，右議政金昌集曰：“當初築大興山城時，朝家擬授以管理使號，而至今因循矣。”徐宗泰亦以爲授以使號，無不可矣。”上命授管理使號。兵曹判書閔鎭厚曰：“黃海監司鄭是先，似聞因乘轎事不安云。受教中蔭武不得乘轎者，似非竝指留守、方伯，此宜有明白定式。”徐宗泰、金昌集，皆以爲既拜留守、方伯，則雖蔭武，當爲乘轎。”上命許之。諸臣又以爲：“湖南珍島等六邑，災荒特甚，宜有顧恤之道。”上命特減春秋米，每一結各一斗。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1월 25 일(갑인) 1번째기사</p>	<p>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다. 수찬(修撰) 이세근(李世瑾)이 말하기를, “전(前) 판윤(判尹) 정재희(鄭載禧), 판부사(判府事) 윤증(尹拯), 봉조하(奉朝賀) 남구만(南九萬)은 나이가 모두 80을 넘었으니, 마땅히 별도의 은전(恩典)이 있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정재희는 가자(加資)하게 하고, 두 대신(大臣)에게는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보내 주라고 하였다.</p>	<p>甲寅/召對玉堂官。 修撰李世瑾曰：“前判尹鄭載禧、判府事尹拯、奉朝賀南九萬， 年皆踰八十， 宜有別樣恩典。” 上命加載禧資， 兩大臣則輸送衣資、食物。</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2월 19 일(무인) 2번째기사</p>	<p>전라도 순무사(全羅道巡撫使) 권상유(權尙游)가 순찰(巡察) 중에 진도군(珍島郡)에 도착하여 화약(火藥)을 시험하여 태우다가 잘못해서 실화(失火)하여 군관(軍官) 이압(李岌)·감영(監營) 군관(監營軍官) 위혁만(魏赫萬)은 얼굴 부분이 문드러져 벗겨졌고, 관속(官屬) 7인은 더욱 불에 덴 상처가 심하였으며, 4인은 치사(致死)하였고, 권상유(權尙游)도 또한 겨우 몸만 빠져나와 죽음을 면하였다. 이 사실을 듣고 임금이 불에 타죽은 자는 구휼(救恤)하는 은전(恩典)을 거행(舉行)하라고 명하였다.</p>	<p>全羅道巡撫使權尙游， 巡到珍島郡， 燃試火藥， 誤爲失火， 軍官李岌、監營軍官魏赫萬， 面部爛脫， 官屬七人， 尤爛傷， 四人致斃， 尙游亦僅以身免。 事聞， 上命燒死者舉恤典。</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4월 9일 (정묘) 2번째기사</p>	<p>교리(校理) 임상덕(林象德)이 현도(縣道)를 통하여 진소(陳疏)하여, 먼저 북한산(北漢山)의 축성(築城)은 충분히 강론(講論)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음을 논하고, 다음으로 양역(良役)을 변통(變通)하는 방법과 호포(戶布)·구전(口錢)·대군적(大軍籍)은 모두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으니,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확정하게 하고 아울러 외방(外方)에 있는 대신(大臣)도 불러 같이 의논할 것을 진달하고, 이어 말하기를, “일을 새로 만드는 것이란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는 데 있고, 기강의 근본은 의지를 세우는 데 있으며, 의지를 세우는 방도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공경하는 데 있으니, 사사로운 욕심을 누르고[克己] 사물(事物)의 이치를 연구(研究)하는 것이 바로 그 절목(節目)의 순서입니다.” 하고, 또 청하기를, “양관(兩館)15443) 으로 하여금 세종조(世宗朝)에서 예우(禮遇)했던 대신(大</p>	<p>校理林象德， 縣道陳疏， 先論北漢築城不可不熟講而詳審， 次陳良役變通之道， 戶布、口錢、大軍籍， 皆不可輕行， 竝令廟堂商確， 兼召在外大臣同議。 仍言：“作事在於振紀綱， 紀綱之本， 在立志， 立志之方， 在誠敬， 而克己窮理， 乃其節目次第。 又請令兩館， 蒐輯世宗朝禮遇大臣、親近群僚， 崇獎儒術等事， 作爲冊子， 以備玩覽， 一意繼述。 又言殿下於進退大臣， 亦有呼來斥去之意， 忽忽擢用， 草草罷免， 一離黃閣， 咨訪罕及， 大臣亦自期甚淺，</p>

臣)과 친근(親近)했던 군료(群僚), 그리고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장려한 등의 일을 수집(蒐輯)하여 책자(冊子)로 만들어서 즐겨 보시는 데 대비하여 오로지 계술(繼述)하는 데 뜻을 두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 대신을 등용하고 파면함에 있어서 또한 오라고 불렀다가 그 길로 쫓아 버리는 뜻이 있어, 총총(忽忽)히 탁용(擢用)하였다가 초초(草草)하게 파면하시니, 한번 재상[黃閣]을 떠나면 의논[咨訪]이 미침이 드물고, 대신 또한 스스로 기약함도 몹시 천박(淺薄)하여 정부(政府)와 비국(備局)을 보기를 여관[傳舍]과 같이 합니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은혜(恩禮)를 두는 데 힘쓰고 공효(功效)를 이루도록 위임(委任)하여 독책(督責)하며, 비국(備局)의 모임에 만약 시임(時任)이 유고(有故)함을 당하면 원임(原任)으로 하여금 자리에 나오게 하여 정사(政事)를 폐하는 날이 없도록 하소서.”

하였다. 또 논하기를,

“각읍(各邑)의 경내(境內)에서 무예(武藝)를 지닌 자라면 귀천(貴賤)을 논하지 말고 감영(監營)·병영(兵營)에 초선(抄選)하여 보고하고, 병조(兵曹)에서는 연초에 별도로 어사(御史)를 보내어 널리 모든 재주 있는 이를 찾아 모아 그 속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가리어 전시(殿試)15444)에 나아가게 한다면, 그를 용동(聳動)하게 함으로써 국가(國家)에 위급(危急)한 일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군(義軍)을 만들어 대적할 사람이 없는 정병(精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다음으로 논하기를,

“호남(湖南) 연해(沿海) 고을의 전세(田稅) 대동(大同)15445) 을 이미 가을을 기다려 퇴봉(退捧)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까마는, 가령 내년에 풍년[豐登]이 든다 해도 1년에 두 해의 세조(稅租)를 징납(徵納)하게 되면 결코 일정한 기준대로 받아들일 이치가 없을 것이니, 차라리 금년에 그 반을 양감(量減)토록

視政府、備局，有同傳舍。宜自今務存恩禮，委任責成，備局之坐，若值時任有故，則俾原任赴坐，使無廢事之日也。又論各邑境內，有武藝者，無論貴賤，抄報監、兵營，兵曹初歲，別遣御史，廣取諸技，擇其尤者，賜赴殿試，以聳動之，國家有急，別作義軍，可成無敵之精兵矣。”次論湖南沿海邑田稅大同，既有待秋退捧之令，假令來歲豐登，一年徵兩年之稅，決無準捧之理，毋寧趁今量減其半。上賜優批。田稅量減事，令該曹稟處。後覆啓，許減。

	<p>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려 주고, 전세(田稅)를 양감(量減)하는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는데, 뒤에 복계(覆啓)하니 감량하는 것을 윤택(允許)하였다.</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5월 15 일(계묘) 2번째기사</p>	<p>통신사(通信使) 조태억(趙泰億), 부사(副使) 임수간(任守幹), 종사관(從事官) 이방언(李邦彦)이 사폐(辭陛)하니, 명하여 인견(引見)하였다. 조태억·임수간이 아뢰기를.</p> <p>“예단(禮單)을 만약 가지고 갔다가 받지 않는다면 나라를 욕되게 함이 크니, 보내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p> <p>하고, 이방언은 아뢰기를,</p> <p>“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가지고 갔다가 저들이 만약 항례(抗禮)는 온당치 않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목숨을 걸고 쟁집(爭執)하여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보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마 강호(江戶)의 뜻일 것이다. 가지고 갔다가 받지 않으면 한갓 스스로 욕되게 할 뿐이니, 나의 뜻도 또한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p> <p>하고, 이내 명하여 선운(宣醞)15508 을 내려 주었는데, 임수간은 주량(酒量)이 자못 크다 하여 3배(杯)를 넘지 말도록 훈계하였다.</p>	<p>通信使趙泰億、副使任守幹、從事官李邦彦辭陛，命引見。泰億、守幹奏曰：“禮單若持往不受，則辱國大矣，不如勿送。”邦彦曰：“臣意姑欲持往。彼若以抗禮不便爲言，則當以死爭。”上曰：“勿送云者，蓋江戶之意也。持往不受，徒自辱耳。予意亦欲不送也。”仍命宣醞，以守幹酒戶頗寬，戒以毋過三杯。</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6월 5일 (계해)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문안(問安)하니, 답하기를,</p> <p>“수라(水刺)의 진어(進御)를 싫어하고 꺼림이 올 여름과 같은 적이 있지 않았으며, 어제와 오늘은 겸하여 오심(惡心)과 설사(泄瀉)의 증후가 있어 침수(寢睡)가 편안하지 못하다.”</p> <p>하므로,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니, 임금은 수작(酬酌)하는 것이 피곤하였고, 설사의 증후는 마치 대롱[管] 속에다 물을 대는 것과 같아서 고달픔이 심하여 쓰러져 누웠다.</p>	<p>癸亥/藥房問安，答曰：“水刺厭進，未有如今夏，昨今兼有惡心泄瀉之候，寢睡欠安。”藥房入診，上酬酌，困倦，泄候如管中注水，憊爾頽臥。</p>
<p>숙종 50권, 37년</p>	<p>임금의 환후(患候)가 오늘부터는 수라(水刺)를 들기 시작했고 침수(寢睡)도 조</p>	<p>己巳/上候自今日始進水刺，寢睡差</p>

<p>(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6월 11 일(기사) 1번째기사</p>	<p>금 나아졌다.</p>	<p>勝。</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6월 24 일(임오) 1번째기사</p>	<p>임금의 안후(安候)와 수라(水刺)가 평상과 같이 회복되었다.</p>	<p>壬午/上候水刺復常。</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7월 18 일(을사) 2번째기사</p>	<p>접반사(接伴使) 유집일(兪集一)이 데리고 간 역관(譯官)이 사관(查官)을 문후(問候)하는 일로 냇물[川水]을 건너다가 마침 비가 내려 물이 창일(漲溢)하여 빠져 죽었는데, 시체(尸體)를 끝내 건져내지 못하였다. 본도(本道)의 도사(都事)가 이를 계문(啓聞)하니, 구휼(救恤)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p>	<p>接伴使兪集一帶去譯官，以查官問候事，渡川水，適值雨下，水漲滄死，尸體終未拯出。本道都事以聞，命舉恤典。</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9월 24 일(경술) 4번째기사</p>	<p>명하기를, “충청도(忠淸道) 연강(沿江) 4, 5고을의 논이 여러 날 동안 물에 잠긴 곳은 정밀하게 조사하여 급재(給災)하라.” 하였다.</p>	<p>命忠淸道沿江四五邑水田之累日水洗處，精覈給災。</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10월 2 일(정사) 4번째기사</p>	<p>부제학(副提學) 유봉휘(柳鳳輝)가 응지소(應旨疏)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말하기를, “임금의 덕(德)은 학문(學問)에 힘쓰는 것과 말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하고, 또 붕당(朋黨)의 폐단과 백골 징포(白骨徵布)의 피해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금년 농사는 크게 모두 흉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무릇 양군(良軍)으로서 죽은 자는 이미 입안(立案)하였거나 입안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다 조사해 내어 특별히 금년 신포(身布)의 탕감(蕩減)을 허락하여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이소서.”</p>	<p>副提學柳鳳輝上應旨疏。大略以爲：君德不外乎懋學也，聽言也。 又言：朋黨之弊，白骨侵徵之害。 又曰：今年穡事，大都爲失稔之歸。凡良軍之物故者，毋論已立案未立案，一併查出，特許蕩減今年身布，以示軫恤之意。 又言：</p>

	<p>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번 중궁전(中宮殿)께서 이어(移御)하시던 날 대신(大臣)에게 반제(泮製)15721) 를 출령(出令)한 것은 제때가 아님을 면치 못하였으며, 대신들이 일제히 모이고 많은 선비들이 다 모였는데 즉시 늦춰 시행하기를 명한 것은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추조(秋曹)15722) 의 장관(長官)을 종2품(從二品)으로 의망(擬望)하여 들이라는 전교는 해당 품질(品秩) 가운데 사람이 없는 까닭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묘당(廟堂)에서 단지 밖에 있는 한 사람만을 천거한 것은 변통하는 본의를 아주 잃었으며, 성명께서 곧장 버리고 쓰지 않은 것 역시 ‘누가 나를 위해 쓸만한 사람을 방문하겠는가[疇咨]’라는 뜻이 아닙니다.”</p> <p>하고, 끝에 말하기를, “전(前) 판서(判書) 유득일(兪得一)은 별도로 강(江)이 가까운 땅을 점거하여 크게 제택(第宅)을 짓고 있는데 아주 사치스럽고, 전 설서(說書) 홍석보(洪錫輔)는 이미 큰 집을 사들였는데, 이것도 모자라 큰 재목(材木)을 운반하여 네거리에도 쌓아 두고 있습니다. 중신(重臣)·근신(近臣)이 이러하니, 백성들의 일이야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p> <p>하고는, 이어 청하기를, “상방(尙方)15723) 에서 으레 무역하는 중국 물건을 전에 비해 감량(減量)하여 백성들을 인도하는 근본을 삼으소서.”</p> <p>하니, 답하기를, “의논해서 처리할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나, ‘대신을 대접하는 것이 부족하다.’ ‘곧바로 버리고 쓰지 않았다.’는 등의 말에 이르러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두 신하의 일이 과연 소에서 논한 것과 같다면 참으로 놀랍고, 상방에서 으레 하는 무역은 이미 감량하였다.”</p> <p>하였다.</p>	<p>頃日中宮殿移御之日， 大臣出令泮製， 未免爲非時， 而大臣齊會， 多士咸聚， 則直令退行者， 恐有歉於待大臣之道， 而秋曹長官， 以從二品擬入之教， 由於當品中乏人之故， 廟堂之只舉在外一人者， 殊無變通之本意， 而聖明之直捨不用， 亦非疇咨之意也。</p> <p>未曰： 前判書兪得一， 別占近江之地， 大起第宅， 極其宏侈， 前說書洪錫輔， 既已買得甲第， 而此猶不足， 輦輸大木， 積置通衢。 重臣、近臣如此， 閭巷小民之事， 又何足言也？ 仍請尙方例質唐物視前量減， 以爲導民之本。</p> <p>答曰：“議處事， 令廟堂處之， 而至於有歉待大臣， 直捨不用等語， 予所未曉也。 兩臣事， 果如疏論， 則誠可駭然。 尙方例質， 已量減矣。”</p>
--	---	--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11월 10 일(을미)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할 때에 임금(王)이 왕자(王子)가 마마를 앓고 있다는 것으로써 주원(廚院)에서 올리던 어장(魚鱒)15794 을 모두 정지하고, 수라(水刺) 역시 밖에서 지어 들이라고 명하였는데, 제조(提調) 조태구(趙泰耆) 등이 이것을 말하여 자세히 생각해서 행할 것을 힘껏 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p>	<p>乙未/藥房入診時，上以王子患痘，命廚院所供魚鱒，皆停止，而水刺亦自外治辦以入，提調趙泰耆等以此爲言，力請審思而行之，上終不從。</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11월 16 일(신축) 1번째기사</p>	<p>중궁전(中宮殿) 의녀(醫女)가 입진하였다. 12일 이후부터 두통[頭疼]·오심(惡心)·경계(驚悸)·번열(煩熱) 등의 증세가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여러 증세가 점차 더하고 겹하여 뱃속이 편치 않은 증세가 있어 분약방(分藥房)에서 화해(和解)하는 약을 지어 들이고, 또 이런 뜻을 대전(大殿)에 계달하였다. 약방에서 청하기를, “창덕궁(昌德宮) 권외(闕外)로 나아가 분원(分院)의 제조(提調)와 약을 의논하고자 하는데 구기(拘忌) 때문에 감히 예궐(詣闕)하지 못하고 장무관(掌務官)에게 가져가게 하여 입계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권외(闕外)로부터 등서(騰書)하여 보내고 또 중궁에 전교(傳教)하여 반드시 대전(大殿)의 하교(下教)를 기다려서 복약(服藥)하고 조금 늦어질 염려가 있을 것 같으면 매양 하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진복(進服)하겠다는 뜻을 계품(啓稟)하여 결정하라.” 하였다.</p>	<p>辛丑/中宮殿醫女入診。自十二日後，有頭疼、惡心、驚悸、煩熱等症。昨朝，諸症漸加，兼有腹中不平之候，分藥房劑入和解之藥，又以此意，啓達于大殿。藥房請進詣昌德宮闕外，與分院提調議藥，而以拘忌，不敢詣闕，令掌務官持去入啓，批答自闕外騰書以送，且中宮傳教，必待大殿下教，而服藥似有差緩之慮，不必每待下教而進服之意，啓稟定奪。</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12월 5 일(기미) 2번째기사</p>	<p>유상(柳瑄)이 입진하였다. 【이후로 연일 입진하였다.】 중궁전의 마마 빛깔이 독기(毒氣)가 없이 깨끗하여 붉은 윤기가 없으며, 과근(顆根)15817) 이 얇고 단단하지 않으므로 의약청(議藥廳)에서 보허(補虛)의 약제를 조제해 올렸다.</p>	<p>柳瑄入診中宮殿。【自此連日入診。】痘色無毒氣，淡而不紅潤，顆根淺薄不堅實，議藥廳劑進補虛之劑。</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12월 16</p>	<p>승지 이태좌(李台佐)가 금부(禁府)에 달려가 전옥(典獄)의 여러 죄인을 한결같이 아울러 방송(放送)하였는데, 그 가운데 아들을 죽인 죄인 <광산 도정(光山都正)> 이하(李河), 장오 죄인(贓汚罪人) 변이찰(卞爾札), 여복(女服)으</p>	<p>承旨李台佐馳往禁府，典獄諸罪人，一併放送，而其中殺子罪人河，贓汚罪人卞爾札，變着女服罪人黃順中及權高等</p>

<p>일(경오) 5번째기사</p>	<p>로 변장한 죄인 황순중(黃順中) 및 권설(權高) 등 죄명이 비상한 자 함께 13인은 경솔히 석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계품하였으나 아울러 방송하라 명하였다.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여 아뢰기를, “상후(上候)의 수라를 들기 싫어하는 증세에 위(胃)를 열고 담(痰)을 치료하는 약제(藥劑)를 의논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니, 허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침에 비망기(備忘記) 가운데 강도(強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잘못 걸려든 양민(良民)이 없지 않을 것이니, 외방(外方)에서는 도신(道臣)이 친히 조사하여 논계(論啓)하고, 경중(京中)은 형관(刑官)이 자세히 복심(覆審)하여 품처하게 하여 잘못 걸려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니, 약방 제조 이언강(李彦綱)이 청하기를, “살옥(殺獄)의 체수(滯囚)인 자도 역시 품지(稟旨)하여 작처(酌處)해야 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명하기를, “문안(文案)을 자세히 살펴 계문(啓聞)하여 품처하라.” 하였다. 이언강이 또 말하기를, “경중(京中)의 살옥도 작처할 만한 자가 한둘 있기에 앙품(仰稟)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언강에게 명하기를, “문안을 자세히 살펴 품처(稟處)하라.” 하였다.</p>	<p>罪名非常者，合十三人，則以不可輕釋之意，啓稟，竝命放送。藥房入診，以上候水刺厭進，議進開胃治痰之劑，許之。上曰：“朝者備忘中，強盜不爲學論，而其中亦不無良民之橫罹者。外方則道臣親查論啓，京中則刑官詳覈稟處，俾無橫罹之冤可也。”藥房提調李彦綱，請殺獄滯囚者，亦宜稟旨酌處，上命詳考文案，啓聞稟處。彦綱又以京中殺獄可以酌處者，一二事仰稟，上命彦綱，詳考文案稟處。</p>
<p>숙종 50권, 37년 (1711 신묘 / 청 강희 (康熙) 50년) 12월 27일(신사) 5번째기사</p>	<p>대제학(大提學) 김진규(金鎭圭)를 명초(命招)하여 감귤(柑橘)을 내려 반궁(泮宮)에서 시사(試士)하게 하였는데, 수석을 차지한 조문명(趙文命)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p>	<p>命招大提學金鎭圭，賜柑試士于泮宮，賜居首趙文命第。</p>
<p>숙종 51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p>	<p>하교(下教)하기를, “권농(勸農)의 교서(敎書)를 매양 해[歲]의 처음에 내리건만, 열읍(列邑)의 수</p>	<p>朔乙酉/敎曰：“勸農之敎，每下歲首，而列邑守令，視之文具，不曾着意奉</p>

<p>(康熙) 51년) 1월 1일 (을유) 1번째기사</p>	<p>령(守令)이 이를 문구(文具)처럼 보아서 일찍이 뜻을 착실히 하여 봉행(奉行)치 않으니, 어찌 미안(未安)함의 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해가 이미 바뀌어 봄 농사가 멀지 않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별달리 신칙하여서 과업(課業)을 권면(勸勉)하여야 하며, 또 제도(諸道) 중에 재해(災害)를 입음이 더욱 심한 곳은 또한 장차 설진(設賑)15868) 하되, 영동(嶺東)에 이르러서는 재황(災荒)이 가장 혹심(酷甚)하니, 모름지기 각별히 주진(賑賑)하여야 한다. 애답다, 나의 적자(赤字)가 연척(捐瘠)15869) 을 면치 못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도신(道臣)을 신칙하여서 나의 농사를 중히 여기고, 백성을 긍휼(矜恤)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p>	<p>行，豈非未安之甚乎？歲籥已改，東作不遠，固當另飭勸課。且諸道中被災尤甚處，亦將設賑，至於嶺東災荒最酷，必須各別賑。哀我赤子，不免捐瘠，其令廟堂，申飭道臣，以示予重農恤民之意。”</p>
<p>숙종 51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2월 3일 (병진) 2번째기사</p>	<p>집의(執義) 양성규(梁聖揆)가 상소(上疏)하여 경기(京畿) 안의 각 고을의 처음에 씨를 심지 못한 곳에 쌀 3두(斗)를 감(減)하는 명을 정지하고 당초 정한 대로 특별히 급재(給災)하기를 청하고, 또 정시를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에서 설행(設行)하여서 협착(狹窄)하여 용납하기 어려운 근심이 없게 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윗 조항의 진달한 바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라. 정시는 반드시 시어소(時御所)15949) 의 전정(殿庭)에서 설행함이 전부터 내려오는 관례(慣例)이니, 반드시 변개(變改)할 것 없다.” 하였다.</p>	<p>執義梁聖揆上疏，請寢畿內各邑初不付種處，減米三斗之命，依當初所定，特爲給災。又請庭試，設行於昌德宮仁政殿，俾無狹窄難容之患。答曰：“上款所陳，令廟堂稟處。庭試必設於時御所殿庭，自是古例，不必變改也。”</p>
<p>숙종 51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5월 5일 (정해) 4번째기사</p>	<p>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아! 나라가 불행하여 천재(天災)가 거듭 닥치고 가뭄의 혹독함이 금년보다도 심한 적은 없었다. 입하(入夏) 이래로 고택(膏澤)16129) 이 내리지 아니하여 낮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밤에는 별이 반짝이며 적은 비는 왔다가 금방 개이고 큰 비는 아직도 소식이 없다. 보리 농사는 이미 흉년이 되었고 곡식의 싹은 장차 시들려 하니, 지금 때를 놓여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가을의 성숙(成熟)을 어찌 바라리오. 나라가 믿는 바는 백성이고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p>	<p>上下備忘記曰： 嗚呼！國家不幸，天災荐至，而旱暵之酷，未有甚於今年也。入夏以來，膏澤不降，晝以風淒，夜則星嘒，小雨旋霽，大霈尙靳。麥既歉矣，苗將枯矣，失今不雨，奚望西成？國之所恃者民，民之所天者食，民而無食，國而無民，</p>

것은 먹을 것이니, 백성이 먹을 것이 없고 나라에 백성이 없다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임금이 되겠는가. 아! 하늘은 헛되이 응(應)하지 아니하니, 죄가 실로 내게 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스스로 반성하되, 부끄럽고도 두려운 마음이 어찌 끝이 있으랴. 대희(大犧)16130) 가 되고자 간절히 바라 친히 사단(社壇)에 빌고자 하였으나 각질(脚疾) 때문에 억지로 하기 어려워 끝내 하지 못하였으니, 다만 스스로 우울(憂鬱)하여 한 가지 병을 더한 듯하다. 내가 어찌 감히 넓은 집 위에서 옥식(玉食)의 아름다운 맛을 편안히 여기랴. 아! 보잘것 없는 이 작은 몸이 비덕(否德)16131) 으로 자리를 욕되게 한 지 이에 서른 하고도 또 여덟 해이다. 내 마음은 치치(致治)에 절실하였으나 다스림이 그 효험(効驗)을 보지 못하였고, 나의 마음은 애민(愛民)에 절실하였으나 백성이 그 은택(恩澤)을 입지 못하였다. 사심(私心)을 극복하는 공효(功效)를 다하지 못함이 있고, 마음을 비워 받아들이는 도량이 넓지 못함이 있다. 기강(紀綱)을 진작(振作)하고자 하지 않음은 아니나 퇴미(頹靡)의 근심이 더욱 심하고, 실공(實功)을 힘쓰고자 하지 않음은 아니나 허위(虛僞)의 풍습(風習)이 아직도 많으니, 모두 나의 잘못이다. 이제 하늘이 재앙을 내림이 이에 말미암지 않은 줄 어찌 알 수 있으랴.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책(自責)하며 신린(臣隣)에게 도움을 구하는 까닭이다.

이제부터 정전(正殿)을 피하여 더욱 대월(對越)16132) 의 성의(誠意)를 돈독하게 할 것이니, 어찌 감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늦출 수 있으랴. 승지(承旨)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敎書)를 초(草)하여 정부(政府)에서부터 널리 직언(直言)을 구하여 각각 소회(所懷)를 진술(陳述)하되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 말의 절실(切實)함을 내가 가상(嘉尙)히 여기는 바이니, 말이 비록 중도(中道)를 넘는다 할지라도 죄주지 않으리라. 아! 재앙이 실로 나로부터 연유하였으니, 내가 스스로 몸을 닦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어찌 남에게 책임지울 수 있으랴만, 그 서로 경계하는 도리(道理)에 있어 또 어찌 한 두 가지 더욱

吾誰與爲君? 嗚呼! 天不虛應, 罪實在予。夙夜自省, 慙懼何極? 切欲代犧, 親禱社壇, 而脚疾難強, 終未果焉, 只自憂鬱, 如添一病。予何敢安於廣廈之上, 玉食之美也? 嗚呼! 眇予小子, 否德忝位, 三十有八年于茲。予之心, 切於致治, 而治不見其效, 予之心切於愛民, 而民不被其澤。克己之功, 有所未盡, 虛受之量, 有所不弘。非不欲振紀綱, 而頹靡之患彌甚, 非不欲務實功, 而虛僞之習尙多, 皆予之失也。今天之降災, 安知不由於此耶? 此予所以反躬自責, 求助於臣隣者也。自今避正殿, 益篤對越之誠, 敢弛戒懼之心? 承旨代予草敎, 宜自政府, 廣求直言, 各陳所懷, 毋有所隱。言之剴切, 予所嘉尙, 言雖過中, 予不以罪。嗚呼! 災實由予, 予當自修之不暇, 何可責人, 而其在交相儆戒之道, 亦豈無一二加勉者乎? 惟公惟正, 可以服人。天官居六卿之首, 而語其職則任人也。果能賢才是用, 不肖是斥, 用捨公而是非明, 則不惟大小之官, 各得其任, 朝著之和靖, 亦由此可期矣。若夫方岳之臣, 廉白自持, 威惠並行, 黜陟幽明,

<p>힘쓸 것이 없으랴. 오직 공정(公正)만이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p> <p>이조(吏曹)는 육경(六卿)의 첫머리를 차지하니, 그 직책을 말한다면 사람을 임용(任用)하는 것이다. 과연 능히 현명한 인재를 쓰고 불초(不肖)한 자를 물리쳐서 용사(用捨)가 공정하고 시비(是非)가 분명하다면, 비단 대소(大小)의 벼슬아치가 각각 그 임무를 다할 뿐 아니라, 조정(朝廷)의 화평(和平)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저 방백(方伯)의 신하들은 청렴 결백을 스스로 지켜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행해지고 선악(善惡)을 출척(黜陟)함이 한결같이 공심(公心)에서 나오며, 절진(節鎭)의 장수는 사졸(士卒)을 어루만지고 용병(戎兵)을 다스려 언제나 적과 보루(堡壘)를 마주 대한듯 감히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맡긴 중책(重責)을 거의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아! 그대들 중외(中外)의 신료(臣僚)는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삼가 받들어 행하라.</p> <p>또 생각건대, 자고로 한재(旱災)를 초래함은 진실로 한가지 단서(端緒)만이 아니라 흔히 포원(抱冤)에서 나오기도 하였으니, 3년의 가뭄에 시달림은 실로 효부(孝婦)에 연유했던 것이며(16133), 5월에 서리가 내림은 진실로 연신(燕臣)에게서 말미암았던 것이었다.(16134) 대저 원통한 기운이 짝 맺혀 위로 하늘에 사무치면 화기(和氣)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하는 법이니, 또한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이 가뭄을 근심하는 날 그 지극한 방도를 쓰지 않는 것이 없어야 마땅할 것이니, 중외(中外)의 관원(官員)으로 하여금 지극히 억울함을 품고도 아직 펴지 못한 자가 있다면 따로 상세히 살펴 계문(啓聞)하게 하라. 옥사(獄事)를 결단하고 송사(訟事)를 판결함에 이르러서는 청탁(請托)을 물리치고 사심(私心)을 버려 강약(強弱)으로 인해 입락(立落)(16135) 하지 말며, 그 펴고 굽히는 것을 한결같이 곡직(曲直)에 따른다면 소민(小民)이 원통함이 없을 것이다. 외방(外方)의 관리(官吏)가 희노(喜怒)로 인하여 형벌을 함부로 하여 사람을 죽이는 폐단에 대하여 내가 여러 번 말하였는데, 이번의 홀수(恤</p>	<p>一出公心，節鎭之帥，撫爾士卒，詰爾戎兵，若常對壘，毋敢怠忽，則庶不負朝家委寄之重矣。咨爾中外臣僚，體予至意，式克欽承。抑又思之，自古致旱，固非一端，而多出於抱冤，三年苦旱，實緣孝婦，五月飛霜，良由燕臣。蓋冤氣鬱結，上徹穹蒼，感傷和氣，致有災沴，亦自然之理也。當此憫旱之日，宜無所不用其極，著令中外之官，若有抱至冤而未伸者，另加詳察以聞。至於斷獄斷訟，去請去私，勿以強弱爲立落，其伸其屈，一循曲直，則小民庶可無冤矣。外方官吏，因喜怒濫刑殺人之弊，予屢言之矣，今當恤囚，尤宜申嚴，一體布告，咸使聞知。且近來士大夫風習不美，或行公未久，旋尋辭單，或除拜累月，終不應命。或受由出去，久不還來，或廉隅太勝，違召紛紜，或朝遞其職，夕已歸鄉，往來憧憧，在官日鮮，瘵曠之弊，職由於此。若此不已，將何以備百官而成國家之貌樣乎？在昔壬辰兵亂之後，滿目灰燼，士大夫艱苦之狀，爲如何，而不敢告勞，不敢言私，咸聚輦轂，奔走率職矣。今之士大夫，異於是，此予爲</p>
---	--

	<p>囚)16136) 는 더욱 엄히 신칙(申飭)해야 할 것이니, 일체 포고(布告)하여 모두 들어서 알게 하라.</p> <p>또 근래에 사대부(士大夫)의 풍습(風習)이 아름답지 못하여 혹은 행공(行公)한 지 얼마되지 않아 곧 사단(辭單)을 바치고 혹은 임명을 받은 지 여러 달이 되어도 끝내 명에 응하지 않는다. 혹은 휴가를 받아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혹은 염우(廉隅)가 너무 지나쳐서 부름을 어겨 분운(紛紜)하며, 혹은 아침에 벼슬이 갈리면 저녁에 이미 시골로 돌아가 왕래(往來)가 빈번하여 관부(官府)에 있는 날이 드무니, 벼슬자리를 비우는 폐단이 실로 이에 말미암는다. 이와 같은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백관(百官)을 갖추어 나라의 모양을 이룬단 말인가. 지난날 임진 병란(壬辰兵亂) 뒤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느니 잣더미요 사대부의 간난신고(艱難辛苦)하는 상황이 어떠하였던가. 그런데도 감히 수고로움을 말하지 못하고 감히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못한 채 연곡(輦轂)16137) 에 모여 직책에 충실하였다. 오늘날의 사대부는 이와는 다르니, 이것이 내가 세도(世道)를 위하여 마음 속으로 늘 개연히 여기는 것이다. 아! 운한(雲漢)의 탄식(16138) 이 어느 세대인들 없었으리오마는, 가뭄과 더위의 재앙이 금년에 너무나 심하여 마치 불타는 듯하니,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 아! 그대들 군공(群工)16139) 은 편안함을 도모하지 말고 말은바 직사(職事)를 삼가 행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하라. 감선(減膳)16140) ·철악(徹樂)·금주(禁酒) 등의 일을 그 유사(有司)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p> <p>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대찬(代撰)하지 말고 곧장 성교(聖敎)로 널리 고하기를 청하였는데, 두 번 청하자 비로소 허락하였다.</p>	<p>世道，心常慨然者矣。 嗚呼！雲漢之歎，何世無之，而蘊隆之災，今年太甚，如憐如焚，無以爲心。 嗟爾群工，毋圖安便， 欽乃職事， 用答天譴。 減膳、(徹) [撤] 樂、禁酒等事， 其令有司舉行。</p> <p>政院請勿爲代撰， 直以聖敎播告， 再請乃許之。</p>
<p>숙종 51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5월 12 일(갑오) 3번째기사</p>	<p>형조 참판(刑曹參判) 권상유(權尙游)가 청풍(淸風)땅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이르기를, “신이 광주(廣州)·양근(楊根)에서 여주(驪州)에 이르기까지 있는 바 맥전(麥</p>	<p>刑曹參判權尙游在淸風地， 上疏言： 臣目覩廣州、楊根， 以至驪州所在麥田， 皆成赤地。 且聞畿邑麥凶， 皆無異同。 宜捐江都、南漢及京賑廳幾萬</p>

	<p>田)을 목도하였는데 모두 적지(赤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듣건대, 경기(京畿) 고을에 든 보리 흉작은 모두 다를 것이 없다고 하니, 마땅히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南漢山城) 및 서울 진휼청의 몇 만 석 미곡(米穀)을 덜어내어 때에 맞추어 나누어 진휼하여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 “기전(畿甸)은 나라의 근본인데, 보리 농사가 큰 흉작이 되어 백성의 명맥이 끊어지기에 이르렀다고 하니, 진휼을 의논하는 거조(舉措)를 어찌 늦출 수 있으랴? 아랫 항목에 진달(陳達)한 바도 또한 마땅함을 얻은 듯하니,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p>	<p>石米穀，及時分賑。</p> <p>答曰：“圻甸，國之根本，而麥事大歉，民命近止，議賑之舉，其可緩乎？下款所陳，亦似得宜，并令廟堂稟處。”</p>
<p>숙종 51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6월 10 일(임술) 2번째기사</p>	<p>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4일에 치계(馳係)하기를, “시위(侍衛)는 배를 타고 총관(總管)은 육로(陸路)로 오늘 경원(慶源)에 도착했고, 내일 경흥(慶興)으로 떠나려 합니다. 총관이 백두산 지도 1본(本)을 내주었기 때문에 감봉(監封)하여 올려보내며, 총관이 또 이자(移咨)라 하며 1장의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또한 올려보냅니다. 그 이른바 ‘압록강(鴨綠江)과 토문강(土們江) 두 강이 모두 백두산의 근저(根底)로부터 발원(發源)하여 강남쪽의 조선(朝鮮)의 경계가 된지 역년(歷年)이 이미 오래 되었다.’라는 것은 피차의 경계를 논단(論斷)함이 지극히 명백하니, 뒷날의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권이 함경()감사 이선부와 함께 또 봉계(封啓)하기를, “이 달 1일에 총관이 20리 남짓되는 두리산(豆里山)으로 달려가 산마루에 올라 두만강의 바다로 들어가는 곳을 바라보고 그 일행 중의 화공(畫工)에게 형상을 그리게 한 뒤 즉시 길을 되돌려서 경원부(慶源府)로 돌아왔습니다. 시위(侍衛)가 조선의 음악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에 고(鼓)·부(缶)·笙(笙)·적(笛) 각각 사람씩을 정하여 보내고 장교(將校)와 통인(通引)을 시켜 번갈아 노래부르</p>	<p>接伴使朴權，初四日馳啓曰：“侍衛乘船總管由陸，今日到慶源，明將發向慶興。總管出給白山圖一本，故監封上送，而總管又稱移咨，出送一張書，故亦爲上送。其所謂鴨綠、土門兩江，俱從白山根底發源，江南爲朝鮮之境，歷年已久云者，論斷彼此境界，極其明白，可無後慮。”至是，權與監司李善溥，又爲封啓曰：</p> <p>本月初一日，總管馳往二十里許豆里山，登山巔望見豆江入海處，使其行中畫工圖形後，卽爲復路，還到慶源府。侍衛欲聞朝鮮音樂，故定送鼓、缶、笙、笛、各一人，則使將校、通引，更唱迭[舞]，頗爲歡悅。總管出給二大牛，使驛卒輩，椎食。前後出</p>

고 춤을 추게 하였더니, 매우 즐거워하여 총관이 큰 소 두 마리를 내주어 역졸(驛卒)더러 잡아 먹게 하였으며, 전후로 내준 것이 10여 마리란 많은 수(數)에 이르렀습니다. 신 등이 가지고 온 예단(禮單) 및 문위사(問慰使)의 예단을 조사(措辭)와 함께 주었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이번 길에 폐를 끼친 것이 적지 않은데 만약 예단을 받는다면 실로 황상(皇上)께서 진념(軫念)하시는 뜻에 어긋난다. 문위의 예단에 이르러서는 규례 밖에 따로 보낸 것이니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후로 찬물(饌物)을 주었더니, 저 사람이 문득 삼승(三升)16194)의 조그만 모자(帽子)·띠 등 물건으로 값을 계산하여 갚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때에 미처 그 값으로 준 물건을 모두 돌려 보내고 역관(譯官)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대국(大國)의 사람이 황지(皇旨)를 받들어 우리 지경에 와서 약간의 찬물까지 값을 주고 사서 쓰기에 이른다면 사체(事體)가 구차(苟且)하니, 우리 나라의 도리에 있어 또 어찌 이런 일이 용납되리까.’ 하니, 통관(通官)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행자(行資)를 넉넉히 주시어 연로(沿路)에서 사서 쓰게 하셨으니, 이제 만약 값으로 준 물건을 도로 받는다면 총관계서 반드시 성낼 것이오. 이번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지극히 순조로왔는데 돌아가는 때에 미처 혹시라도 조그만 일 때문에 시끄러운 사단을 일으킨다면 어찌 민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강을 건넌 뒤에 조용히 총관에게 말을 전하리다.’ 하고, 끝내 전통(傳通)하지 않았으므로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총관이 전일에 보내온 자문(咨文)은 신 등이 정문(呈文)으로 발송(發送)하기로 서로 의논하였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나의 자문을 정문의 상단(上端)에 등서(騰書)한 연후에야 돌아가 아뢴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대로 써 보냈습니다. 3일 식후(食後)에 그들 일행이 장차 강을 건너려 하였으므로 신 등이 함께 관소(館所)에 나아가 위문하고 이어 말하기를, ‘경계를 정해 표지(標識)를 세우는 일은 마땅히 조정(朝廷)에 돌아가 아뢰고 서서히 역사(役事)를

給, 至於十首之多。 臣等所持來禮單及問慰使禮單, 竝措辭入給, 摠管曰: “今行貽弊不貲。 若受禮單, 則實乖於皇上軫念之意。 至於問慰禮單, 係是規外別遣, 不得承受” 云。 前後入給饌物, 彼人輒以三升小帽子、帶子等物, 計價出償, 故今當還去之際, 竝還其價物, 使譯官傳言曰: “大國之人, 奉皇旨來到我境, 若干饌物, 至給價買用, 事體苟簡, 在我國之道, 亦豈容如是?” 通官以爲: “皇帝優給行資, 沿路買用。 今若還給價物, 則摠管必生怒。 此行自初至終, 凡事極順, 而及當臨歸, 以小事或生鬧端, 豈非可憫乎? 吾於越江後, 當從容言及於摠管” 云, 而終不傳通, 無可奈何。 摠管前日所送咨文, 臣等相議以呈文發送, 則摠管以爲: “吾之咨文, 騰書于呈文上段, 然後可以歸奏” 云, 故依其言書送。 初三日食後, 彼行將越江, 故臣等同進館所問慰, 仍言: “定界立標事, 當歸奏朝廷, 徐徐始役, 而此地荒廢既久, 曾不看檢, 今則境界分明, 道路已通, 空閑之地, 或募民入居, 或設立把守, 則可免虛踈之弊矣。” 摠管曰: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은 황폐해진 지 이미 오래 되어 일찍이 간검(看檢)하지 않았으나, 이제 경계가 분명하고 도로(道路)가 이미 통하니, 공한지(空閑地)에 혹 백성을 모아 들어가 살게 하고 혹 파수(把守)를 세운다면, 허소(虛疏)한 폐단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을 옮기고 파수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따로 관원(官員)을 정하고, 1년에 두 세 차례 적간(摘奸)하는 것이 착실(着實)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조정에 돌아가 진달하여 상확(商確)하여서 하겠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앞으로 절사(節使)가 들어올 때에 설치의 형지(形止)16195) 를 통관에게 말하여 나에게 전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총관 일행이 경원에 이른날 오랄(烏喇)16196) 장경(章京)16197) 한 사람 및 그 종자(從者) 20명이 말을 타고 건너왔기에 본부(本府)의 파수하는 장수 및 군인이 막았으나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총관에게 고하였더니 총관이 장경을 불러 놓고 크게 꾸짖기를, ‘이미 국법(國法)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돌아가 아뢰어서 처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말하기를, ‘진실로 유죄(有罪)가 되나 그가 총관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으니, 까닭없이 월경(越境)을 범한 것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내가 건너오지 말라는 뜻으로 분부(分付)하였는데 이번에 월경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중죄(重罪)가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다시 용서할 만한 정상(情狀)이 있음을 말하였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장경이 만약 죄를 입는다면 본부의 관리도 또한 반드시 감죄(勘罪)의 거조(舉措)가 있을 것이니, 이 말에 의하여 돌아가 아뢰지 말 것이며, 접반사와 감사도 또한 반드시 국왕에게 진달할 것 없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자리를 파(罷)하고 나올 때 총관 이하가 일어서서 공수(拱手)16198) 하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황제의 명을 받들고 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실로 국왕의 진념(軫念)을 힘입었습니다. 또 따로 문위사를 보내어 후하게 예단을 주시니, 권애(眷愛)하는 뜻을 알 수 있

“若欲移民設把，則弊將不貲。莫如別定官員，一年二三次摘奸之爲着實也。” 臣等答以當歸達朝廷，商確爲之，總管曰：“前頭節使時，設置形止，言于通官，俾傳俺處。” 總管一行，到慶源之日，烏喇章京一人及其從人二十名，乘馬尙越來，本府把守將及軍人，多般防塞，而終不聽從。以此告于總管，則總管招致章京，大加呵責曰：“既犯國法，當歸奏處之也。” 臣等以爲：“固爲有罪，而第以迎接總管爲言，與無端犯越有異矣。” 總管曰：“吾以勿爲越來之意分付。今此犯越，宜有重罪。” 臣等復言其情有可恕，則總管以爲：“章京若被罪，則本府官吏，亦必有勘罪之舉。當依所言勿爲歸奏，伴使、監司，亦不必陳達于國王也。” 臣等罷黜之際，總管以下起立拱手曰：“俺等雖承皇命而來，竣事還歸，實賴國王軫念。且別遣問慰，厚遺禮單，可見眷意，而皇帝既有省弊之教，茲不敢違。然其中心感謝，與領受無異。” 午後發行，直向江邊越去矣。前日臣權，到茂山時，首譯金指南來言：“侍衛以佃獵事，越往彼邊，還後密言曰：

	<p>지만 황제께서 이미 폐단을 줄이라는 하교를 내리셨으므로 감히 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감사하여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으며, 오후에 발행(發行)하여 곧장 강변(江邊)을 향하여 건너갔습니다.</p> <p>전일에 신 박권이 무산(茂山)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수역(首譯) 김지남(金指南)이 와서 말하기를, ‘시위(侍衛)가 사냥을 하러 저쪽 강변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온 뒤 은밀하게 말하기를, 「대국 경계의 수목(樹木)을 수없이 작별(斫伐)하여 수레에 싣고 배로 운반한 흔적이 지극히 남아하니, 그대 나라의 벼슬아치와 백성들이 법금(法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를 만하다.」고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강변의 무지한 백성이 이 놀랄 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이 일이 한 번에 적발(摘發)되면 마땅히 죽여야 할 자가 매우 많으니, 노야(老爺)의 측은(惻隱)한 마음으로 어찌 차마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였더니, 시위가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입을 다물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다만 수행(隨行)하는 사람의 입을 가리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각별히 듣고 보아서 이미 실상(實狀)을 알아냈으나, 저 사람들이 지경 안에 있을 때에는 먼저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회령 부사(會寧府使)를 따로 사관(查官)으로 정해 이제 바야흐로 사핵(查覈)하고 있으니, 마땅히 추후(追後)로 계문(啓聞)하겠습니다.”</p> <p>하였다.</p>	<p>“大國境樹木，無數斫伐，車載船運之跡，極其狼藉。爾國吏民，可謂不畏法禁矣。”指南答以江邊無識之民，有此可駭之事，誠極寒心，而此事一發，當死者甚多，以老爺惻隱之心，何忍爲此耶？侍衛曰：“吾當含默，但隨行人之口，恐難盡掩也。”臣等，各別聞見，既得實狀，而彼人在境時，不可先爲彰露。今則彼既越江，故以會寧府使，別定查官，今方查覈，當追後啓聞云矣。</p>
<p>숙종 51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7월 22 일(계묘) 1번째기사</p>	<p>평안도(平安道) 희천군(熙川郡)에 큰 홍수(洪水)가 나서 정은지(丁銀知) 등 1백90여 명이 물에 빠져 죽고 혹은 압사(壓死)하였다. 홀전(恤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p>	<p>癸卯/平安道 熙州郡大水，丁銀知等一百九十餘名，滄死或壓死。命舉恤典。</p>
<p>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8월 1일</p>	<p>예조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제도(諸道)에서 바치는 명일(明日)16262) 의 물膳(物膳)·삭찬(朔饌)·방물(方物)을 이제부터는 구례(舊例)대로 거행하게 하소서.</p>	<p>禮曹啓請諸道名日物膳、朔饌、方物，自今依舊例舉行，上特命限明秋姑減。</p>

(임자) 8번째기사	하니, 임금이 특별히 아직 내년 가을까지 감하도록 명하였다.	
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9월 18 일(무술) 2번째기사	전라도 능주(綾州) 등의 고을 사람들이 홍수로 익사(溺死)했는데, 흘전(恤典)을 거행하라고 명했다.	全羅道 綾州等邑, 人物渰死, 命舉恤典。
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9월 29 일(기유) 2번째기사	평양(平壤) 민가에서 불이 나 60여 호가 연소되었는데, 각별히 돌보아 구제하도록 명하였다.	平壤民家失火, 延燒六十餘戶, 命各別顧恤。
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10월 15 일(을축) 6번째기사	임금이 날씨가 춥다 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에게 빈 섬[空石]을 지급하고, 옷이 얇은 사람에게는 유의(襦衣)16319) 를 주도록 명하였다.	上以日寒, 命給宿衛軍空石, 薄衣者給襦衣。
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10월 20 일(경오)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목차(穆差)가 체발(髡髮)16321) ·응령(鷹鈴)16322) ·주석[豆錫] 등의 물건을 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는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체발 1백개, 응령 50개, 주석 20근을 작성한 수량대로 들여보냄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모두 주도록 허락하라 명하였다. 이유가 아뢰기를, “과옥(科獄)이 수습된 뒤에야 조정이 모양을 이루게 될 것인데, 금오(金吾)의 당상(堂上)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의 대신을 마땅히 차출(差出)해야 할 것인데 해당 품계(品階) 중에는 의망(擬望)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찍이 임부(林溥)의 옥사 때에는 자급(資級)을 뛰어넘어 한 규례(規例)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또한 마땅히 변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당상관 중에 적합한 사람을 대신(大臣)에게 물어 구전(口傳)으로 차출하라고 명하였다. 형조 판서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庚午/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李濡曰：“穆差曾以髡髮、鷹鈴、豆錫等物, 有所求請, 此不可不給。 髡髮百箇、鷹鈴五十介、豆錫二十斤, 定數入送何如?” 上命竝爲許給。 濡曰：“科獄收殺然後, 朝著可以成樣, 而金吾堂上不備。 有闕之代當差出, 而當品中無可擬人。 曾於林溥獄, 有超資之規, 今亦宜有變通。” 上命以堂上中可合人, 問于大臣, 口傳差出。 刑曹判書朴權曰：“掖庭下人, 歐打宗班事, 既已承款。 請詢于大臣而處之。” 蓋宗室原興守 煦, 於東門射所,

<p>“액정(掖庭)의 하인(下人)이 종반(宗班)을 구타한 일은 이미 자복을 받아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처벌하기를 계청(啓請)했습니다. 대개 종실(宗室) 원흥수(原興守) 이후(李煦)가 동문(東門)의 사소(射所)에서 능소(陵所)를 적간(摘奸)하는 별감(別監) 김세명(金世鳴)을 만났는데, 김세명이 후가 답배(答拜)를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므로, 후가 화를 내며 그의 입에다 오물을 집어넣고서 난타(亂打)했습니다. 그 뒤 김세명이 동류(同類) 20여 명을 데리고 후의 집에 돌입(突入)하여 끌어내다 결박해 놓고 힘을 다해 구타하였습니다. 후의 형 원양도정(原陽都正) 이경(李炘)이 격고(擊鼓)하고 입궐(入闕)하고자 하였더니, 별감 등이 기미를 알아차리고 구축(驅逐)하여 뺨을 때려 피가 나가 사모(紗帽)가 벗겨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조(秋曹)에서 잡아 가두고 형(刑)을 계청(啓請)했는데 위차(威次)를 베풀자 모두 승복(承服)했습니다.”</p> <p>하고, 박권이 ‘이는 상한(常漢)들이 사대부(士大夫)를 구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또한 경중(輕重)이 있으나, 율문(律文)에 꼭 들어맞는 시행할 만한 조문이 없다.’는 뜻으로 아뢰자, 임금의 이르기, “심상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p> <p>하고, 이유에게 물었다. 이유 또한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아뢰자, 임금이 명하기를,</p> <p>“한 차례 엄형(嚴刑)한 뒤 절도(絶島)에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라.”</p> <p>하였다. 박권이 또 아뢰기를,</p> <p>“현풍(玄風) 땅의 고(故) 증 판서(贈判書) 곽준(郭濬)은 임진년(1632)에 순절(殉節)했는데, 그의 아들은 효도를 위해 죽었고 그의 딸은 정절(貞節)을 지키다 죽었으니, 한 집안에 세 사람이 절의(節義)를 지켰음은 세상에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이번에 곽준의 연시례(延諡禮) 16324) 를 행하려고 하는데, 봉사(奉祀)하는 사람이 아직 벼슬을 제수받지 못했으니, 일명(一命) 16325) 을 제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p>	<p>逢陵所摘奸別監金世鳴，世鳴以煦之不答拜，詬辱之，煦發怒，納穢物於其口，而亂打。 其後世鳴，率同類二十餘人突入煦家，曳出結縛，盡力毆打。 煦兄原陽都正 炘，欲擊鼓入闕，則別監等知幾驅逐，打腮出血，紗帽脫落。 故自秋曹，捉囚請刑渠輩，施威次，皆承服。 權以爲：“此比常漢之打士夫，亦較重，而律無適合可施之文，以此白上，上以爲：“不可尋常處之。”問於濡，濡又以不可不嚴斷之意，陳白。 上命嚴刑一次後，絕島全家徙邊。 權又曰：“玄風地故贈判書郭濬，殉節壬辰，其子死於孝，女死於貞，一家三節，世罕其比。 今欲行郭濬延諡禮，而奉祀人，尙未除官，合授一命。”上命銓曹舉行。 濡請於蕩春臺，設倉庫、儲軍餉，以固北漢之勢，上從之。 大臣以下罷黜。 上命史官，招入同知金尙信。 尙信年今一百有七，故有同知除命，詣闕肅謝。 上特命留待，仍令內官，左右擔舁。 上問其居住及子女多少，教曰：“老者非帛不煖，非肉不飽。”令該曹，衣資、食物，各別題給，又命內官，特賜貂皮帽掩一部。</p>
---	--

	<p>하니, 임금이 전조(銓曹)에서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이유가 탕춘대(蕩春臺)에다 창고를 세우고 군향(軍餉)을 저장하여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형세를 굳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신 이하가 과하고 나갔다. 임금이 명하여 사관(史官)에게 동지(同知) 김상신(金尙信)을 불러 들이게 하였다. 김상신은 나이가 지금 1백 7세였으므로 동지를 제수하라는 명이 있었고, 예궐(詣闕)하여 사은 숙배(謝恩肅拜)한 것이다. 임금이 특별히 머물러 기다리도록 명하고, 이어 내관(內官)들에게 좌우에서 떼메라고 하였다. 임금이 거주하는 곳과 자녀의 다소를 묻고 하교하기를, “노인은 비단이 아니면 몸이 따뜻하지 않고 고기가 아니면 배가 부르지 아니하는 법이다.” 하였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옷감과 음식물을 각별히 제급(題給)하도록 하고, 또 내관에게 명하여 특별히 초피 모염(貂皮帽掩) 1부(部)를 내리도록 하니, 김상신이 일어나 사은(謝恩)하고 나갔다. 임금이 또 내관에게 명하여 부액(扶掖)하고 계단을 내려가도록 하였다. 대개 임금의 마음은 나이 많은 사람을 존대하는 데서 나온 것으로 위유(慰諭)와 총애하여 내리는 물건이 심상한 사람 들보다 월등하였으므로, 듣고 흠탄(欽歎)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p>	<p>尙信起謝而出，上又命內官，扶掖下階。上心蓋出於尊高年，而慰諭寵錫，迥出尋常，聞者莫不欽歎。</p>
<p>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10월 24일(갑술) 1번째기사</p>	<p>임금의 체후(體候)가 입맛이 떨어져 수라(水刺)를 들기 싫어하는 증세가 있으므로, 약방(藥房)에서 날마다 문안하였다.</p>	<p>甲戌/以上候有口淡、水刺厭進等症，藥房連日問安。</p>
<p>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11월 1일(경진) 2번째기사</p>	<p>날씨가 추우므로, 옷이 얇은 군사들에게 유의(襦衣)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p>	<p>以日寒，命給薄衣軍襦衣。</p>
<p>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p>	<p>동지사(冬至使) 겸사은사(兼謝恩使) 김창집(金昌集)·부사(副使) 윤지인(尹趾仁) 등이 사궐(辭陛)하니, 인견(引見)을 명했다. 김창집이 아뢰기를,</p>	<p>壬午/冬至兼謝恩使金昌集、副使尹趾仁等，辭陛，命引見。昌集曰：“方物</p>

<p>(康熙) 51년) 11월 3일(임오) 1번째기사</p>	<p>“방물(方物)중에서 세폐(歲幣)와 지지(紙地)를 언제나 탈을 잡으므로 구차하게 미봉(彌縫)한다고 합니다. 이 뒤로는 각별하게 거듭 신칙하되, 만일에 퇴짜를 맞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해당 낭관(郎官)을 논죄(論罪)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어 선은(宣醞)하도록 명하고서 납약(臘藥)과 호초(胡椒) 등의 물건을 내려 위유(慰諭)하여 보냈다. 승지 김덕기(金德基)의 계달(啓達)로 인하여 이조 판서 이건명(李健命)에게 별유(別諭)를 내려 재촉하여 즉시 시급히 들어오도록 하였다.</p>	<p>中歲幣、紙地，每爲執頃，苟且彌縫云。此後則各別申飭，如有見退之患，當該郎官，當論罪。”上從之。仍命宣醞，賜臘劑、胡椒等物，慰諭而遣之。因承旨金德基所達，吏曹判書李健命，別諭催促，使之卽速入來。</p>
<p>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12월 6일(을묘) 2번째기사</p>	<p>승지에게 명하여 홍문 제학(弘文提學) 김진규(金鎭圭)와 함께 반궁(泮宮)에 가서 글을 반사(頒賜)하고 유생(儒生)들에게 시험을 보이게 하였다. 수석을 차지한 이희춘(李喜春)에게 급제를 내렸다.</p>	<p>命承旨，與弘文提學金鎭圭，偕往泮宮，頒柑試取儒生。賜居首李喜春第。</p>
<p>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12월 12일(신유) 2번째기사</p>	<p>옥당(玉堂) 관원들을 소대(召對)하였다. 부수찬 이교악(李喬岳)이 재해를 입은 고을의 대동미(大同米)를 1, 2두(斗)씩 감하여 실제의 혜택을 보여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그 뒤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재해로 결수(結數)가 크게 줄어들어 감하기 어려운 뜻을 아뢰자,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다.</p>	<p>召對玉堂官。副修撰李喬岳請減災邑大同一二斗，以示實惠，上令廟堂稟處。是後，大臣以災結大縮，有難許減之意筵白，勿施。</p>
<p>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12월 22일(신미) 3번째기사</p>	<p>우참찬 김진규(金鎭圭)가 상소하여 첫째 백두산(白頭山)을 다시 간심(看審)할 것을 논하고, 【대략은 위의 인견조(引見條)에 나와 있다.】 다음으로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도서(圖書)에 관한 일을 논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전후로 법을 굽혀 교활한 왜(倭)의 간청(干請)을 들어준 것이 많았습니다. 이는 대개 기미(羈縻)하기 위한 계책인데,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바 없이 버릇없이 굴게 만들었습니다. 신(臣)의 생각에는 앞으로 간청하는 일이 혹 도서보다도 더한 것이 있게 될까 하니, 또한 원하건대, 묘당(廟堂)에 거듭 신칙하여 꺼려하는 도리를 보이기에 힘쓰게 하소서.” 하고, 또한 피국(彼國)의 부자(父子) 사이의 변고와, 왜국(倭國)의 관백(關白)이 죽고 그의 사자(嗣子)가 어리므로 족친(族親)이 섭정(攝政)하고 있는 일을</p>	<p>右參贊金鎭圭，上疏首論白山更審事，【其略見上引見條。】次論馬島圖書事曰：我之前後曲徇狡倭之所干要多矣。此蓋爲羈縻之計，而使彼狎狃無所畏。臣恐將來所干要，或有過於圖書。亦願申飭廟堂，務其可以見憚之道焉。又論彼國父子間變故，及倭國關白死，而嗣子幼，族親攝政之事，而勉爲自強之策。又曰：</p>

	<p>들어 자강(自強)하는 계책에 힘써야 함을 논하고, 또 논하기를, “조가(朝家)에서 영남(嶺南)의 해방(海防)을 신칙하기 위해 순무(巡撫)를 보내기로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경인년(1636) 겨울에도 4로(路)에 순무를 나누어 보냈으나 한갓 소문만 나고 끝내 실효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것 또한 전철(前轍)을 밟는다면 신(臣)은 아마도 단지 주전(廚傳)(1636)의 폐단만 끼칠 뿐 일에는 무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방의 방비는 그래도 말단의 일이고, 근본은 정교(政敎)를 잘 거행하고 재용(財用)을 절약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군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p> <p>하고, 말미에 송(宋)나라의 진덕수(眞德秀)가 가정(嘉定) 무렵에 상소하여, 자안(自安)을 경계하고 자립(自立)에 힘쓰게 한 말을 들어 진계(陳戒)하니, 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결하도록 하겠다. 상소 끝에 진달한 바는 말이 매우 절실하니,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朝家爲飭嶺南海防，議遣巡撫。庚寅之冬，分遣四路巡撫，而徒自聲聞，終無實效。今茲所遣，又踵前轍，則臣恐只貽廚傳之弊，而無益於事矣。然而邊備猶是(未)〔未〕務，其本則在於政敎學而財用節，以之保民養兵耳，未引宋 眞德秀，嘉定間，上疏戒自安，而勉自立之言陳戒，答以令廟堂議處。疏末所陳，言甚切實，可不留心？</p>
<p>숙종 52권, 38년 (1712 임진 / 청 강희 (康熙) 51년) 12월 25 일(갑술) 2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피국(彼國)이 황후(皇后)를 책봉(冊封)하고 저군(儲君)을 세운 뒤 조서(詔書)를 반포(頒布)하는 일이 있을 듯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진하사(陳賀使)와 사은사(謝恩使)를 보내야 할 것인데, 태자(太子)를 폐한 뒤 만일 진위(陳慰)하는 일이 없다면, 책망을 초래할 염려가 없지 않다. 진위사를 먼저 차출해야 할 것인가.”</p> <p>하니,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지난해에 피국에서 저군을 폐했을 때 13성(省)에서도 진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지 않는 일을 외국(外國)에서 먼저 하는 것은 불가한 점이 있으니, 우선 앞으로의 진전(進展)을 관망(觀望)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였다. 여러 신하들도 대부분 앞질러 먼저 전문(箋文)을 보내는 것은 불가하</p>	<p>引見大臣、備局諸臣。上曰：“彼中冊后建儲後，似有頒詔之舉云。然則當送陳賀、謝恩使，而廢儲後，若無陳慰之舉，則不無致責之慮。陳慰使，先爲差出耶？”領議政李濡曰：“頃年彼中廢儲時，十三省無陳慰之事。彼所不爲，而外國先之，有所不可。姑觀前頭似可。”諸臣多以徑先送箋，爲不可，上命姑觀前頭差出。日前禮曹修送倭國書契時，朝議以爲：“仁廟朝以來，書契中有彼此互可問候，或俱不問</p>

다고 하니, 임금이 우선 앞으로의 일을 관망하여 차출(差出)하도록 명하였다. 일전에 예조(禮曹)에서 왜국(倭國)에 서계(書契)를 만들어 보낼 때 조정의 의논이 ‘인조조(仁祖朝) 이래로 서계 안에 피차 서로 문후(問候)하는 때도 있고 혹은 모두가 기거(起居)를 묻지 않는 때도 있었는데, 을묘년(1637) 이후로 저들은 문후하지 않고 우리만 홀로 문후하여, 드디어 그대로 인순(因循)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는 그전의 예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여, 드디어 문후하지 않는 서계를 만들어 동래(東萊)에 내려 보내 관왜(館倭)에게 전해 주게 하였다. 그러자 왜인들이 드디어 문안하지 않음은 전례가 아니라 하여 서계 및 예단(禮單)을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왕복하다가 마침내 받지 않으며 ‘시급히 대마도(對馬島)에 비선(飛船)을 보내어 물의(物議)와 전례(前例)를 탐문해 본 다음에 변통해서 하겠다.’ 하므로,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명준(李明浚)이 ‘우선 비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전수(傳授)하려 합니다.’란 뜻으로 계문(啓聞)하였다.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하유(下諭)하기를, “동래부에 엄중한 말로 준엄하게 물리쳐 반드시 받게 하지 않고, 정당(停當)1637) 한 뒤 계문하겠다고 말하였으니, 일이 몹시 해괴하다. 부사 이명준과 훈도(訓導)·별차(別差)를 잡아다가 추문(推問)하여 정죄(定罪)하라.” 하니, 병조 판서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을묘년 이후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을 이번엔 비로소 산거(刪去)하였으므로 왜인들이 받지 않았던 것이니, 부사가 엄중하게 막지 못했던 것은 대개 이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땅히 조금 책벌(責罰)을 내려 왜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해야 할 것이고, 잡아다 추문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다. 형조 판서 박권(朴權)·이조 참판 이만성(李晩成)은 모두 말하기를, “엄중한 말로 배척하여 물리쳐야 하고, 절대로 고쳐서 보내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起居之時，而乙卯後，彼不問候，而我獨問候，遂因循至今，自今遵舊例爲宜”，遂不爲問候，而修書契下送東萊，傳給館倭。倭人輩以爲：“不爲問安，非前例”，不受書契及禮單，累次往復，終不受曰：“急送飛船於馬島，探問其物議及前例後，可以變通”云，故東萊府使(李明俊) [李明浚]，以姑待飛船回還，停當傳授與否之意啓聞。上諭筵臣曰：“萊府不爲嚴辭峻斥，使之必受，而以停當後啓聞爲言，事甚可駭。府使李明浚及訓導、別差，拿問定罪。”兵曹判書趙泰采曰：“乙卯後已成規例，今始刪去，故倭人之不受，府使之不得嚴塞，蓋以此也。今宜略施責罰，使倭人知畏，而拿問則似過矣。”刑曹判書朴權、吏曹參判李晩成，皆言：“嚴辭斥退，切勿改送爲宜。”上曰：“嚴加申飭，切勿撓改。明俊姑先推考，訓、別從重決棍，若終至不受，拿問可也。”朴權以屠牛犯禁科罪，依《大典續錄》施行稟白。蓋金鎭圭爲判書時爲草記，有議大臣之命矣。【《續錄》魁首全家徒邊，隨從及家主杖徒，宰殺人絕島爲奴定屬，三

	<p>“엄중하게 거듭 신칙을 더하여 절대로 바꾸지 말도록 하라. 이명준은 우선 추고(推考)하고, 훈도와 별차는 되도록 무겁게 결장(決杖)할 것이며, 만일에 끝까지 받지 않는다면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옳다.”</p> <p>하였다. 박권이 소 도살(屠殺)의 범법에 관한 과죄(科罪)는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의해 시행할 것을 품백(稟白)하였다. 대개 김진규(金鎭圭)가 판서 때에 초기(草記)를 만들자, 대신들과 의논하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속록》에 ‘괴수(魁首)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하고, 수종(隨從) 및 집주인은 장도(杖徒)하고, 도살한 사람은 절도(絶島)에 종을 만들어 정속(定屬)하고, 3절린(三切隣) 중에 실정을 알고 있는 자도 또한 각각 죄가 있다.’고 하였다.】 박권이 아뢰기를,</p> <p>“요사이에는 금법을 범한 자는 단지 한 차례 형장하고 수속(收贖)합니다. 그래서 금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율(律)이 가볍기 때문인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이르기, “옛법을 갑자기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수창자(首倡者)와 집주인을 함께 논죄 하되, 집주인은 《속록》에 의해 도배(徒配)로 정하는 것이 옳다.”</p> <p>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p> <p>“청컨대 영남(嶺南) 각 고을 진(鎭)의 별향미(別餉米)로서 해마다 손모(損耗)로 받아 놓은 것 중에서 1만여 석에 한해 상납(上納)하도록 하여 북한 산성(北漢山城)으로 이속(移屬)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태채가 아뢰기를,</p> <p>“북한 산성의 향곡(餉穀)은 10만 석으로 한도를 하였으나, 일제히 운반해 들이기 진실로 어려우니, 내년 봄부터 점차로 옮겨 놓되 절반은 북한 산성에 운반해 들이고 절반은 평창(平倉)에 머물러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진휼청(賑恤廳)의 쌀 2, 3만 석을 도성(都城) 안의 민호(民戶)에 흠어 주었다</p>	<p>切隣知情者亦各有罪。】 權曰：“近來則犯禁者，只刑一次而收贖，故法禁之不行，似由於律輕矣。” 上曰：“舊制猝難行之，首倡及家主，竝爲論罪，而家主則依《續錄》定以徒配可也。” 趙泰采請以嶺南各邑鎭別餉米，逐年取耗者，限一萬餘石上納，移屬北漢，上從之。 泰采曰：“北漢餉穀以十萬石爲限，而一齊運入誠難，自明春漸次移置，而一半則輸入北漢，一半則留儲平倉似好。” 又言：“賑廳米二三萬石，散給於都下民戶，待秋成除耗，直納於北漢，以爲改色除弊之道，而王子君、大臣外，有料祿人等處，一併分給亦宜。” 上竝可之。 戶曹判書趙泰考曰：“蕩春臺倉庫，當爲移設，而戶曹經費匱竭。且來歲似有兩勅，關白亦新死，南、北自多酬應之事。此時營造，勢難竝行。戶曹所管兩倉及惠廳穀，則觀勢移入，恐得宜矣。” 李濡曰：“既築北漢，則軍餉不可不優備。若不設倉，則民無湊集之理，儲穀之後，則都民當不令而來聚。雖先造一間，始役爲當矣。” 上曰：“當初本意，非謂必趁明春移設。今若因循，易至廢闕。</p>
--	--	---

가, 추수 때를 기다려 모곡(耗穀)을 제외하고 바로 북한 산성에 바치게 하여 개색(改色)16373) 하여 폐해를 제거하는 방도로 삼으며, 왕자·군(王子君)과 대신 이외의 요록(料祿)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체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의 모두 윤택하였다. 호조 판서 조태구(趙泰耆)가 아뢰기를, “탕춘대(蕩春臺)의 창고를 마땅히 옮겨 설치해야 할 것인데 호조의 경비가 고갈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두 번의 칙사(勅使)가 있을 듯하고, 관백(關白)이 또한 막 죽었기에 남쪽과 북쪽에 자연히 수응(酬應)해야 할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영조(營造)한다는 것은 형편상 아울러 거행하기 어려우니, 호조에서 관장하고 있는 두 창고와 선혜청(宣惠廳)의 곡식은 형편을 보아 옮겨 들이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이유가 아뢰기를, “이미 북한 산성을 쌓았으니 군향(軍餉)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창고를 세우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모여들 리가 없지만, 곡식을 저축한 다음에는 도성(都城)의 백성들이 마땅히 명령하지 않아도 와서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선 한 칸을 짓는다 해도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초의 본의(本意)도 반드시 내년 봄에 가서 옮기자는 것도 아니었다. 만일 지금 인순(因循)한다면 쉽사리 폐기될 것이다. 그러나 모름지기 유의(留意)하여 요리(料理)한다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태채가 아뢰기를, “군문(軍門)의 여곡(餘穀)을 마땅히 시급히 옮겨 놓고, 삼군문(三軍門)으로 하여금 우선 경영하여 창고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必須留心料理，則自有可成之道矣。”
泰采曰：“軍門餘穀，宜速移入，使三軍門先爲經始設倉似宜。”上從之。

<p>숙종 53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월 1일 (기묘)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맹춘(孟春)의 달에 농사(農事)에 대한 명령을 반포하는 것은 월령(月令)16374) 에 기재되어 있다. 아! 한 문제(漢文帝)의 부서(富庶)16375) 한 시기를 당하여 반드시 농사에 앞서서 조서(詔書)를 내렸으니, 농사란 백성이 의지하여 생존하는 까닭이다. 더구나 이처럼 연달아 흉년이 드는 때이겠는가. 해가 새로 바뀌어 봄철의 농사 시작할 시기가 멀지 않았으니, 단단히 일러서 권농(勸農)하는 일을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더욱 피해가 극심했던 고을에 대해서는 장차 주진(賑濟)16376) 의 정사가 있게 될 것이다. 재활(濟活)하는 방도는 소중함이 지성(至誠)에 있으니, 마땅히 묘당(廟堂)16377)으로 하여금 각별히 도신(道臣)16378)을 타일러서 이 지극한 뜻을 본받아 마음을 다해 봉행(奉行)토록 하라.” 하였다.</p>	<p>敎曰：“孟春之月，命布農事，載在月令。噫！當漢文富庶之時，詔書之下，必先於農，農者，民所恃以生也。矧此洊飢之日乎？歲籥載換，東作不遠，申飭勸課，其可少緩？尤甚被災邑，將有賑賑之政。濟活之道，貴在至誠，宜令廟堂，另飭道臣，體此至意，悉心奉行。”</p>
<p>숙종 53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월 4일 (임오) 2번째기사</p>	<p>옥당(玉堂)에서 차자(筵子)를 올려 ‘진덕(進德)·수업(修業)할 것과, 방본(邦本)16381)을 구휼하고 언로(言路)를 열어줄 것’을 청하니, 임금(優批)이 우비(優批)를 내려 답하였다.</p>	<p>玉堂上筵請進德修業，恤邦本開言路，上優批答之。</p>
<p>숙종 53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2월 19일 (정묘) 2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제언사(堤堰司)를 혁파(革罷)한 뒤로 물을 모아 두지 않아서 백성들이 수리(水利)의 혜택을 입지 못하니, 마땅히 따로 신칙(申飭)을 가해서 수거(修學)하는 바탕을 삼아야 합니다.” 하고, 승지(承旨) 홍우녕(洪禹寧)도 이어서 말하기를, “마른 제방으로 물갈이가 안되는 곳을 마땅히 별도로 몰래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특진관(特進官) 윤취상(尹就商)이 수원(水原)에 어사(御史)를 특별히 파견하여 시험보이는 일을 시행해서 군정(軍情)을 위로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하였다. 교리</p>	<p>御晝講。知事趙泰采曰：“堤堰司革罷後，水無儲停，民不蒙利。宜令另加申飭，以爲修學之地。”承旨洪禹寧繼言：“乾提無水走耕處，宜令別爲廉問。”上從之。特進官尹就商，請別遣御史於水原，設行試事，以慰軍情，上令廟堂稟處。校理洪禹瑞極言權懋經，於文廟從享之儒賢，敢肆侮慢之習，公然闕奠，而臺論罷職，疑律太輕。泰采亦繼陳之，上命削黜。獻納</p>

	<p>(校理) 홍우서(洪禹瑞)가 권무경(權懋經)이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된 유현(儒賢)에 대하여 감히 모만(侮慢)한 버릇을 부리면서 공공연히 술잔을 올리지 않았는데, 대간(臺諫)이 과직(罷職)으로 논죄한 것은 적용한 법률이 너무 경미하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조태채(趙泰采)도 잇따라 진달하니, 임금이 삭출(削黜)을 명하였다. 헌납(獻納) 김보택(金普澤)이 이 일로써 인피(引避)하니, 그 뒤에 처치(處置)하여 체직시켰다.</p>	<p>金普澤，以此引避。 是後處置遞差。</p>
<p>숙종 53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2월 27 일(을해) 1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이유(李濡),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서종태(徐宗泰)·이이명(李頤命),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태채(趙泰采),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우항(金字杭), 참판(參判) 민진원(閔鎭遠), 참의(參議) 이대성(李大成) 등이 청대(請對)하고 입시(入侍)하였는데, 여러 대신(大臣)들이 진연(進宴)하는 일을 누누이 진청(陳請)하였다. 이때 이여(李畬)가 새로 여주(驪州)에서 도성(都城)에 들어왔는데, 이여가 말하기를, “신이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올라왔으나 등대(登對)할 길이 없었는데, 여러 대신(大臣)들이 진연(進宴)의 일로써 합사(合辭)하여 진청(陳請)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달픈 몸으로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강력하게 말하기를, “30년을 경축(慶祝)할 때에는 오히려 진연(進宴)을 하였는데, 더구나 지금 40년을 맞이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소소한 비용에 구애되어 거행하지 않아서 전례(典禮)에 결함이 있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 등의 청이 이에 이르니, 힘써 허락하기는 하나 가을을 기다려서 거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이유(李濡) 등이 또 앞당기면 몰라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서로 잇따라 진청(陳請)하니, 임금이 마지 못해 허락하였다.</p>	<p>乙亥/領議政李濡、判府事李畬·徐宗泰·李頤命、兵曹判書趙泰采、禮曹判書金字杭、參判閔鎭遠、參議李大成，請對入侍，諸大臣以進宴事，縷縷陳請。 時，李畬新自驪州入城，畬曰：“臣强疾上來，無路登對，而諸大臣欲以進宴事，合辭陳請，故扶曳入來矣。” 上慰諭之。 諸臣力言：“三十年稱慶之時，猶爲進宴。 況今四十年乎？不可拘於小費而莫之行，使典禮有闕。” 上曰：“卿等之請至此，勉許而待秋行之可也。” 濡等又以有進無退之意，相繼陳請，上勉許之。</p>
<p>숙종 53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p>	<p>전교하기를, “바야흐로 계춘(季春)의 달을 당하여 양기(陽氣)가 발설할 때인데, 때를 맞추</p>	<p>教曰：“方當季春之月，陽氣發泄，而好雨之餘，雪乃繼降，自未至酉，無異</p>

<p>(康熙) 52년) 3월 11일(무자) 2번째기사</p>	<p>어 내리던 비의 끝에 눈이 잇따라 내려 미시(未時)로부터 유시(酉時)까지 이르니, 추운 겨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재앙이 이르게 된 것을 추구하여 보면 진실로 부덕한 데 연유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의 성념을 공경하여 감히 희롱하고 즐기지 말라.’ 하였으니, 재이(災異)가 이와 같은데도 연례(宴禮)를 그대로 행한다면 어찌 매우 미안하지 않겠는가. 진연(進宴)을 정지토록 하라.”</p> <p>하였다.</p>	<p>深冬。究厥致災，亶由否德。《詩》曰：‘敬天之怒，無敢戲豫。’災異如此，而仍行宴禮，豈非未安之甚乎？進宴其令停止。”</p>
<p>숙종 53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3월 25일(임인) 2번째기사</p>	<p>임금이 가슴 속이 시장한 듯하면서도 시장하지 않고 손발이 마비되는 등류의 증상이 나타나 약방(藥房)에서 들어가 진찰을 하고,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이 도제조(都提調)의 직책으로서 이날 숙배(肅拜) 입시(入侍)하고 청하기를, ‘명일부터 중완혈(中腕穴)에 뜸질을 받으소서.’ 하고, 또 탕제(湯劑)를 올렸다. 이때에 영의정 이유(李濡)가 청대(請對)하여 함께 들어갔는데, 옥당(玉堂)의 여러 신하들이 여덟 번이나 소패(召牌)를 어긴 것을 들추어 우선 파직을 시켰다가 뒤에 다시 서용(敍用)하되 유독 부제학(副提學) 권상유(權尙游) 만은 지위가 높으니 파직시키지 말자고 청하고, 이어 정관(政官)으로 하여금 개정(開政)을 시켜 궐원(闕員)을 차출(差出)케 하라고도 청했으며,</p> <p>또 말하기를,</p> <p>“조정호(趙挺豪)를 의금부에서 형조(刑曹)로 옮겼는데, 장관이 없어서 아직도 추문(推問)을 못하고 있으니, 일이 몹시 미안합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명하기를,</p> <p>“오늘의 정사(政事)에서 형조 판서를 차출하되, 그로 하여금 다시 인혐(引嫌)하지 말게 하고 즉시 패초(牌招)16591) 하여 일을 보살피게 하라.”</p> <p>하였다.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p> <p>“조정호(趙挺豪)는 호서(湖西) 사람인데, 배소(配所)를 호남(湖南)으로 정한 형관(刑官)의 일도 대단히 그릅니다. 마땅히 추고(推考)하소서.”</p>	<p>上以膈間似飢不飢，手足麻痺等證，藥房入診。左議政李頤命以都提調，是日出肅入侍，請自明日受灸中腕穴，又進湯劑。領議政李濡請對同入，以玉堂諸臣，八違召牌，請姑罷職，而從後更敍，獨副提學權尙游，以資高勿罷，仍請使政官，開政差出闕員，又言趙挺豪，自禁府移刑曹，而無長官尙未推問，事甚未安，上命今日政差出刑判，使之勿復引嫌，卽爲牌招察任。頤命言挺豪，湖西人，而配所定於湖南，刑官事亦甚非矣。宜推考，上從之。</p>

<p>숙종 53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4월 5일 (임자) 3번째기사</p>	<p>하니, 임금(李)이 그대로 따랐다.</p> <p>대사간(大司諫) 이관명(李觀命)이 상소하여 안동(安東)의 민폐(民弊) 3조(三條)를 진달하였다. 【이관명이 안동의 임소(任所)로부터 대사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진소(陳疏)한 것이다.】 그 첫번째 진달하기를,</p> <p>“안동(安東)은 물가에 있는 곳이라 참혹하게, 수재(水災)를 당하여 백성의 힘은 이미 수재를 보수하는 목석(木石)의 역사에 피곤해졌고, 인근(隣近)에 있는 여러 고을들은 그 범람(汎濫)하는 환란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봉축(封築)하는 공사는 어느 때나 그칠 사이가 없고 침닉(沈溺)당하는 사태는 해마다 없는 경우가 드무니, 본부(本府)의 대동목(大同木)16605) 수십 동(同)16606) 을 그 지방을 지키는 신하에게 내려 주어 장정(壯丁)들을 모집하여 큰 돌로 쌓고 총포(叢苞)로써 보호하도록 하다면 민생(民生)은 아마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고, 그 두번째는 황장목(黃腸木)16607) 을 봉진(封進)하는 폐단에 대해 진달하기를,</p> <p>“안동(安東)·봉화(奉化)·예천(醴泉) 세 고을은 비록 황장산(黃腸山)이라는 명칭은 있었으나, 애당초 금양(禁養)16608) 을 하지 않다가 경신년(16609) 에 이르러 비로소 봉진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대저 소나무가 자라려면 반드시 몇 갑자(甲子)를 지난 후에야 황장(黃腸)에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일 연수(年數)를 한정하여 조금 자라기를 기다려 봉진(封進)하도록 한다면, 산골 백성들이 아마 초미(焦眉)의 다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p> <p>하였으며, 그 세번째는 곧 경사(京司)의 절수(折受)16610) 하는 사찰(寺刹)의 폐단을 말한 것이었다. 임금이 우비(優批)를 내리어 말단(末端)의 일은 시행을 허락하고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하였다. 후에 묘당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대동목(大同木)과 같은 유정지공(惟正之供)16611) 은 청컨대 허락하지 마시</p>	<p>大司諫李觀命，上疏陳安東民弊三條。</p> <p>【觀命自安東任所，拜大司諫故陳疏。】其一，陳安東，處於水濱，慘被水災，民力已竭於木石之役，傍近數邑，無救其汎濫之患。封築無時可休，而沈溺歲罕得免，本府大同木數十同，捐之守土之臣，使募壯丁，築以鉅石，護以叢苞，則民生庶可奠安矣。其二，陳黃腸木封進之弊曰，安東、奉化、醴泉三邑，雖有黃腸山之名，初不禁養，及至庚申，始有封進之令。大抵松木長養，必過數甲子然後，可合黃腸。今若限以年數，稍待長養，使之封進，則峽氓庶解燃眉之急矣。其三，則乃言京司折受寺刹之弊也。上賜優批，許施其末端事，而上二款，令廟堂稟處。後廟堂覆奏以爲：“大同木惟正之供，請勿許，黃腸則許令限年封進。”</p>
---	---	---

<p>숙종 53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4월 26 일(계유) 1번째기사</p>	<p>고 황장목(黃腸木)은 연도를 한정하여 봉진(封進)하도록 하소서.” 일전에 연중(筵中)에서 이유(李濡)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는 오랫동안 머무를 의사가 없으니, 마땅히 돈면(敦勉)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이명(李頤命)도 또한 그렇게 말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내가 면류(勉留)하는 뜻으로써 이 판부사(李判府事)에게 직접 유시하고자 하니, 내일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이날 이여(李畬)가 명을 받들어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면류(勉留)하는 뜻으로 반복해서 친절하게 타이르기를, “갑자기 시골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를 신묘년(16638)의 일처럼 하지말라.” 하니, 이여가 대답하기를, “신은 오래 머물러 보아야 도움이 없고 질병은 조석(朝夕)의 우려가 있으니, 혹시 살아서 왔다가 죽어서 돌아가 국가(國家)에 수치를 끼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렀으니, 병세가 만일 억지로라도 부지할 수만 있다면 어찌 감히 서둘러 돌아가겠습니까.” 하였다. 승지(承旨) 남취명(南就明)이 상주(上奏)하기를, “지난번에 대신(大臣)의 진백(陳白)으로 인하여 나이가 90이 된 이는 추은(推恩)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시종(侍從)을 역임하여 나이가 70이 넘은 이에 대해서도 마땅히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 초계(抄啓)할 것을 명하였다.</p>	<p>癸酉/日昨筵中，李濡白上曰：“判府事李畬無久留之意，宜有敦勉之舉。”李頤命亦言之，上諭承旨曰：“予欲以勉留之意，面諭於李判府事，使於明日入來。”是日，畬承命入侍，上以勉留之意，反復諄切曰：“毋遽爲還鄉之計，如辛卯事也。”畬對曰：“臣久留無益，病有朝夕之慮，或恐生行死歸，貽羞國家。聖教至此，病勢如或可強，則豈敢遽歸乎？”承旨南就明奏言：“頃因大臣陳白，有年九十推恩之命。曾經侍從年過七十者，亦宜有優老之典。”上命該曹抄啓。</p>
<p>숙종 53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5월 8일 (갑신) 2번째기사</p>	<p>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등지에 민가(民家)에서 잘못하여 불을 내어 불길(火)이 이웃으로 번져서 탔으므로, 구휼하는 은전을 거행하도록 명하였다.</p>	<p>平安道平壤等地，民戶失火延燒，命舉恤典。</p>

속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7월 16
일(신유) 2번째기사

이보다 앞서 임금이 생우황(生牛黃)을 대궐 안으로 들이라고 명하였는데, 내국(內局)에서 즉시 구하여 바치지 않으니, 특별히 엄교(嚴敎)를 내려 의관(醫官)을 나치(拿治)하게 하자, 지부(地部)16803)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郎官)이 궐하(闕下)에 와서 대령하였다. 임금이 널리 찾도록 독려하여 사사로이 도살(屠殺)하는 것을 허락하고, 반드시 얻어낼 것을 기필하기에 이르니, 이로부터 죽인 소가 수백 마리뿐이 아니었다. 부교리(副校理) 홍우서(洪禹瑞)가 이로써 진소(陳疏)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제 선왕(齊宣王)이 소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양(羊)으로 바꾸게 하였고16804), 송 인종(宋仁宗)은 밤에 구운 양고기를 생각하다가 마련하지 못하게 하여16805) 후세에 성덕(盛德)이라 일컬어졌는데, 모두 생물의 목숨을 중히 여겨서입니다, 이번에 생우황(生牛黃)을 대궐안으로 들이라는 명이 있었으니, 무릇 유사(有司)의 신하로서 어찌 감히 털끝만큼인들 만홀(慢忽)하겠습니까마는, 무릇 약용(藥用)에 관계된 것은 대부분 말려 두었으며, 또 우황(牛黃)이 있음을 겉에서는 알지 못하므로 지금에 와서 급히 구해도 진실로 갑자기 얻기가 어렵습니다. 전하는 말을 듣건대 수일 사이에 공사간에 도살한 것이 이미 수백 두(頭)에 이르렀으나 아직 많이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일이 어약(御藥)에 관계되어 말참견을 할 수는 없지마는, 다만 생각하건대 죽인 소가 이미 아주 많고 장차 한량이 없을 것이니, 사세(事勢)가 이지경에 이르면 헤아려 처리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될 듯합니다. 전하께서 만약 참으로 이와 같음을 굽어살피신다면,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처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내가 처음에 생우황을 얻기 어려움이 이 지경에 이를 줄 헤아리지 못하였는데, 며칠동안 들인 바가 아주 적으니 역시 알 만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그대의 말이 옳다. 즉시 정지하게 하라.”

先是，上命生牛黃內入，內局未卽覓進，特下嚴敎，拿治醫官，地部堂郎，來待闕下。親督廣搜，至許私屠，期於必得。自是牛死者，不啻數百。副校理洪禹瑞以此陳疏，略曰：
齊宣見牛穀觶，而易之以羊，宋仁夜思燒羊，而勿令宣索，後世稱爲盛德，皆以重物命也。茲者有生牛黃內入之命。凡爲有司之臣，何敢一毫慢忽，而凡干藥用，率皆乾置，且牛之有黃，自外莫知，到今急覓，實難猝獲。仄聞數日之間，公私屠宰，已至數百頭，而尙未能多得云。事關御藥，非可容喙，而第念牛之死，已極浩多，將無限量，事勢至此，似不可無量處之道也。殿下若果俯燭其如此，則心有惻隱之心，而有所處分矣。
答曰：“爾言是矣。予初未料生牛黃難得之至此。數日所納零瑣，則亦可知矣，而未及思量。爾言是矣，卽令停止焉。”仍傳于政院曰：“因御藥生牛黃之難得，不宜許其私屠。初欲防塞而未果，數日之內，公私屠宰，至於數百首之多。雖是畜物，心用惻隱，懸房屠宰，限五日姑停事，分付。”

	<p>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어약(御藥)인 생우황을 얻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사로이 도살하는 것을 허락함은 마땅하지 않아 애초에 막으려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여 며칠 사이에 공사간에 도살한 것이 수백 마리나 되도록 많았다. 이는 비록 짐승이지만 마음에 측은하니, 현방(懸房)16806) 의 도살을 5일을 한정으로 우선 정지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康熙) 52년) 7월 19일(갑자) 1번째기사</p>	<p>임금이 한재(旱災) 때문에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말하기를, “아! 하늘이 경계(警戒)를 보임은 어찌 모두 놀랍고 두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마는, 무엇이 한재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김만 후의 가뭄이 봄·여름보다 심하여 농가(農家)에서 아주 꺼리는 것은 대개 절후가 서성(西成)16808) 에 임박하여 다시 가망(可望)이 없기 때문이다. 아! 작년 농사가 흉년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번 여름의 보리와 밀도 조금은 익었으므로,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만 가을 농사가 잘 익어 우리 백성이 거의 소생(蘇生)하는 것에 있을 뿐인데, 어찌 대단한 가뭄의 재앙이 이렇게 극도에 이를 줄 헤아렸겠는가. 10일만 비가 오지 않아도 오히려 벼가 없게 된다고 말하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그 며칠째인가. 바로 남와(南訛)16809) 를 당하여 끝내 큰비를 아끼고, 가을에 든 이래 바람이 더욱 차게 불어 전야에서 허둥지둥하고, 백성들의 생명이 다 죽게 되었는데 호서·호남의 소식이 더욱 비참하니, 백성의 부모가 되는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말과 생각이 이에 이르니 그대로 잠이나 자면서 꿈쩍하지 않았으면 싶다. 아! 이번 재앙을 초래(招來)한 것은 진실로 나의 부덕(否德)에서 말미암았으니, 백관(百官)을 칙려(勅勵)하는 것 또한 매우 부끄러우나, 서로 수성(修省)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한 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말할 만한 것이 진실로 한둘이 아니지만 가장 절급(切急)한 것은 조정이 화평하고 편</p>	<p>甲子/上以旱災，特下備忘記曰： 嗚呼！天之示警，何莫非可驚可懼，孰有大於旱災乎？況鋤後之旱，又有甚於春夏，而農家大忌，蓋以節迫西成，無復可望也。噫！昨年穡事，不至告歉，今夏兩麥稍稔，日夜懸望，惟在秋事之登熟，吾民庶幾蘇息矣，豈料亢旱之災，至於此極耶？十日不雨，尙云無禾。今之不雨，今幾日耶？正當南訛，終靳大霈，入秋以來，風寒彌酷，田野遑遑，民命盡劉，而兩湖消息，尤爲慘然，爲民父母，予懷如何？言念及此，尙寐無訛也。噫！今茲致災，亶由否德，勅勵群工，亦甚愧惡，而其在交修之道，烏可無一言乎？目今可言者，固非一二，而最所切急者，朝廷無和靖之期也。噫！朝廷和靖，然後可以聚會精神，精神聚會，然後可以做國事，而</p>

	<p>안해질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아! 조정이 화평하고 편안해진 후에야 정신을 모을 수 있고, 정신을 모은 후에야 나라 일을 다스릴 수 있는데, 당습(黨習)이 날로 고질화되고 경알(傾軋)이 날로 심해져서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크게 성을 내고, 한 번 작은 과실을 들으면 마치 기화(奇貨)를 얻은 것처럼 하여 허구 날조함이 끝이 없어서 반드시 만 길 구덩이에 남을 빠뜨린 후에야 그만두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인가.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나는 나라 일이 다시는 다스릴 수가 없게 되어 날로 위망(危亡)한 지경으로 나아가게 될까 두렵다. 금일의 계책은 반드시 먼저 구습을 엄중히 개혁해서 정백(精白)한 일심(一心)으로 오로지 나라의 계책과 백성의 근심에 마음을 쓰고, 참으로 조정(朝政)에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일에 따라 일을 논하여 가부를 서로 의논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에 끼지 않으면, 조정이 거의 공경하며 화합하는 희망이 있고, 국가가 화평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대들 대소 신료(臣僚)들은 내 말을 분명하게 들어 각자 두려워하여 하늘의 견책(譴責)에 답하고, 시국의 어려움을 구제하라.”</p> <p>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중외(中外)에 반시(頒示)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또 하교하기를,</p> <p>“한재(旱災)가 이처럼 혹심하니, 흠휰(欽恤)하는 일일 없어서는 안 되니, 의금부(義禁府)와 형조(刑曹)의 시수(時囚) 및 편배(編配)한 무리를 모두 모래 탑전(榻前)에서 소결(疏決)하도록 하라.”</p> <p>하고, 인하여 판의금(判義禁) 최석항(崔錫恒)을 폐초(牌招)하여 일을 보도록 명하였다. 이때 형조 판서 윤덕준(尹德駿)이 논핵을 당했는데, 승정원에서 형관(刑官)의 인원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써 계품(啓稟)하니, 개차(改差)하라고 명하였다.</p>	<p>黨習日痼，傾軋日甚，少有不叶，大加愠怒，一聞微過，如得奇貨，其所構捏，罔有紀極，必陷人於萬仞坑塹而後已，是誠何心哉？若此不已，予恐國事，無復可爲，而日趨於危亡矣。爲今之計，必先痛革舊習，精白一心，專意於國計民憂，而苟有朝政之可言，就事論事，可否相濟，自是美事。不以私意，挾雜於其間，則朝廷庶有寅協之望，而國家受和平之福矣。咨爾大小臣僚，明聽予言，各自惕慮，答天譴而濟時艱。政院請頒示中外，許之。又下教曰：“旱災此酷，不可無欽恤之舉。禁府、刑曹時囚及編配之類，竝於再明日，榻前疏決。”仍命判義禁崔錫恒，牌招察任。時，刑曹判書尹德駿被論，政院以刑官，不可不備員之意啓稟，命改差。</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광좌(李光佐)의 장청(狀請)에 의하여 북병</p>	<p>引見大臣、備局諸臣。右議政金宇杭，請依咸鏡監司李光佐狀請，仍任北兵使</p>

(康熙) 52년) 7월 20
일(을축) 3번째기사

사(北兵使) 이택(李澤),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휘(李暉)를 잉임(仍任)16810) 하도록 청하고, 【대개 이택(李澤)이 병들어 체임(遞任)하고 이휘로 대신하였는데, 이택의 병이 이미 나았기 때문에 잉임(仍任)하기를 청한 것이다.】 또 말하기를,
“반송사(伴送使) 윤덕준(尹德駿)이 장계(狀啓)하기를, ‘기린역(麒麟驛)의 역졸(驛卒)이 주머니에 지니고 가던 돈을 통관(通官)의 가정(家丁)에게 수색당했는데, 역리배(驛吏輩)들이 사단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소통사(小通事) 김영걸(金永傑)에게 애걸했더니, 김영걸이 중간에서 뇌물을 요구하고는 문서를 만들어 서로 약속하기에 이르렀으나, 역관(曆官) 민도흥(閔道興)에게 붙잡혔습니다. 그가 도로 찾도록 주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간에서 뇌물을 받으려 하였으니, 정상이 절통하여 우선 한 차례 엄형(嚴刑)하였는데, 청컨대 다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 다. 김영걸의 일이 비록 사정을 누설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으나, 일이 피인(彼人)들에게 관계가 되니, 다른 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마땅히 엄중하게 추궁하여 폐단을 막아야 하는데, 역시 어떤 율(律)을 써야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金)이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나라의 기강(紀綱)이 엄하지 못해서 우리 나라 사정이 누설됨이 많으니, 이와 같은 자는 드러나는 대로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걸의 죄는 비록 효시(梟示)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으나, 다만 뇌물은 문서만 만들고서 미처 주고 받지는 못했으니, 율문(律文)으로써 논죄하면 사죄(死罪)에 이르는 않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여러 신하 중에 혹은 말하기를, ‘마땅히 극률(極律)을 써야 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마땅히 차율(次律)을 써야 합니다.’ 하니, 임금(金)이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김우항이 또 말하기를,

李澤、會寧府使李暉。【蓋澤病遞，而暉代之，澤病已愈，故請仍之。】又言：“伴送使尹德駿狀啓言：‘麒麟驛卒囊齋錢文，見搜於通官家丁，驛吏輩恐有生事，祈乞於小通事金永傑，則永傑從中索賂，至於成文相約，爲曆官閔道興所捉。渠不惟不能周旋還推，反欲居間受賂，情狀絕痛，爲先嚴刑一次，而更請令廟堂稟處矣。’永傑事，雖與漏洩事情有異，事係彼人，非比他罪。固宜重究杜弊，而亦未知用何律爲當也。”上詢諸臣，禮曹判書閔鎭厚曰：“國綱不嚴，我國事情，多有宣洩。如此者，不可不隨現痛懲。永傑之罪，雖梟示，無可惜，而但賂物，只爲成文，而未及與受，論以律文，恐不至死矣。”諸臣或言當用極律，或言宜從次律，上命減死定配。宇杭又言：“李光佐報備局以爲，赦後有未捧糶穀蕩滅之命，前例有元會及常平賑恤、移轉軍餉，一體蕩滅之事，故今亦欲得其明白稟定矣。今年宜命一併蠲減，京畿各邑中，江都、南漢穀，亦當蕩滅。”上許之。鎭厚言試紙過厚之弊曰：“榜前如欲分付，則易致紛擾，榜出一等入啓

“이광좌(李光佐)가 비국(備局)에 보고하기를, ‘사유(赦宥) 후에 받아들이지 못한 적곡(糶穀)을 탕감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전례에는 원회(元會) 및 상평창(常平倉)에서 진휼(賑恤)하는데 이전한 군항(軍餉)을 일체 탕감한 일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명백한 것을 알아서 품정(稟定)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마땅히 한결같이 아울러 견감(蠲減)하도록 명하고, 경기(京畿) 각읍(各邑) 가운데 강도(江都)·남한(南韓)의 곡식도 또한 마땅히 탕감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민진후가 시지(試紙)가 너무 두꺼운 폐단에 대해 말하기를,

“방(榜)을 내기 전에 만일 분부하려고 하면 분요(紛擾)를 초래(招來)하기가 쉬우니, 방을 내어 1등은 입계(入啓)할 때 승정원에서 고찰하고, 2등 이하는 예조에서 고찰하여 품질이 두껍고 무게가 무거운 것은 계달하여 방에서 빼버리고, 거자(舉子)는 정거(停學)16811) 하고, 주장관(主掌官)은 논책(論責)하게 하소서. 조흘(照訖)16812) 의 법을 근래에 행하지 않았으니, 시권(詩卷)을 내어 줄 때 조흘을 빙고(憑考)하여 주면 법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권을 고교(考校)할 때 종이의 품질이 너무 두꺼운 자는 비록 글이 주옥(珠玉)같더라도 처음부터 취해 보지 않으면 이런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인데, 방을 낸 후 고찰하여 빼어버리면 일이 타당하지 않으니, 시소(試所)에 분부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민진후가 또 봉산(鳳山)에서 백토(白土)를 굴취(掘取)한 폐단에 대해 말하기를,

“백토는 처음 양구(楊口)에서 굴취하다가,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현(本縣)의 현령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그만두고 봉산으로 옮겨 정하였는데, 봉산의 폐단을 도리어 양구보다 심합니다. 일찍이 듣건대 양구현에서는 만약 그 고을의 전부(田賦)를 모조리 감해 주면 담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현의 전부

時, 政院考察, 二等以下禮曹考察, 品厚而斤重者, 啓達拔榜, 舉子則停學, 主掌官論責, 而照訖之法, 近來不行, 試券出給時, 憑考照訖而給之, 則法可行矣.” 上曰: “試券考校時, 紙品過厚者, 雖文如珠玉, 而初不取見, 則自無此弊. 榜出後考察拔去, 事未妥當, 分付試所可也.” 鎮厚又白鳳山白土掘取之弊曰: “白土, 初取於楊口, 以有弊端, 因本倅筵達而罷之, 移定鳳山, 鳳山之弊, 反甚於楊口. 曾聞楊口縣, 若盡減其邑田賦, 則可以擔當云. 本縣田賦, 其數不多, 與鳳山輸納之費, 幾乎相當. 今若許蠲其賦, 而白土五百石, 竝令掘納最好, 而晋州白(玉) [土], 品下於楊口. 元數二百五十石, 雖減五十之數, 足可用之, 其弊亦可減, 自今宜定以二百石.” 上可之. 左尹權尙游曰: “臣今當出疆, 而大報壇事, 彼若提問, 何以爲對耶? 或言: ‘宜以直對曰, 我國被神皇罔極之恩, 思寓不忘之意, 故果有此事.’ 或言: ‘不可不以權辭答之.’ 未知如何而可也.” 字杭曰: “彼似無詰問之事, 而設有之, 宜以我無此事爲答.

(田賦)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아서 봉산에서 수납(輸納)하는 비용과 거의 맞먹으니, 지금 만약 그 전부를 건감하고 백토 5백 석(石)을 아울러 굴취해 바치게 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진주(晉州)의 백토는 품질이 양구의 것보다 못한데, 원 수량이 2백 50석이어서 비록 50석의 수량을 감하더라도 넉넉히 쓸 수 있고 그 폐단도 또한 감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2백 석으로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좌윤(左尹)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신이 지금 국경에 나가야 하는데, 대보단(大報壇)16813)의 일을 저들이 만약 제기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땅히 바른 대로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가 신종 황제(神宗皇帝)의 망극한 은혜를 입어 잊을 수 없는 뜻을 두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야 한다.’ 하기도 하고, 혹은 말하기를, ‘권사(權辭)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김우항이 말하기를, “저들이 힐문하는 일이 없을 듯하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다.’고 대답해야 하며, 바른 대로 대답하면 처리하기 어려운 걱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민진후 이하 여러 신하는 모두 바른대로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갑신년16814) 단(壇)을 쌓은 후 동평위(東平尉)의 행차가 바로 을유년16815)·병술년16816)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 물음이 있을까 염려했었다. 지금은 꼭 만 10년이 되었고, 사개(使介)가 잇달았지만 저들이 일찍이 제기하지 않았으니, 지금 어찌 반드시 돌이켜 제기하겠는가. 설령 못더라도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이 의리(義理)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권상유가 인하여 재황(災荒) 때문에 진계(陳戒)하기를,

直對則恐不無難處之慮矣。” 鎮厚以下諸臣，皆言直對爲宜。” 上曰：“甲申築壇後，東平尉之行，卽在乙、丙，故或慮其有間，今則恰滿十年，使价相踵，而彼不曾提起，今何必追提乎？設令有間，以實爲對，無害於義理也。” 尙游仍以災荒陳戒曰：“今日所憂，惟在黨論，進言者皆以建中建極，爲可救之策。中字、極字，同意至善，所在處乃中也。或者以執二者之中，爲中非也，勿論事大小，必究至善所在處，是乃中也。” 又引朱子皇極辨，而論建極之義，上嘉納之。 鎮圭曰：“長生殿梓宮，合五部，而其中內廣之最者，一尺七寸，其下則尤狹。 己亥【孝廟大喪時。】用附板，甲寅【顯廟時】用他廣板，而內廣皆二尺二三寸，此事合有備豫之道矣。 卽今諸路失稔，關東尤被水災，發送敬差官，雖有弊，而莫重之事，亦不可遷就。 如以民弊爲念，則只限二部，酌定伐取，而敬差則宜令下送於秋間。” 宇杭亦以爲是，上從之。 校理洪禹瑞進曰：“古語曰：‘一年再赦，善人喑啞。’ 今此疏決，又近於赦令，恐傷國體。” 鎮厚及諸臣，皆

“오늘날 염려되는 바는 오로지 당론(黨論)에 있으니. 진언(進言)하는 자가 모두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워 구제할 계책을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중(中)자와 극(極)자는 같은 뜻으로, 지선(至善)이 있는 곳이 바로 중(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의 가운데를 잡는 것을 중이라고 하지만 잘못이고, 일의 대소(大小)를 물론(勿論)하고 반드시 지선(至善)이 있는 곳을 궁구(窮究)하여야 이것이 바로 중입니다.”

하고, 또 주자(朱子)의 황극변(皇極辨)을 인용하여 건극(建極)의 뜻을 논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김진규가 말하기를,

“장생전(長生殿)의 재궁(粹宮)이 모두 5부(部)인데, 그 가운데 안 너비가 가장 넓은 것이 1척 7촌이며, 그 이하는 더욱 좁습니다. 기해년(16817)에는 【효종(孝宗)의 대상(大喪) 때이다.】 부판(附板)을 썼고, 갑인년(16818)에는 【현종 때이다.】 다른 광판을 썼는데, 안 너비가 모두 2척 2, 3촌이었으니, 이 일은 예비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당합니다. 지금은 여러 도(道)에 흉년이 들었고, 관동(關東)에서는 더욱 수재(水災)를 입었으니, 경차관(敬差官)을 보내는 것이 비록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막중한 일을 또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민폐(民弊)를 생각한다면 단지 2부(部)에 한하여 작정해 나무를 베게 하고, 경차관은 마땅히 가을 무렵에 내려 보내소서.”

하였는데, 김우항 또한 옳게 여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교리(校理) 홍우서(洪禹瑞)가 진언(進言)하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1년에 두 번 사유(赦宥)하면 선인(善人)이 병어리처럼 입을 다문다.’ 하였습니다. 이번의 소결(疏決)은 또 사령(赦令)에 가까우니,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하였는데, 민진후 및 여러 신하들이 모두 홍우서의 말을 여겼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을 근심하여 죄수의 죄상을 조사해 밝히는 것은 지금 처음이 아니며, 또

是禹瑞之言，上曰：“憫旱慮囚，非今斯今，且疏決異於赦令，何可廢而不舉乎？”獻納李澤論：“伴送使之任，雖與問安使有異，而彼人慢辭譯舌，矇然受傳，而任其所爲，終無指揮之事，不可推考而止。請伴送使尹德駿，罷職。”

【問安使事見上。】上謂伴使有異於問安使，不許。

	<p>소결(疏決)은 사령(赦令)과 다른데, 어찌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헌납(獻納) 이택(李澤)이 논핵하기를, “반송사(伴送使)의 임무가 비록 문안사(問安使)와 다르지만 피인(彼人)의 만사(慢辭)16819) 를 역설(譯舌)이 몽롱하게 받아 전하여도 하는 대로 맡겨두고 끝내 지휘(指揮)한 일이 없었으니, 추고(推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반송사 윤덕준(尹德駿)을 파직하소서.” 하니, 【문안사의 일은 위에 보인다.】 임금이 말하기를, “반사(伴使)는 문안사와 다름이 있다.”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康熙) 52년) 7월 21일(병인) 1번째기사</p>	<p>여러 대신 및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의 여러 당상관을 인견하여 죄수를 소결하였다. 문외 출송(門外黜送)한 죄인 서명우(徐命遇), 도배(徒配)한 죄인 오수원(吳遂元)은 방송(放送)하고, 형조의 죄인 이덕태(李德泰)는 【이덕태의 일은 위에 보인다.】 실성(失性)한 것이 분명한 까닭에 감사(減死)하여 논배(論配)하고, 그 나머지는 경중을 나누어 혹은 그대로 두기도 하고, 혹은 참작하여 처리하였다. 판부사(判府事)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이번에 칙사(勅使) 행차가 돌아갈 때 으레 주는 물건이 모두 정교(精巧)하지 못하였고, 또 서로(西路)에서 청구한 것도 기축년(16820)의 예에 의거한다고 핑계대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므로, 저 사람들이 이로써 화를 내어 심지어 만사(慢辭)로 문안사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 듣건대 청천강(淸川江)을 건널 때에 상척사(上勅使)의 가정(家丁)이 화를 내어 감사(監司)의 빈 가마를 때려 부수었다 하며, 용만(龍灣)16821)에 머물던 날에는 칙사가 본부의 장교(將校)에게 글을 부쳐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청인(淸人)에게 가서 전하게 하였더니, 장교가 물에 빠져 글을 잃었다고 핑계대고는 끝내 전해 주지 않았으므로 목차(穆差)가 또한 매우 화를 내어 말하기를, ‘길을 떠난 후 국왕의 뜻을 본받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합니다, 저들은 연로(沿路)에서</p>	<p>丙寅/引見諸大臣及禁府、刑曹諸堂上，疏決罪囚。門黜罪人徐命遇、徒配罪人吳遂元，放送，刑曹罪人李德泰，【德泰事見上。】以明是喪性，減死論配，其餘分輕重或仍置，或酌處。判府事金昌集曰：“今番勅行還歸時，例贈物種，皆不精，且西路求請，稱以依己丑例，而其實則不然，故彼人以此生怒，至以慢辭答問安使。又聞渡淸川江時，上勅家丁發怒，打碎監司之虛轎，留灣日，勅使以書付本府將校，使之往傳于越邊待候淸人，則將校諉以落水失書，終不傳示，穆差亦甚生怒，以爲：‘發程後，未見體國王之意者。’彼則盡除沿路接享之弊，至於升降一節，亦許從便，而我乃待之不謹。且邊事，</p>

접향(接享)하는 폐단을 모조리 없애 버렸고, 심지어 오르내리는 한 가지 절목(節目)까지도 또한 편리한 대로 따르기를 허락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삼가서 대접하지 않았습니니다. 또 변방의 일은 마땅히 낱낱이 장문(狀聞)해야 하는데, 가마를 부수고 글을 잃어버린 등의 일은 끝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양서(兩西)의 방백(方伯)과 빈신(僉臣)에게는 모두 마땅히 논책(論責)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이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양서(兩西)의 감사(監司)는 파직하고, 반송사도 일체로 파직하라.”

하였다. 우의정 김우항(金字杭)이 말하기를,
 “해서(海西) 여러 고을의 청구를 한결같이 상정(詳定)한 후에 모두 영문(營門)에서 모아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요리(料理)해서 처리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모리배(牟利輩)인 까닭에 싼값으로 사들여서 준비한 바가 모두 정교(精巧)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李濟)가 실시한 바이니, 마땅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김창집이 또 당론(黨論)의 폐해를 진달하고, 중도(中道)를 세우는 도리에 힘을 쓸 것을 청하였는데, 김우항이 상세하게 잇따라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번 폐출(廢黜)한 자는, 신은 그 죄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미 20년이 지났는데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논함이 없이 한결같이 금고(禁錮)16822) 시키면 반드시 억울한 기운이 있을 것입니다. 체울(滯鬱)한 자를 소통(疏通)시키는 것도 재변을 그치게 하는 데 한 가지 도움이 됩니다.”

하였는데, 김창집은 말하기를,
 “그 가운데 명의(名義)를 범하고, 어진 사람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한 자를 어찌 경솔히 의논하겠습니까. 그러나 영남의 무고(無故)한 사람은 거두어 임용해도 무방합니다.”

所當一一狀聞，而碎轎失書等事，終不報聞，兩西方伯及僉臣，皆宜有論責之道。”上命兩西監司罷職，伴送使一體罷職。右議政金字杭曰：“海西列邑求請，一自詳定後，都聚營門，使別將，料理措辦，其人皆以牟利輩，廉價辦取，所備皆不精云。此是李濟所施設，宜有變通之道。”上令廟堂，更議處之。昌集又陳黨論之害，請懋建中之道，宇杭縷縷繼陳之，又曰：“向時廢黜者，臣未詳其罪名，而今已二十載。無論有罪無罪，一向廢錮，必有冤鬱之氣。疏通滯鬱，亦是弭災之一助。”昌集曰：“其中干犯名義，戕賢病國者，何可輕議？嶺南無故人則不妨收用。”上曰：“右相之言，亦非指罪關名義者，蓋言其無故見廢者，大意好矣。”仍教曰：“無論甲乙，勇於論議者，不專心於國事，予甚不好。朝臣中，或有表表怪妄者，某也某也，予皆知之，如此者，不欲擢用矣。向者金雲澤以威里，多論事，極爲未妥，故其後屢次斬點矣。”校理洪禹瑞曰：“黨習之尤甚者，指教警責，必有懲戢之效矣。聖教既以某某人喜論議，予皆知之爲言，君臣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右相)의 말도 역시 죄가 명의(名義)에 관계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개 까닭 없이 폐출된 자를 말하는 것이니, 대의(大意)는 좋다.”</p> <p>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갑(甲)·을(乙)을 물론하고 논의에 용감한 자는 나라일에 전심(傳心)하지 않으니, 내가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조신(朝臣) 가운데 혹 유난히 괴상하고 망측한 자가 누구누구인가를 내가 모두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는 탁용(擢用)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번 김운택(金雲澤)은 척리(戚里)로서 논사(論事)함이 많아 매우 타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후 여러 차례 낙점(落點)을 하지 않았었다.”</p> <p>하였다. 교리(校理) 홍우서(洪禹瑞)가 말하기를, “당습(黨習)이 더욱 심한 자를 가리켜 경책(敬責)한다면 반드시 징계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교(聖敎)에 이미 ‘누구누구가 논의를 좋아하는지 내가 모두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같으니 즉시 깨우쳐서 계칙(戒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감추어 쌓아두고서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격(否隔)16823의 상(象)이 됩니다. 이후로 신료(臣僚)에게 만약 미안(未安)한 일이 있을 때 즉시 가르치고 경계하여 의심하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면, 정지(情志)가 유통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임금이 외방(外方)의 죄수가 많이 체옥(滯獄)되어 있다 하여 신칙하여 체옥을 소통시키도록 명하고, 또 호남(湖南)의 연해(沿海)가 해마다 대단히 가문 것이 혹 원기(冤氣)를 초래(招來)함이 없지 않다 하여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 계문하게 하였다. 또 군함(軍銜)을 겸직하고서 하향(下鄉)한 자가 매우 많다 하여 다시 신칙하여 엄금하기를 명하였다. 승지 이세최(李世最)가 진언하기를, “이돈(李墩)이 두루 저축한 일은 처음에 윤팽수(尹彭叟)·갑술(甲戌)로써 사증</p>	<p>如父子， 隨卽開曉戒飭宜矣。 如或(莊)〔藏〕蓄不發， 是爲否隔之象。 今後臣僚， 如有未安之事， 卽爲教戒， 俾無疑阻， 則情志可以流通。” 上嘉納之。 上以外方獄囚之多滯， 命申飭疏滯， 又以湖南沿海， 連年枯旱， 或不無冤氣所致， 令道臣， 詳察啓聞。 又以帶軍銜下鄉者甚多， 更命申飭嚴禁。 承旨李世最進曰：“李整歷抵事， 初以彭叟、甲戌爲詞證， 而嚴訊諸僉以實之， 獄體終欠明白。 連值大慶， 死罪咸宥， 而整獨未蒙霽恩， 豈非欠典乎？ 似宜有伸釋之道。” 上曰：“詞證俱備， 歷抵現露， 何可容易舉論乎？” 上諭承旨曰：“書院疊設之弊久矣， 請額之疏紛紜， 此無一切之法故也。 自今雖從祀儒賢， 如有疊設書院， 嚴加禁斷， 勿許請額事， 永爲定式施行。”</p>
--	--	--

	<p>(詞證)을 삼았는데, 여러 하인을 엄히 신문하여 실토시켰지만, 옥체(獄體)는 끝내 명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대경(大慶)을 만나 사죄(死罪)를 모두 사유(赦宥)받았으나, 이돈만은 홀로 사유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했으니, 어찌 흠전(欠典)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신석(伸釋)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증(詞證)이 구비되고 두루 저축한 것이 드러났는데, 어찌 쉽게 거론하겠는가.”</p> <p>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유시하기를, “서원(書院)을 겹쳐 세우는 폐단이 오래 되어서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가 어지러운 것은 일체의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비록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된 유현(儒賢)일지라도 만일 서원을 겹쳐 세우는 일이 있으면 엄중히 금단(禁斷)을 가하고, 사액 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일을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만들어 시행하라.”</p> <p>하였다.</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7월 23일(무진) 2번째기사</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작년에 본조(本曹)의 계품(啓稟)으로 인하여 제도(諸道)의 각종 방물(方物) 및 삭납 물선(朔納物膳)을 명년 가을까지 한정하여 재감(裁減)하였는데, 방물은 전례에 의하여 복구(復舊)하고 물선은 동지부터 시작하여 복구해 봉진(封進)하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명하기를, “명년 가을까지 한정하여 우선 감하라.”</p> <p>하였다.</p>	<p>禮曹啓曰：“上年因本曹啓稟，諸道方物各種及朔納物膳，限明秋裁減矣，方物依前例復舊，物膳則冬至爲始，復舊封進之意，分付何如？”命限明秋姑減。</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8월 8일</p>	<p>수원 부사(水原府使) 김보택(金普澤)이 상소하여 본부의 흉황(凶荒)을 진달하며 급재(給災)·분재(分災) 및 면전(綿田)의 급재를 청하고, 또 청하기를, “공명첩(空名帖)16855) 수백 장을 얻어 전매(轉賣)하여 곡물 모으는 데 보태</p>	<p>水原府使金普澤，上疏陳本府凶荒，請給分災及綿田災，又請得空名帖數百張，爲轉賣聚穀之助，又言：</p>

<p>(계미) 3번째기사</p>	<p>려고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2필(疋)의 신역(身役)은 비록 견감은 허락하였으나 1필(疋)의 신역(身役)은 일찍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의 백성들은 한 번 변통한 후부터 원래 2필을 바치는 자가 없었으니, 혹은 절반(折半)이거나 혹은 3분의 1로 작량(酌量)하여 견감하는 것은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경내(境內) 및 가까운 고을 소재 각 아문(衙門)의 둔곡(屯穀)을 진자(賑資)로 가져다 쓰고 있으니, 비국(備局)의 무명배 4, 50 동(同)을 빌어서 각 아문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진청미(賑廳米) 1천 석(石)을 팔도록 허락하고, 본부에서 힘껏 값을 마련해 진자(賑資)에 보태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품처하게 하였다.</p>	<p>二疋身役，雖許蠲減，一疋身役，未曾學論。本府民人，一自變通之後，元無納二疋者，或半折或三分其一，而酌量蠲減，決不可已也。境內及近邑所在各衙門屯穀，取用於賑資，而貸得備局木四五十同，充報各衙門。 又請許賣賑廳米千石，而自本府竭力備價，取補賑資，上命廟堂稟處。</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8월 16 일(신묘) 2번째기사</p>	<p>전라도 위도진(蝟島鎭)의 군졸 1백여 명이 물에 빠져 죽으니, 홀전(恤典)을 거행하도록 명하였다.</p>	<p>全羅道蝟島鎭卒一百餘人滄死，命舉恤典。</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9월 1일 (을사) 1번째기사</p>	<p>장령(掌令) 유승(兪崇)이 관서(關西)의 흉년이 든 상황을 진소(陳疏)하고 【유승이 경시관(京試官)으로 겨우 관서에서 돌아왔었다.】 청하기를, “개천(价川)·은산(殷山) 두 고을 가운데 더욱 심한 곳과 더욱 혹심한 재해를 입은 다른 고을은 헤아려 마땅히 급재(給災)하되, 혹은 신포(身布)를 감하고 적곡(糴穀)16868 을 감하고, 해서(海西)와 기전(畿甸)의 한전(旱田)은 급재(給災)하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관서(關西)의 문풍(文風)이 크게 변했으니, 청컨대 공도회(公都會)16869 의 액수(額數)를 한두 사람 청천강(淸川江) 남북에 가정(加定)하여 많은 선비들의 희망을 위로하소서.”</p>	<p>朔乙巳/掌令兪崇，疏陳關西年凶之狀，【崇以京試官纔自西還。】請价川、殷山兩邑中尤甚處及他邑被災尤酷者。量宜給災，或減布減糴，海西、畿甸許給旱田災。又言關西文風丕變，請加定公都會額數一二人於淸南北，以慰多士之望，上令廟堂稟處。</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9월 3일 (정미) 2번째기사</p>	<p>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윤취상(尹就商)이 청하기를, “관서의 환곡(還穀)을 옮겨서 수원의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수원 군병(軍兵)의 신역(身役) 6두미(斗米)도 또한 1두를 감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환곡을 옮기는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수찬(修撰) 황귀하(黃龜河)가 청하기를, “각 고을의 받아들이지 못한 옛 환곡(還穀)은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소서.” 하니, 또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하게 하였다.</p>	<p>御晝講。 特進官尹就商， 請移關西還穀， 賑水原飢民， 又請水原軍兵身役六斗米， 亦減一斗， 上許之， 移穀事， 令廟堂稟處。 修撰黃龜河， 請停捧各邑舊還穀未捧者， 又命廟堂稟處。</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9월 4일 (무신) 3번째기사</p>	<p>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차자를 올려 재이(災異)로써 면직하기를 원하고, 또 말하기를, “경신(庚申)에 【경술년16872) 과 신해년16873) 이다.】 기근이 들었을 때 선대왕(先大王)께서는 자신의 아픔처럼 근심하셨으며, 몇 명의 충근(忠勤)한 신하들은 진휼하는 일을 분장(分掌)하여 또한 정성을 다하였는데, 어떤 이는 감진(監賑)하다가 여역(癘疫)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선왕께서 근심하신 것처럼 근심하시고 여러 신하 가운데 재능과 성의가 있는 자를 특별히 가려서 진휼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려 말하기를, “부진(附陳)한 일은 마땅히 유의(留意)하겠다.” 하였다.</p>	<p>右議政金宇杭上筭， 以災異乞免， 又言： 庚、辛【庚戌、辛亥。】之饑， 先大王憂之， 若桐在己， 數三忠勤之臣， 分掌賑事， 亦竭其誠， 或監賑染癘而不起。 願以先王之憂爲憂， 特簡諸臣中有才誠者， 使議賑事。 上賜優批， 以爲附陳之事， 當留意焉。</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9월 5일 (기유) 2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청하기를, “병조(兵曹)·호조(戶曹)에 봉부동(封不動)16874) 한 포목(布木)을 진청(賑廳)에 이송(移送)하여 경기·충청 두 도(道)에 나누어 대여(貸與)해서 백성을 진휼하는 밀천을 삼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말하기를,</p>	<p>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金宇杭請捐出兵、戶曹封不動木， 移送賑廳， 分貸京畿、忠清兩道， 以爲賑民之資， 許之。 又言：“春塘臺舉動時， 罷陣命下之後， 大將未及出關門， 而中軍(經) [徑] 先罷陣。 軍法至嚴何可不待將</p>

	<p>“춘당대(春塘臺) 거등 때 파진(罷陣)의 명이 내린 후 대장(大將)이 미처 쫓문을 나오지 않았는데 중군(中軍)이 앞질러 먼저 파진하였습니다. 군법이 지극히 엄중한데, 어찌 장수의 영을 기다리지 않고 앞질러 파진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 이기하(李基夏)는 기율이 엄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니 추고(推考)하고, 중군 이용(李溶)은 나문(拿問)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희하였다. 또 청하기를,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를 불러 면대해서 유시하여 머물러 있게 하시고, 판부사 이유(李濡)를 다시 돈소(敦召)하시고, 판부사 최석정(崔錫鼎)도 똑같이 소환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언(正言) 조명봉(趙鳴鳳)이 진계(進啓)하기를, “헌납(獻納) 홍중휴(洪重休)는 소어(疏語)가 사리에 어긋나고 사당(私黨)을 굽혀서 비호하며 공의(公議)와 힘껏 싸우더니, 유신(儒臣)과 간신(諛臣)이 혹은 상소하기도 하고 혹은 인피하기도 하여 논척(論斥)이 골고루 이르자 상소하여 거듭 거리낌없이 꾸짖어 욕하였으니, 【홍중휴(洪重休)가 일전에 다시 상소하여 대신(臺臣)을 헐뜯었기 때문이다.】 청컨대 파직하소서.”</p> <p>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소대(召對)를 과한 후 임금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를 불러들이게 하였는데, 이여가 입대(入對)하여 귀양(歸養)하기를 매우 간절히 원하자, 임금이 재삼 위유(慰諭)하고, 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손을 잡고 또 대산(戴珊)의 일을 인용하여 개유하기를, “군신 사이가 어찌 고금에 다름이 있겠는가. 병이 만약 더하면 명년 봄에 귀양하도록 허락할 것이나, 지금은 결코 귀양하게 할 수가 없으니, 이는 실로 가슴속에서 나오는 말이다.”</p> <p>하였다. 이여가 누누이 귀양하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고, 인하여 명하기를,</p>	<p>令，而徑爲罷陣乎？大將李基夏，紀律不嚴可知，推考，中軍李溶，拿問宜矣。”上許之。又請判府事李畬召對面諭，使之留在，判府事李濡更加敦召，判府事崔錫鼎，一體召還，從之。正言趙鳴鳳進啓：“獻納洪重休疏語謬戾，曲護私黨，力戰公議，而儒臣、諛臣，或疏或避，論斥備至，則投疏詆辱，更無所憚，【重休日前再疏，侵詆臺臣故也。】請罷職。”不允。罷對後，上命史官，召判府事李畬入來，畬入對，乞歸甚懇，上再三慰諭之，命之前，執其手，又引戴珊事諭之曰：“君臣之間，豈有古今之異乎？病若有加，則明春可許歸，而今則決不可歸，此實肝膈之言也。”畬縷縷請歸，終不許，仍命城內擇給過冬家舍，分付該曹，輸送柴炭。是後，上又命掖庭人，別輸柴炭給之。又下教，命史官諭于崔錫鼎曰：“既往之事，予不留在胸中，須體至意，安心入城。”仍使之偕來。</p>
--	--	--

	<p>“도성 안에 겨울을 지낼 집을 골라 주라.” 하고,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시탄(柴炭)을 수송하게 하였다, 이후에 임금이 또 액정인(掖庭人)에게 명하여 별도로 시탄(柴炭)을 수송해 주게 하고, 또 하교하여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최석정(崔錫鼎)에게 개유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은 내가 가슴속에 남겨 두지 않으니, 모름지기 지극한 뜻을 본받아 안심하고 도성으로 들어오라.” 하고, 인하여 함께 오도록 하였다.</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康熙) 52년) 9월 8일 (임자) 2번째기사</p>	<p>제주(濟州)·대정(大靜)·정의(旌義)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바다와 산을 뒤흔들어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인가가 2천여 호나 되도록 많고 사람이 또한 많이 압사하고, 우마 4백여 필이 죽었다. 명하기를, “압사한 사람에게는 홀전(恤典)을 거행하도록 하라, 한 섬에서 입은 재해가 이처럼 혹심하니, 목사(牧使)가 순심(巡審)하여 장문(狀聞)하기를 기다려 즉시 곡식을 옮겨서 구제해 살릴 터전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p>	<p>濟州大靜、旌義，大風雨，掀海撼岳，折木拔屋，人家頽壓，多至二千餘戶，人物亦多壓死，牛馬致斃四百餘匹。命壓死人，恤典舉行，而一島被災此酷，待牧使巡審狀聞，劃卽移粟，以爲濟活之地。</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康熙) 52년) 9월 10일(갑인) 2번째기사</p>	<p>6월의 도목정(都目政)을 늦추어 거행하여 이언강(李彦綱)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윤지인(尹趾仁)을 특승(特陞)하여 판윤(判尹)으로, 권성(權聃)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재(李緯)를 대사성(大司成)으로, 유태명(柳泰明)을 승지(承旨)로, 황귀하(黃龜河)를 교리(校理)로, 신사철(申思喆)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윤봉조(尹鳳朝)를 부교리(副校理)로, 헌납(獻納) 조상경(趙尙綱)을 즉시 옮겨 사서(司書)로, 남세진(南世珍)을 장령(掌令)으로, 안중필(安重弼)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p>	<p>退行六月都目政。以李彦綱爲左參贊，特陞尹趾仁爲判尹，權聃爲大司諫，李緯爲大司成，柳泰明爲承旨，黃龜河爲校理，申思喆爲副修撰，尹鳳朝爲副校理，旋移獻納趙尙綱爲司書，南世珍爲掌令，安重弼爲持平。</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康熙) 52년) 9월 13일(정사) 3번째기사</p>	<p>충청 감사(忠淸監司) 송정명(宋正明)이 사직소를 인하여 덧붙여 진계(陳啓)하기를, “해택(海澤)은 치우치게 한재(旱災)를 입었는데 단지 8분재(八分災)만 주니, 해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군(山郡)은 또 풍재(風災)를 입었는데, 만약 실결(實結)16881)의 세(稅)를 요구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어찌 끝이 있겠</p>	<p>忠淸監司宋正明，因辭疏，附陳海澤偏被旱災，只給八分災，未足爲惠。山郡又被風災，若責實結之稅，則民之呼冤，曷有極已？左右沿江，多種山稻，而竝以早田之故，不爲給災，將不免白</p>

	<p>습니까. 좌우의 강 연안에는 산도(山稻)를 많이 심었으나, 모두 한전(旱田)인 까닭에 급재(給災)하지 않았으므로, 장차 백지(白地)16882) 의 징세(徵稅)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오년16883) 과 무자년16884) 에는 한 도(道)를 통틀어 7분재(七分災)를 주었고, 산도(山稻) 또한 급재(給災)하도록 허락했었는데, 유독 올해에만 위의 것을 덜어 아래 보태주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음은 무엇때문입니까.”</p> <p>하니, 대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p> <p>하였다.</p>	<p>地徵稅。 庚午、戊子，通一道許給七分災，山稻亦許給災，獨於今年，不思損上益下之道，何也？ 答以令廟堂稟處。</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9월 13 일(정사) 4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금년의 재황(災荒)은 호서가 가장 흑심하고 기전(畿甸)도 같은데, 근본 16885) 의 땅 또한 마땅히 진념(軫念)해야 하니, 내탕(內帑)을 열어 진휼에 보태는 것을 늦출 수 있겠는가. 이제 은자(銀子) 1천 냥을 내려 호서에 내려 보내고, 8백 냥은 기영(畿營)에 내려보내어 내가 적자(赤子)를 돌보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다. 이튿날 연중(筵中)에서 지경연(知經筵) 조태구(趙泰耆)가 아뢰기를, “내장(內藏)이 이미 비었으니, 지부(地部)16886) 에 저장된 것을 내어 호남에 내려보내 고루 혜택을 주는 뜻을 보이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탕(內帑) 역시 남은 것이 없지 않다.”</p> <p>하고, 즉시 비망기를 내려 또 1천 냥을 내어 호남으로 내려 보내기를 명하였다.</p>	<p>教曰：“今年災荒，湖西最酷，畿甸同然，而根本之地，亦宜軫念。發帑補賑，其可緩乎？今下銀子一千兩，下送湖西，八百兩下送畿營，用示予如保赤子之意。” 翌日筵中，知經筵趙泰耆，奏以內藏已罄，則出地部所儲，下送湖南，俾示均惠之意，上曰：“內帑亦不無所餘。” 卽下備忘，又出一千兩，命下送湖南。</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9월 14 일(무오) 1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조태구(趙泰耆)가 말하기를, “북한(北漢)에 저장된 어공미(御供米) 3백 석을 바야흐로 광흥창(廣興倉)의 쌀로 이송하는데, 운반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금후에는 기읍(畿邑)의 전세(田稅) 중에서 3백 석은 북한으로 보내고, 1년을 걸러서 절반씩 개색(改</p>	<p>戊午/御晝講。 知經筵趙泰耆曰：“北漢留儲御供米三百石，方以廣興倉米移送，而運致有弊。 今後畿邑田稅中，三百石，劃送北漢，間一年折半改色，</p>

	<p>色)16887) 하여 3백 석은 항상 남겨 두는 바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옹계 여겼다.</p>	<p>以爲三百石恒留之地。”上可之。</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9월 15 일(기미) 1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청하기를, “전라 감사 유봉휘(柳鳳輝)의 소에 의하여 강도(江都)의 쌀 1만 석을 호남(湖南)에 이송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갈두산(葛頭山)에 저장된 곡식과 호남 연해(沿海) 고을 진청(賑廳)의 회부곡(會付穀) 1만 석을 한정하여 제주로 들여보내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호서(湖西) 연해 고을에는 7분재(七分災)를 주소서.” 하고, 이어 말하기를, “기읍(畿邑)과 호남도 또한 다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또 청하기를, “호남 감진 어사(湖南監賑御史)를 차출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감진 어사를 우도 감진 어사라 일컬어 내려 보냈는데, 송상기(宋相琦)의 말을 따른 것이다.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괴원 분관(槐院分館)이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위(右位)는 비록 이미 삭직(削職)하였으나, 차관(次官)은 조령(朝令)이 아니면 거행할 수 없는 것이 예(例)라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차관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근래에 과거(科擧) 후 사람들의 말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모두 고관(考官)을 싫어하여 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시(庭試)의 고관은 지금까지 인혐(引嫌)하고 있고, 대신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일제(九日製)16888) 는 아</p>	<p>己未/引見大臣、備局諸臣。左議政金昌集，請依全羅監司柳鳳輝疏，移送江都米一萬石於湖南。又請葛頭山所儲穀，及湖南沿海邑賑廳會付穀，限萬石入送濟州。又請湖西沿海邑給七分災。繼言畿邑、湖南，亦不可異同，又請差出湖南監賑御史，上竝從之。監賑御史，稱以右道監賑御史下送。因宋相琦之言也。禮曹判書閔鎭厚言：“槐院分館，尙今遷就。右位雖已削職，次官非有朝令，則例不得舉行”云，上命次官舉行。鎭厚又言：“近來科後，人言嘵嘵，人皆厭避考官。上年庭試考官，至今引嫌，至大臣亦然。九日製，尙不出令，將不得設行矣，宜有申飭之道。”昌集及左參贊崔錫恒，皆以庭試考官，引嫌陳辭，上命勿爲引嫌，從速設行九日製。江華留守趙泰老，以本府災荒，請依丙子例，軍餉各穀還分者折半退捧，又請得空名帖，俾得聚穀，上從之。昌集請於星州御史洪致中下去時，解事者一二人，使之別爲帶去，而不給馬除官供，若干資給，</p>

	<p>직껏 명령이 나오지 않아 장차 설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마땅히 신칙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p> <p>하고, 김창집 및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이 모두 정시(庭試)의 고관(考官)으로서 인혐(引嫌)하고 사직하니, 임금이 인혐하지 말고 빨리 구일제(九日製)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조태로(趙泰老)가 본부(本府)의 재황(災荒) 때문에 청하기를,</p> <p>“병자년(1689)의 전례에 의하여 군항(軍餉) 각종 곡식 환분(還分)의 절반을 늦추어 받아들여소서.”</p> <p>하고, 또 청하기를,</p> <p>“공명첩(空名帖)을 얻어 곡식을 모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창집이 청하기를,</p> <p>“성주 어사(星州御史) 홍치중(洪致中)이 내려갈 때에 일을 잘 아는 자 한두 사람을 별도로 데리고 가게 하되, 말[馬]을 주지 말고 관공(官供)을 제(除)하고 약간의 자금(資給)으로써 기탐(譏探)하는 방도를 삼게 하소서.”</p> <p>하고, 민진후 또한 말하기를,</p> <p>“만약 잘 염탐하면 논상(論賞)해야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p>	<p>以爲譏探之道，鎮厚亦言：“若善爲詞探，則論賞宜矣”，上竝許之。</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康熙) 52년) 9월 21일(을축) 1번째기사</p>	<p>비국(備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명하기를,</p> <p>“기영(畿營)과 호서(湖西)에 보낸 호조와 병조의 무명 3백 동(同) 가운데 1백 동을 덜어 전라도에 나누어 보내 진자(賑資)에 보태도록 하라.”</p> <p>하고, 또 명하기를,</p> <p>“전라도 각 군병(軍兵)의 도안(都案)과 식년 호적(式年戶籍)은 명년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고, 더욱 심한 고을의 세초(歲抄)는 우선 정지하라.”</p> <p>하였다.</p>	<p>乙丑/因備局啓辭，命畿營、湖西所送戶、兵曹木三百同中，餘一百同，分送全羅道，以補賑資。且命全羅道各軍兵都案、式年戶籍，待明秋舉行，尤甚邑歲抄姑爲停止。</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p>	<p>홍문관에서 【교리(校理) 황귀하(黃龜河)와 부교리(副校理) 어유귀(魚有龜)이다.】 천둥한 이변으로 진계(陳戒)하는 차자를 올렸는데, 첫머리에 말하기를,</p>	<p>弘文館，【校理黃龜河、副校理魚有龜。】以雷異，上陳戒箚。首言：</p>

<p>(康熙) 52년) 9월 24일(무진) 2번째기사</p>	<p>“논의(論議)가 매우 어지럽고,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이 곤궁하고, 군역(軍役)이 번거롭고 괴로우며, 도적이 몰래 일어나고, 변경[邊圉]이 허술하고, 옥송(獄訟)이 지체되고, 풍속이 무너진 것은 천심(天心)을 거슬러 천재를 부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p> <p>하고, 인하여, 선왕(先王)의 정사를 닦고, 선왕의 마음을 본받아 수성(修省)하는 방도를 삼아야 한다면서 말하기를,</p> <p>“세종 대왕께서는 재변을 만난 날을 당하여 법에 어긋나는 징렴(徵斂)과 급하지 않은 역사는 한결같이 정파해서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였고, 선조 대왕께서는 임진년(16894) 병란을 당한 후에 계사년(16895)과 갑오년(16896) 양년(兩年)의 흉년을 당하자 어공(御供)을 덜어내어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셨는데, 지금 전하께서 급재(給災)하고 부세를 견감하신 것은 바로 세종께서 징렴을 정지한 뜻이며, 내탕(內帑)을 내어 진휼에 보탠 것은 선조께서 어공을 줄인 뜻입니다. 과연 이런 마음을 지켜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고 순실(純實)하게 행하고, 오랫동안 지니시어 한결같이 우리 조종(祖宗)과 같게 하신다면, 천심(天心)을 감격시키어 재변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끝에서는 또 위 무공(衛武公)이 90세 억시(抑詩)(16897)를 풍송(諷誦)한 일을 인용(引用)해 말하기를,</p> <p>“전하의 춘추(春秋)는 무공(武公)의 나이에 비해 겨우 그 절반을 넘었으나, 책임의 중함과 시세(時勢)의 어려움은 무공보다 백 배나 되니, 감히 무공이 시종 계근(戒謹)한 것으로써 우리 전하께 권명(勸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려 가납(嘉納)하였다.</p>	<p>論議橫潰，紀綱頽廢，民生困窮，軍役煩苦，盜賊竊發，邊圉踈虞，獄訟滯鬱，風俗壞敗，罔非拂天心而召天災者。</p> <p>仍以修先王之政，法先王之心，爲修省之道曰：</p> <p>世宗大王，當遇災之日，非法之斂，不急之役，一皆停罷，以寬民力。宣祖大王，當壬辰兵燹之後，值癸、甲兩年之歉，除出御供，以賑飢民。今殿下給災蠲賦，卽世廟停斂之意也，發帑補賑，卽宣廟減供之意也。果能保守此心，孜孜不懈，行之以純實，持之以悠久，一如我祖宗，則足以感格天心，消弭災沴。</p> <p>末又引衛武公九十諷誦《抑》詩之事曰：</p> <p>殿下春秋視武公之年，纔過其半，責任之重，時勢之難，百倍武公。敢不以武公之終始戒謹，勸我殿下乎？</p> <p>上優批嘉納。</p>
<p>숙종 54권, 39년 (1713 계사 / 청 강희 (康熙) 52년) 9월 24일(무진) 4번째기사</p>	<p>비국(備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명하기를,</p> <p>“함경도 6진(六鎭)과 삼수(三水)·갑산(甲山)의 전세(田稅)를 전감(全減)하고, 그 나머지 각 고을 가운데 더욱 심한 곳은 3분의 1을 감하라.”</p> <p>하였다.</p>	<p>備局啓辭，命咸鏡道、六鎭、三、甲全減田稅，其餘各邑尤甚處。三分減一。</p>
<p>숙종 54권, 39년</p>	<p>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와 함께 오도록 한 사관(史官)이, 이유가 지난 밤부</p>	<p>辛未/判府事李濡處偕來史官，以濡自</p>

<p>(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9월 27 일(신미) 1번째기사</p>	<p>터 갑자기 질환(疾患)이 있어 우선은 도성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계문 하니, 명하기를, “의원(醫員)에게 약물(藥物)을 가지고 가서 보게 하라.”</p>	<p>去夜，猝有疾患，姑難入城之意啓聞，命遣醫持藥物往視。</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0월 4 일(무인)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팔도에 흉년이 들었는데, 양호(兩湖)16912) 와 기전(畿甸)이 더욱 심해 아픔이 내 몸에 있는 것 같아 금의(錦衣)16913) 과 옥식(玉食)16914) 도 편안치 못하다. 내가 바야흐로 묘당(廟堂)과 황정(荒政)을 강구하고 있으니, 모름지기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혹시라도 이산(離散)하지 말며 혹시라도 절도(竊盜)하지 말라. 더군다나 유산(流散)하는 자는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고 절도한 자는 열 명에 한 명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는 또 알지 않을 수 없는 뜻이므로, 각 고을에 신칙하여 명백히 효유(曉諭)하라. 수령들도 또한 내 뜻을 본받아 모든 진사(賑事)에 마음을 다해 요리(料理)하되,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듯이 하여 무고한 백성으로 하여금 구렁에 빠져죽는 근심을 면하게 하라는 일로 3도(三道) 감사에게 우선 하유(下諭)하라.” 하고, 또 제주 목사(濟州牧使) 변시태(邊是泰)에게 하교하기를, “궁벽한 바다 외딴 섬은 육지와 아주 다르니, 만약 곡식을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해 살리겠는가. 더군다나 굶주린 백성들이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학철(涸轍)속의 물고기16915) 가 물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곡물을 바야흐로 이미 양남(兩南)16916) 에 분정(分定)하여 즉시 잇따라 들여보내게 하였다. 명년에 진상(進上)할 말을 기르려고 예비한 곡물도 진자(賑資)에 옮겨 보태게 하라. 그대는 마음을 다해 진휼(賑恤)하여 한 사람도 쇠약하고 수척하는 근심이 없게 하라.” 하였다.</p>	<p>敎曰：“國家不幸，八路告歉，而兩湖、畿甸，爲尤甚，若恫在已，錦玉靡安。予方與廟堂，講究荒政，須體至意，毋或離散，毋或竊盜。況流散者未易還集，竊盜者十無一生，此又不可不知之意，申飭各邑，明白曉諭，而守令亦體予意，凡於賑事，悉心料理，如救焚拯溺，使我無辜之民，得免填壑之患事，三道監司處，爲先下諭。”又下教于濟州牧使邊是泰曰：“窮溟絕島，殊異陸地，若不移粟，何以濟活？況饑民之望哺，不啻轍鮒之待水？故穀物方已分定兩南，俾卽連續入送。明年進上馬預養穀物，移補賑資。爾其盡心調賑，使無一人捐瘠之患。”</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p>	<p>대사간 권성(權聃)이 현도(縣道)를 통해 진소(陳疏)하여 첫머리에 당비(黨比)의 폐단을 논하기를,</p>	<p>己卯/大司諫權聃，縣道陳疏，首論黨比之弊，以公明爲正朝廷之本，請勿拘</p>

<p>(康熙) 52년) 10월 5일(기묘) 1번째기사</p>	<p>“공명(公明)은 조정을 바로잡는 근본이니, 청컨대 한때의 좋아하는 바에 구애되지 말고 반드시 자세히 살피고 신중히 하여 그 현능(賢能)함을 확실히 알고서 임용하고, 이미 임용한 후에는 의심하지 말고 구임(久任)시켜 성효(成效)를 요구(要求)하고, 한두 사람이 일을 그르친 것으로써 그 나머지 사람을 모조리 싫어하지 말고, 한두 가지 일이 뜻에 거슬린 것으로써 그밖의 일까지 모두 의심하지 마소서.”</p> <p>하고, 끝에 가서 말하기를, “재황(災荒)이 참혹하니, 청컨대 산도전(山稻田)에 급재(給災)하고 연해(沿海) 고을의 신포(身布)와 대동미(大同米)를 전례를 상고하여 받아들이기를 정지하고, 호남 연해 일대도 일체로 시행하소서.”</p> <p>하니,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급재(給災) 등의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p>	<p>一時之所好，必審必慎，的知其賢能而用之，既用之後，勿疑勿貳，久任而責效，勿以一二人之誤事，而盡厭其餘人，勿以一二事之忤旨，而竝疑其他事。末言災荒之慘，請給災山稻田，而沿海邑身布、大同米，考例停捧，湖南沿海一帶，一體施行，賜優批，給災等事，令廟堂稟處。</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0월 19일(계사) 1번째기사</p>	<p>정언(正言) 이명언(李明彦)이 응지(應旨)하여 상소(上疏)하였는데, 첫머리에는 ‘상주기에 힘쓰라’[懋賞]는 두 글자로써 금일의 증세에 대처하는 약제(藥劑)를 삼고, 또 봉당(朋黨)이 마침내 반드시 사람의 집과 나라에 화(禍)가 됨을 논하기를, “전하께서 매양 ‘이 무리들을 통솔하는 것은 출척(黜陟)·여탈(與奪)에 있다.’고 하시고, 마침내 1년 남짓 동안에 어지럽게 진퇴시켰습니다. 비록 정호(鄭澐)의 일로써 말하더라도 배사(背師)했다는 배척은 패류(悖謬)함이 막심하였으나, 당초에 변방으로 내친 것은 혹시 조금 중하였던 듯하였습니다. 그를 근일에 다시 끌어들여 복관시킨 것은 잘못하여 크게 용서하신 것으로서, 또한 처음과 달라지셨다고 할 수 있으니, 피사(諛辭)·음사(淫辭)·사사(邪辭)·둔사(遁辭)의 말을 어디로부터 그치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할 줄을 모른 채 당류(黨類)를 부식(扶植)해서 널리 포치(布置)하고, 자기와 의논이 다른 자에게는 눈을 부릅뜨고 힘써 막으며 조성(助成)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p>	<p>癸巳/正言李明彦，上應旨疏，首以懋賞二字，爲今日對證之劑，又論朋黨之終必禍人家國而曰： 殿下每謂駕馭此輩，惟在黜陟與奪，遂以歲年之頃，紛然其進退。雖以鄭澐事言之，背師之斥，悖謬莫甚，而當初屏裔，或似差重。近日牽復，失之太恕，亦可謂不承權輿，而詖淫邪遁之說，何從而息乎？惟其如是，故人不知戒，扶植黨類，廣加布置，睚眦異己，辛苦隄防。助成之如此，而輒欲以言語、文字，爲打破消瀆之具乎？仍論李禎翊、韓永徽濫加拂拭，猥通納</p>

	<p>데, 문득 언어(言語)·문자(文字)로써 타파시키고 소멸시키는 도구로 삼고자 하겠습니까.”</p> <p>하고, 인하여 논핵하기를,</p> <p>“이정익(李禎翊)·한영휘(韓永徽)는 지나치게 불식(拂拭)함을 가하여 외람되어 납언(納言)에 통하였고, 이봉익(李鳳翼)은 갑자기 참하(參下)의 묘선(妙選)에 통하였으나, 이진검(李眞儉)은 간장(諫長)에 새로 통하지 못하였고, 이진망(李眞望)·권침(權詹)·이정제(李廷濟)·오명항(吳命恒)은 오랫동안 저해하여 까닭없이 묶어 둔 채 쓰지 않은 것이 손가락을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와 의논이 다른 자는 말망(末望)에 주의(注擬)하는 데 불과하였을 뿐이니, 어찌 한때의 지수(智數)로써 여러 사람의 입을 막고 임금의 총명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또 절검(節儉)을 숭상하는 방법을 논하기를,</p> <p>“왕자에게 돌아간 선조(先朝) 때의 궁주(宮主)의 집이 많고, 혹은 팔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마침내 사들인 것도 있다 합니다. 또 듣건대 내수사(內需司)의 공억(供億)이 부족하여 내노비(內奴婢)로 하여금 값을 치르고 자속(自贖)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전하께서 과연 절검하시는 실상이 있다면, 어찌 인주(人主)의 부(富)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근심이 있겠습니까.”</p> <p>하고, 또 말하기를,</p> <p>“김유경(金有慶)의 상소는 비록 때가 늦은 혐의가 없지 않으나, 진실로 전하의 겸양(謙讓)을 지키는 덕(德)을 우러러 도운 일에 불과한데, 묘당(廟堂)에서는 영관록(瀛館錄)에서 누락시켰고, 전조(銓曹)에서는 대성(臺省)의 망(望)을 막았으니, 지난번 홍계적(洪啓迪)의 한 상소가 아니었으면, 이만성(李晩成)이 잠깐 검의(檢擬)한 것이 청조(淸朝)의 수치가 됨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윤세유(尹世綏)가 상소하여 혈뜯고 배척함은 사대부의 수치인데, 청도(淸塗)의 극선(極選)에 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정신(李廷臣)이 성상의 뜻에 영합하여</p>	<p>言, 李鳳翼驟通於參下妙選, 而李眞儉之不爲新通於諫長, 李眞望、權詹、李廷濟、吳命恒之久枳, 而結之以無故棄捐者, 指不勝屈, 而異己之人, 不過未副擬而已, 豈可以一時之智數, 箝制衆人之口, 壅蔽人主之聰哉? 又論崇節儉之方曰:</p> <p>先朝主第, 多歸王子, 或有不願賣者, 而終至買取。且聞內司供億匱乏, 至令內奴婢納價自贖云, 殿下果有節儉之實, 則豈以人主之富, 乃有不贍之憂耶?</p> <p>又曰:</p> <p>金有慶之疏, 雖不無後時之嫌, 諒不過仰贊執謙之德, 而廟堂遺瀛館之錄, 銓曹枳臺省之望, 向非洪啓迪之一疏, 李晩成之乍檢, 其爲淸朝之羞, 豈不大哉? 尹世綏之投疏詆斥, 士夫羞恥, 而至淸塗之極選。 廷臣之迎合上旨, 以濟私意如此, 豈不可嘸耶? 徐命遇之疏, 似涉伐異, 而亦未嘗以無爲有, 切中時病, 而乃反疑以傾軋, 目以陰險, 汲汲擊去之啓, 先發於被斥之臺臣。 李光迪之傳會天災, 敢請窮覈者, 老耄譫妄, 無足深責, 而職處納言者, 拈出</p>
--	--	--

<p>사의(私意)를 이룬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명우(徐命遇)의 소는 벌이(伐異)16920) 한 것에 관계되는 듯하나, 역시 시병(時病)에 절실하게 맞는 것이 없지 않은데, 이에 도리어 경알(傾軋)한다고 의심하고 음험하다고 지목해서 서둘러 공격해 제거하는 계사(啓辭)가 배척을 받은 대신(臺臣)에게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광직(李光迪)이 천재(天災)에 부회(傅會)하여 감히 궁핵(窮覈)하기를 청한 것은 늙은 사람의 헛소리이므로 깊이 책망할 것이 없는데, 승지의 직책에 있는 자가, ‘총애를 회구하여 지위를 굳혔다.[徼寵固位]’는 네 글자를 뽑아내어 공동(恐動)시키고 현혹시킬 계책을 삼았으니, 어찌 잘못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p> <p>하고, 또 논하기를,</p> <p>“관방(官方)16921) 이 뒤섞여 어지러운 것이 근일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니, 일로(一路)의 풍습을 살펴보건대 혹 소모(笑侮)를 끼치고 있습니다. 장월(仗鉞)의 중진(重鎭)에서 한갓 탐욕만을 일삼고, 재간(才幹)이 본래 없으면서 갑자기 웅부(雄府)를 차지하며, 정적(政績)에 흠이 많은데 혹은 포상(褒賞)을 받았으나, 모두 종핵(綜核)16922) 할 수 없는 폐단입니다.”</p> <p>하고, 또 논하기를,</p> <p>“신린(臣隣)을 대우하는 데 정지(情志)가 미덥지 못하고, 대신을 대우하는 것이 허례(虛禮)가 너무 심합니다.”</p> <p>하고, 끝에 가서 말하기를,</p> <p>“3도(三道)의 기황(飢荒)이 참혹하니, 청컨대 양남(兩南) 산군(山郡)의 조곡(糶穀)이 너무 많은 곳은 헤아려서 본 고을에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연해 고을로 옮겨 진휼에 보태게 하소서. 도적이 몰래 일어날 근심은 곳곳마다 다 그러하니, 영장(營將)을 각별히 가려서 임명하여 실효(實効)를 책구한다면 거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徼寵固位四字，以爲恐動熒惑之計，何其謬戾至此也？</p> <p>又論：</p> <p>官方混淆，未有甚於近日，觀風一路，或貽笑侮。仗鉞重鎭，徒事貪饕，才具素蔑，而驟占雄府，政績多疵，而或冒褒賞，莫非不能綜核之弊也。</p> <p>又論待臣隣情志不孚，待大臣虛禮太勝，末言：</p> <p>三道飢荒之慘，請以兩南山郡，糶穀過多處，量留本邑，其餘移送沿海邑，以爲補賑。竊發之患，在在皆然，營將各別擇除，以責實效，則庶可得力矣。</p> <p>答曰：“鄭滯背師之說，終始務勝，誠可駭異，故已示未安之意，則謂之不承權輿可乎？李眞望事，爾言是矣，而疏中扶植黨類，廣加布置，箝制壅蔽等語，殊涉未便，迎合濟私云者，尤極謬戾也。徐命遇疏，語意危險，而伸救之言，出於臺閣，其亦異矣。糶穀過多處，量留賑資，輸送沿邊事，令廟堂稟處。討捕使擇差事，申飭西銓爲宜也。”翌日，明彥因批旨嚴峻，引避退待。持平安重弼詣臺處置，以專出傾軋，不可仍置爲辭而請遞，上教曰：</p>
--	--

“정호가 배사(背師)했다는 말로 시종 남에게 이기기를 힘쓴 것은 참으로 놀랍고 괴이하기 때문에 이미 미안하다는 뜻을 보였으니, 처음과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진망의 일은 그대의 말이 옳지만, 상소 가운데, ‘당류(黨類)를 부식(扶植)하여 널리 포치(布置)하고, 입을 막고 충명을 가린다.’는 등의 말은 아주 미편하며, 영합하여 사의(私意)를 이루었다고 한 것은 더욱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서명우의 상소는 말뜻이 위험하였는데 신구(伸救)하는 말이 대각(臺閣)에서 나오니, 그 또한 이상하다. 조곡(糶穀)이 과다한 곳에 진자(賑資)를 헤아려 남겨 두고 연변(沿邊)으로 수송하는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토포사(討捕使)를 택차(擇差)하는 일은 서전(西銓)16923)에 신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튿날 이명언이 비지(批旨)가 엄준함으로 인하여 인피(引避)하고 물러가서 물론(物論)을 기다렸는데, 지평(持平) 안중필(安重弼)이 사헌부에 나와 와서, 오로지 경알(傾軋)에서 나왔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말로써 처치하여 체직하기를 청하니, 임금의 전교하기를,

“공평(公平)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되겠지만, 만약 ‘오로지 경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정호에 대한 소론(疏論)은 합당한데도 한결같이 경알로 돌린다면 시비(是非)가 아주 밝혀지지 않으므로 인심을 복종시킬 수 없다.”

하였다. 안중필이 이 일로 인피하면서 이명언이 경알한 형상을 날날이 진달하였는데, 그가 정호에 대해 논한 한 조항에 말하기를,

“강개(剛介)한 성품은 바로 그의 가풍(家風)이므로, 평소부터 시세(時勢)를 따라 부양(俯仰)하지 못하여 백수(白首)로 귀양을 갔다가 온갖 위험을 겪고 돌아왔는데, 간신(諫臣)이 성상의 미안하다는 비답으로 인하여 【정호가 방송(放送)을 입은 후 곧 윤증(尹拯)의 일을 다시 사소(辭疏)에 거듭하였는데 비지(批旨)에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또 처치하면서 크게 꾸짖고자 하

“謂欠公平則可也，若曰專出傾軋則不可矣。鄭澹事，所論得當，而一併歸之於傾軋，是非極爲不明矣，無以服人心也。”重弼以此引避，歷陳明彥傾軋之狀。其論鄭澹一款曰：“剛介之性，卽其家風，而素不能隨勢俯仰，白首竄謫，萬死歸來，諫臣因聖上未安之批，【澹蒙放後，卽以尹拯事，復申於辭疏，而批旨未安故云。】又欲置之如何，果爲公心論事乎？”持平金相玉處置出仕。

	였으니, 과연 공심(公心)으로 국사(國事)를 논한 것입니까.” 하였는데, 지평(持平) 김상옥(金相玉)이 처치하여 출사(出仕)시켰다.	
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0월 20 일(갑오) 1번째기사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가 차자를 올려 액레(掖隸)를 보내 문병하고 진귀한 약과 음식을 잇따라 내려 준 것을 사례하고, 인하여 문후(問候)하는 반열(班列)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여 인죄(引罪)하니,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甲午/判府事李畬, 上筭謝掖隸臨問、珍藥・(駱) [酪] 餌之續頒, 仍以未參候班引罪, 賜優批。
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0월 23 일(정유) 1번째기사	비국(備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전라도 곡물을 제주로 입송하는 대신에 강도(江都)의 쌀 3천 석을 획급(劃給)하게 하였다.	丁酉/因備局啓辭, 全羅道穀物入送濟州之代, 以江都米三千石劃給。
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0월 30 일(갑진) 3번째기사	비변사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명하기를, “호서 각 고을의 조곡(糶穀)은 더욱 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심한 고을에는 당년조(當年條)를 반감(半減)하고, 더욱 심한 고을은 3분의 1을 감하고, 그 다음은 다만 옛날의 미수(未收)만 정지하며, 더욱 심한 가운데에서도 더욱 심한 곳은 금년 모곡(耗穀)을 주어서 진자(賑資)에 보태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因備局啓辭, 命湖西各邑糶穀, 尤甚之尤甚邑, 減半當年條, 尤甚邑三分減一, 其次只停舊未收, 尤甚之尤甚則許給今年耗穀, 以補賑資。
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1월 7 일(신해) 1번째기사	명하기를, “전라도 해남 등 연해 고을의 전세(田稅)는 모두 늦추어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더욱 심한 곳은 대동(大同)을 절반으로 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도신(道臣) 및 감진 어사(監賑御史)의 말을 따른 것이다. 또 강화유수(江華留守)의 장청(狀請)으로 본부(本府) 제사(諸司)의 노비 신공(奴婢身貢)은 절반만 받아들이다도록 하였다.	辛亥/命全羅道海南等沿海邑田稅, 並退捧, 其餘尤甚, 大同折半。從道臣及監賑御史之言也。又以江華留守狀請, 本府諸司奴婢身貢, 折半收捧。
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1월 17 일(신유) 2번째기사	전라도에 큰 바람이 불어 왕래한 선박이 많이 침몰하여 인물 1백 90여 명이 빠져 죽었는데, 각별히 홀전(恤典)을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全羅道大風, 往來船隻, 多沈敗, 人物滄死, 一百九十餘名。命各別恤典舉行。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1월 20일(갑자) 1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이 청대(淸對)하였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청하기를, “함경북도의 재해가 더욱 심한 고을에 모곡(耗穀)을 주도록 허락하고, 공명첩(空名帖)을 만들어 보내 진자(賑資)에 보태게 하고, 제주에서 응당 바쳐야 할 각 관사(官司)의 물종(物種)을 적당히 헤아려 건감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후에 명하기를, “물종(物種) 가운데 말·대모(玳瑁)·귤유(橘柚)는 감하라.” 하였다. 이때 이조 판서 송상기(宋相琦)가 문형(文衡)을 겸대(兼帶)한 것으로 논핵을 당하였다 하여 【위에 보인다.】 인혐하고 들어갔는데, 우의정 김우항(金字杭)이 청하기를, “송상기의 문형(文衡) 직임을 해면하여 즉시 본직(本職)에 행공(行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호남 연해에 흉년이 든 것 때문에 청하기를, “식년과(式年科) 초시(初試)를 명년 가을로 늦추어 행하고, 회시(會試)는 후년 봄에 설행하소서.” 하였는데, 여러 대신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자, 임금이 명하기를, “초시는 8, 9월에 택일하되, 회시는 후년 봄에 설행(設行)하라.” 하였다. 여러 대신이 다 불가하다고 말하자, 임금이 명하기를, “초시(初試)는 8, 9월에 택일(擇日)하고, 회시(會試)는 우선 겨울 전으로 날짜를 정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호남에 떠도는 거지가 길에 가득한데, 조금 넉넉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용접(容接)하기를 허락하지 않으니, 청컨대 도신(道臣)과 수의(繡衣)16939)에게 신칙하여 혹은 관가(官家)에게서 접제(接濟)하거나 혹은 부민(富民)으로 하여</p>	<p>甲子/大臣、備局諸臣淸對。 左議政金昌集，淸許咸鏡北道尤甚邑，許給耗穀，成送空名帖，以補賑資，濟州應納各司物種，量宜蠲減，上從之。 後，命減物種中馬、玳瑁、橘柚。 時，吏曹判書宋相琦，以兼帶文衡，被論事 【見上。】 引入，右議政金字杭，淸解相琦文衡之任，俾卽行公於本職，上可之。 禮曹判書閔鎭厚，以湖南沿海大飢，淸式年科初試，退行明秋，會試則以後年春設行，諸大臣皆言不可，上命初試以八九月擇日，而會試則以後年春設行。 諸大臣皆言不可，上命初試，以八九月擇日，會試，姑以冬前定日。 鎭厚又言：“湖南流丐載路，而稍實處居民，不許容接，淸申勅道臣、繡衣，或自官家接濟，或使富民饋養，給糧還送，而前頭繡衣下去時，使之廉察，如有境內餓死者，論罪守令爲宜。” 上可之。 又言：“洪州儒生疏淸賜額李惟泰書院，既是不稟徑建，且其疏以已建爲未建，尤不美。 此在當毀之科。” 昌集亦言其當毀，上命毀之，罪其首倡儒生。 鎭厚又淸湖南人被別薦者，各別調用，而松坡津軍一哨，與甲士屯，一</p>
--	---	---

	<p>금 먹여 주거나 양식을 주어 돌려 보내게 하소서. 앞으로는 수의가 내려갈 때 염찰(廉察)하여 만일 경내(境內)에 굶주려 죽은 자가 있으면 수령을 논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말하기를, “홍주(洪州)의 유생(儒生)이 상소하여 이유태(李惟泰)의 서원(書院)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미 품(稟)하지 않고 먼저 세웠고, 또 그 상소에서 이미 세우고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하였으니, 더욱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는 마땅히 헐어야 할 조목(條目)에 듭니다.”</p> <p>하고, 김창집도 또한 마땅히 헐어야 한다고 말하니, 임금이 이를 헐고 그 수창(首倡)한 유생을 죄주라고 명하였다. 민진후가 또 청하기를, “호남 사람으로 별천(別薦)을 받은 자는 각별히 조용(調用)하고, 송파진(松坡津)의 군대 1초(哨)16940) 와 갑사둔(甲士屯)은 일체로 수어청(守禦廳)의 천총(千總)에 속하게 하여 열음이 열 때 모아서 점열(點閱)하고 앞으로 다시 더 모집하여 모양을 이루도록 하며, 수첩 군관(守堞軍官)으로 가까운 데 있는 자도 또한 초출(抄出)하여 점열에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p>	<p>體屬於守禦千總，水合時聚會點閱，前頭更加募得，以成貌樣，而守堞軍官在近者，亦抄出，同參點閱，上許之。</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康熙) 52년) 12월 11일(갑신) 1번째기사</p>	<p>약방에서 입진하여 입맛이 쓰고 위(胃)에 해롭다 하여 우선 탕제(湯劑)를 정지하고, 인삼(人蔘)과 좁쌀 미음[粟米飲]을 올렸다.</p>	<p>甲申/藥房入診。以苦口害胃，姑停湯劑，進人蔘、粟米飲。</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康熙) 52년) 12월 14일(정해) 2번째기사</p>	<p>임금이 판부사(判府事) 윤중(尹拯)의 병세가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에게 약을 가지고 가서 보게 하고, 잇따라 서계(書啓)하도록 했다.</p>	<p>上聞判府事尹拯病重，遣醫持藥往視，連續書啓。</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p>	<p>임금이 전라도 감진 어사(全羅道監賑御史) 홍석보(洪錫輔)가 품정(稟定)할 일이 있어 상경(上京)했다가 임금의 환후(患候)가 미령(未寧)한 것으로 인하여</p>	<p>上聞全羅道監賑御史洪錫輔，有稟定事上京，而因上候未寧，不得請對，命錫</p>

<p>(康熙) 52년) 12월 18일(신묘) 2번째기사</p>	<p>청대(請對)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는 홍석보와 좌상(佐相)·우상(右相)에게 명하여 함께 인견(引見)하였다. 홍석보가 청하기를, “진청(賑聽) 및 강도(江都)의 쌀을 합해 3만 석을 얻어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와 바꾸어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각기 1만 석을 주도록 하였다. 또 영남에 별도로 모은 곡식 3만 석을 얻기를 청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쌀 5천 석과 벼 1만 석을 획급(劃給)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홍석보가 말한 바로 인하여 영남의 환상미(還上米) 1만 석과 벼 2만 석을 수송하여 그대로 받아 본도(本道)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홍석보가 또 청하기를, “호서의 예(例)에 의하여 더욱 심한 고을의 대동미(大同米)는 2두(斗)를 감하고, 호조·병조의 무명으로 진홀에 보탬 물건을 모두 탕감하여, 도내 환상(還上)의 금년 모곡(耗穀)은 전부 백급(白給)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고 더욱 심한 고을의 모곡(耗穀)은 전부 백급(白給)하게 하였다.</p>	<p>輔及左、右相，同爲引見。錫輔請得賑聽及江都米合三萬石，換用於田稅、大同，上許令各給一萬石。又請得嶺南別會穀三萬石，上命以米五千石、租一萬石劃給。又因錫輔所言，嶺南還上米萬石，租二萬石輸送，仍爲捧留本道。錫輔又請依湖西例，尤甚邑大同減二斗，戶、兵曹木補賑之物，並爲蕩減，而道內還上今年耗穀，沒數白給，上皆許之，而尤甚邑耗穀，使之白給。</p>
<p>숙종 54권, 39년 (1713 기사 / 청 강희 (康熙) 52년) 12월 20일(계사) 1번째기사</p>	<p>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최석항(崔錫恒)에게 명하여 승지(承旨)와 함께 감자(柑子)를 나누어 주고 반궁(泮宮)에서 시사(試士)하게 하여 수석을 차지한 구명규(具命奎)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p>	<p>癸巳/命藝文提學崔錫恒，與承旨頒柑，試士于泮宮，賜居首具命奎第。</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1월 15일(정사) 1번째기사</p>	<p>선혜청(宣惠廳)의 기사(啓辭)로 인하여 경기·호서·호남·영남의 관수(官需)에서 8분의 1, 2를 감하고, 또 삼남(三南)의 월과(月課)인 조총(鳥銃)을 정지했으니, 을해년(1692) 재감(災減)의 예(例)를 따른 것이다.</p>	<p>丁巳/因宣惠廳啓辭，京畿、湖西、湖南、嶺南官需，減八之一二，又停三南月課鳥銃。依乙亥災減例也。</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1월 24</p>	<p>호남의 저치미(儲置米)16954) 3천 석(石)을 제주에 수송(輸送)하라고 명하였다.</p>	<p>丙寅/命輸送湖南儲置三千石于濟州。</p>

일(병인) 1번째기사		
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2월 4일 (병자) 3번째기사	전라우도 감진 어사(全羅右道監賑御史) 홍석보(洪錫輔)가 영남의 쌀 2천 석과 조미(粗米) 3천 석을 제주에 수송하여 진정(賑政)에 보충하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고, 영읍(嶺邑)도 역시 모두 흉년이 들었으니 서울 진휼청(賑恤廳)에서 그 대신 획급(劃給)하기를 청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품의하자 윤희하였다.	全羅右道監賑御史洪錫輔，啓請以嶺南米二千石、粗三千石，輸送濟州補賑，且以嶺邑，亦皆災荒，請自京賑廳劃給其代，廟堂稟，許之。
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2월 19일(신묘) 2번째기사	대사간(大司諫) 김흥경(金興慶)이 소(疏)를 올려 호서(湖西)의 민사(民事)를 논(論)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호서 연해(沿海)의 재황은 호남과 다름이 없는데도 국가에서 구제하는 방도가 호남에 비하여 현절(懸絶)하며, 진휼(賑恤)의 대책(對策)도 다만 도신(道臣)에게 맡기고 별달리 근신(近臣)을 보내어 감시(監視)하는 일이 없으니, 진휼을 경리(經理)하는 일도 호남에 비하여 또한 너무 허술합니다. 염문(廉問)하는 사행(使行)을 지금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진곡(賑穀)을 분급(分給)할 때 수령의 능력 유무를 상세히 살피고 출몰(出沒)할 즈음에 백성의 질고(疾苦)를 순문(詢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진정(賑政)이 거의 마무리 될 때를 기다려 파견(派遣)함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大司諫金興慶，疏論湖西民事。略曰：湖西沿海之災荒，與湖南無異，而國家調濟之方，懸絕於湖南，營賑之策，只委道臣，又無別遣近臣監視之事，經理賑事，視湖南亦太疎矣。廉問之行，不可不趁，今發遣，分賑之時，詳察守令之能否，出沒之際，因詢生民之疾苦。 上答以待賑政垂畢，發遣似爲得宜。
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3월 11일(임자) 2번째기사	호남의 진휼곡을 실은 선박(船舶)이 무사히 제주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매우 기뻐하며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에게 어제시(御製詩)를 내렸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천 리 남녘 바다 잘 건너기 어렵고, 거센 바람 곡식 운반 또한 쉽지 않다. 선박 모두 무사함을 알려왔으니, 환과(鰥寡)16968) 를 구제하는 하늘의 뜻이 분명하도다.” 하였다. 또 제주의 공인(貢人)이 도착했음을 듣자 차비문(差備門) 밖으로 불러	上聞湖南賑穀裝載船，利泊濟州，喜甚，下御製詩于海昌尉吳泰周曰：千里南溟利涉難，風高移粟亦間關。報來船泊皆無恙，天意分明濟寡鰥。又聞濟州貢人來到，命招致差備門外，問其賑政頭緒及島中形勢。蓋濟州在海外，王化不及，今年飢荒尤甚，故上特加憂恤，慰接如此，一世咸頌其盛德。

	<p>들이도록 명하여 진정(賑政)의 전말(顛末)과 도중(島中)의 형편을 상세히 물었다. 대개 제주는 해외(海外)에 있어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였는데, 금년에는 흉년이 더욱 심하므로 임금의 특별히 우휼(優恤)을 더하고 이처럼 위로하고 접대하니, 온 세상에서 모두 그 성덕(盛德)을 칭송하였다.</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3월 17일(무오) 1번째기사</p>	<p>이때 임금의 몸에 부기(浮氣)가 있어 연달아 들오리를 잡아 올리니, 임금이 그만두도록 명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군졸이 한가로운 틈이 많습니니다. 수시로 잡아 올린들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기(禮記)》에 ‘어린 새끼와 알을 취(取)하지 말고 둥주리를 엮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옛 성인이 생육(生育)을 소중히 여기는 뜻이 이와 같았다. 하물며 질병에는 본시 다른 약이 있는데, 어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이명 등이 두 번 절하고 하례하기를, “어진 은덕이 금수(禽獸)에까지 미치니, 성덕(聖德)이 지극합니다.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이니, 어찌 약을 일삼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한 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제 선왕(齊宣王)이 소를 버리자 맹자가 이 마음이야말로 천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고(1696), 송나라 임금이 개미를 밟지 않으니 정자(程子)는 사해(四海)에까지 이 마음을 미루어 나갈 것을 청하였다. 참으로 이 마음을 몸받아 확대한다면 팔역(八域)의 백성이 누구인들 어진 왕화(王化)에 고무(鼓舞)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신하들이 이에 임금의 마음을 개도(開導)하여 어진 정사를 몸받아 시행하지 못했으니, 옛날에 이른바 ‘은혜가 금수(禽獸)에까지 미쳤으나 공덕(功德)이 백성에게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불행히</p>	<p>戊午/時, 以上體有浮氣, 連進野鴨, 上命止之。 李頤命曰: “軍卒多閑遊。使之隨得以進, 有何弊乎?” 上曰: “《禮記》不云乎? 毋麇卵、毋覆巢。古聖人重其生育之意如此。 況病自有他藥, 何必乃爾?” 頤命等再拜賀曰: “仁及禽獸, 聖德至矣。 天必佑之, 何事於藥乎?” 【史臣曰: “一言可以興邦者, 其斯之謂歟! 齊宣命捨牛, 而孟子謂是心足王, 宋帝不踐蟻, 而程子請推及四海。 誠能體是心而擴大之, 則八域生靈, 孰不鼓舞於鳶魚之化乎? 臣下於此, 不能開導上心, 體行仁政, 古所謂恩及禽獸, 而功不至百姓者, 不幸近之。 惜哉!”】</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4월 9일 (경진) 1번째기사</p>	<p>도 가깝다. 애석한 일이다.”</p> <p>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작은 종이에다 식치(食治)16979) 에 꺼리는 찬품(饌品)을 써 두었다가 쓴 것을 소매 속에서 꺼내 올리며 말하기를,</p> <p>“성상께서 기거(起居)와 음식에 있어 비록 첫 새벽과 늦은 밤을 무릅쓰고 구기(拘忌)를 범하신다 하더라도 신 등이 오랜 시간 입시하지 못하니,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세자(王世子)와 두 왕자 또한 감히 청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부터는 그 진달하고자 하는 바를 다하게 하시고, 궁인(宮人)과 환시(宦侍)에 이르러서도 또한 숨김이 없게 한다면, 비단 조섭(調攝)하는 도리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가까운 말을 살피는 도량(度量)을 기르는 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임금에게 설어(誓御)16980) 의 경계와 공사(工史)16981) 의 기도(祈禱)가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p> <p>하니,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p>	<p>庚辰/藥房入診。 都提調李頤命，以小紙，寫食治所忌饌品袖進曰：“自上於起居、飲食，雖或冒晨夜犯拘忌，臣等不能長侍，何以有聞乎？王世子、兩王子，亦恐不敢請，自今宜盡其所欲達者，而至於宮人、宦侍，亦令毋隱，則不但有補於調養之道，亦豈不養成好察邇言之量耶？古之人君，有誓御之箴，工史之祝者，以此也。” 上納其言。</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4월 21일(임진) 1번째기사</p>	<p>전교(傳敎)하기를,</p> <p>“오늘 제주의 공인(貢人)을 다시 차비문(差備門)으로 불러들여 본주(本州)의 진정(賑政)과 모맥(牟麥)의 형편과 여역(癘疫)의 지식(止息) 여부를 물었더니, 이른바 여역은 염병도 아닌데 너댓세 누워 앓다가 1개월안에 4백여 명이나 죽었다 한다. 지극히 놀라우며 참혹하다. 의사(醫司)로 하여금 이에 상당한 약품을 시급히 넉넉하게 보내어 각별히 구료(救療)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壬辰/敎曰：“今日濟州貢人，又招至差備門，問本州賑政，牟麥形止，染患寢息與否矣。所謂癘疫，非染病，四五日臥痛，一朔之內，物故四百餘名云，極爲驚慘。令醫司，相當藥物，急速優數下送，以爲各別救療之地。”</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4월 27일(무술) 1번째기사</p>	<p>임금의 환후가 7개월 동안 침엄(沈淹)하고 증세가 백 가지로 변하여 활제(滑劑)를 쓰면 신기(神氣)가 허약해지고, 또 완제(緩劑)를 써서 보(補)하면 부기(浮氣)가 날로 더해지므로, 여러 어의(御醫)들은 능력이 바닥나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유천군(儒川君) 이정(李滯)은 처음부터 ‘의당 부기를 시급히 다스려야 하니 이제는 소도(疏導)16982) 하는 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자기 의견을 극력 주장하였는데, 인하여 약방에서 입진하여 죽절초(竹節草)를 복용</p>	<p>戊戌/上候七朔沈淹，證情百變，用滑劑則神氣虛弱，又以緩劑補之，則浮氣日加，諸醫技窮，罔知所爲。 儒川君滯自初以爲：“宜急治浮氣，今不可不用疏導之藥。” 力主已見，因藥房入診，請進服竹節草，以之疏利，諸御醫</p>

	(服用)하여 소리(疏利)16983) 하도록 하기를 청하자, 여러 어의(御醫)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질초는 옛 처방(處方)에 실려 있지 않고 성미(性味)가 심히 준급(峻急)한데, 어떻게 군부(君父)의 병환에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滯)이 힘써 다투었으나, 채납(採納)되지 않았다.	等皆曰：“竹節草，不載古方，性味甚峻，何可輕用於君父之病乎？”滯力爭而不能得。
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5월 4일 (갑진) 1번째기사	임금이 도수환(導水丸)을 복용하고 설사(泄瀉)를 하니, 포만증(飽滿症)이 약간 줄어들었다.	甲辰/上進導水丸，下泄，飽滿之候差減。
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5월 20일 (경신) 1번째기사	임금의 환후가 근래에 와서 침수(寢睡)가 가장 나아지고 여러 가지 증후(症候)도 모두 차도가 있어 부기(浮氣)가 날마다 점차 사라지니, 도수환(導水丸)의 효험 때문이었다.	庚申/上候近來，寢睡最勝，諸證皆差減，浮氣日漸消滅。導水丸之效也。
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6월 9일 (기묘) 1번째기사	임금이 유천군(儒川君) 이정(李滯)에게 어제시(御製詩)를 내리고 또 초구(貂裘) 1령(領)을 내렸다. 그 시(詩)에 이르기를, “약을 맛보는 정성을 쌓았고 황제(皇帝)와 기백(岐伯)16992)의 술업에 본래 정통하였네. 소통케 한 처방 홀로 신묘하니, 허실을 분변하여 어찌 밝히려? 여덟 달을 온갖 방술로 다스렸지만 한 가지 환약으로 빠른 효험 얻었네. 지극한 그 공로 내 마음에 새겨 두니 이를 내려 종친에게 은총을 표하노라.” 하였다. 이에 금중(禁中)의 여러 신하들이 다투어 그 시(詩)에 화답하여 한 권축(卷軸)을 이루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정(滯)의 영광으로 여겼다.	己卯/上下御製于儒川君滯，又賜貂裘一領。其詩曰： 嘗藥誠曾積，軒、岐業本精。疏通方獨妙，虛實辨何明？ 八朔治多術，一丸效速生。至功予所念，賜此寵宗英。 於是，禁中諸臣，競和其詩，積成一軸，人皆爲滯榮之。
숙종 55권, 40년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우의정(右議政)	左議政金昌集、判府事李頤命、右議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7월 11
일(경술) 2번째기사

김우항(金字杭)·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구(趙泰耆)가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의 환후가 평복(平復)된 경사가 있다 하여 진연(進宴)을 청하고 여러 신하들도 누누이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처음에는 운허하지 않았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도성의 백성들이 ‘이번 진연(進宴)에는 비록 각기 재물을 내어 연수(宴需)를 돕는다 해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니, 민정(民情)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마지 못해 따르고 연수는 힘써 절약하라고 하였다. 당초에 임금이 명하기를,
“여러 고을의 사원(祠院) 가운데 조정(朝廷)에 품의(稟議)하지 않고 임의로 창립(創立)한 것은 그때의 방백(方伯)·수령(守令) 및 수창(首倡)한 유생(儒生)을 모두 논하여 벌을 주라.”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민진후(閔鎭厚)가 평안도의 이문(移文)을 가지고 아뢰기를,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조사하여 훼손(毀撤)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신은 혹시라도 시끄러운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우선 그대로 두었습니다. 평안도에는 이미 이문한 것이 있으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자, 김창집은 말하기를,
“사람의 수효가 많다 하여 분간(分揀)함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김우항·이이명은 청하기를,
“유지(宥旨)17000) 전의 일로써 그 죄를 분간하고, 임의로 세운 사원은 훼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가운데 정주(定州)의 주자 서원(朱子書院)과 평양(平壤)의 홍익한(洪翼漢) 서원은 김창집과 민진후의 말로 인하여 훼손하지 말도록 명하였고, 의주의 강감찬(姜邯贊)과 임경업(林慶業)의 사우(祠宇)도

政金字杭、禮曹判書閔鎭厚、戶曹判書趙泰耆，請對入侍。以上候平復之慶，請進宴，諸臣縷縷陳白，上始不許。昌集曰：“輦下之民以爲：‘今番進宴，雖使各出財力，以助宴需，有不可辭’云，群情大可見矣。”上勉從之，令宴需務從省約。初，上命諸邑祠院，不稟朝廷，而自創立者，其時方伯、守令、首倡儒生，竝論罰。至是閔鎭厚，以平安道移文，陳白曰：“諸議以爲宜有查問毀撤之舉，而臣或慮紛紜，姑置之矣。平安道則既有文移，何以處之乎？”昌集曰：“不可以人數之多，有所分揀。”字杭、頤命，請以宥旨前事，分揀其罪，而所擅立祠院則毀去，上從之。其中定州朱子書院、平壤洪翼漢書院，則因昌集、鎭厚之言，命勿毀，義州姜邯贊、林慶業祠宇，亦因承旨權畧所達，使之一體仍存。務安金權書院，則擅爲追享俞榮，故閔鎭厚陳白，初命監司推考，守令罷職矣，又以宥旨前事，竝勿論。鎭厚又言：“楊州儒生呈禮曹，鄉校中伯叔兩程子，易其次序爲言，臣因此問于太學，太學亦然。蓋向年陞黜時，西廡見黜之位，

<p>숙종 55권, 40년</p>	<p>승지(承旨) 권수(權晝)의 진달로 인하여 한결같이 그대로 두게 하였다. 무안(務安) 김권(金權)의 서원에서 임의로 유계(兪槩)를 추향(追享)하였기 때문에 민진후의 진달로 인하여 처음에는 감사(監司)는 추고(推考)하고 수령은 파직하도록 명하였다가, 또 유지(宥旨) 전의 일이라 하여 모두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양주(楊州) 유생(儒生)이 예조(禮曹)에 정장(呈狀)하여 향교(鄉校) 가운데 백(白)·숙(叔) 두 정자(程子)의 차서가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로 인해 태학(太學)에 물어보았더니, 태학에서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연전에 승출(陞黜)할 때 서무(西廡)에서 척출(斥黜)된 위패(位牌)가 동무(東廡)보다 많아서 차례로 올라갔으므로, 동서(東西)를 아울러 그 차서를 헤아린다면 과연 선후(先後)가 도착(倒錯)되어 일이 매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가을 석채(釋菜)를 기다려 서울과 외방(外方)을 아울러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임술년(1701)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말로 인하여 송조 육현(宋朝六賢)을 승무(陞廡)하여 배향(配享)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풍년을 기다려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천연(遷延)된 것은 흉년으로 인한 듯한데, 설령 풍년이 들더라도 어찌 대성전(大成殿)을 개조(改造)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여러 차례 석전제(釋奠祭)에 참여하여 일찍이 보았는데, 십철(十哲)의 위패(位牌)를 모신 교의(校椅)가 자못 컸으니, 지금 만약 그 제도를 조금 줄인다 해도 협착(狹窄)하여 용납하기 어려운 데에 이르지 않는 듯합니다. 청컨대 본관 당상(本館堂上)으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p>	<p>多於東廡，次次轉陞，故竝東西而計其次序，則果爲倒舛，事甚未安。趁今秋釋菜，京外竝宜釐正。”又曰：“壬戌因先正臣宋時烈之言，有宋朝六賢陞配從享之命，而令待年豐舉行矣。此事至今遷拖，似因歲飢，而設令豐登，何可改造大成殿乎？臣屢參釋奠祭，嘗見十哲位所奉校椅頗大。今若稍減其制，似不至狹窄難容。請令本館堂上，審察稟處。”上竝可之。</p>
	<p>전라 감사(全羅監司) 이집(李堧)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척유(勅</p>	<p>甲寅/全羅監司李堧辭朝，上引見，勅</p>

<p>(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7월 15일(갑인) 1번째기사</p>	<p>諭)하여 보냈다. 이집이 청하기를, “영남(嶺南)에서 옮겨 올 곡식 5만 석은 우선 정봉(停捧)하도록 허락하여 덕의(德意)를 보이소서.” 하니, 임금의 윤허하였다.</p>	<p>諭而遣之。 堞請嶺南移轉穀五萬石，姑許停捧，以示德意，上許之。</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8월 1일 (경오) 1번째기사</p>	<p>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승릉(崇陵)의 마석(馬石)이 손상(損傷)된 곳을 봉심(奉審)하고 돌아와, 다시 만들지 말고 그대로 옛것을 다듬어서 만들 것을 청하였다. 손상된 곳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윤허하였다.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금번 하례(賀禮)할 때에 강화(江華)·개성(開城) 두 유수(留守)는 하반(賀班)에 참여함을 핑계로 끝내 봉전(封箋)을 꺾(闕)했으니, 사체가 미안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법식을 정하여 입참(入參) 여부를 물론하고 모두 봉전을 올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후에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진규(金鎭圭)와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연(金演)이 소를 올려 말하기를, “외관(外官)의 봉전(封箋)은 하반(賀班)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에 참여한 자에게 어찌 봉전을 폐했다고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이미 외방(外方)에 있다 하여 봉전을 하고 또 조반(朝班)에 입참(入參)한다면, 봉전한 것으로 볼 때에는 외직(外職)이요 내직(內職)이 아니며, 참반(參班)한 것으로 논한다면 내직이요 외직이 아닙니다. 어찌 한 사람으로서 내외(內外)의 직사(職事)를 아울러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대신(大臣)에게 물어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말하기를, “《대전(大典)》 조의조(朝儀條)에 외관(外官)의 배전(拜箋)·진하(陳賀)하는 자리에 개성 유수와 여러 도(道)의 관찰사 이하를 모두 실어 기록하였으니, 거류(居留)17026) 의 신하가 배전하고 진하함은 본시 전장(典章)에서 폐지할</p>	<p>朔庚午/左議政金昌集等， 奉審崇陵馬石傷碎處而還， 請勿爲更造， 仍舊琢成。 以所傷不至闊大故也。 上許之。 禮曹判書閔鎭厚奏言：“今番賀禮時， 江華、開城兩留守， 稱以身參賀班， 竟[闕]封箋， 事體未安。 請自今定式， 勿論入參與否， 皆令上箋。” 上從之。 是後， 江華留守金鎭圭、開城留守金演上疏曰： 外官封箋， 既爲其不得參班， 則今於參班者， 而可責其廢箋乎？ 夫既以在外而封箋， 又入參朝班， 則卽其封箋而觀之， 外而非內也， 就其參班而論之， 內而非外也。 安有以一人而竝行內外之職事哉？ 上令該曹， 問于大臣稟處。 右議政金字杭曰：“《大典》朝儀條， 外官拜箋、陳賀之位， 開城留守、諸道觀察使以下， 竝舉而載錄， 則居留之臣， 拜箋、陳賀， 自是典章之不可廢者。 以此見之， 則賀班不必參， 而賀箋不可闕</p>

	<p>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하반(賀班)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하전(賀箋)은 껴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의 그 의논을 따랐다.</p>	<p>也。”上從其議。</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8월 4일 (계유) 1번째기사</p>	<p>부응교(副應敎) 홍치중(洪致中)이 소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호남에서 옮겨온 곡식이 영남 백성에게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각 읍에 저축해 둔 환곡(還穀)을 민간에 계산해 주어 선소(船所)에 수납(輸納)하게 한다면, 적치(積置)한 나머지 이미 흠축(欠縮)되는 바가 많고, 운반할 즈음에 저절로 소모와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니, 개량(改量)할 때에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는 것은 사세에 있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이미 주선하여 보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춘궁기의 백성들에게 또 억지로 스스로 마련하게 할 수 없으므로, 환곡을 가급(加給)하여 흠축을 보충하는 바탕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야흐로 운납(運納)할 때에는 비록 목전의 급급함을 모면할 수는 있으나, 가을에 이르러 수봉(收捧)할 때에는 반드시 가급(加給)한 환곡까지도 아울러 독징(督徵)할 것이니, 호남의 백성은 본시 불쌍하거니와 영남의 백성들도 홀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이전(移轉)할 때에는 가급(加給)하고, 흠축을 보충한 숫자도 일체 탕감하여 곤궁한 백성들의 호원(呼冤)하는 단서를 없애도록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여 이를 묘당(廟堂)에 내려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였다.</p>	<p>癸酉/副應敎洪致中上疏。略曰： 湖南移粟，大爲嶺民之弊端。蓋以各邑所儲糶穀，計給於民間，使之輸納於船所，積置之餘，既多欠縮，載運之際，自致耗失，則改量時，充數之不足，勢所必至，而列邑既難拮据而充補，窮春民力，又不可勒令自備，故不得不加給還上，俾作補欠之資。方其運納之時，雖救得目前之急，及至秋捧之日，必將竝與加給者而督徵之矣，湖民固可哀矣，嶺民獨不冤乎？宜令移轉時加給補欠之數，一體蕩減，以除窮民呼冤之端。</p> <p>上納其言，下廟堂議處。</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8월 5일 (갑술)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황당선(荒唐船)이 출몰(出沒)하는 일 때문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주문(奏聞)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이 밖에 관서의 강변에서 범월(犯越)하는 폐단과 함경도 경원(慶源) 등지의 건너편에서 저쪽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전답을 개간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주문(奏聞)함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다만 북관(北關)</p>	<p>甲戌/引見大臣、備局諸臣。先是，上以荒唐船出沒事，令廟堂奏聞彼中。至是，左議政金昌集奏曰：“此外關西江邊犯越之弊及北路慶源等地越邊，彼人之作舍開田等事，諸議皆以爲當奏聞，而但北路事則或言：‘彼若答以爾國鎮堡、村落，皆列於江邊，而獨禁我</p>

의 일에 대하여 혹자는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너희 나라에도 진보(鎭堡)와 촌락(村落)이 모두 강변에 늘어서 있는데, 유달리 우리만 금지함은 무엇 때문인가?’고 답변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다.’고 하니, 이로써 품지(稟旨)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만 어채(漁採)와 채삼(採蓼) 등의 일을 먼저 주문(奏聞)하라고 명하였다. 호조 판서 조태구(趙泰耆)가 말하기를,

“저들이 강변에서 채삼함에 있어 비록 범월(犯越)할 염려가 있기는 하나, 만약 넘어와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면 또한 우리가 금지할 만한 일이 아니니, 반드시 넘어와서 폐단을 일으키기를 기다려 그 표적(標迹)을 만들어서 주문한 후에야 안전한 계책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다만 황당선(荒唐船)과 어채(漁採)하는 폐단만 주문하게 하였다. 김창집이 진달하기를,

“양호(兩湖)와 영남이 모두 흉년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수륙(水陸)의 조련(操鍊)을 거행함은 폐단이 있으니, 청경대 아울러 정지하고,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편의(便宜)에 따라 점검(點檢)하게 하소서. 영남의 노비 추쇄(奴婢推刷)와 군병 도안(都案)의 개정(改正) 또한 풍년을 기다려 거행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전(前) 좌윤(左尹) 임홍망(任弘望)이 나이 80이라 하여 최관(崔寬)·권열(權說) 등의 예(例)에 의하여 품계를 바꾸어 자헌(資憲)으로 승급(陞級)시킬 것을 명하였으니,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의 말로 인한 것이었다. 또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의 진언으로 인하여 고(故) 의정(議政) 윤증(尹拯)의 집에 경인년(1702) 이후 보내던 월름(月廩)을 특별히 도로 거두도록, 하고 다만 3년을 한정하여 녹봉을 수송(輸送)하도록 명하였으니, 대개 윤증의 아들 윤행교(尹行教)가 여러 차례 그 아버지의 유언(遺言)을 이유로 늙록(廩祿)을 극력 사양했기 때문이었다. 사간(司諫) 유승(兪崇)이 앞서 논계(論啓)한 일을 진달하고, 또 논하기를,

人何也云，則無辭可答’云，以此欲爲稟旨。”上命只以漁(菜) [採]、採蓼等事，先爲奏聞。戶曹判書趙泰耆言：“彼人之江邊採蓼，雖有犯越之慮，而若無越來作弊之事，則亦非自家可禁之事，必待其越來作弊，作爲標迹而奏之，然後爲萬全矣。”上然其言，只令奏聞荒唐船、漁採之弊。昌集陳兩湖、嶺南，俱不免災荒，而水陸設操有弊，請一併停止，令營將，隨便點視。嶺南奴婢推刷及軍兵改都案，亦宜待年舉行，上竝從之。前左尹任弘望，以年八十，引崔寬、權說等例，命變品陞資憲。因右議政金宇杭之言也。又因左參贊崔錫恒言，命故議政尹拯家，庚寅以後月廩輸送事，特爲還收，只命限三年祿俸輸送。蓋拯子行教，累引父遺言，力辭廩祿故也。司諫兪崇陳前啓，又論：“宋朝六賢陞配，實是斯文之大慶，寧容他議，而副司果李頤晚，敢生異論，投進一疏以爲：‘創立新規，有違於獨秉《周禮》之義’，顯加譏評，略無顧忌，誠極駭惋。請削奪官爵。”上曰：“當初疏論，極無據。罷職。”又論：“永宗僉使金義萬，專

	<p>“송조 육현(宋朝六賢)의 승배(陞配)는 진실로 사문(斯文)의 큰 경사이니, 어찌 다른 의논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사과(府司果) 이이만(李頤晩)이 감히 이론(異論)을 세우고 한 소장(訴章)을 올려 이르기를, ‘새로운 규례(規例)를 세우는 것은 홀로 《주례(周禮)》를 준수(遵守)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다.’고 하면서 드러나게 비난하는 논평을 가하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지극히 해괴합니다. 청컨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당에 소론(疏論)한 바가 지극히 근거가 없었다. 파직하라.”</p> <p>하였다. 또 논하기를,</p> <p>“영종 첨사(永宗僉使) 김의만(金義萬)은 오로지 탐학(貪虐)을 일삼고 횡령(橫斂)이 한정이 없으며, 상납(上納)하는 어물(魚物)도 억지로 남징(濫徵)을 더하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더욱 상세히 살펴 처치하라고 답하였다. 지평(持平) 조상경(趙尙綱)이 앞서의 계사(啓辭)를 진달하고, 또 논하기를,</p> <p>“각사(各司)의 공상(供上)17029) 하는 관원이 어공(御供)하는 물품을 손수 받아 가지고 가자(架子)17030) 에 담아 전도(前導)하여 궐문(闕門)에 이르러 개문(開門)을 앉아 기다리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이 법이 점차 폐지되어 어공(御供)의 물품을 혹 공물인(貢物人)의 집에서 곧장 마련해 궐문(闕門) 아래로 오고, 관원은 의막(依幕)에 와서 휴식을 취하다가 개문(開門)하면 비로소 들어옵니다. 청컨대 각사(各司)에 신칙하여 지금부터 그릇된 규례를 따르는 자는 각별히 파죄(科罪)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또 논하기를,</p> <p>“작년에 영남 사람 김이달(金履達)이라는 자가 한 소장(疏章)을 올렸는데, 비록 박녀(朴女)를 정포(旌褒)하는 일을 말하였지만 정신을 쏟은 바는 오로지 도신(道臣)을 무함하는데 있었습니다. 다만 조광한(趙廣漢)을 참요(斬腰)한 옛</p>	<p>事剝刻，橫斂無藝，所納魚產，勒加濫徵，請罷職不敍。”上答加詳察處之。持平趙尙綱陳前啓，又論：“各司供上官，親捧御供之物，盛架子前導，到闕坐待開門者，不易之規。近來此法漸廢，御供之物，或自貢物人家，直爲備來於闕下，官員則來憩依幕，及至開門，始乃入來。請申飭各司，今後因循謬規者，各別科罪。”上允之。又論：“昨年嶺南人金履達者，投進一疏。雖以旌褒朴女爲言，精神所注，專在構誣道臣。只引趙廣漢腰斬故事，造意危怕。朴壽河之被刑，只緣言語悖慢，則何關於訟之立落？因此湊合，必欲甘心於道臣，此實前所未有之事。請疏頭金履達，令該曹考律定罪。”上問大臣，昌集等曰：“道臣邂逅殺人，何干於山事，而敢引廣漢腰斬等語，此不可尋常罪之。”上又問諸臣，皆言：“其疏雖無據，而既稱草野之疏，不可以一二句語，罪之。”上然之，不從臺言。閱鎮厚陳各司官吏，便服出入之弊，又言：“敬寧殿祭享時，諸祭官自闕中着便服而出，不可不論罪。”上教以予於蜥蜴祭時，亦見朝士退出者，自</p>
--	--	--

일17031) 을 끌어냈으니 생각하는 뜻이 위험했습니다. 박수하(朴壽河)가 형벌을 받은 것은 다만 언어의 패만(悖慢)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송사(訟事)의 입락(立落)17032) 에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를 주워모아 반드시 도신(道臣)에게 양갈음을 하려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청컨대 소두(疏頭) 김이달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율(律)을 헤아려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문의하니, 김창집 등이 말하기를, “도신의 우연한 살인이 산송(山訟)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히 조광한을 참요했다는 등의 말을 이끌어냈으니, 이는 범연히 치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여러 신하에게 물었는데, 모두 말하기를, “그 소가 비록 근거는 없으나 이미 초야(草野) 사람의 상소라고 일컬으니, 한 두 구절의 말을 가지고 죄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민진후(閔鎭厚)가 각사(各司)의 관원들이 편복(便服)으로 드나드는 폐단을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경녕전(敬寧殿) 제향 때 여러 제관(祭官)들이 궁중으로부터 편복을 입고 나왔으니, 논죄(論罪)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석척제(蜥蜴祭)17033) 를 지낼 때 조신(朝臣)들이 궁중에서 이미 편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또한 보았으니, 지금부터 드러나는 대로 논죄토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판부사(判府事) 최석정(崔錫鼎)이 고(故) 기평군(杞平君) 유백중(兪伯曾)의 시장(諡狀)을 지었는데, 유백중이 고(故) 상신(相臣) 윤방(尹昉)을 논핵한 일을 논하여 이르기를,

闕內已着便服。自今隨現論罪。先是，判府事崔錫鼎，撰故杞平君兪伯曾諡狀，而論伯曾劾故相尹昉事有曰：“公論尹昉汚巖廟社位版，上詢虛實，對者不能明言，上以爲失實，命特罷。其後李檜還自瀋陽，極陳廟社汚巖狀。檜其時宮官，曾所目睹，上始知公言不誣。”昉後孫奉事重明等，上疏辨其誣，引錫鼎之祖鳴吉之語，及故判書李植碑文中，本無意罪之之言，以爲：“伯曾及檜，皆有宿嫌於昉，乘時構捏，而錫鼎專欲諛伯曾，以悅其子孫，請命太常，改削諡狀中構誣之言。”上下優批，改削事，令太常舉行，奉常寺請出付其諡狀於伯曾子孫，使之刪改。伯曾之孫前郡守命聘等，又疏論昉汚巖廟社主之狀，以爲：“奉還主版之時，裹以空石，馱之於馬，弊襪、弊禪、食器、斫刀等物，雜入其中，使女奴跨其上，人心齊憤。國言喧藉，自上洞燭罪狀，仍有付處之命。聖祖處分如是嚴截，則爲其子孫者，安敢掩護周遮，反生伸辨之計哉”上以爲：“彼此疏辨如此，不可不俯循公議而處之”，下其疏於該曹。至是，上詢于筵臣，閔鎭

“공(公)은 윤방이 묘사(廟社)의 위판(位版)을 더럽힌 데 대하여 논핵하였는데, 임금이 그 허실을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께서 실상에 어긋났다 하여 특별히 파직을 명하였다. 그 후에 이회(李檜)가 심양(瀋陽)에서 돌아와 묘사의 위판을 더럽힌 정상을 극력 진달하였는데, 이회가 그때 궁관(宮官)으로서 일찍이 목도(目睹)하였으므로, 임금이 비로소 공(公)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하였다. 윤방의 후손 봉사(奉事) 윤중명(尹重明) 등이 소를 올려 그 무망(誣罔)함을 변명하고, 최석정의 조부(祖父) 최명길(崔鳴吉)의 말과 고 판서(判書) 이식(李植)의 비문(碑文) 가운데 원래 죄줄 뜻이 없었다는 말을 이끌어 이르기를,

“유백증과 이회는 모두 윤방과 더불어 오래 된 혐의가 있으므로 때를 틈타 날조하였는데, 최석정은 오로지 유백증에게 아부하여 그 자손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으니, 청컨대 태상시(太常寺)17034) 에 명하여 시장(諡狀) 가운데 무함한 말을 개삭(改削)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리고, 태상시로 하여금 개삭하는 일을 거행하게 하니, 봉상시(奉常寺)에서 그 시장을 유백증의 자손에게 내주어 산개(刪改)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유백증의 손자 전 군수(郡守) 유명담(兪命聃) 등이 또 소를 올려 윤방이 묘사의 위판을 더럽힌 정상을 논하여 이르기를,

“묘사의 위판을 봉환(奉還)할 때 빈 석[空石]으로 싸서 말에 싣고 해진 버선과 잠방이 및 식기(食器)·작도(斫刀) 등의 물품을 그 가운데 뒤섞어 넣었으며, 여중으로 하여금 그 위에 타게 하니, 인심이 모두 분노하였습니다. 온 나라에 말이 왈자하게 퍼지자, 성상께서 그 죄상을 통촉하시고, 인하여 중도 부처(中道付處)17035) 의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조(聖祖)의 처분이 이와 같이 엄절하였는데, 그 자손된 자가 어찌 감히 비호하며 도리어 신변(伸辨)할 계획을 세

厚曰：“此事已近百年，無以詳知，而俞伯曾諡狀中，自伯曾論昉至李檜上疏，皆是出於朝報者。尹重明所以稱冤者，似在於始知公言不誣一句語矣。其時李檜上疏之後，尹昉中道付處，未幾蒙宥，聖度淵深，群下不敢窺其涯涘。右尹者曰：‘上雖迫於群請，暫許付處，而旋降恩宥，必以昉爲冤。李植文字中，本無意罪之者此也。’右俞者曰：‘李檜疏後，檜不被罪，而昉則付處，自上必以檜言爲是。今其諡狀中所謂始知公言不誣者，此也。’古人亦或有以一事，而各隨所見爲言者。兩邊之言，皆不可深斥，此外更無可覈之端矣。”趙泰采等言：“諡狀亦公家文字，輒令刪改，其弊無窮。”上命諡狀，勿爲刪改，又以其時是非，今難酌定，命寢禮曹覆奏。

을 수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피차의 소변(疏辨)이 이와 같으니 공의(公議)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 소를 해조(該曹)에 내렸다. 이에 이르러 임금이 연신(筵臣)에게 순문(詢問)하니,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이 일은 이미 백 년이 가까와서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유백중의 시장(諡狀) 가운데 유백증이 윤방을 논핵한 일로부터 이회의 상소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조보(朝報)에 나온 것이며, 윤중명이 칭원(稱冤)하는 바는, ‘비로소 공(公)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는 한 마디 말에 있는 듯합니다. 그때 이회가 상소한 뒤 윤방은 중도 부처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석방(釋放)되었으니, 성명(聖明)의 도량(度量)이 깊어 많은 신하들이 감히 그 한계를 엿볼 수 없었습니다. 윤방을 두둔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임금이 비록 여러 신하의 소청에 몰려 잠시 중도 부처를 허락하였으나 바로 은사(恩赦)를 내린 것은 반드시 윤방을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니, 이식의 문자 가운데 원래 죄줄 뜻이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유백증을 두둔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이회가 상소한 뒤 이회는 죄를 입지 않고 윤방은 중도 부처되었으니, 이는 임금께서 반드시 이회의 말을 옳게 여긴 것이다. 이제 시장(諡狀) 가운데 이른바 비로소 공(公)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합니다. 옛사람도 간혹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각기 그 소견에 따라 말하는 자가 있었으니, 양편의 말을 모두 깊이 배척할 수 없으며, 이 밖에 다시 사핵(查覈)할 단서가 없습니다.”

하고, 조태채(趙泰采) 등은 말하기를,
“시장 또한 공가(公家)의 문장인데, 함부로 산개(刪改)하게 한다면 그 폐단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p>하니, 임금이 시장을 산개하지 말라고 명하고, 또 그때의 시비(是非)를 지금 작성(酌定)하기 어려우니, 예조(禮曹)의 복주(覆奏)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8월 16 일(을유) 1번째기사</p>	<p>제주 목사(濟州牧使)가 장계하기를, “본도(本道)에 여역(癘疫)이 크게 번져 5천여 명이 죽었는데, 수백 첩의 약으로는 모두 구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니, 임금이 의사(醫司)에 명하여 상당한 약물(藥物)을 더 보내어 주라고 하였다.</p>	<p>乙酉/濟州牧使狀陳本島癘疫大熾，死亡五千餘名。以數百貼之藥，勢難盡救，上命醫司，加送相當藥物。</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8월 27 일(병신) 2번째기사</p>	<p>장령(掌令) 최경식(崔慶湜)이 생각한 바를 진소(陳疏)하기를, “양남(兩南)과 기호(畿湖)의 연해(沿海)와 야읍(野邑)의 건조(乾燥)한 곳은 과중(播種)할 시기가 늦어지니, 감사(監司)로 하여금 재해(災害)를 입은 고을을 따로 추리고, 수령(守令)에게 엄중히 신칙해서 직접 실태를 조사하여 전재(全災)를 입은 곳을 정밀히 추려 그 조세(租稅)를 감해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화(木花)는 참혹하게 재해를 입은 곳이 영남보다 심한 곳이 없으니,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더욱 심한 곳을 가려 참작하여 급재(給災)17064) 하게 한다면 곤궁한 백성의 소망을 거의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조가(朝家)에서 언제나 백골 징포(白骨徵布)17065) 를 염려하여 여러 차례 변통을 논의했는데, 우리 나라 신역(身役)의 괴롭고 무거운 것으로 군포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각 군문(軍門)과 각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징포(徵布)의 등류(等類)를 1석(石)마다 1필로 법식을 정하고, 부족한 경비(經費)의 수를 주전(鑄錢)하여 그 수를 채우게 한다면, 비록 영구히 법식으로 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대전(大典)》 산송조(山訟條)에 일체 품수(品數)로 그 보수(步數)가 정해져 있었는데, 병진년17066) 수교(受教)에 좌우 용호(左右龍虎)의 수목을 심기는 곳에는 타인의 입장(入葬)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항(條項)이 있고나서부터</p>	<p>掌令崔慶湜，陳所懷疏以爲： 兩南、圻湖沿海野邑高[燥]處，播種營期，令監司，別抄被災之邑，嚴勅守令，親自摘奸，精抄全災處，以蠲其稅。木花被災之慘，未有甚於嶺南。分付道臣，擇其尤甚，參酌給災，庶慰窮民之望矣。 又曰： 朝家每以白骨徵布爲慮，屢議變通，我國身役之苦重，無過於軍布。若令各軍門、各衙門，諸色徵布之類，每一石以一疋定式，而經費未準之數，鑄錢而充其數，則雖非永爲定式之事，猶可以救得一分。 又曰： 《大典》山訟，一切以品數定其步數，一自丙辰受教，有龍虎養山處，勿許他人入葬之條，爭端四起，莫可禁斷。臣意，士夫家所獨禁養之地，則依丙辰</p>

	<p>쟁단(爭端)이 사방에서 일어나 금지할 길이 없습니다. 신은 사부가(士夫家)에서 단독으로 금양(禁養)17067) 하는 곳은 병진년 수교에 의하여 좌우 용호(左右龍虎)로 한정을 삼게 하고, 그 나머지는 한결같이 《대전》의 보수(步數)의 법에 따라 용호의 한정에 구애되지 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 소를 묘당(廟堂)에 내렸다. 그 후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이 경연(經筵)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부세(賦稅)를 해마다 감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목화(木花)의 급재(給災)는 으레 허실을 서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문(軍門)에서 주전(鑄錢)하는 일은 처음 그 문을 여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전》과 수교(受敎)는 자주 변경할 수 없으니, 모두 그대로 두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受敎，以龍虎爲限，其餘則一依《大典》步數之法，勿拘龍虎之限。上下其疏於廟堂。是後，左議政金昌集，筵中覆奏以爲：“賦稅不宜逐歲減捧，而木花災，例多虛實相蒙。軍門鑄錢，不可創開，《大典》受敎，不可數改，并請置之。”上從之。</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9월 19 일(정사) 1번째기사</p>	<p>임금이 승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진연례(進宴禮)를 거행하였다. 왕세자가 제1작(第一爵)을 올리니, 음악은 여민락만(與民樂慢)을 연주하였고,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제2작을 올리니 음악은 제1작과 같았다. 왕세자 이하 머리를 조아리고 산호(山呼)하니, 백관(百官)이 꽃을 뿌렸다. 연잉군(延祜君) 이금(李吟)이 제3작을 올리니 음악은 오운개서조곡(五雲開瑞朝曲)을 연주하였고, 무동(舞童)이 들어와 초무(初舞)의 춤을 추었다. 임금이 비로소 술을 하사하니 왕세자 이하 자리에서 떠나 무릎을 꿇고 마셨으며, 탕(湯)을 올리자 음악은 청평곡(淸平曲)을 연주하였다. 연령군(延齡君) 이훤(李田)이 제4작을 올리니 음악은 정읍만기(井邑慢機)를 연주하였고 무동이 다시 들어와 아박(牙拍)의 춤을 추었으며, 탕을 올리자 음악은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서종태(徐宗泰)가 제5작을 올리자 음악은 보허자(步虛子)를 연주하였고 무동이 들어와 향발(響鉢)의 춤을 추었으며, 탕을 올리자 음악은 하운봉(夏雲峰)을 연주하였다. 회원군(檜原君) 이윤(李倫)이 제6작을 올리자 음악은 여민락만(與民樂慢)을 연주하였고 무동이 들어와 무고(舞鼓)의 춤을 추</p>	<p>丁巳/上御崇政殿，行進宴禮。王世子進第一爵，樂奏《與民樂慢》，左議政金昌集進第二爵，樂如第一爵。王世子以下，叩頭山呼，百官散花。延祜君吟進第三爵，樂奏《五雲開瑞朝曲》，舞童入作初舞。上始賜酒，王世子以下，離席跪飲，進湯，樂奏《淸平曲》。延齡君田進第四爵，樂奏《井邑慢機》，舞童入作牙拍，進湯，樂奏《桓桓曲》。判中樞徐宗泰進第五爵，樂奏《步虛子》，舞童入作響鉢，進湯，樂奏《夏雲峰》。檜原君倫進第六爵，奏《與民樂漫》，舞童入作舞鼓，進湯，樂奏《洛防春》〔洛陽</p>

었으며, 탕을 올리자 음악은 낙양춘(洛陽春)을 연주하였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제7작을 올리니 음악은 보허자(步虛子)를 연주하였고, 무동이 들어와 광수(廣袖)의 춤을 추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문무 종친 백관(文武宗親百官)에게 술을 하사하고 탕이 나온 후에 악(樂)을 그치는 것이 본래 예절(禮節)인데, 이제 그 마치고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먼저 악을 그쳤으니, 자못 조용한 기상(氣象)이 없다. 제7작부터는 비로소 예(禮)가 끝나기를 기다려 악을 그치도록 하라. 이것이 온당하다.” 하였다. 부원군(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이 제8작을 올리자 음악은 여민락(女民樂)을 연주하였고 무동이 들어와 향발(響鉢)의 춤을 추었으며, 탕을 올리자 음악은 정동방지곡(靖東方之曲)을 연주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구(趙泰耆)가 제9작을 올리자 음악은 보허자를 연주하고 무동이 들어와 광수(廣袖)의 춤을 추었다. 소膳(小膳)을 물리고 대膳(大膳)을 올리자 음악은 태평년지곡(太平年之曲)을 연주하였고 이어 여민락을 연주하였으며, 처용무(處容舞)를 추고 나서 악을 거두었다. 시연(侍宴)에 입참(入參)한 자는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 51원(員)과 대신(大臣)·재신(宰臣) 이하 1백 15원이며, 전(殿)에 오르지 않은 자가 55원이었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이 나아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성대한 거조를 보고 지난날 애태우며 걱정하던 때의 정경을 생각한다면, 하루의 연례(宴禮)로 나라의 경사(慶事)를 어찌 만분의 일인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사람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즐기만 하지 말라.’ 하였고, 또한 ‘즐거움을 극진히 함은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대신(大臣)이 지금 바야흐로 입시(入侍)했으니 진계(陳啓)할 창언(昌言)17087) 을 하순(下詢)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 등 여러 대신이 차례차례 삼가고 겸억(謙抑)하는 도리를 진계(陳啓)하니, 임금이 모두 가납하였다.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말하기를,

春]》。東平尉鄭載崙進第七爵，樂奏《步虛子》，舞童入作廣袖。上下教曰：“文武宗親百官賜酒，設湯後，樂止，自是禮節，今乃不待其畢，徑先止樂，殊無從容氣象。自第七爵，始待禮畢樂止。此乃得宜矣。”府院君金柱臣進第八爵，樂奏《與民樂》，舞童入作響鉢，進湯，樂奏《靖東方之曲》。戶曹判書趙泰耆進第九爵，樂奏《步虛子》，舞童入作廣袖。退小膳，進大膳，樂奏《太平年之曲》，仍奏《與民樂》，處容舞進，徹樂。入參侍宴者，宗親及儀賓五十一員，大臣、宰臣以下一百十五員，不陞殿五十五員。判中樞李頤命進曰：“以今日盛舉，翻思向來焦遑之時，一日宴禮，何能稱邦慶之萬一乎？然古人曰，無已太康，亦樂不可極。諸大臣今方入侍，下詢陳戒之昌言，似好。”上許之。判府事李畬等諸大臣以次陳戒，謹謙抑之道，上皆嘉納。右議政金宇杭曰：“召公以疾敬德爲誠小民之本，誠小民爲祈天永命之本。近來連歲失稔，民間赤立。今若渙發德音，一年身布，特減一疋，以示同樂之意，豈非盛德

	<p>“소공(召公)은, ‘덕있는 자를 힘써 공경하는 것으로 불쌍한 백성에 정성을 다하는 근본을 삼고, 불쌍한 백성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하늘에 장구한 운명을 비는 근본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곤궁하니, 이제 만약 덕음(德音)을 널리 퍼시어 1년의 신포(身布)에서 특별히 1필(疋)을 감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어찌 거룩한 은덕이 아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근본이 되는 말이다.”</p> <p>하였다. 좌의정 김창집 등 여러 대신이 모두 말하기를, “각사(各司)의 경비가 모두 바닥이 났으니, 1필을 감하는 일은 아마도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p> <p>하고, 이이명이 말하기를, “김우항은 주량(酒量)이 있습니다. 과음하여 취중(醉中)에 발언하였으니, 미처 헤아리지 못한 듯합니다.”</p> <p>하니, 김우항이 말하기를, “각사의 경비가 비록 바닥이 났다고 하나, 만약 낭비를 절약하고 또 조가(朝家)에서도 별달리 주선한다면 비록 1필을 감하더라도 어찌 지탱하기 어려운 데 이르겠습니까? 지금 신이 비록 술에 취했으나 이는 평생에 품어왔던 것이므로 우러러 진달한 것입니다.”</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右相)의 말이 옳다. 그러나 헤아려 본 연후에 조용히 강론(講論)하여 다시 품정(稟定)함이 옳겠다.”</p> <p>하였다.</p>	<p>乎?” 上曰: “此根本之言也。” 左議政金昌集等諸大臣, 皆以爲: “各司蕩然, 蠲減一疋之事, 恐難輕議。” 頤命曰: “《宇杭》有酒量矣。 過飲乘醉而發, 似未及商量矣。” 《宇杭》曰: “各司雖蕩然, 若節省浮費, 又自朝家別爲經紀, 則雖減一疋, 豈至難支乎? 今臣雖醉酒, 此乃平生蓄積, 故仰達矣。” 上曰: “右相言是矣。 第商量然後可行, 從容講論, 更爲稟定可也。”</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p>	<p>진연(進宴) 때 술잔을 올린 재신(宰臣) 및 진연청(進宴廳) 당상(堂上)·낭청(郎廳)과 여러 집사(執事)에게 차등 있게 상(賞)을 내렸다.</p>	<p>庚申/命進宴時進爵宰臣、進宴廳堂上郎廳、諸執事, 賞賜有差。</p>

<p>(康熙) 53년) 9월 22 일(경신) 1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진연(進宴)한 후 시혜(施惠)할 한 조항을 가지고 품주(稟奏)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대동미(大同米)를 양감(量減)하는 것이 한때의 혜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p> <p>하니, 임금(上)이 여러 신하에게 순문(詢問)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 등 여러 사람은 모두 대동미를 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태구(趙泰耆)는 환곡(還穀) 중에서 오래 된 것에 한해 1년분을 탕감하고, 대동미는 1두(斗)를 한정하여 적당히 감봉(減捧)하기를 청했으며,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도 또한 조태구의 말과 같았다. 임금이 8도의 1년 환곡을 고루 탕감할 것을 허락하고, 양호(兩湖) 연해(沿海)의 더욱 심한 고을은 대동미를 참작하여 감제(減除)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또 병술년(1705)과 경인년(1706)의 전례(前例)에 의하여 대신·재신(宰臣)·당상관(堂上官) 및 부인(夫人) 70세 이상에 미육(米肉)을 하사(下賜)하고, 기로(耆老)·종반(宗班)으로 70세 이상은 의자(衣資)와 미육을 하사하며, 조사(朝士)의 부인(夫人) 및 부녀 80세와 상한(常漢)의 여인 90세 이상은 모두 미육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또 김창집의 말로 인하여 선조(先朝) 무신년(1707)의 전례에 따라 재신(宰臣)·시종신(侍從臣)의 부모(父母) 70세 이상은 서계(書啓)하여 혹은 가자(加資)하고 혹은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p> <p>“북한 산성(北漢山城)을 삼군문(三軍門)에 분속(分屬)시키고, 삼군문에서는 각기 그 초관(哨官)·교련관(教鍊官)의 무리로 감관(監官)을 삼을 것인데, 군항(軍餉)의 출납(出納)은 저들의 관할(管轄)할 바가 아니니, 마땅히 당상(堂上) 가선(嘉善)의 무변(武弁)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별장(別將)을 삼아 온 성(城)을</p>	<p>引見大臣、備局諸臣。左議政金昌集，以進宴後施惠一款，稟奏曰：“諸議以量減大同，可爲一時之惠云矣。”上問諸臣。禮曹判書閔鎭厚等諸人，皆以減大同爲宜，戶曹判書趙泰耆請糶糶，限久遠一年蕩滌，大同限一斗量宜減捧，判府事李濡亦如泰耆言。上命八道一年糶穀，均許蕩減，兩湖沿海尤甚邑大同，參酌蠲除。上又命依丙戌、庚寅例，大臣、宰臣、堂上及夫人年七十以上賜米肉，耆老、宗班年七十以上，賜衣資、米肉，朝士夫人及婦女人年八十、常漢女人九十以上，竝賜米肉。又以昌集言，命依先朝戊申例，宰臣、侍從臣父母年七十以上書啓，或加資或賜衣資、食物。濡奏言：“北漢分屬三軍門，三軍門，各以其哨官、教鍊官輩，爲監官，軍餉出納，非渠輩所可管，宜擇於堂上嘉善武弁中，定爲別將，專管一城。”上從之。濡又曰：“北漢軍餉五六萬石外餘穀，則當輸入蕩春臺外倉，此則宜使摠戎廳主之，日後有急，則摠戎使留鎭蕩春，以禦其外似好。”</p>
--	--	--

전관(專管)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유가 또 말하기를,
 “북한 산성의 군향 5, 6만 석(石)을 제외한 나머지 곡식은 마땅히 탕춘대(蕩春臺) 외창(外倉)에 수납(輸納)하여야 하며, 이는 의당 총융청(摠戎廳)으로 하여금 주관(主管)하게 하여 후일 위급한 사태가 있으면, 총융사(摠戎使)가 탕춘대에 유진(留鎭)하여 외적(外敵)을 방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또 청하기를,
 “외방(外方) 사찰(寺刹)에 있는 승도(僧徒)의 다소(多少)를 조사하여 남한 산성·북한 산성에 각기 의승(義僧)을 3백 50명씩 정하고, 액수를 정하여 차례로 번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희(允許)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일로 청하기를,
 “따로 당상관(堂上官)을 내어 청사(廳舍)를 마련하고, 호포(戶布)와 구전(口錢) 가운데에서 그 편의를 충분히 강정(講定)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호포와 구전 및 도헌(都憲)의 소에 논한 3건(件)의 일을 모두 통용(通融)하여 두루 의논하게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저번에 한 수령(守令)의 말을 들으니, ‘각 군문(軍門)의 군병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여러 관사(官司)에 소속된 창준(唱準) 같은 제원(諸員) 등의 부류는 모두 감해 없애야 할 것이요, 각 고을에서 거둔 호포(戶布)는 올려보내어 여러 관사(官司)에 분급(分給)하게 하고, 여러 관사에 입속되었던 자를 군정(軍丁)에 편입(編入)시킨다면, 군병은 저절로 꺾액(闕額)이 없을 것이며, 또 친족에게 침책(侵責)하는 폐단도 제거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 또한 상의하여 확정(確定)하는 가운데에 침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부제학(副提學) 권상유(權尙游)가 구전(口錢)의 편리함을 극력 말하기를,

又請覈外方寺刹僧徒之殘盛，南、北漢各定義僧三百五十名，定額輸番，上竝許之。昌集以良役變通事，請別出堂上，設廳，就戶布、口錢中，熟講其便宜，上命戶布、口錢及都憲疏所論，竝三件通融雜議。鎭厚曰：“向聞一守令之言：‘除各軍門軍兵，其餘諸司所屬，如唱準諸員等類，盡爲減去，使各邑收戶布上送，分給諸司，而諸司入屬者，許令簽丁，則軍兵自無闕額，又除侵族之弊’云。此言亦使添入於商確中，似好。”副提學權尙游盛言口錢之便曰：“周時有夫布，其說具載《周禮》。漢高祖四年，又行丁錢，丁錢，卽口錢也。後之議者以爲，漢家四百年基業，實由於此，其法與《周禮》所載者，暗合矣。若堅定聖意，委任責成，則豈有不可行之理耶？”趙泰考曰：“漢時，天下皆鑄錢，故此法宜行，而我國則錢貨極貴，決不可成也。”李滈曰：“宜令廟堂，爛熳商議。”上許之。閔鎭厚曰：“向日大臣，請以荒唐船及西北邊事，通聞彼中，而諸議不一，只以荒唐船一事通聞矣。西邊則以申命式事觀之，【卽理山郡守也。事

“주(周)나라 때 부포(夫布)17098)가 있었으니, 그 설(說)이 《주례(周禮)》에 상세히 실려 있으며, 한 고조(漢高祖) 4년(B.C. 203)에 또 정전(丁錢)을 시행했으니, 정전은 곧 구전입니다. 후세에 의논하는 자들이 한(漢)나라 4백 년 기업(基業)이 실로 이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그 법이 《주례》에 실린 바와 더불어 은연 중 부합합니다. 만약 성의(聖意)를 굳게 정하고 맡겨 책임지 운다면 어찌 시행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자, 조태구가 말하기를,

“한(漢)나라 때에는 천하가 모두 돈을 주조하였으므로 이 법이 시행되었으니, 우리 나라에는 전화(錢貨)가 지극히 귀하니,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충분히 상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저번에 대신이 황당선(荒唐船)과 서북(西北) 변방의 일을 저들에게 통보해 알리기를 청했으나, 여러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다만 황당선 한 가지 일만 통보하였습니다. 서쪽 변방은 신명식(申命式)의 일로써 본다면 【곧 이산 군수(理山郡守)이니, 이에 관한 일은 위에 보인다.】 사단(事端)이 이미 벌어졌으나, 그래도 북도(北道)의 더욱 염려스러움만 못합니다. 금번 사행(使行)에 설령 탐문하여 온다 하더라도 형편상 장차明年(明年) 동지사(冬至使)의 행차 때 주문(奏文)을 순부(順付)17099) 하게 될 것인데, 그동안 저들의 촌락(村落)이 더욱 번성한다면 더욱 난처할 것이니, 지금 서북 변방의 일을 황당선의 일과 합하여 하나의 주문(奏文)으로 만들어 사신(使臣)으로 하여금 형편을 보아 올리게 하되, 그렇지 못하면 도로 가지고 오더라도 불가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하고, 권상유는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珣)가 중원(中原) 사람들이 우리 지경에서 10리의 거

見上。】事端已露，而猶不如北路之尤可憂。今此使行，設令探問而來，勢將順付奏文於明年冬至之行，其間彼人村落尤盛，則益爲難處。今以西北邊事，合荒唐船事，爲一奏使，使臣觀勢呈之，否則還爲持來，似無不可。”尚游曰：“先正臣李珣以中原人設堡於我境十里之內爲憂，請別遣奏請使，慮事可謂深遠矣。今番使行，兼以奏請爲號，似合於李珣言矣。”上曰：“欲爲探問者，蓋欲知皇帝命令與否，而爲兼奏請之說，未知其可也。”大臣諸議，各不一，或言：“西邊事端已露，不可不與荒唐船事同奏，而北邊事，待使行回還，詳探事情而爲之，始可完全矣。”

	<p>리 안에 보(堡)를 설치(設置)한 것을 근심하여 따로 주청사(奏請使)를 보내기를 청했으나, 일을 염려함이 심원(深遠)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금번 사행(使行)에도 주청사의 칭호를 겸한다면 이이의 말과 부합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탐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저 황제(皇帝) 명령 여부(與否)를 알고자 함이다. 주청사를 겸한다는 말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p> <p>하였다. 대신의 여러 의논도 각기 달라 혹은 말하기를,</p> <p>“서쪽 변방에는 사단이 이이 벌여졌으니 황당선의 일과 더불어 함께 주문(奏聞)하지 않을수 없으나, 북쪽 변방의 일은 사행(使行)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상세히 사정을 탐문하고 주문(奏聞)하여야 비로소 완전할 것이다.”</p> <p>하였다.</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10월 3 일(신미) 3번째기사</p>	<p>우의정(右議政) 김우항(金字杭)이 소를 올려 병이 났음을 고하고, 또 군포(軍布)를 반감(半減)하는 말을 거듭 이르기를,</p> <p>“갑술년(17103) 에 수상(首相) 남구만(南九萬)이 대동미(大同米) 1등(等)을 감하기를 청하였고, 그 후에 승지(承旨) 이언강(李彦綱)이 신포(身布)와 공목(貢木) 17104) 을 감하기를 청하였으니, 갑술년의 은혜로운 정사(政事)가 저와 같이 훌륭하였습니다. 이제 안으로는 궁궐(宮掖)에서부터 밖으로는 각사(各司)에 이르기까지 쓸데없는 비용을 극력 제거하고 서울과 외방(外方)에 저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변통하여 대신 지급하게 하되, 갑술년의 예와 같이 한다면 어찌 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p>	<p>右議政金字杭陳疏控病，又申軍布減半之說，以爲： 甲戌首相南九萬，請減大同一等，厥後承旨李彦綱，請減身布與貢木，甲戌惠政，如彼其優。今內自宮掖，外及各司，痛祛浮費，以京外所儲，推移代給，如甲戌，則豈有決不可爲之理也？ 上命廟堂稟處。</p>
<p>숙종 55권, 40년 (1714 갑오 / 청 강희 (康熙) 53년) 11월 2 일(경자) 2번째기사</p>	<p>대제학(大提學) 송사기(宋相琦)를 불러 반궁(泮宮)에 감귤(柑橘)을 내리고 선비를 시취(試取)하도록 명하였다. 수석을 차지한 송진명(宋眞明)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p>	<p>命招大提學宋相琦，賜柑試士于泮宮，賜居首宋眞明第。</p>
<p>숙종 56권, 41년</p>	<p>전교(傳敎)하기를,</p>	<p>朔戊戌/敎曰：“歲事方新，東作不遠，</p>

<p>(1715 을미 / 청 강희 (康熙) 54년) 1월 1일 (무술) 1번째기사</p>	<p>“세사(歲事)가 바야흐로 새로와져서 봄일이 멀지 않은데, 이러한 때에는 권농(勸農)을 마땅히 앞세워야 할 것이다. 재해를 입어 진휼(賑恤)을 베풀어야 할 곳에도 역시 신칙(申飭)함이 마땅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말을 잘 만들어 하유(下諭)하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전교를 대신 지어서 팔로(八路)에 반포하여 보였다.</p>	<p>此時勸農，在所當先。 被災設賑處，亦宜申飭，自政院，措辭下諭。” 政院代撰傳教，頒示八路。</p>
<p>숙종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 (康熙) 54년) 4월 5일 (경오) 2번째기사</p>	<p>대사헌(大司憲) 권상하(權尙夏)가 현도(縣道)를 통하여 사직 상소를 올렸다. 이때에 임금이 액례(掖隸)에게 명하여 식물(食物)과 향운(香醞)을 권상하에게 반사(頒賜)하도록 하였는데, 권상하가 상소 가운데 이 뜻을 언급하였으므로, 임금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위유(慰諭)하였다.</p>	<p>大司憲權尙夏，縣道陳辭疏。 時，上命掖隸，頒賜食物、香醞於尙夏。 尙夏疏中，及此意，上優批慰諭。</p>
<p>숙종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 (康熙) 54년) 7월 18일(신해) 1번째기사</p>	<p>경상도 개령현(開寧縣)에 큰 비가 와서 1백여 호(戶)의 인가(人家)가 물에 잠겼는데, 진휼(賑恤)의 은전(恩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p>	<p>(乙) [辛] 亥/慶尙道開寧縣大雨，人家百餘戶沈沒，命舉恤典。</p>
<p>숙종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 (康熙) 54년) 9월 4일 (병신) 2번째기사</p>	<p>제주(濟州)에서 사는 백성들이 곡식을 옮겨서 진휼(賑恤)하여 구제해 준 데 대해 나라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부로(父老) 4인을 보내 왔는데 토산물인 화복(花鰯)과 인복(引鰯)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서울에 올라와 주원(廚院)17172) 에 바치기를 청하였는데, 해관(該官)에서 허락하지 않으니, 격고(擊鼓)하여 울면서 호소하였다. 추조(秋曹)17173) 에서 그 사실을 계품하니, 받아들이지 말고 놓아 보내도록 명하였다.</p>	<p>濟州居民，以移粟賑活，感戴國恩，遣父老四人，齎土產花鰯、引鰯，裹足上京，請納於廚院，該官不許，擊鼓嗚呼，秋曹啓稟，命勿捧放送。</p>
<p>숙종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 (康熙) 54년) 9월 24일(병진) 2번째기사</p>	<p>장령(掌令) 한이원(韓以原)이 상소(上疏)하여 송성명(宋成明)의 상소에 대해 논하기를, “성상의 환후에 요즘 여러 증세가 간간히 일어나서 근심이 더욱 크니 보호하는 도리를 마땅히 극진히 해야 할 것인데, 오직 저들의 수응(酬應)이 조섭(調攝)하는 데 해가 되는 것 또한 신료(臣僚)들이 명백히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송성명은 도리어 이것을 죄로 삼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 송성명의 말을 그대로 시행되게 한다면, 상약(嘗藥)17189) 하는 자리에 있는 이</p>	<p>掌令韓以原上疏，論宋成明之疏以爲：聖候近日，諸證間作，餘憂愈大，保護之道，宜無所不用其極，惟彼酬應之害於調攝，亦臣僚之所明知也。 成明反以此爲罪，此何意也？若使成明之言得行，則是嘗藥之地，無所效其憂慮，而保護聖躬，反爲罪案，其不歸於越視君</p>

	<p>가 그 근심하는 마음을 본받는 바가 없게 되고, 성상의 옥체를 보호하는 것이 도리어 죄안(罪案)이 되어 군부(君父)의 질병을 무관하게 보지 않는 자가 거의 드물 것이니, 그 뜻은 대체로 오늘날 자세히 살피고 신중히 대처하는 일을 논척하여 저변에 범홀(泛忽)하다고 배척당한 것을 은밀히 펴보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 말한 것이 크게 임금과 신하의 의분(義分)과 윤리(倫理)를 손상시키는 바가 있으니, 이는 그 관계됨이 지극히 중대합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홍치중(洪致中)이 시비(是非)를 분변하지 않고 온 조정을 들어 올바르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온 조정을 무너뜨려 혼란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때의 처치가 물정(物情) 밖에 나왔고, 그 후에 정식(鄭栻)의 상소는 여론(餘論)을 주워 모은 것이었는데, 당나라 이종민(李宗閔)을 끌어대어 비유한 것은 더 폐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성명이 잇따라 일어나서 소를 올렸는데, 그 말이 의리를 해치고 인륜을 손상시킨 것은 또 두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포용(包容)하셔서 책려(策勵)를 더하지 않으시니, 그의 방종한 풍습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p> <p>하니, 답하기를,</p> <p>“지금 이 진소(陳疏)는 마땅하다고 할 만하다. 다만 내가 이미 시비(是非)를 밝게 살펴서 미안(未安)하다는 뜻을 분명하게 보였으니, 어찌 죄줄 필요가 있겠는가?”</p> <p>하였다.</p>	<p>父之疾者，幾希矣。其意蓋欲論斥今日詳慎之事，以爲陰伸向來泛忽之斥。其所爲言，大有傷於君臣之義分、倫理，則此其關係，至重且大。</p> <p>又曰：</p> <p>洪致中之不分是非，舉朝廷而謂之不正，蓋欲壞亂舉朝，而伊時處置，出於物情之外，其後鄭栻之疏，掇拾餘論，而李宗閔之引(諭) [喻]，尤爲絕悖。今成明繼起，而其言之害義傷倫，又非兩人之比，而過於包容，不加責勵，無以懲其縱肆之習矣。</p> <p>答曰：“今茲疏陳，可謂得宜，而第予已洞察是非，明示未安之意，則何必罪之?”</p>
<p>숙종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 (康熙) 54년) 10월 11 일(계유) 2번째기사</p>	<p>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유(金樛)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p> <p>“본도(本道)에 흉년이 들었으니 진휼청(賑恤廳)에서 가져다 쓰는 상정미(詳定米)17200) 를 머물게 두고서 진휼에 보태게 하소서. 그리고 황당선(荒唐船)17201) 의 왕래가 잦으니, 연해(沿海)의 수령(守令)·변장(邊將)을 마땅히</p>	<p>黃海監司金樛辭朝，上引見。樛言：“本道災歉，詳定米自賑廳取用者，留置補賑。荒唐船往來頻頻，沿海守令、邊將，宜擇送。”上竝許之。上曰：“古者東海一婦抱冤，三年致旱。</p>

	<p>가려서 보내소서.”</p> <p>하니, 임금의 모두 허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예전에 동해(東海)의 한 부인이 원통함을 품자, 3년 간 가물었다고 한다. 진도(珍島) 한 고을에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혹시 바다 밖의 빈궁한 백성들이 원통함을 품고 펼 길이 없어서 위로 하늘의 온화한 기운을 범하여 이런 흉년이 든 것이 아닌가? 그 본도의 방백(方伯)으로 하여금 본군(本郡)에 자세히 탐문하여 즉시 계문(啓聞)하는 일을 특별히 유시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p>珍島一郡，十餘年凶荒，予甚憫之。無乃海外窮民，抱冤莫伸，上干天和，而致此凶荒耶？其令本道方伯，詳加訪問於本郡，卽爲啓聞事，別諭可也。”</p>
<p>숙종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 (康熙) 54년) 10월 12일(갑술) 1번째기사</p>	<p>대신 및 비국(備局)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p> <p>“연해(沿海) 등지에서 입은 재해가 더욱 심하고, 제주 지방이 특히 심하니, 마땅히 진휼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하겠습니까.”</p> <p>하고, 또 말하기를,</p> <p>“대마 도주(對馬島主)가 품질 좋은 인삼(人蔘) 얻기를 청했는데, 이는 곧 후일의 폐단과 관계가 있으니, 제신(諸臣)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자, 좌의정 김창집(金昌集)·판윤(判尹) 민진후(閔鎭厚)·예조 판서(禮曹判書) 조태구(趙泰耆)·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건명(李健命)·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광좌(李光佐)가 모두 말하기를,</p> <p>“후폐에 관계 있는 것은 마땅히 방색(防塞)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정해진 조목 이외에 별도로 구하는 것이 반드시 후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니, 방색하는 것이 옳다.”</p> <p>하였다. 임금이 한림(翰林)이 곧장 퇴출(退出)하고 행공(行公)하지 않는다 하여 의금부(義禁府)에서 추고하게 했는데도 끝내 명을 받들지 않자, 별 겸춘추</p>	<p>甲戌/引見大臣及備局有司堂上。領議政徐宗泰言：“沿海等地，被災尤甚，濟州特甚，宜有恤典。”又曰：“對馬島主請得好品人蔘，此乃有關後弊，下詢諸臣可也。”左議政金昌集、判尹閔鎭厚、禮曹判書趙泰耆、戶曹判書李健命、兵曹參判李光佐皆曰：“有關後弊，宜令防塞。”上曰：“科外別求，必貽後弊，防塞可也。”上以翰林徑出，不爲行公，禁推，而終不承命，命差出別兼春秋，完新薦。又以水原被災，本府試才，命退行於明年正、二月間。宗泰曰：“戶布、口錢之法，使閔鎭厚磨鍊其大總，而今難遽行，而結布亦多難便。”昌集曰：“新法有難猝行，必欲變通，則先以戶布法，擇備堂一二</p>

<p>(別兼春秋)를 차출하여 신천(新薦)을 보완하라고 명하고, 또 수원(水原)에서 재해를 입었다 하여 본부(本府)의 시재(試才)를 명년 1월·2월 사이로 물려서 행하라고 명했다.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p> <p>“호포(戶布)·구전(口錢)의 법을 민진후(閔鎭厚)에게 그 대총(大總)을 마련하게 하였으나 지금 갑자기 시행하기가 어렵고, 결포(結布)도 역시 편리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p> <p>하자, 김창집은 말하기를,</p> <p>“신법(新法)은 갑자기 시행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변통하고자 한다면 먼저 호포법(戶布法)을 비당(備堂)17203 한두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서 책성(責成)17204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고, 민진후는 말하기를,</p> <p>“신법은 모두 갑자기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액(軍額)과 민호(民戶)가 균등하지 않은 곳에는 추이(推移)하여 변통하게 한다면 민폐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진달한 말이 참으로 옳다. 이로써 변통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p> <p>“오늘날의 급선무는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습니다. 경외(京外)에서 모두 마땅한 사람을 얻는다면, 백성의 병폐는 저절로 바로잡혀 고쳐질 것입니다.”</p> <p>하고, 이견명이 말하기를,</p> <p>“호포(戶布)의 법을 한 고을에 먼저 시험해 보면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호조 판서가 진달한 먼저 시험해 보자는 논의가 어떠한가?”</p> <p>하자, 제신(諸臣)이 모두 말하기를,</p>	<p>人，委之責成爲宜。” 鎭厚曰：“新法皆難猝行。軍額、民戶不均處，使之推移變通，則民弊可除。” 上曰：“所達誠是。以此變通可也。” 光佐曰：“今日急務，惟在得人。京外皆得人，則民瘼自可矯革。” 健命曰：“以戶布之法，先試一邑，則可行與否，可以推知。” 上曰：“戶判所達先試之論何如？” 諸臣皆言：“諸邑事勢，各自不同，有不可先試。” 上曰：“此外必有一分救民之道，更加商議可矣。” 上命權高事，諸臣各陳所見，諸臣皆曰：“妖誕之罪，固不可免，而貸死屏裔，亦非失刑。” 健命、光佐、掌令崔慶湜、獻納尹陽來言：“罪不可貸，更宜嚴究。” 上命更爲推問。鎭厚以文廟、外方鄉校位版，不可從《會典》改正，仍舊奉安，請令禮官稟處。又以戰船不便運用，徒費物力，船滄好處則仍置，而不緊處則換作兵船事，請令廟堂稟處，上竝許之。光佐以爲：“戰船不可遽罷。” 上曰：“徐觀稟處之如何，而更爲處分矣。” 鎭厚又請以忠翊衛冒錄，屬於北漢者，出給其所居邑，充定軍額，京軍門及外軍門汰減軍官，劃</p>
---	--

	<p>“여러 고을의 사세(事勢)가 각자 동일하지 않아서 먼저 시험할 수 없는 실정들이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이밖에도 조금이나마 백성을 구제할 방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다시 더 상의(商議)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임금이 권설(權高)의 일에 대하여 제신에게 각기 소견을 진달하도록 명하니, 제신이 모두 말하기를,</p> <p>“요망하고 허탄한 죄를 진실로 면할 수 없으나, 사형을 용서하고 변방으로 내치는 것 또한 형벌을 잘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이진명·이광좌와, 장령(掌令) 최경식(崔慶湜), 헌납(獻納) 윤양래(尹陽來)는 말하기를,</p> <p>“죄를 용서해서는 안되니, 다시 엄하게 끝까지 구핵(究覈)해야 마땅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다시 추문(推問)하라고 명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문묘(文廟)와 외방 향교(鄉校)의 위판(位版)을 《회전(會典)》에 따라 개정(改正)해서는 안되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또 전선(戰船)은 운용하기가 불편하고 한갓 물력(物力)만 낭비하니, 선창(船滄)이 좋은 곳은 그대로 두되, 긴요하지 않은 곳은 병선(兵船)으로 바꾸어 만드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품처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p> <p>“전선을 갑자기 파해서는 안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서서히 품처한 것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다시 처분(處分)하겠다.”</p> <p>하였다. 민진후가 또 청하기를,</p> <p>“충익위(忠翊衛)에 모록(冒錄)된 자로서 북한 산성에 소속된 자는 그가 사는 고을에 내어 주어 군액(軍額)에 충정(充定)하게 하고, 경군문(京軍門) 및 외군</p>	<p>給北漢，上令該廳稟處。 健命曰：“原任大臣李濡所進冊子，事關地部者，多有不便。 廟堂覆啓時，竝爲稟處似宜。” 上從之。 光佐曰：“湖南習操已停，營將巡歷，則當分付爲之。” 上從之。 仍教曰：“操陳等事，若非大段荒歲，則不可曠廢，而循襲爲例，固已非矣。 且凡被災輕重，當從實論報，而近來監司、守令，多不以實。 頃日海伯狀啓，九月十三日霜降，謂之太早，殊甚不當。 今後此等事，廟堂詳察回啓宜矣。”</p>
--	---	---

	<p>문(外軍門)에서 태감(汰減)된 군관(軍官)을 복한 산성에 획급(劃給)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李熙)이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이견명이 말하기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이유(李濡)가 올린 책자(冊子)의 지부(地部)17205)에 관계되는 것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묘당에서 복계(覆啓)할 때에 아울러 품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 “호남에서의 습진(習陣)과 조련(操鍊)은 이미 정지하였으니, 영장(營將)의 순찰[巡歷]은 마땅히 하도록 분부해야 합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전교하기를, “군사의 조련과 습진하는 등의 일은 만일 대단한 흉년이 아니면 오래도록 폐지할 수 없는데, 인습(因襲)을 따르는 것을 전례(前例)로 삼는 것은 진실로 이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무릇 재해를 입은 경중(輕重)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실대로 논하여 보고해야 하는데, 근래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감사(監司)·수령(守令)들이 많다. 지난날 황해 감사(黃海監司)의 장계(狀啓)에 ‘9월 13일 서리가 내린 것은 너무 이르다.’고 한 것은 매우 마땅하지 못하다. 이후로 이러한 일들은 묘당에서 자세히 살펴서 회계(回啓)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p>	
<p>숙종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 (康熙) 54년) 10월 30일(임진) 2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고, 제주 지방이 해를 거듭하여 흉년이 들었으니 호남과 영남의 곡식을 1만 석을 한정하여 옮겨 배에 싣고 가서 먹이되, 양도(兩道)17220)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운반을 감독하여 들여 보내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서장관(書狀官) 윤양래(尹陽來)가 어제 방물(方物)을 봉과(封裹)17221)할 때 처음 패초(牌招)에 나오지 않았다 하여 전교하기를, “서장관(書狀官)은 이미 이 해사(該司)의 관원인데, 재차 부른 뒤에야 비로소</p>	<p>引見大臣、備局堂上，命以濟州連歲飢荒，移湖、嶺穀，限萬石船載往哺，而使兩道都事，督運入送。上以書狀官尹陽來昨日方物封裹時，初牌不進，敎以書狀既是該司之官，再召之後，始乃出肅者，事體未安，從重推考。判中樞李濡進奏言：“蕩春之於北漢，實爲</p>

나와서 숙배(肅拜)한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한 일이니, 종종 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라.”

하였다.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주언(奏言)을 올리기를,
 “탕춘대(蕩春臺)17222) 는 북한 산성에 대해 진실로 순치지세(唇齒之勢)17223) 이니, 도성 백성들의 축적(蓄積)을 일체 이곳에 실어 들이는 것이 바로 만전(萬全)의 계책입니다. 만약 탕춘을 지키지 못하면, 북한의 형세도 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이 전일에 올린 책자(冊子) 속에 탕춘에 토성(土城)을 쌓도록 청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나뉘어져서 쉽사리 귀일(歸一)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속히 결단을 내리신다면 신이 마땅히 힘을 다하여 봉행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받은 소임을 결코 헛되이 띠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신(諸臣)들에게 물어보았다.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말하기를,
 “북한 산성에서 도성으로 가는 중간에 또 이 토성이 있게 되면, 둘레가 6, 70리나 되는데, 무슨 병력으로 세 성을 방수(防守)하겠습니까.”

하자, 이유가 말하기를,
 “당초에 성상께서 도성이 넓고 커서 지키기 어렵다고 여기시고 북한 산성으로 계획을 정하였는데, 언제 도성도 함께 지키라는 전교가 있었습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도 모두 지키지 못하여 도성 백성들의 축적(蓄積)을 모두 도적에게 내주고 말았었습니다. 이제 만약 북한 산성의 험고(險固)에 의거하여 지키고 백성의 축적을 탕춘에다 거두어 들인다면, 비록 도성을 비워두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황하게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으로 옮기어 피난하는 것에 비교하여 그 이해(利害)가 현격(懸隔)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북한 산성을 쌓았는데, 또 아울러 도성(都城)까지 지키고자 한다면 형

唇齒之勢。 都城人民蓄積， 一併輸入于此， 乃萬全之策， 而蕩春若不守， 則北漢勢不可獨守。 臣前日冊子中， 請築蕩春土城者此也， 而群議多端， 未易歸一。 若賜趁速夫斷， 則臣當竭力奉行， 不然則所受之任， 決不敢虛帶矣。” 上下詢諸臣。 領議政徐宗泰曰：“自北漢至都城， 又有此土城， 則周回爲六七十里， 以何兵力， 防守三城乎？” 濡曰：“當初自上以都城爲關大難守， 而定計北漢， 何嘗有竝守都城之教乎？ 壬辰、 丙子之亂， 皆不能守， 都城人民蓄積， 竝付之賊。 今若據守北漢之險固， 收入人民蓄積於蕩春， 則雖空都城而不守， 較諸蒼黃移避於江都、 南漢， 利害懸矣。” 上曰：“既築北漢， 而欲竝守都城， 則勢不可爲。 予意本自如此矣。” 左議政金昌集、 戶曹判書李健命皆有持疑之言， 兼吏曹判書趙泰采以濡言爲是， 兵曹參判李光佐， 最以爲不可， 縷縷力陳數百言， 上曰：“此非造次可定， 退與廟堂， 熟講更稟可也。” 是日 上因大臣言， 允臺啓河事。

	<p>편상 할 수가 없으니, 내 뜻은 본래 이러하다.” 하였다.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호조 판서 이건명(李健命)은 모두 의혹을 갖는 말을 하였고, 겸 이조 판서(兼吏曹判書) 조태채(趙泰采)는 이유의 말을 옳게 여겼으며,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광좌(李光佐)는 가장 옳지 않다고 여겨 누누이 수백 마디의 말을 힘을 다해 진달하니, 임금(李熙)이 말하기를, “이는 별안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물러가 묘당(廟堂)과 깊이 강구(講究)하여 다시 품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날 임금이 대신(大臣)의 말로 인하여 대간(臺諫)이 아뢰었던 하(河)17224)에 대해 일을 윤택했다.</p>	
<p>숙종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康熙) 54년) 11월 25일(정사) 2번째기사</p>	<p>황감(黃柑)을 내려 주고 반궁(泮宮)17251)에서 시사(試士)하도록 명하였다. 당시 반궁의 유생들이 바야흐로 유현(儒賢)을 변무하는 일로 상소(上疏)하였는데, 대사성(大司成) 민진원(閔鎭遠)이 과거를 치른 뒤에 진소(陳疏)하라는 뜻으로 타이르니, 유생들이 말하기를, “유현을 변무하는 일은 바로 사문(斯文)에 관계된 중대한 일인데, 상소하는 일은 포기하고 과장(科場)에 나아가는 것이 선비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 끝내 듣지 않았다. 민진원이 이로써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물려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p>	<p>命頒柑試士于泮宮。時，泮儒方以儒賢辨誣事，拜疏，大司成閔鎭遠，以過科後陳疏之意，諭之，則儒生等以爲：“儒賢辨誣，係是斯文重舉，棄疏事而赴科場，決非士子道理”，終不回聽。鎭遠以此啓稟，上命退行。</p>
<p>숙종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康熙) 54년) 12월 4일(병인) 1번째기사</p>	<p>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차자(筵子)를 올려 먼저 훈국(訓局)의 병제(兵制)를 논하기를, “병사(兵士)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예를 단련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니, 사등(四等)17260)에 시행하는 중순(中旬)17261)은 참으로 아름다운 규례(規例)인데, 중년 이후로는 양순(兩巡)만 행하다가 근년에 와서는 또한 정폐(停廢)하였습니다. 보포(保布)17262)를 재변 때문에 감해 주는 경우 호조·병조로 하여금 그 대용(代用)을 채워 주게 하였는데, 다만 책임만 면하고자 하여 약간을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갑신년(17263) 이후로 재변 때문에 감해 준 것이 거의 1천여 동(同)을 넘고 있는데, 양조(兩曹)에서 또한 어찌 편의에 따</p>	<p>丙寅/左議政金昌集上筵，首論訓局兵制以爲： 治兵之道，莫先於鍊藝，四等中旬，實是美規，而中年以後，只行兩巡，至近歲，此亦停廢矣。保布災減者，令戶、兵曹，充給其代，而只以如干塞責輸送。甲申以後災減，殆過千餘同，兩曹亦豈無隨便充給之道，而久未舉行，事體未安，宜有申飭之舉矣。</p>

라 채워 줄 방법이 없겠습니까마는, 오래도록 거행하지 않고 있어서 사체(事體)가 미안하니, 마땅히 신칙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청하기를,

“비국(備局)에서 조사하여 얻은 양정(良丁)17264) 과 응군(鷹軍)에서 혁파된 자를 군향보(軍餉保)로 이정(移定)하여 군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였는데, 원컨대 양향(糧餉)은 도감(都監)에 이속(移屬)시켜 대장으로 하여금 검하여 관장하게 하소서. 그리고 본영(本營)의 수하선(水下船) 9척 중에서 4척을 덜어낸 대신 삼남(三南)17265) 통수영(統水營)의 퇴출(退出)시킨 병선(兵船)·전선(戰船)을 양서(兩西)17266) 의 예(例)에 의하여 윤번을 정해서 본영(本營)에 올려보내어 무기를 고치고 궤원(闕員)을 보충하게 하소서. 지부(地部)의 흑각(黑角)17267) 은 구례(舊例)에 의하여 70통(桶)을 가지고 해마다 고쳐야 할 활을 수리하여 만들게 하소서. 그리고 도망한 군졸을 숨겨 준 자는 일찍이 영갑(令甲)17268) 이 없었는데, 이제 도망한 군졸을 숨겨 준 자는 각 별히 논죄(論罪)하는 일을 엄중하게 과조(科條)를 세워 죄준다면, 거의 징계되어 그치게 할 방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다음으로 양역(良役)을 변통(變通)하는 법을 논하기를,

“여러 가지 신법(新法)은 모두 우선 미루어 두고, 다만 감사와 병사에게 엄중하게 책망을 더하여 그 군영(軍營) 소속으로서 파정(罷定)할 수 있는 자를 우선 각 고을에 내어 주도록 하는 동시에, 또 열읍(列邑)에 신칙하여 각기 그 고을에 소속된 잡색(雜色)도 아울러 파정(罷定)하게 할 것이며, 또 사가(私家)에서 숨겨 둔 자들을 조사하여 궤액(闕額)을 보충하고, 가끔 암행 어사를 내보내어 특별히 염찰(廉察)을 더해서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한 다소(多少)를 가지고 전최(殿最)17269)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監司)와 병사(兵使)로서 더욱 심하게 영속(營屬)을 너그럽게 비호하는 자 또한 비국(備局)에서 듣는 대로 아뢰어 파직시키고, 양정(良丁)을 숨겨 준 자는 각도(各道)로 하여

又請以備局查得良丁及鷹軍革罷者，移定於軍餉保，以補一分，而糧餉願移屬都監，令大將兼管。本營水下船九隻中，四隻減去之代，以三南統、水營戰、兵船退出者，依兩西例，輪定上送於本營，改槩補闕。地部黑角，依舊例以七十桶，逐年修造應改之弓。容匿逃軍，曾無令甲，今以容接者，各別論罪事，嚴立科罪，則庶有懲戢之道矣。次論良役變通之法以爲：

諸般新法，竝姑擔閣，只加嚴責於藩闕，其營屬可以罷定者，爲先出給各邑，又勅列邑，各其邑屬雜色，亦竝破定，又刮私家所匿，以充闕額，間發繡衣，另加廉察，以隣族侵徵之多少，爲之殿最。監司、兵使之尤甚容護營屬者，亦自備局，隨聞啓罷，其容匿良丁者，令各道摘發，繩以重律，則其弊可少緩矣。國家苟能十分節省，量入爲出，則亦何至不成貌樣乎？顧今冗費，比數十年，亦已倍蓰，不先正本，欲救其末，是猶抱薪而救火也。先自宮省，特爲剋減，而亟命戶、兵曹，條奏近來經費之新創而可去者，一切裁省焉。

又言：

금 적발(摘發)하여 무거운 죄율로 다스리게 한다면, 그 폐단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진실로 심분 절생(節省)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한다면, 또한 어찌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다만 지금 쓸데없는 비용이 수십 년 전에 비해 또한 이미 몇 갑절이 되는데, 먼저 근본을 바로 잡지않고 그 말단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싹을 안고 불을 끄는 것과 같으니, 먼저 궁성(宮省)에서 특별히 비용을 줄이고 빨리 호조와 병조에 명하여 근래 새로 창설된 경비(經費)를 조목별로 아뢰게 해서 덜어낼 만한 것은 일체 헤아려 줄이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세입(稅入)이 부족해서 경비의 사용을 이어가기 어려운데, 이것의 전결(田結)의 제도가 허술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양전(量田)17270) 을 시행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으니, 청컨대 각도의 감사와 수령으로 하여금 먼저 조금 충실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전의 정책을 시행케 하소서.”

하고, 또 각도의 조적(糶糶)이 고르지 못한 폐단을 말하고 청하기를,
 “각도 곡물(穀物)과 민호(民戶)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서로 빙준(憑準)하여 착해서 추이하면, 1년만에 분급(分給)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한 해가 지나 식모(殖耗)17271) 의 수량이 혹 너무 많으면, 진휼청(賑恤廳)에 옮겨 보내어 편리한 대로 구처(區處)하여 수재와 한재의 비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삼남(三南)·양서(兩西)에는 모두 월과 군기(月課軍器)17272) 인 총약(銃藥)과 연환(鉛丸)이 있는데, 근래에 해청(該廳)에서 공물(貢物)로 만들어 값을 주고 장만하여 갖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그 총철(銃鐵)을 정제(精製)하지 않아서 총을 쏠 때에 꺾어지고 파열되고, 화약(火藥)은 장치한 지 조금 오래 되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니, 그것을 전쟁에 사용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월과 공물(月課貢物)’을 빨리 혁파해서 그

稅入不足，經用難繼，此由於田結虛疎，而量田之不行久矣。請令各道監司、守令，先從稍實處，漸次行量田之政。

又言：
 各道糶糶不均之弊，請以各道穀物之多少，民戶之衆寡，互相憑準，參酌推移，要令一年，足以分給。又或經年殖耗，數或過多，則移送賑廳，從便區處，以備水旱之用。

又曰：
 三南、兩西，皆有月課銃藥、鉛丸，而近自該廳，作為貢物，給價措備。聞其銃鐵不精，臨放拆裂，火藥藏置稍久，多不起火，可知其不合於戰。其所謂月課貢物，亟宜革罷，以其價移送各軍門，使之措備，則機械精利，而事體歸正矣。

又論：
 騎曹軍布，日漸耗損，而胥吏有用奸之弊，請另擇色郎，限年久任，老黠胥吏，一併斥黜，而上納軍布，別定差員，領納本曹。

又請擇差掌隸院堂郎，委任責成，末論貢物年條，預相買賣及各衙門防納料理

	<p>값을 각 군문(軍門)에 옮겨 보내어 그 값으로 장만해서 갖추게 한다면, 기계도 정밀하고 예리해져서 사체(事體)가 올바른 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p> <p>하고, 또 논하기를,</p> <p>“병조의 군포(軍布)가 날로 점점 소모되어 줄어들는데, 서리(胥吏)들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특별히 색랑(色郎)을 가려서 연수를 한정하여 구임(久任)17273) 시켜 늙고 교활한 서리를 모두 척출(斥黜)하고, 상납(上納)하는 군포는 차원(差員)을 따로 정하여 본조(本曹)에 영납(領納)하게 하소서.”</p> <p>하였다. 또 장례원(掌隸院)의 당상(堂上)과 낭관(郎官)을 가려서 차임(差任)해서 위임(委任)하여 책성(責成)17274) 할 것을 청하고, 끝으로 공물 연조(貢物年條)에 대하여 논하기를,</p> <p>“미리 서로 사고 파는 것과 각 아문(衙門)에서 방납(防納)하여 요리(料理)하는 폐단을 일체 엄금하여 간교한 조짐을 막게 하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지금 이 조목별로 진달한 내용이 모두 폐단을 구제하는 계책인데, 논열(論列)한 바가 매우 마땅하니, 경(卿)이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르겠는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확(商確)해서 품처(稟處)하게 하겠다.”</p> <p>하였다.</p>	<p>之弊，請一切嚴禁，以塞奸竇。 答曰：“今茲條陳，無非救弊之策，而其所論列，亦甚得宜。 微卿，爲國之忱，何以至此？ 其令廟堂，商確稟處。”</p>
<p>숙보 56권, 41년 (1715 을미 / 청 강희 (康熙) 54년) 2월 9일 (병자) 1번째기사</p>	<p>금성(金城) 등 20고을에 대동미(大同米)를 매결(每結)에 1두(斗)씩 덜도록 했다. 이때 진연(進宴)의 추은(推恩)으로 인하여 열읍(列邑)의 포조(漕糶)를 탕감해 주었는데, 금성 등 2고을만 유독 경감해 줄 만한 구포(舊逋)가 없었으므로 도신(都臣) 윤성준(尹星駿)이 새 부세를 감해 주어 덕과 은혜를 고르게 해주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른 것이다.</p>	<p>丙子/除金城等二十邑，大同米每結一斗。 時，因進宴推恩，蕩滅列邑逋糶，而金城等二十邑，獨無舊逋可蠲，道臣尹星駿請減新賦，以均德惠，從之。</p>
<p>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월 1일 (임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下教)하기를,</p> <p>“설달이 다 가고 봄이 왔으니 봄갈이가 멀지 않다. 재해가 더욱 심한 곳에도 진구(賑救)를 베풀고 농사를 권해야 하겠으되, 진정(賑政)은 특별히 신칙(申飭)하지 않으면 안되니, 제주(濟州)의 진곡(賑穀)은 비국(備局)17279) 으로 하</p>	<p>朔壬辰/上下教曰：“臘盡春來，東作不遠。 災荒尤甚處，亦當設賑勸農，賑政不可不別樣申飭。 濟州賑穀，令備局，另加嚴飭，連續入送，俾蒙終始軫</p>

	<p>여금 각별히 더 엄히 신칙하여 잇따라 들여보내어 시종(始終) 진념(軫念)하는 은택을 입게 하라.” 하였다.</p> <p>사신(史臣)은 말한다. “임금이 설에는 번번이 이런 분부를 내리거니와, 이제 조용히 조리하는 중인데도 농사의 고되고 어려움을 염려하여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고 도민(島民)을 진구(賑救)하는 것이 이처럼 부지런하고 극진하니, 백성을 잘 보전하는 덕(德)이 성대하다.”</p>	<p>念之澤。”</p> <p>【史臣曰：“上於歲首，每降是教。 今於靜攝之中，又軫稼穡之艱難，勸課農桑，賑救島民，如是其勤摯，若保之德，猗歟盛哉!”】</p>
<p>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월 2일 (계사) 2번째기사</p>	<p>약방(藥房)17281) 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가 끝나고서, 부제조(副提調)인 도승지(都承旨) 이만성(李晩成)이 ‘모든 공사(公事)를 한꺼번에 죄다 재결할 필요는 없으니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조리하며 성색(聲色)을 크게 하지 마시라’고 경계를 아뢰니, 임금이 유의하겠다고 받아들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과거가 잦은데, 연해(沿海) 지방에도 재해를 입은 고을이 많으므로 봄에 곤궁한 거자(擧子)17282) 가 양식을 싸 가지고 멀리 가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정유년(17283) 의 식년시(式年試)17284) 는 그 해에 물려 설행(設行)하여야 하겠고 올해의 중시(重試)17285) ·별시(別試)17286) 도 아울러 가을 무렵으로 물려 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묘당(廟堂)에 의논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예조(禮曹)에서 묘당에 의논하여 시기(試期)를 모두 물렸다.</p>	<p>藥房入診。 診候畢，副提調都承旨李晩成，以凡百公事，不必一時盡決，治心攝疾，不大聲色，陳戒，上許以留意。 都提調李頤命言：“科擧頻數，沿海地方亦多災邑，窮春擧子，裹糧遠赴之弊，不可不念。 丁酉式年，宜退行於當年，而今年重試、別試，並宜退行於秋間。 請令該曹，就議廟堂稟處。” 上從之。 其後，禮曹乃議于廟堂，並退試期。</p>
<p>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월 5일 (병신) 1번째기사</p>	<p>비국(備局)에서, 제주(濟州)는 지난해의 재해가 특히 심하여 도내(島內)의 세 고을이 실로 소생할 형세가 못되므로 어사(御史) 1원(員)을 가려서 차출하여 들여보내서 먼 지방의 백성을 위유(慰諭)하고 진구(賑救)하는 일도 살피고 아울러 백성의 폐해도 묻게 하여 섬백성이 다 국가의 덕의(德意)를 알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교리(校理) 황귀하(黃龜河)를 제주 별견 어사(濟州別遣御史)로 차출하였다.</p>	<p>丙申/備局以濟州上年災荒特甚， 島內三邑，實無蘇活之勢，請御史一員，擇差入送，使之慰諭遐氓，且察賑事，兼採民瘼，使島民，咸知朝家德意，上許之。 遂以校理黃龜河差濟州別遣御史。</p>

<p>숙중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월 21 일(임자) 2번째기</p>	<p>경원(慶源)에서 개시(開市)한 청인(淸人)이 관소(館所)에 머무를 때에 청인 50여 명이 삼기(三旗)를 앞세우고 후춘(後春)에서 나와 경원 동문(東門)에 이르러 관소에 머무르는 통관(通官) 박씨(博氏)를 맞이하여 가서 술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연(金演)이 그 정상을 장문(狀聞)하며 부사(府使) 박동상(朴東相)이 약조에 따라 꾸짖어 보내지 못하였다 하여 추고(推考)하기를 청하고, 또 변경(邊境)에서 경계를 범하여 넘는 것을 엄히 경계하는 뜻으로 저 나라에 이자(移咨)17298) 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p>	<p>慶源開市，淸人留館時，淸人五十餘名，以三旗前導，自後春出來，至慶源東門，邀致留館通官博氏，行酒談話而歸。咸鏡監司金演狀聞其狀，以府使朴東相不能據約條責送，請推考，又請以邊上犯越嚴飭之意，移咨彼國，上從之。</p>
<p>숙중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월 27 일(무오) 1번째기사</p>	<p>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상차(上筭)하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를 지금 차출하여야 당연하겠는데, 본도(本道)는 방면(方面)의 중대하기가 양남(兩南)17317) 과 대등하므로 여느 때라도 본디 신중히 간택하여야 마땅하겠지만, 지금은 재해를 입은 고을에서 바야흐로 진구(賑救)하는 일을 베푸는 중이라 앞으로 거행할 일이 있으므로 더욱 잘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격례(格例)를 깨고 간장(諫長)17318) 으로 의망(擬望)에 대비 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p>	<p>戊(子) [午] /左議政金昌集上筭以爲：忠淸監司，今當差出，而本道方面之重，與兩南等。雖在常時，固宜慎簡，而目今災邑，方設賑事，前頭將有舉行之役，尤不可不遴選。請以諫長，破格備擬。 上從之。</p>
<p>숙중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월 29 일(경신) 4번째기사</p>	<p>임금(上)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를 소견(召見)하였다. 임금(上)이 전날 대신들을 인접(引接)하였을 때에 이유는 병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날 사대(賜對)하였다. 이유가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목마(牧馬)가 굶주린 백성에게 잡아먹힌 것이 많으니, 마의(馬醫)를 보내어 1천 관(貫)을 가지고 호남(湖南)에 가서 이익을 불러 준마(駿馬)를 사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강도(江都)17321) 주문도(奏文島)에 진(鎭)을 설치한 뒤에 목마를 매음도(煤音島)에 옮기는 것이 당연하였는데, 당시의 유수(留守) 김진규(金鎭圭)가 매음도 역시 방비를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여 드디어 중지했습니다. 이제 마</p>	<p>上召見判中樞府事李濡。上之前日引接諸大臣也，濡以病未參，故是日賜對。濡言：“濟州牧馬，多被飢民宰食。請遣馬醫，齎千貫往湖南，殖利買駿乘。”又言：“江都奏文島設鎭後，牧馬當移於煤音島，而其時留守金鎭圭以爲，煤音亦合設防，遂止之。今宜先移百餘匹，以待更議。”上皆從之。濡又曰：“臣於前冬，陳北漢事，而李光佐極言其不可，閔鎭厚亦言其係國家</p>

	<p>땅히 먼저 1백여 필(匹)을 옮기고서 다시 의논하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유가 또 말하기를, “신(臣)이 지난 겨울에 북한(北漢)의 일을 아뢰었는데, 이광좌(李光佐)가 그것이 옮지 않다고 극력하게 말하였고 민진후(閔鎭厚)도 그것이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민진후를 보고 물었더니, 그의 생각은 국력이 미치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이지 본디 전혀 막으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요관(料辦)한다는 항목은, 나라에 큰일이 있는데 축적한 것을 쓰지 않고 또 요관도 하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손을 쓰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요관이란 돈으로 관곡(官穀)을 사거나 혹은 곡식을 돈과 바꾸어 조금 남는 것을 취할 뿐입니다. 예전에 인조(仁祖) 때에야 비로소 남한 산성(南漢山城)을 쌓은 것은 이서(李曙)가 실로 주장한 것이었는데, 근거 없는 의논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여러 번 탄핵당하였으니, 인조의 성지(聖志)가 굳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일을 끝내어 병자년(1732)에 힘을 얻었겠습니까? 지금 의논하는 자는 다 남한과 강도가 만전(萬全)한 곳이라 하나, 만약 병자년처럼 사기(事機)가 위급하면 남한이나 강도로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도·남한은 다 육지에 잇닿은 곳이 아니니, 변보(邊報)가 갑자기 급박하면 어떻게 건널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서울의 술한 백성이 반드시 어육(魚肉)처럼 참살당할 것이고 부고(府庫)·창름(倉廩)이 다 적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연코 계책을 정하였다. 백성과 함께 지키는 것인데, 어찌 근거 없는 의논 때문에 고칠 수 있겠는가? 당초에 북한 산성을 쌓은 것은 소열제(昭烈帝) 17323)가 형주(荊州)의 백성을 차마 버릴 수 없었던 뜻과 같다.”</p> <p>하였다.</p>	<p>存亡。 臣見鎭厚而問之， 則其意其慮國力之不逮， 元非欲爲全塞之意也。 所謂料辦一款， 國有大役， 而不用蓄積， 又不料辦， 將何以措手乎？ 今之所稱料辦， 不過以錢換取官穀， 或以穀質錢， 取其些小贏餘而已。 昔在仁廟朝， 始築南漢， 李曙實主張， 而浮議多端， 屢遭彈劾。 苟非仁廟聖志不撓， 則何以完其役， 而得力於丙子乎？ 卽今議者， 咸以南漢、江都， 爲萬全地， 而若事機危急如丙子， 則南漢、江都， 其可利涉乎？” 上曰：“江都、南漢， 皆非連陸之地， 邊報猝急， 何以能渡？ 況都中百萬生靈， 必不免魚肉， 府庫倉廩， 盡將爲賊有， 故斷然定計矣。 與民共守， 何可以浮議撓改耶？ 當初築北漢者， 有如昭烈不忍棄荊州民人之意耳。”</p>
<p>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p>	<p>제주 별견 어사(濟州別譴御史) 황귀하(黃龜河)가 사패(辭陞)하니, 임금이 대제학(大提學) 송상기(宋相琦)에게 명하여 교문(敎文)을 대신 짓게 하여 하유(下</p>	<p>濟州別遣御史黃龜河陞辭， 上命大提學宋相琦， 代撰敎文以諭。 其文曰：</p>

(康熙) 55년) 2월 2일
(계해) 3번째기사

諭)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아! 너희 탐라(耽羅)는 아득히 해외(海外)에 있어 땅이 멀리 떨어져 있고 풍기(風氣)가 특이하다. 무릇 우리 백성의 생업이 어려워진 지 오래 되었거니와, 불행하게도 천재(天災)의 유행(流行)이 온 섬에 치우치게 혹독하다. 기사년17333) 의 흉작은 예전에 없던 바여서 굶주림과 염병으로 사람과 가축이 다 죽으니, 내가 곡식을 보내어 극진히 진구(賑救)하려 하였으나 구제하는 방도가 미진하여 죽음이 참혹하게도 거의 수천을 넘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몹시 마음이 몹시 상하는데, 뜻밖에도 지난 가을에 또 대흉(大凶)이어서 논밭에 수확이 없고 채소·과실은 익지 않았으므로 미처 해[歲]를 잊지 못하고 백성의 식량이 아주 떨어졌다. 살아 남은 백성이 지독한 흉년을 거둬 당하였으나 궁벽한 바다에 있는 외딴섬은 육지와 달라서 빌어먹을 곳도 없고 힘써 옮겨갈 방법도 없으므로 모두들 근심스레 떠돌고 허둥지둥하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어떻게 마음먹겠는가? 내가 이미 여러 번 수령(守令)에게 경계하여 반드시 구활(救活)하는 방도를 다하게 하고 묘당(廟堂)에 거둬 명하여 구제할 방책을 빨리 강구하게 하였는데, 천 리 밖은 이목(耳目)이 이미 멀거니와 구중(九重) 안에서는 근심이 매우 깊으므로 이에 근시(近侍)의 신하를 보내어 가서 진구하는 일을 살피고 덕의(德意)를 선포(宣布)하게 하노라.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에 분정(分定)한 곡식을 이제 비록 잇따라 날라가기는 하나, 인구를 셈하여 나누어 주다가 혹 모자랄까 염려되거든 다시 그 수량을 늘려 보리 수확 이전까지 대도록 하라. 또 생각하건대 봄날이 점점 화창하여 가서 봄 농사가 이미 다가왔으나, 먹을 것을 바라는 것이 바야흐로 급한데 씨뿌리는 일을 어찌 논하랴? 그러므로 씨나락을 주어 농사를 권하도록 명하니, 혜택을 입혀 안정시키기 바란다.
 아! 국가가 이 섬을 믿고 중히 여기는 것이 번복(藩服)17334) 과 다름이 없고, 먼 외방의 백성도 똑같이 나의 적자(赤子)이니, 내가 이들을 보는 것이

王若曰，咨爾耽羅，邈在海外，壤地荒僻，風氣殊異。凡我居民，生業之艱難，厥惟久矣，不幸天災流行，偏酷一島。癸巳凶歉，振古所無，飢饉、疾癘，人畜俱亡。予雖轉租移粟，極意調賑，而拯濟之方，猶有未盡，死亡之慘，殆過數千，至今思之，畫然傷痛。不意去秋，年又大無，田畝無收，菜果不成，未及嗣歲，民食頓絕，予遺殘氓，洵罹鞠凶。絕島窮溟，異於陸地，丐乞無所，懋遷無術，嗷嗷遑遑，坐以待死。言念及此，何以爲心？予既屢飭守吏，期盡救活之方，申命廟堂，亟講接濟之策，而千里之外，耳目既遠，九重之內，憂鬱采深。茲遣近侍之臣，往察賑事，宣布德意。嶺、湖派定之穀，今雖陸續運去，計口支分，慮或不贍，更增其數，俾繼麥前。且念春和漸布，東作已屆，而望哺方急，播種奚論？是用命給穀種，以勸其耕，庶幾煦濡而安集焉。嗚呼！國家之倚重茲島，無異藩服，而遐外編氓，均吾赤子，予之視之，豈間遠邇？爲民父母，致此顛連，寔予之咎，慙悼何言？歲貢雖減，而不足爲懷保之澤矣，船粟雖勤，而不

	<p>어찌 멀고 가까움에 따라 차이를 두겠는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이런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되게 한 것은 참으로 내 허물이니, 부끄럽고 슬픈 것을 어찌 말하겠는가? 세공(歲貢)을 줄이더라도 달래고 보호하는 은택이 될 만큼은 못하고 부지런히 곡식을 나르더라도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문무(文武)를 시취(試取)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미 구례(舊例)대로 하게 하였으니, 인재를 뽑으면 또한 막히고 답답한 것을 소통하게 될 것이다. 억울하여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펴게 할 것이며, 떨어내지 못하는 폐단을 내가 없앨 것이다. 너희 사민(士民)은 내가 빈말을 한다고 여기지 말고 내 지극한 뜻을 본받아, 시름하는 기색을 조금 펴고 흠어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서 전리(田里)에 안정하고 집을 보전하여 내가 슬퍼하고 어루만지는 뜻에 따르라. 아! 저축을 다 비우더라도 마음이 어찌 차마 서서 보겠는가? 제도(諸道)가 다 굶주리나 너희 지방을 더욱 염려한다.”</p> <p>하였다.</p>	<p>足以稱予之心矣。至於試取文武，既令遵舊例矣，甄拔人才，亦將疏滯鬱矣。冤而不暴者，予當伸之，弊之未祛者，予當蠲之。惟爾士民，勿以予爲空言，而體予至意，少紓愁冤之氣，無懷渙散之念，安其田里，保其家室，以副予惻怛撫循之意焉。於戲！積儲雖罄，心豈忍於立視？諸道皆飢，念尤軫於爾方。</p>
<p>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윤3월 3 일(계해) 1번째기사</p>	<p>장령(掌令) 경성회(慶聖會)가 상소(上疏)하여, 관동(關東)의 전정(田政)을 바로 잡고 황장 금표(黃腸禁標)17497) 안에 들어가 경작하는 폐단을 엄단하고 조곡(糶穀)17498) 을 남겨 저축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기를 청하고, 또 인재를 소통(疏通)하고 박만정(朴萬鼎)·강현(姜覲)·이이만(李頤晩) 등을 거두어 서용(敍用)하기를 청하고, 강세운(姜世胤)을 신구(伸救)하니, 임금이 우악(優渥)하게 비답(批答)하고 받아들였다.</p>	<p>癸亥/掌令慶聖會上疏，請釐正關東田政，嚴斷黃腸禁標內入耕之弊，留儲糶穀，以備不時之需，又請疏通人才，收敍朴萬鼎、姜覲、李頤晩等，伸救姜世胤，上優批開納。</p>
<p>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윤3월 9 일(기사) 1번째기사</p>	<p>굶어 죽은 제주(濟州)의 백성에게 사제(賜祭)하였다. 어사(御史) 황귀하(黃龜河)가 장계(狀啓)하기를, “섬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향축(香祝)을 보내고 단(壇)을 설치하여 제사하여 굶어 죽은 혼령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 내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아! 탁라(毛羅)17499) 온 고장의 백성이 이런 부진(不辰)한 때에 태어나서</p>	<p>己巳/賜祭濟州民人餓死者。御史黃龜河狀言，島民死者甚多，請送香祝，設壇祭之，以慰飢魂，上許之。親製祭文以下，其文曰： 嗚呼！毛羅一域之民，生此不辰，海罹飢饉，于今三載，加以毒癘所邁，十無一瘳。矧茲絕海，殊異陸地，聚穀既</p>

기근을 거듭 당한 지 이제 3년째에 이르고, 게다가 혹독한 염병을 만나 열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낫지 못하며, 더구나 해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육지와 달라서 곡식을 모으기가 어렵고 살길을 도모하기도 또한 어려우므로, 온 섬 안이 어쩔 줄 몰라 마치 병화(兵火)를 만난 듯하니, 내가 백성의 임금으로서 당연히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근심과 변민이 지극하여 내 병마저 모두 잊고 도신(道臣)에게 칙유(勅諭)하여 곡식을 배로 날라다가 먹이게 하였으나 왕래할 때에 순풍을 기다리느라 번번이 지체되게 되고, 이어서 의사(醫司)를 시켜 약물(藥物)을 넉넉히 보내게 하였으나 거의 한 움큼의 물과 같아서 두루 구완하지 못하니, 전후 4년 동안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자가 수천을 헤아리게 되고 마을이 텅 비어 경황(景況)이 근심스럽고 가슴아프다. 가엾은 우리 백성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건만, 하늘이 어찌하여 이처럼 혹독하게 재앙을 내리는가? 내 마음을 예이는 듯하여 차라리 내 몸이 당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아! 내 병이 낫지 않고 오래 끄는 중이기는 하나 백성을 위하는 일념(一念)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아서 공인(貢人)17500) 이 오면 문득 질고(疾苦)를 묻고 어사(御史)가 갈 때에는 또 연교(筵教)17501) 를 내려 마음쓰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일은 마음과 어그러져서 끝내는 우리 백성을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였다. 고요히 생각하면 참으로 덕이 없기 때문이니, 어찌 부끄러워 견디겠는가? 아! 한 지어미가 원한을 품어도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데, 더구나 일만에 가까운 백성이 서로 좇아서 구덩이를 메워 죽은 것이겠는가? 아! 외로운 녀은 의탁할 데가 없어 굶주리고 하늘은 흐려 비마저 축축하니, 귀신의 울음 소리가 추추(啾啾)17502) 하다. 내 생각이 이에 이르니 더욱 가엾고 측은하여 감진(監賑)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터를 가려 제단을 만들고 청작 서수(淸酌庶羞)17503) 로 보답하여 번거로운 원한을 위로하게 하였다. 아! 너희 못 귀신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흠향하고 영구히 재앙을 없애서 우리 남은 백성을 보전하라.”

艱，謀生亦難，一島遑遑，如逢兵燹，予爲民主，當作何懷？憂悶之極，渾忘疾疢。勅諭道臣，船粟以哺，而往來候風，每致遲滯，繼令醫司，優送藥物，而殆同勺水，莫能遍救，首尾四年之間，餓死病亡，計以累千，村閭空虛，景象愁痛。哀我赤子，無罪無辜，天胡降災，若是偏酷耶？予心若割，寧丁我躬而不可得也。嗚呼！予病雖在沈綿，爲民一念，罔或少弛。貢人之來，輒問疾苦，御史之往，又下筵教，用心非不勤矣，而事與心違，卒不能自保吾民。靜言思之，良由無德，曷勝慙覲？嗚呼！一婦抱冤，尙且召災。況近萬生靈，相率而填乎溝壑者乎？嗚呼！孤魂無托不其餒，而天陰雨濕，鬼聲啾啾。予念至此，益用愍惻。爰命監賑之臣，擇地爲壇，侑以淸酌庶羞，用慰煩冤。嗟爾衆神，携挈朋儔，來享飲食，永除災沴，保我餘民。

	하였다.	
<p>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윤3월 14일(갑술) 1번째기사</p>	<p>개성부(開城府)에 불이 나서 민가에 먼저 불탄 것이 3백여 호이고 죽고 다친 자가 많았는데, 이 일이 아뢰어지니, 임금이 2년에 한하여 부역을 감면하고 곡식 9백 석(石)을 날라다가 구휼하라고 명하였다.</p>	<p>甲戌/開城府失火，民家延燒者三百餘戶，死傷者多。事聞，上命限二年蠲役，運粟九百石以賙之。</p>
<p>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4월 10 일(기해) 1번째기사</p>	<p>종묘(宗廟)의 제물(祭物)이 《오례의(五禮儀)》에 어그러지는 것을 바로 잡으라고 명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 “《오례의》와 《종묘의궤(宗廟儀軌)》의 도식(圖式)을 상고하니, 각실(各室)의 존상(尊床)에는 서쪽에 명수(明水)·현주(玄酒)를 진설(陳設)하는데 지금은 단지 공준(空尊)만을 진설합니다. 대羹(大羹)17553) 은 와등(瓦甑)에 담아 찻줄에 올리는데, 《오례의》의 주(註)에는, ‘대羹은 태고(太古)의 국으로 간을 하지 않은 고깃국인데, 후세의 임금이 고례(古禮)를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진설한다.’고 하였는데도 지금은 냉수에 쇠기름 조금을 썰어 넣어서 쓰므로 예제(禮制)에 크게 어그러지니, 고례(古禮)대로 고기를 삶아서 국을 만들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돈박(豚拍)17554) 은 《오례의》의 도식에 ‘잘게 썰어 제(齍)17555) 를 만든다.’ 하였는데, 지금은 전육(全肉)을 두(豆)에 담습니다. 이미 익힌 돼지 고기를 두에 담아서 진설하는데 또 익힌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두에 담아 진설하여 한 물건을 두 가지로 쓰는 것은 반드시 중간에 잘못된 일일 것이니, 또한 마땅히 예제대로 썰어서 써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병이(餅餌)가 도식에 어그러진 것도 많이 있다 하니, 청컨대 이 뒤로는 한결같이 《오례의》의 도식대로 베껴서 등록(謄錄)을 만들어 봉상시(奉常寺)와 종묘서(宗廟署)에 나누어 주고, 전서관(典祀官)과 본서(本署)의 관원으로 하여금 그 도식과 등록을 살펴서 검찰(檢察)하고 진설을 감독하게 하는데, 사직(社稷)·각전(各殿)과 여러 산천(山川)의 크고 작은 향사(享祀)에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己亥/命釐正宗廟祭物之有違《五禮儀》者。禮曹言：“考諸《五禮儀》及《宗廟儀軌》圖式，則各室尊床西邊，設明水、玄酒，而今則只設空尊。大羹則盛于瓦甑，奠于第一行，而《五禮儀》註，大羹，太古之羹也。肉汁無鹽梅之和，後王存古禮，故設之云，而今則以冷水，切入牛脂小許而用之，大失禮制。宜依古禮，煮肉爲羹而奠之。豚拍，《禮儀》圖式，細切作齍，而今則以全肉盛豆。既有豕熟膚盛豆陳之，又以豕熟一塊盛豆陳設，一物兩用，必是中間致謬，亦當依禮切用。其餘餅餌之違式者，亦多有之云。請自今以後，一依《五禮儀》圖式，抄作謄錄，分授於奉常寺及宗廟署令、典祀官及本署官員，按其圖式及謄錄，檢察監設，而社稷、各殿、諸山川大小享祀，亦一體施行。”上從之。</p>

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5월 3일 (임술) 1번째기사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내일이 효종(孝宗)의 기일(忌日)이라 하여 이날부터 소식(素食)하였는데, 도제조(都提調) 서종태(徐宗泰)가 임금이 바야흐로 편찮은 중이라 하여 상膳(常膳)을 쓰기를 청하고, 제신(諸臣)도 이어서 매우 힘써 청하니, 임금이 애써 따랐다.	壬戌/藥房入診。 上以明日, 卽孝廟忌辰, 自是日行素。 都提調徐宗泰以上方在未寧中, 請用常膳, 諸臣繼之, 請甚勤, 上勉從之。
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5월 10일(기사) 1번째기사	제주 별견 어사(濟州別遣御史) 황귀하(黃龜河)가 장계(狀啓)하여 회전복(灰全鰓)을 해마다 봉진(封進)하는 어려움을 말하니, 임금이 우선 감면하라고 특별히 명하고 이어서 본도(本島)에서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모두 3분의 2를 줄이라고 명하였다.	己巳/濟州別遣御史黃龜河狀言, 灰全鰓連年封進之難, 上命特爲姑減, 仍命本島進上物種, 並減三分之二。
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6월 12일(경자) 1번째기사	충청도에 큰물이 저서 예산(禮山)·정산(定山)·공주(公州) 등의 고을에서 떠내려가고 문헌 인가가 3백여 호이었는데, 임금이 홀전(恤典)을 행하라고 명하였다.	庚子/忠清道大水, 禮山、定山、公州等邑, 人家漂沒三百餘戶, 上命行恤典。
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6월 23일(신해) 1번째기사	제주 별견 어사(濟州別遣御史) 황귀하(黃龜河)가 진구(賑救)에 쓰고 남은 곡식 1천 4백 40여 석(石)을 섬 안 세 고을에 나누어 주어 보리가 떨어진 뒤에 이어서 진구하기를 장청(狀請)하고, 보리의 새 환상(還上)도 줄여서 받아들여기를 청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윤허하고, 환상도 절반을 거두게 하였다.	辛亥/濟州別遣御史黃龜河狀請, 以賑餘穀一千四百四十餘石, 分俵島中三邑, 繼賑於麥盡之後, 牟麥新還上, 亦請減捧, 備局覆奏許之, 還上, 亦令折半徵捧。
숙종 57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6월 28일(병진) 1번째기사	경상도 각 고을에 큰물이 저서 떠내려가고 무너진 인가가 6백 40여 호이고 죽은 자가 60여 인이었다.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는데, 임금이 각별히 홀전(恤典)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丙辰/慶尙道各邑。 大水, 人家漂沒頽壓, 六百四十餘戶, 死者六十餘人, 道臣以聞, 上命另加恤典。 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卷之五十七終
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7월 5일 (임술) 2번째기사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아! 나 소자(小子)가 덕이 없어 왕위(王位)를 욕되게 한 지 거의 4기(紀)17633) 가 되어 가는데, 착하지 못한 정치가 많아서 하늘에 죄를 얻었다. 홍수와 가뭄과 바람과 서리의 재해가 없는 해가 없으므로, 농작물이 죄다 병	上下敎曰: 嗚呼! 予小子無德, 忝位殆近四紀, 而政多不善, 獲戾于天。 水旱、風霜, 無歲無之, 稼穡卒痒, 生民困瘁, 夙夜

	<p>들어 백성이 곤궁하니, 밤낮으로 근심하고 한탄하여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접때 한 가지가 지극히 많았던 끝에 이어서 한 가리가 지극히 적은 재앙이 있어, 바로 만물이 성장할 때를 당하여 한 달 동안이나 계속 가물어 온갖 곡식이 시들었다. 김맨 후에 한재(旱災)가 몹시 다급하므로, 희생(犧牲)17634 을 아끼지 않고 규벽(圭璧)17635 을 다하였으나, 작은 정성이 사무치지 못하여 비가 내릴 뜻은 더욱 아득하다. 예전에 풍요하던 곳이 이제는 다 민둥민둥하여, 계절은 7월인데 가을 곡식이 성숙할 희망이 끊어졌다. 내 적자(赤子)를 생각하면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 내가 어떠한가? 병중에도 마음이 졸여서 편안히 있을 겨를이 없으니, 차라리 스스로 몸을 불살라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고 싶으나 그럴 수도 없다. 아! 이번 가뭄은 오로지 착하지 못한 데에 말미암았으니, 대개 스스로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겠으나, 또한 어찌 못 신하를 칙려(勅礪)하여 서로 경계하는 도리가 없을 수 있겠는가? 아! 임금이 미워하는 것은 당론(黨論)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오늘날의 당론은 이미 심복(心腹)의 고질(痼疾)이 되었다. 이 병을 제거하지 못하면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절로 한심하여진다. 진후에 신칙(申飭)을 누누이 하였을 뿐만이 아닌데 번번이 헛소리가 되었으니, 이는 위에 있는 사람이 표준을 세우는 도리를 잘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내가 참으로 부끄럽고 겸연쩍다. 아! 너희 모든 신하가 나의 정사에 부지런한 근심을 몸받아 붕당(朋黨)의 버릇을 힘껏 고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왕실(王室)을 돕는다면, 어찌 국가의 복이 되지 않겠는가? 각각 이를 힘써야 할 것으로, 이에 유시(諭示)한다.”</p> <p>하였다. 정원(政院)에서 이는 여느 분부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여 중외(中外)에 반시(頒示)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憂歎，玉食靡安矣。廼者極備之餘，繼有極無之災，正當長養，彌月恒暘，百穀焦枯，鋤後之旱災，乃至燃眉。靡愛斯牲，圭璧既卒，而微誠未格，雨意愈邈。昔之穰穰，今皆濯濯，節屆流火，西成望斷。念我赤子，大命近止，爲民父母，予惟若何？病裹焦迫，不遑寧處，寧欲自焚，以答天譴，而不可得也。嗚呼！今茲亢旱，曷由不穀，蓋自修省之不暇，而亦豈無勅礪群工，交相儆戒之道乎？嗚呼！人君之所惡，莫甚於黨論，而今日黨論，已成心腹之痼疾。此疾不去，必亡人國而後已。思之至此，不覺心寒。前後申飭，不啻縷縷，而每歸空言，茲由於在上之人，不能建極之道而然也。予實愧惡焉。咨爾大小臣僚，體予宵旰之憂，痛革朋比之習，一乃心力，夾輔王室，則豈非國家之福耶？宜各勉旃，故茲諭示。</p> <p>政院以此非尋常絲綸之比，請頒示中外，上從之。</p>
숙종 58권, 42년	하교(下教)하기를,	下教曰：“亢旱彌酷，大無已判。當此

<p>(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7월 13 일(경오) 3번째기사</p>	<p>“가뭄이 몹시 혹독하여 대흉(大凶)이 이미 분명하다. 이런 때를 당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은 불에 간히고 물에 빠진 자를 구제하는 것만 같이 할 뿐이 아니니, 묘당(廟堂)을 시켜 마음을 다하여 강구하게 하라. 모든 낭비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줄이고 경외(京外)의 물선(物膳)과 삼명일(三名日)17660)의 방물(方物) 중에서 궁대(弓岱)·통개(筒箇) 외에는 모두 내년 가을까지 봉진(封進)을 멈추고, 주방(酒房)의 향온(香醞)은 반으로 줄여서 봉진 하라.” 하였다.</p>	<p>之時，一意救民，不啻若拯救焚溺。令廟堂，悉心講究，凡係浮費，一切省減，而京外物膳及三名日方物，弓岱、筒箇外，並限明年秋停封，酒房香醞，減半封進。”</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7월 13 일(경오) 4번째기사</p>	<p>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상차(上筮)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 혹심한 한재(旱災)를 돌아보건대, 수십 년 이래 없던 것으로 팔로(八路)가 다 그러하여 대흉(大凶)을 이미 알겠으니, 참으로 국가의 존망(存亡)이 관계되는 바입니다.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서둘러 강구하는 것을 하루도 늦출 수 없습니다. 오직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일에 있어서 안으로는 헛된 비용을 절약하여 조금이라도 제활(濟活)을 도모하는 데에 옮기고, 밖으로는 반드시 감사(監司)·수령(守令)을 가려 쓰고서야 구덩이를 메우게 될 목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양남(兩南)17661)의 감사는 여러 번 갈린 끝이므로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없이 곧 가기 어려울 것인데, 이 달이 지나면 철은 점점 늦어지고 가을 일은 이미 끝나서 새로 도임(到任)한 사람이 결코 손쓸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양남의 감사가 다 치적(治績)이 있고 겨우 진정(賑政)을 지냈으며 도내의 형세를 잘 아니, 내년 보리가 익은 계절까지 잉임(仍任)17662) 하여 그 공효(功效)를 책임지우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이번 대정(大政)17663)에 차출할 수령을 대정이 다시 있을 때를 기다려서 비로소 하비(下批)하면 더딜는지 빠를지 알 수 없지만 등대(等待)할 즈음에도 때를 넘기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전부터 폄체(貶遞)할 수령을 대정 전에 먼저 차출한 것은 대개 민사(民事)가 급하</p>	<p>判中樞府事李濡上筮。略曰：顧此旱災之酷，數十年來所未有，八路同然，已判大歎，誠國家存亡之所係也。到此地頭，汲汲講究，不容一日少緩。惟賑民一事，內而節省浮費，以爲一分推移濟活之圖，外而必擇監司、守令，然後庶可以救得填壑之命。即今兩南監司，累經遞易之餘，雖令促赴，亦難必其無故即行。若過此月，節序漸晚，秋事已急，新到之人，決無措手之路。臣意則兩南監司，俱有治績，纔過賑政，備諳道內形勢，限明年麥秋仍任，以責其效，恐合事宜。今番大政差出守令，若待大政之更舉，始爲下批，則遲速有不可知，等待之際，又不免過時。自前貶遞守令，大政前爲先差遣，蓋爲民事之急。當此非常</p>

	<p>기 때문이니, 이런 비상한 재앙을 당하여 어찌 특별히 변통할 도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남아 있는 빈자리도 대신할 사람을 차출해 하비하여 수일 안으로 재촉하여 보내는 것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之災，豈可無別爲變通之道？竝與餘存之窠而出代下批，數日內催促發送，亦不容已。</p> <p>上竝從之。</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8월 1일 (무자) 4번째기사</p>	<p>일본 대마도(對馬島)에서 강호(江戶)에서 쓸 것이라 하며 서계(書啓)를 보내어 약삼(藥蔘)을 무역하기를 요구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삼을 무역하는 것을 허가 하였으나, 매매하는 데에는 서계로 서로 통하는 규례가 없다 하여 그 글을 물리치니, 차왜(差倭)17755)가 답서를 얻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옛정은(丁銀)17756)을 복구하는 일로 왕복한 서계 가운데에 있는 「중(重)」자는 관백(關白)의 조부의 휘(諱)를 범하니 고쳐 주기를 청한다.’ 하였으므로, 동래 부사(東萊府使) 한중희(韓重熙)가 계문(啓聞)하였다, 묘당에서 말하기를, “전에는 왜인이 우리 나라에서 나는 물건을 요구할 때에 으레 사서(私書)로 훈도(訓導)·별차(別差) 등에게 통하였고 일찍이 서계를 써서 보낸 일이 없었는데, 이제 삼의 무역을 청하는 데 있어서 전에 없던 규례를 새로 만들어 내어 서계를 번거롭게 하기에 이르니,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훈도·별차에게 신칙(申飭)하여 다시 엄히 꾸짖어 빨리 들여보내게 하소서. 은화(銀貨)에 관한 서계 가운데에 있는 ‘중(重)’자를 고쳐 주기를 청한 것은 본디 긴요한 데에 관계되지 않으니, 허락하여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日本對馬島，稱江戶所需，致書契求貿藥蔘。廟堂許其貿蔘，而以買賣無書契相通之規，却其書，差倭乞得答書，又言：“舊丁銀復舊事，往復書契中，重字犯關白祖諱，乞改之。”東萊府使韓重熙以聞。廟堂以爲：“在前倭人，求覓我國所產之物，例以私書，通於訓、別輩，而曾無書契修送之事。今於貿蔘之請，創出無前之規，至煩書契，誠甚可駭。請申飭訓、別，使之更加嚴責，趁速入送。銀貨書契中重字之請改，元不關緊，宜許之。”上從之。</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8월 8일 (을미) 2번째기사</p>	<p>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상차(上筭)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지금 재황(災荒)이 매우 참혹하므로 분재(分災)17770)를 주도록 허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분재의 명목이 너무 많으면 원결(元結)을 줄게 할 뿐이고 백성은 실혜(實惠)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곧바로 해조(該曹)에서 각도의 재실(災實)을 참작하여 재결(災結)17771)을 정하여 주어 각도의 감사(監司)가 헤아려서 나누어 주고 각 고을에서 또 소득에 따라 뜻대로 나누어 주면, 일은 간편하고 혜택은 고를 것입니다. 대신(大臣)들이 모두 그 편리</p>	<p>左議政金昌集上筭。略曰：目今災荒孔慘，不可不許給分災，而但念災名太繁，則徒縮元結，民未蒙實惠。今年則直自該曹，參酌各道災實，定給災結，而各道監司，酌量分給，各邑又以所得，隨意分給，則事簡惠均，諸大臣皆言其便矣。取考乙亥騰錄，</p>

	<p>함을 말하는데, 기해년(1772)의 등록(騰錄)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경술년(1773)의 예에 따라 어공(御供)에 관계되는 것까지도 줄인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한결같이 이 전례를 쓸 필요가 없으니, 참작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삼남(三南)은 곡식을 옮겨 주어야 할 형세입니다마는, 강도미(江都米)는 전수(全數)를 죄다 낼 수 없고, 진청미(賑廳米)는 기내(畿內)와 도하(都下)를 진구(賑救)할 밑천인데 그 수가 매우 많으므로, 오로지 삼남을 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삼남에는 3만 석(石)을 나누어 주되, 경중(京中)에서 각 아문(衙門)의 돈[錢] 15만 냥을 모아 세 도에 나누어 보내어 각각 사들여서 진청미 3만 석의 수를 충당하게 하고, 본미(本米)는 우선 진청에 두었다가 그 가운데에서 2만 석은 봄이 되거든 팔아서 그 값을 거두어 각 아문에서 빌린 돈을 갚고 1만 석은 호조(戶曹)를 시켜 은전(銀錢)으로 바꾸어 경비에 쓰게 하면, 또한 감손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아문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도하(都下)의 춘궁(春窮)은 조금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 “판부사(判府事) 서종태(徐宗泰)·공조 판서(工曹判書) 조대채(趙泰采)는 특별히 하유(下諭)하여 부르셔야 하겠습니다. 과거(科擧)에 관한 사문(查問)이 늦추어져서 국사(國事)가 도처에서 막히는데, 판의금(判義禁) 민진후(閔鎭厚)는 이원곤(李元坤)과 상피(相避)하여야 할 처지이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유명웅(兪命雄)은 혐의스러운 단서가 전 판서와 다를 것이 없으니, 청컨대 전에 결정한 대로 차관(次官)을 시켜 대행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p>	<p>則一依庚戌年例，雖係御供，亦多減損。今不必一用此例，似當參酌施行。三南勢將移粟，言江都米則不可盡數傾出，賑廳米，畿內、都下賑賙之資，其數不貲，有難專救三南。三南則以三萬石分給，自京鳩聚各衙門錢十五萬兩，分送三道，使各買取，以當賑廳米三萬石之數，本米則姑留賑廳，其中二萬石，待春發賣，收取其直，以償各衙門所貸之錢，一萬石，令戶曹以銀錢換用於經費，則亦無所損。如此則各衙門不爲費錢，都下春窮，可以少紓矣。</p> <p>又言： 判府事徐宗泰、工曹判書趙泰采，宜別樣諭召。科查遷就，國事到處罣礙，判義禁閔鎭厚學李元坤，在所必避，合有變通之道。刑曹判書兪命雄嫌端，與前判書無異，依前定奪，請令次官代行。</p> <p>上竝命依施。</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9월 14</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올해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광직(李光迪)이 급제한 지 회갑(回甲)이 되는 해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전배(前輩)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는</p>	<p>藥房入診。提調閔鎭厚曰：“今年，乃知中樞府事李光迪及第回甲之年。曾聞前輩，亦有如此事，其時特命賜花</p>

<p>일(경오) 4번째기사</p>	<p>특별히 명하여 사화(賜花)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유전(流傳)하는 말이므로 잘 알 수는 없으나, 이제 특별히 늙은이를 우대하는 은전을 내린다면 합당할 듯 합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쌀·고기·베·비단을 내리게 하였다.</p>	<p>云。此是流傳之言，有不可詳，今若特加優老之典，則似爲合宜。”上命該曹，賜米肉、布帛。</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9월 16일(임신) 1번째기사</p>	<p>하교(下教)하기를, “급제한 지 회갑이 되는 것은 참으로 드물게 있는 것이므로 참으로 귀하게 여길 만하다. 옛일을 본떠 우대하는 특전을 보여야 하니, 지사(知事) 이광적(李光迪)에게 꽃을 만들어 내리라.” 하였다. 이광적이 드디어 꽃을 머리에 얹고 전문(箋文)을 받들고서 대궐에 나아가 배사(拜謝)하니, 임금이 선온(宣醞)하여 위로하라고 명하였는데, 한때 전하여 성대한 일이라 하였다.</p>	<p>壬申/下教曰：“及第回榜，實所罕有，誠可貴也。宜倣古事，用示優異。知事李光迪處，造花以賜。”光迪遂戴花，奉箋詣闕拜謝，上命宣醞以勞之。一時傳爲盛事。</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9월 24일(경진) 2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유집일(兪集一)이 장청(狀請)하기를, “내려 주신 내탕은(內帑銀) 2천 냥으로 호조미(戶曹米) 4천 석(石)을 사서 내년 봄이 되거든 굶주린 백성에게 거저 주고, 전에 사들인 관서(關西)의 세미(稅米)는 진청(賑廳)에 이록(移錄)하여 본도(本道)의 분적(分糶)17818) 으로 삼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하교(下教)하기를, “경기는 다른 도와 다르게 장청한 것도 매우 마땅하니, 특별히 청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p>	<p>京畿觀察使兪集一狀請，以所下內帑銀二千兩，許賣戶曹米四千石，待明春白給飢民，前買得關西稅米，移錄賑廳，以作本道分糶，上下教曰：“畿甸異於他道，狀請亦甚得宜，特爲依施。”</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10월 24일(경술) 1번째기사</p>	<p>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뢰던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와서 별제(瓦署別提) 김사석(金士碩)은 본서(本署)의 공물 주인(貢物主人)17843) 으로서 본서의 관원에 제배(除拜)되었으므로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라와하니, 청컨대 태거(汰去)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끝의 일만을 따랐다.</p>	<p>庚戌/憲府申前啓。又言：“瓦署別提金士碩，以本署貢物主人，除拜本署官員，聽聞所及，莫不爲駭。請汰去。”上只從末端事。</p>
<p>숙종 58권, 42년</p>	<p>선혜청(宣惠廳)에서 아뢰기를,</p>	<p>宣惠廳啓曰：“因大臣陳筭，京中用度，</p>

<p>(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1월 9 일(을축) 2번째기사</p>	<p>“대신(大臣)의 상차(上筭)에 따라 경중(京中)의 용도(用度)를 바야흐로 적당히 줄일 것을 의논하니, 외방(外方)의 수용(需用)도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남(三南)은 감영(監營)의 관수(官需)를 모두 8분의 1을 줄이고 그 밖의 갖가지 내려야 할 것도 모두 8분의 2를 줄이되, 청컨대 제도(諸道)에 분부하여 신결미(新結米)를 거둘 때에 비로소 거행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때 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이 거듭된 기근 때문에 상차하여 적당히 줄이기를 청하니, 임금이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 조태채(趙泰采)·이건명(李健命)·권상유(權尙游)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맡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먼저 외방에서 쓰는 것을 줄일 것을 아뢰었다.</p>	<p>方議裁省，則外方需用，亦不可不減。三南則營官需，並減八分之一，其他各樣應下者，並減八分之二，請分付諸道，新結米收捧爲始舉行。”上可之。時，左議政金昌集以荐饑，筭請裁減，上命宣惠廳堂上趙泰采、李健命、權尙游，主其事。至是，先減外方所用以奏。</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1월 17 일(계유) 4번째기사</p>	<p>제주 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가 장계(狀啓)하여 도중(島中)의 흉년 든 정상을 아뢰고 곡물(穀物)을 얻기를 청하였는데, 비국(備國)에서 복주(覆奏)하여, 호남(湖南)에 있는 강도미(江都米) 3천 석(石)과 어영청(御營廳)의 호남 연해 군보미(軍保米) 3천 석을 각 진포(鎭浦)의 병선(兵船)을 징발하여 기일을 정하여 들여보내고 진흥청(賑恤廳)을 시켜 옮겨 주어 도로 갖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濟州牧使洪重周，狀陳島中凶歉狀，乞得穀物，備局覆奏，請以湖南所在江都米三千石，及御營廳湖南沿海軍保米三千石，調發各鎭浦兵船，刻期入送，令賑恤廳，推移還報，上從之。</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1월 19 일(을해) 1번째기사</p>	<p>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뢰던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양덕 현감(陽德縣監) 이국형(李國馨)은 지난해에 감영(監營)에 청하여 진자(賑資)를 얻어서 상고(商賈)17861)에게 내어 주어 팔아서 사사로 썼으며, 술을 싣고 기녀(妓女)를 데리고 촌간에서 음식을 요구하므로, 온 경내(境內)의 백성이 난리를 만난 듯하니, 청컨대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p>	<p>乙亥/憲府申前啓。又言：“陽德縣監李國馨，昨年請得賑資於監營，出給商賈，興利私用，載酒携妓，討食村閭，一境之民，如逢亂離。請罷職不敍。”上不從。</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1월 19 일(을해) 3번째기사</p>	<p>비국(備局)에서, 한 관사(官司)를 따로 세워 어염(魚鹽)을 총괄하기를 대간(臺諫)이 계청(啓請)한 일 때문에 복주(覆奏)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살펴보면, 호전(戶典) 어염조(魚鹽條)에 ‘염분(鹽盆)은 적부(籍簿)를 만들어 본조(本曹)·본도(本道)에 두고, 세염(稅鹽)은 곡(穀)·포(布)로 바꾸어 군자(軍資)에 보태고, 어전(魚箭)에서 나는 어물(魚物)은</p>	<p>備局以臺啓，別立一司，摠括魚鹽事，覆奏曰：“謹按《經國大典》，戶典魚鹽條云：‘鹽盆成籍，藏於本曹、本道，稅鹽換穀布補軍資，魚箭所出魚物，薦新、常貢外，貿穀補軍資別倉。’然則</p>

천신(薦新)·상공(常貢)을 제외하고는 곡물로 바꾸어 군자 별창(軍資別倉)에 보낸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종(祖宗)의 성세(盛世) 때에 어찌 사문(私門)에서 그 이익을 마음대로 하게 하였겠습니까마는, 임진란(壬辰亂) 뒤에 여러 궁가(宮家)가 새로 돌아오자 의지할 바가 없으므로 그때 탁지(度支)17862)의 신하가 어염장(魚鹽場)을 주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이 절수(折受)17863)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경외(京外)의 아문(衙門)과 친구(親舊)의 궁가에서 다투어 받고 차지하여 망망한 대양(大洋)의 작은 배까지도 다 소속이 있으니 각처의 차인(差人)이 번갈아 와서 거둬 거두어 매나 범처럼 움켜 가느라 강해(江海)에 출몰합니다. 일생 동안 바다 물결과 소금 연기 사이에서 신고(辛苦)한 자는 손에 돈 한 푼이 없어 하늘에 부르짖고 해독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 가는 곳마다 다 그러한데, 아문·궁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겨우 10분이 1입니다. 효종(孝宗)께서 이 폐단을 통촉하여 백성을 보전하는 도리는 사(私)를 없애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의(繡衣)17864)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살펴서 아뢰게 하셨으니 장차 크게 변혁될 것이었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대왕(先大王) 때에 이르러 전후에 명하여 폐지한 곳이 한둘 뿐이 아니고 성명(聖明)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도 연한을 한정하여 혁파한 곳에 많았는데, 이제 대신(大臣)·대신(臺臣)이 한 번 말함에 따라 쾌히 처분을 내리셨으니, 신들은 본디 마땅히 봉행하되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는 차례가 있고 정사는 익히 강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반드시 먼저 연해의 어염장을 살펴서 두서를 정리한 뒤에 구관(句管)하여 총괄할 관사를 정하고 함께 의논하여 규제하여 마침내 영구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이 잘 만들어져 세식(稅式)을 너그럽게 정하고 징수하는 권한이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다면, 비록 남는 것 없이 각사(各司)·제궁(諸宮)에 나누어 주어 다시 군국(軍國)을 크게 돕지 못하는 것이 역대(歷代)나 조종 때와 같더라도, 오히려 포악하게 요구하고 거둬 거두는 폐해를

我祖宗盛際，何嘗使私門，擅其利也？壬辰亂後，諸宮家新歸，無所聊賴，其時度支之臣，乃請給魚鹽之場，此折受之所權輿也。今則京外衙門、新舊宮家，競受爭占，茫茫大洋，片片小舠，皆有所屬，各處差人，迭來疊徵，鷹拏虎攫，出沒江海，使一生辛苦於海濤鯨烟之間者，手無一錢，號天怨毒，在處皆然，而衙門、宮家所取，僅十一矣。孝廟洞燭此弊，以爲保民之道，莫如去私，乃分遣繡衣於諸道，使之察啓，將大變革，而未及設施。及至先大王，前後命罷之處，非止一二，自聖明臨御以來，亦多限年革罷，而今因大臣、臺臣之一言，快賜處分，臣等固當奉行，惟恐不及，而事有次第，政貴熟講，必先查沿海魚鹽之處，整理頭緒後，定句管摠括之司，共議規制，終成永久之法。此法若能善成，寬定稅式，徵收之柄，摠于一處，則雖分給各司、諸宮，而更無餘裕，不能大助軍國，如歷代及祖宗之時，猶可永絕暴求疊徵之害，以解海民倒懸之急。本司提學中，先差主管數員，卽令移文京外，盡行根究，待其文書畢到，確議節目後，設衙

	<p>영구히 끊어서 해민(海民)의 몫시 다급한 괴로움은 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사(本司)의 제거(提舉) 가운데에서 주관(主管)할 수원(數員)을 먼저 차출하고 곧 경외에 이문(移文)하여 근본까지 구명하게 하며 그 문서가 다 도착하거든 절목(節目)을 상의한 뒤에 아문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다시 품정(稟定)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대개 어염은 나라의 계책 중에서 큰 것인데, 우리 나라의 절수하는 법은 옛 제도와 크게 어긋나서 이익은 사문으로 돌아가고 원망은 공조(公朝)로 돌아가 마침내는 1백 년이 되어도 바로잡기 어려운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으므로 묘당(廟堂)에서는 이 기회에 한 번 정돈하려고 아뢰는 말이 근본에 소급하고 말을 극진히 하여 명백하고 자세하였다. 그러나 이 뒤에도 절수가 여전하여 끝내 실효(實效)가 없이 한갓 한바탕의 헛된 말로 돌아갔으므로 식자가 한탄하였다.</p>	<p>門等事，更爲稟定何如？”上從之。蓋魚鹽，國計之大者，而我國折受之法，大違舊制，利歸私門，怨歸公朝，遂成百年難救之痼弊，故廟堂欲因此機，一番整頓，啓奏之語，溯本極言，明白詳盡，而是後折受依舊，終無實效，徒歸於一場空言，識者恨之。</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1월 27 일(계미)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수어청(守禦廳)의 군보(軍保)17879) 는 3천 명으로 정액(定額)되었으나 잡탈(雜頒)이 늘 많고 재감(災減)17880) 도 잦아서 청중(廳中)의 수용(需用)은 번번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합니다마는, 근년에 양역(良役)17881) 의 폐단이 매우 민망스러우므로 신(臣)이 본청(本廳)에서 잇따라 전토(田土)를 사서 보액(保額)을 점차 줄이려하는데, 지금 면세(免稅)한 쌀은 겨우 군수보(軍需保) 4백 명이 바치는 쌀의 수량에 해당합니다. 이 뒤로는 군보 4백 명이 비더라도 채우지 말고 2천 6백 명으로 보액을 고쳐 정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癸未/藥房入診。提調閔鎭厚曰：“守禦廳軍保，以三千名定額矣，雜頒常多，災減亦頻，廳中需用，每患不足，而但近年良役之弊，極爲可悶，故臣自本廳，連續買田，欲以漸減保額，卽今免稅之米，僅當軍需保四百名納米之數。請自今後軍保四百名，有闕勿補，以二千六百名，改定保額。”上從之。</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2월 6 일(임진) 1번째기사</p>	<p>전라도 진도군(珍島郡)의 백성 김서(金瑞) 등 아홉 사람이 바다에서 표류하여 유구국(琉球國)에 닿았는데, 그 나라에서 청국(淸國)으로 보냈으므로 청국에서 이자(移咨)하고 내보냈다. 김서 등이 서울에 이르니, 임금이 비국(備局)에 명하여 바다에서 표류한 사정을 문초하게 하였는데, 김서 등이 전말을 대략 써서 대답하기를,</p>	<p>壬辰/全羅道珍島郡民金瑞等九人，漂海到琉球國，其國送至淸國，自淸國移咨出送。瑞等至京師，上命備局，招問漂海事情，瑞等略書顛末以對。其言曰：</p>

“갑오년(17886) 8월 7일에 진상(進上)할 생복(生鰯)17887) 을 캐러 배를 같이 타고 바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대양(大洋)에서 출몰한 지 17일만에 비로소 유구국 지경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40여 인이 와서 모여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좁쌀죽을 먹여 주린 창자를 적시게 하고는 곧 부축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가 밥을 갖추어 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별관(別館)을 지어서 살게 하면서 대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어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고 의복과 음식을 수시로 장만하여 주며 상하 남녀(上下男女)가 번갈아 보러 와서 주찬(酒饌)을 주었으니, 그 나라의 풍속이 순후(醇厚)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한 해를 넘겨서 그 지방말을 조금 알았는데, 그 왕성(王城)까지의 거리를 물었더니 10리쯤에 지나지 않았고 종소리가 때때로 은은히 들렸습니다. 그 나라의 넓이는 동서로 4일정(日程)이고 남북은 동서에 미치지 못하는데, 대저 산은 높고 들은 좁아서 밭이 많고 논이 적으며, 기장과 삼은 나지 않고 빵과 모시는 자못 넉넉하였습니다. 새는 까치가 없고 짐승은 범이 없으며, 또 닭의 울음이 우리 나라와 달라서 보름 전에는 초경(初更)부터 5경까지 경마다 울고 보름 뒤에는 우리 나라처럼 새벽에 읊니다. 민호(民戶)는 번성하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다 긴 옷을 입고 다들 우리나라 남자처럼 머리를 묶어 망건(網巾)처럼 건(巾)으로 머리를 싸며, 여인은 머리에 대모(玳瑁) 비녀를 꽂으므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 없는데, 떡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사탕을 섞습니다. 농사는 11월에서 정월 사이에 모를 내고 오뉴월에 수확하며, 소채는 사시사철 자랍니다. 엄동(嚴冬)에도 우리나라의 구시월만한 날씨가 지나지 않고, 또한 서리와 눈이 없습니다. 성지(城池)는 도성(都城) 밖에 따로 성을 쌓은 곳이 없고, 병기(兵器)는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 없으나 활은 나무를 깎아 대를 붙이고 본디 빨을 붙이는 일이 없으므로 멀리 쏘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졌던 배가 죄다 부수어져서 바다에서

甲午八月初七日，爲採進上生鰯，同船入海，猝遇狂風，出沒大洋，凡十七日，始得到泊於琉球國界。有四十餘人來集，見其飢乏垂死，饋以小米粥，以潤飢腸，仍爲扶入村中，具飯款待。新創別館以處之，編竹爲籬，使人守直，衣服、飲食，隨時備給，上下男女，迭相來見，遺以酒饌。國俗之醇，可知。處其國經年，稍解方言，問其王城遠近，不過十里許，鍾聲有時隱隱在耳。其國幅員，東西四日程，南北則不及東西。大抵山高野窄，田多畝少，稷麻不產，桑苧頗饒。禽無鵲獸無虎，且雞鳴異於我國，望前則自初更至五更，逐更而鳴，望後則晨唱如我國。民戶殷富，而男少女多，俱着長衣，皆束髮如我國。男人以巾裹頭，如網巾，女人以頭插玳瑁簪，故可以辨別。飲食與我國無異，而作餅必雜以沙糖。農事，十一月正月移秧，五六月收穫，蔬菜四時長青。雖嚴冬，不過如我國九十月，亦無霜雪。城池則都城外，無他築城處，兵器與我國無異，而弓子，削木付竹，元無付角之事，不宜遠射。瑞等欲還本國，而所持船隻盡破，

	<p>타기 어려운 형세였습니다. 그 나라는 으레 3년에 한 차례씩 중국에 조공(朝貢)하는데 마침 그 차례가 되었으므로 을미년(1788) 11월 24일에 그 나라의 사신(使臣)이 데리고 한 배에 같이 타서 병신년(1789) 윤3월 9일에 복건(福建)에 건너가 닿았습니다. 수로(水路)는 몇 천 리인지 모르겠고, 그 농업을 물었더니 한 해에 두 번 거둔다 하였으며, 집과 의복은 매우 사치하고, 인물이 황도(皇都)와 다를 것이 없으며, 좌우의 시사(市肆)에 진기한 보배가 산처럼 쌓였고, 밤에는 등촉(燈燭)이 낮처럼 밝습니다. 저희들을 접대하는 절차는 관가에서 양찬(糧饌)과 의자(衣資)를 주었습니다. 7월 15일에 복건을 출발하여 세 척의 마상(馬尙)에 나누어 타고 【마상이란 것은 청나라의 작은 배 이름이다.】 강가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 2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육지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올 10월 23일에 북경(北京)에 닿아서 옥하관(玉河館) 바깥 5리쯤에 있는 절에 머물렀는데, 날씨가 춥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게 하고 본국의 동지사(冬至使)를 기다려 함께 돌아가게 하기에 저희들이 ‘부모·처자는 우리가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여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을 것인데 어찌 차마 잠시라도 지체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하였더니, 통관(通官)들이 가엾이 여겨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추위를 막는 행장 도구를 각각 주었는데, 이것은 황제가 내린 것이라 하였습니다. 11월 10일에 황성(皇城)을 떠나 여차(驢車) 2승(乘)에 나누어 타고 12월 2일에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서 왔습니다.”</p> <p>하였다. 그래서 비국에서 연로(沿路)에 분부하여 말을 주고 음식을 먹여 본토(本土)로 돌려보내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勢難駕海。 該國例於三年， 一貢中國。 適當其次， 故乙未十一月二十四日， 該國使臣領率， 同載一船， 丙申閏三月初九日， 渡泊福建， 水路不知幾千里。 問其農業， 則一年再秋， 家舍、衣服極侈， 人物與皇都無異， 左右市肆， 珍寶山積， 夜則燈燭煌煌如晝。 瑞等接待之節， 自官給糧饌、衣資。 七月十五日， 自福建離發， 分乘三隻馬尙， 【馬尙者清國小船之名。】 沿江溯曳， 過二十日， 始得下陸。 今十月二十三日， 達北京， 留接於玉河館外五里許寺刹， 以日寒之故， 使不得作行， 勸令俟本國冬至使偕還。 瑞等對以父母、妻子， 念我全沒， 晝夜號哭， 豈忍暫時留滯？ 通官輩憐而許歸， 各給禦寒之具， 謂是皇帝所賜。 十一月初十日， 離皇城， 以驢車二乘， 分載， 十一月初二日渡江而來云。</p> <p>於是， 備局請分付沿路， 給馬饋食， 還送本土， 上從之。</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康熙) 55년) 12월 7일(계사) 1번째기사</p>	<p>반궁(泮宮)17890) 의 유생(儒生)에게 감(柑)을 내리고, 명제(命題)하여 선비를 시험하여 으뜸을 차지한 생원(生員) 유복명(柳復明)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p>	<p>癸巳/賜柑于泮宮儒生， 命題試士， 賜居首生員柳復明第。</p>
<p>숙종 58권, 42년</p>	<p>비국(備局)에서 재생 구관 당상(裁省勾管堂上)과 상의하여 재생 절목(裁省節)</p>	<p>備局， 與裁省勾管堂上相議， 定爲裁省</p>

<p>(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2월 7 일(계사) 3번째기사</p>	<p>目)을 정하여 청하기를, “공물(貢物)은 올해(17892)에 재성한 전례에서 그 가미(價米) 10분의 1을 줄이어 원공(元貢)은 있으나 진배(進排)가 없는 것은 모두 우선 줄이고, 선혜청(宣惠廳)·호조(戶曹)·병조(兵曹) 및 호조에 속한 아문(衙門)의 경비(經費)에 관계되는 용도(用度)도 올해의 전례를 본떠 줄이어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며, 각전(各殿)·각문(各門)의 수직(守直)과 액정(掖庭) 각처의 수직 군사도 올해의 전례에 의하여 별단에 쪽지를 붙여서 수를 줄이어 들이게 하소서. 이 밖의 각사(各司)의 잔단 용도는 각사로 하여금 적당히 줄이게 하고, 공물가(貢物價)는 이미 10분의 1을 줄였으니 관용 작미(官用作米) 등 잡비(雜費)도 이에 따라 줄여 받고, 신포(身布)를 용도로 하는 아문은 더욱이 절약하여 줄여서 재상(災傷)을 입은 고을에서 신포를 줄여 준 것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節目，請貢物，就乙亥裁省之例，減其價米十分之一，有元貢無進排者，竝姑減，宣惠廳、戶·兵曹及戶曹所屬衙門用度係經費者，亦依乙亥例裁減，別單書入，各殿、各門守直及掖庭各處守直軍士，亦依乙亥例，別單付籤，減數以入。此外各司用度零碎者，令各司，量宜裁減，貢物價，既減十分之一，則官用作米等雜費，亦當依此減奉，以身布爲用度衙門，則尤宜節損，以補災邑減布之代，上從之。</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2월 16 일(임인) 1번째기사</p>	<p>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뢰던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논핵(論劾)하기를, “양주 목사(楊州牧使) 이홍(李弘)은 성질이 본디 소홀한데다가 술도 좋아하여 조곡(糶穀)의 염산(斂散)을 모두 교활한 서리(胥吏)에게 맡기니, 파직(罷職)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p>	<p>壬寅/憲府申前啓。 又劾楊州牧使李弘，性本踈率，且嗜麴蘗，糶穀斂散，都付猾吏，請罷職，上不從。</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2월 17 일(계묘) 1번째기사</p>	<p>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뢰던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논핵(論劾)하기를, “여주 목사(驪州牧使) 남취명(南就明)은 도임한 뒤로 날마다 술에 취하여 서족(庶族)이 용사(用事)하고 사사로이 도살(屠殺)하며 곡물을 무역하니,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p>	<p>癸卯/憲府申前啓。 又劾驪州牧使南就明，到任以來，日事醉酗，庶族用事，私屠質穀，請罷職，上不從。</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2월 21 일(정미) 2번째기사</p>	<p>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뢰던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한성 판관(漢城判官) 허증(許增)은 군자 판관(軍資判官)을 맡았을 때에 번번이 창고를 열 때가 되면 미리 심복 겸인(僉人)17906) 을 시켜 창고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서 돈을 거두고 기일이 되면 쌀 한 섬을 더 내어 그 값을 갚았</p>	<p>憲府申前啓。 又言：“漢城判官許增，任軍資判官時，每當開倉之際，預使心腹僉人，收錢於倉底人，及至期日，輒加出米一石，以償其直，恐致現露，汲</p>

	<p>는데, 그 일이 드러날세라 염려하여 서둘러 주선하여 본직(本職)을 피하여 받아서 자취를 엄폐할 계책을 하였으니, 태거(汰去)하소서. 양지 현감(陽智縣監) 김순신(金舜臣)은 백성을 침학(侵虐)하여 자기를 살찌우고 세미(稅米)를 방납(防納)17907) 하였으니, 파직(罷職)하소서.”</p> <p>하였는데, 임금(李弘)이 이홍(李弘)·허증의 일만을 따랐다.</p>	<p>汲周旋，圖受本職，以爲掩迹之計。請汰去。陽智縣監金舜臣，虐民肥己，防納稅米。請罷職。”上只從李弘、許增事。</p>
<p>숙종 58권, 42년 (1716 병신 / 청 강희 (康熙) 55년) 12월 24 일(경술)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도당록(都堂錄)을 고친 뒤에 기록된 사람인 김재로(金在魯)·박사익(朴師益) 등이 지나치게 스스로 인협하여 행공(行公)하지 않으므로 분의(分義)·사체(事體)가 다 매우 미안하니, 죄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별주면 그들의 소원에 마침 맞는다 하여 각별히 신칙(申飭)하여 행공(行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頤命)이 상차(上筭)하여 아뢴 것 가운데에서 세태(稅太)를 반으로 줄이고 기병(騎兵)·보병(步兵)과 수군(水軍)의 갖가지 신포(身布)를 내년 가을로 물려서 받아들이고 전화(錢貨)를 더 주조(鑄造)하는 일을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호조(戶曹)의 경비(經費)가 구차하고 달리 손덜 곳이 없으면 지금 있는 콩[太]을 옮겨다가 쓰는데, 이제 만약 반을 줄이면 내년 경비에 쓸 것을 결코 대기 어려울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제로(諸路)의 세태는 1결(結)에서 4두(斗)를 거두는 것 안에서 1두를 줄이도록 하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기병·보병과 수군의 신포를 모두 내년 가을로 물려서 받아들이면 그 사이의 사세도 매우 염려스러울 것이니, 절반은 상납(上納)하고 받은 내년 가을로 물려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p> <p>하고,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제반 신포는 죄다 물려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기병·보병만 끼지 못하게 하면</p>	<p>庚戌/藥房入診。都提調金昌集言：“都堂改錄後被祿人金在魯、朴師益等，過自引嫌，不爲行公，分義、事體，俱極未安，宜有罪責。”上以施罪則適中其願，命另加申飭，使之行公。昌集又曰：“右議政李頤命筭陳中，稅太減半，騎·步兵、水軍各樣身布，退捧於明秋，及錢貨加鑄事，有稟處之命矣。戶曹經費苟簡，無他措手之處，輒以見在之太，推移取用。今若減半，則明年經用，決難支繼，不可不念。諸路稅太，一結四斗內，許減一斗則似爲得宜。”上可之。昌集又言：“騎步兵、水軍身布，竝爲待明秋退捧，則其間事勢，亦甚可慮。宜令折半上納，其半則退捧於明秋。”提調閔鎭厚曰：“諸般身布，盡許退捧，而騎、步兵獨不與焉，則豈無向隅之歎？況水軍在諸軍，最稱苦役，而待之甚賤，當時每懷冤抑之心，而今又不得入於退捧之中，則必</p>

	<p>어찌 소외된 한탄이 없겠습니까? 더구나 수군은 여러 군사 중에서 가장 고역(苦役)이라 하는데도 매우 천하게 대우하므로 여느 때에도 늘 억울한 마음을 품는데, 이제 또 물려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들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원망을 더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마찬가지로 절반을 물려서 받아들이라고 명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p> <p>“시사(市肆) 사이에서는 은(銀)과 돈이 거의 맞먹습니다. 돈은 폐단이 있다 하여 폐지하고 쓰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으나, 그대로 통용한다면 반드시 더 주조하여 용도(用度)를 도와야 합니다. 대신(大臣)이 상차한 뜻은 그런대로 재화(財貨)를 만들어 내는 도리가 되지만 재상(宰相)들의 의논은 불편하게 여기는 자가 많습니다. ‘이제 더 주조하더라도 백성에게 이익은 없고 도리어 허다한 간사한 폐단만 일으키며, 또 우리 나라는 본디 구리가 나지 않아서 사들이는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얻는 이익이 그 잃는 것을 채우지 못하니 결코 주조하여서는 안된다.’ 하나, 그대로 통용하려면 더 주조하여야 할 형세입니다.”</p> <p>하고, 민진후가 말하기를,</p> <p>“이미 전화(錢貨)를 통용하였으면 본디 잇따라서 더 주조하여야 하겠습니까마는, 돈의 폐단이 점점 늘어서 경성(京城) 사람은 불편하게 여기는 자가 많고 외방(外方)으로 말하면 도둑이 이 때문에 치성(熾盛)하니, 이른바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이익을 더하게 하는 것이 더욱이 곤궁한 백성의 건디기 어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뜻은 모두가 폐지하기를 바라니, 어찌 더 주조하여 실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더 주조하는 것이 유리하더라도 황정(荒政)에 도움이 미치지 못할 듯하고 더 주조할 때에 드는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도 적지 않으니, 차리리 그 요포를 곧바로 진자(賑資)에 쓰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增其怨詛。”上命一體折半退捧。昌集曰：“市肆之間，銀、錢幾乎相埒。若以錢爲有弊，以停罷不用則已，若仍行用，則必須加鑄，可資用度。大臣筭意，儘爲生財之道，而諸宰之議，多以爲不便。今雖加鑄，無益於民，而反生許多奸弊，且我國本不產銅，貿取之費不貲，所得之利，不能補其失，決不可鑄云。然若欲仍爲行用，則勢宜加鑄矣。”鎮厚曰：“既行錢貨，則固當連次加鑄，而但錢幣漸滋，京城之人，多以爲不便。至於外方，則盜賊因此熾盛，所謂富民長利，尤其是窮民所難堪者。民情莫不願罷，其何可加鑄，以致失望乎？設令加鑄有利，恐未及有裨於荒政，而加鑄時工匠料布，其費不貲，無寧以其料布，直用於賑資爲得矣。”上曰：“錢貨自古有弊。卽今民間，盜賊肆行，而富益富貧益貧，皆由於行錢之弊。至於加鑄，則殊涉重難，廟堂益加熟講，更爲稟定可也。”</p>
--	--	--

	<p>“전화는 예전부터 폐단이 있었거니와, 지금 민간에 도둑이 방자히 다니고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여지는 것은 다 돈을 통용하는 데에서 말미암은 폐단이다. 더 주조하는 것으로 말하면 매우 어려운 데에 관계되니, 묘당(廟堂)에서 더욱 익히 강구하여 다시 품정(稟定)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월 1일 (병진) 1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下教)하여 팔도(八道)의 감사(監司)와 양도(兩都) 17918) 의 유수(留守)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아아! 국가가 불행하여 해마다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의 곤궁이 오늘과 같은 때가 없었으니, 한밤에 근심하고 탄식하면 좋은 옷과 좋은 음식도 마음에 편하지 않다. 지난해 재해는 근년에 없던 것으로서 팔도가 똑같은데, 바닷가가 더욱 심하여 떠나 흩어지는 자가 잇달아서 열 집 가운데에서 아홉 집이 비었고, 그 밖의 장문(狀聞)도 놀랍고 비참한 것이 많다. 세전(歲前)에 이러하면 앞일을 알 만한데, 공사(公私)의 저축이 아주 텅비어서 손댈 데가 없으니, 말이 여기에 미치면 근심되는 마음이 타는 듯하나, 어떻게 계책을 세워야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쌍한 이 죄 없이 가난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백성이 다 나의 적자(赤子)이니, 어찌 자식의 병이 위급하여도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음을 핑계대어 팔짱을 끼고 죽기만 기다릴 것인가? 이것을 미루어 논하건대, 오늘날 재앙을 구제하는 방도는 다름 아니라 오직 지극한 정성에 달려 있을 뿐이다. 예전에 송(宋)나라의 지청주(知淸州) 부필(富弼)이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을 구제하였으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자가 많았다. 아아! 각도의 방백(方伯)·수령(守令)이 능히 백성의 일을 제집의 일처럼 여겨서 마음을 다하여 돌보고 지극한 정성으로 진구(賑救)한다면, 또한 어찌 구제할 방도가 없겠는가? 아아! 농사에 힘써야 또한 가을에 바랄 것이 있으므로, 여느 해에도 본디 착실히 일을 권과(勸課)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큰 기근을 당하여 어찌 조</p>	<p>朔丙辰/上下教，諭八道監司、兩都留守曰： 嗚呼！國家不幸，連歲荐飢，生民之困瘁，莫今日若也。中夜憂歎，錦玉靡安。昨年災荒，挽近所無，八路同然，沿海尤甚，離散相繼，十室九空，其他狀聞，亦多驚慘。歲前如此，來頭可知，而公私赤立，着手無處，興言及此，憂心如灼，罔知何以爲計。然而哀此無辜顛連之民，皆吾赤子也。安有子疾阽危，而爲父母者，諉之於無可奈何，而束手待死者耶？推此論之，今日救災無他，惟在至誠而已。昔宋知靑州富弼，以至誠救民，故得以全活者甚多。噫！諸道方伯、守令，苟能視民事如視家事，盡心經紀，至誠賑賑，則亦豈無拯救之道乎？噫！服田力穡，乃亦有秋，雖在常年，固當着實勸課。矧當大殺，其可少緩？如修堤堰給種糧</p>

	<p>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제언(堤堰)을 수리하고, 종량(種糧)을 주고, 계으름을 경계하는 등과 같은 일에 있어서 농정(農政) 중에 가장 긴요한 것이 이것이다. 아아! 앓는 중에도 일념이 모두 백성에게 있으니,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다. 아아! 너희 도(道)를 안찰(按察)하는 신하는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사에 근심하는 것을 몸받아 두 가지 정상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봉행하여, 여위는 백성이 없고 일구지 않는 밭이 없게 하라. 변장(邊將)·찰방(察訪)에게도 관하(管下)가 있으므로 진구하는 일을 마찬가지로 신칙(申飭)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잘 알게 함이 마땅하다.”</p> <p>하였다.</p>	<p>警懶惰等事，農政之最緊是也。噫！病裏一念，都在於民，言非騰口，亶出心腹。咨爾按道之臣，體予宵旰之憂，凡係兩政，惕念奉行，使民無捐瘠，田無不闢，而至於邊將、察訪，亦有管下，賑救之事，不可不一體申飭，竝宜知悉。</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월 5일 (경신) 1번째기사</p>	<p>행 관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일전에 특별히 내리신 비망기(備忘記)의 근심이 간절하신 분부는 보통과 매우 다르니, 모든 번선(藩宣)17927)·자목(字牧)17928)의 직임에 있어서 누구인들 감히 감격하여 스스로 죄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공사(公私)의 저축이 텅 빈데다가 곡식을 생산할 방법이 없으니, 비록 마음을 다하여 봉행하려 하더라도 쌀도 없이 밥을 짓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종전에도 흥년에 권분(勸分)17929) 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재물을 내어 사사로이 진구(賑救)한 무리가 수용(收用)된 일이 드물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실망하여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다시 믿을 리가 없으니, 양진(兩銓)17930)에 분부해서 전후의 승전(承傳)을 상고해 내어 우선 과궐(窠闕)에 따라 조용(調用)할 것이며, 또 다시 명백히 효유(曉諭)해서 관가(官家)에 곡식을 바치게 하여 혹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먹이고, 진정(賑政)이 끝나거든 그 공효(攻效)가 많고 적은 것을 보아 참작하여 차임(差任)하되, 각 군문(軍門)의 장교(將校)가 구근(久勤)하여 응당 옮길 자리 같은 데에는 우선</p>	<p>庚申/行判中樞府事李濡上箚。略曰：日者特下備忘，憂念懇惻之旨，出尋常萬萬，凡在藩宣、字牧之任者，疇敢不感激思效，而公私赤立，生穀無策，雖欲竭心奉行，其於無麪之不托，何哉？從前凶歲，雖有勸分之令，捐財私賑之類，得蒙收用者鮮矣。由是，人皆解體，必無更信朝令之理。分付兩銓，考出前後承傳，爲先隨窠調用，又復明白曉諭，使之納穀官家，或分饋飢民，待其畢賑後，觀其功效之多少，參酌差除，而如各軍門將校久勤應遷之窠，姑先以此輩填差以送，則實合於激勸之道。彼將校之坐食厚料，差退一都目，何至呼冤乎？且公私興作，竝爲停罷之</p>

먼저 이들을 채워서 차임해 보낸다면, 참으로 격려하는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저 후한 봉료(俸料)를 가만히 앉아서 먹는 장교는 한 도목(都目)쯤 좀 물리더라도 어찌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겠습니까? 또 공사(公私)의 토목일을 모두 정파(停罷)하려는 뜻은 중신(重臣)이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가(公家)의 낭비는 아껴야 하겠으나, 사가(私家)의 역사에 이르러서는 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범중엄(范仲淹)17931) 이 영절서(領浙西)이었을 때 큰 기근을 당하여 백성에게, ‘공임이 매우 싸므로 토목의 역사를 일으킬 만하다.’고 일렀는데, 대개 여유있는 자의 재물을 내어 가난한 자에게 베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주(杭州)가 편안하여 백성이 떠나지 않았으니, 이것은 도리어 토목일을 황정(荒政)의 한 단서로 삼은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탐라(耽羅)17932) 한 섬은 재황(災荒)이 혹심하니, 진청(賑廳)과 강도(江都)에 있는 쌀 가운데 3,4천 석을 덜어내 연로(沿路)의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차례로 호송하게 하소서. 어세(漁稅)의 매매를 일체 정파하면 막히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니, 그 값을 넉넉히 주어 그 세를 적게 받아들이되, 관할하는 경내(境內)에서 팔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도의 다른 고을에서 매매하게 하여 싼값으로 억지로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없애소서. 그리고 새로 차출된 수령(守令)은 반드시 5일 안에 보내되, 지체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책벌(責罰)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원로 대신(元老大臣)이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으로 조목조목 아뢴 것이 참으로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만 사사로이 진구한 사람을 착실히 조용하는 것은 가하겠지만, 각 군문의 무사로서 구근하여 응당 옮겨야 할 자리에 죄다 이들을 채워 차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전에는 흉년에 공사의 토목일을 으레 모두 정파하였고, 인용한 범중엄의 일도 똑같지 않은 바가

意, 重臣有所定奪。第公家浮費, 在所當惜, 至於私家之役, 不必禁也。昔范仲淹領浙西, 值大饑, 諭民以工價至賤, 可興土木之役, 蓋欲發有餘之財, 以惠貧者。以此杭州晏然, 民不流徙。此反以興造爲荒政之一端也。又言: 耽羅一島, 災荒荐酷, 賑廳、江都米中除出三四千石, 使沿路邊將, 次次護送。漁稅貿販, 一切停罷, 不無窒礙之端, 宜令優給其價, 輕捧其稅, 毋得轉販於所管境內, 必就他道他邑而買賣, 以除廉價勒徵之弊。守令之新差者, 必使五日內發送, 如有遷延者, 摘發責罰。上答曰: “元老大臣, 以救民之策, 有此條陳, 實出憂國之忱矣。第私賑之人, 着實調用則可矣, 而各軍門武士, 久勤應遷之窠, 盡以此類填差, 則不可也。在前凶歲, 公私興作, 例皆停罷, 而所引范仲淹事, 亦有不同者。私家之役, 何獨不禁? 他餘事, 其令廟堂稟處。”其後, 廟堂覆奏以爲: “濟州移轉事, 兩南穀必當鱗欠及期入去, 不必更運京穀。魚鹽收稅事, 商議減捧事

	<p>있다. 사가의 일만을 어찌 금하지 않겠는가? 나머지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p> <p>하였다. 그 뒤에 묘당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제주로 옮기는 일은 양남(兩南)의 곡식을 차례로 제때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다시 경곡(京穀)을 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염세(魚鹽稅)를 거두는 일은 줄여 받는 사목(事目)을 상의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어 계하(啓下)한 뒤에 항식(恒式)으로 정하고, 수령에 제배(除拜)되었으나 아직 서경(署經)17933) 하지 않은 자 외에는 재상(宰相)·삼사(三司)에 두루 떠나는 인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반드시 5일 안에 사조(辭朝)17934) 하되, 기한이 지나도 가지 않는 자는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살펴서 추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目，別單書入啓下後，定爲恒式，除拜守令未署經者外，雖不得遍辭於宰相、三司，必於五日內辭朝，過限不赴者，令政院察推爲宜。”上從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월 16 일(신미) 2번째기사</p>	<p>충청 감사(忠淸監司) 권성(權暻)이 상소하여 황정(荒政)을 논하였는데, 비국(備局)에 내렸다. 비국에서 복주(覆奏)하여 청하기를, “충주(忠州)에 있는 진청미(賑廳米) 4천 석과 강도(江都)의 쌀 5천 석 및 도내(道內)의 환상 모곡(還上耗穀)17941) 을 아울러 진자(賑資)에 쓰도록 허가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忠淸監司權暻，上疏論荒政，下備局。備局覆請，以忠州所有賑廳米四千石，江都米五千石及道內還上耗穀，並許取用於賑資，上從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월 19 일(갑술) 1번째기사</p>	<p>경상 감사(慶尙監司) 홍우녕(洪禹寧)이 상소하여 도내(道內)의 적곡(糶穀)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제주(濟州)로 곡식을 옮기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는데, 비국(備局)에 내렸다. 비국에서 복주(覆奏)하여, 적곡은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도록 허락하고, 제주로 옮기는 쌀은 2천 석을 줄이도록 하였다.</p>	<p>甲戌/慶尙監司洪禹寧上疏，請道內糶穀停捧，還寢濟州移粟之命，下備局。備局覆奏，糶穀許其停捧，濟州米許減二千石。</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2월 4일 (기축) 1번째기사</p>	<p>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뢰던 일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수안 군수(遂安郡守) 강옥(姜頊)은 지난해 봄에 백성이 곤궁하여 전세전(田稅錢)을 장만하기 어렵다 하여 본도(本道)의 상정미(詳定米)를 청해 얻고는 은점(銀店)에 나누어 주고 억지로 1만 1천여 냥을 받아들였는데, 바친 전세전</p>	<p>己丑/憲府申前啓。又言：“遂安郡守姜頊，上年春，稱以田稅錢，民窮難辦，請得本道詳定米，分授銀店，勒捧一萬一千餘兩。所納田稅錢，只是七千餘</p>

	<p>은 7천여 냥뿐이고, 그 나머지는 죄다 사복(私服)을 채웠으니, 파직(罷職)하고 서용하지 마소서.”</p> <p>하였으나, 임금의 따르지 않았다.</p>	<p>兩，其餘盡歸私橐，請罷職不敘。”上不從。</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2월 12 일(정유) 1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p> <p>“이번에 온천에 거동하는 것은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으나, 마침 흉년을 당하여 폐단을 끼치는 단서가 많을 것이니, 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는가? 특별히 진휼(軫恤)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지나는 곳과 근처 각 고을의 병신년(1797) 조(條)의 전세(田稅)·대동(大同) 1798) 을 품지(稟旨)하여 적당히 줄여서 내 뜻을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온양(溫陽) 한 고을은 병신년조의 전세를 완전히 감면하고, 호서(湖西)는 병신년 대동(大同)의 실결(實結) 7만 6천 10결(結)을 결마다 각각 2두(斗)씩 감면하면 감면할 것이 1만 1천 3백 40석(石)이 될 것인데,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로 하여금 그 출역(出役)이 어렵고 쉬운 데에 따라 구별하여 감면해 주게 하고, 경기의 고을은 결마다 대동미(大同米) 3두씩을 감면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丁酉/上下敎曰：“今茲溫泉行幸，出於萬不獲已，而適當荒年，貽弊多端，予心何安？不可無別樣軫恤之道。其令廟堂，所經及近處各邑，丙申條田稅、大同，稟旨量減，用示予意。”備局覆奏，請溫陽一邑丙申條田稅全減，湖西則丙申大同實結，七萬六千十結，每結各減二斗，所減當爲一萬一千三百四十石。令本道監司，隨其出役苦歇，區別減給，畿邑則每結減大同米三斗，上可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2월 12 일(정유)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대가(大駕)가 출궁(出宮)한 뒤에 날마다 공상(供上)할 물종(物種)을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어육(魚肉) 15종(種)과 소채(蔬菜) 10종을 봉진(封進)하라고 명하였다. 이 뒤에 또 어육은 줄여서 10종으로 하라고 명하고, 또 연로(沿路) 각 고을의 다담(茶啖)을 모두 그만두라고 명하였다.</p>	<p>禮曹以(七) [大] 駕出宮後，逐日供上物種啓稟，上命以魚肉十五種、蔬菜十種封進。是後，又命魚肉減作十種，又命沿路各邑茶啖，悉罷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2월 14 일(기해) 2번째기사</p>	<p>좌의정(左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p> <p>“도하(都下)의 굶주린 백성이 진청(賑廳)에서 먹여주기를 바라는데, 당상(堂上) 2원(員)이 다 배종(陪從)하여 온천에 가면 민정(民情)이 서운할 것입니다. 조태채(趙泰采)는 금오(金吾)의 수석(首席)을 겸하고 또 태복 제거(太僕提舉)를 띠었으므로 변통하기 어려울 듯하나, 송상기(宋相琦)의 본직(本職)은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갈음하여 가게 하더라도 이미 불가(不可)할 것이 없으며,</p>	<p>左議政金昌集上筭言： 都下飢民，仰哺賑廳，而堂上二員，皆將陪往溫泉，民情必落莫。趙泰采既兼金吾首席，又帶太僕提舉，似難變通，而宋相琦本職，以次官代往，既無不可，至於文衡之任，提學亦可替行，</p>

	<p>문형(文衡)17981)의 직임에 이르러서는 제학(提學)도 같음하여 행할 수 있으니, 남아서 진휼(賑恤)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통제사(統制使) 이수민(李壽民)은 논사(論思)하는 말이 이처럼 바른데도 염우(廉隅)가 무릅쓰고 부임하기 어려우니, 우선 체개(遞改)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전 통제사 윤각(尹愨)은 그 아버지의 병이 나아 가고 또 형제가 없는 외아들과 같은 예가 아니니, 그 대로 두어 흉년에 영송(迎送)하는 폐단을 없애소서.”</p> <p>하니, 임금의 모두 그대로 따랐다.</p>	<p>使之留賑，似爲得宜。統制使李壽民，論思之言如此，廉隅有難冒赴，姑宜遞改。前統制使尹愨，聞其親病向差，又非獨子無兄弟之比，乞仍存，以除凶歲迎送之弊。</p> <p>上竝從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2월 16 일(신축) 1번째기사</p>	<p>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건명(李健命)이 청대(請對)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온양(溫陽) 지경 안의 옛길은 50년 동안 황폐하여 무덤이 많고 나무가 자라 길을 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길 하나가 있는데, 옛길에 견주어 7리가 가깝다 하니, 편리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새길이 편리하고 가깝다면 새길로 가야 마땅하다.”</p> <p>하였다. 이건명이 또 말하기를, “병조(兵曹)의 역마(驛馬)가 매우 피곤할 것이니, 호조(戶曹)의 별고(別庫)에 있는 쌀과 콩 각각 1백 석(石)을 얻어 역졸(驛卒)에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승지(承旨) 이성조(李聖肇)가 말하기를, “대가가 온천에 거둥하신 뒤에 경외(京外)의 제배(除拜)된 관원이 숙사(肅謝)하는 일은 품정(稟定)하는 방도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배종(陪從)하는 관원이 이배(移拜)되면 대전(大殿)에만 숙배하고 대가(大駕)가 환궁한 뒤에 비로소 중궁전(中宮殿)과 세자궁(世子宮)에 숙배(肅拜)하고, 유도(留都)하는 관원과 경중(京中)에 있는 사람이 혹 벼슬을 옮기거나 제수(除授)되면 먼저 중궁전과 세자궁에 숙배하고 대가가 환궁한 뒤에 대전에 숙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辛丑/兵曹判書李健命請對，白上言：“溫陽境內，舊路五十年荒廢，多有墳墓，樹木長養，開路未易，而傍有一路，比舊減七里云，似爲便好矣。”上曰：“新路便近，則宜從新路。”健命又言：“兵曹驛馬甚疲，乞得戶曹別庫米太各百石，分給驛卒。”上許之。承旨李聖肇言：“駕幸溫泉後，京外除拜之官肅謝一節，宜有稟定之道。陪從官若移除，則只爲肅拜大殿，而大駕還宮後，始爲肅拜於中宮殿及世子宮，留都之官及在京之人，或遷輔或除授，先爲肅拜於中宮殿及世子宮，而大駕還宮後，肅拜於大殿，似或得宜。”上可之。</p>
<p>숙종 59권, 43년</p>	<p>진휼청(賑恤廳)에서 도하(都下)의 기민(飢民)에게 인구를 계산하여 양식을 줄</p>	<p>癸卯/賑恤廳以都下飢民，計口給糧者，</p>

<p>(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2월 18 일(계묘) 1번째기사</p>	<p>경우 외방에서 고향을 떠나 빌어먹다가 경청(京廳)에 진구(賑救)한다는 말을 듣고 날마다 모여 오는 자가 3천 명이나 되도록 많은데도 양식을 줄 것인지를 아뢰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p>	<p>外方流丐，得聞京廳賑濟，逐日來集者至三千之多，亦給口糧啓奏，上可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2월 22 일(정미) 2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을 때에 정리사(整理使)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온천에 거둥하실 때에 각참(各站)에서 바치는 찬물(饌物) 가운데 산 노루와 산꿩은 얻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 두 가지는 산 것이 아니라도 품질과 맛이 변하지 않았으면, 봉진(封進)하도록 허가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도록 하였으니, 꿩과 노루를 진배(進排)하지 말게 함이 옳다.” 하였다. 권상유가 또 말하기를, “연(輦)이 지날 때에 길이 향교(鄕校) 앞을 거치게 되니, 연에서 내리시는 절차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향교를 지날 때에는 가교(駕橋)에서 내려 인부가 낮추어 받들고 지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권상유가 또 말하기를, “듣건대, 병판(兵判) 이건명(李健命)이 아뢴 바에 따라 천안(天安)부터 온궁(溫宮)17993)까지는 새길을 닦을 것이라 합니다. 이른바 새길에는 좁고 진창이 많이 있으나, 옛길은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지사(知事) 강현(姜覲)의 집에는 근처에 산소를 썼는데, 어로(御路)가 용호(龍虎)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길렀는데, 이제 나무가 다 말라 죽었으므로, 개수(改修)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옛길을 닦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이어서 농사의 형편과 밀·보</p>	<p>藥房入診時，整理使權尙游言：“溫幸時各站所進饌物中，生獐、活雉，得之甚難。此兩種，雖非生活者，色味不變，則許令封進，恐或無妨。”上曰：“即今凡事，務從省約，雉、獐勿爲進排可也。”尙游又言：“輦過時路由鄕校前，則似當有下輦節次。”提調閔鎭厚以爲：“過鄕校時，則卸下駕橋，以人夫低奉以過似宜。”上可之。尙游又言：“聞因兵判李健命所達，自天安至溫宮，當治新路云，所謂新路，多有狹小泥濘處。舊路則無此弊，而知事姜覲家，用山於近處，御路爲龍虎，故多養樹木。今則樹木皆已枯死，修改不難矣。”上命修治舊路。上仍問農形兩麥如何，尙游曰：“即今所見，似有登熟之望矣。”都承旨李觀命，以虹貫之變，陳戒，又請下諭訪求民瘼，登時狀聞行朝，劃卽變通，上嘉納之，仍命下諭於京畿、忠清兩道監司。</p>

	<p>리가 어떠한지를 물었는데, 권상유가 말하기를, “지금 본 바로는 잘 익을 희망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관명(李觀命)이 백홍(白虹)이 해를 꿰뚫은 이번 때 문에 진계(陳戒)하고, 또 하유(下諭)하여 백성의 고통을 물어 곧 행조(行朝)에 장문(狀聞)하게 하여 곧 변통하기를 청하니, 임금(上)이 가납(嘉納)하고, 인하여 경기·충청 두 도의 감사(監司)에게 하유하라고 명하였다.</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2월 23 일(무신) 1번째기사</p>	<p>정원(政院)에서 홍변(虹變)으로 인하여 생각하는 바를 아뢰어 인외(寅 畏)17995) 하여 수정(修省)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온천에 목욕하려고 거동하시는 것이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으나, 마침 전에 없던 흉년을 당하였으니, 성념(聖念)에 염려를 끼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 다. 모든 호위(扈衛)하는 의장(儀仗)과 공억(供億)하는 비용을 모두 절약하였 으니, 이 밖에 조금이라도 폐단이 곤궁한 백성에게 미치고 일이 성대한 데에 관계되는 것은 더욱 일체 정파(停罷)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온천에 거동하여 과거(科擧)를 설행(設行)하는 것은 선조(先朝)에서 혹 행한 전례가 있기는 하 나, 그때에는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것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하늘이 견책을 보여 경고(警告)함이 정녕한데, 다만 한때 위로하 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걸치레인 일을 베풀다면, 마침내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을 해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이번에 경계를 아뢰는 것은 오로지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왔으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동한 뒤에 과거를 설행하여 위로하 고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모르겠다. 더구나 선조에서 이미 행한 전례가 있는 것이겠는가?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p>	<p>戊申/政院因虹變，啓陳所懷，請寅畏 修省，又曰：“浴溫之幸，出於萬不獲 已，而適當無前凶歲，未免貽慮於聖 念。凡諸扈衛之儀、供億之費，靡不 節省，則此外一毫弊及窮民，事涉豫大 者，尤當一切停廢。溫幸設科，雖有 先朝間行之例，而其時災荒、飢饉，必 不至若此之甚。況今皇天示譴，警告 丁寧，而只爲一時慰悅，設此彌文之 舉，終不免爲妨農害民之歸矣。伏乞 留念。”上答曰：“今茲陳戒，實出憂 愛，可不留心焉？行幸後設科慰悅，予 未見其不可。況有先朝已行之例者 乎？不可已也。”</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p>	<p>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頤命)이 홍변(虹變)으로 인하여 차자(箚子)를 올려 책면(策免)하기를 청하고, 덧붙여 생각하는 바를 아뢰었는데, 이르기를,</p>	<p>右議政李頤命因虹變，上箚乞策免，附 陳所懷，有曰：</p>

(康熙) 56년) 2월 23
일(무신) 2번째기사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아득히 먼 하늘은 사람의 일에 관계가 없다 하지 마시고, 또 지난해에도 이런 이변이 있었다 하여 눈앞에 분명한 조짐이 없었음에 버릇되지 마시고, 오직 아들이 부모의 노여움을 당한 듯한 마음가짐으로 하늘을 섬기는 정성을 더욱 돈독하게 하소서. 이번에 거동하여 온천에 목욕하시는 것은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으므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백성이 반드시 전하를 노여워하지 않을 것이나, 전하께서는 또한 매우 경계하고 두려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절손(節損)하였다 하더라도 더욱 간약(簡約)하게 하시고, 이미 감면하여 진휼하였다 하더라도 백성의 고통을 더욱 살피서 재앙을 구제하고 농사를 살피는 정사(政事)를 크게 행하여 민정(民情)이 기뻐하게 되면, 하늘의 노여움도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삼가보건대, 춘방(春坊)17996)의 신하가 어제 동궁(東宮)이 수가(隨駕)하기를 청한 바가 있었는데, 대개, ‘태자(太子)는 임금이 가면 지키고 지키는 자가 있으면 따라간다. 따라가는 것을 무군(撫軍)이라 하고 지키는 것을 감국(監國)이라 한다. 이것이 옛 제도이다.’ 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성명(聖明)께서 수가를 윤택하지 않은 것은 지키는 것을 중히 여기셨기 때문이겠으나, 때에 따르는 의리는 경중이 혹 바뀌기도 하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찬선(饌膳)을 보살피고 안부를 묻는 예(禮)가 도리어 중하니, 어찌 상규(常規)를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기근이 매우 심한데 재앙이 또 일어나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병중에 매우 깊다. 그 까닭을 밝히면 참으로 부덕(否德)으로 말미암는데, 보필하는 신하가 어찌 면직을 바라기까지 하는가? 차자(筭子) 가운데 진계(陣戒)한 말이 매우 절실하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래의 일은 예전에 임금이 가면 태자가 감국한다는 것이니, 이제 내가 세자의 수가를 윤택하지 않은 것은 지키는 것을 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폐단을 줄이는 뜻이 실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다만 강두(江頭)에서 영송(迎送)하는 예(禮)를 거행하는 것이

惟願殿下，毋曰上天之玄遠，謂不關於人事，又無以前年有此異，狃於目前之無明徵，惟以人子遭父母之怒者爲心，益篤事天之誠焉。今此動駕浴溫，出於萬不獲已，高天下民，必不爲殿下怒之，而殿下亦宜深加戒懼。雖已節損，益令簡約，雖已蠲恤，益察民隱，大行救災省耕之政，民情既悅，則天怒亦可弭矣。且伏見春坊之臣，昨有東宮隨駕之請。蓋太子，君行則守，有守則從。從曰撫軍，守曰監國，古之制也。聖明之不許隨駕，必歸重於守也，而隨時之義，輕重或變。在今則視膳問寢之禮，反爲重焉，今何可膠守常規也？

上答曰：“飢荒孔棘，災沴又作，憂(懼)[懼]之心，病裏采深。究厥所以，良由否德，輔弼之臣，何至祈免？筭中陳戒，言甚切至，可不留心？下款事，古者君行，太子監國，則今予不許世子隨駕者，不但歸重於守，省弊之意，實在其中。只行迎送之禮於江頭，似乎得宜也。”

	<p>마땅할 듯하다.” 하였다.</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2월 26 일(신해) 1번째기사</p>	<p>제주 목사(濟州牧使) 홍중주(洪重周)가 서장(書狀)으로 민사(民事)의 위급한 정상을 아뢰고, 곡물을 옮겨 곧 들여보내어 주기를 청하니, 임금(君)이 하교하기를, “본도(本島)에 획급(劃給)한 곡물을 아직도 들여보내지 않았으니, 불쌍한 우리 섬 백성을 다 죽이게 되어 내가 해마다 진휼(軫恤)하는 뜻이 허투(虛套)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저절로 상심된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각도에 엄히 신칙(申飭)하여 빨리 들여보내어 학철(涸轍)17998)의 위급함을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래서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여 전라·경상 두 도의 감사(監司)를 추고(推考)하고, 두 도의 도사(都事)를 독운관(督運官)으로 차출하여 아직 들여가지 않은 곡물을 빨리 독촉하여 보내게 하기를 청하였다.</p>	<p>辛亥濟州牧使洪重周，狀陳民事危急狀，乞移轉穀物，卽速入送，上下教曰：“本島劃給穀物，尙不入送，哀我島民，其將盡劉，而使予年年軫恤之意，歸於虛套。思之至此，不覺傷心。其令廟堂，嚴飭諸道，星火入送，以濟涸轍之急。”於是，備局覆奏，請推考全羅、慶尙兩道監司，以兩道都事，差督運官，未入去穀物，使之星火督送。</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3월 8일 (계해) 4번째기사</p>	<p>임금이 충청 감사(忠淸監司) 윤헌주(尹憲柱)와 차원(差員)으로 와서 기다리는 도내의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하였다. 특별히 명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 조태채(趙泰采)도 같이 들어오게 하였는데, 대개 조태채가 바야흐로 진휼청당상(賑恤廳堂上)의 직무를 띠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에게 매우 급한 병이 있어서 이 만부득이한 행차를 하였으나, 민사(民事)를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불안하다.” 하고, 또 진정(賑政)과 농사의 형편을 죄다 아뢰라고 명하였다. 윤헌주(尹憲柱)가 말하기를, “도내의 땅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이 10만 3천여 구(口)나 되는데, 진자(賑資)는 피곡(皮穀) 18만 석(石)과 쌀 1천여 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진구(賑救)를 이어 갈 수 없으므로, 뒤에 조목조목 벌여 적어서 장문(狀聞)하겠 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上召見忠淸監司尹憲柱及道內守令之以差員來待者。特命工曹判書趙泰采同入，蓋泰采方帶賑恤廳堂上故也。上諭之曰：“予有切急之病，作此萬不獲已之行，言念民事，心甚不安。”又命悉陳賑政及農形。憲柱言：“道內無土飢民，多至十萬三千餘口，賑資不過皮穀十八萬石、米千餘石。以此無以繼賑，從當條列狀聞矣。”上曰：“服田力穡，乃亦有秋，賑飢固不可緩，而給種亦緊急，不可不留意。且諸般民瘼，及予在行宮時，一一狀聞變通宜矣。”憲柱請道內大邑久遠軍布，量宜</p>

“농사꾼이 밭에서 힘써 일하며 농사 지어야 또한 풍성한 가을 수확이 있을 것이므로, 굶주림을 진구하는 것을 진실로 늦출 수 없으나, 씨앗을 주는 것도 긴급하니,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백성의 고통을 내가 행궁에 있을 때에 낱알이 장문하여 변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윤헌주가 도내 큰 고을의 오래 체납된 군포(軍布)를 적당히 탕감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임금이 여러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과 죽은 수를 두루 묻고, 또 농사를 권과(勸課)하고 진정(賑政)에 마음을 다하라고 입시(入侍)한 수령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고, 이어서 모든 폐막(弊瘼)을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구획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또 조태채(趙泰采)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묻기를,

“지난번 대관(臺官)의 상소로 인하여 하교한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알려고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하였는데, 조태채가 말하기를,

“경성(京城)의 굶주리는 백성이 5천여 명이나 되고, 이 뒤에 또한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외방(外方)도 알 만합니다. 일전에 진위(振威)의 작문(作門)밖에 모여 온 걸인이 매우 많으므로, 신(臣)이 본현(本縣)의 진미(賑米) 수십 두(斗)를 가져다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을사년(1808) 선조(先朝)에서 온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행궁 근처에 모여 온 굶주린 백성에게 죽미(粥米)를 나누어 준 일이 있으므로, 미처 성지(聖旨)를 내리기 전에 온양(溫陽) 인근이 네댓 고을에서 받아들인 대동미(大同米)를 이미 받아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교를 받고서 경청(京廳)의 쌀을 바야흐로 배로 청주 별창(淸州別倉)으로 나르는 쌀 1천여 석을 본도에서 가져다 쓰고자 하였으나, 묘당에서 이 염려 때문에 또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호서 열읍(列邑)의 기근은 어느 곳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에서 태안(泰安)·보령(保寧) 같은 고을이 더욱 참혹하니, 이것은 도신과 상의하여 참작해서 옮겨 주어야

蕩滅，上命廟堂稟處。上歷問諸邑飢民及死亡之數，又以勸課農事，盡心賑政，戒諭入侍守令等，仍命凡諸弊瘼，與道臣相議，區劃登聞。上又命趙泰采進前，問之曰：“頃因臺疏，有所下教矣，欲知措置如何，使之同入矣。”泰采曰：“京城飢民，至於五千餘名，此後亦不知幾許，而以此推之，外方可知。日昨振威作門外流丐來聚者甚多，故臣取本縣賑米數十斗分給矣。乙巳年，先朝幸溫時，飢民之來聚行宮近處者，有分給粥米之事，故聖旨未下之前，溫陽隣近四五邑所納大同米，已令捧留，及承下教，京廳米方爲船運，淸州別倉米千餘石，本道欲取用，而廟堂爲此之慮，亦不許矣。湖西列邑飢荒，何處不然，而其中如泰安、保寧等邑，尤爲慘凶。此則當與道臣相議，參酌移轉矣。”上可之。承旨李秉常言：“忠淸兵使吳重周，祇迎後仍爲留待。須有上教，乃敢退歸本營矣。”上命退去。秉常又言：“近日湖中向學之士，蔚然作興。日昨堂筭，請加搜訪，至有舉行之命。第必有指一分付，然後可以舉行。宜令道臣，就議大臣，定

	<p>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승지(承旨) 이병상(李秉常)이 말하기를, “충청 병사(忠淸兵使) 오중주(吳重周)가 지영(祗迎)한 뒤에 그대로 머물러 기다립니다. 반드시 상교(上敎)가 있어야 감히 본영(本營)으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이병상이 또 말하기를, “근일 호중(湖中)에 학문에 뜻을 두고 있는 선비가 많이 일어나므로, 일전에 옥당(玉堂)에서 차자(筭子)를 올려 찾기를 청하니 거행하라는 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정한 것을 가리키는 분부가 있는 연후에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해서 천목(薦目)18009) 을 정하여 곧 천거하여 아뢰게 함이 마땅합니다. 권상하(權尙夏)가 본도에 살고 있으므로, 학문에 뜻을 둔 선비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니, 앞으로 인접(引接)하실 때에 특별히 하문(下問)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임금이 또 이병상에게 묻기를, “지난번 태학생(太學生)들이 선정(先正)의 종사(從祀)를 청한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에서 이미 온천에 가서 치제(致祭)하려는 뜻을 보였는데, 어찌하여 거행하지 않는가?”</p> <p>하였는데, 이병상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곧 거행할 것입니다마는, 선조에서 거동하셨을 때에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청에 따라 고(故) 판서(判書) 김정(金淨)과 사절신(死節臣) 조헌(趙憲)·송상현(宋象賢)과 고 참찬(參贊) 송인수(宋麟壽)와 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무덤에 치제하였으니, 지금도 전례에 따라 사제(賜祭)하고 송준길의 무덤에도 치제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마찬가지로 사제하라고 명하였다.</p>	<p>其薦目，卽速薦聞。 權尙夏既居本道，向學之士，必能詳知。 前頭引接時，別爲詢問似好矣。” 上竝可之。 上又問秉常曰：“頃者太學生等，先正從祀疏批，已示臨溫致祭之意矣，何不舉行乎?” 秉常對曰：“此則當卽舉行，而先朝行幸時，因先正臣宋浚吉陳請，故判書金淨、死節臣趙憲·宋象賢、故參贊宋麟壽、故統制使李舜臣墓致祭。今亦依前賜祭，而宋浚吉墓，亦宜致祭矣。” 上命一體賜祭。</p>
숙종 59권, 43년	비국(備局)에서 말하기를,	備局以行宮牆外各處流丐近多往來，本

<p>(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3월 10 일(을축) 3번째기사</p>	<p>“행궁(行宮) 담 밖에 각처의 걸인이 요즈음 많이 왕래하므로, 본군(本郡)의 굶주린 백성으로 초록(招錄)된 자 외에도 따로 접제(接濟)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문(禁門)에 아주 가까운 곳은 또한 이들이 모이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진청(賑廳)의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곡식을 나르는 배가 정박하는 곳에 나가서 마른 식량을 나누어 주고, 돌아갈 만한 자에게는 식량을 주어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p>	<p>郡飢民被抄者外，不可無別樣接濟之道，而禁門咫尺，又不可使此類聚會，請令賑廳堂上，出去運穀船泊處，分給乾糧，可歸者使之給糧還送，上可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3월 12 일(정묘) 1번째기사</p>	<p>진홍청 당상(賑恤廳堂上)이 비국(備局)의 결정에 따라 신창현(新昌縣)의 배가 정박하는 곳에 나가 굶주린 백성 1천 5백여 명을 불러모아 장약(壯弱)을 구별하여 마른 양식을 주고, 그 가운데 가장 심한 자에게는 죽을 만들어 먹이고, 타일러서 각각 본읍(本邑)으로 돌아가게 하고는 돌아와 그 정상을 아뢰었다.</p>	<p>丁卯賑恤廳堂上，因備局定奪，出往新昌縣船泊處，招集飢民一千五百餘名，區別壯弱，給乾糧，其中尤甚者，設粥饋之，諭使各歸其本邑，歸奏其狀。</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3월 17 일(임신) 4번째기사</p>	<p>전라 감사(全羅監司) 김보택(金普澤)이 장계(狀啓)하여 도내의 곡물을 옮겨 보낼 수 없는 형편을 말하고 제주(濟州)에 2천 석을 옮기는 것을 정지하기를 청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이제 와서 도로 정지함으로써 해외(海外)에서 밤낮으로 희망하는 것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그 뒤에 김보택이 또 치계(馳啓)하여 힘껏 다투니, 드디어 전의 명을 거두었다. 이 뒤에 김보택이 또 장계하여 해마다 7,8월에 거느린 군관(軍官)을 가려서 제주에 보내어 세 고을의 수령(守令)과 농사 형편을 답험(踏驗)해서 풍흉(豐凶)을 상세히 알아본 다음 곡식을 얼마나 보낼 것인지 미리 작정하기를 청하였는데, 비국에서 복주하니, 윤택하였다.</p>	<p>全羅監司金普澤，狀陳道內穀物，無可推移之勢，請寢濟州移轉二千石，備局覆奏以爲：“不可到今還寢，以絕海外日夜之望。”其後普澤，又馳啓力爭，遂寢前命。是後，普澤又狀請每年七八月，擇送所帶軍官於濟州，與三邑守令，踏驗農形，詳知豐凶，移粟多寡，預爲酌定，備局覆奏，許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3월 21 일(병자) 2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우의정(右議政) 이이명(梨頤命)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날마다 비가 내리는데 군사들이 한데에서 지내며 그대로 맞고 있으므로, 병</p>	<p>藥房入診，右議政李頤命同入。診候畢，都提調金昌集言：“連日下雨，軍兵暴露，多有傷病者。犒軍則當待還都，而不可無慰悅之舉。與兵判李健</p>

을 앓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호군(犒軍)18021) 은 서울로 돌아간 뒤에 해야 하겠으나,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되겠으므로, 병판(兵判) 이 건명(李健命)과 상의하였더니, 한때 군사에게 먹이는 비용은 장만할 수 있다 하니, 각 해사(該司)에 분부하여 장만하여 나누어 공궤(供饋)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먼저 소고기와 술을 나누어 먹이라고 명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때때로 중사(中使)나 병판을 보내어 군사들을 위문하는 것도 한 가지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방도입니다.”

하니, 임금이 병판에게 명하여 먼저 가서 위문하라고 명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사신(使臣)의 선래 장계(先來狀啓)를 보건대, 저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서적(西賊)이 침범하여 어지럽히므로 군사를 징발하여 정토(征討)해야 하고, 해적(海賊)의 여孽(餘孽)이 모반하여 해도(海島)에 웅거해 있으므로 조선도 해방(海防)을 엄히 경계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일에 처음 소문이 있을 때에는 장차 설시(設施)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오래 되면 점점 해이해집니다. 경인년(18022) 에 구획(區劃)한 군보(軍保) 및 아전과 관노(官奴)로 대오(隊伍)를 편성했던 일 또한 모두 폐기하였다 하니, 이제 각 고을에 신칙(申飭)하여 폐기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또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삼(李森)이 장계(狀啓)하기를, ‘친기위(親騎衛)에는 시재(試才)하여 급제(及第)를 내린 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바라는 사람이 많으니 더 둘 수 있겠습니다.’ 하였으니, 또한 5백 명까지 더 두도록 허가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곧바로 그 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분

命相議，則一時餉士之需，可以措辦云。分付各該司，措備分饋似好矣。”上命先以牛、酒分饋。頤命言：“時遣中使或兵判，勞問軍中，亦一慰悅之道矣。”上命兵判，先往勞問。頤命曰：“伏見使臣先來狀啓，彼中亦不能無事。西賊侵擾，調兵征討，海賊餘孽，叛據海島，至有朝鮮，亦宜嚴飭海防之語云。我國於此等事，新有所聞，則若將有所設施，久則漸弛。庚寅所區畫軍保及吏、奴作隊之舉，亦皆廢棄云。今宜申飭各邑，使不至廢闕。且平安兵使李森狀言：‘親騎衛因有試才賜第者，故人多願入，可以加設’云。亦宜許其限五百加設矣。”提調閔鎭厚言：“不可直定其數。分付本道監司及兵使，使之酌量以聞宜矣。”上可之。頤命又言：“畿、湖獄囚，有廟堂與三司會議之教，而曾前溫宮疏決時，有監司同參之規。京畿監司在遠，雖不可同參，忠淸監司，使之同參會議，恐合事宜。”上許之。鎭厚又陳贊善權尙夏，今方前進，其在禮待之道，似有給馬之典，上命分付給馬。

	<p>부하여 헤아려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이명이 또 말하기를, “경기와 호서의 옥수(獄囚)에 대해서는 묘당(廟堂)과 삼사(三司)로 하여금 모여서 의논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일찍이 전에 온궁(溫宮)에서 소결(疏決)할 때에는 감사가 같이 참여한 규례가 있었으니, 경기 감사는 멀리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없더라도 충청 감사는 같이 참여하여 회의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적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찬선(贊善) 권상하(權尙夏)가 이제 바야흐로 오는 중이니, 예대(禮待)하는 도리로서는 말을 주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을 주도록 분부하라고 명하였다.</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3월 21 일(병자) 4번째기사</p>	<p>전라도 태인현(泰仁縣)의 인가 1백 6호(戶)가 한꺼번에 타 버리고 죽은 자가 3명이었는데,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각별히 홀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p>	<p>全羅道泰仁縣人家一百六戶，一時燒燼，死者三名。道臣以聞，上令另行恤典。</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3월 23 일(무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목욕을 정지하고 환도(還都)하겠다고 하교하고, 인하여 기일을 25일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대개 임금의 모든 환후가 거동한 뒤로 더하지는 않았으나, 목욕한 지 이미 오래 되었어도 안질(眼疾)에 끝내 변동이 없었고, 이날부터는 자못 괴롭고 어지러운 기가 있기 때문이었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25일은 길일(吉日)이 아니고, 또 태복시(太僕寺)와 각역(各驛)의 말을 이미 돌려보냈으므로, 시기에 미치지 어려운 형세이니, 기일을 물려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27일로 물려 정하라고 명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옥수(獄囚)의 소결(疏決)은 대가(大駕)가 온궁(溫宮)에 있을 때에 거행해야 하겠으나, 이제는 환도하는 날짜가 이미 임박하였으니, 회란(回鑾)한 뒤에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戊寅/上下教停浴還都。仍命期日，定於二十五日。蓋上候諸節，動駕後雖不至添加，而臨浴既久，眼患終無變動，自是日，頗有困惱虛眩之氣故也。藥房入診。診候畢，都提調金昌集，以二十五日，非吉日，且太僕及各驛馬，既已放還，勢難及期，請退定日期，上命退定於二十七日。昌集又言：“獄囚疏決，當行於大駕在溫宮時，而今則還都之期已迫，回鑾後行之何如？”上許之。仍命中官，出示禮曹回鑾時報</p>

	<p>하니, 임금의 윤택하였다. 이어서 중관(中官)에게 명하여 예조(禮曹)에서 회란 때의 보사제(報謝祭)에 관하여 품정(稟定)한 초기(草記)를 내어 보이게 하고 마땅한지를 물었는데,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목욕하여 효험을 얻었으면 진실로 사례가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이번에는 보사하는 의리가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보사제를 거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관명(李觀命)이 말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지치고 여위어서 본토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고역(雇役)의 값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란한 뒤에는 이들이 있을 곳을 잃고 구덩이를 메워 죽을 걱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진청(賑廳)이 당상(堂上)으로 하여금 접제(接濟)할 방안을 강구하여 정하게 해야 하겠습니까.”</p> <p>하였는데, 민진후가 말하기를, “듣건대 진청에서 날라 온 쌀이 아직 남은 것이 있다 하는데, 진청의 당상은 이제 대가를 따라 환도할 것이니, 본도의 감사와 상의하여 남은 쌀을 옮겨 보내어 구활(救活)하도록 명하시면 좋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청의 당상은 대가를 따라가야 할 것이니,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특별히 구제하게 하라.”</p> <p>하였다.</p>	<p>謝祭，稟定草記，詢其當否，提調閔鎭厚曰：“臨浴收效，則固宜有謝，今番則似當無報謝之義矣。” 上命勿行謝祭。 都承旨李觀命言：“飢民之羸悴，不能歸本土者多， 雇役取直以糊口。 回鑾之後，則此類難免失所墳壑之患。 宜使賑廳堂上，講定接濟之策。” 鎭厚曰：“聞賑廳運來之米， 尚有餘存者， 而賑廳堂上， 今將隨駕還都。 命與本道監司， 相議移送餘米， 使之救活則好矣。” 上曰：“賑廳堂上當隨駕， 令本道， 別樣救濟。”</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3월 23 일(무인) 2번째기사</p>	<p>신시(申時)에 임금이 한기(寒氣)가 갑자기 급하고 다리가 저린 것이 특히 심하고 가슴속이 막히고 어지러운 기도 있어서 신음하는 소리가 문밖까지 들렸다.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가 황급히 입진(入診)하고 자금단(資金丹) 두 알을 달여서 바치니, 한참 만에 먹은 것을 토해 내고 증후가 조금 더하였다. 신하들이 물러가고 나서 임금이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석연(金錫衍) 【임금의</p>	<p>申時，上候寒氣猝緊，脚痺特甚，膈間壅滯，且有眩氣呻吟之聲，達于戶外。 藥房三提調，蒼黃入診，煎進紫金丹兩丸，移時吐出食物，證候稍減。 諸臣既退， 上召見御營大將金錫衍，【上內</p>

	외삼촌이다.】을 불러 보고, 돌아갈 생각이 매우 바쁘다고 말하고 옥체(玉體)를 진찰하고 물러가게 하였다. 4경(四更) 이후에야 비로소 자못 편안해졌다.	舅也。】諭以歸思甚忙，使之診察玉體而退。 四更後，始得頗安。
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3월 26 일(신사) 3번째기사	진휼청(賑恤廳)에서 말하기를, “근래 걸인이 회란(回鑾)할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도로 다시 모여 와서 살려 주기를 바라는 자가 1천여 명이나 되므로, 다시 배로 날라 온 쌀을 가져다가 인구를 셈하여 나누어 주고, 남은 쌀 68석은 전에 정탈(定奪)한 대로 감영(監營)에 옮겨 주어 살 곳을 잃은 걸인에게 거저 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갖추어 아뢰입니다.” 하였다.	賑恤廳以近來流丐，聞回鑾定日，還復來聚，求活者至千餘名，更取船運米，計口分給，餘米六十八石。依前定奪，移給監營，白給失所流丐，具由啓奏。
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4월 1일 (을유) 3번째기사	충청 감사(忠淸監司) 윤헌주(尹憲柱)가 도내의 폐막(弊瘼)을 조목조목 아뢰고, 청하기를, “외방(外方)의 간사한 사람이 오래 추심(推尋)하지 않는 전민(田民)18030) 을 궁가(宮家)에 투매(投賣)하고 궁가에서 억지로 측량하게 한 것은 먼저 본관(本官)에게 물어 그 허실(虛實)을 알아서 아직 결송(決訟)하지 않았거나 오래 되어 기한이 지난 것은 모두 시행하지 말게 하고, 포민(浦民)이 배를 가지고 여러 상사(上司) 또는 사옹원(司饔院)에 입속(入屬)하였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부패(腐敗)한 것은 날날이 조사해 내어 곧 탈안(頗案)을 허락하게 하고, 기병(騎兵)·보병(步兵)이 정월·2월에 당번(當番)인데 아직 바치지 않은 포(布)는 다른 군포(軍布)의 예(例)에 따라 물려서 받아들이고, 공주(公州)의 을미년 18031) 조 대동미(大同米)를 포(浦)가에 노적(露積)하였다가 물에 잠긴 것은 탕감하소서.”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윤허하였다. 대개 임금이 온양 행궁(溫陽行宮)에서 윤헌주를 인견(引見)하였을 때에 물러가서 도내의 폐막을 갖추어 아뢰라고 명하였는데, 윤헌주가 아뢰는 것은 간략한 두어 가지에 지나지 않아서 대단한 것이 아주 없었다.	忠淸監司尹憲柱，條陳道內弊瘼，請外方奸細人久遠未推田民，投賣宮家，(勤) [勒] 令打量者，先問本官，知其虛實，若其未決訟，或係久遠過限者，並令勿施，浦民之有船隻，入屬於諸上司及司饔院，而年久腐敗者，一一查出，卽許頗案，騎、步兵正、二月當番未納之布，依他軍布例退捧，公州乙未條大同米，露積浦邊，水沈者蕩滅，備局覆奏，許之。蓋上於溫宮引見憲柱時，命退具道內弊瘼以聞，而憲柱所陳，不過草草數條，殊無大段者。
숙종 59권, 43년	충청도 홍산(鴻山) 등 스물 여섯 고을에서 염병(染病)으로 앓는 자가 3천 4백	戊申/忠淸道鴻山等二十六邑，染病方

<p>(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4월 24 일(무신) 1번째기사</p>	<p>여 명이오 죽은 자가 1천 4백 22명인데, 도신(道臣)이 계문(啓問)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도신에게 명하여 각 고을에 더욱 신칙(申飭)해서 각별히 구료(救療)하되 앓는 자는 피막(避幕)에 나가 있게 하여 전염되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 명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치성한 고을에는 의사(醫司)에서 약을 넉넉히 보내게 하였다.</p>	<p>痛三千四百餘名、死亡一千四百二十二名、道臣以聞。上特命道臣，另飭各邑，各別救療，方痛者出幕，俾不傳染，又命其中尤甚熾盛邑，自醫司優送藥物。</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5월 5일 (무오) 4번째기사</p>	<p>진휼청(賑恤廳)에서, 전에 초록(抄錄)한 굶주리는 백성 이외에 풍문에 따라 모여 온 경기 백성을 합하여 2만 5천 2백여 명에게 흠어 준 건량(乾糧)이 8백 67석인데, 인하여 양맥(兩麥)이 거의 익게 되었으므로, 사람마다 열흘 양식을 주어 해쳐 보내겠다고 아뢰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賑恤廳以前抄飢民外，近畿民人，聞風來集者，合爲二萬五千二百餘名，散給乾糧八百六十七石。仍以兩麥幾至登熟，人給十日糧，罷遣，啓奏，上可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5월 12 일(을축) 3번째기사</p>	<p>진휼청(賑恤廳)에서 말하기를, “서울에 여역(癘疫)이 치성하게 만연하여 사교(四郊) 근처의 피막(避幕)에 나가 있는 자가 1천 명에 가까운데, 그 가운데 가난하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미음을 잇대어 먹지 못하는 자가 혹 나가더라도 마침내 죽게 되는 걱정을 면하지 못합니다. 지난 무자년(18066)·기축년(18067)에 본청(本廳)에서 양식을 주어 구제한 일이 있으니, 먼저 당부(當部)로 하여금 피막에 나가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흑심하게 굶주리는 자를 성책(成冊)해 가지고 와서 바치게 한 뒤에 전례에 따라 참작하여 나누어 줌으로써 국가에서 돌보는 뜻을 보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賑恤廳言：“都下癘疫熾蔓，四郊近處出幕者近千。其中貧殘無依，不繼粥飲者，則雖或向差，終未免死亡之患。曾在戊、己年間，自本廳，有給糧救濟之事。爲先使當部，出幕人中尤甚飢餒者，成冊來呈後，請依前例，參酌分給，以示朝家軫恤之意。”上可之。</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5월 16 일(기사) 2번째기사</p>	<p>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일전에 매복(枚卜)하여 이미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얻었으니, 실로 조야(朝野)의 바람에 부응한 것입니다. 지난번 온양의 행궁(行宮)에서 특별히 명하여 인접(引接)하셨을 때에 은혜(恩禮)가 특이하였으나, 마침 아들의 병 때문에 앞질러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극한 정성으로 불러 함께 현시의 어려움을 구제</p>	<p>引見大臣、備局諸宰。領議政金昌集言：“日昨枚卜，既得賢德，實副朝野之望。頃在溫宮，特命引接，恩禮曠絕，而適因子病徑歸。今若至誠招致，共濟時艱，則國事幸矣。”上曰：“在溫時，因其子病遽歸，未遂必致之意，</p>

	<p>한다면, 나라의 일이 다행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말이 말하기를,</p> <p>“온양에 있을 때에 그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 문득 돌아갔으므로 반드시 오게 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매복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니, 반드시 오게 하고야 말려 한다.”</p> <p>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p> <p>“올 가을에는 과거(科擧)가 겹쳤으므로 가을 농사가 혹 잘 되더라도 과장(科場)을 설치하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중시(重試)18073)의 대거(對擧)인 별시(別試)18074)를 정시(庭試)로 고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의 말이 정시로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p> <p>“서북(西北)의 별과(別科)를 이미 올 가을로 물려 정하였고, 호서(湖西)의 과거에 시관(試官)을 보내어 시취(試取)하는 일도 이미 정탈(定奪)하셨으므로, 세곳의 과거가 병행될 형세입니다. 서북의 시관은 반드시 7월까지 내려보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의 말이 옳게 여겼다.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p> <p>“근일에 장령(掌令) 조성복(趙聖復)이 상소하여 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에 초시(初試)를 설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윤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의논은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고, 근래에 과장의 혼란이 갈수록 심해져서 임진년(18075) 과거 때에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대개 수행하는 사수(寫手)를 많이 데리고 들어가서 소치이니, 초시를 설행하는 것이 편호(便好)할 듯합니다. 무과(武科)는 정시·알성시에 모두 초시가 있는데, 문과(文科)·무과가 달라서는 마땅하지 못합니다. 이제 3소(所)에서 각각 1천 인을 뽑는다면, 글 한 편(篇)을 이룬자 이상을 죄다 뽑을 수 있고, 전정(殿庭)이 어지러운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말이 말하기를,</p>	<p>而今茲枚卜，意非偶然，擬欲必致乃已矣。” 昌集言：“今秋科擧稠疊，秋事設或登熟，設場之弊不貲。重試對擧別試，改以庭試，似爲得宜。” 上命以庭試設行。昌集言：“西北別科，旣退定於今秋，湖西科擧，遣試官試取事，亦已定奪。三處之科，勢將併行，而西北試官，須趁七月下送矣。” 上可之。左議政李頤命曰：“頃日掌令趙聖復，陳疏請設庭、謁聖初試，自上不爲允許，而第此議，其來已久。近來科場雜亂，愈往愈甚，至於壬辰而極矣。此蓋由於隨從寫手之多數率入之致，初試設行，似爲便好矣。武科則庭、謁聖，皆有初試，文、武不宜異同。今若分三所，各取一千人，則成篇以上，可以盡取，而殿庭可無紛鬧之弊矣。” 上曰：“謁聖則以漢史環橋門，觀者億萬數計之語見之，可知自古觀光之盛矣。” 左參贊閔鎮厚曰：“謁聖時，以擧子數多之故，設科於春塘臺者頻矣。庭試亦依此例，就春塘設行，恐或得宜。” 昌集亦以爲：“隨從寫手禁斷之道，莫如設行初試。” 上曰：“謁聖異於庭試，不可創行初試，而庭試則變通</p>
--	---	---

	<p>“알성시는 한사(漢史)에, ‘교문(橋門)을 둘러싸고 관광하는 자가 억만(億萬)을 셀만큼 많았다.’한 말을 보면, 예전부터 관광하는 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좌참찬(左參贊)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p> <p>“알성 때에 거자(擧子)가 많기 때문에, 춘당대(春塘臺)에서 과거를 설행한 일이 잦았습니다. 정시도 이 전례에 따라 춘당대에서 설행하면, 아마도 혹 마땅할 듯합니다.”</p> <p>하고, 김창집도 말하기를,</p> <p>“수행하는 사수를 금단하는 방도로는 초시를 설행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알성시는 정시와 다르므로 초시를 새로 설행할 수 없으나, 정시는 변통하여도 무방하니, 초시를 설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그 뒤에 민진후가 연중(筵中)에서 임금에게 방해되고 불편한 것이 많다고 아뢰었으므로,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의논을 거두었는데, 마침내 초시는 그만두고 다만 춘당대에서 설행하게 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p> <p>“온양 과거는 이미 친림(親臨)하셨을 때에 설행하지 못하였으니, 시소(試所)를 반드시 온양에 정할 것 없이 따로 도회(都會)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시소는 공주(公州)에 정하고, 시관은 양계(兩界)의 규례에 따라 중신(重臣)을 차출하여 보내라고 명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p> <p>“진정(賑政)18076) 을 파한 뒤에 외방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이 본토로 많이 돌아갔으나, 간혹 경중(京中)에 남아 의지할 데가 없어 길가에서 곤경을 겪는 자가 있으니, 진청(賑廳)에 분부해서 죽을 마련하여 먹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無妨，設行初試可也。”【後日閔鎭厚，筵中白上以爲，事多窒礙難便者，收議于原任大臣，竟寢初試，只令設行於春塘臺。】 頤命曰：“溫科既未設行於親臨時，則試所不必定於溫陽，別定都會似宜矣。” 上命試所，定於公州，試官則依兩界例，以重臣差送。 昌集言：“罷賑後，外鄉飢民，多歸本土，而間有落在京中，顛連於道傍者，分付賑廳，設粥饋之似好矣。” 上曰：“設粥與分給乾糧，何者爲得？” 頤命言：“宜令賑廳，從便稟處。” 上可之。【其後賑廳回啓，限十日給乾糧。】 昌集曰：“頃因工曹判書趙泰采疏，有林象極等三人放送之命，洪啓一亦以喪前所犯得釋。 他儒則臣嫌不敢論，而啓一則斥呼先正姓名於禁中，不翅明白，論罪屬耳。 泰采掇拾宋成明之餘論，遽請放釋，群情以此拂鬱，而三司尙無論爭之舉，臣實慨然。” 上曰：“工判之疏，亦有意見，故竝令宥之，而謂之掇拾則過矣。” 昌集曰：“故及第姜碩期，卽仁祖朝名相，而先正臣金長生之高弟也。 飭躬以禮，事君以忠，而不幸身死之後，其家罹禍，追奪之論，及於泉</p>
--	---	--

<p>“죽을 마련하는 것과 건량(乾糧)을 나누어 주는 것은 어느 것이 나은가?” 하자, 이이명이 말하기를, “진청으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그 뒤에 진청에서 회계(回啓)하여 10일을 한정하여 건량을 주었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근래에 공조 판서(工曹判書) 조태채(趙泰采)가 상소함에 따라 임상극(林象極) 등 세 사람을 놓아보내라는 명이 있었고, 홍계일(洪啓一)도 상을 당하기 전에 범한 것이라 하여 석방되었습니다. 다른 선비는 신이 혐의스러워서 감히 논할 수 없습니다마는, 홍계일은 금중(禁中)에서 선정(先正)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이 매우 명백할 뿐만 아니므로, 논죄(論罪)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조태채가 송성명(宋成明)의 여론(餘論)을 주워모아 문득 석방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물정이 이 때문에 답답해 하였는데, 삼사(三司)에서는 오히려 논쟁하는 일이 없으니, 신은 참으로 개탄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판(工判)의 상소에도 의견이 있으므로 모두 용서하게 하였는데, 주워 모았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치다.”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고(故) 급제(及第) 강석기(姜碩期)는 인조(仁祖) 때의 명상(名相)이고,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의 고제(高弟)입니다. 예절로 자신을 단속하고, 충성으로 임금을 섬겼으나, 불행하게도 죽은 뒤에 그 집이 화를 당하여 추탈(追奪)하자는 논의가 지하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때 대간(臺諫)의 논계(論啓)에 대한 비답(批答)에 ‘처음부터 끝까지 청렴하고 근신한 것을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기는데, 그 처자의 죄 때문에 차마 이미 죽은 뒤에 죄줄 수는 없다.’고 하교하시다가, 여러 번 논계하고서야 비로소 윤휴하셨으니, 성조(聖祖)께서 신하를 아는 것이 깊으셨음을 우러러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漢)나라의 광</p>	<p>壤。其時臺啓之批，以終始清謹，予甚嘉之。以其妻孥之罪，不忍加於已死之後爲教，累啓始允，有以仰見聖祖知臣之深矣。昔漢霍光，雖於霍顯罪死之後，猶免追罪於身後。今碩期忠謹素著，而家禍作於身歿四年之後，物情至今愍傷。聖上，倘念聖祖不忍加罪之德音，特施復官之典，則豈不爲聖德之光乎？”頤命繼陳其冤甚力，上曰：“予曾閱《李明漢文集》，見碩期諡狀，眞宰相也。遂感吟成三絕，此壬辰夏間也。其時予若知碩期在追奪中，則必復其官矣。今日大臣所達得宜，特爲復官。”兵曹判書李健命言：“良役中忠壯衛名目，卽戰亡子孫也。每年納布一疋，而曾孫以下則充補軍役矣，頃因承旨尹行教所達，勿定軍役事定式云。大凡朝家用蔭，各有代數。其子與孫爲忠壯衛，納布一疋，而曾孫既不入於忠壯衛，又不定軍役，其蔭反加於子與孫，豈不倒置耶？”上命以三代定限。司諫趙鳴鳳、掌令趙聖復，以林象極等四人事，不爲爭執，見斥於大臣，引避退待。應教魚有龜言：“林象極、權弼衡等疏供，絕悖無倫，決不可</p>
---	--

광(霍光)은 그 아내 곽현(霍顯)이 죄를 지어 죽은 뒤에도 오히려 그 자신이 죽은 뒤에 뒤미처 죄받는 것을 면하였습니다. 이제 강석기는 충성스럽고 근실한 것이 평소에 드러났는데, 그가 죽은 지 4년 뒤에 집안의 화가 빚어졌으므로 물정이 지금까지도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만약 성조께서 차마 죄줄 수 없다 하신 덕음(德音)을 생각하여 복관(復官)하는 은전(恩典)을 특별히 베푸신다면, 어찌 성덕(聖德)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이명이 이어서 그 억울함을 매우 힘써 아뢰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네가 일찍이 이명한(李明漢)의 문집(文集)에서 강석기의 시장(諡狀)을 보았는데, 참된 재상(宰相)이었다. 마침내 감동하여 세 절구(絕句)를 지었는데, 이것이 임진년(1877) 여름의 일이다. 그때 내가 강석기가 추탈(追奪)된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반드시 그 관작(官爵)을 회복시켰을 것이다. 오늘 대신이 아뢰는 것이 마땅하니, 특별히 복관하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양역(良役) 가운데 충장위(忠壯衛)의 명목은 전사(戰死)한 자의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해마다 베[布] 한 필을 바치고 증손 이하는 군역(軍役)에 채우는데, 지난번 승지(承旨) 윤행교(尹行敎)의 계달(啓達)로 인하여 군역에 충정(充定)하지 않기로 정식(定式)하였다 합니다. 대저 조정에서 음덕(蔭德)을 적용하는 데에는 각각 대수(代數)가 있습니다. 그 아들과 손자는 충장위가 되고 베 한 필을 바치는데, 증손은 이미 충장위에 들어가지 않고, 또 군역에 충정하지 않는다면 그 음덕이 도리어 아들과 손자보다 더할 것이니, 어찌 도치(倒置)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上)이 3대로 한정하라고 명하였다. 사간(司諫) 조명봉(趙鳴鳳)·장령(掌令) 조성복(趙聖復)이, 임상극(林象極) 등 네 사람의 일을 쟁집(爭執)하지 않는다고 대신(大臣)에게 배척받았다 하여 인피(引避)하여 퇴대(退待)하였다. 응교(應敎) 어유귀(魚有龜)가 말하기를,

諉以經年，有所容貸。” 上不從。

	<p>“임상극·권필형(權弼衡) 등의 소어(疎語)와 공사(供辭)는 아주 사리에 어긋나고 윤기(倫紀)가 없으니, 결코 한 해가 지났다 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p> <p>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5월 30일(계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하기를,</p> <p>“어제 경기 암행 어사(京畿暗行御史) 김재로(金在魯)의 서계(書啓)를 보건대, 여역(癘疫)이 치성하여 죽는 자가 잇달고 있다고 하니, 매우 놀랍고 슬프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각 고을에 신칙(申飭)하여 상당한 약으로 각별히 구료(救療)하고, 앓는 자는 또한 곧 피막(避幕)에 나가서 전염하게 되지 않게 하라.”</p> <p>하였다.</p>	<p>癸未/上下教曰：“昨觀京畿暗行御史金在魯書啓，癘疫熾盛，死亡相繼云。極爲驚慘。着令道臣，申飭各邑，以相當藥物，各別救療，方痛者亦卽出幕，俾不至於傳染。”</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6월 9일(임진) 1번째기사</p>	<p>진휼청(賑恤廳)에서 상교(上教)로 인하여 오부(五部)에서 여역(癘疫)을 앓는 자를 뽑아 내어 피막(避幕)에 나가게 하고, 의탁할 데 없는 자 3천여 명에게 사람수를 헤아려 양식을 주었다.</p>	<p>壬辰/賑恤廳因上教，抄出五部癘疫出幕無依者三千餘名，計口給糧。</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6월 9일(임진) 2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p> <p>“환상곡(還上穀)18121) 은 급할 때에는 군항(軍餉)이 되고, 흉년이 당하면 진자(賑資)가 되므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한데, 근래에 수령(守令)들은 조금 곡식이 잘된 때에도 기준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려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경기 어사(京畿御史)의 서계(書啓)를 보건대, 한 고을에서는 적곡(糶穀)을 받아들일 때에 일일이 정밀하게 가리므로 백성이 자못 괴로와하나 받아 먹을 때에는 도리어 다행하게 여기는데, 한 고을에서는 적곡을 받아들일 때에 전혀 정밀하게 가리지 않으므로 받아먹는 백성이 도리어 관가(官家)에서 당초에 정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원망한다.’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환자곡을 정밀하게 가려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는데,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p>	<p>藥房入診。診候畢，上語諸臣曰：“還上之穀，有緩急則爲軍餉，值凶荒則爲賑資，關係甚重，而近來守令，雖當稍稔之時，不但不能準捧，亦不擇捧。今觀京畿御史書啓，一邑則捧糶時，一一精擇，故民頗爲苦，及其受食也，反以爲幸，一邑則捧糶時，全不精擇，故受食之民，反怨官家初不精捧云。以此見之，還穀不可不精捧矣。”都提調金昌集曰：“臣曾任鐵原時，暮投楊州村舍，主人未炊，方待還穀之受來。夜深後還穀始至，及見其穀，皆是空</p>

“신이 일찍이 철원(鐵原)을 맡았을 때 ‘날이 저물어 양주(楊州)의 촌가에 투숙하였는데, 주인이 아직 밥을 짓지 못하고 환자곡을 받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뒤에야 환자곡이 비로소 왔는데, 그 곡식을 보니 다 빈껍데기이므로, 할미가 울며 관가를 욕하였습니다. 그 뒤에 송정규(宋廷奎)가 목사(牧使)이었을 때에 신이 또 양주를 지나는데, 마침 춘궁기(春窮期)를 당하여 들에 보리가 익어가고 있었으나 베어 먹지 않으므로 괴이하게 여겨서 물었더니, ‘이 고을에서는 지난해에 환자곡을 잘 받아들였으므로, 온 경내가 이에 힘입어 굶지 않아서 보리를 그대로 두고 익기를 기다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적곡을 받아들이는 정사는 정밀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적곡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밀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칭찬을 바라는 고식적(姑息的)인 정사에서 말미암습니다.”

하니, 임금이 각별히 외방(外方)에 신칙(申飭)하여 흉년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정밀하게 가려서 받아들여지게 하라고 명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관명(李觀命)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은 병이 심하여 쇠약해진 때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조용히 수작하면, 가슴이 트여서 병이 몸에서 떠나는 듯한데, 정상계서는 구중(九重)에 깊이 계시어 좌우에는 근습(近習)뿐이고, 정원(政院)의 문서는 큰 물과 가뭄에 관한 장문(狀聞)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수응(酬應)하면서 근심하는 외에는 트여서 화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학(聖學)이 고명(高明)하여 고금의 치란(致亂)을 환히 아시므로 본디 자문에 의지할 것이 없으나, 때때로 유신(儒臣)을 인접(引接)하되, 그 예수(禮數)를 간략히 하여 침전 안에 불러들여 혹 고사(古事)를 묻거나 시정(時政)을 물으시고, 또한 승지(承旨) 한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해방(該房)의 문서를 가지고 들어와 읽어 아뢰게 하고 관

穀，有老嫗泣詈官家矣。其後宋廷奎爲牧使時，臣又行過楊州，政當春窮，野麥方熟，而尙不刈食，怪而問之則以爲：“本州前年還穀善捧，故一境賴以不飢，得以留麥，待其成熟”云。可知捧糶之政，精擇爲貴矣。”提調閔鎭厚曰：“捧糶之不精，專由於姑息要譽之政矣。”上命各別申飭外方，雖值凶荒之歲，必爲精擇收捧。都承旨李觀命曰：“凡人雖病甚，委頓之時，若逢會心人從容酬酢，則胸襟開豁，病若祛體。聖上深居九重，左右只是近習，政院文書，不過水旱狀聞而已，酬應勞神之外，無可以疏暢者。聖學高明，洞見古今治亂，固無資於咨訪，而若時引接儒臣，簡其禮數，招入臥內，或問古事，或訪時政，亦令承旨一二人，各持該房文書，讀奏判下，則似有益於養神宣鬱之道矣。”上曰：“所達儘好，當留意焉。”

	<p>하(判下)하시면, 정신을 수양하고 답답한 마음을 푸는 방도에 유의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것이 자못 좋으니, 유의하겠다.” 하였다.</p>	
<p>숙종 59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6월 21 일(갑진) 1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종묘서(宗廟署)의 첩보(牒報)로 인하여 제향(祭享)에 쓰는 준뢰(樽 罍)·변두(籩豆)에 담은 제물 중에서 《오례의(五禮儀)》의 도식(圖式)에 어긋 나는 데가 있는 것은 낱알이 바로잡아 본서(本署)와 봉상시(奉常寺)에 나누어 주어 살펴서 장만하게 하는 일을 입계(入啓)하고 분부하였는데, 곧 이어서 봉 상사에서 신보(申報)한 것을 보았더니, ‘변두에 담은 제물 여덟 가지 안에서 대조(大棗)·울황(栗黃)·진자(榛子)를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은 이미 품재(稟 裁)를 거쳤고, 능인(菱仁)·검인(芡仁)을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며, 녹포(鹿脯)는 봄·가을 양등(兩等)에 포를 만들 소[牛]의 값을 호조(戶曹)에서 준다. 백병(白餅)·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糝) 네 가 지 안에서 흑병은 도식에서 교분(蕎粉)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당서미 (唐黍米)로 만들고, 구이는 도식에서 건미(乾米)·건맥(乾麥)으로 만든다고 하 였으나 지금은 미말(米末)로 만들고 진말(眞末)을 섞어 끓인다. 두에 담은 제 물 열 두 가지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합하여 끓이는 삼식(糝食)과 잘게 썰어 회 [齋]를 만드는 돈박(豚拍)은 본디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곧 마땅히 봉행(奉 行)할 것이다. 담해(醢醢)는 도식에서 먼저 건어(乾魚)를 포로 뜯 뒤에 잘게 썰어서 양국(梁麩)과 소금을 섞어 담그고, 좋은 술을 발라서 항아리 안에 1백 일 동안 두면 만들어진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돼지 고기로 담그고 도미(稻米) 로 밥을 지어 그 위에 바르는데, 호조에서는 해식중미(醢食中米)라 일컬어 공 안(貢案) 가운데에 기록하니, 그 유래가 반드시 이미 오래 되었을 것이다. 이</p>	<p>甲辰/禮曹啓曰：“曾因宗廟署牒報，祭 享所用樽罍、籩豆之實，有違《五禮 儀》圖式者，一一釐正，分授本署及奉 常寺，使之檢察監設事，入啓分付矣， 繼見奉常寺所報，則以爲：‘籩豆之實 八種內，大棗、栗黃、榛子之代用他 果，已經稟裁，菱仁、芡仁之代用他 果，其來已久，鹿脯則春秋兩等作脯之 牛，自戶曹給價。白餅、黑餅、糗 (餿) [餌]、粉糝四種內，黑餅則圖式 以蕎粉爲之，而今則以唐黍米爲之，糗 餌則圖式以乾米、麥爲之，而今則以米 末造成，眞末糝之。豆實十二種內， 糝食之合煎，豚拍之細折爲齋，元無窒 礙，卽當奉行。醢醢則圖式先膊乾魚 後，乃莖之，雜以梁麩及鹽漬，以美酒 塗置甑中，百日乃成云，而今則以豕沈 之，稻米飯，塗其上，自戶曹稱以醢食 中米，載錄於貢案中，其來必已久矣。 醢食則圖式以爲，稻米舉糝溲之，小切</p>

식(飮食)은 도식에서 도미(稻米)를 반죽하고 낭축고(狼臑膏)를 작게 잘라 도미와 된 죽을 섞어 만든다. 이른바 낭축고란 이리 배꼽 속 기름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미분(米粉)으로 풀을 섞어 만든다. 준퇴에 담은 제물에 이르러서는 축사(祝辭) 가운데에 생폐 예제(牲幣醴齊)라고 일컬어, 초헌(初獻) 때에는 예제(醴齊)를 따르고 아헌(亞獻) 때에는 양제(盎齊)를 따른다는 것이 《오례의》에 분명히 실려 있으나, 지금은 삼헌(三獻) 때에 모두 청주(淸酒)를 따른다. 울창(鬱鬯)은 《오례의》에는 흑서(黑黍)를 빻아서 술을 만들고 울금(鬱金)을 쌓아서 끓여 섞는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도미로 술을 빻고 참으로 울금을 섞는다. 형갱(銅羹)은 《오례의》에는 오미(五味)를 고루 맞추고 규(葵)·환(荳)·모(菘)를 더하여 부드럽게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미나리나 무우에 육편(肉片)을 섞어서 쓴다. 오미는 어떤 물건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고, ‘환(荳)’자는 《예기(禮記)》의 주(註)에 제비꽃을 닮았는데 잎이 크다고 풀이하였으나, 또한 그것이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다. 대개 이러한 일은 당초에 반드시 감히 아래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을 것인데, 상고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옛 규례로 복귀하면 방해되는 일이 많을 것이니, 다시 널리 상고해서 품정하여 때를 당해서 다급한 폐단을 면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시다. 삼가 살펴보면, 《오례의》의 제향도식(祭享圖式)은 다 《주례(周禮)》 가운데에서 가려내어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처럼 대용한 것은 《오례의》의 주 가운데에, ‘무릇 신명에게 제사하는 물건 중에서 그 때에 없는 것은 그 때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하고, 외방(外方)에서는 또 토산물이 아니면 비슷한 것으로 채운다.’ 하였으므로, 수시로 변통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식·돈박은 다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한결같이 《오례의》의 숙설(熟設)대로 따르라고 우선 분부하되, 대조·울황을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이 이미 품재(稟裁)를 거쳤으므로 본디 논할 것이 없고, 능인·검인을 다른 과실로 대용하는 것은 그 유래가 또한 오래 되었고, 녹포를 우포(牛脯)로 대용

狼臑膏，與稻米爲飮。而所謂狼臑膏，狼之臍中膏也，今則以米粉作糊而用之。至於尊鬯之實，則祝辭中，稱以牲幣醴齊。初獻酌醴齊，亞獻酌盎齊者，昭載於《五禮儀》，而今則三獻，皆酌淸酒。鬱鬯則《五禮儀》以爲，釀以黑黍爲酒，築鬱金，煮而和之云，而今則以稻米釀酒，(眞) [直] 和鬱金。銅羹則《五禮儀》以爲，以五味調成，加葵、荳、菘滑，而今則或芹或菁，雜以肉片而用之。未知五味之當用何物，荳字《禮記》註，以似僅而葉大釋之，亦未知其某菜矣。大概此等事，當初必不敢自下擅定，而文籍無可考，猝然復舊，事多掣肘，更爲博考稟定，俾免臨時窘急之弊’云。謹按《五禮儀》祭享圖式。皆從《周禮》中採出以成，而中間代用如是者，無乃以《五禮註》中，有曰：‘凡祭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物代之，外則又非土產，以其類充之’云，故或有隨時變通之舉而然耶？糝食、豚拍，皆無室礙，一從《五禮儀》熟設事，爲先分付，而大棗、栗黃之代用他果，既經稟裁，固無可論，菱、芡仁之代用他果，其來亦

하는 것과 해식 증미가 공안에 실려 있는 것은 밝힐 만한 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례를 그대로 써야 할 듯합니다. 흑병은 도식에서 비록, ‘교분(蕎粉)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주례》에서, ‘벼는 희고, 기장은 검다.’고 하였으니, 지금 당서(唐黍)를 쓰는 것은 고례(古禮)에 어긋나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흑병은 이미 《주례》의 글을 인용하여 당서를 쓰니, 울창도 당서로 술을 빚고 울금을 타서 닳이는 것이, ‘토산물이 아니면 비슷한 것으로 채운다.’는 말에 맞을 것인데, 더구나 본디 토산물이 아닌 울금이겠습니까? 이렇게 변통하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구이병(糗餌餅)도 도식의 주에, ‘구이는 건미(乾米)·건맥(乾麥)이다. 찢어서 이(餌)를 만드니, 대개 먼저 빵아서 가루를 만든 뒤에 반죽한다. 자(糝)는 도병(稻餅)이다. 쌀로 밥을 지어 찢는다. 분자(粉糝)는 콩으로 가루를 만들어 자 위에 묻힌 것이다.’ 하였습니 다. 이것은 다 《예기》 내칙(內則)에 있는 글이고, 《주례》에 있는 수 변지실(羞籩之實)18124 이라는 글의 주에도, ‘구(糗)는 콩과 쌀을 볶은 것이다. 분(粉)은 콩가루이다. 자(糝)는 건이병(乾餌餅)이다. 정현(鄭玄)은, 「이 두 물건은 다 도미(稻米)·서미(黍米)를 가루로 만든 것이데, 합하여 찢 것을 이(餌)라 하고 반죽하여 찢 것을 자(糝)라 한다. 구(糗)는 볶은 콩을 빵아 가루 낸 것인데 반죽하여 찢 자(糝)가 끈끈하기 때문에 가루를 묻히는 것이다.」 하였다.’ 하였습니 다. 《예기》·《주례》에 논한 것이 대개 서로 같으니, 이에 의거하여 고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담해(醢醢)는 도식의 주에 기록한 것이 본개 《주례》에 있는 글이고, 《주례》에 또, ‘저해(菹醢)는 다 기미(氣味)로 상성(相成)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생육(生肉)을 담그고, 쌀밥을 그 위에 바르는 것은 진실로 예의(禮意)에 어긋나므로, 이것도 마땅히 고쳐야 하겠습니까마는, 이른바 양국(梁麴)이라는 것이 좁쌀로 누룩을 만든 것을 가 리키는지, 좁쌀과 누룩 두 물건을 말하는지, 문세(文勢)를 분간하여 알 수 없으니, 억측하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식(醢食)은 도식에 기록한 것도 《예

久, 鹿脯之代以牛脯, 醢食、中米之載錄貢案, 不可不謂之可徵文籍, 似當仍用前例。 黑餅則圖式雖云蕎粉爲之, 《周禮》以爲, 稻曰白, 黍曰黑。’ 則今用唐黍, 恐不背於古禮。 黑餅, 既引《周禮》之文, 而用唐黍, 則鬱鬯亦以唐黍釀酒, 和鬱金煮之, 允合於非土產, 以類充之之說, 而況鬱金, 本是土產者耶? 如是變通, 似或得宜, 而其中糗(餗)〔餌〕餅, 則圖式註云: ‘糗(餗)〔餌〕, 乾米麥也。 搗之以爲餌, 蓋先屑爲粉, 然後溲之。 糝, 稻餅也。 炊米搗之粉。 糝, 以豆爲粉, 糝糝上 也。’ 此皆《禮記》《內則》之文。 而《周禮》羞籩豆實註亦云: ‘糗熬, 大豆與米也。 粉, 豆屑也, 糝, 謂乾 餌餅之也, 鄭玄謂: ‘此二物, 皆粉稻 米、黍米所爲也。 合蒸曰餌, 餅之曰 糝。 糗者, 搗粉熬大豆, 爲餅糝之粘, 着以粉之耳。’ 《禮記》、《周禮》所 論, 大抵相同, 似不可不依此釐改。 醢醢則圖式註所錄, 自是《周禮》之 文, 而《周禮》又云: ‘菹醢皆以氣味 相成。’ 今之沈生肉而塗米飯於其上, 實有違於禮意, 此亦似當釐改, 而所謂

기》·《주례》의 글과 서로 같습니다마는, 《주례》의 주에, ‘정 사농(鄭司農)18125) 이, 「이식은 술과 이(醢)18126) 로 병(餅)을 만든 것이다.」 하였다.’ 하였는데, 낭축고(狼臠膏)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정사농의 말에 의거하여 술과 죽으로 병을 만들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오제(五齊) 가운데에서 예제(醴齊)·양제(盎齊)만을 쓰고 삼주(三酒) 가운데에서 청주(淸酒)만을 쓰는 것은 이미 도식에 실려 있는 것이니, 그 나머지 삼제(三齊)와 이주(二酒)를 쓰지 않는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은 예제·양제도 모두 없애고 더운 철에는 청주도 자주(煮酒)로 대응하니, 어찌 또한 당시에 없는 것은 그때에 나는 물건을 쓴다는 뜻이겠습니까? 형갱(鉶羹)은 이른바 오미(五味)라는 것이 과연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고, 환채(菹菜)도 알 수 없으니, 이제 도식에 따라 여름에 규(葵)를 쓰고 고례(古禮)에 따라 겨울에 근(葷)을 쓰되 시고 짠맛을 탄다면, 예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도식을 따르기도 하고 고례를 따르기도 하는 것은 반박(斑駁)을 면하지 못하고, 시고 짠 두 가지 맛만으로는 또한 오미를 갖추지 못하니, 다 틀린 곳이 많아서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이식(醢食)은 도미(稻米) 가루로 풀을 쭈어 두(豆)에 담으니, 그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낭축고(狼臠膏)는 이미 얻기 어려운 물건이니, 녹포(鹿脯)를 다른 것으로 대응하는 예와 같이 닳여서 기름을 낸다는 글에 의거하여 기름으로 대응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형갱(鉶羹)은 환(菹)이 어떤 물건인지 상고하여 옛것을 회복하되, 혹 그대로 미나리·무우를 쓰더라도 반드시 고깃국을 주로 하고 짠맛과 신맛을 섞으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듯합니다. 신명과 교감(交感)하는 도리는 울창(鬱鬯)을 따르고 소(蕭)를 사르는 두 가지 일보다 중대한 것이 없으니, 잘 갖춘 뒤에야 강립하여 흠향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대개

梁麴, 或指以梁作麴, 或謂梁與麴二物, 文勢未能分曉, 難以億見斷定。醢食則圖式所錄, 亦與《禮記》、《周禮》之文相同, 而但《周禮》註, 鄭司農云: ‘醢食以酒醢爲餅.’ 狼臠膏, 既非我國所產, 則依鄭司農之說, 以酒醢爲餅, 恐亦無妨。五齊之中, 只用醴、盎, 三酒之中, 但用淸酒, 既是圖式所載, 則其餘三齊、二酒之不用, 不須舉論, 而今竝與醴、盎去之, 而暑月淸酒, 又代以煮酒, 豈亦當時(取) [所] 無者, 以時物代之意耶? 鉶羹, 所謂五味果, 未知何物, 而菹菜亦莫能辨識。今若從圖式用葵於夏, 從古禮用僅於冬, 和以酸醎之味, 則似不至大乖禮意, 而或從圖式, 或從古禮, 未免斑駁之歸, 酸醎二味, 亦未備於五味, 皆涉杜撰, 有難輕議。請議于大臣。”

上可之。行判中樞府事李濡以爲: “醢食, 以稻米粉作糊盛豆, 殊失其義。狼臠膏, 既是難得之物, 則如鹿脯代用之例, 依煎之以膏之文, 以油代之, 無所妨矣。鉶羹, 詳考菹之爲何物, 而復其舊, 雖或仍用芹、菁, 必以肉羹爲主, 和以鹽梅, 似不背於禮意。惟是

거서(秬黍)로 술을 빚고 울금을 닳여 타서 그 향기가 짙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은 도주(稻酒)로 곧바로 울금을 닳이고, 소(蕭)를 쓰는 것도 그 향기를 취하고 기름을 합하여 사르는 것인데, 지금은 사르는 것이 소가 아니고 애(艾)이니, 모두 신명을 강림하게 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소는 전에 이미 그 잘못을 바로잡았으니, 울창도 본방(本方)에 의거하여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담해(醢醢)는 이른바, 양국(梁麴)이라는 것을 잘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그 담가 만드는 방도를 구명하여 그 마땅한 것에 맞추어 만들어 냄새가 고약한 기가 없게 해야 실로 공경을 다하는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은 말하기를,
 “우리 나라 《오례의(五禮儀)》의 제향 도식(祭享圖式)은 역대(歷代)의 제도를 본뵈었으나, 그 근본은 다 《주례(周禮)》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에에 변(籩)·두(豆)에 담는 제물을 낱알이 고례(古禮)를 따르지 못하고, 혹은 대용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만드는 방법도 고례(古禮)를 전혀 모르고 물건도 토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때에 따라 변통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니, 문득 예의(禮意)에 어긋난다 하여 두루 바로잡으려 하면 옛것이 없애이는 혐의가 있고, 도리어 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혜조(該曹)에서 칭한 그대로 둘 것과 고쳐야 할 여러 조목 가운데 문적(文籍)에서 밝힐 수 있고 또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사체(事體)가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막혀서 거행하기 어렵거나 분간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억측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니, 경솔히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은 말하기를,
 “그 지방에서 나는 물건은 사방이 다 같지 않고 제물을 바치는 방법도 고금의 풍습이 다르므로, 이미 《오례의》를 처음 정할 때에 고례를 죄다 따르지 못하고 당시에 나는 물건으로 대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대개 부득이한 데에서

交感神明之道，無大於灌鬱蒸蕭二者，克備然後，可冀其降歆。蓋以秬黍釀酒，以鬱金煮和，取其香烈，今則以稻酒直煎鬱金，以用蕭者，亦取其有香氣，合脂而蒸之，今則所蒸非蕭而艾，俱非降神之義。蕭則前已正其誤矣，鬱鬯亦不可不依本方而改之也。醢醢則所謂梁麴，雖云未詳，必究其沈造之方，適其宜而成之，俾無臭惡之氣，實合於致敬之道。” 領議政金昌集以爲：“我朝《五禮儀》祭享圖式，寔倣歷代之制，而其本皆從《周禮》中出來。第於其間籩豆之實，不能一一遵古，或有代用之物者，蓋以制造全昧古禮，物種又非土產，不得不隨時變通，式至于今，則輒稱有違禮意，遍欲釐正，無乃有泥古之嫌，而反爲杜撰之歸耶？今此該曹所請，仍存與釐改諸條，或有可徵於文籍，亦且不背於禮意，則依此行之，事體得宜。至於窒礙難行，分曉不得者，有非億見所可斷定，恐難輕議。” 左議政李頤命以爲：“水土之品，四方不同，膳羞之法，古今異習，已自《五禮》初定之時，不能盡從古禮，許以時物代之者，蓋出不得已也。其後

나왔을 것입니다. 그 뒤에 대조(大棗)·율황(栗黃)·능인(菱仁)·검인(芡仁)을 대용한 것은 토산인데도 오히려 이리하였는데, 더구나 얻기 어려운 낭축(狼臑)과 알 수 없는 환채(萱菜)이겠습니까? 거서(秬黍)와 당서(唐黍)는 이미 같은 물건이 아니니, 비슷한 것을 취하여 통용하는 것은 구차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형갱(銅羹)의 오미(五味)와 같은 것은 오히려 염매(鹽梅) 따위로 조화할 수 있겠으나, 담해(醢醢)의 양국(梁麴)은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며, 그 가운데 명백하여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삼식(糝食)·돈박(豚拍)과 구이(糗餌)·예제(醴齊)·양제(盎齊)뿐입니다. 그래도 고금의 예(禮)를 섞여 쓰므로 마침내 엇갈리게 되었는데 고칠 수 있는 것은 적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많습니다. 또 이런 것으로 제향한 지 또한 이미 오래 되었으니, 낱알이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의논하여 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예기(禮記)》에, ‘선왕이 바치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즐겨 먹을 수는 없다.’ 하였으니, 그 중요한 것은 냄새에 있고 맛에 있지 않음을 알 수는 있으나, 물건을 바치고 뜻을 취하여 신명(神明)에게 교감(交感)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알 수 없는 바가 있는데, 이제 어찌 억측으로 그대로 두고 고치는 것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향하는 예에 먼저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옥당관(玉堂官)에게 명하여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하여 고금의 차이를 분변하게 하고, 예를 아는 유신(儒臣)에게 하문하여 예경(禮經)과 선유(先儒)가 논한 바와 시왕(時王)의 제도를 참작하여 논정(論定)하되, 토산인데도 대용하는 과실은 옛것을 도로 회복하고 녹포(鹿脯)·낭축도 마땅히 사냥해야 하며, 거서·환채·양국 등은 앞으로 절사(節使)가 갈 때에 연경(燕京)에서 그 종자를 사거나 그 형색(形色)과 만드는 방법을 살펴 오게 하여 태묘(太廟)에 고하고, 낱알이 그 잘못된 물건을 바꾸어야 향례(享禮)에 거의 유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여기에서 또 일찍이 의심한 것이 있습니다. 자성(棗盛) 가운데 서(黍)·직(稷)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서(禮書)에 서를 향합(鄉合)이라 하고, 직을 명자(明棗)라 하는데,

棗、栗、菱、芡之代用，土產而猶如此，況難得之狼臑，不識之萱菜乎？秬黍、唐黍，既非一物，則取類通用，未免苟簡。如銅羹之五味，猶可調以鹽梅之類，醢醢之梁麴，未詳其爲何物，獨其中明白可易改者，惟糝食、豚拍與糗(餼)〔餌〕、醴盎耳。猶互用古今之禮，終歸參錯，而能改者少，不能改者多。且以此薦享，亦已久矣，若非一一釐正，恐不可倉卒議定也。《禮》曰：‘先王之薦，可食也，而不可嗜也。’其重之在臭氣，而不在於食味，雖若可見，至於尙物取義，用以交感於神明者，則有不可知矣。今何可以億見，斷其因革也？今若以薦享之禮，有不可不先改，則特命玉堂官，博考典禮，以辨古今異同，下詢于知禮儒臣，以禮經、先儒所論及時王之制，參互論定，果實之土產而代用者，還復其舊，鹿脯、狼臑，亦合蒐獵，秬黍、萱菜、梁麴之屬，前頭節使時，使於燕京，或買其種子，或審其形色與製造之法，告于太廟，一一變其訛誤之物，享禮庶無憾矣。臣於此，又有所嘗疑者。棗盛之中，黍、稷最重，故禮書，

	<p>우리 나라에서 쓰는 서·직은 눈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여 ‘중국에서 이른바 서·직이라는 것과 같지 않다.’ 하고, 저설(著說)한 자까지 있으니, 만일 의심하는 자의 말과 같다면 신명에게 바치기 위한 자성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연경에서 제향에 쓰는 것과 중국의 구례(舊禮)를 답습한 것이니, 또한 절사가 갈 때에 이 두 가지 곡식을 사 오면 제사에 쓰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영상(領相)의 의논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좌상(左相)의 헌의(獻議)한 것 중에서 끝에 붙여 아뢴 두 가지 곡식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p> <p>하였다. 이 뒤에 민진후(閔鎭厚)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의 제향 도식(祭享圖式)에는 준뢰 상탁(罇罍床卓)에 울창(鬱鬯)·예제(醴齊)·양제(盎齊)·청주(淸酒)를 배설하되, 예제·양제는 명수(明水)로 대설(代設)하고, 청주는 현주(玄酒)로 대설하는데, 지금은 명수·현주를 모두 쓰지 않고 빈 뇌(罍)만을 배설합니다. 어느 때부터 이렇게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예제·양제는 청주로 대용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명수도 아울러 폐지하는 것은 실로 의의가 없습니다. 명수는 월중(月中)에서 음감(陰鑑)으로 취한 것이라 하나, 《오례의》에도 ‘음감수(陰鑑水)가 없으면 정화수(井華水)로 대용한다.’ 하였으니, 대용하여도 혹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p>	<p>黍曰薺，合稷曰明粢。我國所用黍、稷，目前人多疑之以爲：‘與中國所謂黍、稷不同，’至有著說者。萬一如疑者之言，所以供神明粢盛者，不容不審。雖今燕京，其用之於祭享，當襲中國之舊，亦於節使時，買此二穀而來，可以破疑於享祀之用矣。”上下敎曰：“依領相議施行，而左相獻議，末端附陳二穀事，依爲之。”是後，閔鎭厚白上曰：“《五禮儀》祭享圖式，罇罍床卓，設鬱鬯、醴齊、盎齊、淸酒，而醴齊、盎齊，則以明水代設，淸酒以玄酒代設，今則明水、玄酒，並不用，只設空罍。未知自何時如此，而醴齊、盎齊，雖以淸酒代用，因此竝廢明水，實無意義。明水雖是月中陰鑑所取者，《五禮儀》又云：‘若無陰鑑水，則代以井華水’，代用，恐或得宜。”上可之。</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7월 1일 (계축) 4번째기사</p>	<p>경상우도 암행 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윤양래(尹陽來)가 조정에 돌아와 복명(復命)하였다. 거제 부사(巨濟府使) 이봉징(李鳳徵)·함안 군수(咸安郡守) 이지빈(李之彬)·웅천 현감(熊川縣監) 김명대(金鳴大)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문(拿問)하였고, 김해 부사(金海府使) 유하(柳澗)는 진휼(賑恤)한 곡식이 부실(不實)하였기 때문에 파출(罷黜)시켰고, 상주 목사(尙州牧使) 정사효(鄭思孝)는 진휼(賑恤)을 잘하였기 때문에 포상(褒賞)을 가하였다.</p>	<p>慶尙右道暗行御史尹陽來還朝復命。巨濟府使李鳳徵、咸安郡守李之彬、熊川縣監金鳴大，以不法拿問，金海府使柳澗，以賑穀不實罷黜，尙州牧使鄭思孝，以善賑加褒賞。</p>
<p>숙종 60권, 43년</p>	<p>황해도 암행 어사(黃海道暗行御史) 박성로(朴聖輅)가 조정에 돌아와 복명(復</p>	<p>乙卯/黃海道暗行御史朴聖輅還朝復</p>

<p>(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7월 3일 (을묘) 1번째기사</p>	<p>命)하였다. 풍천 부사(豐川府使) 성준(成儻)과 장연 부사(長淵府使) 홍이도(洪以圖)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문(拿問)하였고, 강령 현감(康翎縣監) 유봉장(柳鵬章)과 신계 현령(新溪縣令) 신치복(辛致復)은 정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파출(罷黜)시켰고, 안악 군수(安岳郡守) 유명건(俞命健)은 진휼(賑恤)을 잘했기 때문에 포상(褒賞)을 가하였다.</p>	<p>命。豐川府使成儻、長淵府使洪以圖，以不法拿問，康翎縣監柳鵬章、新溪縣令辛致復，以疵政罷黜，安岳郡守俞命健，以善賑加褒賞。</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7월 7일 (기미) 1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말하기를, “대전(大殿)·각전(各殿)의 삼명일(三名日)18134) 과 탄일(誕日)에 올리는 서울과 지방의 방물(方物) 가운데 물선(物膳)18135) 과 삭선(朔膳)18136) 은 전에 재황(災荒) 때문에 양감(量減)하도록 품지(稟旨)하여 봉납(捧納)을 정지해 왔었습니다. 청컨대 물선은 오는 동지(冬至)부터 복구(復舊)시키고 삭선(朔膳)은 10월부터 복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내년 가을까지를 기한으로 우선 감면하라고 명하였다.</p>	<p>己未/禮曹言：“大殿、各殿三名日及誕日京外方物物膳及朔膳，曾因災荒，稟旨量減停捧者，請自冬至復舊，朔膳則十月爲始復舊。” 上命竝限明秋姑減。</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7월 10일(임술) 1번째기사</p>	<p>임금이 하교(下教)하기를, “기민(飢民)을 진구(賑救)하던 끝에 독한 여역(癘疫)이 계속 치성(熾盛)하여 사망자(死亡者)가 서로 잇달아 지식(止息)될 기약이 없으니, 이보다 더한 놀라움과 참혹스러움이 어디 있겠는가? 약물(藥物)과 구료(救療) 등에 관한 일을 여러 번 하교하였으니, 특별히 서울과 지방에 신칙(申飭)하여 착실하게 봉행하게 하라. 온 집안이 모조리 다 죽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더욱 참혹스럽기 그지없으니 앞으로는 특별히 품처(稟處)하여 내가 진휼(軫恤)하고 있다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p>	<p>壬戌/上下教曰：“賑飢之餘，毒癘繼熾，死亡相續，止息無期，其爲驚慘，孰甚於此？藥物、救療等事，屢次下教，另加申飭京外，着實奉行。至於合家沒死之類，尤爲慘然，前頭別爲稟處，以示予軫恤之意。”</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7월 19일(신미)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병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조치(調治)한 지가 10일이 다 되었으나, 입시(入侍)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에게 명하여 함께 들어오게 하였다. 경락(經絡)에 침을 맞고 나서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p>	<p>辛未/藥房入診。都提調金昌集，因病歸家，調治者將一旬，不得入侍。上特命左議政李頤命同入。經絡受鍼訖，提調閔鎭厚言：“癘疫熾蔓，宜有癘祭設行之舉。” 上命遣重臣設行。 頤命</p>

	<p>“여역(癘疫)이 크게 번지니, 마땅히 여제(癘祭)18161) 를 설행(設行)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중신(重臣)을 보내어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이이명이 말하기를, “이달 초9일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져서 시내에 물이 창일(漲溢)하였으므로 물가의 인가(人家)가 태반이 무너져 버렸고, 간혹 온 가옥(家屋)이 표몰(漂沒)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떠도는 걸인(乞人)으로서 익사(溺死)한 사람도 많습니다.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일일이 조사하게 한 다음 진휼청(賑恤廳)에 분부(分付)하여 쌀이나 돈을 제급(題給)하게 함으로써 진휼(軫恤)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이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왼쪽 안부(眼部)가 어두워서 문서(文書)를 수응(酬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오른쪽 눈도 또 이러하니 눈앞의 걱정은 어두워 보이지 않는 데에 있을 뿐만이 아니다. 안력(眼力)을 쓰지 않으면 혹 조금 나아질 방도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문서가 매양 대단히 많은 상황이니,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장님이 되는 것을 재촉하는 격인 것이다. 반드시 변통시키는 방도가 있는 뒤에라야 병이 더해지는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이이명이 말하기를, “하교(下敎)가 이러하시니 변통시킬 방도를 여러 신하가 누군들 심력을 기울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래에서 변통시킬 수 있는 것은 문서(文書)를 줄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의 천박한 소견으로는 모든 입계(入啓)하는 문서를 음독(音讀)이 분명한 사람이 읽게 하시고, 계하(啓下)할 때는 혹 판부(判付)18162) 를 내릴 수도 있으니, 왕세자(王世子)에게 명하여 곁에 있으면서 참견(參見)하게 함으로써 정무(政務)를 분명히 익히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p>	<p>言：“今月初九日，暴雨終宵，川渠漲溢，水邊人家，大半頽壓，或有全家漂沒者，流丐之溺死者，亦多。令漢城府，一一查出，分付賑廳，題給米錢，以示軫恤之意似好。”上從之。上仍語諸臣曰：“左邊眼部昏暗，酬應文書甚艱。右邊又如是，目前之憂，不但昏暗而止。不用眼力，則或有差勝之道，而即今文書，每每浩繁。若此不已，是促其矇廢也。必有變通之道然後，可無添加之患矣。”</p> <p>頤命曰：“下敎如此，變通之道，群下孰不極意思量，而自下所可變通者，不過減省文書。以臣淺見，凡入啓文書，使音讀分明之人讀之，而啓下或賜判付，不可不命王世子在傍參見，因以明習政務矣。”</p> <p>上曰：“唐太宗末年病重後，其不有變通之事乎？”</p> <p>頤命曰：“故事，猝未記憶，而不必遠引故事，以國朝事言之，世宗大王未寧時，文宗大王出御別殿，與大臣，參決國政。國史必有之矣。”</p> <p>鎭厚曰：“臣讀史未熟，唐太宗事，不能記得矣。”</p> <p>上曰：“《綱目》，其不有此事乎？”</p> <p>頤命曰：“此事至重，非倉卒所定。聖明更加商思，召諸大</p>
--	---	---

	<p>“당(唐)나라 태종(太宗)도 말년에 병이 위중하게 되자 변통시킨 일이 있지 않았는가?”</p> <p>하니, 이이명이 말하기를,</p> <p>“고사(故事)는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옛 고사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국조(國朝)의 일로 말하더라도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편안하지 못하실 적에 문종 대왕(文宗大王)이 별전(別殿)에 나가서 대신(大臣)들과 함께 참여하여 국정(國政)을 결단하였습니다. 이는 국사(國史)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p> <p>“신은 역사(歷史)를 읽은 것이 익숙하지 못하므로 당나라 태종의 일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통감강목(通鑑綱目)》에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p> <p>하였다. 이이명이 아뢰기를,</p> <p>“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므로 창졸간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성명(聖明)께서는 다시 더 생각하시어 대신(大臣)들을 불러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다시 생각하여 보겠다.”</p> <p>하였다. 이이명은 말하기를,</p> <p>“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p> <p>하고, 민진후는 말하기를,</p> <p>“성의(聖意)가 우연하지 않은 듯하나, 다만 신은 평소 역사 기록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조정에 벼슬한 이후로는 오랫동안 부첩(簿牒)속에 묻혀 있었으므로 서책(書冊)을 열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교(聖敎)를 받드니 아득하기만하여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물러가 상고하여 보도록 하겠습</p>	<p>臣議之何如?” 上曰：“更思之。” 頤命曰：“發未思之矣。” 鎮厚曰：“聖意似不偶然，而不但臣素昧史記，立朝以來，長在簿牒叢中，未嘗披閱書冊。今承聖教，茫然不知所對。當退而考出。若不可行，則臣等當力爭，而事若可爲，則何敢不將順乎？” 遂退。</p>
--	---	---

	<p>니다. 만일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신 등이 마땅히 극력 간쟁할 것입니다만, 시행해도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감히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물러 나왔다.</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7월 22 일(갑술)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침(鍼)을 맞고 뜸 뒤에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공청(空靑)18168) 을 눈에 떨어뜨려 넣은 것이 제일 기이한 효험(効驗)이 있다고 고방(古方)에 기재(記載)되어 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중원(中原)에 가서 얻어오기도 했다고 전하기는 합니다만, 전해오는 말이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조(先朝) 때에는 중국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구득(求得)하려 했으나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부마(駙馬)들이 사행(使行)을 따라 왕래할 때에도 다방면으로 구득하려고 했었지만 진위(眞僞)를 분변하기 어려워 사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성환(聖患)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바로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을 보내어 공사(公私) 약국(藥局)으로 하여금 매입할 수 있게 해주기를 청하면 구득하여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관(醫官) 가운데 종전부터 연경(燕京)에 왕래하면서 제왕(諸王)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번 황당선(荒唐船)에서 체포한 사람을 압송(押送)할 적에 재자관(賚咨官)과 함께 가서 사가지고 오게 한다면 편당(便當)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특별히 재자관(賚咨官)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민지후가 또 말하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집일(兪集一)은 다리병이 매우 고통스러워 각릉(各陵)의 가을 봉심(奉審)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봉심(奉審)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유집일(兪集一)의 체직(遞職)을 명하였다.</p>	<p>甲戌/藥房入診。 停受鍼， 受灸訖， 提調閔鎭厚言：“空靑點眼， 最有奇效， 載於古方。 或傳祖宗朝得來於中原云， 而傳說之言， 未可準信。 先朝移咨求得， 而終未果。 諸駙馬以使行往來時， 亦多方求質， 而以眞僞難辨， 不爲買來云。 今若以聖患所須， 直爲移咨禮部， 請令公私藥局許賣， 則似可得來。 醫官中有曾前往來燕京， 與諸王相親者， 若於荒唐船被捉人押送時， 與齋咨官， 偕往質來， 則似爲便當矣。” 上曰：“別遺齋咨官可也。” 鎭厚又言：“京畿監司兪集一， 脚病甚苦， 各陵秋奉審， 將不得爲之云。” 上以奉審不可稽遲， 命遞集一。</p>
<p>숙종 60권, 43년</p>	<p>대사헌(大司憲) 이희조(李喜朝)가 현도(縣道)를 통하여 상소(上疏)하였는데, 대</p>	<p>大可憲李喜朝附縣道上疏。 略曰：</p>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7월 27
일(기묘) 2번째기사

략 말하기를,
“왕세자(王世子)에게 청정(聽政)하도록 한다는 명은 실로 전하(殿下)께서 국사를 걱정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만기(萬幾)의 번거로움이 반드시 감소될 것이고 정섭(靜攝)할 시간이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무릇 군하(群下)에 있어 누군들 기뻐하여 축하(祝賀)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삼가 도로(道路)에서 전하는 말을 듣건대, 지난번 여러 대신(大臣)들이 입시(入侍)했을 적에 전하께서 미안스런 분부를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지마는 전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실언(失言)을 하셨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왕세자께서는 총명하고 효성스럽고 우애롭고 덕망과 학문이 날로 성취되어 어질다는 성문(聲聞)이 사람들에게 들린 지 오래되었으므로 사방(四方)에서 목을 길게 빼고 몹시 기대하면서 왕세자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대저 성의(聖意)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왕언(王言)이 한번 전과되자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의혹하였습니다. 비록 옥당(玉堂)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즉시 환수(還收)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어찌 애당초 이런 일이 없었던 것과 같겠습니까? 신은 삼가 전하를 위하여 개연(慨然)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더욱 전일의 일을 징계하고 뒷날을 경계할 방도를 생각하시어 확연(廓然)히 깨우치는 통연(洞然)히 풀어주심으로써 상하의 사이에 다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신은 또 이 일로 인하여 아릴 말이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송(宋)나라의 신하인 주희(朱熹)가 효종(孝宗) 무신년(1819) 을 당하여 봉사(封事)를 올려 태자(太子)를 보익(補翼)하라는 말을 극진히 진달하였는데, 그 내용에 ‘신이 삼가 지난번의 성조(聖詔)를 보건대 황태자(皇太子)에게 서무(庶務)를 참여하여 결단하게 하였으니, 여기에서 성념(聖念)이 심오하여 앞으로 황태자에게 수시로 국가 정사(政事)의 득실(得失)을 습지(習知)시키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은 정사를 습지시키는 것이 수덕(修德)을 면려(勉勵)하는 것

王世子聽政之命，實出於殿下憂念國事之意。自今萬幾之繁，必減，靜攝之節，必勝，凡在群下，孰不懽欣抃祝，而臣竊聞諸道路所傳，日昨諸大臣入侍時，殿下多有未安之教。不識殿下，何爲而乃有此失言耶？惟我王世子聰明孝友，德學日就，仁聲仁聞，入人者深，四方延頸，莫不願爲之死。伏想聖意，夫豈有他，而王言一播，聽聞駭惑。雖因玉堂之請，卽許還收，亦豈若初無是事者哉？臣竊爲殿下慨然也。懇乞聖明，益思懲前戒後之圖，廓然開悟，洞然昭釋，使上下之間，無復有一毫疑阻之患焉。臣又因此而請有獻焉。臣嘗觀宋臣朱熹，當孝宗戊申上封事，極陳輔翼太子之說。其言有曰：“臣伏見頃日聖詔，令皇太子參決庶務。此見聖念之深，將使皇太子，以時習知國家政事之得失也。然臣則以爲使之習事，不若勉其修德，故臣竊論輔養之未至者，非有他也。但欲陛下，更留聖意於此而已。”蓋其意欲望於參決庶務之餘，益盡其講學、修德之功，眞可謂藥石之嘉謨也。更願殿下，取覽朱子本文，加意體行，以盡輔翼之

	<p>만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이 삼가 보양(補養)이 지극하지 못했다고 논한 것인데, 이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폐하(陛下)로 하여금 다시 성의(聖意)를 여기에 두기를 바라서인 것입니다.’ 했습니다. 대개 그 뜻은 서무(庶務)를 참여하여 결단하는 여가에 학문을 강론하고 덕을 수양하는 공부를 더욱 극진히 하기를 바라서였던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약석(藥石)과 같은 가모(嘉謨)인 것입니다. 다시 원컨대 전하(殿下)께서는 주자(朱子)의 본문(本文)을 가져다가 열람하여 보시고 더욱 본받아 실행하는 데에 뜻을 두어 보익(補翼)하는 도리를 극진히 하소서.”</p> <p>하니, 임금(上)이 답하기를, “소장에 진달한 말은 진실로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긴다.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p>	<p>道。 上答曰：“疏中陳言，稟出憂愛之忱，深用嘉尙。可不留心?”</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8월 1일 (임오) 8번째기사</p>	<p>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유(金樛)가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황당선(荒唐船)18228) 을 살피는 요망군(瞭望軍)이 장차 농사를 폐기하고 식량을 싸가지고 나가므로 파산(破産)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 중에 오래 근무한 사람을 기록하여 사로(仕路)를 허통(許通)시켜 주고, 또 상정(詳定) 여미(餘米)로 급료를 지급하게 하여 주소서.”</p> <p>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급료를 지급할 것을 허락하고 향장관(鄉將官)의 예(例)에 의거하여 50개월이 차면 계문(啓聞)하여 천전(遷轉)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世子)가 그대로 따랐다.</p>	<p>黃海監司金樛狀言： 荒唐船瞭望，將廢農，裹糧無不破産。請錄其久勤，許通仕路，且以詳定餘米給料。 至是，備局覆奏，許其給料，依鄉將官例，滿五十朔啓聞遷轉，世子從之。</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8월 11일(임진) 3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의 등쪽에 있는 신유(腎腧)의 좌우혈(左右穴)에 뜸을 떴다. 마치고 나서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군사들에 대해 지난해 흉년이 들었던 탓으로 번상(番上)을 정지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농사가 조금 나은 편이니 아주 중요한 숙위(宿衛)의 번상(番上)을 계속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 징</p>	<p>藥房入診。上背部腎腧左右穴受灸訖，提調閔鎭厚言：“禁衛、御營廳軍兵，上年因年荒停番矣。今年農事差勝，莫重宿衛，不可一向停番。依例徵番爲宜，而領議政金昌集，病不得入侍，</p>

	<p>번(徵番)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병 때문에 입시(入侍)하지 못하고 신에게 말을 전하여 보내면서 신에게 대신 주달하여 달라고 요구했기에 아뢰입니다.”</p> <p>하니, 임금이 10월부터 징번(徵番)하라고 명하였다.</p>	<p>送言於臣，要臣替達矣。”上命自十月徵番。</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8월 16 일(정유) 4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제조(提調) 김창집(金昌集)이 신병(身病)으로 인하여 연일 귀가(歸家)하여 휴식(休息)하고 있다가 이날 비로소 다시 입직(入直)하였는데, 이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소부(少府)의 좌우혈(左右穴)과 대도(大都)의 좌우혈(左右穴)과 협계(夾谿)의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이때 임금이 승릉(崇陵)18269 의 기신(忌辰)이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소식(素食)을 행하고 있었다.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p> <p>“성상(聖上)께서 춘추(春秋)가 이미 높으신데다가 질환(疾患)이 더욱 위중하신데 더구나 근래 잇따라 침을 맞았으니, 청컨대 단지 정일(正日)18270 에만 소식(素食)을 행하소서.”</p> <p>하고,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계속하여 여러번 청하니, 임금이 이에 힘써 따랐다. 김창집(金昌集)이 또 말하기를,</p> <p>“양군문(兩軍門)18271 의 군병(軍兵)들을 이미 징번(徵番)했습니다만, 총융군(摠戎軍)은 양영(兩營)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록 상번(上番)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숙위(宿衛)에 방해가 있는 데에 이르지 않습니다. 기근(飢饉)과 여역(癘疫)에 시달린 나머지 실로 식량을 싸가지고 상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마땅히 정번(停番)하게 해야 합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금오(金吾)18272 에 죄수가 적체되어 있는데 판의금(判義禁) 송상기(宋相琦)가 말미를 받아 외방에 나가 있으니, 제반 언의(讞議)에 대한 일을 마땅히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모두 그렇게 하게 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p>	<p>藥房入診。 都提調金昌集，以身病連日歸家將息，是日始復入直，仍入侍。上少府左右穴、大都左右穴、夾谿左右穴受鍼。 時，上以崇陵忌辰在明，方行素。 昌集言：“聖上春秋已高，疾患彌留，況近來連日受鍼，請只於正日行素。” 提調閔鎭厚，繼之屢請，上乃勉從。 昌集又言：“兩軍門軍兵，雖已徵番，而摠戎軍則與兩營有異。 雖不上番，宿衛不至有妨，而飢饉、癘疫之餘，實難裹糧上番，宜令停番。” 又言：“金吾滯囚，而判義禁宋相琦受由在外。 凡諸議讞之事，宜令次官舉行。” 上竝可之。 鎭厚言：“京畿海防踈虞，且有沿革之議，故臣於上年，以發遣李基夏審察之意，陳達蒙允，而適值凶歉，慮廚傳之弊，姑寢矣。 卽今基夏雖遞，海防主管之任，既是一時武宗，則宜有審察之舉。 畿甸年事亦稍勝，數日內使之發去似好。” 上從之。</p>

	<p>“경기(京畿)의 해방(海防)이 소홀하고 또 연혁(沿革)에 대한 의논이 있기 때문에 신이 지난해 이기하(李基夏)를 보내어 살피게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달하여 윤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흉년을 만나 주전(廚傳)18273)의 폐해를 우려하여 우선 정지했었습니다. 지금 이기하가 비록 체직되었으나 해방(海防)을 주관하는 임무는 이미 한 시대의 무관이 종주(宗主)가 되었으니 마땅히 심찰(審察)하는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기전(畿甸)18274)의 농사가 또한 조금 나아졌으니 수일 안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8월 30일(신해) 2번째기사</p>	<p>왕세자(王世子)가 시민당(時敏堂)에 앉아서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였다. 【대신(大臣)이 당(堂)에 올라가 절할 때에는 세자(世子)는 기립(起立)하고 대신이 자리에 부복(俯伏)했을 적에는 세자는 앉는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p> <p>“충청 감사(忠淸監司) 윤헌주(尹憲柱)가 장계(狀啓)를 올려 도내(道內)의 폐해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양호(養戶)18310)에 관한 일입니다. 1결(結)에 납입해야 하는 대동미(大同米)가 12두(斗), 세미(稅米)와 삼수미(三手米)18311)가 6두(斗)정도, 기타 잡비(雜費)가 2두(斗)정도, 본읍(本邑)의 치계가(雉鷄價)가 3두(斗), 사등(四等)18312)의 시초(柴草)와 탄거(炭炬)의 대가(代價)가 1두(斗)정도로 통틀어 계산하면 1결(結)에서 1년에 내야 하는 전세(田稅)는 쌀 24두(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양호(養戶)가 다른 사람들의 결부(結負)18313)를 취합(聚合)하여 스스로 호수(戶首)가 되고 결내(結內)의 경작자들이 납입해야 할 쌀을 거두어들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에는 수십여(數十餘)의 팔결(八結)의 것을 취합하고 작은 경우에도 십여(十餘)의 팔결(八結)을 밀돌지 않게 되는데 1결(結)에서 정조(正祖)로 1백 두(斗)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호(養戶) 가운데, 더욱 심한 자들은 1백 두의 예(例)를 적용하지 않고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관수(官需)·시초(柴草)·거탄(炬炭)·치계(雉</p>	<p>王世子坐時敏堂， 引接大臣、備局諸臣。【大臣升堂拜時，世子起立，大臣伏於座， 世子乃坐。】領議政金昌集曰：“忠淸監司尹憲柱， 狀論道內弊瘼， 而其一， 養戶事也。 大同一結納米十二斗、稅米及三手糧六斗許、其他雜費二斗許、本邑雉鷄價三斗四等、柴草·炭炬價一斗許， 摠計一結一年應役， 不過米二十四斗， 而養戶者， 聚合他人結負， 自爲戶首， 收捧結內作者所納， 而多者聚數十餘八結， 少者亦不下十餘八結， 一結徵正粗百斗。 養戶中尤甚者， 不用百斗之例， 稱以田稅、大同、官需、柴草、炬炭、雉鷄、氷丁等價， 其所侵虐， 千百其端。 遂使祖宗朝， 輕徭薄稅之政， 反作土豪輩剝民潤屋之資。 蓋聞戶曹無稅復戶， 每一</p>

鷄)·빙정(氷丁) 등의 대가(代價)라고 평계하고서 그들의 침학(侵虐)하는 방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조종조(祖宗朝)에서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세금(稅金)을 헐하게 하였던 정치를 도리어 토호배(土豪輩)들이 백성을 수탈하여 자신들의 자산을 불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개 듣기로는, 호조(戶曹)에서 ‘무세(無稅)한 복호(復戶)를 감안하여 1결(結)마다 정한 항식(恒式)이 쌀 25두(斗)에 불과하니, 지금도 이에(例)에 의거하여 25두를 항식으로 정하고 인하여 팔결(八結)의 규정을 폐지 하소서. 그리고는 한결같이 마을의 순서와 가좌(家座)의 위치에 따라 일률적으로 2,3결(結)씩을 1부(夫)로 만들어 토호(土豪)와 간리(奸吏)들이 실결(實結)에서 취합(聚合)하는 폐단을 방지하게 하소서. 25두(斗)를 거두어들인 뒤에는 전수미(田需米)와 삼수량(三手糧)을 계산하여 납입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각 고을에 지급하여 치계(雉鷄)와 잡물(雜物)을 관비(辦備)하는 데에 쓰게 한다면 실로 편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큰 고을은 이렇게 변통(變通)시키면 되겠지만 잔읍(殘邑)은 반드시 불편한 단서가 있게 될 것이다.’ 하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각 고을에 순문(詢問)하게 해서 좋은 쪽을 채택하여 변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건명(李健命)은 말하기를,
 “치계(雉鷄)와 시빙(柴氷)을 대가(代價)로 거두어들일 경우 고을의 대소(大小)와 전결(田結)의 다과(多寡)가 같지 않기 때문에 거두어들이는 쌀도 반드시 균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어떻게 일례(一例)로 항식(恒式)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호(養戶)의 폐해에 이르러서는 감사(監司)가 적발하여 엄중히 징계하게 한다면 폐단이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옳게 여겼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또 한 가지는 전정(田定)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양전(量田)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전지(田地)의 형태에 누차 변함에 따라 옛날에 진황전(陳荒田)이던

結定式, 不過米二十五斗。今依此例, 以二十五斗定式, 仍罷八結之規。一從里次家坐, 概以二三結作夫, 以防土豪、奸吏聚合實結之弊。二十五斗收捧後, 計納田需米、三手糧, 其餘給各邑, 辦備雉雞、雜物, 則實爲便當云, 而或以爲: ‘大邑如是變通可也, 殘邑則必有不便之端’云。令本道, 詢問各邑, 從長變通好矣。”兵曹判書李健命曰: “雉雞、柴氷, 以價收捧, 則邑之大小, 結之多寡不同, 捧米必不一。朝家何可一例定式, 而至於養戶之弊, 監司摘發嚴懲, 則庶可革矣。”世子可之。昌集曰: “其一, 田政也。改量既久, 田形屢變, 昔之陳荒者, 今多耕食, 故量時實結, 難以出役, 給災之際, 虛實易蒙。監司、守令, 不能逐處親檢, 敬差官之行, 亦難周視, 故每以前實結, 比諸今摠數, 必使準前數而已。且該曹慮結數減損, 雖當各穀俱歉之時, 給災名目, 不過成川浦落等處而已。爲守令者, 難於白地徵稅, 如初不付種, 全不掛鎌者, 或以成川浦落懸頃, 一經磨勘, 仍爲永頃。實結之年減縮, 蓋由於此。今年豐歉, 固不

것이 지금에는 경식(耕食)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양전할 당시의 실결(實結)에 따라 출역(出役)하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급재(給災)18314) 할 적에 허실(虛實)이 혼동되기가 쉬운데,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직접 점검할 수 없고 경차관(敬差官)의 행정에서도 두루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양 그 전의 실결(實結)을 지금의 총수(總數)에다 견주어 반드시 그 전의 수량에 맞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해조(該曹)에서 결수(結數)의 감손(減損)을 우려하여 비록 전담의 곡식이 모두 흉황(凶荒)일 때를 당하더라도 급재(給災)의 명목(名目)은 성천 포락(成川浦落)18315) 이 된 곳 등을 불과합니다. 수령이 된 사람은 아무 까닭없이 전세(田稅)를 징수하기는 곤란하여 처음부터 씨를 뿌리지 않아서 전혀 낫을 딸 수 없는 경우에는 간혹 성천 포락(成川浦落)이라고 현탈(懸頭)18316)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일단 마감(磨勘)을 거치면 인하여 영원히 현탈(懸頭)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실결(實結)이 해마다 감축(減縮)되는 것은 대개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입니다. 금년의 풍흉(豐凶)에 대해서는 진실로 미리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만, 만일 상풍년(上豐年)18317) 이 들면 그 전의 상풍년의 실결(實結)에 의하고 중년(中年)이나 하년(下年)이 들면 역시 그 전의 중년이나 하년의 실결에 의하여 십분 상세하게 결정한다면, 거의 위로는 지나치게 감손되는 데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침학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급재(給災)의 명목(名目)에 대해서는 본도(本道)로 하여금 실상에 따라 구별하게 하고 이어 수령에게 엄중히 신칙하여 영원히 현탈(懸頭)된 재전(災田)과 혼동하여 절대 함부로 급재(給災)하지 말게 한다면 오재(誤災)로 영원히 현탈되는 폐단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대(入對)한 여러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조처하는 것이 아마도 사의(事宜)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는 말하기를,
 “이는 오래도록 양전(量田)을 폐기한 소치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성상(聖上)께

能預料，而若以當上豐之歲，則依曾前上豐之實結，中年、下年，亦依曾前中、下年十分詳定，則庶幾上不至過損，下不至厲民。若其給災名目，許令本道，從實區別，仍又嚴飭守令，永頤之災，切勿混同濫給，則誤災永頤之弊，可以少紓云。下詢於入對諸臣而處之，恐爲合宜。” 禮曹判書閔鎭厚曰：“此由於久廢量田之致，故聖上爲是之慮，既有改量之命。今年則令監司，詳察形勢，如有事目中變通者，則使之隨即申聞宜矣。” 健命曰：“年分事目既頒，今難變通。以成川浦落，勿爲過濫之意，更爲嚴飭宜矣。” 世子命各別申飭。昌集又曰：“其一，身役事也。納布二疋者，若當豐歲，則出米二十餘斗，方可辦二疋，而一家之內，或父子三四人納布，則所出米多或五六石，殘氓安得保活？納米十二斗者，比納布之役甚輕，故富民行賂者，投屬於納米歇役，或加其歲，卽出公文，脫漏閑遊，殘民無路者，盡入於納布苦役，終至流離失所，死不還鄉，逃故之狀，亦未成出。此軍簿所以太半爲虛，而白骨隣族之弊所由生也。今

서 이를 걱정하여 이미 다시 양전을 하라는 명령이 계셨습니다. 금년에는 감사(監司)로 하여금 형세를 상세히 살피게 하여 만일 사목(事目) 가운데 변동시킬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시 신문(申聞)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견명(李健命)은 말하기를,

“연분(年分)18318) 에 대한 사목(事目)은 이미 반포하였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변동시키기가 곤란합니다. 성천포락(成川浦落)이라고 과람(過濫)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다시 엄중히 신칙(申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각별히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김창집(金昌集)이 또 말하기를,

“또 한 가지는 신역(身役)에 대한 일입니다. 벼[布] 2필(疋)을 바쳐야 하는 경우 만약 풍년을 당하면 쌀 20여 두(斗)를 내어야만 그제야 2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집안에서 혹 부자(父子) 3,4인이 벼를 바치게 될 경우 내어야 하는 쌀이 많으면 혹은 6석(石)이나 되니, 지친 백성들이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쌀 12두(斗)를 바치는 것은 벼를 바치는 신역가(身役價)에 비하여 보면 매우 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줄 수 있는 부민(富民)은 쌀을 바치는 험한 신역에 투속(投屬)되는가 하면 혹 그 해로 즉시 공문(公文)을 내주기 때문에 탈루(脫漏)되어 한가히 노닐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줄 수가 없는 잔민(殘民)들은 모두 벼를 바치는 괴로운 신역(身役)에 편입되어 끝내는 살 곳을 잃고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사망(死亡)합니다. 그리고 도망(逃亡)하거나 물고(物故)한 실상을 또한 상세히 조사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적(軍籍)의 태반이 허위가 되고 있는 이유이고 백골(白骨)에 대한 징세(徵稅)와 인징(隣徵)·족징(族徵)의 폐단이 생기게 되는 까닭인 것입니다. 지금 만약 어떠한 형태의 신역(身役)이라도 구애하지 말고 사람마다 각기 벼 1필과 쌀 6두(斗)를 항식(恒式)으로 정한다면 편중(偏重)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자세히 강구(講究)하여 조치하시기

若勿拘某色身役，每名各以布一疋，米六斗定式，則可無偏重之弊，必須熟講而處之矣。” 鎮厚曰：“曾前釐整廳節目，以錢布參半，明有定式，而其後錢貴，則捧純木，木貴則捧純錢，米木相半，亦何異於此哉？況兵曹則元無用米之處，騎、步兵身役，以米捧之，豈無掣肘之弊乎？” 昌集仍請姑置此事，以俟更議，世子可之。 昌集曰：“邸下春秋鼎盛，既已淹貫古今治亂之迹，亦復濡染於大朝裁決之際，明習已久，其於爲國何有！向者敬怠典學之聖批，實是古聖王傳授之旨訣。 敬者，主一無適。 心之操存省察，莫不以敬爲本，而怠忽或乘，則國之存亡，係焉。 持敬正心之工，不可不勉，而學者非讀誦而已。 必心得依驗而後，可以燭萬理而明事務。 邸下於斯二者，加意力行，則國家之福，可勝言哉？” 世子曰：“遽承非常之命，夙夜憂懼，不遑寧處。 所達極好，當惕念矣。” 鎮厚曰：“人之能濟事者，必以立志爲先。 志於聖而聖，志於賢而賢，志於王而王，志於霸而霸，皆由自期之如何。 常以三代爲準，然後方可以有成矣。 志雖立矣，

	<p>바랍니다.”</p> <p>하고, 민진후는 말하기를,</p> <p>“전일에 이정청(釐整廳)의 절목(節目)에 의하면 전(錢)과 포(布)를 반반씩으로 하도록 명백하게 항식(恒式)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뒤 전(錢)이 귀하면 순목(純木)으로 받아들이고 포(布)가 귀하면 순전(純錢)으로 받아들였으니, 쌀과 포목을 반반씩으로 하는 것이 또한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구나 병조(兵曹)에서는 원래 쌀을 쓸 곳이 없는데 기병(騎兵)·보병(步兵)의 신역(身役)을 쌀로 받아들이니, 어찌 제지(制止)되는 폐단이 없겠습니까?”</p> <p>하였다. 김창집이 이어 이 일은 우선 보류하여 두었다가 다시 의논하기로 하자고 청하니, 세자(世子)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p> <p>“저하(邸下)께서는 춘추(春秋)가 한창 젊으시고 이미 고금의 치란(治亂)에 대한 자취를 익히 아시고 또한 대조(大朝)께서 재결(裁決)하는 즈음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어 분명하게 익히신 지 이미 오래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난번 공경·태만과 시종 학문에 뜻을 두라고 하신 성비(聖批)는 실로 옛 성왕(聖王)들이 전수(傳授)하였던 지결(旨訣)인 것입니다. 경(敬)이란 것은 마음을 한군데 집중하여 잡념(雜念)을 버리는 일인데, 마음을 조존(操存)하고 성찰(省察)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경(敬)을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만하거나 소홀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끼어들게 되면 나라의 존망(存亡)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敬)을 지니고 마음을 바루는 공부를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우는 것은 독송(讀誦)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경험에 의해서 확인한 뒤에야 온갖 사리에 밝아져서 사무를 명백히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하(低下)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더욱 유의하여 힘써 행한다면 국가의 복록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세자(世子)가 이르기를,</p>	<p>人君不可以獨理，須得同德之大臣，委任責成，而旁招俊乂，列于庶位，然後百度惟貞，可臻太平之休。既已得人之後，又必勤於爲政。雖以文王之聖，猶且日昃不遑暇食。《無逸》一篇，無非勤勞之意，觀於此而可知矣。然不必遠法古昔，卽今聖上勤政之德，邸下所親覩，伏望必以聖上爲法焉。且若不學問，則雖欲立志，迷所嚮往，雖欲得人，貿觀賢邪，雖欲勤政，只歸衡石之程。此聖上所以特揭吾學之訓，諄諄爲教，而爲學之道，必主於敬，故以敬怠之分，勉戒之。堯、舜、禹相傳之心法，不外於此，誠宜念茲在茲也。”世子曰：“所達誠好。可不各別留意耶?”健命曰：“古人有言曰：‘欲法三代，先法祖宗。’頃者聖上敬怠、典學之訓，誠爲切實矣。邸下於一動一靜之間，克體勉戒之訓，則不必遠求堯、舜，可以取則於宮庭之內矣。”世子曰：“所達好矣。當留意焉。”校理黃龜河、輔德尹陽來、說書趙最壽等，繼進勉學之戒，世子竝嘉納之。執義權焜申前達，又言：“統制使李尙畚，才本庸碌，年迫七十。嶺左兵闖之爲</p>
--	--	---

“갑자기 비상(非常)한 명령을 받들었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편안히 거처한 겨를이 없다. 진달한 내용이 매우 좋으니, 마땅히 두려워하여 유념하겠다.”

하였다. 민진후가 말하기를,

“사람이 일을 잘 완성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입지(立志)를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에 뜻을 두면 성인이 되고 현인(賢人)에 뜻을 두면 현인이 되고 왕도(王道)에 뜻을 두면 왕도를 이루고 패도(霸道)에 뜻을 두면 패도를 이루는 것이므로, 모두 스스로 기약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연유되는 것입니다. 항상 삼대(三代)18319)를 표준으로 삼은 다음에야 바야흐로 성취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意志)가 비록 확립(確立)되었더라도 군주로서는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니 반드시 덕을 같이하는 대신(大臣)을 얻어 위임(委任)한 다음 성취를 책임지우고, 널리 준예(俊乂)를 불러 여러 직위(職位)에 포열(布列)시켜 놓은 연후에야 모든 법도가 올바르게 되어 태평의 아름다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책임자를 얻고 나서는 또 반드시 정사에 근면하여야 합니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은 성인인데도 오히려 해가 기울도록 밥먹을 겨를도 없이 근면하였습니다. 무일편(無逸篇)18320)은 모두가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내용이니 여기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근면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옛날을 본받을 필요없이 지금 성상(聖上)께서 정사에 근면하시는 덕의(德意)를 저하(邸下)께서 직접 눈으로 보셨으니, 삼가 바라건대 반드시 성상(聖上)으로 모범을 하소서. 그리고 만약 학문(學問)을 하지 않으면 비록 입지(立志)를 하려고 해도 지향할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고 비록 책임자를 얻으려 해도 현사(賢邪)의 관찰이 혼동되게 되고 비록 정사에 근면하려고 해도 형석(衡石)의 일과(日課)18321)에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상께서 특별히 학문에 뜻을 두라는 훈계를 계시(揭示)하여 자상하게 분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을 하는 방법에

政，轉益荒耄，而遽移首闕，物情爲駭。請遞差。南原縣監鄭赫先，居官苛愎，處事乖戾，請遞差。”世子並不從。司諫趙鳴鳳申前達，世子不從。

있어서는 반드시 경(敬)에 근본해야 되기 때문에 경태(敬怠)의 구분에 대해 면계(勉戒)하신 것입니다. 요제(堯帝)·순제(舜帝)·우왕(禹王)이 서로 전해준 심법(心法)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진실로 항상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이르기를,
“진달한 내용이 진실로 좋다. 각별히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진명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삼대(三代) 때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성상(聖上)께서 경태(敬怠)와 학문에 뜻을 두라고 하신 훈계는 진실로 절실(切實)한 것이었습니다. 저하(邸下)께서 일동일정(一動一靜)의 사이에 면계(勉戒)하신 훈계를 잘 본받아 실행한다면 멀리 요순(堯舜)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이 궁정(宮庭) 안에서 모범(模範)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이르기를,
“진달한 내용이 좋다. 마땅히 유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교리(校理) 황귀하(黃龜河)·보덕(輔德) 윤양래(尹陽來)·설서(說書) 조최수(趙最壽) 등이 계속해서 학문에 힘쓰라는 경계를 진달하니, 세자가 모두 옹계 여겨 받아들였다. 집의(執義) 권엽(權焜)이 전일에 진달한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통제사(統制使) 이상집(李尙畬)은 재주가 본디 용렬한데다 나이도 70에 이르렀습니다. 영좌(嶺左)의 병곤(兵關)18322) 에 대한 정사(政事)18323) 가 갈수록 더욱 거칠고 혼몽(昏瞢)하였는데 갑자기 수곤(首關)18324) 을 체이(遞移)시켰으므로 물정(物情)이 놀라고 있으니, 청컨대 체차(遞差)시키소서. 남원 현감(南原縣監) 정혁선(鄭赫先)은 관직에 있으면서 가혹(苛酷)하고 괴팍하여 처사가 사리에 어긋났으니, 청컨대 체차시키소서.”

	<p>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모두 따르지 않았다. 사간(司諫) 조명봉(趙鳴鳳)이 전일에 진달했던 것을 다시 진달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9월 13일(갑자) 1번째기사</p>	<p>공조 판서(工曹判書) 조태채(趙泰采)가 호서(湖西)에서 돌아와서 상서(上書)하기를, “호중(湖中)의 농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어 받아들인 곡물(穀物)을 이전(移轉)하여 내년 봄의 진구(賑救)에 대비하게 할 것과 재상(災傷)을 입은 면전(綿田)에도 마땅히 급재(給災)해야 할 것을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상당 산성(上黨山城)은 【청주(淸州)에 있다.】 안은 편편하고 밖은 험준하여 관서(關西)의 자모성(慈母城)과 서로 백중(伯仲)될 수 있는 성입니다. 다만 동쪽에는 규봉(窺峯)18342) 이 있고 남쪽에는 대장(對嶂)18343) 이 있어 이것이 조금 흠이 되기는 합니다만, 청주(淸州)의 읍치(邑治)18344) 가 평야(平野)에 위치하고 있어서 만일 경급(警急)한 일이 발생하면 의거(依據)할 데가 없었는데 10리쯤 되는 곳에 이러한 의귀(儀歸)할 만한 데가 있으니,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성(體城)의 축조가 매우 견고하고 치밀하여 그 공역(工役)을 논한다면 또한 이미 절반이 넘었으니, 불과 수삼 개월이면 공역을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병사(兵使)로 하여금 미리 요리(料理)하여 축조하게 하고 나서 이번 별과(別科)의 무과 출신(武科出身)들을 부방(赴防)을 면제시키고 대신 이 산성(山城)에다 쌀을 바치게 하여 군량(軍糧)을 만든다면 일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그 뒤 묘당에서 복주(覆奏)하니 아울러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p>	<p>甲子/工曹判書趙泰采，還自湖西，上書言： 湖中穡事失稔，仍請捧留移轉穀物，以備來春賑需，綿田之被災者，亦宜給災。 又言： 上黨山城，【在淸州。】內平外險，與關西之慈母，可爲伯仲。第東有窺峰，南有對嶂，此爲少欠，而淸之邑治，處於平野，脫有警急，無以據。以外里之地，有此依歸之所，不宜歆視。且體城之築，極爲堅緻，論其功役，亦既過半，不過數三朔可以完訖。若令兵使，預爲料理，既築之後，今番別科武科出身，使之除防，納米於山城，作爲軍餉，則事涉便好。 世子令廟堂稟處。其後廟堂覆奏，竝皆許施。</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9월 20일(신미) 3번째기사</p>	<p>왕세자(王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근일 잇따라 소대(召對)하고 있는데 궁관(宮官)18353) 이 진달하는 문의(文義) 이외에는 별로 하문(下問)하시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p>	<p>王世子引接大臣、備局諸臣。領議[政] 金昌集曰：“伏聞近日，連爲召對，而宮官陳達文義之外，別無下問之事。凡講學之規，上下交相討論，反</p>

체로 학문(學問)을 강론하는 규정은 상하(上下)가 서로 토론하여 반복해서 탐구한 다음에야 고금(古今)의 치란(治亂)과 득실(得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궁관(宮官)으로 하여금 한 번 읽어 넘기게만 할 뿐이라면 그저 겉치레일 뿐인 것입니다. 이 뒤로는 저하(邸下)께서 문의(文義)를 짐출(拈出)해 내어 서로 변론하고 논란한다면 실제의 공부에 이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이르기를,
 “진달한 바가 진실로 좋다. 이 뒤로는 유의(留意)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송상기(宋相琦)가 말하기를,
 “제왕(帝王)의 강학(講學)은 위포(韋布)18354 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서(經書)를 읽을 적에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여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체험(體驗)의 바탕으로 삼고 사기(史記)를 읽을 적에는 반드시 반복하여 토론함으로써 감계(鑑戒)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그리고 자주 궁료(宮僚)를 인접하시어 강론(講論)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실로 오늘날의 급무(急務)인 것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이르기를,
 “서연(書筵)은 마야흐로 시탕(侍湯) 중에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지만 소대(召對)는 간간이 행하려고 하고 있다.” 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흥경(金興慶)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내용에 면전(綿田)의 재황(災荒)과 논에 벼씨를 늦게 뿌린 것, 늦게 이앙(移秧)한 것과 수변(水邊)의 서숙(黍粟)에 대한 재앙 등은 명목(名目)이 이미 많아서 남잡(濫雜)해지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절서(節序)가 이미 늦었으니, 더욱 청한 것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시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그렇게 하게 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권엽(權聃)이 장계를 올려 재해(災害)를 입은 것이 더욱 극심한 고을의 오래된 환자[還上]와 신포(身布)는 모두 봉납(捧納)을 정지시

復尋繹，然後可知古今理亂得失。只令宮官，一番讀過而已，徒爲文具。此後則邸下拈出文義，互相辨難，則可以有益於實工矣。”世子曰：“所達誠好。今後當留意焉。”吏曹判書宋相琦曰：“帝王講學，與韋布有異，讀經書則必沈潛紬繹，以爲體驗之地，讀史記則必反復討論，以爲監戒之方。日數引宮僚，講論不怠，實爲今日之急務。”世子曰：“書筵則方在侍湯中，故不得開筵，而召對則欲爲間行耳。”昌集又言：“京畿監司金興慶，狀請綿田災及畝之晚付種、晚移秧、水邊黍粟等災，而名目既多，易致濫雜。況今節序已晚，尤難準其所請，宜勿施。”世子可之。昌集又言：“慶尙監司權聃，狀請被災尤甚邑舊還上、身布，竝停捧，之次、稍實亦請減捧矣。此則待分等狀達上來，朝家自當參酌稟處，而又其所請推奴、徵債、防塞事，連年停止，亦不無弊端，而他道亦既停止，此亦許其停止無妨矣。”世子可之。司諫趙鳴鳳申前達，又言：“興海郡守鄭擔，年邁才疎，昏不事事，信任奸吏，賂門大開，闔境嗷嗷，如在水

킬 것을 청하였고, 다음으로 열매가 조금 여문 고을도 봉납을 감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는 분등장(分等狀)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조정에서 스스로 참작하여 품처(稟處)하겠습니다만, 그가 또 칭한 추노(推奴)·징채(徵債)·방새(防塞) 등의 일은 이를 해마다 정지하면 또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도(他道)도 이미 정지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정지할 것을 허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그렇게 하게 하였다. 사간(司諫) 조명봉(趙鳴鳳)이 전일에 진달한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흥해 군수(興海郡守) 정담(鄭擔)은 나이가 많고 제주도 거칠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간리(奸吏)들을 신임하여 너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므로 경내(境內)가 시끄럽기가 물불 속에 있는 것과 같으니, 청컨대 과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지평(持平) 김상윤(金相尹)이 전일에 진달(進達)한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엇그제 연석(筵席)의 가운데서 온양(溫陽)의 무과(武科)에서 대신 활을 쏜 사람들에게 납속(納贖)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대신 활을 쏜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따라서 충군(充軍)시키는 것은 당연한 형률(刑律)인 것입니다. 일찍이 선조(先朝)에서도 온양에 거둥하실 적에 대신 활을 쏜 사람들에게 납속(納贖)하게 한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는 한때 권도(權道)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결단코 전례(前例)로 원용(援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영갑(寧甲)18355) 을 고친다면 과장(科場)이 이로부터 엄중해지지 않아서 간사하고 외람된 자들이 금즙(禁戢)할 줄 모르게 될 것이니, 청컨대 온양의 무과에서 대신 활을 쏜 사람들에게 납속(納贖)하게 하라고 한 명령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았다.

火。請罷職。”世子不從。持平金相尹申前達，又言：“伏聞日昨筵中，有溫陽武科代射人納贖之命。夫代射何等重罪，而充軍自是當律。曾於先朝溫幸時，雖有代射人納贖之舉，此不過一時權行，決不當援以爲例。今若變改令甲，則科場自此而不嚴，奸濫亦無以知戢，請寢溫科代射人納贖之命。”世子不從。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9월 28 일(기묘) 2번째기사</p>	<p>함경도 감사(咸鏡道監司) 이탄(李坦)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본도(本道)는 양내(量內)와 양외(量外)를 가지고 원전(元田)과 속전(續田)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원전(元田)은 이미 양내(量內)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상세(常稅)를 징수하고 또 공물(貢物)을 봉납(捧納)하고 또 본고을의 수용(需用)인 잡물(雜物) 20여 종을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전(續田)은 이러한 종류의 잡역(雜役)이 없이 약간의 마포(麻布)만 납입할 뿐이고 기전(起田)하는 데 따라 전세(田稅)를 징수하기 때문에 경중(輕重)과 고흥(苦歇)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모두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여 험한 것을 취택하기 때문에 원전(元田)은 날로 황무지가 되고 속전(續田)은 해마다 개간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미년(1836)에 도신(道臣)의 계문(啓聞)에 따라 양내(量內)에 들어 있는 오래 된 진전(陳田)을 다시 기전(起田)한 경우 이를 속전(續田)에 붙여 드디어 잘못된 법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원전(元田)과 속전(續田)의 결수(結數)가 거의 서로 대등(對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헤아려 보건대 다만 원전과 속전을 똑같이 기전(起田)하는 대로 전세(田稅)를 받아들여야 되고, 원전 가운데 진전(陳田)이 된 것은 특별히 감세(減稅)를 허가하고, 원전 가운데의 진전으로서 속전(續田)에 붙여진 것은 원전에 소속시킨다면 그 혜택을 고르게 하고 원망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과거에 본도(本道)의 진구(賑救)를 감독할 적에 경흥(慶興) 한 고을의 양내(量內)에 들어 있는 원전(元田)에 대해서는 기전(起田)하는 대로 전세(田稅)를 거두기를 청했었는데, 조정에서 즉시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뒤 10년 사이에 민호(民戶)가 불어나고 전결(田結)도 증가되었으니, 이제 한 고을에 시험하여 효과를 본 것으로 감히 한 도(道)에 골고루 시행할 것을 청합니다.”</p> <p>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이를 허락하였다.</p>	<p>咸鏡監司李坦狀言： 本道以量內、量外，爲元田、續田之別。元田則既在量內，故逐年徵其常稅，又捧其貢物，又責其本官所需雜物二十餘種。續田則無此等雜役，而只納若干麻布，而隨起收稅，輕重苦歇不同。民皆避苦趨歇，故元田日蕪，而續田歲闕。加以己未年道臣啓聞，以量內久陳之還起者，付於續田，遂成謬規。今至元、續結數，幾於相等。參量掇弊之道，惟在元田與續田，一體隨起收稅，元田之陳棄者，特許減稅，元陳而付於續田者，還屬元田，則可以均其惠而紓其怨矣。臣於頃年監賑本道時，慶興一邑量內元田，敢請隨起收稅，而朝家卽許採施。其後十年之間，民戶有加，田結亦增，今以已試一邑而見效者，敢請均施於一道。備局覆奏，許之。</p>
<p>숙종 60권, 43년</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두부(頭部)에 있는 풍지(風池) 좌</p>	<p>藥房入診。上頭部風池左右穴、手部</p>

<p>(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0월 3 일(계미) 5번째기사</p>	<p>우혈(左右穴)과 수부(手部)에 있는 내관(內關)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있는 행간(行間)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지난번 평안도 감사(平安道監司)의 장본(狀本)에서 진구미(賑救米) 얻기를 청한 것으로 인하여 강화(江華)의 쌀 5천 석(石)을 이전(移轉)하는 일로 복주(覆奏)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강화 유수(江華留守) 최석항(崔錫恒)이 또 장계를 올려 본부(本府)의 군량으로 현재 남아 있는 수량이 적다는 것으로 누누이 논집(論執)하였습니다. 관서(關西)는 타도(他道)와 달라서 앞으로의 형세가 진실로 절급(切急)하니, 그 소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이르기를, “관서(關西)의 참혹한 재황(災荒)이 이러하니 5천 석을 어찌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체로 이전(移轉)한 곡식은 반드시 일일이 환보(還報)하게 한 연 후에야 위급한 때에 수용(需用)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가을로 물려서 봉납(奉納)할 것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읍(本邑)에 봉납하여 유치시키기를 청하기도 하면서 매양 물린다고 핑계하여 환상(還償)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내가 일찍이 이런 습관을 미워하고 있으니, 이 뒤로는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신칙하여 반드시 이전한 곡식의 수량대로 본소(本所)에 환납(還納)하게 할 것이고 전일과 같은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p>	<p>內關左右穴、足部行間左右穴，受鍼訖，都提調金昌集言：“頃因平安監司狀本，請得賑穀，以江華米五千石移轉事，覆奏矣。江華留守崔錫恒，又此狀論本府軍餉，時存數少，縷縷爭執，而關西異於他道，而前頭形勢，誠爲切急，不可不應副矣。”上曰：“關西災荒之慘如此，五千石何可不送乎？大概移轉之穀，必須一一還報，然後可爲緩急之需，而或請待秋退捧，或請捧留本邑，每每退托，不爲還償，以致軍餉漸縮。予嘗惡此習。今後則廟堂各別申飭，必令准數，還納於本所，俾無如前之弊。”</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0월 7 일(정해) 2번째기사</p>	<p>남양 부사(南陽府使) 홍호인(洪好人)이 상소하기를, “본부(本府)에 해일(海溢)이 더욱 심하여 연사(年事)가 흉년이 들었으니, 원컨대 전결(田結)에 급재(給災)하여 주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금년 봄 진구(賑救)를 실시할 적에 옮겨온 각처의 미곡(米穀)을 모두 본부(本府)에 봉납(奉納) 유치(留置)하게 하여 주소서.”</p>	<p>南陽府使洪好人上疏言，本府海溢滋甚，年事失稔，乞加給災結。又請今春設賑時，移轉各處米穀，並捧留本府，備局覆奏以爲，節晚後續續給災，必有冒濫之弊，只許南漢米捧留本府。</p>

	<p>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절서(節序)가 늦은 뒤에 계속적으로 급재(給災)하는 것은 반드시 모람(冒濫)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단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미곡만 봉납하여 본부(本府)에 유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1월 2 일(임자) 1번째기사</p>	<p>청사(淸使)인 상사(上使)·부사(副使)와 통관(通官)들이 한 방에 회좌(會坐)하였는데, 청사가 역관(譯官)들을 불러들여 요구하는 물품(物品) 수집 가지를 써서 붙여 보냈다. 거기에 인삼(人蔘)이 2근이고 초피(貂皮)가 2백 영(領)인데, 다른 물품도 모두 이와 같았다. 영접 도감(迎接都監)에서 진달하니, 세자(世子)가 참작하여 지급하게 하였다.</p>	<p>壬子/淸使上、副使，與通官輩，會坐一房，招入譯官，書付所求物數十種。人蔘二斤、貂皮二百領，他皆稱是。迎接都監以聞，世子命參酌給之。</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1월 6 일(병진) 2번째기사</p>	<p>선혜청(宣惠廳)에서 말하기를, “지난해 흉년이 든 탓으로 호서(湖西)·호남(湖南)·영남(嶺南)의 감영(監營)에 관청(官廳) 수요(需要)를 모두 8분의 1을 감하였고 각종 응하(應下)18441) 할 것도 8분의 2를 감하였으므로, 경기(京畿) 감영(監營)의 잡비(雜費)도 8분의 2를 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사(年事)가 조금 넉넉해져 신결(新結)의 전세(田稅)도 이미 받았으니, 청컨대 이제 10월부터 복구(復舊)할 것을 알리게 하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그렇게 하게 하였다.</p>	<p>宣惠廳言：“上年以年凶之故，湖西、湖南、嶺南營官需，竝減八分之一，各樣應下者，減八分之二。京畿雜費，亦減八分之二矣。即今年事稍優，新結已出，請自今十月爲始，知委復舊。”世子可之。</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1월 7 일(정사) 2번째기사</p>	<p>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진달한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객사(客使)가 나왔을 적에 의주(義州)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길을 막고 기항(饑荒)이 특별히 극심하니 기항을 구제하게 하여 줄 것과 환상곡(還上穀)과 신역(身役)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등의 말을 가지고 객사(客使)에게 호소하자, 객사가 말을 머물러 세우고 위로한 다음 돌아가 황상(皇上)에게 주문(奏聞)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합니다. 이는 실로 전고에 없었던 변괴이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수창인(首唱人)을 조사해 내어 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게 하소서. 의주(義州)를 맡긴 의도가 본디 범연한 것이 아닌데 이러한 전일에 없던 변괴가</p>	<p>諫院申前達。又言：“客使之出來也，義州民人等，齊會遮路，以饑荒特甚，願蒙濟饑，還上、身役難堪等語，呼訴客使，客使駐馬勞問，以歸奏皇上爲答云。此實前古所無之變怪。請令本道，查出首唱人，按律處斷。灣上委寄，本非偶然，而有此無前之變怪，其不能檢民之罪，在所難免。請當駭</p>

	<p>발생했으니 그 백성들을 잘 단속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해당 지방관(地方官)을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이번 공청(空靑)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 백성들이 사사로이 치사(致謝)할 수 없는 것인데, 황주(黃州)·송도(松都)의 백성들이 길가에 모여서 객사(客使)에게 치사(致謝)하였다고 합니다. 일이 놀랍고 한탄스럽기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양도(兩道)로 하여금 수창인(首唱人)을 찾아내어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매기게 하소서.”</p> <p>하니, 세자(世子)가 의주(義州)의 백성들의 일에 대해 답하기를, “전일에 듣지 못하던 일이므로 진실로 매우 놀라운 일이다. 수창인(首唱人)을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신문(申聞)하게 한 다음 품처(稟處)케 하라.”</p> <p>하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다.</p>	<p>[當該] 地方官罷職。 今此空靑之齋來，本非民人私自致謝之事，而黃州、松都民人，聚會路傍，致謝客使云。事之駭惋，莫此爲甚。 請令兩道，查出首唱人，考律勘罪。” 世子答義州民人事曰：“前所未聞，誠極痛駭。 首唱人，其令本道查出，申聞後稟處。” 餘不從。</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1월 8일(무오) 1번째기사</p>	<p>강원 감사(江原監司) 김상직(金相稷)이 장계(狀啓)를 올려 회양(淮陽)·금성(金城) 두 고을의 흉참(凶慘)스러움을 진달하고 대동세(大同稅)를 감면해 줄 것을 청하였다. 또 상평청(常平廳)·진휼청(賑恤廳)의 모곡(耗穀)을 획급(劃給)해 주기를 청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p> <p>“청컨대 호조(戶曹)의 모곡(耗穀) 8백 석을 금성(金城)에 획급하고, 회양(淮陽)에는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를 반감(半減)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世子)가 그대로 따랐다.</p>	<p>戊午/江原監司金相稷，狀陳淮陽、金城兩邑之慘凶，乞減大同，又請劃給常、賑兩廳耗穀。 備局覆奏：“請給戶曹耗穀八百石於金城，而半減淮陽田稅、大同。” 世子從之。</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1월 10일(경신) 4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수부(手部)에 있는 신문(神門) 좌우혈(左右穴), 족부(足部)에 있는 임읍(臨泣)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마치고 나서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p> <p>“근년 이래 잇따라 성후(聖候)가 미령했던 관계로 겨울철의 계복(啓覆)18448 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상께서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하시겠다고 분부(分付)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군신(群臣)들의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절박하였지만 봉승(奉承)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문서(文書)가 많지만 지금 안질(眼疾)이 이러하므로 사제가 거행하기 어려우니, 정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p>	<p>藥房入診。 上手部神門左右穴、足部臨泣左右穴受鍼訖， 都提調金昌集言：“近年以來，連值聖候違豫，冬日啓覆，久不得爲之，而昨年則自上以強疾行之爲教，故其時群臣之心，極爲悶迫，而不得不奉承矣。 今年則文書多，而卽今眼患如此，勢難舉行，停止似宜矣。” 上命停止。 昌集又曰：“今年三南農事，雖曰稍稔，而新舊還上，若一</p>

	<p>하니, 임금의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금년에 삼남(三南)의 농사가 풍년이 들기는 하였으나 신구(新舊)의 환상(還上)을 한꺼번에 독촉하여 받아들인다면 소란이 일어날 폐단이 있을까 두려움으로 구환상(舊還上)은 모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청 감사(忠淸監司) 윤헌주(尹憲柱)가 장계(狀啓)를 올려 조금 부실(富實)해진 고을의 구환상(舊還上) 가운데 병신년(1844) 조는 징봉(徵奉)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복계(覆啓)하자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도(道)의 구환상을 이미 모두 징봉을 정지하게 하였으니, 호서(湖西)도 마땅히 다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똑같이 징봉을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다시 분부(分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時督捧，則恐有騷擾之弊，故舊還上，皆不舉論，而忠淸監司尹憲柱狀請，稍實邑舊還上中，丙申條徵捧，故覆啓許之矣。諸道舊還上，既皆停捧，則湖西，亦不宜異同，一體停捧之意，更爲分付似好矣。”上可之。</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1월 21 일(신미) 2번째기사</p>	<p>정언(正言) 조상경(趙尙綱)이 상서(上書)하기를, “양전(量田)하는 역사(役事)를 갑자기 거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청컨대 먼저 몇 고을에 시험하여 그 공효를 살펴보소서. 이전(移轉)한 곡식을 본소(本所)에 수송하여 납입하게 하는 것은 실로 먼 지방 백성에게 폐단이 되니 우선 본 고을에다 봉납(捧納)하여 유치(留置)하게 하소서.”</p> <p>하니, 세자(世子)가 매양 고식적(姑息的)인 정사를 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답하였다.</p>	<p>正言趙尙綱上書言：“量田之役，有難猝舉。請先試數邑，以觀其效。移轉輸納本所，實爲遐氓之弊。姑宜捧留於本邑。”世子以不可每行姑息之政，答之。</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1월 22 일(임신) 3번째기사</p>	<p>경상 감사(慶尙監司) 권업(權晳)이 상서(上書)하여 양전(量田)하는 정사를 정지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는데, 말하기를, “도내(道內)에서 그대로 예전에 양전(量田)한 것을 적용하여 온 지가 거의 1백년이 가까왔으니, 전정(田政)이 문란하고 부역(賦役)이 고르지 못한 것은 진실로 대신(大臣)이 진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 구습(舊習)에 따라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껏 다시 검칙(檢飭)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찌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을 소란시킬 것을 우려하여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80여 년 사이에 어찌 한두 번쯤 풍년든 때가 없었겠습니까마</p>	<p>慶尙監司權晳，上書乞寢量政，有曰：道內之因用舊量，殆近百年，田政之紊亂，賦役之不均，誠如大臣所達。而朝家之因循許久，尙未改檢者，豈以洊歲凶歉，爲慮擾民而莫之行耶？八十餘年間，亦豈無一二稍稔之歲，而猶不能行者，無乃以人心不古，奸竇難防，不能善變，而有未敢輕議耶？</p>

	<p>는, 그래도 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인심이 옛날과 같지 못한 탓으로 간사한 길을 막기가 어려워 잘 변통시킬 수 없어서 감히 경솔하게 의논을 내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p> <p>하니, 세자(世子)가 답하기를,</p> <p>“지금 다시 양전(量田)하는 것은 진실로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니, 조속히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世子答曰：“今茲改量，誠是不得已之事，從速舉行。”</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1월 25 일(을해) 1번째기사</p>	<p>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p> <p>“함경 감사(咸鏡監司) 이탄(李坦)이 장계를 올려 본도(本道)의 흉년에 대해 진달하면서 진곡(賑穀)을 판출할 길이 없으니 공명첩문(空明帖文)18479) 5, 6백 장을 보내 줄 것을 청하여 왔습니다. 의당 혜조(該曹)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게 해야 하겠습니다. 경상 감사(慶尙監司) 권엽(權翊)의 장본(狀本)에 목화(木花)에 대한 급재(給災)를 더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만, 이제 이미 절서(節序)가 늦었으니 추후에 더 급재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홍치중(洪致中)의 장본(狀本)에는 진청(賑廳)에서 대출하여온 돈 2만 냥과 쌀 7천 석을 우선 물려서 봉납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고, 전에 미수(未收)된 군포(軍布)는 봉납을 중지할 것과 면전(綿田)에 급재해 줄것을 진청(陳請)하였으니, 쌀은 우선 내년 가을로 물려서 봉납하게 하소서. 돈은 본청(本廳)에서 바야흐로 쌀을 사들이려 하고 있으니 구처(區處)하여 상환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미수된 것은 이미 봉납을 중지할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전의 급재는 처음에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도에서 청하여 허락을 얻게 된 다음에야 장계를 올려서 청하였으니, 그것이 그다지 긴급(緊切)하지 않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p>	<p>乙亥/世子引接大臣、備局諸臣。右議政趙泰采言：“咸鏡監司李坦狀陳本道失稔，賑穀無所辦出，請得空名帖文五六百張。宜令該曹成送。慶尙監司權翊狀本，請加給木花災，而今已節晚，不可追後添給。全羅監司洪致中狀本，以賑廳貸來錢二萬兩、米七千石，姑許退捧，舊未收軍布停捧及綿田給災事陳請矣。米則姑許待明秋退捧，而錢則自本廳，方欲買米區處，不可不償。舊未收已許停捧，今不當舉論。綿田災則初不舉論，及見他道請得，始乃狀請，其不甚緊切可想，宜勿許。”世子竝從之。泰采又曰：“邸下聽政之初，聖上以敬之一字勉勵。夫敬者，主一無適之謂。雖匹夫，修身之工，必主於敬，況帝王乎？”宋臣眞德秀曰：‘持心以敬，爲修身第一先務。’蓋善</p>

하니, 세자(世子)가 모두 그대로 따랐다. 조태채가 또 말하기를,
 “저하(邸下)께서 청정(聽政)하던 처음에 성상(聖上)께서 ‘경(敬)’이라는 글자 하나로 면려(勉勵)하셨습니다. 무릇 경(敬)이란 마음을 한군데에 집중하여 잡념(雜念)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필부(匹夫)일지라도 수신(修身)하는 공부에는 반드시 경(敬)을 주로 삼는 것인데, 더구나 제왕(帝王)이겠습니까? 송(宋)나라의 신하인 진덕수(眞德秀)는 말하기를, ‘경(敬)에 의거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수신(修身)에 있어 제일의 급선무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선악(善惡)과 사정(邪正)의 구분과 안위(安危)·치란(治亂)의 단서(端緒)가 실은 이 마음이 경(敬)한가 불경(不敬)한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니, 경(敬)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학문을 강론한 뒤에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일에 내린 성비(聖批)에 생각을 시종 학문에 두라고 하셨는데, 이는 삼대(三代)18480) 때 성왕(聖王)들이 경(敬)을 지닌 요점이고 저하(邸下)께서 전하여 가야 할 가법(家法)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탕(侍湯) 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주 궁료(宮僚)들을 인접하시어 경전(經傳)을 강론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진리를 탐구해서 체행(體行)하신다면 학문에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이르기를,
 “대신(大臣)이 상세히 진달하는 것이 진실로 너무도 간절하고 지극하다. 마땅히 유념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상유(權尙游)·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관명(李觀命)·응교(應教) 홍계적(洪啓迪) 등이 잇따라 경(敬)을 지니는 것과 학문에 나아가는 요점에 대해 진달하니, 세자(世子)가 모두 옹계 여겨 받아들였다. 대사간(大司諫) 심택현(沈宅賢)이 전일에 진달한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당초 공청(空靑)에 구멍을 뚫을 적에 이시필(李時弼)이 전혀 장즙(漿汁)이 떨어

惡、邪正之分，安危、治亂之機，實係此心上敬不敬之如何，而敬字工夫，必待講學而後能之。向日聖批中，念終始典于學，此三代聖王居敬之要，而邸下相傳之家法也。雖在侍湯之中，必數引宮僚，講論經傳，潛心玩索而體行之，則進學之道，無過於此矣。”世子曰：“大臣縷縷陳達，誠甚切至。當留意焉。”戶曹判書權尙游、兵曹參判李觀命、應教洪迪啓等，繼陳居敬進學之要，世子竝嘉納。大司諫沈宅賢申前達，又言：“當初空靑鑿孔之時，時弼見漿汁之全不滴下，反以一次點眼傳說彼人，與承宣往傳之言相左，致使彼人起鬧。況其爰辭，全事巧飾，尤極奸惡。請極邊定配。”世子不從。

	<p>어지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도 도리어 1차 점안(點眼)하였다고 청사(請使)에게 전설(傳說)함으로써 승지(承旨)가 가서 전한 말과 서로 어긋나게 만들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시끄러움을 야기시키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공사(供辭)를 보면 오로지 공교하게 꾸미기만을 힘썼으니 더욱 간악(奸惡)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컨대 극변(極邊)에 정배(定配)하소서.”</p> <p>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았다.</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2월 2 일(임오) 1번째기사</p>	<p>반유(泮儒)18482) 들에게 감귤(柑橘)을 반사(頒賜)하고 시험을 보여 수석(首席)을 한 진사(進士) 윤연(尹筵)에게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였다.</p>	<p>壬午/頒柑于泮儒， 賜居首進士尹筵直赴殿試。</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2월 7 일(정해) 3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면부(面部)에 있는 동자료(瞳子膠), 수부(手部)에 있는 합곡(合谷) 좌우혈(左右穴), 족부(足部)에 있는 행간(行間)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마치고 나서 우참찬(右參贊) 이건명(李健命)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불러서 접견하였다. 이건명이 말하기를, “신이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서 서도(西道)에서 백성들의 일이 더없이 급박한 것을 목견(目見)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청대(請對)한 것입니다. 금년의 연사(年事)는 양서(兩西)18495) 가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청북(淸北)18496) 에 이르러서는 풀 한 포기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가을 추수 때 충재(蟲災)가 비상하여 며칠 사이에 온 도내(道內)에 가득히 퍼져 나갔는데, 무릇 명색이 곡식이라는 것은 남김없이 다 먹어 치웠으므로 가을 무렵부터 백성들이 이미 식량 곤란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콩깍지를 가루로 만들어 먹기도 하니, 결단코 세전(歲前)까지도 살아갈 희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신이 도신(道臣) 김유(金樛)와 상의하여, 가을에 장계(狀啓)를 올려 감진 어사(監賑御史)를 보내줄 것을 청하였지만 묘당(廟堂)에서 어사(御史)가 진구(賑救)를 감독하는 것은 또한 폐단이 있다는 것으로 허락하지 않고 다만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혹은 도사(都事)를 보내든지 혹은 영비(營裨)를 보내어 왕래하면서</p>	<p>藥房入診。 上面部瞳子膠手部合谷左右穴、足部行間左右穴受鍼訖，右參贊李健命請對，上召見。 健命曰：“臣奉使西路，目見民事萬分切急，故敢此請對矣。 今年年事，兩西均爲失稔，而至於淸北，便成赤地。 聞秋成時蟲災非常，數日內遍滿一道，凡以穀爲名者，食盡無餘，自秋間，民已艱食，或以豆穀，作屑爲食，決無歲前存活之望。 臣與道臣金樛相議則以爲，秋間狀請監賑御史，則廟堂以御史監賑，亦有弊端，不許，只令道臣，或送都事，或送營裨，往來監賑矣。 都事、營裨，名位不尊，終不如御史之特遣。 淸南則委之監司，淸北則別遣監賑御史，然後似爲得宜。 且江都米及海西詳定米，</p>

진구를 감독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사와 영비는 명위(名位)가 높지 않으므로 결국 어사(御史)를 특별히 보내는 것만 못합니다. 청남(淸南)18497) 을 감사(監司)에게 맡기고 청북(淸北)18498) 은 특별히 감진 어사(監賑御史)를 보낸 연후에야 사의(事宜)에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江都)의 쌀과 해서(海西)의 상정미(詳定米)를 묘당(廟堂)에서 획급(劃給)한 것이 단지 1만석뿐입니다. 의주(義州)의 기황(飢荒)은 더욱 혹독하기 때문에 본도(本道)에서 먼저 의주(義州)에 4천 석을 지급했으니, 남은 것은 6천 석뿐입니다. 따라서 경진청(京賑廳)의 쌀 5,6천 석을 얼음이 풀릴 때에 시급히 운송(運送)하게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이르기를,

“관서(關西)의 절박한 민사(民事)에 관해 도신(道臣)이 잇따라 올린 장계를 보건대 매우 딱하고 참혹하였다. 감진 어사(監賑御史)를 특별히 차송하고 곡물(穀物)도 더 보내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그 뒤 묘당에서 복주(覆奏)하여 해서(海西)의 상정미(詳定米) 3천 2백 석을 더 지급하게 하였다. 이견명(李健命)이 또 말하기를,

“관서(關西)에서 돈을 주조(鑄造)하는 일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이미 품정(稟定)하였습시다만 의논이 일치(一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신(道臣)이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전에 모아두었던 물력(物力)을 바야흐로 파산(罷散)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關西)의 감영(監營)에 저축한 은전(銀錢)을 청남(淸南)·청북(淸北)의 각 고을에 모두 흠어주어 곡식을 사들이게 하였으므로 각 고을의 사세가 장차 주조한 돈의 반은 본전(本錢)으로 세워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각 고을에서 대여(貸與)해 간 영화(營貨)18499) 의 본전(本錢)은 본도(本道)에서 주조한 돈에서 남은 이익으로 상환(償還)하여 채우고 각 고을에서 대여하여 간 돈은 모두 진구(賑救)를 대비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쓰게 하는 것이 백성을 구제하

自廟堂劃給者，只一萬石，而義州飢荒尤酷，故自本道，先給四千石於義州，所餘只是六千石。京賑廳米五六千石，趁解冰急急運送，似不可已矣。” 上曰：“關西民事之切急，連以道臣狀聞見之，極爲矜慘。監賑御史，特爲差送，穀物加送事，令廟堂稟處。” 是後，廟堂覆奏，加給海西詳定米三千二百石。健命又言：“關西鑄錢事，廟堂雖已稟定，議論不一，故道臣不能決定，曾所鳩聚之物力，方欲罷散矣。然關西營儲銀錢，盡散於淸南、北各邑，使之貿穀，而各邑勢將以一半立本，則及民者無多。臣意則各邑所貸營貨之本，以本道鑄錢餘利充償，而各邑所貸者，盡備賑資，則似便於救民之道矣。” 上曰：“限六朔許鑄事，既有定奪，何可越趨？依卿所奏，更爲分付。”

	<p>는 도리에 있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이르기를, “6개월을 기한으로 돈을 주조하게 할 것을 허락하여 이미 정탈(定奪)이 있었으니 주저할 것이 뭐 있는가? 경(卿)이 아뢰는 대로 다시 분부(分付)하도록 하라.” 하였다.</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12월 11일(신묘)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말하기를, “병신년(1853)의 우도(右道)의 수세안(收稅案)을 본조(本曹)에서 계산하여 고험(考驗)하여 보니, 경기(京畿)·강원(江原) 두 도(道)의 열 고을에 대한 재결(災結) 이외에 실결(實結) 가운데에서 감록(減錄)된 것이 1백여 결(結)이나 되니, 청컨대 그 수령(守令)을 파직시키소서.”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조태채(趙泰采)가 뒷날 연석(筵席)에서 임금(上)에게 건백(建白)하기를, “수령(守令)들 가운데 죄과(罪科)를 범한 사람이 10인에 이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바야흐로 감사(監司)의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한꺼번에 갑자기 파직시키는 것은 또한 매우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上)이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다.</p>	<p>戶曹言：“丙申年右道收租案，自本曹打算考驗，則京畿、江原兩道十邑災結外，實結減錄者百餘結。請罷其守令。”右議政趙泰采後日筵中，白上以爲：“守令犯科者，多至十人，其中亦有方任監司者。一時遞罷，亦甚有弊。”上命推考。</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康熙) 56년) 12월 16일(병신)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戶曹判書) 권상유(權尙游)가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당년의 수세미(收稅米)가 13만 석(石)에 불과한데, 1년의 경비(經費)도 거의 이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도(道)에 큰 흉년이 들어 세입(稅入)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단지 5만 8천여 석(石)이 있을 뿐이므로 앞으로 지급[支下]할 방도가 아득하기만 할 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금년의 연사(年使)는 풍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대단히 좋고 각종 재명(災名)도 지난해처럼 많지 않으니, 세입(稅入)의 수량은 당연히 넉넉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의 대체적인 상황을 보니 증가된 데도 있고 감소된 데도 있었으며, 호서(湖西)에</p>	<p>○戶曹判書權尙游上書。略曰：常年收稅之米，不過十三萬石，而一年經費，幾與之相當。昨年諸道大歉，稅入大縮，只是五萬八千餘石，前頭支下，茫無其策。今年年事，雖未豐登，比上年大勝，各樣災名，亦不如上年之夥然，稅入之數，謂當優裕，得見黃海、江原、京畿、忠道四道大概狀，則或加或減，至於湖西，則參以所聞，與</p>

	<p>이르러서는 소문에 의거 참작해 보면 지난해와는 현격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도 실결(實結)의 감축이 지난해에 비하여 그다지 다른 것이 없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저 전지(田地)를 검점(檢點)할 적에 수령(守令)들이 간혹 구차스럽게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지 않고 또한 간리(奸吏)에게 속아 은폐(隱蔽)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도신(道臣)이 이를 잘 검칙(檢飭)하지 않기 때문에 실결(實結)의 누락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양남(兩南)18537) 도 다시 이와 같이 된다면 앞으로 국가의 모양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지 않았고 답험(踏驗)18538) 하는 정사를 수령(守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니, 마땅히 연분(年分)이 거의 끝나갈 때를 기다려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각 고을의 급재(給災)된 곳으로 가서 특별히 적간(摘奸)하게 한 다음 잘못이 드러나는 대로 무거운 쪽으로 과죄(科罪)함으로써 징계하고 격려하는 터전을 만들게 하소서.” 하니, 세자(世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p>	<p>上年可謂懸殊，而實結之縮，視上年無甚異同，此有未可曉者。大抵檢田之時，守令或不無苟且要譽之心，亦多爲奸吏所欺蔽，按道之臣，又或不加檢飭，以致實結之多漏。兩南若復如此，則將不成國家貌樣。今年既不送敬差官，踏驗之政，專委守令。宜待年分垂畢後，發送御史，就各邑給災處，另加摘奸，隨其現發，從重科罪，以爲懲勵之地。 世子令廟堂稟處。</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2월 25 일(을사) 3번째기사</p>	<p>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조태채(趙泰采)가 말하기를, “충청 병사(忠淸兵使) 오중주(吳重周)가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상당 산성(上黨山城)은 장차 내년 봄부터 역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본영(本營)의 물력(物力)이 조잔(凋殘)하여 힘써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온양(溫陽) 별과(別科)의 출신(出身)들에게서 받을 제방미(除防米)를 조정에서 본성(本城)의 군향(軍餉)으로 쓰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먼저 이 쌀 1천 4백 석과 그 전에 대여(貸與)해주었던 안흥(安興) 쌀 1천 석을 성역(城役)에 헤아려서 쓰게 하되, 입본(立本)18571) 하여 도로 상환하게 해서 군향으로 쓰는 것이 실제로 편의(便宜)하겠습니다.’ 하였으니, 마땅히 허락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내(道內)에 기근(飢饉)이 든 나머지 역질(疫疾)이 또 치성(熾盛)한 탓으로 결코 백성을 동원하여 성을 수축하기가 곤한하다고 하니, 도내(道內)의 승군(僧軍)을 징발하여</p>	<p>世子引接大臣、備局諸臣。右議政趙泰采曰：“忠淸兵使吳重周狀言：‘上黨山城，將趁明春始役，而本營物力凋殘，無以拮据。溫陽別科出身除防米，朝家令作本城軍餉矣。請先以此米一千四百石及曾前所貸安興米一千石，料理用之於城役，立本還報，爲軍餉事實便當。’宜許之。且道內飢饉之餘，癘疫又熾，決難動民築城。使之調發道內僧軍，給糧使役，恐或得宜矣。”世子竝可之。持平俞拓基申前達，世子不從。正言金礪申前達，又言：“平</p>

	<p>식량을 지급하고 역사(役使)시키는 것이 아마도 사의(事宜)에 맞을 것 같습니다.”</p> <p>하니, 세자(世子)가 모두 옳게 여겼다. 지평(持平) 유척기(兪拓基)가 전일에 진달하였던 것을 다시 진달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정언(正言) 김여(金礪)가 전일에 진달하였던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p> <p>“평안 도사(平安都事) 구익형(具益亨)은 본디 지망(地望)이 가벼워 물정(物情)이 놀라고 있으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충청 수사(忠淸水使) 정수송(鄭壽松)은 군무(軍務)를 포기한 채 유희(遊嬉)만을 일삼고 있는가 하면 과외(科外)의 침탈(侵奪)을 자행하기 때문에 원성(怨聲)이 길에 가득하니, 청컨대 파직(罷職)시키소서.”</p> <p>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았다.</p>	<p>安都事具益亨，地望素輕，物情爲駭。請改差。忠淸水使鄭壽松，拋棄軍務，專事游嬉，科外侵漁，怨聲載路。請罷職。”世子不從。</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2월 25 일(을사) 4번째기사</p>	<p>장령(掌令) 정동후(鄭東後)가 상서(上書)하기를,</p> <p>“호남(湖南)의 충재(蟲災)·우박(雨雹)과 호서(湖西)의 강가의 수해(水害)는 가을이 되기 전에 이미 큰 흉년이 들 것이 판가름 났었으니, 조정에서 진구(賑救)하는 방도에 있어 의당 극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강도(江都)에서 이전(移轉)하여 온 쌀을 아직 독징(督徵)하고 있는데 보장(保障)을 중히 여기고 위급(危急)을 구제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더욱 극심한 고을에 이르러서는 경상(景象)의 참혹함이 지난해의 굶절이나 됩니다. 무릇 이미 지난해에 옮겨다가 진구(賑救)하였으니 금년에 도로 독징(督徵)한다는 것은 조정에서 백성을 구활(救活)하는 의도에 있어 시종(始終)이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원컨대 봉납(捧納)을 정지시켜 그 은혜를 끝까지 마무리 짓게 하소서. 양전(量田)에 대한 정사는 이를 구획(區劃)하고 조치(措置)함에 있어 반드시 먼저 상의하여 상세히 강론한 다음 살펴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흰 눈이 들판을 뒤덮고 있어 전묘(田畝)를 구분할 수 없는데,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면 또 농사철이 급박하게 됩니다. 신</p>	<p>掌令鄭東後上書言：湖南之蟲孽、雨雹，湖西之沿江水害，未秋前已判其大無。朝家賑濟之方，宜無所不用其極，而江都移轉之米，猶爲督徵。重保障濟緩急之慮，有不得不然，而至於尤甚之邑，景象之慘，有倍去年。夫既移賑於去年，還督於今歲，朝家濟活之意，始終刺謬。乞令停捧，以卒其惠。量田之政，區畫措置，必須預先商確，熟講而審行之。卽今雪埋原野，田畝莫辨，差待雪消，則又迫東作。臣愚以爲，春前姑勿舉行，爛熳講定，預先頒布節目於諸道列邑，明年秋收後，一時舉行，則作事有</p>

	<p>의 어리석은 소견에는 봄 전에는 우선 거행하지 말고 충분히 잘 강정(講定)하여 미리 먼저 그에 대한 절목(節目)을 여러 도(道)의 각 고을에 반포하였다가 내년 추수(秋收)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거행한다면, 일을 하는 것이 순서가 있게 되어 전정(田政)에도 마땅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p> <p>하니, 세자(世子)가 답하기를,</p> <p>“강도(江都)의 쌀을 절봉(折捧)하는 데 대한 한 가지 조항은 허락하기가 곤란하다. 양전(量田)에 대한 일은 우선 삼남(三南) 가운데 조금 충실한 고을에 거행할 것으로 묘당(廟堂)에서 이미 복계(覆啓)하였다.”</p> <p>하였다.</p>	<p>漸，田政得宜。</p> <p>世子答曰：“江都米折捧一款，有難許施。量田，先行於三南稍實邑事，自廟堂，才已覆啓矣。”</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2월 26 일(병오) 2번째기사</p>	<p>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전달한 것을 다시 전달하고, 또 말하기를,</p> <p>“연분(年分)에 대한 사목(事目)은 지극히 엄하고도 중대한 것이므로 수령(守令)이 재상(災傷)에 대한 착오를 범한 것이 10부(負) 이상이면 파직(罷職)시키고 30부(負) 이상이면 나문(拿問)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부터 있어온 금석(金石)의 법전(法典)입니다. 지금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의 열 고을의 분재(分災) 가운데 실결(實結)의 감축(減縮)이 많은 경우에는 1백여 결(結)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현발(現發)된 뒤에는 단지 문비(問備)18572) 하는 가벼운 벌만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당초 법을 정한 의도가 문득 하찮은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청컨대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소서 엇그제 최대보(崔台輔)의 상서(上書)로 인하여 저쪽18573)의 곡물(穀物)을 편의한 대로 사오는 것을 통렬히 금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반드시 무역(貿易)을 허락할 것도 없다는 것으로 비국(備局)에 달하(達下)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피차(彼此)에 교역(交易)하는 물품은 전부터 정례(定例)가 있어 왔는데 이제와서 이런 일을 시작해놓았으면 이는 크게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일이 허락할 만한 것이면 허락해야 하는 것이고 금지시켜야 할 것이면 금지시켜야 하는 법이니, 당당(堂堂)한 조정의 명령이 마땅히 이렇게 구차스러</p>	<p>諫院申前達。又言：“年分事目，至嚴且重，守令災傷差錯十負以上罷職，三十負以上拿問，自是金石之典。今者京畿、江原道十邑分災中，實結減縮，多者至百餘結。既已現發之後，只施問備之薄罰，當初定法之意，便歸弁髦。請依事目論罪。日昨因崔台輔上書，彼中穀物，因便貿來者，不必痛禁，亦不必許貿事，自備局達下云。夫彼此交易之物，自有定例，到今創開，大關後弊。況事可許則許之，可禁則禁之，堂堂朝令，不宜若是苟艱。請自今定式，嚴加禁斷。”世子只從洪萬遇、具益亨事。於是，配萬遇於蔚山府，台輔，義州商胥上書所言，皆狙獪牟利之計，而貿取穀物於彼中，以補</p>

	<p>위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항식(恒式)을 정하여 엄중히 금단(禁斷)하소서.”</p> <p>하니, 세자(世子)가 홍만우(洪萬遇)와 구익형(具益亨)의 일만 따랐다. 이리하여 홍만우를 울산부(蔚山府)에 정배(定配)하였다. 최태보(崔台輔)는 의주(義州)의 상서(商胥)인데 상서(上書)에서 아뢰는 것은 모두가 모리(牟利)를 노린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저쪽에서 곡물(穀物)을 사다가 칙수(勅需)18574)에 보태게 하자는 것은 바로 그의 상서 가운데의 일설(一說)이었다. 세자(世子)가 이를 비국(備局)에 내렸는데 복주(覆奏)에 별로 건백(建白)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대관(臺官)이 논한 것이다.</p>	<p>勅需者，乃其書中一說也。世子下之備局，而覆奏，殊無別白，故臺官論之。</p>
<p>숙종 60권, 43년 (1717 정유 / 청 강희 (康熙) 56년) 12월 28 일(무신)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전부터 부음(訃音)을 전하는 칙사(勅使)의 행차에 대해서는 나례(儼禮)18576) 와 연향(宴享)을 진설하지 않았고 음악은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이 전례에 의하여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진품(陳稟)하였는데, 세자가 그렇게 하게 하였다.</p>	<p>禮曹以自前傳訃勅行，不設儼禮及宴享，樂則陳而不作，今亦當用此例，陳稟，世子可之。</p> <p>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卷之六十</p>